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22	O		

공통요구자료	Ⅱ-1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2. 1.

해 양 수 산 부

목 차

Ⅰ. 총 괄 표 ····· 1

Ⅱ. 일반회계 ····· 11

1. 총 괄 ····· 13

2. 세 입 ····· 50
(1) 토지대여료 ····· 50
(2) 건물대여료 ····· 51
(3) 기타관유물대여료 ····· 52
(4) 기타재산이자수입 ····· 53
(5)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54
(6) 벌금 및 과료 ····· 55
(7) 과태료 ····· 56
(8) 징계부과금 ····· 57
(9) 과징금 ····· 58
(10) 변상금 ····· 59
(11) 위약금 ····· 60
(12) 가산금 ····· 61
(13) 기타경상이전수입 ····· 62
(14) 면허료 및 수수료 ····· 63
(15) 항공항만수입 ····· 64
(16) 실습수입 ····· 65
(17) 기타잡수입 ····· 66

(18) 면허료 및 수수료 ····· 67
(19) 기타잡수입 ····· 68
(20) 기계기구매각대 ····· 69
(21)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70
(22) 토지매각대 ····· 71
(23) 재고자산매각대 ····· 72
(24) 유동자산매각대 ····· 73
(2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74

3. 세 출 ····· 75
(1) 해양보호 구역관리 ····· 75
(2) 해양생태계조사 및 관리 ····· 78
(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80
(4) 해양공간 통합관리 ····· 83
(5) 해양정원 조성사업 ····· 86
(6) 해양생명 자원조사 ····· 88
(7)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 91
(8) 환경관리해역관리 및 시스템 구축 ····· 94
(9) 해양환경 국제협력 ····· 97
(10)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 99
(11)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 101
(12) 연안관리 ····· 104
(13) 연안정비 ····· 107
(14)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 109
(15) 해양환경 교육운영 ····· 112
(16)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지원 ····· 114
(17) 침몰선박 관리사업 ····· 117
(18)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 120
(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 ····· 123

(20) 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 ····· 126
(2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운영지원(R&D) ····· 129
(22)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 132
(23) 해양과학 국제협력 ····· 135
(24) 해양문화시설건립 및 운영 ····· 137
(25)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지원 ····· 141
(26)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지원 ····· 143
(27) 해양모태펀드 ····· 146
(28)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 148
(29)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강화 ····· 151
(30) 해양영토관리 역량강화 ····· 155
(31)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 158
(32)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 161
(33) 국가해양 관측망 구축 및 운영 ····· 164
(34)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 167
(35) 수요자 맞춤형 해양관측·진단·예측 체계 고도화 ····· 169
(36) 해양관광 육성 ····· 172
(37)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R&D) ····· 175
(38) 조류발전 청정재생에너지 시스템개발(R&D) ····· 178
(39) 심해저광물자원 기술개발(R&D) ····· 181
(40) 해양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 ····· 184
(41)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R&D) ····· 187
(42)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촉진사업(R&D) ····· 190
(43) EEZ관심해역 해양과학탐사 기술개발(R&D) ····· 193
(44) 관할해역 첨단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 196
(45)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R&D) ····· 199
(46)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 202
(47) 천리안 2B호산 출물 정확도 향상연구(R&D) ····· 205
(48)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R&D) ····· 208

(49)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R&D) ····· 212
(50)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R&D) ····· 215
(51)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R&D) ····· 218
(52) 인도양 한-미 공동관측 및 연구 ····· 221
(53) 북서태평양 온난화 및 태풍 발생 연구 ····· 224
(54)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R&D) ····· 226
(55) 해양수산 생명공학기술개발(R&D) ····· 229
(56)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R&D) ····· 232
(57)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R&D) ····· 235
(58) 빅데이터기반 해양바이러스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개발(R&D) ··· 238
(59) 해양 바이오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R&D) ····· 241
(60)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_(R&D) ····· 244
(61)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소재화 기술개발(R&D) ····· 248
(62) 해양수산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R&D) ····· 252
(63) 해양산업 수요기술개발사업(R&D) ····· 255
(64)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R&D) ····· 258
(65)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기술개발 ····· 261
(66)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 ····· 264
(67) LNG벙커링 핵심 기술개발 및 체계구축(R&D) ····· 267
(68)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개발(R&D) ····· 270
(69) 스마트해양조사 및 정보활용 기술개발(R&D) ····· 273
(70)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R&D) ····· 277
(71)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R&D) ····· 280
(72)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R&D) ····· 283
(73)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 ····· 287
(74) 머신러닝 기반 해저면 특성 분류 기술개발(R&D) ····· 290
(75)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R&D) ····· 294
(76)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및 활용 기술개발(R&D) ····· 298
(77)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 ····· 301

(78) 내항선박 연료전환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 ····· 304
(79) 안전기반 소형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 308
(8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화(정보화) ····· 311
(81) 어업협정이행 ····· 314
(82) 어선안전 조업지원 ····· 317
(83) 어업지도 관리 ····· 320
(84)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323
(85)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 326
(86)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 329
(87) 어업지도 정보화(정보화) ····· 332
(88) 수협지도경제사업 활성화 ····· 334
(89) 수산산업창업 투자지원 ····· 339
(90) 국제수산기구 분담금 ····· 343
(91) (총액)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R&D) ····· 346
(92)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 348
(93)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R&D) ····· 350
(94)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 352
(95)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R&D) ····· 354
(96)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R&D) ····· 357
(97) 수산시험연구(R&D) ····· 359
(98) 생태계기반 수산자원 변동 예측 기술개발(R&D) ····· 363
(99)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R&D) ····· 366
(100) 수산생물질병 국제표준 및 원헬스 관리 체계구축(R&D) ····· 369
(101) 국립수산과학원 정보화(정보화,R&D) ····· 372
(102) 해양수산 환경 기술개발(R&D) ····· 374
(103) 과학기술 기반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R&D) ····· 378
(104)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R&D) ····· 381
(105)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HNS)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R&D) ····· 384
(106)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R&D) ····· 387
(107)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기법 개발(R&D) ····· 390

(108)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R&D) ····· 393
(109)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R&D) ···· 396
(110)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 활용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 399
(11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R&D) ····· 402
(11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사업(R&D) ····· 404
(113) 수산전문 인력양성(R&D) ····· 407
(114) 정책연구개발사업(R&D) ····· 410
(115) 안전한 항만구축 및 관리기술개발(R&D) ····· 412
(116)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R&D) ····· 415
(117)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 저감 기술개발(R&D) ····· 419
(118)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R&D) ····· 422
(119) 항만지하시설물 정보구축(정보화) ····· 425
(120)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정보화) ····· 428
(121) 해양수산행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431
(122) 사이버안전센타구축 및 운영(정보화) ····· 433
(123)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 운영(정보화) ····· 436
(124) 항만물류정보(정보화) ····· 438
(125) 해양환경정보(정보화) ····· 441
(126) 항행안전정보(정보화) ····· 444
(127)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운영(정보화) ····· 446
(128)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정보(정보화) ····· 449
(129) 해양심판정보(정보화) ····· 452
(130) 해양조사정보(정보화) ····· 455
(131) 연안관리 정보구축(정보화) ····· 458
(132) 해양수산 정보 공동 활용 체계구축(정보화) ····· 460
(133) 청항선 관리 및 선박 폐유수거처리 ····· 463
(134)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 466
(135)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 468
(136)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 472
(137)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 475
(138)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 480

(139) 해사고등학교 지원 ····· 483
(140)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 485
(141) 국적해기사 일자리 지원 ····· 488
(142) 관공선 건조 및 운영 ····· 490
(143) 전환교통 지원 ····· 493
(144)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 495
(145)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498
(146)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지원 ····· 501
(147)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 506
(148)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축 지원 ····· 508
(149)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 511
(150)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 ····· 513
(151) 항만 근로자 복지관 건립 ····· 515
(15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 518
(153) 스마트 항만 전문인력 양성지원 ····· 520
(154) 스마트 해운물류확산 지원 ····· 523
(155)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 526
(156)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528
(157)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 531
(158) 국고여객선 건조 ····· 534
(159) 도서지역 생활 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 536
(160)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 539
(16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 541
(162) 해상안전 국제협력 ····· 544
(163)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 546
(164) 선박배출 오염예방 ····· 550
(165) 선박운송 안전확보 ····· 553

(166)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 560
(167)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 ····· 563
(168)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 566
(169) 친환경 선박 보급촉진 ····· 572
(170)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운영 ····· 575
(171)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 577
(17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화(정보화) ····· 579
(173)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건비(총액) ····· 581
(174)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경비(총액) ····· 583
(175)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경비(비총액) ····· 585
(176) 본부 인건비 ····· 587
(177) 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총액) ····· 589
(178) 국립해양조사원등 인건비 ····· 591
(179) 해사고등학교 인건비(총액) ····· 593
(180) 본부 기본경비(총액) ····· 595
(181) 본부 기본경비(비총액) ····· 597
(182)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총액) ····· 599
(18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본경비(총액) ····· 601
(184) 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총액) ····· 603
(185)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 605
(186)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 607
(187)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비총액) ····· 609
(18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본경비(비총액) ····· 611
(189) 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비총액) ····· 613
(190)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 615
(191)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 617
(19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19

(19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21
(19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23
(195)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25
(19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27
(19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29
(19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31
(199)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33
(200)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35
(201) 지방해양수산청 공익요원경비(총액) ····· 637
(20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39
(20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641
(20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43
(20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45
(20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47
(2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49
(208)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51
(20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53
(2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55
(21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57
(212)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59
(213) 지방해양수산청 공익요원경비(비총액) ····· 662
(2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64
(215)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666
(21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668
(217) 정책홍보기획 연구운영 ····· 670
(218) 제도개선 및 갈등관리 ····· 672
(219)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674
(220) 청사시설관리 ····· 677

(221) (총액)인건비 ····· 679
(222) (총액)동해어업관리단 인건비 ····· 681
(223) (총액)서해어업관리단 인건비 ····· 683
(224)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건비 ····· 685
(225) (총액)남해어업관리단 인건비 ····· 687
(226)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 689
(227) (비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 691
(228) (총액)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693
(229)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695
(230)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 697
(231) (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699
(232) (비총액)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701
(233)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703
(234) (비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 705
(235)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 707
(236)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본경비 ····· 709
(237)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익요원경비 ····· 711
(238)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본경비 ····· 713
(239)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익요원경비 ····· 715
(240) 행정운영 ····· 717
(241) 공공기관혁신제품시범구매 ····· 719
(24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건비(총액) ····· 721
(24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총액) ····· 723
(244)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총액) ····· 725
(24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비총액) ····· 727
(24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비총액) ····· 729

Ⅲ.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731

1. 총 괄 ····· 733

2. 세 입 ····· 745
(1) 기타재산이자수입 ····· 745
(2)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746
(3) 과태료 ····· 747
(4) 위약금 ····· 748
(5) 기타경상이전수입 ····· 749
(6) 면허료 및 수수료 ····· 750
(7) 실습수입 ····· 751
(8) 기타잡수입 ····· 752
(9)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753
(10) 기타관유물대여료 ····· 754
(11) 기타재산이자수입 ····· 755
(12)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756
(13) 과태료 ····· 757
(14) 위약금 ····· 758
(15) 기타경상이전수입 ····· 759
(16) 기타잡수입 ····· 760
(17)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761
(18) 토지매각대 ····· 762

3. 세 출 ····· 763
(1)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 763
(2) 천일염 산업육성 ····· 766
(3) 수산식품 산업육성 ····· 770
(4)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 773

(5)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776
(6)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 780
(7)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 783
(8)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786
(9) 직거래등 신유통망 구축 ····· 789
(10) 수산물 이력제 ····· 792
(11) 수산물 위생관리 ····· 795
(12) 수산관측 ····· 806
(13) 양식장관리실태조사 ····· 809
(14)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 811
(15) 수산물 검역검사 ····· 815
(16) 수산물 품질관리 ····· 819
(17) 수산생물 방역 관리 및 지원 ····· 824
(18)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의약품 사용 기술개발(R&D) ····· 827
(19)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 830
(20) 수산자원 회복프로그램 운영 ····· 833
(21)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 836
(22)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 839
(23) 친환경 어구보급 ····· 844
(24) 수산종자 산업육성 ····· 850
(25)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 854
(26)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 857
(27) 관상어 산업육성 ····· 860
(28) 내수면 자원조성 ····· 863
(29) 자율관리 어업육성 ····· 868
(30) 수산자원 조성사업지원 ····· 871
(31)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 875
(32) 낚시산업 선진화 ····· 878
(33)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구축 ····· 882

(34) 어촌활력 기반구축 ····· 886
(35) 어촌발전기반조성 지원 ····· 890
(36) 귀어귀촌 활성화 ····· 893
(37)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897
(38) 수산장비 임대활용(지자체) ····· 902
(39)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905
(40) 양식어업 재해보험 ····· 909
(4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 912
(42) 양식 등 재해대책비 ····· 915
(43) 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 918
(44)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 922
(45) 수산정보화(정보화) ····· 927
(46) 원양어업 활성화 ····· 930
(47)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 935
(48) 연안국과의 협력(ODA) ····· 941
(49) 원양어선감독관리체계구축 ····· 947
(50)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 951
(51)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954
(52) 어선거래제도 운영 ····· 957
(53) 어선청년임대 ····· 960
(54)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 963
(55) 국가어항 관리 ····· 965
(56) 국가어항 ····· 968
(57) 가거도항 복구 ····· 971
(58) 어촌뉴딜300 ····· 974
(59) 청년어촌 정착지원 ····· 976
(60) 차세대 수산물 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R&D) ····· 979
(61) 수산실용화 기술개발(R&D) ····· 982
(62)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R&D) ····· 985

(63)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및 불법어업·수산생태계 관리기술개발(R&D) ····· 988
(64) AI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R&D) ····· 991
(65)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R&D) ····· 995
(66)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개발(R&D) ····· 998
(67)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R&D) ····· 1001
(68)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R&D) ····· 1004
(69)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 기술개발사업(R&D) ····· 1007
(70) 어업경영체 등록 ····· 1010
(71) 어업인안전보험 ····· 1013
(72) 수산공익 직불제 ····· 1016

Ⅳ. 교통시설특별회계 ····· 1021

1. 총 괄 ····· 1023

2. 세 입 ····· 1034
(1) 토지대여료 ····· 1034
(2) 건물대여료 ····· 1036
(3) 기타관유물대여료 ····· 1037
(4) 정부출자수입 ····· 1038
(5) 기타재산이자수입 ····· 1039
(6) 벌금 및 과료 ····· 1040
(7) 과태료 ····· 1041
(8) 과징금 ····· 1042
(9) 변상금 ····· 1043
(10) 위약금 ····· 1044
(11) 가산금 ····· 1045
(12) 기타경상이전수입 ····· 1046
(13) 면허료 및 수수료 ····· 1047

(14) 항공항만수입 ····· 1048
(15) 기타잡수입 ····· 1049
(16)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1050
(17) 토지매각대 ····· 1051
(18) 재고자산매각대 ····· 1052
(19) 일반회계 전입금 ····· 1053

3. 세 출 ····· 1054
(1)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R&D) ····· 1054
(2) 항만 컨테이너 자동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 1057
(3) ICT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R&D) ····· 1060
(4) 스마트항만-자율운항 선박연계 기술개발(R&D) ····· 1064
(5) 스마트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R&D) ····· 1068
(6)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 지원 시스템 기술개발(R&D) ·· 1071
(7) 해운-항만-운송기업간 물류연계 최적화서비스개발(R&D) ····· 1074
(8) 항만 내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 개발(R&D) ····· 1077
(9)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R&D) ····· 1082
(10)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R&D) ····· 1086
(11) 해양PNT 고도화 기술개발(R&D) ····· 1089
(12) 선체부착생물 처리기술 개발(R&D) ····· 1092
(13) 해상디지털 통합 활용 연계 기술개발(R&D) ····· 1095
(14)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 기술개발(R&D) ····· 1098
(15)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R&D) ····· 1101
(16)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R&D) ····· 1106
(17) 부산항 신항만(1단계) ····· 1109
(18) 부산항 제2신항 ····· 1114

(19) 부산항 신항만 남컨배후단지 ····· 1117
(20)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 1120
(21) 광양항(3단계) ····· 1123
(22) 평택·당진항 ····· 1127
(23)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 1132
(24) 인천북항 ····· 1135
(25) 인천신항 ····· 1139
(26) 목포신항 ····· 1142
(27) 포항영일만신항 ····· 1145
(28)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 1148
(29) 새만금신항 ····· 1151
(30) 부산항 ····· 1155
(31) 인천항 ····· 1158
(32) 인천남항 ····· 1161
(33) 목포항 ····· 1165
(34) 목포북항 ····· 1168
(35) 군장항(2단계) ····· 1171
(36)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 1174
(37) 일반항 ····· 1176
(38) 광양(여천)항 ····· 1180
(39) 울릉(사동)항 ····· 1183
(40) 마산항 ····· 1186
(41) 경인항 ····· 1189
(42) 여수신북항 ····· 1191
(43)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총액) ····· 1194
(44) 항만시설 유지보수(총액) ····· 1197
(45) 부산북항 재개발 ····· 1200
(46) 기타항만 재개발 ····· 1203
(47) 마리나 항만 ····· 1207

(48) 재해안전 항만구축 ····· 1211
(49) 태풍피해 복구(항만) ····· 1215
(50)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 ····· 1217
(51) 해상교통 안전시스템 운영 ····· 1219
(52) 여객터미널 운영 ····· 1221
(53) 항만보안시설 확충 ····· 1223
(54)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 ····· 1225
(55) 물류기업 유치지원 ····· 1229
(56)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 1231
(57) 울산신항 ····· 1234
(58) 동해신항 ····· 1239
(59) 표지시설 ····· 1242
(60) 표지시설(측위원) ····· 1245

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1247

1. 총 괄 ····· 1249

2. 세 입 ····· 1251
(1) 기타재산이자수입 ····· 1251
(1)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1253
(2) 기타경상이전수입 ····· 1255

3. 세 출 ····· 1257
(1) 친환경 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 1257
(2) 친환경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 ····· 1264
(3)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 1267

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269

1. 총 괄 ····· 1271

2. 세 입 ····· 1276
(1) 기타재산이자수입 ····· 1276
(2) 기타경상이전수입 ····· 1278
(3) 기타재산이자수입 ····· 1280
(4) 기타경상이전수입 ····· 1282
(5) 기타경상이전수입 ····· 1284

3. 세 출 ····· 1286
(1)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1286
(2)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 ····· 1289
(3) 산지 유통시설 지원 ····· 1291
(4) 수산어업 행정지원 ····· 1293
(5)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 1296
(6) 국가어항(제주) ····· 1299
(7) 제주항 ····· 1302
(8) 화순항 ····· 1305
(9) 추자항 ····· 1308
(10) 제주일반항건설 ····· 1311
(11)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 1315
(12) 제주해양항만 운영지원 ····· 1318

Ⅶ. 수산발전기금 ····· 1321

1. 총 괄 ····· 1323

2. 수 입 ····· 1333
(1) 기타민간이자수입 ····· 1333
(2) 기타재산이자수입 ····· 1335
(3) 위약금 ····· 1337
(4) 가산금 ····· 1339
(5)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1340
(6)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1341
(7) 수산물 공매납입금 ····· 1342
(8)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 1343
(9) 기타경상이전수입 ····· 1344
(10) 면허료 및 수수료(공유수면 점사용료) ····· 1345
(11) 재고자산매각대 ····· 1346
(12)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347
(1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348
(14) 기금예탁이자수입 ····· 1349
(15) 기금예탁원금회수 ····· 1350

3. 지 출 ····· 1351
(1)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1351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1354
(3)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1357
(4)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융자) ····· 1361
(5) 우수수산물 지원(융자) ····· 1363
(6) 수산물자조금 지원 ····· 1365
(7) 수산물 수매지원(융자) ····· 1367

(8) 비축사업 ····· 1370
(9) 수산물 유통정보조사 ····· 1373
(10)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융자) ····· 1375
(11)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지원 ····· 1378
(12)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 1380
(13)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융자) ····· 1383
(14) 양식어업 지원(융자) ····· 1386
(15) 수산장비구입 지원(융자) ····· 1388
(16)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1390
(17) 수산모태펀드 출자 ····· 1392
(18) 피해보전 직불금 ····· 1395
(19)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 1397
(20) 원양어선 안전관리 ····· 1400
(21) 인건비(수발기금) ····· 1403
(22) 기타경비(수발기금) ····· 1406
(23)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징수비용 ····· 1409
(24) 기금연구용역비 ····· 1411
(25) 수산물공매납입금부과징수비용 ····· 1413
(2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 1416
(27) 비통화금융기관예치(수산발전기금) ····· 1418

총 괄 표

Ⅰ. 총괄표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표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세입	48,855	47,662	47,662	49,092		1,430	3.0
세출	3,027,519	3,438,440	3,445,294	3,737,654		299,214	8.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세입(계정합)	49,555	27,912	27,912	28,749		837	3.0
구조개선 사업계정	45,387	21,596	21,596	22,243		647	3.0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4,168	6,316	6,316	6,506		190	3.0
세출(계정합)	1,468,407	1,710,689	1,746,208	1,812,708		61,287	3.6
구조개선 사업계정	648,071	635,852	662,082	734,576		98,724	15.5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820,336	1,074,837	1,084,126	1,078,132		3,295	0.3

□ 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세입	1,646,314	1,704,097	1,704,097	1,644,995		△59,102	3.5
세출	1,408,673	1,704,097	1,704,097	1,644,995		△59,102	3.5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세입	1,038	3,841	3,841	3,842		1	0.0
세출	57,484	119,940	119,940	107,485		△12,455	△10.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세입(계정합)	8,845	10,069	10,069	14,505		4436	44.1
지역자율계정	7,988	4,514	4,514	7,041		2,527	56.0
지역지원계정	792	3,822	3,822	2,983		839	△22.0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65	1,733	1,733	4,481		2,748	158.6
세출(계정합)	142,052	304,816	304,816	135,771		△170,145	△55.8
지역자율계정	48,735	209,972	209,972	53,706		△156,266	△74.4
지역지원계정	45,054	39,309	39,309	28,001		△12,408	△31.6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48,263	55,535	55,535	54,064		△1,471	△2.6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20결산	2021계획		2022예산		증감	
		당초(A)	수정	확정(B)	수정	B-A	%
수산발전기금	760,511	1,024,915	1,024,915	926,722		△98,193	△9.6

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상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일반회계 : 총 31개 신규 세부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본예산	추경		
[1031]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307]해양정원 조성사업	3,585		해양생태과	최정원 사무관 (044-200-5313)
[2033]해양지형조사 및 정보제공	[312]수요자 맞춤형 해양관측·진단·예측 체계 고도화	500		해양개발과	한정수 사무관 (044-200-5248)
[2041]해양자원이용 기술개발(R&D)	[306]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R&D)	3,120		해양개발과	황진실 사무관 (044-200-5244)
[2042]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R&D)	[318]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R&D)	3,333		해양개발과	한정수 사무관 (044-200-5248)
[2042]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R&D)	[325]차세대쇄빙연구선건조사업(R&D)	3,350		해양개발과	김지현 사무관 (044-200-6182)
[2042]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R&D)	[326]천리안 2B호 산출물 정확도 향상 연구(R&D)	3,366		국립해양조사원	이성기 사무관 (051-400-4410)
[2043]극지및대양 과학연구(R&D)	[309]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R&D)	2,885		해양개발과	이호근 사무관 (044-200-5664)
[2043]극지및대양 과학연구(R&D)	[312]북서태평양 온난화 및 태풍 발생 연구(R&D)	2,644		해양개발과	이호근 사무관 (044-200-5664)
[2043]극지및대양 과학연구(R&D)	[313]기후변화에 따른해양생태계 반응·변화연구(R&D)	2,625		해양생태과	이재호 사무관 (044-200-5318)
[2044]해양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R&D)	[311]해양바이오 산업소재국산화기술 개발(R&D)	4,253		해양수산생명 자원과	고은비 사무관 (044-200-5673)
[2044]해양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R&D)	[312]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소재화기술 개발(R&D)	5,000		해양수산생명 자원과	고은비 사무관 (044-200-5673)
[2044]해양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R&D)	[406] 해양수산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R&D)	500		해양수산생명 자원과	임상욱 연구관 (044-200-5675)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본예산	추경		
[2045]해양기술역량 강화(R&D)	[305]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사업(R&D)	2,000		해양개발과	황진실 사무관 (044-200-5244)
[2045]해양기술역량 강화(R&D)	[306]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	4,875		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	양동곤 사무관 (044-200-6225)
[2046]해양수산산업 진흥(R&D)	[308]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	2,000		해양레저 관광과	정정민 사무관 (044-200-5275)
[2046]해양수산산업 진흥(R&D)	[309]머신러닝기반 해저면특성분류 기술개발(R&D)	2,325		국립해양조사원	황창수 사무관 (051-400-4250)
[2046]해양수산산업 진흥(R&D)	[312]해양기후변화 진단및장기전망 연구(R&D)	2,429		해양환경 정책과	안진우 사무관 (044-200-5285)
[2046]해양수산산업 진흥(R&D)	[313]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및 활용 기술개발(R&D)	2,405		해양레저 관광과	최영인 서기관 (044-200-5251)
[2046]해양수산산업 진흥(R&D)	[314]친환경선박 전주기혁신기술 개발(R&D)	6,833		해사산업 기술과	서지만 사무관 (044-200-5838)
[2046]해양수산산업 진흥(R&D)	[317]내항선박 연료 전환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R&D)	4,354		해양개발과	황진실 사무관 (044-200-5244)
				연안해운과	김영주 사무관 (044-200-5731)
[2046]해양수산산업 진흥(R&D)	[318]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R&D)	2,352		해사산업 기술과	서지만 사무관 (044-200-5838)
[4132]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310]해양미세 플라스틱오염대응 및관리기술개발 (R&D)	7,308		해양보전과	신영락 사무관 (044-200-5303)
[4132]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311]해양유해물질 오염원추적기법 개발(R&D)	3,846		해양보전과	김기남 사무관 (044-200-5307)
[4132]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312]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R&D)	3,249		해양공간 정책과	박효성 사무관 (044-200-5297)
				국립해양조사원	장민철 사무관 (051-400-4120)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본예산	추경		
[4132]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313]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R&D)	1,837		해양보전과	신영락 사무관 (044-200-5303)
[4132]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313]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 활용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	1,050		수산자원 정책과	윤기준 사무관 (044-200-5536)
[4140]해양수산R&D 역량강화(R&D)	[303]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R&D)	16,721		해양수산과학 기술정책과	안장현 사무관 (044-200-6221)
[4149]항만물류기술 개발(R&D)	[305]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운송 시스템 개발 및 실증(R&D)	2,163		스마트해상 물류추진단	이세훈 사무관 (044-200-6202)
[4151]해양안전기술 개발(R&D)	[306]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R&D)	3,366		해사산업 기술과	서지만 사무관 (044-200-5838)
[4253]항만물류 정보화(정보화)	[527]수출입물류 데이터공유플랫폼 운영(정보화)	993		항만기술 안전과	김용집 사무관 (044-200-5957)
[6133]해운물류지원	[353]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3,140		항만운영과	장기봉 사무관 (044-200-577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총 6개 신규 세부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본예산	추경		
[3043]수산물가격 안정	[301]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59		어촌양식 정책과	장용호 사무관 (044-200-5614)
[3145]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03]어선청년임대	450		어선안전 정책과	김도한 사무관 (044-200-5551)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본예산	추경		
[3433]수산연구개발	[324]수산식품산업 맞춤형기술개발 (R&D)	4,609		수출가공 진흥과	강희정 서기관 (044-200-5481)
[3433]수산연구개발	[325]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기술 개발(R&D)	1,920		양식산업과	장용호 사무관 (044-200-5633)
[3433]수산연구개발	[326]유수식디지털 양식혁신기술개발 (R&D)	5,000		양식산업과	장용호 사무관 (044-200-5633)
[3433]수산연구개발	[327]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 기술개발사업 (해수부)(R&D)	2,404		수산정책과	신동호 서기관 (044-200-5425)

<교통시설 특별회계 : 총 6개 신규 세부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본예산	추경		
[4143]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	[311]해운-항만-운송 기업간물류연계 최적화서비스개발 (R&D)	1,200		스마트해상 물류추진단	김창묵 사무관 (044-200-6201)
[4143]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	[314]항만 내 환적화물 자동운송 시스템 (무인트램) 개발(R&D)	2,475		항만물류 기획과	박재민 사무관 (044-200-5766)
[4143]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	[315]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 모듈 개발(R&D)	3,846		항만개발과	추윤식 사무관 (044-200-5933)
[4163]해양안전기술 개발(R&D)	[309]한국형위성 항법시스템(KPS) 개발사업(R&D)	16,343		항로표지과	채종국 사무관 (044-200-5880)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본예산	추경		
[4163]해양안전기술 개발(R&D)	[312]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R&D)	1,937		스마트해상 물류추진단	김창묵 사무관 (044-200-6201)
[5056]포항영일만 신항 개발	[302]포항영일만 신항(1단계)	100		항만개발과	우봉출 서기관 (044-200-5935)

일 반 회 계

Ⅱ. 일반회계

1. 총 괄

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계	**48,855**	**47,662**	**47,662**	**49,092**		**1,430**	**3.0**
51 관유물 대여료	**2,237**	**5,280**	**5,280**	**5,438**		**158**	**3.0**
토지대여료 (51-511)	2,118	5,068	5,068	5,220		152	3.0
건물대여료 (51-512)	118	181	181	186		5	2.8
기타관유물 대여료 (51-513)	1	31	31	32		1	3.2
52 정부출자 수입	**180**	**-**	**-**	**-**		**-**	**-**
정부출자 수입 (52-521)	180	-	-	-		-	-
54 기타이자 수입및재산 수입	**8,491**	**2,096**	**2,096**	**2,159**		**63**	**3.0**
기타재산 수입 (54-545)	8,491	2,096	2,096	-		△2,096	순감
기타재산 이자수입 (54-546)	-	-	-	1,511		1,511	순증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54-547)	-	-	-	648		648	순증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07**	**183**	**183**	**188**		**5**	**2.7**
벌금및과료 (56-561)	1	2	2	2		-	-
과태료 (56-563)	72	141	141	145		4	2.8
징계부과금 (56-564)	1	16	16	16		-	-
과징금 (56-565)	33	24	24	25		1	4.2
57 변상금 및 위약금	**233**	**889**	**889**	**914**		**25**	**2.8**
변상금 (57-571)	36	75	75	76		1	1.3
위약금 (57-572)	197	814	814	838		24	2.9
58 가산금	**51**	**26**	**26**	**27**		**1**	**3.8**
가산금 (58-581)	51	26	26	27		1	3.8
59 기타경상 이전수입	**29,929**	**29,409**	**29,409**	**30,291**		**882**	**3.0**
기타경상 이전수입 (59-596)	29,929	29,409	29,409	30,291		882	3.0
65 면허료 및 수수료	**30**	**1,216**	**1,216**	**1,253**		**37**	**3.0**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30	1,216	1,216	1,253		37	3.0
67 항공항만및 용수수입	**6,048**	**5,497**	**5,497**	**5,662**		**165**	**3.0**
항공항만 수입 (67-671)	6,048	5,497	5,497	5,662		165	3.0
68 실습수입	**36**	**118**	**118**	**122**		**4**	**3.4**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실습수입 (68-681)	36	118	118	122		4	3.4
69 잡수입	**934**	**1,024**	**1,024**	**1,055**		**31**	**3.0**
기타잡수입 (69-691)	934	1,024	1,024	1,055		31	3.0
71 고정자산 매각대	**91**	**895**	**895**	**923**		**28**	**3.1**
기계기구 매각대 (71-712)	4	7	7	8		1	14.3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71-713)	87	888	888	915		27	3.0
72 토지및무형 자산매각대	**-**	**610**	**610**	**628**		**18**	**3.0**
토지매각대 (72-721)	-	610	610	628		18	3.0
73 재고자산 매각대 및 유동자산	**7**	**185**	**185**	**191**		**6**	**3.2**
재고자산 매각대 (73-731)	7	184	184	190		6	3.3
유동자산 매각대 (73-732)	-	1	1	1		-	-
75 융자원금 회수	**481**	**234**	**234**	**241**		**7**	**3.0**
기타민간 융자원금 회수 (75-754)	481	234	234	241		7	3.0

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계	**3,027,519**	**3,438,440**	**3,445,294**	**3,737,654**		**347,460**	**10.2**
1031 해양생태계 보전및복원	**20,816**	**28,417**	**28,417**	**39,310**		**10,893**	**38.3**
해양보호구역 관리 (1031-301)	5,250	5,612	5,612	11,420		5,808	103.5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1031-303)	8,480	8,696	8,696	8,904		208	2.4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031-304)	5,251	11,108	11,108	12,817		1,709	15.4
해양공간 통합관리 (1031-305)	1,834	3,001	3,001	2,584		△417	△13.9
해양정원 조성사업 (1031-307)	-	-	-	3,585		3,585	순증
1032 해양생명자원 조사	**526**	**850**	**850**	**1,050**		**200**	**23.5**
해양생명자원 조사 (1032-301)	526	600	600	600		-	-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1032-302)	-	250	250	450		200	80.0
1033 해양환경개선 및관리	**31,137**	**27,472**	**27,472**	**31,074**		**3,602**	**13.1**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 (1033-300)	4,112	4,121	4,121	4,526		405	9.8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해양환경국제협력 (1033-302)	2,650	2,650	2,650	2,650		-	-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1033-305)	17,906	13,989	13,989	14,055		66	0.5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1033-320)	6,470	6,712	6,712	9,843		3,131	46.6
1034 연안환경관리 (일반)	**77,800**	**50,658**	**50,658**	**65,321**		**14,663**	**28.9**
연안관리 (1034-300)	13,407	3,570	3,570	4,460		890	24.9
연안정비 (1034-302)	64,394	47,088	47,088	60,861		13,773	29.2
1035 해양생물 자원관건립, 운영	**30,247**	**28,843**	**28,843**	**29,967**		**1,124**	**3.9**
해양생물 자원관운영 (1035-303)	30,247	28,843	28,843	29,967		1,124	3.9
1036 해양오염피해 복구	**21,411**	**24,613**	**24,613**	**39,234**		**14,621**	**59.4**
해양환경교육 운영 (1036-301)	3,484	4,242	4,242	3,642		△600	△14.1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지원 (1036-302)	653	648	648	2,013		1,365	210.6
침몰선박 관리사업 (1036-304)	3,724	3,724	3,724	6,680		2,956	79.4
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 (1036-305)	13,551	15,999	15,999	26,899		10,900	68.1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11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 지원	**189,271**	**209,310**	**209,310**	**214,984**		**5,67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 지원(R&D) (1110-300)	78,357	90,443	90,443	85,510		△4,933	△5.5
극지연구소 운영지원 (R&D) (1110-301)	83,168	85,183	85,183	89,444		4,261	5.0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운영지원 (R&D) (1110-302)	27,746	33,684	33,684	40,030		6,346	18.8
2031 해양문화 활성화	**70,459**	**77,763**	**77,763**	**121,111**		**43,348**	**55.7**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2031-300)	5,138	4,939	4,939	5,076		137	2.8
해양과학국제협력 (2031-307)	1,120	1,011	1,011	1,203		192	19.0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2031-308)	34,787	48,512	48,512	69,713		21,201	43.7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 조성지원 (2031-311)	894	700	700	500		△200	△28.6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지원 (2031-312)	8,520	12,601	12,601	24,619		12,018	95.4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해양모태펀드 (2031-313)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
2032 해양영토관리 기반구축	**13,606**	**13,067**	**13,067**	**12,889**		**△178**	**△1.4**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2032-300)	9,421	9,265	9,265	9,265		-	-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역량 강화 (2032-302)	1,821	1,750	1,750	1,575		△175	△10.0
해양영토관리 역량강화 (2032-311)	2,364	2,052	2,052	2,049		△3	△0.1
2033 해양지형조사 및정보제공	**97,286**	**98,709**	**98,709**	**101,348**		**2,639**	**2.7**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2033-300)	53,229	51,019	51,019	52,575		1,556	3.0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2033-304)	3,860	4,843	4,843	4,796		△47	△1.0
국가해양 관측망 구축 및 운영 (2033-307)	35,170	37,402	37,402	36,949		△453	△1.2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2033-310)	5,028	5,445	5,445	6,528		1,083	19.9
수요자 맞춤형 해양관측·진단·예측 체계 고도화 (2033-312)	-	-	-	500		500	순증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2034 해양관광육성	**30,223**	**48,088**	**48,088**	**58,802**		**10,714**	**22.3**
해양관광육성 (2034-310)	30,223	48,088	48,088	58,802		10,714	22.3
2041 해양자원이용 기술개발 (R&D)	**22,480**	**24,592**	**24,592**	**21,201**		**△3,391**	**△13.8**
해양청정 에너지기술 개발(R&D) (2041-301)	17,948	15,098	15,098	8,136		△6,962	△46.1
조류발전 청정 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 (R&D) (2041-304)	4,532	6,013	6,013	2,060		△3,953	△65.7
심해저 광물 자원 기술개발 (R&D) (2041-305)	-	3,481	3,481	7,885		4,404	126.5
해양재생 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 (R&D) (2041-306)	-	-	-	3,120		3,120	순증
2042 연구장비개발 및인프라구축 (R&D)	**50,437**	**43,082**	**43,082**	**43,515**		**433**	**1.0**
해양장비개발 및인프라구축 (R&D) (2042-300)	19,195	7,437	7,437	-		△7,437	순감
해양과학조사 및예보기술 개발(R&D) (2042-303)	25,042	13,703	13,703	11,574		△2,129	△15.5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 촉진사업(R&D) (2042-313)	6,200	8,469	8,469	7,247		△1,222	△14.4
EEZ 관심해역 해양과학탐사 기술개발 (R&D) (2042-316)	-	8,473	8,473	9,373		900	10.6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2042-317)	-	5,000	5,000	5,272		272	5.4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R&D) (2042-318)	-	-	-	3,333		3,333	순증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2042-325)	-	-	-	3,350		3,350	순증
천리안 2B호 산출물 정확도 향상 연구 (R&D) (2042-326)	-	-	-	3,366		3,366	순증
2043 극지및대양 과학연구(R&D)	**22,797**	**32,761**	**32,761**	**35,145**		**2,384**	**7.3**
극지및대양 과학연구(R&D) (2043-305)	20,297	18,623	18,623	10,174		△8,449	△45.4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R&D) (2043-306)	2,500	4,938	4,938	5,500		562	11.4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극한지개발및 탐사용협동 이동체시스템 기술개발 (해수부)(R&D) (2043-307)	-	2,500	2,500	2,713		213	8.5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사업(R&D) (2043-308)	-	6,700	6,700	8,604		1,904	28.4
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R&D) (2043-309)	-	-	-	2,885		2,885	순증
북서태평양 온난화 및 태풍 발생 연구(R&D) (2043-312)	-	-	-	2,644		2,644	순증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변화 연구 (R&D) (2043-313)	-	-	-	2,625		2,625	순증
2044 해양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 (R&D)	**23,544**	**40,354**	**40,354**	**39,454**		**△900**	**△2.2**
해양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 (R&D) (2044-300)	11,292	4,234	4,234	1,439		△2,795	△66.0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R&D) (2044-303)	8,352	9,795	9,795	8,463		△1,332	△13.6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해수부)(R&D)(2044-305)	-	9,791	9,791	9,600		△191	△2.0
빅데이터 기반 해양 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 바이오틱스 개발(R&D)(2044-308)	-	9,360	9,360	7,999		△1,361	△14.5
해양바이오 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 개발(R&D)(2044-309)	-	3,640	3,640	2,200		△1,440	△39.6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R&D)(2044-311)	-	-	-	4,253		4,253	순증
해양수산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R&D)(2044-312)	-	-	-	5,000		5,000	순증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R&D)(해수부)(2044-405)	3,900	3,534	3,534	-		△3,534	순감
해양수산 바이오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R&D)(2044-406)	-	-	-	500		500	순증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2045 해양기술역량 강화(R&D)	**12,684**	**17,813**	**17,813**	**19,385**		**1,572**	**8.8**
해양산업 수요 기술 개발사업(R&D)(2045-302)	12,684	14,060	14,060	5,535		△8,525	△60.6
해양수산 기술 창업 Scale-up 사업(R&D)(2045-304)	-	3,753	3,753	6,975		3,222	85.9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사업(R&D)(2045-305)	-	-	-	2,000		2,000	순증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R&D)(2045-306)	-	-	-	4,875		4,875	순증
2046 해양수산산업 진흥(R&D)	**21,248**	**43,568**	**43,568**	**64,172**		**20,604**	**47.3**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 구축(R&D)(2046-300)	13,748	3,887	3,887	3,089		△798	△20.5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R&D)(2046-302)	7,500	12,734	12,734	2,154		△10,580	△83.1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R&D)(2046-303)	-	7,250	7,250	-		△7,250	순감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스마트 해양조사 및 정보활용 기술개발(R&D) (2046-304)	-	7,524	7,524	7,786		262	3.5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R&D) (2046-305)	-	6,468	6,468	8,615		2,147	33.2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해수부)(R&D) (2046-306)	-	4,805	4,805	18,630		13,825	287.7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해수부)(R&D) (2046-307)	-	900	900	1,200		300	33.3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 (2046-308)	-	-	-	2,000		2,000	순증
머신러닝 기반 해저면 특성 분류 기술개발(R&D) (2046-309)	-	-	-	2,325		2,325	순증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R&D) (2046-312)	-	-	-	2,429		2,429	순증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및 활용 기술개발(R&D) (2046-313)	-	-	-	2,405		2,405	순증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개발(R&D) (2046-314)	-	-	-	6,833		6,833	순증
내항선박 연료전환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R&D) (2046-317)	-	-	-	4,354		4,354	순증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2046-318)	-	-	-	2,352		2,352	순증
304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보화	**2,526**	**2,167**	**2,167**	**1,696**		**△471**	**△21.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정보화) (3046-300)	2,526	2,167	2,167	1,696		△471	△21.7
3132 어업안전지도강화	**66,032**	**135,969**	**136,343**	**219,070**		**83,101**	**61.1**
어업협정이행 (3132-300)	3,088	3,745	3,745	13,105		9,360	249.9
어선안전조업 지원 (3132-302)	16,350	19,103	19,103	18,436		△667	△3.5
어업지도관리 (3132-303)	3,614	70,374	70,748	143,637		73,263	104.1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3132-304)	1,292	2,277	2,277	1,977		△300	△13.2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3132-305)	36,512	37,047	37,047	38,362		1,315	3.5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3132-306)	5,176	3,423	3,423	3,553		130	3.8
3133 어업지도 정보화	**609**	**184**	**184**	**192**		**8**	**4.3**
어업지도 정보화(정보화) (3133-500)	609	184	184	192		8	4.3
3431 수협경제사업 활성화	**13,098**	**12,746**	**12,746**	**4,552**		**△8,194**	**△64.3**
수협지도경제 사업활성화 (3431-301)	13,098	12,746	12,746	4,552		△8,194	△64.3
3432 수산산업창업 투자	**4,770**	**4,750**	**4,750**	**5,525**		**775**	**16.3**
수산산업창업 투자지원 (3432-300)	4,770	4,750	4,750	5,525		775	16.3
3531 국제협력협상	**2,137**	**2,948**	**2,948**	**2,497**		**△451**	**△15.3**
국제수산기구 분담금 (3531-530)	2,137	2,948	2,948	2,497		△451	△15.3
3602 국립수산 과학원인건비	**44,210**	**47,270**	**47,270**	**47,515**		**245**	**0.5**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액)국립수산 과학원인건비 (R&D) (3602-100)	44,210	47,270	47,270	47,515		245	0.5
3618 국립수산 과학원기본경비	**4,519**	**4,681**	**4,681**	**4,840**		**159**	**3.4**
(총액)국립수산 과학원기본 경비(R&D) (3618-200)	3,412	3,605	3,605	3,619		14	0.4
(총액)국립수산 과학원공익 요원경비(R&D) (3618-201)	19	34	34	34		-	-
(비총액)국립 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3618-250)	1,089	1,042	1,042	1,187		145	13.9
3631 수산연구지원	**32,041**	**30,221**	**30,221**	**31,133**		**912**	**3.0**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 (R&D) (3631-301)	31,986	30,166	30,166	31,078		912	3.0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 (R&D) (3631-302)	55	55	55	55		-	-
3632 수산과학연구	**45,180**	**52,134**	**52,134**	**50,553**		**△1,581**	**△3.0**
수산시험연구 (R&D) (3632-300)	32,553	39,899	39,899	45,848		5,949	14.9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R&D) (3632-301)	3,957	3,196	3,196	3,160		△36	△1.1
수산생물방역 체계 구축 (R&D) (3632-310)	8,669	9,039	9,039	45		△8,994	△99.5
수산생물질병 국제표준 및 원헬스 관리 체계 구축 (R&D) (3632-311)	-	-	-	1,500		1,500	순증
수산생물 예방양식연구 (R&D) (3632-312)	-	-	-	-		-	-
3634 국립수산 과학원정보화 (정보화)	**3,461**	**4,078**	**4,078**	**3,875**		**△203**	**△5.0**
국립수산 과학원정보화 (정보화,R&D) (3634-500)	3,461	4,078	4,078	3,875		△203	△5.0
4132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 (R&D)	**25,442**	**39,171**	**39,171**	**40,828**		**1,657**	**4.2**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 (R&D) (4132-300)	17,942	17,052	17,052	4,635		△12,417	△72.8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과학기술 기반 해양환경영향 평가 기술개발 (R&D) (4132-304)	-	6,912	6,912	6,540		△372	△5.4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R&D) (4132-305)	7,500	9,087	9,087	8,325		△762	△8.4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 물질 관리기술 개발(R&D) (4132-306)	-	3,000	3,000	4,038		1,038	34.6
대규모CCS 통합실증기반 구축(해수부) (R&D) (4132-308)	-	3,120	3,120	-		△3,120	순감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기술개발 (R&D) (4132-310)	-	-	-	7,308		7,308	순증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기법 개발(R&D) (4132-311)	-	-	-	3,846		3,846	순증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R&D) (4132-312)	-	-	-	3,249		3,249	순증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R&D) (4132-313)	-	-	-	1,837		1,837	순증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 활용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 (4132-315)	-	-	-	1,050		1,050	순증
4139 해양수산기술 지역특성화 (R&D)	**3,067**	**3,067**	**3,067**	**-**		**△3,067**	**순감**
해양수산기술 지역특성화 (R&D) (4139-300)	3,067	3,067	3,067	-		△3,067	순감
4140 해양수산R&D 역량강화 (R&D)	**6,607**	**8,789**	**8,789**	**24,148**		**15,359**	**174.8**
해양과학국제 연구사업(R&D) (4140-300)	2,086	2,086	2,086	-		△2,086	순감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운영지원(R&D) (4140-302)	4,521	6,703	6,703	7,427		724	10.8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 (R&D) (4140-303)	-	-	-	16,721		16,721	순증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4145 수산연구개발 (R&D)	**17,747**	**20,679**	**20,679**	**7,204**		**△13,475**	**△65.2**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R&D) (4145-300)	5,471	8,950	8,950	-		△8,950	순감
차세대 안전 복지형 어선 개발(R&D) (4145-301)	6,501	5,689	5,689	-		△5,689	순감
수산전문인력 양성(R&D) (4145-303)	5,775	6,040	6,040	7,204		1,164	19.3
4148 정책연구개발 (R&D)	**957**	**886**	**886**	**930**		**44**	**5.0**
정책연구개발 사업(R&D) (4148-301)	957	886	886	930		44	5.0
4149 항만물류기술 개발(R&D)	**13,373**	**25,136**	**25,136**	**21,970**		**△3,166**	**△12.6**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R&D) (4149-301)	7,523	11,286	11,286	7,136		△4,150	△36.8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R&D) (4149-304)	5,850	13,850	13,850	12,671		△1,179	△8.5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운송 시스템 개발 및 실증(R&D) (4149-305)	-	-	-	2,163		2,163	순증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4151 해양안전기술 개발(R&D)	**23,672**	**14,629**	**14,629**	**8,127**		**△6,502**	**△44.4**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 개발(R&D) (4151-301)	12,672	6,113	6,113	-		△6,113	순감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R&D) (4151-303)	11,000	8,516	8,516	4,761		△3,755	△44.1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R&D) (4151-306)	-	-	-	3,366		3,366	순증
4241 항만건설사업 정보화(정보화)	**1,234**	**921**	**921**	**900**		**△21**	**△2.3**
항만지하시설 물정보구축 (정보화) (4241-500)	825	498	498	387		△111	△22.3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정보화) (4241-512)	409	423	423	513		90	21.3
4249 해양수산행정 정보화(정보화)	**8,408**	**5,884**	**5,884**	**6,163**		**279**	**4.7**
해양수산 행정정보 시스템구축 (정보화) (4249-521)	3,362	2,349	2,349	2,359		10	0.4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사이버안전 센타구축 및 운영(정보화) (4249-525)	5,046	3,535	3,535	3,804		269	7.6
4253 항만물류 정보화(정보화)	**3,742**	**4,776**	**4,776**	**7,202**		**2,426**	**50.8**
항만물류정보 (정보화) (4253-526)	3,742	4,776	4,776	6,209		1,433	30.0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 운영(정보화) (4253-527)	-	-	-	993		993	순증
4273 해양환경정보 (정보화)	**861**	**896**	**896**	**916**		**20**	**2.2**
해양환경정보 (정보화) (4273-500)	861	896	896	916		20	2.2
4275 항행안전정보 (정보화)	**3,295**	**16,208**	**16,208**	**31,822**		**15,614**	**96.3**
항행안전정보 (정보화) (4275-500)	836	861	861	853		△8	△0.9
지능형해양 수산재난정보 체계운영 (정보화) (4275-503)	2,458	1,724	1,724	1,724		0	0.0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정보 (정보화) (4275-504)	-	13,623	13,623	29,245		15,622	114.7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4276 해양심판정보 (정보화)	**157**	**308**	**308**	**308**		**-**	**-**
해양심판정보 (정보화) (4276-500)	157	308	308	308		-	-
4277 해양조사정보 (정보화)	**2,845**	**2,838**	**2,838**	**2,605**		**△233**	**△8.2**
해양조사정보 (정보화) (4277-500)	2,845	2,838	2,838	2,605		△233	△8.2
4278 연안관리정보 구축(정보화)	**428**	**398**	**398**	**893**		**495**	**124.4**
연안관리정보 구축(정보화) (4278-500)	428	398	398	893		495	124.4
4280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4,623**	**2,412**	**2,412**	**2,412**		**-**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4280-500)	4,623	2,412	2,412	2,412		-	-
5067 항만유류오염 관리시설지원	**14,567**	**14,558**	**14,558**	**32,902**		**18,344**	**126.0**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 수거 처리 (5067-300)	14,567	13,658	13,658	14,902		1,244	9.1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5067-301)	-	900	900	18,000		17,100	1,900.0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5069 해양산업 클러스터운영	**1,344**	**400**	**400**	**300**		**△100**	**△25.0**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원 (5069-300)	1,344	400	400	300		△100	△25.0
6131 선원근로복지 향상	**12,095**	**8,499**	**8,499**	**8,231**		**△268**	**△3.2**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6131-301)	6,199	6,343	6,343	6,617		274	4.3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6131-305)	4,237	750	750	1,150		400	53.3
선원복지회관 건립 (6131-309)	1,094	1,000	1,000	-		△1,000	순감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6131-310)	564	406	406	464		58	14.3
6132 해운인력양성 지원	**61,518**	**53,327**	**53,327**	**54,459**		**1,132**	**2.1**
해사고등학교 지원 (6132-300)	5,397	9,006	9,006	12,830		3,824	42.5
해양수산 연수원 지원 (6132-302)	56,121	43,821	43,821	41,129		△2,692	△6.1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6132-303)	-	500	500	500		-	-
6133 해운물류지원	**103,480**	**134,528**	**134,528**	**113,761**		**△20,767**	**△15.4**
관공선건조 및 운영 (6133-300)	13,557	19,689	19,689	30,439		10,750	54.6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전환교통지원 (6133-302)	3,000	3,000	3,000	2,700		△300	△10.0
국가필수선대 제도 운영 (6133-303)	5,669	5,769	5,769	5,669		△100	△1.7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6133-307)	65,374	55,380	55,380	21,860		△33,520	△60.5
해운물류전문 인력양성지원 (6133-308)	4,983	5,083	5,083	4,866		△217	△4.3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6133-310)	818	1,030	1,030	840		△190	△18.4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축 지원 (6133-314)	1,908	1,140	1,140	2,167		1,027	90.1
한국해양진흥 공사출자 (6133-327)	-	30,000	30,000	30,000		0	0.0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6133-328)	6,109	9,467	9,467	8,730		△737	△7.8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6133-333)	1,858	2,000	2,000	1,500		△500	△25.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6133-334)	205	300	300	300		0	0.0
스마트항만 전문인력양성 지원 (6133-335)	-	320	320	320		0	0.0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지원 (6133-343)	-	1,350	1,350	1,230		△120	△8.9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6133-353)	-	-	-	3,140		3,140	순증
6134 도서지역해상 교통지원(일반)	**37,114**	**40,236**	**45,236**	**39,247**		**△989**	**△2.5**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6134-300)	15,887	16,129	21,129	20,631		4,502	27.9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지자체) (6134-301)	14,595	14,595	14,595	14,640		45	0.3
국고여객선 건조 (6134-302)	3,610	6,600	6,600	1,620		△4,980	△75.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6134-304)	1,900	1,900	1,900	1,800		△100	△5.3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6134-307)	1,122	1,012	1,012	556		△456	△45.1
6332 해양안전관리 시스템구축·운영(일반)	**77,594**	**81,532**	**83,012**	**87,966**		**6,434**	**7.9**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지원 (6332-300)	31,353	34,090	34,090	40,160		6,070	17.8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해상안전 국제협력 (6332-301)	5,638	5,855	5,855	6,355		500	8.5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6332-302)	14,280	15,787	17,267	8,432		△7,355	△46.6
선박배출 오염예방 (6332-303)	2,597	920	920	630		△290	△31.5
선박운송안전 확보 (6332-305)	1,937	1,918	1,918	2,022		104	5.4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6332-307)	1,200	1,300	1,300	1,535		235	18.1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 (6332-308)	11,497	4,130	4,130	3,723		△407	△9.9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6332-314)	8,895	12,602	12,602	17,179		4,577	36.3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6332-315)	197	4,930	4,930	7,930		3,000	60.9
6531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경비	**1,436**	**1,932**	**1,932**	**1,849**		**△83**	**△4.3**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 운영 (6531-300)	1,341	1,837	1,837	1,754		△83	△4.5
해양수산인재개발원수입 대체경비 (6531-303)	95	95	95	95		-	-
653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	**446**	**494**	**494**	**594**		**100**	**20.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 (정보화) (6532-300)	446	494	494	594		100	20.2
6541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인건비	**1,730**	**1,849**	**1,849**	**1,859**		**10**	**0.5**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건비(총액) (6541-100)	1,730	1,849	1,849	1,859		10	0.5
6542 해양수산인재개발원기본경비	**491**	**593**	**593**	**620**		**27**	**4.6**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경비(총액) (6542-200)	406	500	500	484		△16	△3.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경비(비총액) (6542-250)	85	93	93	136		43	46.2
7001 본부인건비	**42,512**	**45,200**	**45,200**	**46,391**		**1,191**	**2.6**
본부인건비 (7001-101)	42,512	45,200	45,200	46,391		1,191	2.6
7002 소속기관 인건비	**139,242**	**155,453**	**155,453**	**153,323**		**△2,130**	**△1.4**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총액) (7002-103)	109,478	122,132	122,132	120,528		△1,604	△1.3
국립해양조사원 등 인건비 (7002-106)	20,323	23,310	23,310	22,776		△534	△2.3
해사고등학교 인건비(총액) (7002-107)	9,441	10,011	10,011	10,019		8	0.1
7011 본부기본경비	**5,337**	**6,818**	**6,818**	**6,904**		**86**	**1.3**
본부 기본경비(총액) (7011-201)	1,709	2,111	2,111	2,389		278	13.2
본부 기본경비 (비총액) (7011-251)	3,628	4,707	4,707	4,515		△192	△4.1
7018 소속기관기본경비	**6,679**	**6,991**	**6,991**	**7,055**		**64**	**0.9**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총액) (7018-214)	676	670	670	672		2	0.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8-215)	315	294	294	301		7	2.4
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 (총액) (7018-216)	15	14	14	14		-	-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 (총액) (7018-217)	265	283	283	289		6	2.1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 (총액) (7018-218)	329	324	324	357		33	10.2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비총액) (7018-262)	1,847	2,070	2,070	2,096		26	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본경비(비총액) (7018-263)	408	511	511	535		24	4.7
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 (비총액) (7018-264)	-	1	1	1		-	-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7018-265)	1,514	1,522	1,522	1,507		△15	△1.0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7018-266)	1,310	1,302	1,302	1,283		△19	△1.5
7024 지방청등 기본경비	**13,375**	**13,173**	**13,173**	**13,439**		**266**	**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09)	518	432	432	492		60	13.9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0)	374	344	344	346		2	0.6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1)	244	239	239	300		61	25.5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2)	312	279	279	279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3)	340	227	227	227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4)	290	228	228	229		1	0.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5)	414	382	382	405		23	6.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6)	326	231	231	257		26	11.3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7)	192	157	157	157		-	-
지방해양수산청 공익요원경비(총액) (7024-218)	352	486	486	486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9)	342	352	352	356		4	1.1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20)	142	148	148	148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57)	1,857	1,934	1,934	1,988		54	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58)	1,059	1,089	1,089	1,080		△9	△0.8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59)	483	500	500	485		△15	△3.0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0)	860	853	853	855		2	0.2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1)	707	722	722	775		53	7.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2)	685	654	654	647		△7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3)	802	803	803	778		△25	△3.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4)	664	700	700	691		△9	△1.3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5)	749	732	732	787		55	7.5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지방해양수산청 공익요원경비(비총액) (7024-266)	28	14	14	14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7)	1,026	975	975	985		10	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8)	611	692	692	672		△20	△2.9
7034 전산운영경비	**2,403**	**5,888**	**5,888**	**5,725**		**△163**	**△2.8**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034-301)	2,403	5,888	5,888	5,725		△163	△2.8
7036 해양수산정책지원	**1,847**	**1,810**	**1,810**	**1,810**		**-**	**-**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7036-304)	1,643	1,620	1,620	1,620		-	-
제도개선 및 갈등관리 (7036-306)	204	190	190	190		-	-
7040 행정능률향상 및능력개발	**559**	**601**	**601**	**601**		**-**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040-300)	559	601	601	601		-	-
7041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5,532**	**5,624**	**5,624**	**5,632**		**8**	**0.1**
청사시설관리 (7041-300)	5,532	5,624	5,624	5,632		8	0.1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7101 본부인건비	**12,930**	**13,773**	**13,773**	**12,584**		**△1,189**	**△8.6**
(총액)인건비 (7101-100)	12,930	13,773	13,773	12,584		△1,189	△8.6
7102 소속기관 인건비	**74,545**	**79,988**	**79,988**	**83,033**		**3,045**	**3.8**
(총액)동해어업관리단인건비 (7102-132)	22,544	24,170	24,170	23,987		△183	△0.8
(총액)서해어업관리단인건비 (7102-133)	20,566	22,105	22,105	22,214		109	0.5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 (7102-134)	13,313	14,161	14,161	17,072		2,911	20.6
(총액)남해어업관리단인건비 (7102-135)	18,121	19,552	19,552	19,760		208	1.1
7111 본부기본경비	**2,269**	**2,852**	**2,852**	**2,835**		**△17**	**△0.6**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7111-200)	663	755	755	850		95	12.6
(비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7111-250)	1,606	2,097	2,097	1,985		△112	△5.3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6,162**	**6,399**	**6,399**	**7,040**		**641**	**10.0**
(총액)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36)	425	484	484	486		2	0.4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39)	343	369	369	371		2	0.5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7118-241)	9	14	14	14		-	-
(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42)	340	350	350	375		25	7.1
(비총액)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86)	1,369	1,381	1,381	1,391		10	0.7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89)	1,101	1,104	1,104	1,215		111	10.1
(비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90)	1,092	1,132	1,132	1,651		519	45.8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7118-291)	1	2	2	2		-	-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본경비 (7118-301)	290	321	321	330		9	2.8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익요원경비 (7118-303)	25	39	39	39		-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본경비 (7118-307)	1,159	1,185	1,185	1,148		△37	△3.1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익요원경비 (7118-309)	9	18	18	18		-	-
7133 행정지원	**585**	**2,239**	**2,239**	**2,239**		**-**	**-**
행정운영 (7133-304)	585	760	760	760		-	-
공공기관 혁신제품 시범구매 (7133-305)	-	1,479	1,479	1,479		-	-
7301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인건비	**3,212**	**3,696**	**3,696**	**3,476**		**△220**	**△6.0**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건비(총액) (7301-100)	3,212	3,696	3,696	3,476		△220	△6.0
7311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	**755**	**724**	**724**	**710**		**△14**	**△1.9**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총액) (7311-200)	723	687	687	674		△13	△1.9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총액) (7311-201)	18	22	22	22		-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 (비총액) (7311-250)	13	13	13	12		△1	△7.7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 (비총액) (7311-251)	2	2	2	2		-	-
8010 회계간전출 (일반회계)	**1,326,745**	**1,495,157**	**1,495,157**	**1,577,231**		**82,074**	**5.5**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전출 (8010-800)	1,326,745	1,495,157	1,495,157	1,577,231		82,074	5.5

2. 수 입

(1) 토지대여료
11- 51 - 5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토지대여료	2,118	5,068	5,068	5,220		152	3.0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 대여에 따른 대여료 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납기일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5,239	2,159	2,118	2,151

(2) 건물대여료

11 - 51 - 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건물대여료	176	181	181	186		5	2.8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 대여에 따른 대여료 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납기일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44	150	118	115

(3) 기타관유물대여료

11 - 51 - 51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기타관유물 대여료	1	31	31	32		1	3.2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 대여에 따른 대여료 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납기일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	2	1	1

(4) 기타재산이자수입(신규)

11 - 54 - 54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	-	-	1,511		1,511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계산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하고, 수입금으로의 납부기한은 각각 매 회계연도 5월 15일 및 11월 15일로 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5) 기타재산이자외수입(신규)

11 - 54 - 547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재산이자 외수입	-	-	-	648		648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계산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하고, 수입금으로의 납부기한은 각각 매 회계연도 5월 15일 및 11월 15일로 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6) 벌금및과료

12 - 56 - 56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벌금및과료	1	2	2	2		0	0

1. 법적 근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해운법, 선원법, 선원선박법,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2. 수입 개요

○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료
(부과기준)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	-	1	-

(7) 과태료

12 - 56 - 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과태료	72	141	141	145		4	2.8

1. 법적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5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박안전법 제89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수입 개요

○ 선박의 입출항시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징수
(부과기준)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5	99	72	62

(8) 징계부과금

12 - 56 - 564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징계부과금	1	16	16	16		0	0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등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징계 사유가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부가금을 부과
(부과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납부기한)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3	9	1	2

(9) 과징금

12 - 56 - 56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과징금	33	24	24	25		1	4.2

1. 법적 근거

○ 해운법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운법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부과기준) 해운법 제19조
(납부기한) 해운법 제19조(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2	26	33	37

(10) 변상금

12 - 57 - 57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변상금	36	75	75	76		1	1.3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징수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72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72조(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2	43	36	6

(11) 위약금

12 - 57 - 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위약금	197	814	814	838		24	2.9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게 납부해야 할 지체상금 등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72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72조(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366	171	197	262

(12) 가산금

12 - 58 - 58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가산금	51	26	26	27		1	3.8

1.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수입 개요

○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가산금 부과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0	24	51	19

(12) 기타경상이전수입

12 - 59 - 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30,110	29,409	29,409	30,291		882	3.0

1. 법적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46,551	19,341	30,110	67,747

(14) 면허료 및 수수료

13 - 65 - 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면허료 및 수수료	28	1,209	1,209	1,245		36	30.0

1. 법적 근거

○ 선박법 제30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선박 총톤수 측정 및 항만국 통제 결함·확인·점검수수료
○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부과기준) 선박법 제3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6	61	28	12

(15) 항공항만수입

13 - 67 - 67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공항만수입	6,048	5,497	5,497	5,662		165	3.0

1. 법적 근거

○ 항만법 제32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 : 접안료, 정박료,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화물장치료, 수역점용료, 국제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부과기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표 1
(납부기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840	5,896	6,048	3,902

(16) 실습수입

13 - 68 - 68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실습수입	36	118	118	122		4	3.4

1. 법적 근거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7조① 수산과학연구사업 중 정기적인 시험·조사(자원, 환경 및 위생 조사 등)로부터 얻어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raw data를 포함한다)는 엑셀파일 등의 방법으로 정보화하여 연구사업 관리시스템(전자연구노트)에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하다고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과학원훈령, 이하 "정보화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상의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료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을 완료한 후에는 활용 가치에 따라 보존, 매각 또는 폐기처분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사업 결과에 따른 부산물 매각대금
(부과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납부기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6	152	36	11

(17) 기타잡수입

13 - 69 -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기타잡수입	453	687	687	708		21	3.1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정부간행물 판매대금, 불필요한 서류 폐기후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부과기준) 물품관리법 제4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24	549	453	4,374

(18) 면허료 및 수수료

14 - 65 - 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면허료 및 수수료	2	7	7	8		1	14.3

1. 법적 근거

○ 선박법 제30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선박 총톤수 측정 및 항만국 통제 결함·확인·점검수수료

○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부과기준) 선박법 제3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	19	2	-

(19) 기타잡수입

14 - 69 - 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잡수입	481	337	337	347		10	3.0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유료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및 숙박비 수입 등
(부과기준) 공무원교육법 제16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69	168	481	335

(20) 기계기구매각대

15 - 71 - 7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개기구 매각대	4	7	7	347		1	14.3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인 완성재 매각 수입
(부과기준) 물품관리법 제4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1	-	4	-

(21)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5 - 71 - 7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87	888	888	915		27	3.0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인 완성재 매각 수입
(부과기준) 물품관리법 제4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7,810	1,088	426	127

(22) 토지매각대

15 - 72 - 72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토지매각대	-	610	610	628		18	3.0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48조 (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문화시설·공원 등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 토지매각으로 인한 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48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50조(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830	-	-	-

(23) 재고자산매각대

15 - 73 - 73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재고자산 매각대	7	184	184	190		6	3.3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48조 (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문화시설·공원 등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 토지매각으로 인한 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48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50조(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42	4	7	9

(24) 유동자산매각대

15 - 73 - 73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유동자산 매각대	-	1	1	1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등

2. 수입 개요

○ 유동자산의 매각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44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43조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2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0 - 75 - 754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민간금융 자원금회수	481	234	234	241		7	3.0

1. 법적 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에 따라 고지된 납입기한(납입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부과기준)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
(납부기한) 국가채권 관리법 제26조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87	230	481	433

사 업 명
(1) 해양보호구역 관리 (1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070	075
명칭			해양환경정책관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70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보호구역 관리	5,250	5,612	5,612	11,420	-	5,808	103.5

4. 사업목적

- **(자율형 관리체계 구축)** 동 내역사업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관리계획 이행평가, 시민모니터링, 람사르 습지도시를 지원하는 것임
- **(인식증진)** 동 내역사업은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과 가치 증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증진을 지원하는 것임
- **(대외협력)** 동 내역사업은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람사르협약 등 국제회의 안건 분석 및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임
- (**해양보호구역(지자체)**) 동 내역사업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의 지역주민 교육·홍보강화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은 연안지자체의 인식증진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 제9조(협약의 이행),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 「세계유산법」 제22조(재정지원) 및 「세계유산법 시행령」 제15조(재정지원)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9.02 :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습지보전법」 제정
- '01～'15 :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24개소)
- '06～'15 : 해양보호구역 지역 자율관리 지원사업 추진(시민모니터링 등)
  * 무안, 순천, 보성, 대이작도, 부안, 고창, 서천, 신두리, 마산
- '06～'14 : 국제 람사르습지 등록(6개소)
  * 무안, 순천·벌교, 고창·부안, 서천, 신안증도, 인천송도
- '07.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09. 3 : 한-와덴해 3국간(독일, 덴마크, 네델란드) 갯벌보전 MOU 체결
- '09. 5 :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방안 수립
- '13. 12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 '16. 3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 마련('16.4 국무회의 보고)
- '17. 5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예산 지원기준, 집행체계 개선 등)
- '18. 4 : 시민모니터링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 '18. 9 : 세계유산 등재 연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 '18.10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및 안산대부도 갯벌 람사르 습지 등록
- '20.3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신청서 제출
- '21.7 :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7.26.), 화성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지정(7.20.)
- '21.12 :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12.3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사업기간 : '03~계속

○ 사업규모 : 해양보호구역 32개소, 1,798.69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고보조) ▪ 습지보전법 제22조의2(국고보조)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45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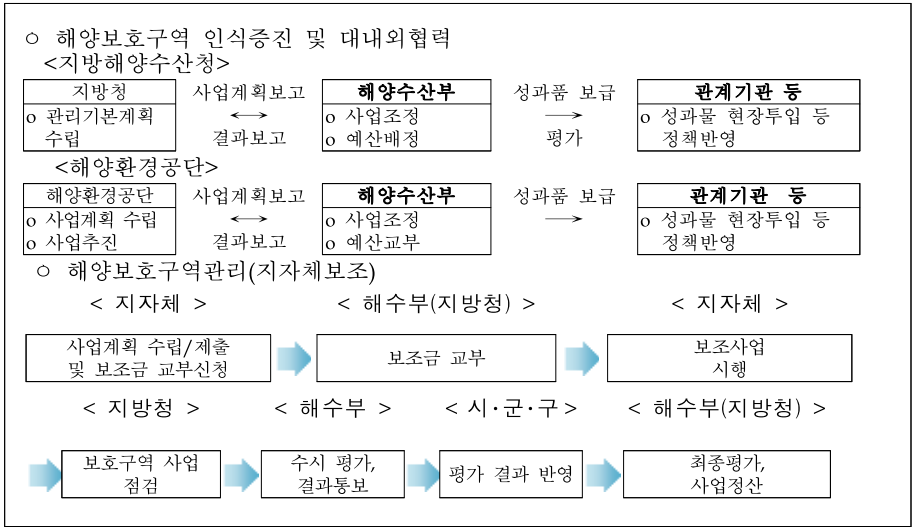

사 업 명
(2)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10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3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	8,480	8,696	8,696	8904	-	208	2.4%

4. 사업목적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오염이 심하거나 의심되는 해역에서 잔류성 오염물질 조사 및 조사방법 개발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색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위해성 심사, 오염실태 조사
- (골재채취 관련 수산자원 영향조사) 골재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해양환경관리법」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 추진경위

- '05.09 LMO법 시행령 제정시 부처별 역할 분담
- '05.12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지침 마련 및 해양생태계기본조사 10개년 계획 수립
- '06~계속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실시
- '15~계속 해양생태계종합조사 실시
- '07.0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08.12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09.12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18.4 해양공간의 관리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
- '18.12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중기('19~'23) 추진계획 수립
- '19.1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규모 : 전국 해역(갯벌 등 443,838㎢),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EEZ 골재채취 관련 수산 자원영향조사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민간대행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위수탁협약 체결 → 사업수행 → 사업결과 보고 → 정책 활용

○ (일반용역사업) 사업예산확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자 선정 → 사업수행 → 사업결과보고서 → 정책 수립 및 시행

사 업 명
(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03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070	075
명칭			해양환경정책관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4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5,251	11,108	11,108	12,817		1,709	15.4

4. 사업목적·내용

- (옹진 시모도 갯벌복원) 동 내역사업은 해수소통을 통한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옹진 시도~모도간 제방형 연도교를 대상으로 해수소통형 교량화를 지원하는 것임
- (서산 고파도 갯벌복원) 동 내역사업은 폐염전지역을 갯벌로 복원하기 위하여 고파도 폐염전 90,000㎡을 대상으로 갯벌재생을 통한 갯벌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것임
- (서천 유부도 갯벌복원) 동 내역사업은 폐염전 지역을 갯벌로 복원하기 위하여 유부도 폐염전 99,000㎡을 대상으로 갯벌재생을 통한 갯벌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것임
- (고창 곰소만 갯벌복원) 동 내역사업은 폐양식장을 갯벌로 복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고전리 폐양식장을 대상으로 갯벌재생을 통한 갯벌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것임
- (보령 무창포 갯벌복원) 동 내역사업은 해수소통을 통한 갯벌 퇴적환경 개선 및 해양생물 다양성회복을 위하여 연륙돌제를 대상으로 해수소통형 교량화를 지원하는 것임

- (순천 화포해역 갯벌복원) 동 내역사업은 순천 화포해역의 조류 소통을 방해하는 굴 집단서식지 제거(50ha)를 통한 순천만 갯벌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것임
- (갯벌관리복원계획 수립) 동 내역사업은 갯벌법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임
- (서산 웅도 갯벌복원) 동 내역사업은 제방형 연륙교로 인해 단절된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의 이상 퇴적환경을 개선하고 생물 종다양성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임.
- (신안 추포도 갯벌복원) 동 내역사업은 폐 노둣길(1,060m) 철거하고 해수소통형 교량 설치를 통해 갯벌의 이상 퇴적환경을 개선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임.
-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복원) 동 내역사업은 해수유통이 단절된 탄도만에 해수를 유통시켜 갯벌의 이상퇴적을 개선하고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임.
- (갯벌복원 신규 2개소) 동 내역사업은 갯벌복원 대상 후보지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생태계 모니터링 등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 (갯벌식생복원 신규 4개소) 동 내역사업은 갯벌 내 염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증진을 위해 갯벌식생 복원사업 신규 4개소의 설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갯벌복원 기술지침 마련) 동 내역사업은 체계적인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환경조건에 맞는 복원방법 등 유형별 기술지침 수립을 위한 것임.
- (갯벌실태조사) 동 사업내역은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갯벌의 면적 및 이용현황, 갯벌오염원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임.
- (블루카본 통계기반 구축) 우리나라 블루카본(갯벌, 염습지 등)을 이산화탄소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블루카본의 권역별·매체별 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 (갯벌 홍보·교육) 갯벌의 중요성 및 가치, 보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갯벌정책 홍보 및 교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제36조(국고보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 「습지보전법」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22조의2(국고보조)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9.3 갯벌복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09.3. 갯벌복원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대상지 선정(3개소)
- '09.6~'10.4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순천, 사천, 고창)
- '10.7. 갯벌복원 지침서 마련

- '15.5. 갯벌자원화 종합계획 마련
- '16.12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 제정
- '16.3~'16.12 갯벌생태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 '18.6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 수립
- '10~'19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19.1 갯벌법 제정 및 시행
- '20.7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20.12 2050 탄소중립 전략 발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 ~ 계속
- 사업규모 : 훼손된 갯벌생태계 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자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마을 어업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자본보조	70	갯벌법 제36조, 해양생태계법 제54조, 습지보전법 제22조의2, 보조금법 제9조
지자체 자본보조	70	갯벌법 제36조, 해양생태계법 제54조, 습지보전법 제22조의2, 보조금법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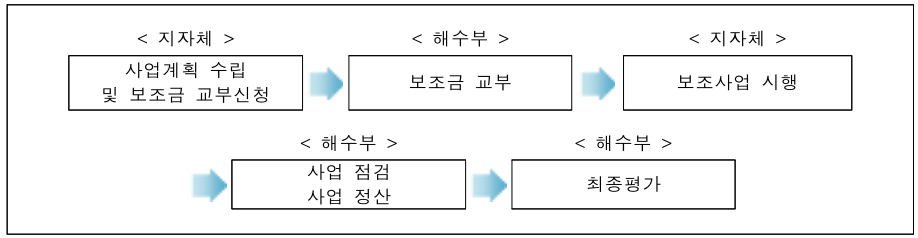

사 업 명
(4) 해양공간 통합관리 (10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5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해양공간 통합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공간 통합관리	1,834	3,001	3,001	2,584		△417	△13.9%

4. 사업목적

- (**해양공간계획**) 해역별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관리

  *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입지적정성 등을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하여 바람직한 해양공간 관리

  * (협의대상)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석유 채취계획, 광물·골재 채취계획, 항만·어항 개발계획, 수자원 개발계획,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어장 개발계획, 그밖의 해양자원 이용·개발계획

- (**해양공간모니터링**) 국토 및 지역균형 발전, 바람직한 해양공간 정책지원을 위해 해양공간 이용개발 현황 조사 진단 및 서비스

- (**해양공간통합관리 운영**) 해양공간계획의 보완·발전,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위한 간담회 및 해양공간계획의 수립·변경 등 의결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직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계획 수립('16.01)
- 전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추진 로드맵 수립('17.12)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04)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19.04)
-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19.07)
- 경기만 시범해역 해양공간계획안 마련('17.12)
- 부산·경남·남해 EEZ 일부 등 해역 해양공간계획안 마련('18.12)
- 전남·제주·울산·남해안 EEZ 해역 해양공간계획안 마련('19)
- 충남·전북·서해안 EEZ 해역 해양공간계획안 마련 중('20.3~)
- 강원·경북·동해안 EEZ 해역 해양공간계획안 마련 중('21.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계속
- 사업규모 : 우리나라 전 해역 443,838㎢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연구개발비) 사업예산확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자 선정 → 사업수행 → 사업결과 보고서 → 정책 수립 및 시행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절차 >

* 이후 (지역위원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후 고시

- (대행사업비) 사업예산확보 → 사업계획 수립 → 전문기관 공모· 지정 → 적합성 협의 위·수탁협약 체결 →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검토 → 검토결과 보고서 → 정책 수립 및 시행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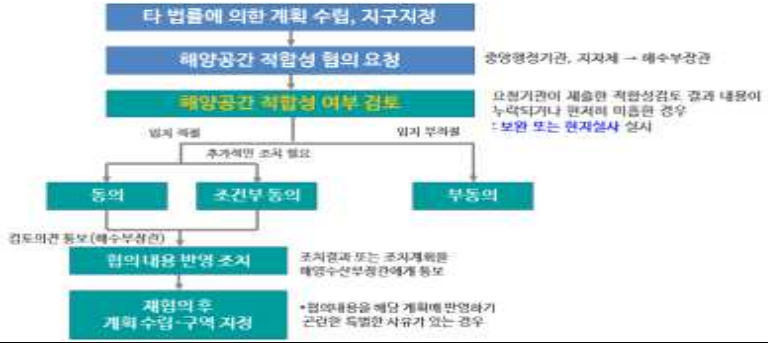

사 업 명
(5) 해양정원 조성 (103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070	075
명칭			해양환경정책관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63.5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해양정원 조성	-	-	-	3,585		3,585	순증

4. 사업목적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해양생태가치가 높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기반한 해양정원 조성으로 지역상생형 발전 선도모델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54조(국고보조), 갯벌법 제36조(국고보조)

② 추진경위

- '19.12 : 기재부 2019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20.04 : 예타조사기관 대상 예타 사업설명회 개최 및 현장실사
- ‘20.10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변경* 신청(해수부→기재부)

  * (총사업비 및 보조비율 변경) 2,448억원(국비 1,555억원(63.5%), 지방비 893억원(36.5%)
- ‘21.04 : 조세재정연구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경제성 조사(CVM) 진행
- ‘21.下 : 기재부 예타 제1,2차 점검회의(경제성, 정책성 평가) 개최
- ‘21.12 : 가로림만 해양정원 ‘22년도 국비(설계비 3,585백만원, 수시배정예산) 반영
- ‘22.上 : 사업계획 조정 및 타당성재조사 신청예정(→기재부)
- ‘22.下 : 타당성재조사 통과 및 설계착수예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448억원
- 사업기간 : ’22~’26(5년간)
- 사업규모 : 159.85㎢(해역 112.57, 육역 47.28)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충청남도)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63.5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고보조) ▪ 갯벌법 제36(국고보조)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45

7. 사업 집행절차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정산)

▶ 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사 업 명
(6) 해양생명자원조사(10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해양환경보존	해양생명자원조사	해양생명자원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생명자원조사	526	600	600	600		-	-

4. 사업목적

- (해양생명자원조사) 해양생명자원의 국가 자산화를 위해 해양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
- (국제협약 대응)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17.8) 및 국가관할권 이원영역(공해 등)에서의 생물자원 접근을 규제하는 BBNJ 협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마련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운영)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 등 자원관리에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제10조(분석·평가 등), 제3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3.12 :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 '10.10 : 나고야의정서 채택
- '12. 7 : 해양생명자원조사 법적근거 마련(해양생명자원법, '12.7 시행)
- '14. 5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제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용역 착수
- '15.12 : 2015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용역 완료
- '16.12 : 2016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용역 완료
- '17. 3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7.6 시행) 일부 개정
- '17.12 : 2017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용역 완료
- '18. 9 : BBNJ(1차)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
- '18.12 : 2018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용역 완료
- '19. 3 : BBNJ(2차)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
- '19. 4 : BBNJ(3차)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
- '19. 8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19.12 : 2019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용역 완료
- '20.12 : 2020년 해양생명자원조사, 2020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운영용역 완료
- '21.12 : 2021년 해양생명자원조사, 2021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운영용역 완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생명자원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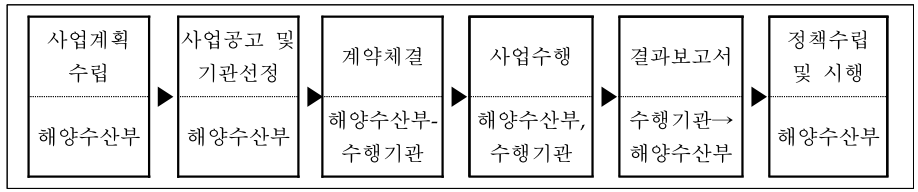

사 업 명
(7) 해양바이오산업화 지원(10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2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생명자원조사	해양바이오산업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	250	250	450		200	80

4. 사업목적

○ (해양바이오산업화 지원) 해양바이오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해양바이오 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 (해양바이오전문인력 양성) 동 내역사업은 해양바이오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것임
-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해양바이오기업의 식약처 인허가 지원을 위한 전임상 대행기관 설립으로 기업 부담 경감 및 사업화 성과창출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같은법 시행령 제20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범위)

② 추진경위

-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18.5.11)
- VIP주재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 전략 발표('19.10.10)
- 2021년 신규사업으로 해양바이오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21.1.1.)
-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전략 발표('21.1.14)
- 전문인력 양성사업 위·수탁 협약체결(해수부↔KIMST, '21.2.2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계속
- 사업규모 : 교육프로그램 운영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바이오기업, 바이오기업, 출연연, 대학, 어업인,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출연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25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사업기획 등
⇩		
② 위·수탁 협약 체결	해양수산부	사업 전담추진기관에 위탁(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③ 교육기관 공모·선정	KIMST	장비·시설을 갖춘 기관 대상으로 공모 추진
⇩		
④ 교육 실시	교육기관	재직자 대상 현장맞춤형 실무교육 실시
⇩		
⑤ 실적점검 및 성과 평가	KIMST	성과지표 달성 여부, 만족도 등 평가

사 업 명
(8)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 (10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0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개선 및 관리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시스템 구축	4,112	4,121	4,121	4,526		405	9.8

4. 사업목적

- (환경관리해역 환경개선) 특별관리해역에서 육상-연안오염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연안오염총량관리 제도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해양개발사업 등의 해양환경영향 검토를 위해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13조, 14조, 16조, 17조, 20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84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② 추진경위

- 환경관리해역 제도를 신설하여, 9개 해역을 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00)

  * 특별관리해역 5개소(마산만, 시화·인천,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환경보전해역 4개소(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제1차('01), 제2차('07), 제3차('12), 관계부처합동)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1차 08년, 제2차 '12년, 제3차 '17년)
-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추진 결정('10)
- 해수수질 기준 개정 및 해저퇴적물 기준 신설('11)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정('13)
- 부산연안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15)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16)
- 9개 환경관리해역별 연차별 이행평가 실시('16)
-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18)
- 제3차 환경관리해역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19)
- 제3차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19)
-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1~'30) 수립('21)
- 국정과제 84-5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84-6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연안해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환경관리해역 관리 및 연안오염 총량관리 연구사업

계획수립	사업공고 및 기관선정	계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정책 반영 및 환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수행기관	해양수산부, 수행기관	수행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해역이용협의 센터 운영

-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수의계약 체결 → 사업관리 → 연차별 사업평가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94조(권한의 위임)

사 업 명
(9) 해양환경국제협력 (10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070	075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2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개선 및 관리	해양환경국제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환경국제협력	2,650	2,650	2,650	2,650		0	-

4. 사업목적

- (해양환경국제기구 분담금)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참여를 통한 국제해양환경 관리 역량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 (해양환경 국제협력 및 능동대응 지원) 급변하는 해양환경 국제동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한 국익도모 및 관련 정책인프라 구축·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 해양생태계법 제38조제2항(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11～'20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없음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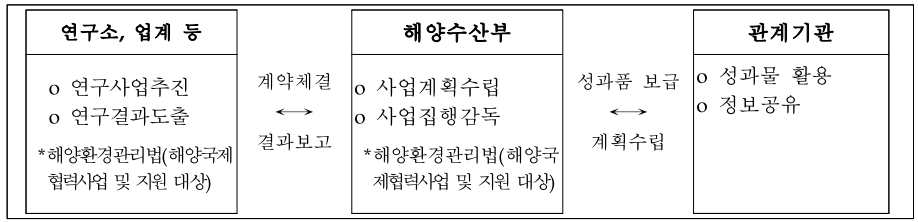

사 업 명
(10)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103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070	075
명칭			해양환경정책관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5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 개선 및 관리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17,906	13,989	-	14,055		66	0.5

4. 사업목적

- **(오염퇴적물 분포현황조사)** 정화복원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
- **(신규해역 실시설계)** 분포현황조사에서 조사된 오염구역에 대한 정화물량, 저서환경 고려, 투기장 탐색 등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실시설계
- **(오염퇴적물 수거 및 처리)** 실시설계를 근거로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여 해양환경 개선조치 추진
- **(사업 후 해양환경 모니터링)** 정화사업 이후 오염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사업 전후 변화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88년부터 마산만 오염해역준설 최초 착수(환경부)
- '96년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오염해역준설사업 이관
- '06년까지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주관 사업 시행
- '07년부터 국가 직접 시행('08년부터 해양환경공단 사업위탁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8~계속
- 사업규모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참여기관) 해양환경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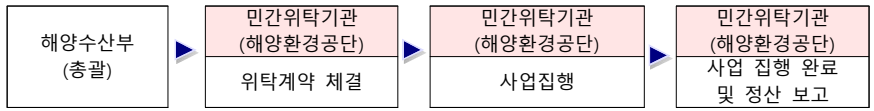

사 업 명
(11)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1033-3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20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개선 및 관리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6,470	6,712	6,712	9,843		3,131	46.6

4. 사업목적

-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전국 해역에 대하여 과학적·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해역의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한 해양환경측정망(전국연안 425개 정점), 해양방사성물질 측정망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해양환경 조사체계 구축·운영) 해양수산분야의 국제적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해양·수산·해운·항만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통계 작성(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매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인벤토리 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제주형 연안환경 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제주형(섬) 연안환경 환경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분석·연구장비 구입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제12조, 제123조, 「해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② 추진경위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및 운영('97)
  * 환경오염측정망(환경부), 어장환경측정망(수산청)을 통합하여 구성
- 「해양환경공정시험법」 제정·시행('08.6)
-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 및 정도관리 시행('08~)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제정·시행('11.12)
-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 계획 확정('13) 및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센터 출범(해양환경관리공단)('13)
- 방사성물질 분석장비 도입 및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 구축·운영 사업 시행('15)
-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1~'30) 수립('21)
- 「해양환경 측정망 구성·운영 계획」 고시 개정('21)
- 국정과제 84-5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해양환경 조사체계 구축·운영>

- 기후변화협약 채택('92년 채택, '94 발효) 및 '15년 파리협정 채택('16 발효)
- 제3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16)
- 해양수산부문 국가온실가스 산정기관(해양환경공단) 지정('17)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 제7차 개정 반영
-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수동 425개소, 자동 22개소, 방사능 45개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업무 위탁)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사업계획 수립	계약체결 (수의계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조사연보, 결과보고서)	정책 반영 및 환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 조사체계 구축·운영

-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공단과 수의계약 체결→사업관리→사업평가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사 업 명
(12)연안관리 (103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	070	075
명칭					환경보호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0
명칭	해양환경보전	연안환경관리(일반)	연안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8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연안관리	13,625	3,570	3,570	4,460		890	24.9

4. 사업목적

- (연안통합관리고도화) 각종 연안개발(해상풍력 등) 대응 연구용역 및 바닷가실태조사 등 추진, 연안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 (매립기본계획 등)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시 반영을 위한 요청지별 매립 타당성 검토, 공유수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공유수면법 전면 개정
- (중안연안관리심의회 운영 등)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무인도서 관리유형변경 등 연안관리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

- (폐스티로폼압축기보급)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자원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에서 배출되어 강 하구 해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쓰레기 처리

-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괭생이모자반 대량 유입에 따른 피해저감 방안 연구) '15년 이후 중국 기원의 괭생이모자반가 대량 유입되어 제주도 및 전남 신안해역에서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저감 방안 마련

- (자연재난쓰레기 피해복구) 자연재난(태풍, 호우)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 연안관리법 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홍보)
○ 연안관리법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② 추진경위

○공유수면법, 연안관리법 등에 따라 연안환경 보전 및 바닷가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00년~계속)
- 바닷가실태조사('06~), 연안통합관리('0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00~), 중앙연안관리심의회('00~), 폐스티로폼압축기보급('03~), 강하구해양쓰레기처리('13~), 괭생이모자반 모니터링 및 연구('15~)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안통합관리, 공유수면 관리·매립, 폐스티로폼압축기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법 제22조 내지 제27조)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변경권자 : 매립수요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
수립절차 : (반영요청)→관계기관(**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첨부**) 협의 및 시·도지사 의견수렴→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고시
→ ←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방부 등과 협의

⇓

공유수면매립면허(법 제28조)
면허권자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등 면허관청
면허신청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환경부 사전협의**→면허신청(환경영향평가서 첨부)→관계기관협의→검토→처분→고시
→ ← 해양수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방부 등과 협의

⇓

실시계획승인(법 제38조)
승인권자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등 면허관청
인가절차 : 피해보상(피면허자)→신청(면허일부터 1년이내)→ 관계기관협의(필요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첨부**)→ 검토→승인→고시
→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 시 해당기관과 협의

⇓

매립공사 시행(법 제40조)
실시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공사 시행

⇓

준공검사(법 제45조)
검사권자 :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등 면허관청
검사절차 : 공사준공(피면허자)→검사신청→총사업비산정 →매립지감정평가→준공검사(매립지소유권취득)→고시
→ ← 면허관청이 감정평가 업자를 지정하여 매립지가격 평가

◈지자체 보조사업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자치단체	→	자치단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선정)		대상지역 선정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송부		사업실시		실적, 정산보고

사 업 명
(13) 연안정비 (103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2
명칭	해양환경보전	연안환경관리(일반)	연안정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연안정비	64,394	47,088	47,088	60,861		13,773	29.2

4. 사업목적

-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연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을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 항만구역 외 대규모 연안정비사업, 침식관리구역의 연안정비사업 등 시행

② 추진경위

- '99. 8. : 연안관리법 제정
- '00. 6. : 제1차('00~'09)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 '09. 5. : 제2차('10~'19)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 '14. 10. : 제2차('10~'19)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수립
- '20. 6. : 제3차('20~'29)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 ~ 계속(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 '20~'29)
- 사업규모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기준 전국 28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지자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4)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1035-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생명자원과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5	303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운영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30,247	28,843	28,843	29,967		1,124	3.9

4. 사업목적

① 법령상 근거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② 추진경위

- '06 ~ '07: '장항산업단지' 축소·지연
  * 군수단식('06.11), 자녀등교거부('06.12), 지역주민 상경집회('06.12 3천명, '07.2 5천명) 등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대안방안 논의
- '07. 6: 정부*와 서천군간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 공동협약" 사업 체결
  * 정부 :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환경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6개 부처
  * 장항산업단지 대안사업: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 국립생태원 3개 사업 선정

- '08. 1 ~ '13. 1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공사 추진
  * '09. 11월 착공하여 약 4년 1개월간의 공사과정을 거쳐 '13. 12월 건립공사 준공, '14년 3월 전시관 전시물 설치공사 준공
- '13. 7:「정부조직관리지침」('13.4)에서 신설되는 전시·연구조직의 법인화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자원관 법인화 전환
- '13. 9: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농해수위 경대수 의원 등 10인)
- '14. 3 ~ 5 : 전시관 임시(시뮬레이션) 운영
- '14. 4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해수위 의결
- '14. 5 : 전시관 시범 운영
- '14. 1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 '15. 4 : 국립해양생물자원관(법인) 출범
- '16. 3 :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 '18. 12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 '19. 12 : 해외 해양생물자원 확보 현지 공동연구소 개소(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 '20. 1 : ABS 정보지원센터 설치
- '20. 12 : 해양바이오뱅크(4개 뱅크)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계속
- 사업규모 : 해양생물자원관 운영 1식
  * 기관운영, 전시·교육운영, 연구사업, 수장고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생물자원관(법인)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해양바이오산업 기업체 및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출연)	100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재원)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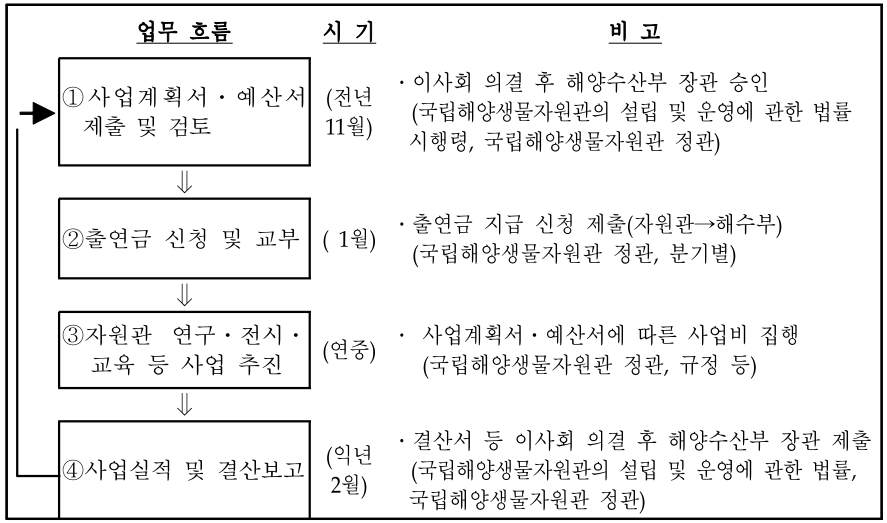

사 업 명
(15) 해양환경교육 운영 (1036-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070	075
명칭			해양환경정책관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1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피해복구	해양환경교육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환경교육 운영	3,484	4,242	4,242	3,642		△600	△14.1

4. 사업목적

- 국민이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교육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환경교육진흥법」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16조(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하여 2011년부터 해양오염방제교육 운영지원 사업 최초 실시
-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16년~'20년)에 해양환경 분야 반영을 위하여 '해양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15년) 및 '16년부터 본격적인 해양환경교육사업 추진

* 제2차 해양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21년) 및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1년~'25년)에 반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계속
- 사업규모 : 학생, 연안지역 주민, 해양산업 종사자, 선박·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연 2,000명) 등을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교육사업 추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ㅇ 사업 진행 절차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1월)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교육 운영 사업계획 수립
⇩		
② 사업수행 방침 수립(1월)	해양수산부	민간위탁 사업수행 방침 수립
⇩		
③ 위탁계약 체결 및 선금 교부 (1~2월)	해양수산부	수탁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
⇩		
④ 사업 준공(12월)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사업 준공계 제출 준공검사 및 준공금 지급

사 업 명
(16)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지원 (1036-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070	075
명칭	일반회계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2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 피해복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지원	653	648	648	2,013		1,365	210.6

4. 사업목적

- (**대부금 국고세입분 상환**) 유류오염피해주민 지원 대부금 국고세입분의 차입은행 상환
- (**대부금 이차보전**) 유류오염피해주민 지원 대부금 미상환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대부금 채권관리 등 운영**) 대부금 채권의 보전조치 등 채권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손해보전의 지원),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② 추진경위

- ('07. 12. 7)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발생
- ('07. 12. 13)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 ('08. 3. 14) 특별법 공포(6.15 시행)
- ('08. 6. 15) 특별법 시행령 시행
- ('08. 6. 19)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 개최(총리주재)
- ('08. 9 ~ '10.3)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11. 1. 21) 제2회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08. 8. ~) 조정위원회 9회 개최
- ('08. 7. ~) 대지급금, 대부금 등 지원
- ('13. 9. 25) 제3회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14. 9. ~ '16. 12.) 유류피해 극복 기념관 준공
- ('18. 6. 15.) 허베이호 관련 소송 종료(127,471건)
- ('20. 2. ~ '20. 7.)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유류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및 소송관련 후속조치 이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 **유류오염피해주민 지원 대부금 채권 관리**

○ **관련 법령 및 규정**

- 허베이호법 제8조(손해보전의지원)제5항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7-78호)

○ **대부금 채권 회수 절차**

유류오염피해지역 지자체		대부금 체납자		해양수산부
· 미상환 채권의 국가채권 등록 주기적인 납부 독촉장 발부 채권보전조치	⇒	대부금 상환	⇒	대부금 국고세입분 차입은행 상환 대부금 채권 관리 총괄

사 업 명
(17) 침몰선박 관리사업(1036-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4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 피해복구	침몰선박 관리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침몰선박 관리사업	3,724	3,724	3,724	6,680		2,956	79.4

4. 사업목적

- 잔존유 유출 등으로 해양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침몰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잔존유 제거 등을 통해 침몰선박으로부터의 2차 해양오염사고 방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국가의 책무 등) :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 침몰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침몰선박 정보 관리, 2차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 해양환경공단을 통하여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평가, 침몰선박 현황정보 관리, 현장조사 등 수행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2조(공단의 사업) 제1항 : 침몰선박(침몰우려 선박 및 침수선박을 포함한다)의 관리를 공단이 수행

② 추진경위

- ('14년) 해경, 해양안전심판원 등 유관기관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침몰선박 현황 정보의 일원화·통합 및 위해도 평가 시행
  * 위해도 평가를 통한 관리대상 선박 76척 선정(집중관리 12척, 일반관리 64척)

- ('15년) 침몰선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및 정책방향 수립
  * 침몰선박 현황관리 및 현장조사 계획,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 , 현장조사 기준 결정을 위한 시범조사(3척) 추진

- ('16년~'17년) 현장조사 및 상세 위해도 평가('16년 8척, '17년 5척)

- ('18년) 10척 현장조사, 침몰선박 관리 확대(현장조사 32척 ▸ 76척) 등

- ('19년) 5척 현장조사,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 실시(2척)

- ('20년) 5척 현장조사,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 실시(2척)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 ~ 계속
- 사업규모 : 침몰선박 현장조사 및 위해도 저감대책(잔존유 제거) 수립·시행
- 사업시행방법 : 위탁사업
- 사업시행주체 : 해양환경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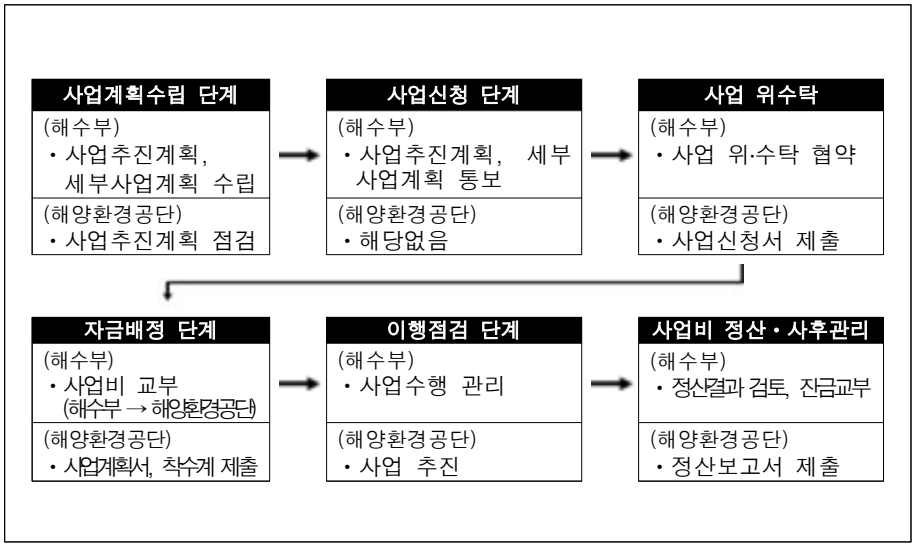

사 업 명
(18)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1036-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070	075
명칭			해양환경정책관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5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 피해복구	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다목적 대형 방제선 건조	13,551	15,999	15,999	26,899		10,900	68.1

4. 사업목적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07.12)와 같은 악천후·외해에서 오염사고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한 5,000톤급 대형방제선 1척 건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 조치)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 등 조치할 수 있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제3항(사업) 공단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 등 수행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제3항(국고보조 등)

② 추진경위

- (2008년) '07.12. 허베이호 사고 이후 해경청 등 관계기관 및 학계에서 대형방제선 건조 필요성 제안 및 정부개선과제 등에 반영

- (2011년) 악천후 대비 대형방제선 건조 계획(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

- (2012년)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계획(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2017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019년) 기본설계 완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22

- 사업규모 :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1척 건조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환경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해양환경공단	100%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제3항(국고보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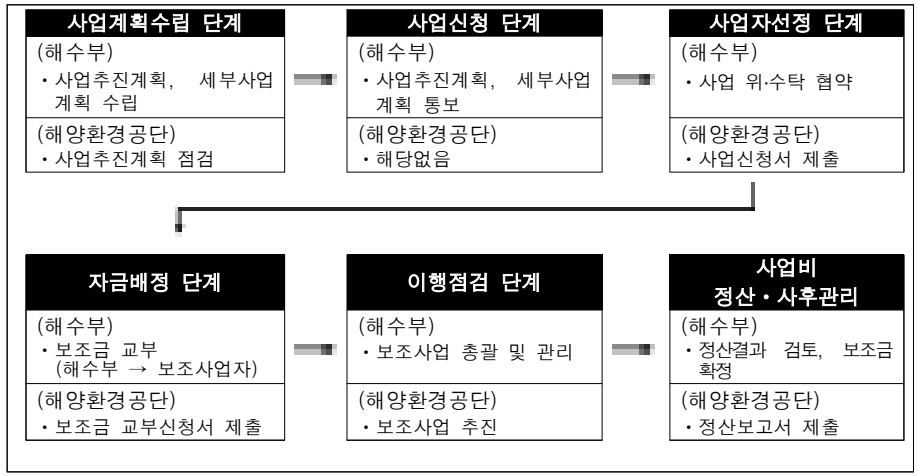

사 업 명
(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111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50	152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10	300
명칭	출연연구 기관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78,357	90,443	90,443	85,510		△4,933	△5.5

4. 사업목적

-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관할해역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자원의 개발·이용 및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 능력을 축적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한 안정적 기관 운영 추구
- (기관운영사업) 동 사업은 기관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

- (주요사업) 동 사업은 기관고유 역할과 책임(R&R) 수행에 필수적인 해양과기원 4대 전략목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후·해양환경 변화 대응, 해양전략자원 개발, 첨단해양공학기술 창출, 해양영토관리 분야의 연구사업 수행과 글로벌 해양과학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사업 추진, 해양관련 국가 현안문제 해결 지원, 연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
- (시설사업) 종합해양연구기관의 위상에 부합하는 첨단 연구인프라(연구조사선,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 등) 구축과 기 구축된 노후화 연구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를 지원
  · (시설보수사업) 노후화된 연구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연구생산성 제고
  · (이어도호 대체 종합해양연구선 건조) 이어도호 대체선박 건조를 통한 따른 한반도 연근해역 범위의 안정적, 지속적 국책연구사업 수행 및 연구자의 안정성 확보 가능
  ·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 구축)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시설(Core-Facility) 구축을 통한 산·학·연간 장비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고가 연구장비의 체계적인 관리·효율적 운영 가능
  · (스마트 복합해양배양센터 구축) 해양생물·원천배양기술 분야 연구결과물의 산업화 연계 및 생물소재 융합클러스터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② 추진경위

- 1990. 6. 1 재단법인 한국해양연구소 설립(KIST로부터 분리·독립)
- 1997. 3. 28 남해분원 설치(경남 거제시)
- 1999. 5. 1 대덕분원(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설치(대전 유성구)
- 2001. 1. 1 한국해양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04. 4. 16 부설 극지연구소 설치
- 2008. 6. 20 동해분원 설치(경북 울진군)
- 2012. 7.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 2014. 1. 1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설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
- 사업기간 : '91년 ~ 계속
- 사업규모 : 1본원(부산), 3연구소(거제, 울진, 제주), 5개 연구조사선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사업 수혜자 :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공부문 등 국가 모든 분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운영지원	1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7. 사업 집행절차

정부출연금 예산요구 — 5월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수부→기재부)

⇩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 9월말 — (기재부 · 과기부→국회)

⇩

정부출연금 예산 확정 — 11월 — (국회)

⇩

사업계획 및 예산 이사회 승인 — 12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

⇩

정부출연금 집행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통보 (기획재정부)
○ 기관 예산요구서 제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수산부)
○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및 편성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 정부예산 확정 (국회)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정부출연금 집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 업 명
(20) 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 (1110-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	150	152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10	1110	301
명칭	출연연구기관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극지연구소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	83,168	85,183	85,183	89,444		4,261	5.0

4. 사업목적

- (기관운영비) 기관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 지원
- (주요사업비) 극지 인프라 활용을 통한 극지에서의 기초·첨단응용과학 연구 수행, 3개 남·북극 과학기지·쇄빙연구선 아라온 등 극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기관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지원 수행
- (시설사업비)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 건립,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중장비 보관동 신축 및 기지운영 필수시설 보수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② 추진경위

- 2004. 4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설립
- 2006. 4월 청사 이전(인천 송도테크노파크)
- 2012. 7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로 변경
- 2013. 4월 독립 청사 준공 및 이전(인천 송도)
- 2014. 2월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준공
- 추진배경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04.8)
  -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개선 및 극지연구 활성화 대책(국무조정실, '04.3)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7대 R&D 중점분야(국가과학기술위원회, '07.12)
  - 100대 국정과제(국무총리실/'08.10)
  - 제3차 남극연구 활동 진흥 기본계획(해양수산부, '17.4)
  -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17.7)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 및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 안전 강화"
  - 북극활동 진흥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18.7)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규모 : 1본원(인천), 3기지(남극세종, 남극장보고, 북극다산), 1쇄빙연구선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극지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극지연구 유관 산·학·연·관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극지연구소	10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0조 1, 2항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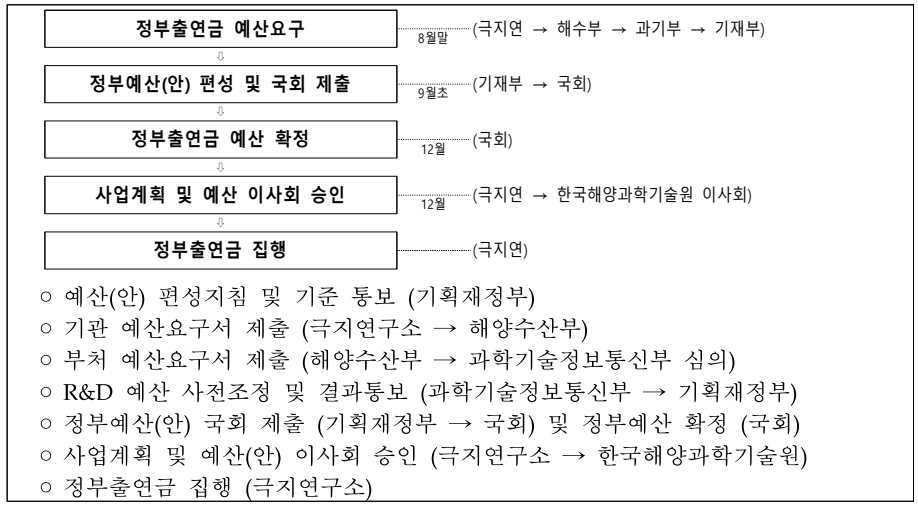

○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통보 (기획재정부)
○ 기관 예산요구서 제출 (극지연구소 → 해양수산부)
○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해양수산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
○ R&D 예산 사전조정 및 결과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획재정부)
○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 국회) 및 정부예산 확정 (국회)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극지연구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정부출연금 집행 (극지연구소)

사 업 명
(2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운영지원 (1110-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	150	152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10	302
명칭	출연연구기관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운영지원	27,746	33,684	33,684	40,030		6,346	18.8

4. 사업목적

- (기관운영비) 연구인력·지원인력 인건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등 기관 R&R 달성을 위한 기관운영 지원
- (주요사업비) 친환경 고효율 선박 핵심기술 개발, 미래 해양플랜트 핵심기술, 첨단 해양장비 및 ICT 융복합 기술 개발, 해양교통 및 해양사고 대응 등 기술 개발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 수행
- (특수사업비) 16개 연구동의 노후시설 보수사업, 추진기연구동 노후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의 디지털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선박해양디지털트윈센터 구축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사무소 등)

② 추진경위

- '73. 10.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선박연구소
- '76. 11. 한국선박해양연구소
- '81. 01. 한국기계연구소 대덕선박분소
- '89. 10.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해사기술연구소
- '99. 05. 한국해양연구소 선박해양공학 분소
- '12. 0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14. 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설립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사업규모 : 7연구본부, 4센터, 3부, 8실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사업 수혜자 : 선박해양플랜트 연구 유관 산·학·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	10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0조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통보 (기획재정부)
○ 기관 예산요구서 제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해양수산부)
○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수부, 과기부, 기재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사전조정 및 결과통보 (과기부 → 기획재정부)
○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 국회)
○ 정부예산 확정 (국회)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회 승인

사 업 명
(22)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20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0
명칭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해양문화 활성화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5,138	4,939	-	5,076		137	2.8

4. 사업목적

- (**해양교육사업**) 21세기 해양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 대한 해양교육 강화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사상 고취

- (**해양문화사업**) 다양한 해양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친숙한 해양문화 이미지를 확산하고 범국민적인 해양의식 제고 및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

- (**해양정책지원**) 유엔해양법 협약 체제하에서 해양관련 국제분쟁에 대비하여 법적·이론적 대응 체계구축, 해양관련 포럼 및 학술대회 지원 등으로 21세기 해양강국 실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제18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 및 제21조(해양문화의 확산),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039호, '16. 3.22)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사)해양산업협회, 해양과학기술협의회, 인천항만공사,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초·중등 학생, 교사,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과학기술협의회	정액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 35조 「해양교육문화법」 제18조
해양산업협회	정액	
인천항만공사	정액	
민간단체	정액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 35조 「해양교육문화법」 제17조, 제18조
지자체보조	정액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 35조 「해양교육문화법」 제18조, 제23조

7. 사업 집행절차

○ (보조사업) 사업계획 수립, 공모 등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수행 ⇒ 사업종료 후 보조금 교부 확정 신청 ⇒ 사업추진결과 확인 후 보조금 교부 확정

○ (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 연구과제 과업지시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수행 및 용역완료

사 업 명
(23) 해양과학국제협력 (2031-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교통 및 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7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문화활성화	해양과학국제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과학국제협력	1,120	1,011	1,011	1,203		192	19.0

4. 사업목적

- (국제의무부담금) 해외 선진과학기술·정보 습득, 연구능력의 국제화 및 해양과학기술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해양과학 국제기구(PICES, IHO, NOWPAP, IEA-OES, JPA)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해양과학 기술협력 사업 시행을 위해 지원

- (회의참석비 등) 해양과학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해양기술연구, 해양환경보호, 수로업무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지원

- (심해저독점광구 유지·관리) 국가 미래전략광물(망간,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확보를 목적으로 향후 개발 우선권 확보를 위한 심해저 독점광구 유지·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② 추진경위

- '00 해양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해양수산부와 미국해양대기청간의 약정
- '95~'10 국제기구 가입 :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국제수로기구('95),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94), 국제에너지기구 해양에너지분과위원회('10)
- '01 대한민국-국제해저기구 심해저광물 탐사 계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1~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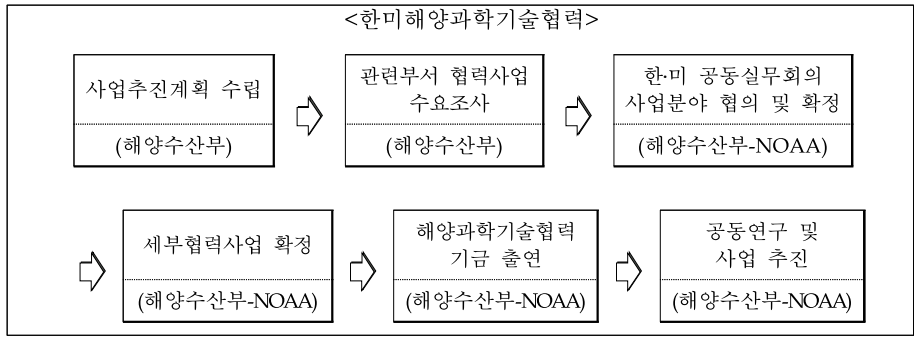

사 업 명
(24)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물류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8
명칭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해양문화 활성화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34,787	48,512	48,512	69,713		21,201	43.7

4. 사업목적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양문화와 해양산업 유산을 발굴·보존·연구·전시하는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사업비(출연금) 지원
- (박물관 BTL 정부지급금)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된 정부지급금을 지급
-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해양과학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연구·교육 하는 국립해양과학관 운영비·사업비(출연금) 지원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해양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통해 수도권 해양문화 확산 거점 마련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해양과학시설의 내륙권 설치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내륙 지역민의 해양의식 고취를 통한 해양과학 발전의 기반조성
-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 해양영토 및 해양 호국을 주제로 한 해양문화교육 거점 조성
-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서남해권 해양자원 활용 및 보존을 위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 운영), 국립해양박물관법 제12조(재원)
- (국립해양과학관 운영)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국립해양과학관법 제12조(재원)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 (선부역사기념공원 조성)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② 추진경위

〈국립해양박물관〉

- '04. :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추진과제로 반영
- '06. 4 ~ 12 : 기획예산처 시행 예비타당성 조사(B/C=1.44)
- '07. 9 : 타당성·적격성 조사·시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09.12 : 공사착공, '12.5 : 준공, '12. 7 : 개관
- '14.10 : 국립해양박물관 제정, 시행('15.4)
- '15. 4 : 국립해양박물관 특수법인 설립
- '16. 1 : 기타공공기관 지정

〈국립해양과학관〉

- '10. 3 : 경북 핵심사업 선정추진 VIP 보고시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건의('10.3)

- ‘13. 3 ~ ’14. 8 : 기획재정부 시행 예비타당성조사(B/C=1.17)
- ‘15. 2 ~ 6 :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 ‘15. 12 ~ ’16. 9 : 국립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 ‘17. 4 ~ ’19. 12 :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 ‘20. 5 : 국립해양과학관 법인 설립
- ‘20. 7 : 국립해양과학관 법인 개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 ‘17. 9 ~ ’19. 7 : 기획재정부 시행 예비타당성조사(B/C=1.03)
- ’19. 7 :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요구
- ’19. 12 ~ ’21. 8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축설계 용역
- ’21. 9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착공
- ’20. 3 ~ ’23. 12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 ’20. 2 ~ ’23. 12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 구입

〈미래해양과학관〉

- ’19. 2 ~ ’19. 12 : 기획재정부 시행 예비타당성조사(B/C=1.16)
- ’20. 1 :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요구
- ’20. 5 ~ ’20. 7 : 미래해양과학관 건축설계 용역 공고 및 심사
- ’20. 8 ~ ’21. 9 : 미래해양과학관 건축설계 용역
- ’21. 4 ~ ’24. 12 : 미래해양과학관 전시기획 및 전시물 제작 설치

6. 주요내용

구 분	국립해양박물관	BTL정부지급금	국립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미래해양과학관	선부역사가남공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총사업비	-	-	-	1,036억원 (국939, 지97)	1,046억원 (국971, 지75)	200억원 (국100, 지100)	1,246억원
사업기간	‘07~계속	‘12~’32	‘15~	‘19~’23	‘20~’24	‘22~’26	‘22~’26
사업규모	부지 45,386㎡, 연면적 25,870㎡ 총민간투자비 1,143억원		부지 111,000㎡ 연면적 12,345㎡	부지 27,335㎡ 연면적 16,938㎡	부지 15,406㎡ 연면적 15,175㎡	35,000㎡	부지 42,500㎡ 연면적 22,464㎡
시행방법	출연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시행주체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사업수혜자	국민	국민	국민	국민	국민	국민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립해양박물관	100	국립해양박물관법 제12조

7. 사업 집행절차

○ 국립해양박물관(BT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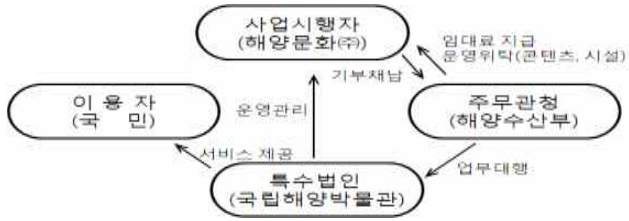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고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 준공 및 기부채납(민간사업자) → 관리운영권 설정 및 정부지급금 지급(준공일로부터 20년)

  * ‘15.4 국립해양박물관 법인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업무를 박물관 법인이 대행

사 업 명
(25)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지원 (2031-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00
명칭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해양문화 활성화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 지원	894	700	-	500		△200	△28.6

4. 사업목적

- 해양과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박람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박람회 개최성과를 지속적으로 실현·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 박람회를 계기로 기 구축된 SOC와 박람회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해양관광레저특구로 지정하여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재단 설립), 제15조(특구의 지정)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재원)

② 추진경위
- BIE 총회연설('07.11, 국무총리), 여수선언('12.8) 등을 통해 여수프로젝트 본사업 추진 약속
- 박람회 사후활용계획* 확정('12.9, 정부지원위원회)
  * 박람회장을 한국관 등 영구시설물과 빅오·아쿠아리움 등 핵심 콘텐츠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사후활용 업무를 전담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12.12)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설립('13.2.15)
- 박람회장 재개장('13.4.2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규모 : 약 65만㎡(박람회 사후활용 대상 부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부출현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정액	여수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재원)

7. 사업 집행절차

- **출연금 교부** : 출연금 교부 신청(재단) → 교부(해양수산부) → 집행(재단) → 결산보고(재단)
- **사후활용계획 승인(여수박람회특별법 제14조)** : 사후활용사업계획 수립(재단) → 승인 요청(재단→해양수산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양수산부→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 사후활용계획 승인·고시(해양수산부)

- **사후활용사업 시행(여수박람회특별법 제18조, 제20조)** : 사후활용사업자 지정(재단) → 사후활용사업 실시계획 수립(사업자) → 실시계획 승인 요청(사업자→해양수산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양수산부) → 실시계획 승인·고시(해양수산부) → 착공(사업자) → 준공확인신청(사업자)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양수산부) →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및 공사완료 공고(해양수산부)

사 업 명
(26)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2031-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5	306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문화활성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50~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 신산업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8,520	12,601	12,601	24,419		12,018	95.4

4. 사업목적

- (**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 지원 및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유망신기술 매칭지원,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해양수산 기업의 대응 및 지원정책 발굴, 고용동향 정보 공유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해양수산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지원
-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촉진**) 해외진출 기반 마련, 산업 정보 제공, 초기 기술개발 비용 경감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플랜트 서비스 관련 기업 지원

- (**심층수 수질검사**)「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 취수 지정 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 해양과학기술 플랫폼 'STEM 빌리지' 조성으로 해양융복합산업 R&D 고도화 및 해양신산업 성장 동력 마련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해양바이오 기업에 입주 공간, 장비 등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 및 생산 등을 지원하여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기업·대학 등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해조류 유래 바이오 산업 원료소재의 생산 및 품질인증이 가능한 생산인증시설 구축으로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
-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중개기술센터**)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 의료·헬스케어 분야 미래 유망기술(생체모사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설립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및 제36조(국고보조 등)

② 추진경위

- (**신산업 육성**) 해양수산 유망사업군 도출을 위해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유치 계획연구" 수행('15.3), 해양수산 창업·투자활성화 전략('17.3), 해양수산 신산업 로드맵·투자활성화 로드맵 수립('18.6),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수립·발표('19.10)
- (**플랜트 서비스**)「경제혁신 3개년계획」 세부 실행과제 37번(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13.10, 해수부, 국무회의 보고),「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13.11,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해양수산부 연두 업무보고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 대통령 지역공약(부산) / 해양과학기술 분야 창업보육, 해양장비 인증센터 운영, 시제품 제작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양과학 공동연구 추진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도출을 위한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19.11) /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19.1. 해수부, 바이오특별위원회 보고),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수립·발표('19.10)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의원 지역공약(윤재갑, 해남·완도·진도) /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20.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 31,301백만원,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 34,688백만원,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 25,000백만원
- 사업기간 : '16～'계속
- 사업규모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연면적 10,500㎡),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연면적 5,550㎡),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연면적 4,0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민간위탁,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시, 충청남도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100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6조 (통계의 작성·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부산광역시	70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충청남도	50	해양생명자원법 제36조 (국고보조 등)
전라남도	50	해양생명자원법 제36조 (국고보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 국내해양플랜트 타당성 조사지원, 공동활용체계구축, 해외 협력사업,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해양바이오 메디컬헬스케어 중개기술센터 타당성조사(연구용역사업)

-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용역계약 체결) → 용역수행 → 사업 준공
  * 적용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투자유치 지원, 취업박람회, 고용현안분석사업(용역 및 민간위탁사업)

-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용역계약 체결) → 용역수행 → 사업 준공
  * 적용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자치단체보조 사업)

- 사업시행지침 수립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관리 → 실적 점검(정산)
  * 적용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 투자희망기업지원, 유망신기술 매칭지원,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출연사업)

- 사업시행계획수립 → 출연금교부 → 사업집행관리 → 실적점검 및 정산
  * 적용법령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등

사 업 명
(27) 해양모태펀드 (2031-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해양정책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1	312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문화활성화	해양모태펀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모태펀드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

4. 사업목적

- 유망 중소·중견 해양기업 투자 지원을 통한 해양新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양 모태펀드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② 추진경위

- 해양신산업 육성정책 역량 강화방안('16. 7. 19)
- 해양수산 창업·투자활성화 전략 수립('17. 2. 28)
- 해양산업 투자 활성화 로드맵('18. 5)
- 해양수산 신산업 로드맵('18. 6)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19. 1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35
- 사업규모 : 1,430억원(정부출자 1,000억원, 민간투자 430억원 이상)규모 이상 조성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창업·중소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벤처투자	100	벤처기업법 제4조의2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추진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사업추진을 위한 상세 계획 수립
⇩		
② 한국모태펀드 출자	해양수산부	·한국모태펀드 출자
⇩		
③ 운용계획 수립	운용협의회	·해양수산부 - 한국벤처투자 간 운용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계획 수립
⇩		
④ 자펀드 운용사 선정	한국벤처투자	·공고 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자펀드 운용사 선정
⇩		
⑤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실시	자펀드 운용사	·민간투자금을 모집하여 자펀드를 결성하고, 해양수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실시

사 업 명
(28)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20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0
명칭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7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9,421	9,265	-	9,265		-	-

4. 사업목적

- (과학연구·조사) 독도 영토주권의 과학적 논리(근거) 확보·보강을 위한 독도 및 독도 주변해역 대상 종합과학연구 추진
- (시설건립·운영) 독도박물관, 독도주민숙소 및 독도관리선 운영 등 독도 영유권 행사를 위한 주요시설 건립·운영비 지원
- (홍보·학술사업) 독도관련 연구·조사·홍보 추진을 위한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민간전문성 향상 및 독도홍보효과 확대
- (법정업무수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운영, 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자료 발간 등 독도통합관리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국고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97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증거력 강화와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감 제고를 위해 독도관련 연구용역,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
- '01년부터 독도에 대한 홍보와 영유권 강화 일환으로 실효적인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
- '05. 5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 수립 등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등을 추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사업규모 : 독도주민숙소(373㎡,4층)·독도관리선(177톤)·독도박물관(27,129㎡,2층) 운영, 입도영상촬영시스템(동·서도 각1대), 독도비즈니스센터(330㎡, 3층, 구축 중), 입도지원센터(595㎡,설립예정)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민간단체(공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50,70,100	「독도이용법」 제12조
민간보조 (공모)	정액	「독도이용법」 제 7조
지자체보조	70	「독도이용법」 제12조

7. 사업 집행절차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등 연구용역
- 과업지시서 작성 → 발주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 사업완료

○ 독도 탐방 등 민간단체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공모) → 사업심사 및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실적 보고 → 사업정산 및 보조금 확정(사업완료)

○ 지자체 보조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검토 및 결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실적(정산) 보고 → 보조금 정산 및 확정(사업완료)

사 업 명
(29)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강화(20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02
명칭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	극지정책및극지활동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강화	1,821	1,750	1,750	1,575		△175	△10

4. 사업목적

- (극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13.5)을 계기로 북극해 연안국 및 국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 진출 활성화 기반 마련
- (극지정보센터 운영) 산·학·연 및 국민의 극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극지에 대한 사회·경제·인문·자연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 (극지운항 인력양성 기반구축)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하여 북극항로 운항기술 및 노하우 확보를 위한 항해사 등 극지운항인력 양성 지원

- (북극항로 및 북방물류시장 진출 지원)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신북방 정책' 및 '9개 다리(9-Bridge) 전략'의 일환으로 북방지역에 우리기업 진출 활성화 지원
- (북극항로 활성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북극해 연안국 및 주요 해운물류 국가와의 최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 개최
- (극지과학문화행사) 극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하여 극지체험전시회, 논술공모전 등 극지 문화 홍보·교육 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극지활동 진흥법」('21.4제정, '21.10 시행)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22조(홍보 및 교육)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 「남극조약」('86.11 가입) 제2조, 제7조 및 제9조 등

② 추진경위

- '극지과학기술 개발 계획' ('0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남극세종과학기지 운영개선 및 극지연구활성화 대책' ('04/ 국무조정실)
- '북극해 북동항로 진출 기본계획' ('10/ 국토해양부)
-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 ('12.11/ 국토해양부, 위기관리대책회의)
-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13.7/ 대외경제장관회의)
- '북극정책 기본계획' ('13.12/ 국무회의)
-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17~'21)'('17.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18~'22)'(18.7) 및 '2050 극지활동 청사진'('18.12/ 국무회의 보고)
-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20.1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21.4) 및 시행('21.1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계속
- 사업규모 : 6개 내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민간위탁 등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민간보조사업자 등
- 사업 수혜자 : 극지 분야 유관 산·학·연·관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100%	-「극지활동 진흥법」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극지활동 진흥법」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100%	-「극지활동 진흥법」 제13조(극지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극지활동 진흥법」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민간보조사업자 (공모예정)	10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4조(해양문화 창달)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홍보 및 교육) -「극지활동 진흥법」 제15조(교육·홍보)

7. 사업 집행절차

-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

방침수립 및 사업 공고 ····· (해수부)
⇩
사업기관 선정(기술성평가 등) ····· (해수부, 평가위원 등)
⇩
사업 용역·위탁 계약 체결 ····· (해수부 - 위탁기관)
⇩
사업 추진(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위탁기관)

- 민간경상보조사업(극지과학문화행사 내역)

방침수립 및 사업 공모 ····· (해수부, 보조사업심의위원회)
⇩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해수부)
⇩
사업수행 ····· (보조사업자)
⇩
사업종료 및 보조금 교부 확정 신청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결과 확인 및 보조금 교부 확정 ····· (해수부)

사 업 명
(30) 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 (2032-311)

1. 서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2	311
명칭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해양영토관리기반구축	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영토관리 역량강화	1,950	2,052	2,052	2,049		△3	△0.1

4. 사업목적

- (무인도서 지형도면 제작 및 정보시스템 구축) 무인도서 해역부 및 관리유형 변경 무인도서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DB구축 등 고도화 추진
- (무인도서 실태조사) 무인도서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유형 지정·변경을 위해 자연환경, 생태계 및 인문사회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 취득하고,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개별 무인도서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 (해양영토 전문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 초청 국제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해양영토 관련 국제기구 대응역량 강화 및 해양법 재판관, 저명 해양법학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 대응) 주요국 해양정책 모니터링 및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관련 문헌 등 분석을 통해 우리측 협상 대응방안 수립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유엔해양법협약 '94.11월 발효('96.1.29 비준)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2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9조·10조 등

② 추진경위

- 일본·중국과의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시 법적, 이론적 대응전략 수립 등 해양경계획정에 대비 2002년부터 추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08.2)
- 제1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10~'19) 수립·시행
- 전국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7~'12, 2,876개 대상, 10년 주기)
- '해양영토전문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13~)
- '14년에 '해양영토 관련 정책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이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2031-300) 세사업('10~'13)에서 '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분리·신설
- '15년에 '무인도서 관리' 사업이 연안관리(1034-300) 내역사업에서 '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분리·통합
- '15년말 기준, 조사완료된 무인도서 중 2,605개 도서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2,619 유형)
- 무인도서 현황도 제작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13~'17년간 총 73개 현황도제작)
- 무인도서 지형도면 제작 및 정보관리시스템 관리·운영('18~'20년간 총 1,943개 지형도면 제작)
- 전국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18~'27, 2,918개 대상, 10년 주기)
-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9) 수립·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계속
- 사업규모 : 해양영토관련 정책 연구·조사, 해양영토전문가 국제학술회의 개최,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한 실태조사(생태, 환경, 인문 등), 지형도면 제작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유형 지정·변경 등 무인도서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양영토관련 정책 연구 및 해양영토전문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수행계획 수립 - 관련 연구 및 사업 발주 - 연구 결과 검토 및 활용

○ '무인도서 종합정보관리 체계 구축'
무인도서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도서 관리유형(안) 마련 → 토지 소유자·지자체 의견조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적용법령>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함.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사 업 명
(31)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20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300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지형조사 및 정보제공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	53,229	51,019	51,019	52,575		1,556	3.0

4. 사업목적

- (국가해양기본조사)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관리 및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EEZ해역에 대한 해양정책 결정, 주변국과의 협상에 필요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확보
- (연안해역조사) 연안 및 항만해역 통항선박의 해상교통안전 지원 및 연안 보전·개발을 위해 수심, 항해위험물 등 최신 해양정보를 확보
- (국가해양경계 기준관리) 해양영토를 결정하는 영해기점과 국토 형상을 결정하는 해안선의 체계적인 변동 조사 및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유지관리
- (해양정보 간행물 제작) 해상교통안전과 국민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해양조사 정보를 종합한 종이해도, 항해서지 등 각종 해양정보 간행물을 간행

- (전자해도 개정 및 개발) 해상교통안전에 필수품인 전자해도의 간행 및 차세대 전자해도, 해저지형표면 등 최신 국제표준에 따른 항해안전정보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9조(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 연안관리법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제4조(인접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관리계획)
-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남극연구활동 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 제5장, 제9,19,27 규칙 수로업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49년 해군본부 작전국 수로과로 발족,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시행
- '95년 관할해역 해양조사를 해양정책과제로 보고(과기처→대통령) 및 국가해양기본도사업 장기 계획수립
- '96년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해상교통안전확보 이외에 종합적인 해양조사기관으로서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영토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위한 임무수행
- '99년 8월 연안의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연안관리법" 제정
- '08년 4월 국가해양기본도조사(서·남해 관할해역) 강화 및 조기완료(장관 업무보고)
- '09년 2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
- '10년 12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및 해양조사기본계획(2011~2015) 수립
- 제2차 남극 연구 활동 진흥 시행계획(2012~2016) 수립
- 제3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2016~2020) 수립
- '15년 12월 제2차 해양조사기본계획(2016~2020) 수립
- '17년 3월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2021) 수립
- '17년[국정과제-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62-3 영해기점 도서 등 섬 관리 강화)

- '18년 1월 제2차 해양조사기본계획(2016~2020) 개정 및 시행
- '20년 12월 제3차 해양조사기본계획(2021~2025)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49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해양기본조사(372천㎢), 연안해역조사(32천㎢), 국가해양경계기준관리(영해기점 23점, 영구시설물 22개, 해안선 14,962㎞, 남극과학기지 2개), 해양정보 간행물 제작(종이해도 404종, 항해서지 50권), 전자해도 개정 및 개발(전자해도 754셀, 차세대 전자해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 사업 수혜자 : 항해자, 항만 및 연안관리자, 지자체, 해군,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계획수립	해양수산부	■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② 현장조사	해양수산부	■ 국가해양기본조사(372천㎢) ■ 연안해역정밀조사(32천㎢) ■ 항만해역정밀조사(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 해안선변동조사(자연, 인공안선 총 14,962㎞) 등
⇩		
③ 품질관리 및 준공	해양수산부	■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		
④ 해도 등 간행물 제작 및 제공	해양수산부	■ 종이해도(404종) 및 전자해도 개정(774셀) ■ 항해서지(50권) 및 일반간행물 제작, 산업자료 공개 등 (사용자: 항해자, 항만연안관리자, 지자체 해군 등)

사 업 명
(32)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20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304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지형조사 및 정보제공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3,860	4,843	4,843	4,796		△47	△1.0

4. 사업목적

- (동해지명 대응) '동해(East Sea)'가 국제적으로 '일본해'로 잘못 표기 및 통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내·외 활동 적극 전개
- (해양지명 조사)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해양지명을 국내외 널리 알리고 잘못 표기된 해양지명을 바로 잡기 위해 해양지명 조사, 현황 모니터링 및 국제 홍보활동 추진
- (기지 주변 해역 연구 및 알리기) 해양영토 및 해양주권 확보를 위하여 이어도 등 해양과학기지 주변 해역에 대한 연구 및 홍보 활동 추진
- (글로벌 선도 국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국제수로기구(IHO) 내, 우리나라 ICT 기술

의존도 제고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이러닝 및 업무 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류 제23조(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② 추진경위

- ('02) 7월 수로업무법에 의거 '해양지명위원회' 신설
- ('02) 10월 제234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동해명칭 현안에 대한 결의문 채택
  * 국제수로기구(IHO)의「해양과 바다의 경계(S-23)」개정판 발간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해"표기 적극 대처 촉구
- ('06) 동해중부해역 해양지명조사 사업 시작
- ('06) IHO와 해양수산부간 특별분담금 지원 MOU 체결 및 직원 파견
- ('06) 국제수로기구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위원 진출(한현철 박사) 및 우리말 해저지명 10개 최초 국제 등재
- ('09) 국제수로기구 대양수심도운영위원회(GGC) 위원 진출(성효현 교수)
- ('13) 1월 동아시아수로위원회에서 한국에 TRDC(국제수로훈련센터) 설치 결정
- ('14) IHO 임시총회에서 동해(East Sea) 지명 문제를 차기 총회(2017년)에서 논의키로 결정, S-100 실무그룹 부의장 당선(백용 주무관)
- ('15)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총회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대양수심도운영위원회(GGC) 규정개정 저지
- ('17) 전세계 바다명칭 표준(S-23)을 제정·관리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S-23 개정 비공식 협의체 구성 제안 및 가결
- ('18) 전세계 해저지명을 심의·제정하는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위원장 당선(한현철 박사)(임기 5년('18.11 ~ '22.11), 추가 5년 연임가능)
- ('19) 국제연합(UN) 지명전문가그룹 부의장 당선(주성재 교수)(임기 5년('19.~ '24)) 대양수심도운영위원회 홍보소위원회 위원장 당선(성효현 교수)(임기 3년('19.~ '21))
- ('20) IHO의 기술표준을 담당하는 부국장 진출(백용 主)(임기 10년('20.~ '30)) 제2차 IHO 총회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을 무력화시키고 신 표준「전 지구 해역구분(S-130)」을 개발하기로 결정
- ('21) 동해 표기 대응을 위한 S-130 신표준 개발 프로젝트팀 참가(우리나라 3명) 및 활동 개시(9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규모 : 동해 지명 공감대 형성, 동해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 해양지명 조사 및 국제적 통용, 기지 주변해역 연구,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사업(민간,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민간((사)이어도연구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어도 홍보를 위한 이어도 연구회 지원	보조	(사)이어도연구회	450백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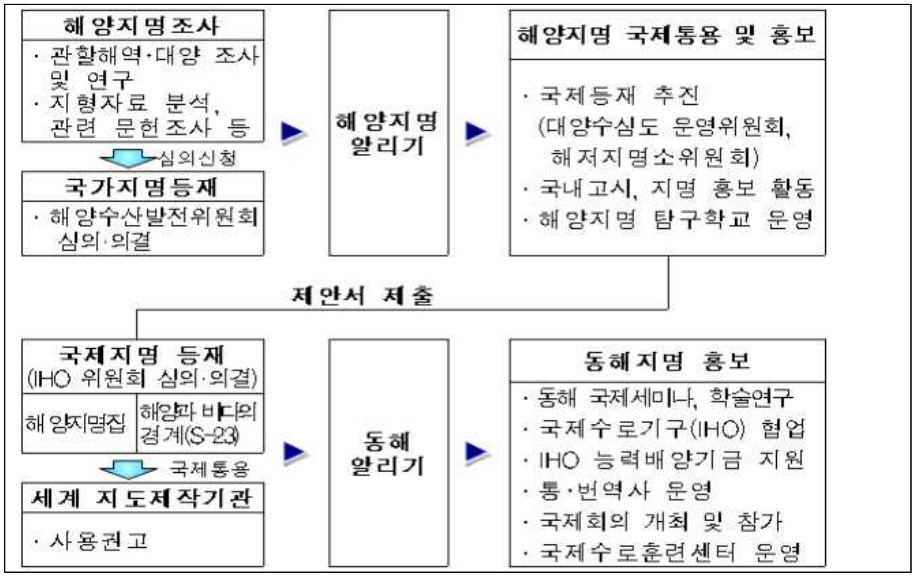

사 업 명
(33)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203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307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지형조사 및 정보제공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35,170	37,402	37,402	36,949		△453	△1.2

4. 사업목적

- (국가해양관측망 증설) 우리나라 관할해역 해양에 대한 장기·연속적인 관측자료 수집을 위한 관측망 증설
- (국가해양관측망 관리운영) 우리나라 관할해역 해양에 대한 장기·연속적인 관측자료 수집을 위해 구축한 국가해양관측망의 안정적 관리운영
- (해양위성운영 및 활용기반구축) 국내·외 위성자료 수집·저장·배포, 융·복합 콘텐트 제작 등 해양위성 운영 및 위성기반 해양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 (해양예보 인프라 구축) 국가해양관측망에서 관측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의 해양

활동과 해양재재·사고 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이용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해양예보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적응 해양기반 구축) 해양관측자료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주요 연안의 해수면 상승률 등을 산정 및 예측하여 기후변화 대응 예방과 피해저감에 대한 기초·정책자료 생산 및 지원
- (고도화 해양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연구) 해양예측정보 생산을 위해 해양예측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측모델개발, 수로조사 기술개발 및 자료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 연안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시설의 설치 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13호)
- 국정과제 62-5.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 신뢰도 제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시행령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99. 대통령 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에 의거 정부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
- 2002. 이어도 과학기지 등 국가해양관측망 91개소 구축 결정
- 2003. 기존 조위관측소에 대한 유지보수 및 지역별 신설 예산확대 등 수해방지종합대책 보완(국무조정실)
- 2006. 해양수산부『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실시간해양관측소 관리, 운영기관 이관검토』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관 결정
- 2007. 56개 국가해양관측소 관리, 운영(국립해양조사원)
- 2008. 기후변화대응 세부이행계획, 중장기 마스터플랜, 종합계획 등에서 해양재해 예측·감시기술 강화와 연안취약성 지도 100% 작성 결정
- 2009. 가거초 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에 따른 이관 결정

- 2010. 조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간 슈퍼컴퓨팅 활용 및 기술개발 협정서 체결 및 기획연구 수행
- 201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과학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결정
- 2013. 해수부 VIP 업무보고시 국민힐링(healing) 해양공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위한 해양정보 제공 강화
- 2015. 해양예보과 신설 및 제2차 해양조사 기본계획(2016~2020) 수립
- 2016. 소청초·가거초 종합해양과학기지 이관
- 2019. 국가해양위성센터 신설
- 2020. 제3차 해양조사 기본계획기(2021~2025)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49 ~ 계속
- 사업규모 : 이어도 기지 등 국가해양관측망 구축·관리운영 및 해양예보, 해양위성 운영 및 활용기반 구축, 장기 해수면 변동분석·예측 및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 해양산업 관련자(해운업계, 어민, 항해사 등) 연구기관, 학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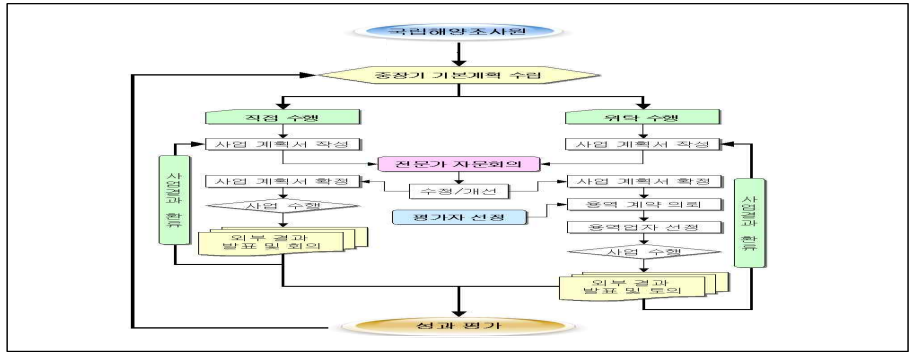

사 업 명
(34)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2033-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310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지형조사 및 정보제공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5,028	5,445	5,445	6,528		1,083	19.9

4. 사업목적

- (해양조사선 및 장비운영) 동 내역사업은 국가해양기본조사, 해류 및 조류관측 등 효율적인 해양조사사업 수행을 위해 해양조사선(8척)과 조사장비의 운용·관리·수리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것임
- (해양조사선 건조) 노후 해양조사선(선령 20년이상)을 현대화된 장비를 장착한 최신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확한 해양자료 수집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및 제40조(해양조사장비의 개발·확보 등)

② 추진경위 - 해양조사선·조사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노후 해양조사선 대체건조로 원활한 해양조사사업을 수행을 위해 '98년부터 사업 시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계속
- 사업규모 : 해양조사선·해양조사장비 관리·운영, 노후 선박 대체건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 사업 수혜자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해양관련 업·단체(해운업, 어업, 관광업 등), 해양영토 수호 담당 조직(해경, 해군 등),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해양조사원이 생산한 해양정보 활용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건조 계획수립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설계·건조 용역 (계약서, 과업지시서)	⇒	선박건조, 준공 (계약서, 과업지시서)
선박 및 장비 관리계획 수립 해양조사선 운항계획 수립 (자체 관리운영지침)	⇒	선박 및 장비 관리운영 해양조사사업 운항지원 (자체 관리운영지침)	⇒	조사선 관리운영실적 운항결과 보고서 (자체 관리운영지침)

사 업 명
(35) 수요자 맞춤형 해양관측·진단·예측 체계 고도화 (2033-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3	312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지형조사 및 정보제공	수요자 맞춤형 해양관측·진단·예측 체계 고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요자 맞춤형 해양관측·진단·예측 체계 고도화	-	-	-	500		500	순증

4. 사업목적

- 100년간 축적해온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관측자료를 검·보정하여 정확도를 향상하고 자료제공 서비스 개선(관측 후 2년 →2~3시간 내 제공)을 통해 국민생활 편의 향상 도모

*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는 UN IOC(정부간 해양학委) 등록기관으로 1921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년간 수온, 염분 등 20개 항목을 격월 관측(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등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제2항

- 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함

○ 「해양과학조사법」 제20조제2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민, 사업자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② 추진경위

○ 연안정지 관측

- 1921년 처음 시작하여, 1933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시행 중

○ 정선해양 관측

- 1961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시행 중

○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 관측

-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시행 중

○ UN IOC(국제해양학위원회

- 1975년 국가해양자료센터 자격을 세계 5번째로 공식 등록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 KODC 관측데이터 검·보정 및 맞춤형 실시간 서비스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미정, (참여기관) 미정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일반국민(낚시, 레저 등), 연안해운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작성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마련
⇩		
② 용역사업자 공모·선정	해양수산부	용역 계약 의뢰, 사업자 공모·평가·선정
⇩		
③ 사업 수행	사업자	KODC 자료 검·보정, 서비스 개선체계 설계
⇩		
④ 성과평가	해양수산부	과업 수행 성과 평가

사 업 명
(36) 해양관광육성 (2034-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34	310
명칭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해양관광육성	해양관광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정액, 5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관광육성	30,259	48,088	48,088	58,802		10,714	22.3

4. 사업목적

○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조선 및 해운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마리나산업 고도화 기반 확충을 위해 마리나비즈센터(부산, 통영)를 조성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 조성(고성, 군산, 서귀포, 보성, 시흥),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센터(태안, 울진, 경남고성) 조성 등을 지원

-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관련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및 운영활성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양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해양스포츠제전과 스포츠대회 지원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활성화 지원
- (해양레저 관광정보 기반구축) 해양레저관광정보 DB 개선, 레저관광산업 통계기반 구축, 마리나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정책기반 및 자료구축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해양치유자원조사 등을 통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제1항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 등) 제1항
-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12시행)
- 연안관리법 제28조 제2항(비용의 부담)

② 추진경위

- 해양 관광·레저 활성화 방안('10.7.15 국가고용전략회의)
-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11.12.7,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 기본계획 고시('12.2.22,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
- 「마리나산업 육성대책」('14.4.15, 제17회 국무회의 상정) 및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대책」('15.5.7,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양치유센터 조성 1,350억원(국고 675억원),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조성 480억원(국고 240억원)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마리나산업 육성 및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해양레저·관광 정보기반 구축, 해양관광 진흥 추진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자체 보조, 민간 보조, 직접 사업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보조율 50, 70%), 민간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지자체, 민간(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50, 70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제35조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일부지원(정액)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 제4조
한국해양재단 등	일부지원(정액), 50, 100%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제35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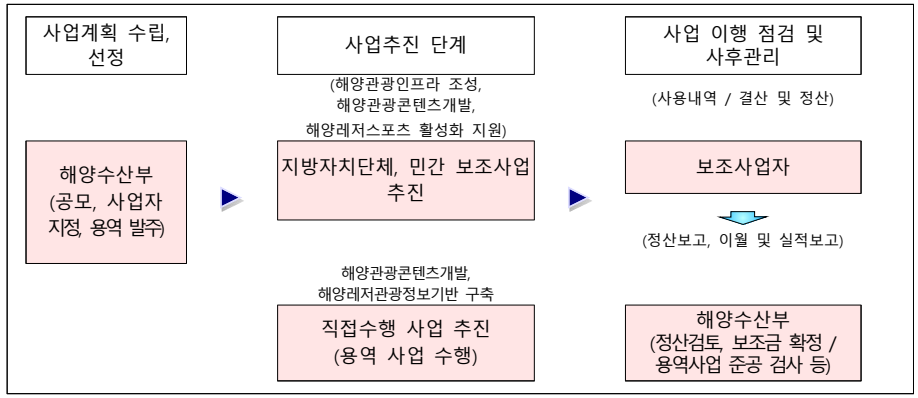

사 업 명
(37)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R&D) (204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1	301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R&D)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R&D)	17,948	15,098	15,098	8,136		△6,962	△46.1

4. 사업목적

- (해양에너지 단위 실용화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해양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 등 해양에너지원별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해역 실증 인프라 구축
- (복합발전 기술개발) 해양에너지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합발전 기술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관련법	조문내용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자원 :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Ocean Korea 21 」 발표('00.5)
- 「 해양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 」 수립('15.7, 국과심 운영위 보고)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 및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대상과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80억원(1개 세부과제)
- 사업기간 : '00년~'22년('19년 일몰확정)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3개 과제 추진('21년 예산 기준)]
  - (내역1) 해양에너지 단위 실용화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 2개 과제(계속 1개, 종료 1개)
  - (내역2) 복합발전 기술개발 - 1개 과제(종료 1개)
  - (내역3)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38) 조류발전 청정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 (2041-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1	304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R&D)	조류발전 청정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조류발전 청정재생에너지시스템 개발(R&D)	4,532	6,013	6,013	2,060		△3,953	△65.7

4. 사업목적

-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 개발)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고, 발전단지 구축 기반 조성
- (도서지역 적용 조류발전-ESS 연계형 융복합 시스템 개발) 조류에너지 부존량이 풍부한 도서지역에 적용 가능한 조류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조류 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관련법	조문내용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자원 :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Ocean Korea 21」 발표('00.5)
- 「해양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15.7, 국과심 운영위 보고)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및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대상과제
- '18년: 조류발전 청정재생에너지 시스템 개발 세부사업 신규반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22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 2개 과제('21년 기준)
  - (내역1) 1MW급 조류발전 상용화시스템 개발: 1개 과제(계속)
  - (내역2) 도서지역 적용 조류발전-ESS 연계형 융복합 시스템 개발: 1개 과제(종료)
  - (내역3)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39)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개발 (204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1	305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개발	-	3,481	3,481	7,885		4,404	126.5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 제31조, 제32조
-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11부(국제심해저와 자원 개발 기술, 국제해저기구, 심해저자원 개발 체제 등)

② 추진경위

- '02. 8 : 망간단괴 개발유망광구 확보(7.5만㎢)

- '08. 3 :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확보(2.4만㎢)
- '11. 4 :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확보(0.3만㎢)
- '12. 7 :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 확보(1만㎢)
- '14. 6 : 국제해저기구와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탐사계약 체결
- '16. 7 : 서태평양 공해상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확보 (0.3만㎢)
- '18. 3 : 미래해양광물자원사업 일몰('20년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 기획연구
- '18. 3 : 국제해저기구(ISA)와 서태평양 망간각 탐사계약 체결
- '20. 2 : 해양광물자원탐사(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및 서태평양 망간각) 사업 기획연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446억원
- 사업기간 : '21~'28
- 사업규모 :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개발유망광구, 서태평양 망간각 유망광구 선정 2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 지자체 보조의 경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에 '지자체 보조'로 기재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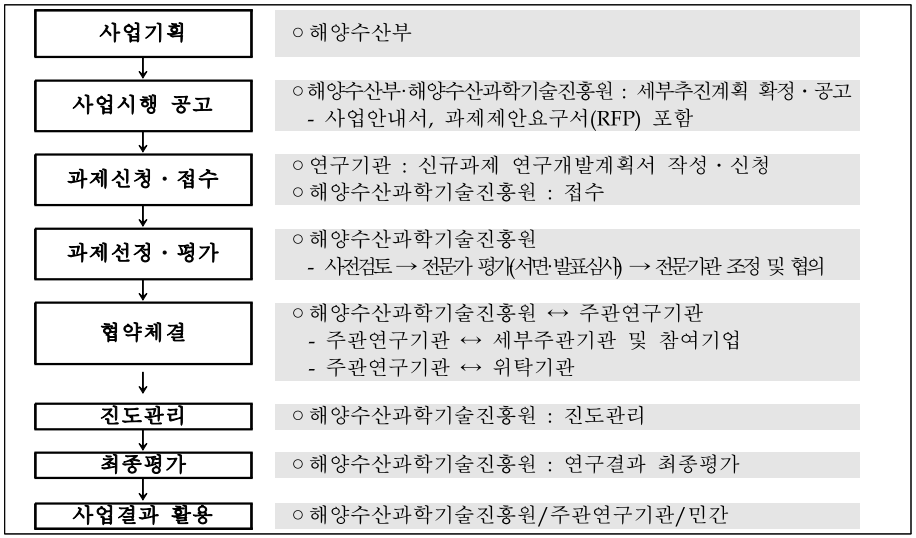

사 업 명
(40)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R&D) (204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국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1	306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자원이용기술개발	해양재생에너지연계 그린수소생산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	-	-	3,120		3,120	순증

4. 사업목적

-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고정식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력 등 해양에너지를 활용하여 고정식 해양플랜트에서 수전해를 통하여 수소생산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
- ①고정식 해양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②고정식 해양그린수소 실증시스템 성능평가 및 제작·설치, ③저고정식 해양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실증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② 추진경위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01,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그린수소 산유국 진입, 2030년 수소공급량 526만톤, 공급가격 3,000원/kg)
-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 저가 수소 대량 생산 기술 상용화 및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 「2020 한국판 뉴딜정책 종합계획」('20.07,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규모 R&D·실증사업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 수소생산)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主공급원 전환, 그린수소 기술 혁신·상용화 등)
- (선행연구)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선행연구*가 추진되었으나, 대용량·대규모 확장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해양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해상에서 그린수소 생산 기술은 부재
- (기획 경과) 해양그린수소 신규 R&D 기획 추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08.~)
- 해양그린수소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도출(~'20.12.)
- 해양그린수소 관련 업무협약 체결(H2KOREA-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1.02.)
- 해양그린수소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참여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기업간담회, 설문조사 등 추진('21.01.~03.)

  * 제주에너지공사, 중부발전, 지필로스, 한화솔루션, 엘켐텍, POSCO, 범한퓨어셀 등, 발맥스기술 등
- 발전공기업 2개社, 수소생산 관련기업 2개社 사업참여 희망
- 민간기업 의견 : 수소수요 증가 및 대규모 생산으로 사업성 및 경제성 확보 가능
- 핵심 아이템 도출 및 예산 규모, 연구추진 방법 등의 기획연구 완료(~'21.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 ~ 2025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미정(연구관리전담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발전공기업, 중소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미정	100	

7. 사업 집행절차

-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고정식 해양그린수소 기술 개발**)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41)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R&D) (204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국제협력정책관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2	303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R&D)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25,402	13,703	13,703	11,574		△2,129	△15.5

4. 사업목적

-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해양과학기지, 관측시설, 관측자료 등 해양관측 시스템의 연계·확대를 통해 해양관측·예보기술을 개발하고 관할해역 광역감시체계 구축 지원으로 해양재해·재난에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 (**해양과학조사 연구**)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경계획정에 대비하여 과학적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전지구적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해양기초과학 구축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2조(해양의 관리),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 해양과학조사법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② 추진경위

- 해양과학조사연구 사업 착소('94.3)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 착수('95.5)
- 국가해양관측망 기본계획 수립('01.7)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21세기 체계적인 해양관리를 위한 국가해양관측망 발전방안(안) 수립 보고('05.2)
- R&D 사업 구조 변경에 따라 '07년까지 해양관측 및 조사사업이 '08년부터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과 해양과학조사 연구로 구분('07.)
- R&D사업 사업체계 개편으로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사업 통합 조정하여 '10년부터 추진('09.5)
- 국토해양 R&D사업 사업체계 개편으로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 '차세대 해양관측위성개발사업' 분리 조정('12.5)
-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 및 시행계획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20년까지 기 투자액 4,617억원)
- 사업기간 : 1994년 ~ 2024년('20년 일몰)
- 사업규모 :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2개 과제, 해양과학조사 연구 3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지원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민간기업, 대학, 출연연, 정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42)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 촉진사업(R&D) (2042-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2	313
명칭	해양산업 육성 및 영토관리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 촉진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장비 연구성과 활용촉진사업 (R&D)	6,200	8,469	8,469	7,247		△1,222	△14.4

4. 사업목적

- (수중건설로봇 실증 및 확산) 해양수산 R&D 성과물인 수중건설로봇의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성능 고도화·실증, 트랙레코드 확보 등 지원
- (수중글라이더 핵심장비기술개발) 해양정보 관측 무인화와 정확도 제고를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 선단(船團) 운용기술 및 고품질정보 생산기술 개발·실증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자원 :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생명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촉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수산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8.6)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 수립
  ·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 」의 5대 분야(해양장비·로봇,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친환경 해사산업, 고부가 수산양식) 포함
- ('19.5) 「 수중건설로봇 현장 실증 및 사업화 」 신규과제 추진
- ('20.4) 「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운용센터 구축 」 신규과제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463억원(국비 318억원)
- 사업기간 : '19~'24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2개 과제('21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출연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43) EEZ 관심해역 해양과학탐사 기술개발(R&D) (2042-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2	316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R&D)	EEZ 관심해역 해양과학탐사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EEZ 관심해역 해양과학탐사 기술개발(R&D)	-	8,473	8,473	9,373		900	10.6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EEZ 관심해역 조사를 통해 광역 해양특성정보를 확보하고,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정부협상 지원체계 구축의 과학적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황해 EEZ 관심해역 해양특성조사 및 경계획정 연구 지원)** 황해특성을 주도하는 저층냉수대 현황과 변동(기작), 생태자원영향, 해양/음향광역정보 등을 통해 광역 해양정보를 수집하여 해양경계협상에서 우선 확보해역 등 시나리오 분석에 활용

① 황해 저층냉수대 해양특성조사 및 변동기작 규명

② 황해 EEZ 음향특성 조사체계 구축 및 분석기술 개발

③ 해양경계협상수역의 관련요소 손익분석에 기초한 해양경계획정 협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② 추진경위

-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공식화' 추진 합의('14년 정상회담)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차 회담('15.12)
- 가상중간선 이원의 해양조사활동 추진 결정('18.10, NSC 상임위원회)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2차 회담('19. 7)
- EEZ 관심해역 해양과학탐사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20. 2)
- EEZ 관심해역 해양과학탐사 기술개발사업 착수('21. 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21년까지 기 투자액 84.73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규모 : 내역사업 1개, 세부과제 1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지원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해수부, 외교부, 해군, 해경 등), 연구소, 대학,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4)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2042-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2	317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R&D)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R&D)	-	5,000	5,000	5,272		272	5.4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동해 첨단 해양과학기지 신규 구축 및 기 구축 해양관측 인프라의 지능화를 통한 관측·연구·정보서비스 역할 및 활용 강화

○ **(사업내용)**

-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동해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무인 자동화와 이동형 해양관측을 연계한 지능형 해양관측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해양환경변화 및 해양재난재해에 예측·대응을 위한 학문 분야 간 융합연구 수행하며, 해양과학기지 관측 및 연구 성과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IT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양 정보 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2조(해양의 관리),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 해양과학조사법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7~'14)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1단계)
  * 가거초 및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구축, 이어도 기지 중심의 해양과학기지 활용연구
- ('15~'20)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2단계)
  * 해양과학기지 관측 고도화 및 활용연구 확대(8개→22개 연구팀)
  * 고품질 해양관측자료 기반 국제협력 체계 마련 → OceanSITES 등록
- ('20. 2.)「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21. 2. 시행)
  * 해양조사의 실시, 해양정보의 활용 기반 마련
- ('20. 2.)「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 연구를 위한 기획연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30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총 6년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1개 세부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지원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민간기업, 대학, 출연연, 정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45)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R&D) (2042-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2	318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연구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R&D)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R&D)	-	-	-	3,333		3,333	순증

4. 사업목적

-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 사업내역은 민·관·학·연 합동으로 해저공간 창출·활용을 위한 설계, 시공, 운영·관리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
  ① 수심 50m에서 5인이 체류 가능한 규모의 해저공간 설계, 시공 원천기술 개발
  ② 해저공간 운영, 유지관리 원천기술개발
  ③ 해저공간 구조 테스트베드 설치와 실증 (수심 30m, 상주인원 3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제18조: 정부는 해양도시·인공도서, 해양구조물 등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해양공간을 과학적·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 제28조의2: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정과제
-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 우주·항공·해양 분야 투자방향에서 「해양안전 및 생태계보전 등 공공영역」에 지속 투자

○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지역상생 사업으로 해저공간 창출을 제시
- "지역, 相生을 꿈꾸다", 해양과학기술의 압축적 공간적용: 해저도시의 미래설계, 2019)

○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극한환경 생존기술, 우주·해저도시 건설, 우주생산과 농업 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2020.08)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
* 2-3-가. 지역상생·열린 해양공간 조성 / 2-3-나. 해양레저·생태체험 관광 특화 공간 확대
* 3-3-가. 해양수산 데이터 생태계 구축 / 3-3-나. 해양수산 디지털 비즈니스 육성
* 5-2-가. 해양공간계획 기술 고도화
* 4-1-나.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저변확대 / 4-1-다. 첨단 해양장비 산업 조기 상용화 /4-1-라. 해양에너지·자원 개발 선진화

○ 3대 우주 전략 발표 (VIP, 2021.0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480억원 (국고: 324억원, *2021년까지 기투자액: 0억원)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사업규모 : '26년까지 수심 30m, 3인 체류 가능 유형2*의 해저거주 공간 구축 (위치: 울산시)
  * 유형2: 육상과 에너지 연결, 공간 분리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지자체 매칭: 총사업비의 7.5% 이상, 민간 매칭 : 총사업비의 25% 이상)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미정, (참여기관) 미정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미정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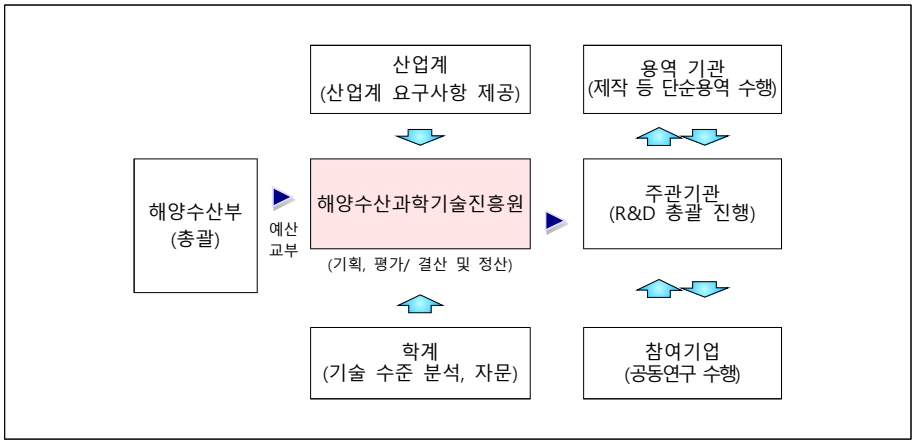

사 업 명
(46)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2042-32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2	325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 관리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	-	-	3,350		3,350	순증

4. 사업목적

-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확보 등 국가적 극지 이슈 해결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연구 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선 건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62-6 남·북극 대양진출 확대), 2050 극지활동 청사진('18.12.18., 국무회의 보고), 북극활동 진흥기본계획('18~'22),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20.11) 등 범부처 상위정책과 연계
- VIP 지시사항(차세대 쇄빙연구선을 현대식으로 규모있게 도입하는 방안 마련, 북방위업무보고 '20.1) 이행을 위한 사업 추진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20.9~'21.6), 최종 '시행' 결론('21.6,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774억원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규모 : 친환경 쇄빙연구선 1척(총 15,450톤), 장비(연구장비 53종, 지원장비 9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관기관) 미정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출연	미정	3,35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47) 천리안 2B호 산출물 정확도 향상 연구(R&D) (2042-3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2	326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연구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R&D)	천리안 2B호 산출물 정확도 향상 연구(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천리안 2B호 산출물 정확도 향상 연구(R&D)	-	-	-	3,366		3,366	순증

4. 사업목적

- (천리안 2B호 산출물 정확도 향상 연구) 천리안 2B호의 신뢰도 높은 해양위성정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산출물의 검·보정 및 알고리즘 개선 연구 등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개발 등의 추진)

② 추진경위

<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

○ 해양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1차적으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점점 더 증대되고 있음

- 천리안 해양위성의 해양산출물 중 클로로필 농도는 이산화탄소에 따른 기후변화 추적의 주요 변수임

○ 지난 10년간 세계 최초 해양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 해양임무(GOCI*)를 통해 기본 해양환경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대기 에어로졸 탐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해양/대기분야의 현업**에서 정지궤도 위성자료 활용이 증대되고 있음

*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 2010년 6월 발사/2021년 3월 임무 종료

** 적조(국립수산과학원), 부유조류(제주특별자치도), 해무(해양예보과), 대기 에어로졸(국립환경과학원), 구름/황사(국가기상위성센터, 공군) 등

○ 향후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의 해양 모니터링의 국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지궤도 해양위성자료 분석기술 개발이 필수

< 세계 최초 정지궤도 위성의 활용 및 정확도 확보 >

○ 2020년 천리안위성 2B호가 해양임무(GOCI-II)를 탑재하여 발사하고, 궤도상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20.10부터 표준영상자료(Level 1B) 서비스 시작

- 2010년 발사된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1호(GOCI)의 지난 10년간 성공적인 활용으로 GOCI-II 해양산출물(Level 2)에 대한 서비스 및 활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짐
- 위성 발사 후 필수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GOCI-II 위성 자료 정확도 확보 및 지속적 업데이트를 위한 개발 계획 부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21년까지 기 투자액 -억원)
- 사업기간 : '22~'26년
- 사업규모 : 내역사업 1개, 세부과제 1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지원 100%, 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2년 공모예정	100	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최종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평가
↓	
사업결과 활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민간

사 업 명
(48)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R&D) (204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3	305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 관리	극지및대양과학연구	극지및대양과학연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R&D)	20,297	18,623	18,623	10,174		△8,449	△45.4

4. 사업목적

- **(양극해 활용연구)** 쇄빙연구선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양극해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자원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21년 종료)
- **(남극 장보고기지 활용 기반기술)** 장보고기지를 활용하여 빙권 변화를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구축
- **(대양활용연구)** 한반도와 대양(북서태평양, 북극 등)의 해양기후 상관관계 규명을 통한 해양기후변화 예측 역량을 확보하고, 대양분야 생명자원 발굴 및 활용기반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자원의 개발),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제21조(남극연구활동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추진경위

- 남극 해저지질 조사연구 착수('94. 03)
- 북극해 해양조사 연구 착수('00. 03)
-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 수립('12년)
-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13년)
  *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 및 북극에서의 과학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를 계획
- R&D사업 사업체계 개편으로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에서 분리('14년)
- "2015년 북극정책 시행계획"('15.4, 대외경제장관회의) 수립
  * 북극정책 기본계획 '14년 추진성과 및 '15년 추진계획 제시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18.7)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23('20년 일몰)
- 사업규모 : 2개 내역, 3개 과제('22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참여 시 총사업비의 3/4이내 정부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남극 장보고기지 활용 기반기술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212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대양활용 연구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962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49)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R&D) (204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3	306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 관리	극지및대양과학연구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극지유전자원활용 기술개발(R&D)	2,500	4,938	4,938	5,500		562	11.4

4. 사업목적

-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극지생물이 가지는 혹독한 환경적응관련 유용 유전물질 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극지를 활용한 해양 신산업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자원의 개발),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제21조(남극연구활동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추진경위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1단계: '17~'21, 2단계: '22~'26)
-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13.5) 및 북극정책 기본계획 수립('13.12)
  *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 및 북극에서의 과학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를 계획
-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17.4)
  * "남극 생명체의 유전적·생리적 특성을 활용한 유전자원을 발굴, 실용화하여 극지 생명공학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18.7)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4
- 사업규모 : 2개 내역, 2개 과제('22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참여 시 총사업비의 3/4이내 정부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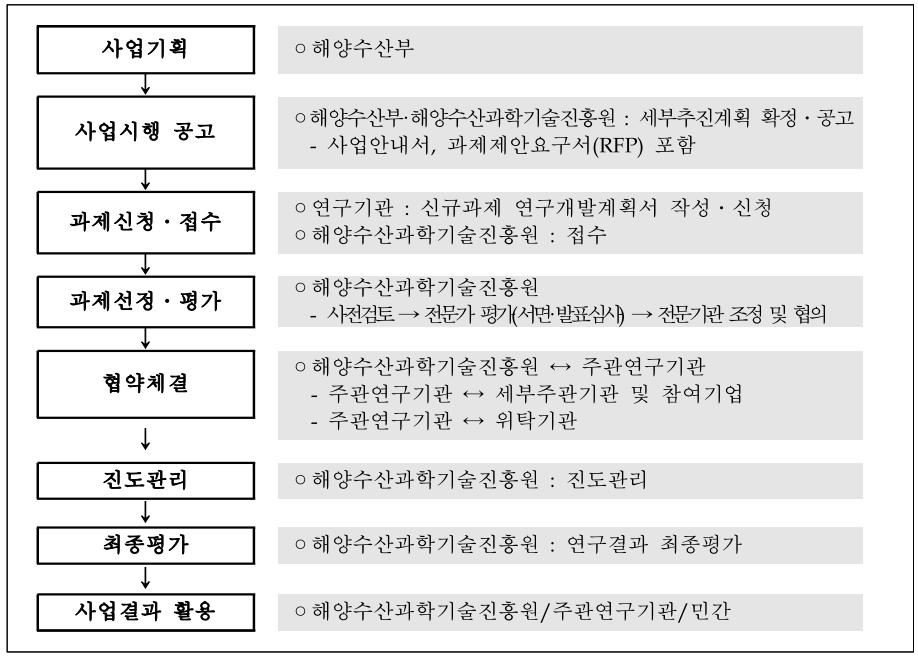

사 업 명
(50)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R&D) (204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3	307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 관리	극지및대양과학연구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R&D)	-	2,500	2,500	2,713		213	8.5

4. 사업목적

○ (**극한지 관측 및 정보처리 기술개발**) 극한지 사물 인터넷(IoET), 모바일 플랫폼 기술과 연계하여 극한지 관측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 및 이를 분석,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제21조(남극연구활동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② 추진경위

- (VIP 지시사항) 기후변화 예측과 미래 자원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인 극지연구에 투자를 확대할 것 ('18.2.24, 남극 세종과학기지 준공 30주년 축하 메시지)
- 다부처공동 사전기획연구 대상선정 및 사전기획 ('18.6.~8.)
-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 및 공동기획연구 ('18.9.~'19.1.)
- 2019년도 다부처 공동사업대상 선정 ('19.2. 다부처 특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1~'25
- 사업규모 : 1개 내역, 1개 과제('22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산·학·연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수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51)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 (R&D) (204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3	308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 관리	극지및대양과학연구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R&D)	-	6,700	6,700	8,604		1,904	28.4

4. 사업목적

- (**북극해 해양 및 해저환경탐사**) 북극해역에서의 자원개발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 환경변화 예측을 위해 해양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및 미래전망 예측, 북극 해저 지질 및 해저환경 변동 등 연구 수행
- (**남극해 해양 보호연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해양보호구역보존조치 등 국제 협약·기구의 과학적 의무 이행을 위한 남극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와 해양생물자원 다양성 연구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자원의 개발),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20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제21조(남극연구활동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남·북극 등 대양진출 확대와 국제 해양 네트워크 확충
- 국정과제(36)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확대
-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방향연구」 수행('14)
-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수립('15)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17~'21)
  ·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17~'21)
  · 남극연구 지평확대 등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18～'22)
  · 기초연구 지원강화,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추진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18~'22)
  · (추진과제 2-2) 극지 과학조사 및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고, 북극진출 등 국익증진
-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수립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48항) 및 동법 시행령(38항)에 따라 매 5년마다 관계부처합동으로 추진
- 「글로벌 이슈대응 극지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완료('19.1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1~'26
- 사업규모 : 2개 내역, 7개 과제('22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참여 시 총사업비의 3/4이내 정부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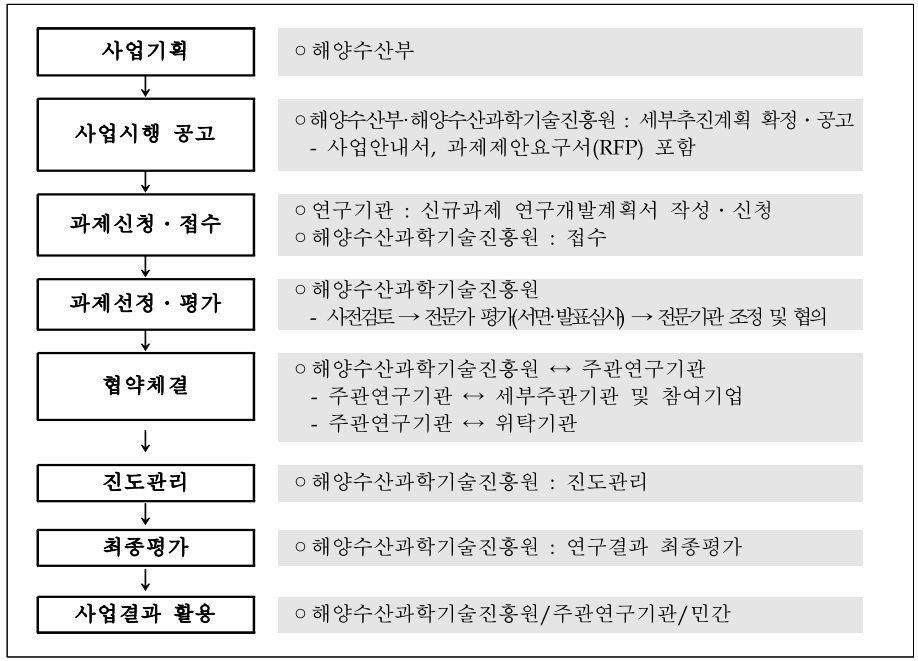

사 업 명
(52) 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R&D) (2043-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3	309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극지및대양과학연구(R&D)	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	-	-	-	2,885		2,885	순증

4. 사업목적

- (인도양 한-미 공동 관측 및 연구) 한반도 주변 강수량·이상수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서인도양 열대용승해역의 해수·해류 및 물리, 생지화학적 특성을 한-미 공동으로 관측하여 북태평양(한반도 주변 및 미국 서부)의 기후 예측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 추진경위

- 17-'19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양국 기후예측에 중요한 인도양 열대용승지역에 대한 연구를 공동 기획
- '18 한-미 공동 연구 기획보고서를 국제 공동 탐사계획인 '국제공동인도양탐사 프로그램'에 제출하여 공식 인증 취득
- '20, '21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사업 참여 의향서·투자 계획을 우리나라에 송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규모 : 1개 과제(신규 1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미정(연구관리전담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53) 북서태평양 온난화 및 태풍 발생 연구 (2043-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3	312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극지및대양과학연구	북서태평양 온난화 및 태풍 발생 연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북서태평양 온난화 및 태풍 발생 연구	-	-	-	2,644		2,644	순증

4. 사업목적

- 북서태평양 따뜻한 소용돌이/저염수 해역에서 해양-대기 조사를 통해 온난화경향을 진단하고,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발생·급강화 요인 규명과 태풍예측기술 개선 연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② 추진경위

- 신규R&D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 ('20.02, 강릉)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획연구 워크숍('20.5, '20.6, 부산)
- 한국해양과기원 연구진 연구방향 제시('20.12, 온라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50억원
- 사업기간 : '22~'26
- 사업규모 : 북서태평양 온난화 및 태풍 발생 연구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 지자체 보조의 경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에 '지자체 보조'로 기재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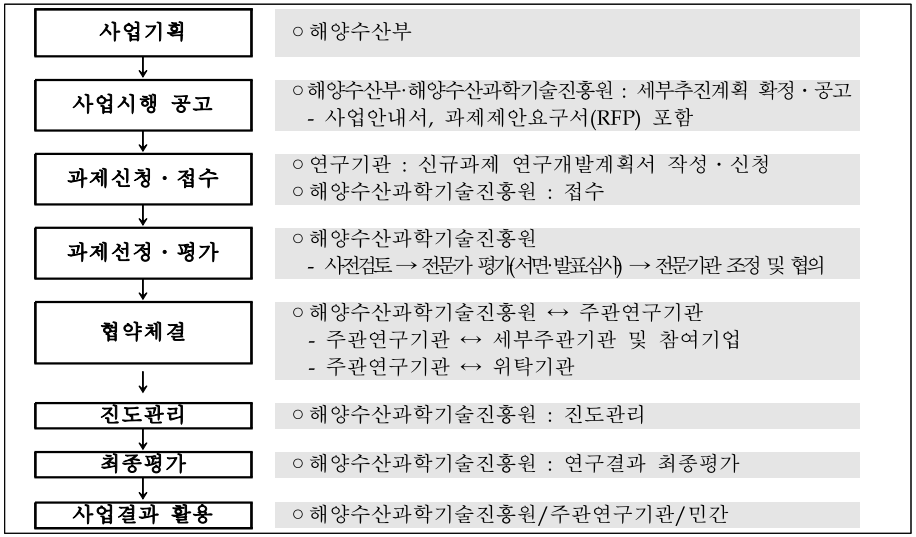

사 업 명
(54)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R&D) (2043-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3	313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R&D)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R&D)	-	-	-	2,625		2,625	순증

4. 사업목적

- (한반도 주변해 해양 기후변화와 생지화학과정 변화 진단·예측 연구)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현상(물리과정), 해양환경(생지화학 물질 순환 과정) 변동 등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주변해역 변동성 규명을 위한 연구
- (한반도 주변해 해양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 예측 연구)

· 환경 시나리오별 생태계 반응·미래 예측을 위한 통합생태계 모델링 적용을 통한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 (기후환경 시나리오에 따른 지표종 생리생태 반응 · 개체군 변동 연구)

· 기후환경변화 시나리오별 지표종(지역 대표종/고유종/외래종)의 생리생태 반응과 분포 및 장기변동성, 변동 과정, 원인과 적응전략 규명을 위한 연구

-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동해 심해생태계 반응 연구)

· 기후변화에 대한 표층 생물생산력 변동과 유기물 수지 변동에 따른 심해생태계 반응 및 생물량(현존량) 유지·조절 기작 연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② 추진경위

- (선행연구) 장기해양생태계연구 수행('11～'21)

* 한반도 연안 3개 해역(동해 후포퇴, 남해 광양만, 제주 연안)을 대상으로 장기모니터링 기반 구축

-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21년~'30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 구현'

* 한국형 해양 기후변화 예측모델의 개발을 통해 한국형 기후변화 영향 분야별 예측모델 확보, 우리 바다에 적합한 장기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이에 따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정책활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5년간)
- 사업규모 : 한반도 주변해역(연안 및 동해, 동죽국해 전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연구
- 사업시행방법 : 출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관 지정공모)
- 사업시행주체 : 미정(공고 후 선정)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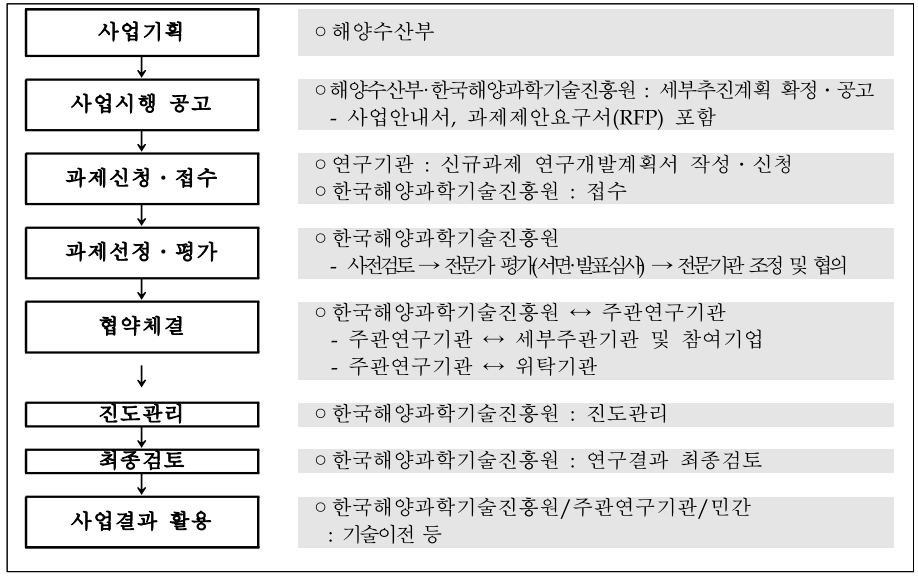

사 업 명
(55)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204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정책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00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해양수산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	11,292	4,234	4,234	1,439		△2,795	△66.0

4. 사업목적

-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및 해양동물 유전자, 단백질 분석을 통하여 인간질환 치료 활성을 지닌 해양단백질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단백질 의약소재를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1조(해양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제32조(해외해양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 수립),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 등)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자원의 개발 등),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11조(천연물과학의 육성)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추진경위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1993~2006 및 2007~2016)
- 해양바이오21사업 기획연구 실시(2003.5)
- '마린바이오21사업' 3개 연구단 연구 착수(2004.10)하고, 해양수산기술진흥원으로 관리업무 이관(2006.8)
- 해양생명자원종합관리 마스터 플랜(2007.12) 및 국토해양부 '해양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수립(2008.10, 국토해양부)
-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후속조치로 해양바이오 R&D 투자 확대(2009.2)
- 「차세대 해양생명공학사업 추진방안 연구」 기획연구('12.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22(일몰)
- 사업규모 : 해양수산바이오 신소재 개발 : 1개 과제 지원(1,43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기업참여 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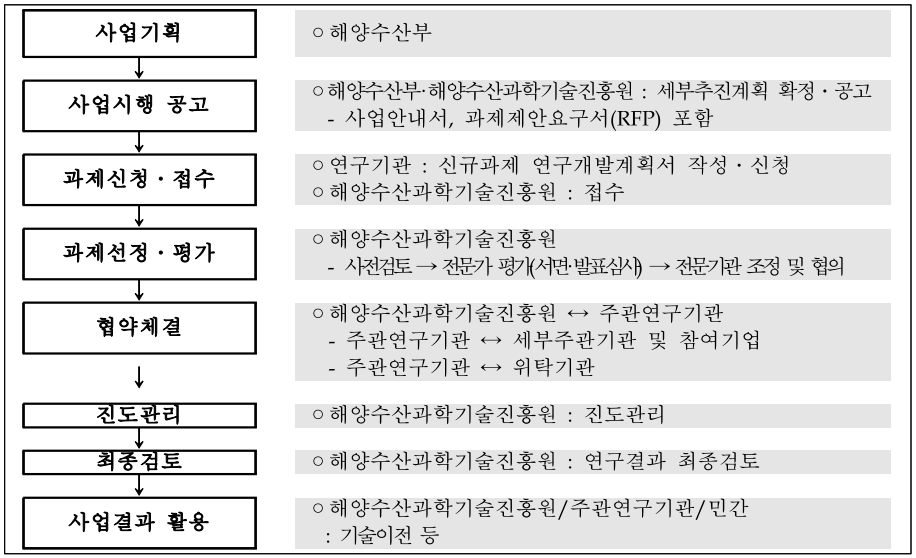

사 업 명
(56)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204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03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8,352	9,795	9,795	8,463		△1,332	△13.6

4. 사업목적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를 개발하고, 기능성, 안정성 평가 및 대량생산 기술 확보를 위한 공정의 표준화, 기능성 검증이 확보된 기술·소재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해양생물자원(식물·동물·미생물·수자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효능·성능을 지닌 전략소재를 개발하고 집중 확보
- (**대량생산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 개발**)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유래 유

용물질의 대량생산 및 고도화를 위해 소재를 표준화하고, 전략소재의 대량 생산 공정 개발

- (**기술상용화 지원**)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용 해양생물 소재의 독성·안정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제품화 과정 지원
- (**해외시장 진출지원**) 해양심층수 기원 미네랄 및 해조류 기반 소재 등 해양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식품·화장품·의료 제품 FDA 승인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1조(해양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제32조(해외 해양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생명공학 육성기본 계획 수립), 제13조(생명공학 육성 시책 강구)

② 추진경위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수립(1993～2006 및 2007～2016, 관계부처 합동)
- 해양생명자원종합관리 마스터 플랜(2007.12) 및 국토해양부 '해양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수립(2008.10, 국토해양부)
-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시 해양바이오 R&D 투자확대 후속 조치 지시(2009.2.10.)에 따라 활성화 방안 VIP 보고(7.17)
- 차세대 해양생명공학사업 추진 방안 기획연구 실시(2012.12)
- 문재인 정부「국정과제 34-2」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과제에 해양바이오 상용화 지원 사업 포함
-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R&D, '04~'21, '18년부터 일몰) 이후 산업소재 확보 및 기 개발된 원료의 실용화 단계 지원을 위해 동 사업 추진('19~)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에 따른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 산업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2023
- 사업규모 : 4개 내역사업(39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공고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진도관리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최종검토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
↓	
사업결과 활용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민간 : 기술이전 등

사 업 명
(57)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R&D) (2044-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05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R&D)	-	9,791	9,791	9,600		△191	△2

4. 사업목적

- (해양생명자원 소재활용 기반구축) 해양생명자원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신약 개발 등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고도화하고 기업 등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② 추진경위

○ 바이오혁신 10대 과제 발표(혁신성장회의, ‘20.1) : 동 10대 과제 중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20.7) ” 의 일환으로 추진

- 부처별 추진해 온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사업을 개편하여 다부처 사업(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5
- 사업규모
  - 해양수산생명자원 소재활용 기반구축 : 5개 과제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기업참여 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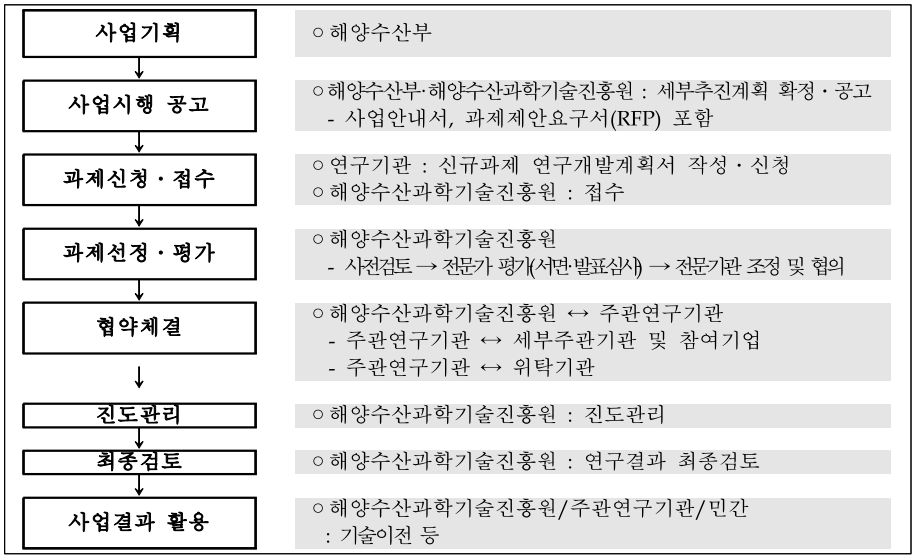

사 업 명
(58) 빅데이터 기반 해양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 개발(2044-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08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빅데이터 기반 해양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빅데이터 기반 해양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	9360	9360	7,999		△1,361	△14.5

4. 사업목적

- (**빅데이터 기반 해양바이러스 제어 및 마린바이오틱스 개발**) 해양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해양환경 내 감염성 바이러스 제어 및 친환경 해양생물 성장 제어 기술 개발, 해양소재(해조류) 유효성 실증지원

  * 미생물(microbe) + 생물집단(biome)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 내 서식하는 미생물군집의 유전체정보를 의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② 추진경위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 신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집중 육성: 해양바이오 산업 전략산업 포함: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11~'20)

-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의 출현에 주목하고, 해양병원체 등을 포함한 해양생명공학 사업의 신산업으로서의 가치 평가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제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

- (스마트 농수산업) 수산양식 환경의 친환경화(폐사율,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6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3개 세부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 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공고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진도관리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최종검토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
↓	
사업결과 활용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민간 : 기술이전 등

사 업 명
(59)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R&D) (2044-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09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해양바이오수소 생산 상용화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바이오수소 생산상용화기술 개발(R&D)	-	3,640	3,640	2,200		△1,440	△40

4. 사업목적

- (**바이오수소 플랜트 운영 최적화 시스템 개발**)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해양바이오수소 실증플랜트 상용화를 위한 플랜트 운영 최적화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기술 상용화
- (**고효율 바이오수소 정제시스템 개발**) 국내 원천기술로 개발된 해양 바이오수소 생산 플랜트의 상용화를 위한 수소 정제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장기 운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대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 제1항 제3호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제4호 '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19.10)

○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20.1, 경제관계장관회의)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09~'20) 사업을 통해 해양 미생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 원리 규명('10, Nature지 게재), 미생물 생산성 개량(야생종 대비 100배 향상), 실험실 규모(6kg/일) 실증, 데모플랜트(1톤/일 용량) 단기운전(10일)실증을 완료하여 TRL 7단계 기술개발 완료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의 안정적·보편적 공급 시스템 확충, 1.수소생산 부문 추출수소 생산 방식 다양화에 일몰 사업(해양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속 기술개발을 통해 상용화된 수소생산 원천기술 국산화 도모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77.4억원
- 사업기간 : '21~'23
- 사업규모
  - 바이오수소 플랜트 운영 최적화 시스템 개발 : 1개 과제 지원(1,700백만원)
  - 고효율 바이오수소 정제시스템 개발 : 1개 과제 지원(5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기업참여 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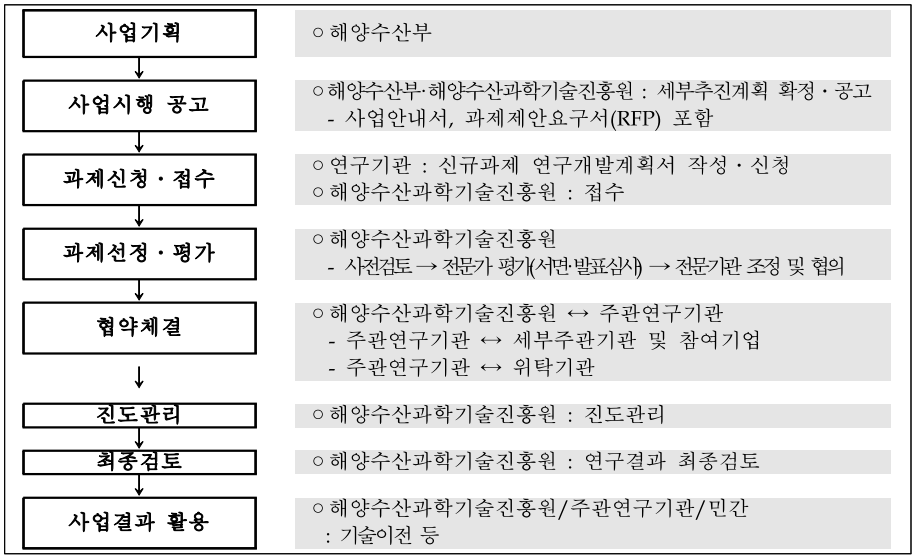

사 업 명
(60)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R&D) (2044-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11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R&D)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R&D)	-	-	-	4,253		4,253	순증

4. 사업목적

- 해양바이오시장 유망소재의 국산화, 탄소저감 바이오 산업소재의 대량생산·표준화 기술개발을 통한 해당 기술개발 정보의 플랫폼 구축으로 해양바이오 분야 산업화 지원 및 시장 창출
- **(해양바이오 국산화 타깃 산업소재 표준화)** 수입의존도가 높은 바이오소재 국산화 대체를 위한 타깃 소재 대량생산 등 공정표준화 기술 개발

- **(탄소저감 바이오산업소재 표준화)** 탄소저감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및 표준화 기술개발을 위한 해양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개발, 메탄자화균 이용 바이오 산업소재 개발
-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타깃 소재 및 탄소저감 바이오 산업 소재 생산 기술, 산업 정보지원을 위한 DB 및 플랫폼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1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해양자원의 개발 등),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1조(해양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 수립), 제13조(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 등)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11조(천연물과학의 육성)

② 추진경위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 (2-4-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서는 제약 바이오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인류 난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확대 및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제시

○ 제3차 생명공학기본계획: 생명공학산업이 향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조성 제시

○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 :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 강국 실현을 위해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 설정

○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 체계적 자원확보 기반구축, 자원 통합관리 및 활용도 제고, 맞춤형 R&D 추진,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19.10.10. VIP 충남 경제투어에서 해수부장관 발표) :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에 '바이오경제를 주도하는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포함, '유용소재 검증기술 개발 및 소재 공급 안정화 도모'를 내용으로 포함

○ 정부 그린뉴딜정책('20.7.14.)
-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20.7.14), 핵심 전략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 제시
- 단기적으로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그린뉴딜 추진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전략

○ 글로벌 해양바이오시장 선점계획('21.2., 해양수산부) : 현재 선도국의 78.6% 수준의 국내 기술을 2030년까지 80%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소재 수입의존도 70%에서 50%로 저감

○ 관련 기획연구 추진
- 해양수산부 기획연구 대상 선정 및 기획 착수('18.7)
- 해양수산 R&D 동향조사('19.4.9. ~ 29.)
- 해양바이오 산학연 협의회('19.9.17.), 해양바이오 공청회('19.10.23.)
-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기술개발 재기획 ('20.07~)
- 기술 수요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1차 조사 '20.9.15.~9.27./2차 조사 '21.1.8.~1.20.)
- 타겟 소재 개발 기술수요 조사 실시('21.1.~2.)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0.10~'21.3, 총 7회)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26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 9개 과제('22년 2개 내역 8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 참여 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바이오 국산화 타깃 산업소재 표준화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700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탄소저감 바이오산업 소재 표준화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53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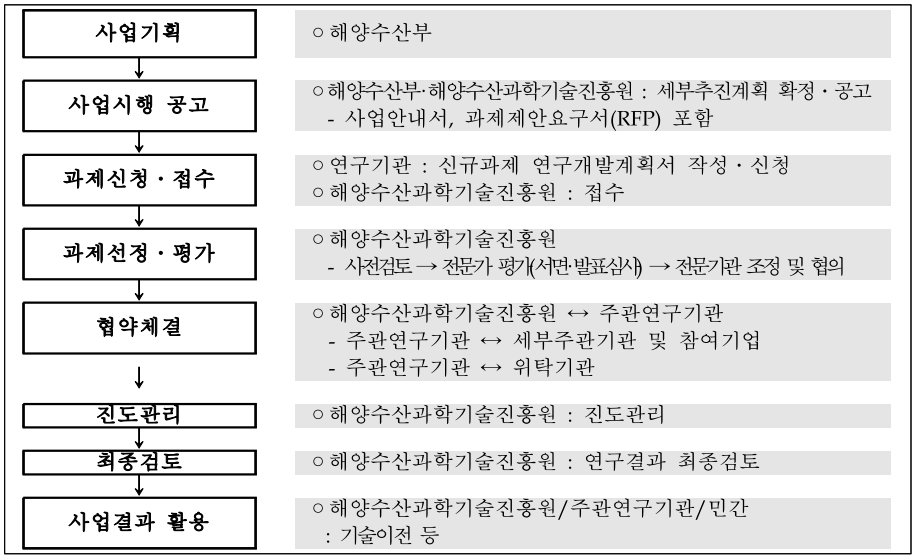

사 업 명
(61)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R&D) (2044-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312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R&D)	-	-	-	5,000		5,000	순증

4. 사업목적

-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한 미활용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바이오기업 산업원료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소재화하여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바이오기업의 산업원료 확보 및 수입원료 대체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생산방법 및 어법·어구·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수산물 등의 인증 및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계,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체계 조성 시책 마련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5년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생명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능성이 확인된 수산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수산식품의 영양·기능성 성분 분석 및 연구·개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 전략 발표('21.1, 해양수산부)
- 2050 탄소중립 전략 발표('20.3, 환경부)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1.7)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FAO 책임있는 수산업 행동규범, FAO 부수어획 관리와 폐기 감축을 위한 국제지침 등 포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7년까지 3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2~'27
- 사업규모 : 국내 해양수산부산물을 활용한 해양수산부산물 가공 및 소재화 전환 기술 및 해양수산부산물 제품화 기술 개발 포함하는 1개의 내역사업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참여 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민간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공고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진도관리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최종검토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
↓	
사업결과 활용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민간 : 기술이전 등

사 업 명
(62) 해양수산바이오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R&D) (2044-4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해양정책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4	406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해양수산바이오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수산바이오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R&D)	-	-	-	500		500	순증

4. 사업목적

- 해양수산 R&D 사업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 및 활용하고 국가바이오스테이션에 연계하기 위한 해양수산바이오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바이오혁신 10대 과제 발표(혁신성장회의, '20.1) : 동 10대 과제 중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20.7) "의 일환으로 추진

- 부처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를 연계하여 흩어져 있는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26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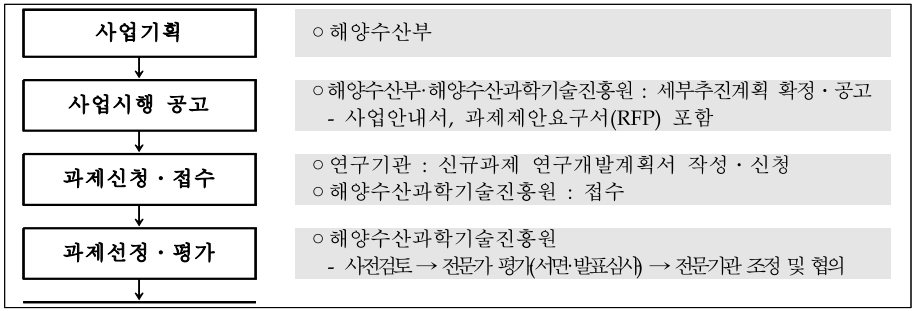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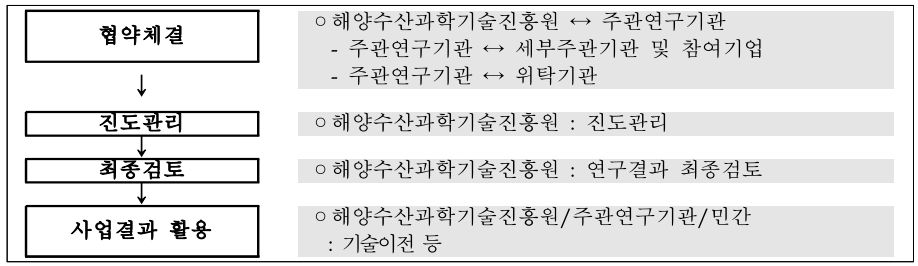

사 업 명
(63)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R&D) (204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5	306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기술역량강화(R&D)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R&D)	12,684	14,060	14,060	5,535		△8,525	△60.6

4. 사업목적

- (**해양산업 성장 기술개발**)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의 R&D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망 기술 발굴 및 육성

- (**해양산업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제품의 시장검증으로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및 시장진출(매출창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 중장기 로드맵」('18.7)
-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 사업」 '19년 일몰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19.8, 중기부)」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19.10, VIP 보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22
- 사업규모 : 성장기술 개발,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2개 내역 23개 과제('22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 참여 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64)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R&D) (2045-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5	306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기술역량강화(R&D)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R&D)	-	3,753	3,753	6,975		3,222	85.6

4. 사업목적

- (**기술창업 Scale-up**)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先민간 투자 유치로 시장성이 검증된 7년 이내 해양수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유망기술 Scale-up**) R&D 연구성과를 보유한 대학, 연구소,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에 적합한 기술로 업그레이드(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 중장기 로드맵」('18.7)
-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 사업」 '19년 일몰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19.8, 중기부)」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19.10, VIP 보고)
-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0.3, 과기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4
- 사업규모 : 기술창업 Scale-up, 유망기술 Scale-up 2개 내역 22개과제 선정 지원('22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 참여 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및 우수 R&D 성과 보유 기업·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65)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사업(R&D) (2045-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5	305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기술역량강화(R&D)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	-	-	2,000		2,000	순증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해 UNESCO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에서 추진 중인 UN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내 국제공동연구 등 지원(국내+국외 기관 간 매칭 전제), 국내 전문가·청년의 국제기구** 참여 및 진출 지원, 중국(칭다오)·인도네시아(치르본)·페루(리마) 공동연구센터*** 운영 등

* UN의 SDGs 달성을 위해 IOC(세계 해양과학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대 추진과제에 대해 약 10년간 총 10억달러(약 1.1조원) 규모)

**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150개 회원국), 북서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6개 회원국), 국제해양학위원회(SCOR/33개 회원국) 등

***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13), 한-페루(중남미)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08/대통령 방중남미 성과사업), 한-인도네시아 해양 협력 양해각서 체결('18, 신남방정책 주요사업)

- **(다자/양자협력)** 정부대표단 및 국내 전문가·청년의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국제기구 참여 및 활동 지원, 중국/인도네시아/페루 현지 해양과학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1조(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기여 및 국내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제기구·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② 추진경위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관계부처 합동)
  -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통한 국격 제고) 페루·베트남 등 주요 개도국과의 양자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지원 추진
  - (주요국과의 녹색 연대 강화) EU, 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안)」('21.3, 과기부):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국과 탄소중립 분야의 협력의제 지속 발굴 및 공동연구사업 추진 확대

-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R&D 강화 로드맵」('21.1, 해수부):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블루카본 등 해양수산 부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의 해양대기청과 해양·대기 관측 정밀도 제고 사업, 온실가스 저감 사업 등 R&D 협력 확대

- 「국제협력 R&D 투자전략」('21.3, 과기부)

- 그린뉴딜 등 국가전략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R&D 연계가 저조 → 국가정책에 연계된 중대규모·하향식 연구 확대 추진
- 그간 우리나라 국제협력 R&D가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국제사회 기여 부족 → 17개 SDGs와 연계하여 위상제고 추진
- 특정국가·선진기술 연구에 편중 →국제협력 R&D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다자협력 확대, 신북방·신남방의 신흥국과의 공동연구 등 교류 강화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2년~2031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 7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국고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6)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 (2045-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5	306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기술역량강화(R&D)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R&D)	-	-	-	4,875		4,875	순증

4. 사업목적

-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매출 확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지원
-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 다변화, 제품 고도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② 추진경위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19.8.14., 중기부)」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19.10, VIP 보고)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년) 발표('21.1, 관계부처 합동)
- 「해양산업 수요 기술개발」 '22년 종료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25
- 사업규모 : 내수시장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지원 2개 내역 19개 과제('22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 참여 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중소·벤처, 중견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7)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구축(R&D) (2046-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00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LNG 벙커링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구축(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LNG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	13,748	3,887	3,887	3,089		△798	△20.5

4. 사업목적

- (**연안선박 맞춤형 LNG벙커링 시스템 개발**) 연안에서 운항하는 LNG 추진선박에 LNG 연료 벙커링이 가능한 맞춤형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체계구축**) LNG 사용 극저온 벙커링 기자재의 성능·안전 평가센터 구축 및 핵심 기자재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지원 기반 마련
- (**LNG벙커링 운영기술 개발**) LNG 벙커링 운영기술 및 운영지원 시스템 개발을 통한 LNG 벙커링 운영체계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항만운송사업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등

② 추진경위
-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6.11)
-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단」구축(단장 : 해수부 차관, '17. 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 ~ '22년
- 사업규모 : 4개 내역사업, 12개 세부과제('20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정부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68) 전기추진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R&D) (2046-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02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7,500	12,734	12,734	2,154		△10,580	△83.1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기추진 차도선 및 도서 지역 전력 공급체계 적용·실증

- (**사업내용**) 연안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및 실증, 이동·교체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및 표준화, 이동·교체식 전원공급시스템 운영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34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58번), 신기후 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61번),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80번)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30년까지 친환경 운송수단을 보급하여 온실가스(GHG) 3,100만톤 감축
- IMO 황산화물 배출가스규제 발효('20.1): 연료유내 황산화물 함유량: 3.5%→0.5%
-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목표: '50년까지 50% 저감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사업」 기획('19.4)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사업」 착수('20.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2024년
- 사업규모 : 내역사업 1개, 세부과제 1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지원 100%, 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및 해운선사,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69) 스마트 해양조사 및 정보 활용 기술개발(R&D) (2046-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04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스마트 해양조사 및 정보 활용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스마트 해양조사 및 정보 활용 기술개발(R&D)	-	7,524	7,524	7,786		262	3.5

4. 사업목적

- (3차원 광역 해수유동 관측 기술 개발) 효과적인 해난대응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격자 해수유동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관측 기술 개발 및 실증('24년까지 주요 1개 해역 대상 시범 구축)
- (정밀조사측량 기술 개발) 항만내 선박으로 인한 미측구역 및 연안주변 수중시설물 조사, 미측구역에 대한 해도 수심보정, 항만 및 연안주변 시설물의 3차원 형상파악을 위한 조사기법 개발·실증
- (해양 GIS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 新 국제표준 S-100 기반의 해양 GIS 핵심기술 국산화·상용화로 위축된 국내 해양정보 기업 비용 저감 및 산업성장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의 과학적 조사 및 기술개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개발 등의 추진)

② 추진경위

<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

○ 세월호 참사 및 낚시어선, 유람선 등의 인명사고* 발생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적시 대응에 대한 국민적·정책적 관심 증대

*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15.9.5.), 유람선 바캉스호 좌초사고('14.9.30.) 등

☞ 해양레저 및 통항 선박 확대로 인한 해양안전의 위험성 노출빈도 증가로 해양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 신속한 실시간 3차원 **해수유동 관측 및 예측정보 생산기술* 및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밀조사측량 기술 개발****을 위한 요구예산 반영 필요

* 서해안 협수로의 경우 세계적 강조류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국지적 소용돌이 등 위협요소를 감지하기 위한 실시간 입체적 관측기술 절실

** 선박 접안을 위한 안벽부근의 해저지형 및 수심,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파제제, 항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등은 해양조사선이 진입하기 곤란하여 해저의 정확한 형상이나 수심파악을 위한 새로운 측량기법 필요

< 해외기술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따른 국산화 시책 강화 >

○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등 법정계획에 따라 해양장비 개발 및 국산화로 해양과학기술 고도화 및 세계 시장 선점 추진 중

* 첨단해양장비 개발 및 국산화로 해양과학기술 고도화 및 세계 시장 선점 추진

** 수중관측, 측량 목적의 첨단 장비, 시스템 개발로 수중장비시장 육성

☞ S-10× 등 해외장비와 SW를 이용,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의 기술과 기준은 아국이 선도**하고 있으나, 그 정보의 획득 및 활용하기 위해 생산하고 가공하는 **핵심(원천) 기술은 외국기술에 전적으로 의존**

- 아국에 특화된 해양안전 및 해양영토에 대한 실시간 예보정보와 예측기술 개발과 **해양데이터 및 처리도구의 기술독립을 위한 예산요구 반영 필요**

* 해양정보 자료처리 및 해도제작 만으로도 초기도입비용 175억원 및 연간 39억원 유지비용 해외 유출(자체 기획연구 조사)

** 국제수로기구는 차세대 수로정보표준 테스트베드를 우리나라(국립해양조사원)에 설치, '19년 해수부 공무원을 기술분야 부국장으로 영입

< 정보생산 및 관리 트렌드 변화 >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실시간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 요구의 다양화**와 정보의 **융복합·빅데이터·시계열 정보제공 가능**

* 5G 통신망, AI, 빅데이터, 무인관측장비, e-navigation의 LTE-M

☞ 사회 시스템의 복잡화와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취득 및 생산의 주기가 **Stop-Go의 체계(과거)**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의 향상을 통해 **Real Time 실시간 제공체계로 변경** 필요
- 미래 해양정보 기술, 기준 등을 아국이 선도하고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요구예산 반영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21년까지 기 투자액 75억원)
- 사업기간 : '21 ~ '25
- 사업규모 : 내역사업 3개, 세부과제 3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지원 100%, 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연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주관)유에스티21, (참여)인하대 등	100	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70)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R&D) (2046-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05
명칭	해양산업 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R&D)	-	6,468	6,468	8,615		2,147	33.2

4. 사업목적

- (**해양수산산업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동 내역사업은 해양수산 미래유망 분야 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자재의 개발 및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임
  * 핵심기자재 13종(선박 항해장치, 수산기자재, LNG 소재기술 등)의 국산화 개발 및 실증
- (**해양수산산업 기자재 표준화 기술개발**) 동 내역사업은 해양수산 기자재 관련 기업니즈 요구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신산업 성장 기반 확충과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임
  * 해양수산 4대 전략분야 핵심기자재의 국가표준(KS) 개발 및 등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활용촉진)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수산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18.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수립
  · 해양수산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자재 국산화 지원
- ('19.10)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 수립
  ·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 개발 및 표준화 지원 추진
- ('21.4)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신규과제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450억원(국비 388억원)
- 사업기간 : '21~'26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5개 과제('21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71)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R&D) (2046-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06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	4,805	4,805	18,630		13,825	287.7

4. 사업목적

- **(해양플랜트 해체 실증)**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의 실적(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해양플랜트 해체 실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연구개발, 현장적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한-인니 해양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16.5, 인니 대통령 방한)

* (주요 내용) 해양플랜트 유지 & 보수 & 해체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제2조 5호)

- 新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해양플랜트 분야 협력(센터 구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및 협력센터 개소를 위한 이행협정 체결('19.7) 및 센터 개소&운영('19.7~)
- 인니 측에서 공동연구(인니 지역의 해양플랜트 3기 해체) 제안('19.12)

* '19년 9월 9일 인니 해양조정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10기 플랫폼 해체 지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25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세부과제('21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72)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R&D)(2046-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07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R&D)	-	900	900	1,200		300	33.3

4. 사업목적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 4개 해양치유 시범센터의 주요 해양치유자원 활용 기반기술 및 연계 제품 개발을 통해 초기 운영기반 마련 및 지역 해양치유관련 기관 역량 확보 기여

○ (최적환경 모델 적용 해양치유센터 운영시스템 개발)

- 실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는 해양치유 시범센터의 해양치유자원 운영시스템 구축(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 해양치유자원의 가공·보관 장비의 최적 환경 모델 개발 등 해양치유자원 관리·운영시스템 개발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 해양치유시설(해양치유센터)의 도입 시설,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및 해양치유 공간 활용 관리 가이드라인 도출 등 추진

○ (ICT·IOT·VR 기술 활용 해양치유 상용화 기술 개발)

- ICT·IOT·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해양치유시범센터 방문고객의 맞춤형 해양치유서비스 제품 개발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시행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보전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② 추진경위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추진을 위해 제6차 다부처특위 선정 사업과 연계, 산림청-농진청-해수부 부처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사업 추진
  · 투자당국의 부처간 협업사업 적극 발굴 독려 및 협업 사업 별도심의방향('20.2., 혁신본부)에 맞추어 사업 기획 착수
  · 부처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산림청-농진청-해수부)
    * 내역별 협업 체계 다각화 및 내역간 전주기 협업 강화를 통해 성과 도출 극대화 구조 마련
- ('19.12.20) 산림청-농진청-해수부 실무진 협의
  · 농진청, 해수부의 참여 의사 확인 및 참여 분야 논의
- ('20.03.04) 산림청-농진청-해수부 신규협업사업 공동기획 의견수렴
  · 부처 간 역할분담, 목표·지표 설정, 성과 활용 방안 등을 구체화
- ('20.03.17) 산림청-농진청-해수부 부처협의체 Kick-off 회의
  · 통합관리형 연구관리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 구성 및 운영 방안,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실적 확보 및 기획보고서 완성 등 논의
- ('20.04.10) 기획보고서 초안 취합 및 작성
  · 부처별 역할에 따라 산림청 총괄 기획보고서 초안 작성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2025년(총 5년)
- 사업규모 : 신규과제 8개(66억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구관리 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출연 10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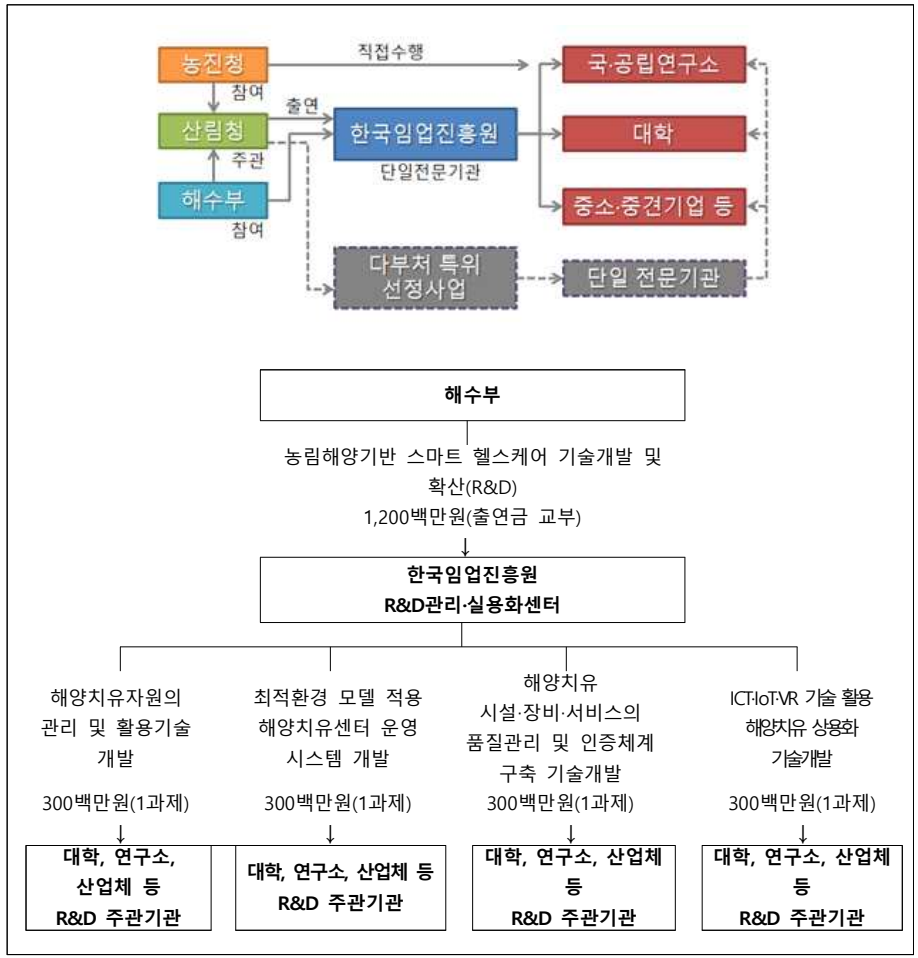

사 업 명
(73)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R&D) (2046-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08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	-	-	-	2,000		2,000	순증 (신규)

4. 사업목적

- (레저장비 제조) 국내 연구기관에서 한국형 친환경 레저선박 표준선형 등 표준화 연구개발, 중소조선업계에 설계기술 지침* 제공·실용화를 통해 외국 중고제품으로 잠식된 레저선박 시장에서 국내제품 신뢰도 제고 및 가격 경쟁력 확보

  * 설계 제작도면, 기술지침서, 시제품 등 공개 및 조선업계 기술보급

- (수중레저 안전) 국내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로보틱스를 융합한 수중 다이버 안전 모니터링 및 지원기술*을 개발하여 레저활동 다이버의 안전사고 예방역량 강화

  * 수중 센싱기술 및 근접이동 드론을 활용하여 신체건강 모니터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및 제35조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 「해사안전법」 제4조
-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지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 지원을 하여야 함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연구개발, 현장적용 등)을 추진할 수 있음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전기획) 신규 R&D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20.4~9)
- 지역 R&D 수요조사(KIMST)를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해양레저 분야 R&D 연계 추진방안 관련 정부, 지자체 및 연구기관 논의

* 정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지자체(포항시) 연구기관(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포항구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R&D

① **첨단해양산업 R&D 센터**('22.3 준공,연면적 9,450m²)를 **구축**하여 해양레저 **연구개발 수행**
② 포항·부산 권역에 **수상·수중 테스트베드를 건립**하여 **실증연구 진행**

○ (기획 연구) 연구개발 핵심과제 도출, 예산규모 및 연구추진 방법체계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

* (기간) '20.7~'21.3, (수행)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소조선연구원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25억원 (국고 : 325억원)
- 사업기간 : 2022 ~ 2027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및 참여기관 공모 예정(미정)
- 사업 수혜자 : 레저선박 건조 중소조선사, 수중레저 교육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미정	75% 이내	총 사업비의 3/4이내 정부매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74) 머신러닝 기반 해저면 특성 분류 기술개발(R&D) (2046-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09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머신러닝 기반 해저면 특성 분류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머신러닝 기반 해저면 특성 분류 기술개발(R&D)	-	-	-	2,325		2,325	순증

4. 사업목적

- (머신러닝 기반 해저면 특성 분류 기술개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공간의 합리적 활용 및 보전에 필요한 초정밀 해저면 특성 분류 및 피복정보 생성 기술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개발 등의 추진)

② 추진경위

< 해양이용 생태적 이용 필요성 증대 >

○ 해양공간계획법('19.4월 시행)에 따라 해양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하는 이용·개발을 기본원칙으로 강조

- 선점식 해양개발을 지양하고, 해양공간의 **통합적·참여적 관리**를 위한 **생태과학적 기초정보로서 해저면 특성 정보의 중요성** 증가

○ **해양공간과 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평가 및 분석기술** 필요성 증대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그린뉴딜**(그린에너지) 추진에 따른 **해상발전단지** 등 해상 친환경 에너지 개발 증가로 **적지선정에 필요한 정보 수요 확대**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로 제고의지 발표(2017)

⇒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대한 전반에 대한 **해저면 특성 정보**의 수요·필요성 증가

- **해저면 특성 정보는** 수심, (특이)지형 뿐만아니라 해저면 상부, 천부의 저질·피복, 생태 서식지 및 해저면 하부 지층의 수평·수직적 상태에 대한 정보로 해상 시설물 건설, 연근해 양식, CO_2 지중저장 연구개발, 석유가스자원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기초 정보

* 해저면 피복 분류 : 자연상태 해저면의 물리적인 상태를 분류한 것을 의미

* 해저면 피복도 : 물리적인 상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해저면 특성 정보를 지도로 표현한 주제도

< 해저탐사의 효율성 및 경제성 획기적 제고 >

○ **기존 해저면 특성 정보 취득방법**은 피스톤코어, 드릴링 등 **높은 단가와 긴 시간**이 소요되어 관할해역 전반에 **고밀도 자료획득에 한계**가 있으며 **고중량의 탐사장비를 해저에 낙하** 후 회수하는 기간 **안전사고 위험** 내포

⇒ 기존의 수심측량 등 **음파를 이용한 탐사장비 관측자료**에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저질 분류 기법을 적용하여 수심측량과 동시**에 해저 저질 등 **해저면 특성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사의 경제성 비약적 제고**

- 국립해양조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수행한 **기존 측량·탐사에 적용**하는 경우 단기간에 고밀도·고해상도의 해저면 특성 분류 및 피복정보를 생성하여 해저 피복도 제작 가능

< 경제성 분석 >

○ 현재 퇴적물 시료 정점당 채취 및 분석에는 약 24만 원의 비용 발생 및 해양안전사고 위험 내포

- 국립해양조사원의 경우, **연간 5,000~40,000㎢ 면적에 대해 1,500~2,000개의 퇴적물 시료를 취득**하고 있음
-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멀티빔 음향시스템을 이용한 해양저질 정보생산 시 1,000m 기준 **동일면적에서 950~7,600만 개의 저질정보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2~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추진 경과 >

○ (**선행연구**) 3D 해저 정밀영상화를 위한 복합 탄성파탐사 및 실규모 고분해능 처리기술개발('20~'24, 과기부)연구를 수행하여 고밀도·고해상 해저면 특성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기반기술인 고분해능 처리기술을 개발함

○ (**기획 경과**) **신규 R&D**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의견 수렴**('19.07)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획연구 수행**('19.1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마린리서치(주) 등)
- **민간 기업 참여의향서 수렴**('21.3, 8개 기관)

* 정부 정책 및 국정과제에 기자재 국산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19년 對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기자재 분야에서도 국산화의 중요성이 부각('19.7)

○ 「해양수산산업 기자재 국산화 사업 기획연구」 추진('19.11~'20.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21년까지 기 투자액 -억원)
- 사업기간 : '22 ~ '26
- 사업규모 : 내역사업 1개, 세부과제 1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지원 100%, 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2년 공모예정	100	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전문가판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최종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평가
↓	
사업결과 활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민간

사 업 명
(75)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R&D) (2046-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12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R&D)	-	-	-	2,429		2,429	순증

4. 사업목적

- (해양기후변화 통합관측·장기전망 기반 구축)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및 이행점검 지원을 위해 과학적인 해양 기후변화 통합관측·장기전망 정보 생산·제공
- (월파 정량 관측 기술 개발) 월파 피해에 취약 연안 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월파 관측을 위해 간접관측과 현장관측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실시간 월파 관측 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해양 기후변화 통합관측·장기전망 자료 부족 >

○ 기상청은 기후변화 전망 주관기관이나 현재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대기 예측자료(기온, 기상 등)만 제공**하며, 해양·수산 분야 관련 정보 미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기후변화 관련 중요한 해양변수들(용존산소량 등)**은 기상청 관할이 아니며,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필수 정보 제공 절실**

○ 해양 기후변화 기초정보 및 가공정보를 **담당기관별로 개별 관리**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상호 측정값 검증이 불가능**하고 대표성 부족

*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관측소는 해수면 상승을 관측하는 주요 관측소이나 해양 기후변화 관련 변수들은 포괄하지 못하여 통합적인 관측 및 분석이 어려움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전 지구 기후 예측모델을 운영 중이나 **해당 국가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한 **미래 해양 기후변화**를 전망하는 **정량적 정보가 부재**함

* 모델 개발 국가의 해역 위주로 기후예측모델의 정확도가 높고 우리 연안은 저해상도로 직접 활용이 어려움

- **우리나라 해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정밀·정확한 해양기후변화 전망 예측모델 구축 필요

< 한반도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기후변화 자료 부재 >

○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변동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변수별 자료검토를 통한 해양기후변화의 종합적 판단 필요**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슈퍼태풍 발생 등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재난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연안포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연안 인구**는 13,991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27.0%**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전 지구 규모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보다 한반도 주변해역 인근에서의 해양기후변화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부족

○ 전 지구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지만, **정확도와 상세성 측면에서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기후변화 **특성 표출에 한계**

- 기상청의 기후변화 보고서는 대기와 해양을 모두 다루고 있으나 해양에 대한 비중이 적고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등은 각 기관의 주요 관측항목만 상세히 기술하여 물리, 화학, 생물 및 수산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곤란

-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보고서인 'IPCC 평가 종합보고서'의 경우 장기 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상황 예측결과 및 대응방향 등을 주로 수록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의 기후 변동 특성을 표출하기에는 부족**
- **한반도의 해양환경변화에 특화**된 해역별 **고해상도(시·공간적) 및 관측자료 중심**의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가 필요**함

○ 주변국보다 선제적인 현황도 발간을 통해 **해양기후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과학기술적 타당성 확보** 및 **기술선도 필요**

-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에 최적화된 해양기후변화 현황도의 주기적 발간 필요

< 연안역의 개발 및 이용에 중요한 요소인 월파 피해자료 및 관측기술 부재 >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의 온도 상승**은 태풍 대형화 및 기타 강풍발생의 강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이에 따른 **연평균 유의파고의 증가** 등 월파로 의한 연안역 구조물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증가

- 매년 월파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분류가 되어있지 않고 별도의 통계자료가 생산되지 않아**, 연안 월파 위험도 평가 및 위험지구 선정 평가 등을 위한 **관측장비가 부재함**
-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 재해에 대비한 월파 관측은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해안구조물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자료는 육안으로만 확인**

○ 국내에서 너울에 관한 정보제공 기관은 현재 기상청이 유일하며 고파랑과 관련된 경보기준은 확정되어 있지 않음

-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 너울 및 월파에 대해 사전 구조적 예방조치(안전펜스, 해안구조물 설치 등)를 수행하며 **사후 대응을 위주로 수행**

○ 기존의 월파 계측 방식인 현장관측 또는 수리모형실험의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며, 현상을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월파는 구조물의 조건 및 외력조건(파고, 주기, 파향)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단순 계산에 의한 개략적인 월파량의 추정은 가능하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현장관측 및 수리모형실험이 필수**적임
- **현재 활용중인 월파량 산정 경험식***은 외력에 따른 변화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계수들을 사용하여 **일괄적인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실 해역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함**

* EurOtop에서 제공하는 산정식 또는 미 육군공병단의 C.E.M(Coastal Engineering Manual Outlet) 기법

- **월파 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비용 및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관측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現 기술로 실 해역의 월파 현상 관측 시, 파랑 관측(구조물 전면 파고계 설치) 및 월파량 관측(구조물 배후의 월파수조 설치)이 필요하여 비용 및 시·공간적인 제약이 큼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21년까지 기 투자액 -억원)
- 사업기간 : '22 ~ '26
- 사업규모 : 내역사업 2개, 세부과제 2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지원 100%, 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2년 공모예정	100	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전문기관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최종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평가
↓	
사업결과 활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민간

사 업 명
(76)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및 활용 기술개발(R&D)(2046-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13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및 활용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치유 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R&D)	-	-	-	2,405		2,405	순증

4. 사업목적

○ (해양치유자원의 효능 검증 및 활용기술 개발)

- 해양치유자원의 효능성분에 대한 분석과 효능발현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자원 활용의 원천 기술 확보 및 해양치유자원의 인체/환경 안전성 및 생애주기 관리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시행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보전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신산업혁신전략('19.10)」에서 '해양치유' 산업을 해양레저관광 4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20.1) 및 시행('21.2)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양치유산업 육성근거를 마련함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20.2)」에서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 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 제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2026년(총 5년)
- 사업규모 : 신규과제 4개(289.5억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구관리 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출연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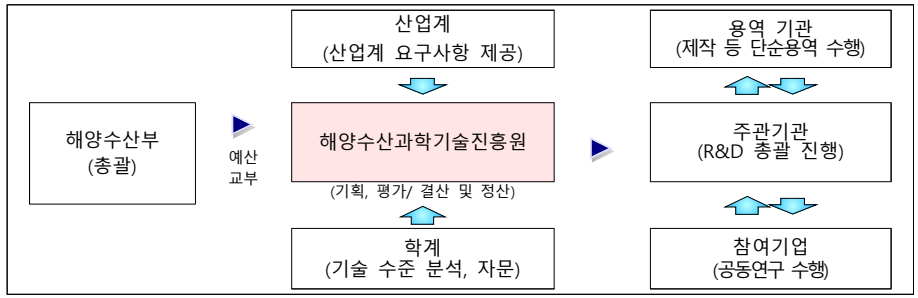

사 업 명
(77)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 (2046-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14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	-	-	-	6,833		6,833	순증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친환경선박의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의 육·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 보급기반 확보
  * 조선.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수부와 산업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①핵심·설계기술, ②시험평가·실증기술, ③해상실증, ④ 표준화 및 법제도 개선 등 4대 전략분야 개발
-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및 설계기술 개발**) 선박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폐열 및 잉여전기 재활용(선박 자체활용, 선박↔항만)기술 개발
-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무탄소연료(암모니아연료전지 및 엔진, 배터리 등)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준마련, 육상 시험·평가 설비 및 기반 구축
- (**친환경 연안선박 개발 실증 및 보급 기반 확보**)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시스템(연료전지, 전동기, 제어·모니터링, 전력변환장치 등)의 연안선박 적용을 위한 시제품 개발 및 해상 실증
- (**친환경선박 국제대응 및 국내외 표준화, 제도개선**) 국산 무탄소연료 추진시스템(암모니아 내연기관, 연료전지 등)의 상용화를 위한 국내 법제도 개발, 국제협력 등을 통한 국제표준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 제8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1조 등

② 추진경위 : 최근 IMO(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에 따라, 조선·해운 산업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정책 마련
  * 황산화물 배출 규제('20년 시행, 황산화물 배출량은 기존 3.5%에서 0.5%로 강화), CO2 저감(2050년까지 선박 배출 GHG 저감율을 2008년 대비 50%로 제시)

- 향후 친환경선박 개발에 100억달러(한화 12조원) 이상 연구개발 예산이 소요되고 이 중 60~70%가 기술 인증기준 마련, 실증 등 실용화 과정에 소요될 것을 전망(IMO)함에 따라,
- 친환경 선박 시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관련 新산업을 육성하여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540억원(국비 1,935) / 해수부 711.75억원(국비), 산업부 1,223.25억원(국비)
- 사업기간 : '22~'31년('21.6 예타통과)
- 사업규모 : 4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선박 기자재업체, 중소형 조선소, 중소형 선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업무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과제 기획 및 확정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RFP 도출 부처 : RFP 확정
⇩		
② 수행기관 공모.선정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③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협약 : 전문기관 ↔ 수행기관 사업비 지급 : 부처 → 전문기관 → 수행기관
⇩		
④ 사업단장 임명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부처(전문기관) ↔ 총괄주관기관
⇩		
⑤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사업단	전문기관/사업단장(PM 포함)
⇩		
⑥ 연차평가 (중간 및 단계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사업단	사업단장 : 자체점검 전문기관(평가단) : 연차/중간/단계평가
⇩		
⑦ 최종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사업단	사업단장 : 자체점검 전문기관(평가단) : 최종평가
⇩		
⑧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사업단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 ↔ 수행기관
⇩		
⑨ 성과관리 및 활용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사업단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		
⑩ 사후관리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료징수, 성과활용평가 등)

사 업 명
(78) 내항선박 연료전환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R&D) (2046-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17
명칭	해양산업육성및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내항선박 연료전환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내항선박 연료전환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	-	-	-	4,354		4,354	순증

4. 사업목적

-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소형 레저어선 분야의 탄소 제로화를 위해 수소연료 추진 9.77톤급 선박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
- ①소형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국산화, ②수소추진 9.77톤급 어선 실증, ③저탄소 레저어선 생산 기술 개발
-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연안여객 분야의 탄소 중립사회 구현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 연료 소모량 절감 기술 및 표준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①연안 여객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연료 소모량 감축 기술 실증, ②연안 여객 4종 표준 모델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추진경위

-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15.12, 파리협정, 친환경 추진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3억 1,500만 톤) 목표 등)
-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21.1, 해수부, ①-4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촉진, ②-4 친환경선박 경쟁력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전략」 ('21.3, 과기장관회의, 친환경 선박 분야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 제시)

* 중소형 레저 어선의 친환경화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수소연료 기반 어선·레저선박 개발) 및 중소형 연안 여객 분야의 친환경화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신재생에너지 기반 한국형 중소형 선박 및 미세먼지저감기술개발) 반영

- (선행연구) 어업비용 절감을 위한 융합기술(에너지 절감형 어선) 개발을 추진했으나, 어업 분야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온실가스 감축)는 부재한 상황이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선박 연료 감소 기술은 국외사례는 다수 존재하나, 국내는 개념 연구 단계로 상용화 지원에는 한계점이 존재
- (기획 경과) 신규 R&D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20.11)

* 친환경 선박 활성화를 위한 기술세미나(해양정책관, 약 20개 기관 참여) / 연안여객 및 어선분야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 기획 필요 요청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획연구 수행('21.1~, 목포해양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 전남도, 목포시 등 지자체 참여방안 협의 및 어업인 설문조사 수행('21.2~3)

*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남도와 목포시의 공동 사업 참여 협의 중(지자체는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 마련 및 실증 선박의 운항 담당)

** 전남도와 목포시에서는 동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비 90억을 지원하기로 확약

- 민간 기업 참여의향서 수렴('21.3~4, 現 35개 기관)
- 핵심 아이템 도출 및 예산 규모, 연구추진 방법 등의 기획연구 완료(~'21.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2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미정(연구관리전담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출연연, 어민, 여객선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79)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2046-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사안전국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000	2046	318
명칭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해양수산산업진흥(R&D)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	-	-	2,352		2,352	순증

4. 사업목적

- (내역사업명)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 내용	40인승 350kW급 소형 수소추진선박 건조·운항, 육상 실시간 모니터링, 정량화된 안전기준 마련 등 수소선박 全주기 표준 모델 제시
최종 성과물	① 수소추진선박 개념정립 및 설계/건조/실증 ② 수소추진선박용 디지털트윈 개발 및 구축 ③ 해상환경 적용 수소추진선박 시뮬레이터 개발 및 구축 ④ 경제성 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

	⑤ 수소추진선박 선진 안전·환경시스템 구축
성과물의 활용성	○ 소형수소선박 안전성 및 친환경 영향평가 모델 개발 및 표준화 제시 ○ 안전무결성(SIL) 기반 수소추진선박 선체 설계기술 개발을 통해 조선 해양분야 안전확보, 환경오염 대응 및 신기술 주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연구개발, 현장적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탄소중립 요구 >
○ 국제해사기구(IMO)는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목표 수립
○ 우리정부는 파리협정('15년 체결)에 따라 2030년까지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7%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마련하고 해운부문의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추진 예정

< 정책변화 >
○ 정부는 그린뉴딜 및 탈탄소화를 위해 범부처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
○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친환경선박법」 시행('20.1)
- 기존연료(디젤 등) 또는 저탄소연료(LNG 등) 선박만으로는 미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 수소 등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 불가피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수부 105억원 [국고 : 105억원, * 2021년까지 기투자액 : 0억원]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미정(연구관리전담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조선 및 기자재관련 중소중견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_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8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3046-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6	300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정보화	2,526	2,167	2,167	1,696		△471	△21.7

4. 사업목적

○ 수출입검역, 수산물검사, 안전성조사, 품질인증 등 업무 지원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및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체계 구축

○ 수산물 안전 관계법령·제도 변경·환경변화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지속적인 기능 개발로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 및 민원서비스 제고

○ 각종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사이버보안 테러,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정보통신 보안체계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관리 및 이용)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및 제28조(파견검역), 고시
-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품질검사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② 추진경위

-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구축(2002)
- 수출수산물 가공・시설 등록관리시스템 구축(2003)
- 정밀/무작위표본검사 분류 및 기능 확충(2004~2005)
- 검사정보시스템기능 확충 및 검사지식관리시스템 구축(2006)
- 수산검사정보시스템 기능 확충(2007 ~ 2008)
- 수산물 검사・검역정보시스템 기능 확충(2009 ~ 2010)
- 소금검사정보시스템 및 검사관 자동지명제 구축(2011)
- 현장검사검역 모바일 시스템 재구축(2012)
- 수산물검사정보 주전산장비 교체(2013)
- 유기수산물인증 처리시스템 구축(2013)
- 지리적표시업무 전산시스템 신규 구축(2014)
- 통합품질인증 관리시스템 구축(2015)
- 검사정보 기능개선 및 Ative-X 제거사업(2016~2018)
-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 개편 및 고도화(202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7 ~ 계속
- 사업규모 : 수산생산물 안전성 조사, 품질인증, 원산지 단속 등 10여개 단위업무 시스템 운영, 본원, 14개 소속지원 정보화 업무 지원 및 행정정보망 운영·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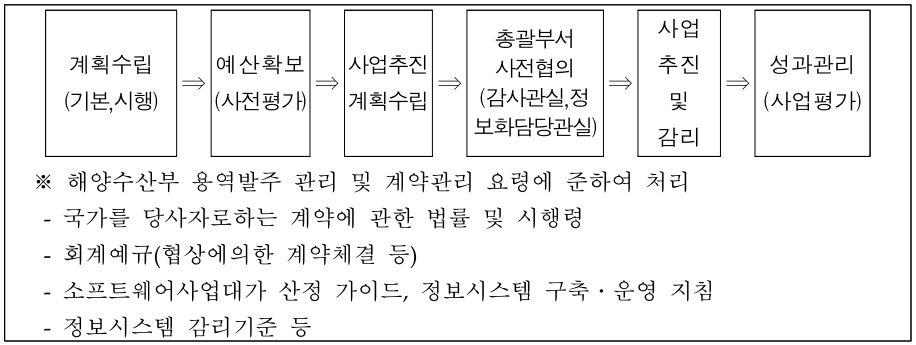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 용역발주 관리 및 계약관리 요령에 준하여 처리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회계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 등)
-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사 업 명
(81) 어업협정이행 (31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0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어업안전지도강화	어업협정이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어업협정이행	3,088	3,745	3,745	13,105		9,360	249.9

4. 사업목적

- (정부간 입어협상)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및 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정부간 원활한 어업협정 이행을 도모
- (민간어업협력사업)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어업자원 보존 및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어장청소 실시, 중국 불법어구 철거, 서해상 수산자원조사 및 수산종자방류 지원 등 민간 협력체계 강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일 어업협정(조약 1477호), 한·중 어업협정(조약 1567호), 한·러 어업협정(조약 1061호) 이행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

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제13호

법 제86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정부 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

-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수산물유통시장·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 어선을 지정하고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략)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② 추진경위

- 한·일 어업협정 체결('98.11)에 따라 한·일 중간수역 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
  · 2000년 한·일 중간수역 내 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민간어업협력 추진, '07년부터 한·일 중간수역 어장청소사업 개시
  · 2008년 12월 한·일 어업협상에서 동해 중간수역 어장청소 확대실시 합의 및 한·일 의원 간 논의
- 한·중 어업협정 체결('00.8)에 따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합리적 이용 도모, 조업질서 유지 등 어업분야 상호 협력 이행
  · 2004년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 간 안전조업 등에 관한 약정 체결, 한·중 잠정조치수역 어장청소 추진키로 합의('11.10), '14년 한·중 협정수역 어장청소사업 개시
-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 범장망 철거 합의('16.12.30)에 따라 '21년부터 우리 EEZ내 설치한 범장망 강제 철거 추진
- 중국 해경법 시행('21.2)에 따른 서해상 해양영토 주권 확보 방안보고('21.4,BH)
- 한·러 어업협정 체결('91.9)에 따른 양국 수역 상호입어 허용,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 수산투자분야 논의 등 어업분야 상호 협력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사업규모 : 정부간 어업협상 및 민간어업협력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및 (사)한국수산회,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수산회	100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제13호
한국수산 자원공단	100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관리기관 지정)

7. 사업 집행절차

○ 정부간 매년 개최되는 한일, 한중, 한러 상호 입어조건 협상 등 입어교섭 사업은 직접수행

○ 민간어업인간 협력을 위한 사업은 민간수산단체인 (사)한국수산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교부·집행

○ 민간어업협력사업 중 서해 수산자원조사 및 수산종자방류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교부·집행

사업계획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 (한국수산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개산급 지급 (해양수산부) ⇒ 국고보조금 집행, 사업결과보고 (한국수산회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 정산·확정 (해양수산부)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제13호

*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업 명
(82) 어선안전조업지원 (3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어업자원정책관	-	100	103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2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어업안전지도강화	어선안전조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어선안전조업지원	16,350	19,103	19,103	18,436		△667	△3.5

4. 사업목적

- (인건비)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 해상교통관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국 21개 안전조업국(232명) 및 사회복무(60명) 경비 정부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수협의 어선안전조업본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경상비) 전국 21개 어선안전조업국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운영·관리 소요 경비 지원
- (사업비) 전국 21개 어선안전조업국의 해상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설·장비 교체, 기능 유지 및 송신소 이전 등 소요 경비 지원

* 장비교체(SSB 송수신기, 원격관제시스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고추파출력계, 발전기 등), 송신소 이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선안전조업법」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및 제138조(사업)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

② 추진경위

- ('66년 경제장관회의) 「'65년 한일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안전조업지도 업무수행을 수협 어업무선국 전담 및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도록 의결
- ('00년 재정경제장관간담회)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지원방안으로 정책 사업인 어업무선국에 정부예산 지원 확대 의결
- ('19년,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어선 안전관리의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6년～계속
- 사업규모 :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20개 어선안전조업국 및 송수신소 등 85개 시설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선안전조업본부)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협(안전조업본부)	10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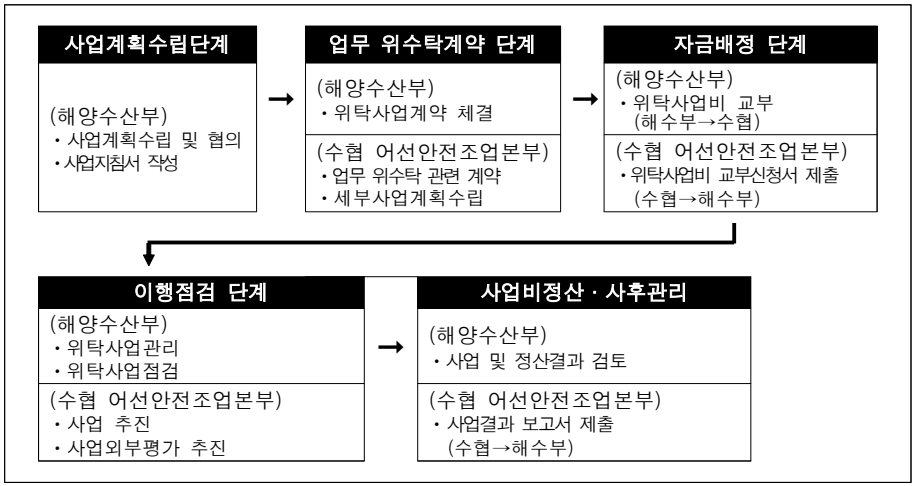

사 업 명
(83) 어업지도관리 (31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	100	103
명칭					해양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3
명칭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어업안전지도강화	어업지도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어업지도관리	3,614	70,374	70,748	143,637		73,263	104.1

4. 사업목적

- (어업지도선 건조) 어업질서확립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 대체 및 신조를 건조하여 국내·외 어선 불법어업지도·단속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구축) 한·중 공동대응체계를 위해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임
- (불법어업 근절홍보 등)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어업관리단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선 지정관리, 지도단속공무원 활동비, 어업질서확립 평가 및 워크숍,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중대위반 중국어선 몰수·폐선) 몰수대상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사건 종결 시까지 계류 및 폐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스마트불법어업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불법어업 지도·단속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시·감독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통계·분석이 가능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운용하려는 것임
- (원거리해역대응 시범사업) 대형어업지도선 도입 전 접경수역 등 원거리해역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및 어업분쟁 방지 효과 사전 검증을 위해 민간 어선을 활용하려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 어업인 단체 지원
- 수산업법 제92조(포상) : 어업질서 확립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 포상
- EEZ어업법 제3조(적용범위) 제2항 :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때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차 한·중 어공위에서 「IUU 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을 채택('15.10.30)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무어선 몰수·폐선, IUU 어업 공동단속 시스템 구축,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조기 정착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가어업지도선은 최초 '66년부터 '99년까지 517억원 투입, 20척 확보
- 한·일/한·중 어업협정발효('99.1.22/'01.6.30)로 우리 관할해역이 약 4배 확대됨에 따라 '02~'06년까지 33척으로 확충
- '09년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조사선을 인수하여 34척으로 확충
- 중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당·정·청 협의('14.12.17)
- 대검 주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관련부처 협의('14.12.23)
-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와 불법어선 근절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합의('15.5.27)
- 국내 조선경기 활성화 및 국정과제 62-2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를 위해 신조 6척을 확보하여 40척으로 확충('16~'19)
- '20년 한국판 뉴딜사업 중 그린뉴딜사업으로 대체(8척) 및 신규(2척) 협의(~'24년)
- 중국 「해경법」 발효('21.2)에 따라 서해에서 한·중간 어업갈등 발생 시 우리 어선의 안전 조업권 보장과 우리 EEZ 수호를 위해 어업지도선 확대 배치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불법어업 홍보 등, 중대위반 불법 중국어선 몰수·폐선,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어업지도단속 강화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동·서·남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

○ 건조계획수립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건조계약 체결(조달청) → 건조공사 → 준공 및 취항

□ 불법어업 홍보 및 근절근절 사업

○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수립(해양수산부) → 세부사업추진계획수립(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및 정산(해양수산부)

□ 중대 위반어선 몰수·폐선

○ 계획수립(해양수산부) →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어업관리단) → 검사 지휘 하에 어선몰수(어업관리단) → 사업추진 정산(해양수산부)

□ IUU어업 공동단속 시스템 구축

○ 계획수립(해양수산부) →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어업관리단) → 사업추진 및 정산(어업관리단)

사 업 명
(84)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31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어업자원정책관	-	100	103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4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어업안전지도강화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 100%	

3. 예산 총괄표(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1,292	2,277	2,277	1,977		△300	△13.2

4. 사업목적

- (장비지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구명·소방 등 어선설비·장비 지원
- (안전교육)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사고유형별 사례, 사고시 대응요령, 항법 등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교육 실시(연 4시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안전장비지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 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 안전조업교육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안전조업교육),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② 추진경위

- 안전장비지원 : 어선사고율 저감을 위한 어선사고 종합대책 마련(장관보고, '14.4.4), '15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신규 예산확보(12억원)로 소형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구명·항해 등 안전장비 지원 추진
- 안전조업교육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시('72), '20년 예산 사업부터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이관(소득복지과→어선정책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안전장비지원('15년~계속), 안전조업교육('12년~계속)
- 사업규모 : 안전장비지원(연안어선 37,785척), 안전조업교육(어업인 약 6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수협중앙회(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안전장비지원(자치단체 보조), 안전조업교육(수협중앙회 위탁)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제16조 및 제17조
수협(안전조업본부)	10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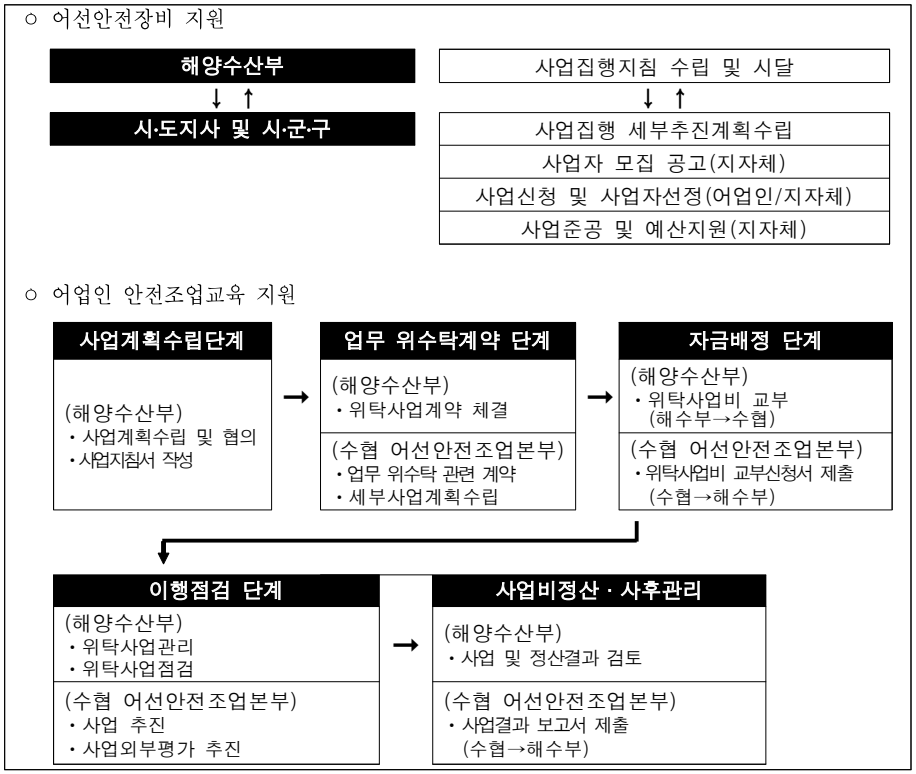

사 업 명
(85)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31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어업자원정책관		해양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5
명칭	수산자원관리 및 육성	어업안전지도강화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36,512	37,047	37,047	38,362		1,315	3.5

4. 사업목적

-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 외국어선 감 시·감독 및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사항 이행 지원
- 국내·외 불법어선 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첨단 지도·단속장비 확충 지원
- 어업지도선의 해상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승선원의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 지원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법 제72조(어업감독공무원), 수산업법 제73조(사법경찰관)
-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 어선법 제4장(어선의 검사)
-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제8장 지도선 수리
- 어선법 제3조(어선의 설비),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선박설비기준
- 「2002년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 수산진흥종합대책('99.10, '05.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 및 「어업지도선·수산과학조사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추진계획 수립」('21.8)

② 추진경위

- '66년부터 연·근해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조업활동 지도 및 감독
- '99년 한·일/ '00년 한·중 어업협정에 의거 자국 EEZ와 과도수역 내 입어하는 외국어선의 조업활동 감시·감독
- 한·중 과도수역 자국 EEZ 편입에 따른 관리수역 증가('05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6년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어업지도선(40척) 운용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서·남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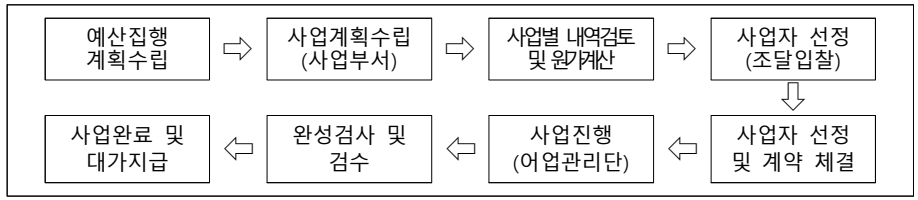

사 업 명
(86)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313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농림수산

구분	수산・어촌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6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어업안전지도강화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5,176	3,423	3,423	3,553		130	3.8

4. 사업목적

- (목적) 우리어선(391홍진호) 북한 나포사건('17.10)을 계기로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어선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운영·관리)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 송수신 등을 위한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직원 인건비, 통신망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
  ·(장거리위치발신기기 보급) 근해어선(자망 등 7개 업종) 700척을 대상으로 해상디지털통신망을 활용하여 위치발신 등을 하는 장거리위치발신기기의 보급을 위해 국고보조 지원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어선의 실시간 위치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및 제26조(재정지원)

② 추진경위

- '17.10.27 : 홍진호 북한 나포사고 발생
- '17.11.2 :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논의
- '17.11.14 :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시 391홍진호 북한 나포 관련 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수역 관리를 위하여 어선위치를 상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지적
- '17.12 : 연근해위치확인시스템 '18년 예산 100억 반영 및 사업 추진
- '19.12 : 장거리 위치발신기기 개발
- '20.12 : 세계 최초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구축 완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년~ 계속
- 사업규모 :
  · 해상통신망(D-MF/HF) 운영·관리 : 통신망 인건비,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 장거리위치발신장치(D-MF/HF) 보급 : 700대
  ·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사업 수혜자 : 연근해 어업인을 포함한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협중앙회	국비 100% (민간위탁보조)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안전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계획수립	해양수산부	추진계획 수립
⇩		
② 계약체결	해양수산부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후 계약체결
⇩		
③ 시스템 운영	해양수산부	안전모니터링시스템구축 유지보수 운영

○ 보조(민간경상(장거리위치발신기기 보급), 민간위탁(해상통신망(D-MF/HF) 운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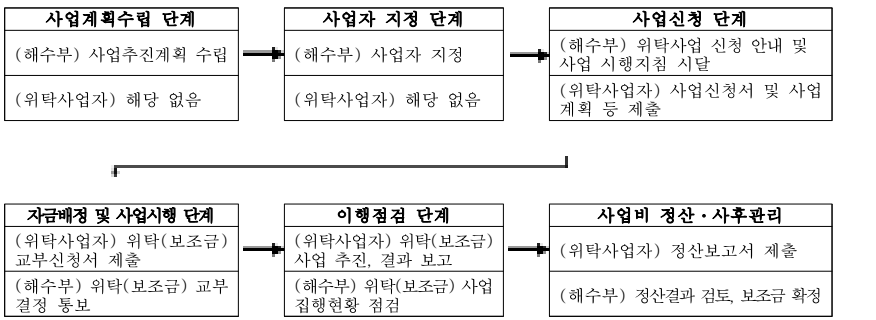

사 업 명
(87) 어업지도정보화 (3133-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500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어업지도정보화	어업지도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어업지도정보화	609	184	184	192		8	4.3

4. 사업목적

- 어업지도·감독 및 지도선 운항 업무 관련 각종 자료관리, 통계작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유지관리 및 재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신규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직원들이 PC, 프린터 등 사무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자동화 및 방송통신 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시행 : 2005년 5월 동·서해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시행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업무절차개선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05년)
- 어업지도관리시스템 구축(1차) 사업('06년)
- 어업지도관리시스템 구축(2차) 사업('07년)
- 어업지도관리시스템 개선 용역('09년)
-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ISMP 수립 사업('18년)
-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20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동·서·남해어업관리단(조업감시센터 포함), 지도선 40척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서·남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내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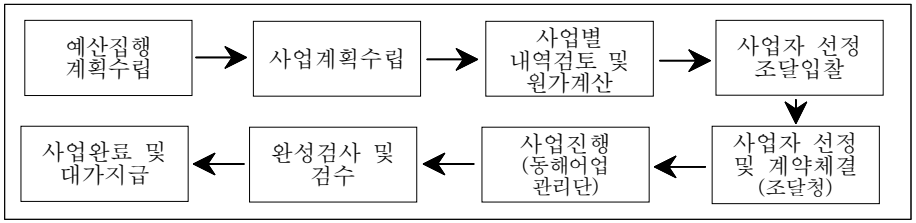

사 업 명
(88)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34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1
명칭	어입인소득안정지원	수협경제사업활성화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2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협지도경제 사업활성화	12,706	12,746	12,746	4,552		△8,194	△64.3

4. 사업목적

연번	내역사업명	목적 및 내용
1	단위수협감사지원	○수협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단위수협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받아 정부를 대신해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감사 수행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91개 단위수협, 487개 상호금융점포, 22개 위판장 등에 대하여 회계, 재산, 조직 업무 집행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감사 실시
2	어업경영통계조사	○'62년 수산청에서 처음 시작한 어업경영조사가 '76년 수협중앙회로 위임되었으며, 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05년부터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 근해 15개 업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한 조업, 수지, 재무상황 등을 매년 50명의 조사원을 투입하여 매달 조사 실시
3	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지원	○단위수협에서 운영 중인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진단 실시하고 있으며, '08년부터 교체 및 보수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 지원(국비 50%) -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하(A~E) 또는 급유탱크 노후화 및 매립지역 침수 등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교체 및 보수 실시
4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정부에서 '08년부터 구축 운영한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수협중앙회의 "바다로 시스템" 포함하여 재구축('15)하면서 '16년부터 수협에 시스템 운영비 지원 - 산지위판정보, 계통판매고정보 등 위판정보 및 산지조합 창고 물동량 현황, 재고 현황 등 이용창고 정보 등을 관리하여 수산정보포털(www.fips.go.rk)을 통해 정보 제공
5	유류구매정보 시스템구축	○「어업용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면세유류 취급 시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상시 감시, 통계분석용 DB 구축, 어업용 기자재 관리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09년부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 - 최근 원인불명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1년 재구축을 위한 ISP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1년 120백만원 반영)
6	어촌계통계조사	○ 어촌사회의 고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 등에 대비 수산정책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계 현황 자료가 부재함에 따라 어촌계 통계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통계진흥원 '18), 통계 컨설팅(통계청 '19~'20) 등 실시 완료 - 어촌계 2,039개 대상 어촌계 기본사항, 계원현황, 운영현황, 시설현황 등 조사 추진(신규, '22년~)
7	남북수산협력 연구과제 지원	○ 남북한 해양환경, 수산분야 등을 조사하여 향후 통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자료 구축 필요 - NLL 대응, 북한의 조업실태, 중국과의 협력사업 현황, 북한 해역 수산자원 및 기반시설 조사 추진(신규, '22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통계법 제7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관리기관이 제13조제1항과 제33조에 따라 매입·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통계법】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02.8)하고, 경영진단('02.11~'03.4)을 실시 한 후 '03년부터 경영진단 결과를 기초로 부실규모에 맞는 자금 지원 시작
  * 경영개선자금 : 2,899억원('03~'12, 종료), 부실수협구조조정 : 1,968억원('04~'14, '16까지)
- 어업경영조사(정부통계)를 수협중앙회에 대행함에 따라 '어업경영통계조사' 사업을 '05년부터 지원하고, 단위수협의 추가부실 방지 및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해 '단위수협 감사지원' 및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지원' 사업을 '08년부터 지원
- 일선수협 비리근절 대책사업으로 일선수협의 경제사업 추진체계 전산화를 위해 '일선수협통합전산망구축(바다로시스템)' 사업 지원(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 '14~'15년/30억원)
- 정부에서 구축·운영한 유통정보시스템을 수협중앙회 바다로시스템으로 이관 운영('16년)함에 따라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으로 '16년부터 지원
-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 분리에 필요한 수금채 발행(5,5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 사업으로 '17년부터 '21년까지 지원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 재구축 추진('21년, ISP 수립 용역추진)
- 어촌계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어촌사회 고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 등에 대비 수산정책 기초자료 및 귀어·귀촌의 나침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촌계 통계조사 예산 지원 추진('22년~)
- 남북한 해양환경, 수산분야 등을 조사하여 향후 통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자료 구축 필요('22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규모 : 단위수협 감사지원(91개 단위수협), 어업경영통계조사(근해등 16개 업종), 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지원(3개소), 유통정보시스템(1개 시스템), 어촌계 통계조사(2,039개 어촌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사업 수혜자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단위수협, 어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협중앙회	20%	보조금법 시행령[별표 1]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수협중앙회	100%	
수협중앙회	50%	
수협중앙회	100%	
수협중앙회	47.6%	
수협중앙회	100%	
수협중앙회	100%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시행지침 수립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	
사업시행계획 수립·보고	수협중앙회→해양수산부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	
사업 직접수행 및 사업자 선정	수협중앙회
⇩	
사업 추진 및 국비 집행	수협중앙회
⇩	
사업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	
사업 결과 및 집행 정산 보고	수협중앙회→해양수산부

사 업 명
(89)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34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2	300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산업창업투자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4,770	4,750	4,750	5,525		775	16.3.

4. 사업목적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정·운영하여 해양수산분야 창업자 및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육성
-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해양수산분야 유망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콘테스트 개최 및 후속지원 실시
-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에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저리의 자금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 기술과 지식, 경영 역량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를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로 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경영체 간 상호교류활동 및 농어업인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 제20조

제17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유효기간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수산 연관산업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14.1.16 장관 방침)

◈ 수산 연관산업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① 수산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1:1 맞춤형 창업·투자지원시스템 구축 (지자체 해양바이오센터 등 활용), 수산창업경연대회 개최
② 시장수요 중심의 마케팅 지원, 품질검사 등을 완료한 수산 수출품에 부착하는 수출용 통합 인증제 개발
③ 수산 전문 투자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자협의회 구성, 민간의 수산분야 투자 경험 축적을 위해 정부의 수산모태펀드 출자 지속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09) 이후 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금 운영(수산분야도 지원대상에 포함)
- '13.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분리된 이후 현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의 농업 및 수산 분야 분법(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사업규모 : 창업투자지원센터 7개소 운영('22년 1개 신규지정), 창업콘테스트 1식, 사업화자금지원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민간위탁, 이차보전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창업투자지원센터), 민간위탁(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협은행(이차보전)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업법인, 수산연관 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수협은행	이차보전100	수산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훈령) 제2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역별 창업지원센터>

수행기관 신청 (지역특화센터) ⇒ 신청기관 평가, 선정 (해수부, 운영위원회) ⇒ 프로그램 시행 (수행기관) ⇒ 수행결과 평가, 성과측정 (해수부, 운영위원회)

<수산분야 창업콘테스트>

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 사업위탁 (해수부→창업투자전담기관) ⇒ 콘테스트 시행 (창업투자전담기관) ⇒ 시상 및 후속지원 (해수부, 창업투자전담기관)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지원 >

대출신청 (신청업체) ⇒ 사전신용평가 (수협영업점) ⇒ 기술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여신심사 (수협 심사부서) ⇒ 대출실행 (수협영업점)

사 업 명
(90) 국제수산기구 분담금 (3531-53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31	530
명칭	원양협력	국제협력협상	국제수산기구분담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제수산기구분담금	2,137	2,948	2,948	2,497		△451	△15.3

4. 사업목적

- (국제수산기구분담금)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의무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12개 국제수산기구의 분담금 납부
  -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 국제포경위원회(IWC)
  -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 ·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 ·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 ·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 ·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 우리나라가 가입한 12개 국제수산기구 협약에서 분담금 의무 납부 규정 명시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협약 10조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협약 11조
- 국제포경위원회(IWC) 예산 규정 F항
-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협약 9조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협약 제11조
- 남동대서양수산위원회(SEAFO) 협약 제12조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협약 제15조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협약 제12조
-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협약 제7조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협약 제8조
-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예산 규정 제6조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협약 제13조

② 추진경위

○ 국제수산기구 가입과 동시에 회원국으로서 분담금 납부 의무를 가짐

- 매년 기구에서 정하는 분담금 규모에 따라 납부

○ '10년 이래 계속 사업('10년 이전에는 외교부가 납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0년~계속
- 사업규모 : 12개 국제수산기구 의무 분담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분담금 확정	국제수산기구	각 기구 재정 규칙에 따라 분담금 확정
⇩		
② 분담금 통보	국제수산기구	각 기구 사무국이 분담금 인보이스 발행
⇩		
③ 인보이스 접수	해양수산부	분담금 인보이스 접수
⇩		
④ 분담금 납부	해양수산부	분담금 납부
⑤ 송금 증서 제출	해양수산부	분담금 납부 증서를 각 사무국에 제출

사 업 명
(91) (총액)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R&D) (3602-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02	100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	(총액)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총액)국립수산과학원 인건비(R&D)	44,210	47,270	47,270	47,515		245	0.5

4. 사업목적

- 국립수산과학원(소속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의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항(소속기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추진경위

- 1921.5 수산시험장 설립
- 2002.3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2006.1 책임운영기관(연구형)으로 지정·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21년 ~ 계속
- 사업규모 : 공무원·청원경찰의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92)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3618-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00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3,412	3,605	3,605	3,619		14	0.4

4. 사업목적

- 국립수산과학원(소속기관 포함)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항(소속기관)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추진경위

- 1921.5 수산시험장 설립
- 2002.3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2006.1 책임운영기관(연구형)으로 지정·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21년 ~ 계속
- 사업규모 : 조사·시험 및 연구개발 등 수행을 위한 (총액)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93)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R&D) (3618-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01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	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공익요원경비(R&D)	19	34	34	34		-	-

4. 사업목적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대상)

② 추진경위

- 1921.5 수산시험장 설립
- 2002.3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2006.1 책임운영기관(연구형)으로 지정·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규모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94)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3618-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50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비총액)국립수산과학원 기본경비(R&D)	1,089	1,042	1,042	1,187		145	13.9

4. 사업목적

-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소속기관 및 수산과학조사선의 운영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제4항(소속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추진경위

- 1921.5 수산시험장 설립
- 2002.3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2006.1 책임운영기관(연구형)으로 지정·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21년 ~ 계속
- 사업규모 : 조사·시험 및 연구개발 등 수행을 위한 (비총액)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95)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R&D) (36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1	301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지원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R&D)	31,986	30,166	30,166	31,078		912	3.0

4. 사업목적

- (수산연구시설 관리)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수산시험 연구 및 기술 개발·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및 인프라를 확충
- (선박유지비) 수산자원·해양환경·기후변화·적조 등 조사·연구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해 수산과학조사선의 운항·관리를 지원
- (수산과학관 운영)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과정과 미래상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해양수산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연구 성과 등을 확산·홍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연구실 안전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시설물 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과학관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수산과학관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규정」(해수부 훈령 제342호)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95호)

② 추진경위

- 본원 연구시설 등이 30년을 경과한 노후시설로 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 등을 보완하고,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개보수 공사 추진
- 국립수산과학관 개관('97) 및 (사)한국수산회 위탁 관리('05)하고, 관람료는 무료('12)로 운영
- 수산자원연구, 해양환경조사, 기후변화, 적조 등을 위해 수산과학조사선 13척 운항 및 시설장비유지, 선박 정기검사, 선진화 기술 조사, 보험가입 등 운영 관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49 ~ 계속
- 사업규모 : 국립수산과학원(본원·소속기관 16개, 20개소 산재)의 연구·부대시설, 수산과학조사선 13척 및 수산과학관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1내역 : 수산연구시설 개보수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 내용
① 현장 수요조사	수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사업수요조사 * 전년도 상·하반기(2회)
⇩		
② 사업 기본계획수립	수산과학원	◦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예산 재배정 - 원장결재 및 예산 및 보수조정심의회 개최
⇩		
③ 설계 및 사업추진	본원 및 소속기관	◦기본·실시설계 ◦시설 공사계약 및 공사 진행
⇩		
④ 집행실적 점검 및 하반기 수요조사	수산과학원	◦상반기 집행실적 현장 점검 ◦긴급 보수, 태풍피해 등에 의한 추가수요 조사
⇩		
⑤ 예산 추가 재배정	수산과학원	◦추가수요 제출 기관 등에 재배정 - 원장결재 및 예산 및 보수조정심의회 개최
⇩		
⑥ 공사 준공 및 준공 검사	본원 및 소속기관	◦사업별 공사 추진 및 사업비 집행
⇩		
⑦ 평가 및 환류	수산과학원	◦집행 결산, 성과평가결과 BSC 반영

< 2내역 : 선박유지비 >

과학조사선별 공사 및 물품 수요 조사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계약 체결(구매 발주) ⇒

공사 준공 및 물품 납품 ⇒ 준공검사 및 검수 ⇒ 사업비 집행

< 3내역 : 수산과학관 운영 >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	⇒	조달계약 요청	⇒	규격공개 및 검토
입찰 공고	⇒	제안요청서 교부 및 입찰	⇒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	협 상	⇒	계약 체결

사 업 명
(96)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R&D) (363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1	301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지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립수산과학원 수입대체경비(R&D)	55	55	55	55		-	-

4. 사업목적

- **(수탁연구과제 지원)** 수산 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국가, 지자체, 유관단체 등이 의뢰하는 수탁과제 관리
· 연구비 중 일반관리비(또는 간접비)를 국고세입하고 세출예산으로 대체 편성, 집행함으로써 일반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최근 3년간 평균 20건(약 15억원) 규모 외부 수탁과제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국고금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 기획재정부 연구개발과-256('09.5.18) 간접비 직접사용 여부 질의 회신
  * 국가기관의 수탁연구비 중 간접비 직접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수입계상이 전제되어야 하고, 계상된 당해 수입의 사용을 위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제2항 및 동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 2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입대체경비'로 활용 가능

② 추진경위
- 2010년까지 수탁과제 간접비 수입을 현금으로 직접 집행(기관 관리)
-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입의 직접사용 지적
  * 수탁과제 간접경비는 국고에 세입처리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이후 간접비 국고세입 및 2011년도 수입대체경비 예산 신규 편성 및 집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사업규모 : 1개 과제(본원 및 소속기관 16개소 수탁과제 관리비) × 55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97) 수산시험연구(R&D) (36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2	300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연구	수산시험연구(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수산시험연구(R&D)	32,553	39,899	39,899	45,848		5,949	14.9

4. 사업목적

-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개발·활용함으로써 국가 수산정책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
- **(수산의 미래 성장 산업화 연구)** 동 내역사업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산업화를 위해 친환경스마트 수산 기술, 고부가 양식종자 품종 및 고품질 사료와 수산물 소재를 개발하고 양식생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추진을 지원하는 것임
-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관리 연구)** 동 내역사업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관리 기술 선진화 및 국가 수산자원 정책 지원을 위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및 관리기술 고도화, 유용 수산생명 자원 확보 및 수산 어업기술 기반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기후변화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 동 내역사업은 해양환경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산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산분야 기후변화 및 이상 해황 피해 대응·활용기술 개발, 연안어장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연구)** 동 내역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해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조사, 수산물 영양기능성 성분분석,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산생물 질병관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수산자원, 환경, 위생 조사 등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조사, 연구)을 과제의 연구항목으로 수행하는 주요과제 목록

법정조사 수행 항목	근거 법령
○ 근해어업 자원 조사 ○ 연근해 어업자원 평가 및 관리 연구 ○ 원양어업 자원평가 및 관리 연구 ○ 동·서·남해·제주 연안어업 및 환경생태 조사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 시행령 제25조
○ 독도 및 심해 생태계 수산자원 조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고래류 자원 및 생태 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 해양 포유류 혼획저감 기술 연구 ○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및 어구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64조의3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 어장환경모니터링 ○ 갯벌 어장환경모니터링 ○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도 평가	어장관리법 제6조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7조
○ 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 및 수산자원 조사	내수면 어업법 제5조 및 해양수산부훈령 제183호
○ 한국근해 해양변동 모니터링 및 생태계 특성 연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적조 예찰예보 및 피해대응 기술 연구	적조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적조구제물질·장비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
○ 해파리 모니터링 및 대책반 운영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연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2
○ 수출패류 생산해역 및 수산물 위생조사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 제71조, 제76조, 제 115조
○ 수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영양성분 평가 연구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시행령 제25조
○ 양어용 배합사료 기술개발 및 안전성 연구	사료관리법 제21조, 제22조, 사료검사기준 규칙
○ 수산생명자원 확보·분석 및 통합관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

○ 수산유전자원의 탐색 및 활용 ○ 해수 수산생물 종 보존 및 복원 연구 ○ 담수 수산생물 종 보존 및 복원 연구	조,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생명공학 육성법 제13조
○ 수산생물 질병 특성 연구 등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조
○ 기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5조 수산업법 제50조

② 추진경위

- 본 사업은 1921년 국립수산시험장 설립과 더불어 수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국가수산정책을 지원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어 왔음
-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에 부합코자 수산분야 R&D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회복연구 등 세부사업 4개를 1개의 "수산시험연구" 사업으로 통합('10. 4)

  * 수산자원회복연구/첨단양식기술개발/수산환경관리체제 구축/수산생명공학 기술개발 ⇒ 수산시험연구

- 그간 전 세계의 수산여건 변화와 수산정책 및 현장요구에 능동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의 수산분야 R&D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자체 "중장기연구 종합계획('11~'15년)"을 수립하여 8대 전략사업으로 추진
- 이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년)" 및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년)"과 연계한 국립수산과학원 "제2차 중장기연구 종합계획('14~'18년)" 및 "제3차 중장기연구 종합계획('18~'22년)"을 수립하여 4대 전략방향으로 변경 추진 중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21~계속
- 사업규모 : 4개 내역사업 72개 과제 수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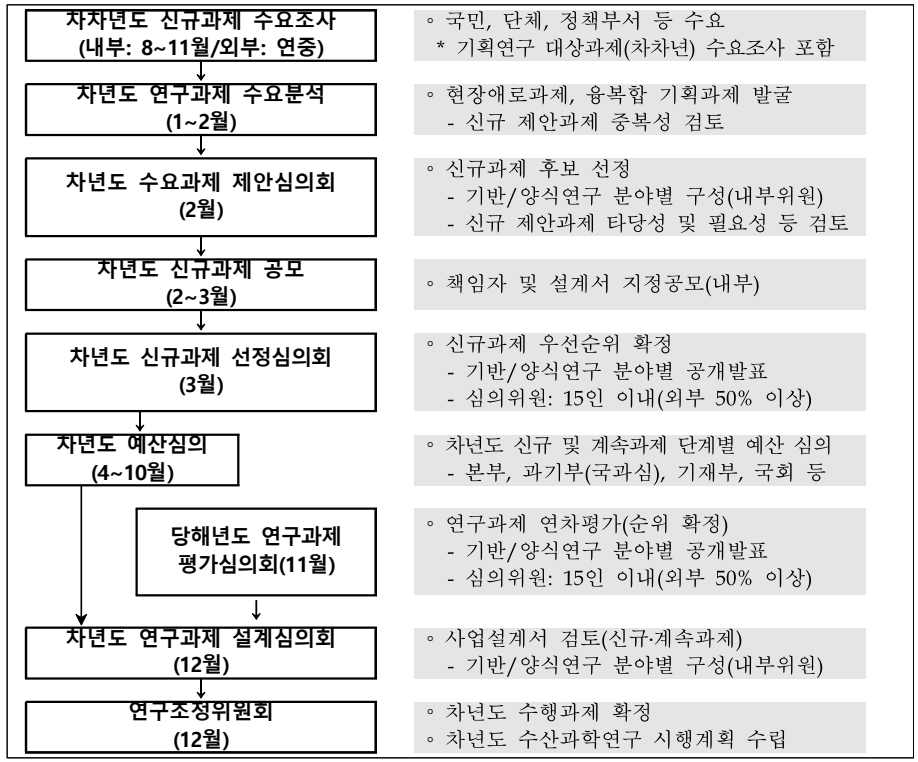

사 업 명
(98)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R&d) (36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2	301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연구	생태계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기술 개발(R&D)	4,003	3,196	3,196	3,160		△36	△1.1

4. 사업목적

- (목적) 연근해 수산자원 변동에 대한 능동적 적응역량 확보를 통해 증거기반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수요자 맞춤형 수산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경험, 단기 중심의 기존 수산정책 패러다임을 통합, 중·장기적 중심으로 전환
- (목표) 우리나라 해역에 적합한 빅데이터 기반의 정확도 높은 수산자원 예측정보 생산 및 어장별 어종별 최적 맞춤형 수산정보 대국민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2조(해양의 관리) 및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기후변화 대응기본 원칙), 수산자원관리법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전지구적 기후변화 및 남획 등으로 인한 연근해 어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관리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어 해양수산부의 '18년도부터 R&D 과제로 추진
- 또한 수산과학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을 통한 공공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R&D를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가치 수산정보 제공 요구에 부합하기 위함
- 이번 신규과제는 해양수산부의 중점과제인 장기계획(실행전략7 전통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수산업 경쟁력 강화), R&D로드맵(영역11 빅데이터활용 해양예보 기술개발, 수산자원 변동예측), 수산자원관리 기본 계획(7개 중점분야 중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체계 구축', '수산자원관리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2개 분야 연계), 중·장기 빅데이터 추진계획(15개 과제 중 '연안 생태계 변동예측', '어황 예측도 향상', '플랫폼 구축' 등 3개 분야)과 관련
-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개획(100대 국정과제)의 목표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84항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의 과제목표인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주요 과제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83억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규모 : 3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수산정책 담당자 및 수산과학 관련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99)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R&D) (3632-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국립수산물		100	103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품질관리원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2	310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연구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R&D)	8,669	9,039	9,039	45		△8,994	△99.5

4. 사업목적

○ 수산생물질병, 신종 질병 및 해외악성 전염병 대응 사업으로 전염병 유입방지·관리 및 체계적인 검·방역 역할 강화로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및 水생태계 보호에 기여

- (수산생물 검·방역 관리 기술개발) 검·방역 통합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 및 전염병 공동대응 연구, 법정 소관업무(예찰·병성감정·방역조치)수행 및 신종질병 대응 기술개발 등
- (수산용의약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신규 약품사용기준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법 제3조(수산생물전염병관리대책)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 법 제5조(기술개발계획 등)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법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실시)
- 법 제10조(병성감정 등) 및 시행령 제6조(수산생물방역기관)
- 법 제11조(역학조사) 및 시행규칙 제15조(역학조사)

② 추진경위

- (여건변화)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증가
  · (대내) 기후변화 및 양식환경 악화로 질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양식 피해액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건수 : ('15) 33 → ('16) 43 → ('17) 49 → ('18) 83 → ('19) 42건
  · (대외) 국제 무역 증가*로 수산물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질병 유입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어 질병관리 중요성 증대
  * 수산물 교역량(천톤) : ('15) 1,706 → ('16) 1,714 → ('17) 1,641 → ('18) 1,788 → ('19) 1,789
- (정책변화) 검·방역 기구 통합*('21.3.1)으로 "수산생물방역 체계 구축(R&D)" 예산이 당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R&D 예산을 R&D, 비R&D로 분리 필요 제기('21.4.1, 기재부)
  *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안 대응 기술개발 등 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 증대
- 사업추진 경과
  · (1단계/'09~15) R&D 과제 편성, 1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시행('11~15), 국가방역기관 시설·장비 인프라구축
  · (2단계/'16~'20) 제2차 질병관리대책 시행, 국가방역통합정보망 구축, 전염성연어빈혈증 청정국지위 획득 등 국가방역기관 기능 강화
  · (3단계/'21~'25) 제3차 질병관리대책('21~'25) 수립·시행을 통한 차세대 국가 수산생물 방역관리 로드맵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계속
- 사업규모 : 수산생물 검·방역 관리 기술개발, 수산용의약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0) 수산생물질병 국제표준 및 원헬스 관리 체계구축(R&D)(3632-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2	311
명칭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연구	수산생물질병 국제표준 및 원헬스 관리 체계구축(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생물질병 국제표준 및 원헬스 관리 체계구축 (R&D)	578	-	-	1,500		순증	순증

4. 사업목적

- (수산분야 항생제 통합감시 및 내성균 연구) 동 사업은 수산분야의 종합적인 항생제 내성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분야의 종합적인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마련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반 제공하는 것임
- (OIE 표준실험실 운영 및 관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표준실험실의 임무사항에 따른 국제업무 수행 및 수생동물질병 진단분야 국제표준 선도
- (장비구입비) 수산분야 항생제 감수성 분포 파악을 위한 검사법의 표준화 및 내성균

특성 분석, 국제 표준 OIE 표준실험실 진단법 연구를 위한 장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OIE 표준실험실 추진('13.1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5.6, 해양수산부)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16.8, 국무조정실)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 국무조정실)
- 제3차 수산생물전염병관리대책 5개년 계획('21.3, 해양수산부)
- 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종합계획('21.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행정체제 개편(검·방역 통합 및 OIE 표준 실험실 이관)('21.3, 해양수산부) 수행

② 추진경위

- 국가 항생제 내성 연구 추진 경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국무조정실, '16.8.)
· 다부처 공동사업 기획 착수('16.9.)
· 다부처 공동사업 기획(패스트트랙) 제출 및 중장기 전략 수립('17.9.~10.)
· '19년 과기정통부 다부처 공동사업 선정('18.1.)
·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착수('19.1.)
· 농촌진흥청의 신규참여 의사 표명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총 7개의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으로 확장 및 변경('19.9.)
· 다부처 예산 확보에 따른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대응사업" 수행 개시('20.1.)
· 사업 참여 6개 부처 '20년도 예산 일부 확보(한도내)

- OIE 표준실험실 추진 경위

· 수산생물질병 진단 결과에 대한 국내·외 공신력 확보를 위한 OIE 표준실험실 추진 계획 수립[(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3.12.), (해양수산부, '15.6.)
· 「제2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5개년('16~'20) 계획」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 선진화·과학화를 위한 OIE 표준실험실 지위 획득 추진(해양수산부, '15)
· 한-덴마크 OIE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15.6.~17.12.)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진단법 국제공인시험기관(ISO/IEC17025) 인증 획득('16.8)
· OIE 표준실험실 신청서에 대해 OIE 수생동물위원회 심사('18.2.) 및 OIE 이사회 심의통과('18.3.)
· 세계 2번째, 아시아 최초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분야 OIE 표준실험실 지위 획득('18.5.)
· 수산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으로 OIE 표준실험실 이관('21.3. 해양수산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50백만원('22)
- 사업기간 : 2019~계속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 2개 과제(신규 1, 계속 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양식어업인, 수산물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및 주요과제별 추진 절차

사 업 명
(101) 국립수산과학원 정보화 (3634-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국립수산과학원	0	100	103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일반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34	500
명칭	수산연구(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정보화	국립수산과학원 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국립수산과학원 정보화	3,461	4,078	4,078	3,875		△203	△5.0

4. 사업목적·내용

○ (국립수산과학원 정보화)

- 수산과학분야 시험, 조사,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분석·예측 기반 구축
  * 수산자원평가 및 양식기술개발, 해양조사, 어장환경분석, 수산물안전관리
- 수산재해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및 예측업무 지원
- 수신생물자원 및 유전정보 관리, 육종 유전자 개발 및 공유
- 수산생물방역 약사 및 수산식물품종 심사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해양수산시험연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장관지시, '97.11.)

② (추진경위) '82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수산연구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산연구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근래에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연구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수산연구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82~(계속사업)
- 사업규모:
  · 수산자원 관리 및 평가, 어장환경변동 통계 등 40여개 행정지원 및 연구업무 시스템 운영
  · 본원(3부 12과 6센터) 및 소속기관(7연구소 9과 3센터) 관리업무 지원, 지자체 업무지원(적조, 수산질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국립수산과학원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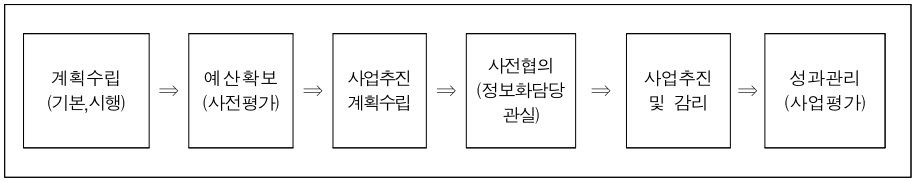

사 업 명
(102)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R&D)(41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300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R&D)	17,942	17,052	17,052	4,635		△12,417	△72.8

4. 사업목적·내용

- **(해양환경변화대응기술)** 유류, 위험·유해물질 유출 등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 기후변화, 하구역 등 국가차원의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기술 확보
- **(해양생태관리기술)** 국내 주요해역의 해양생태계 변동양상을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유해·교란생물의 효과적 예방·관리 기술 확보 및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등
- **(해양오염대응기술)**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 해양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조사·평가 및 대응체계 구축기술 개발
- **(기획평가관리비)** 해당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를 위한 관리예산의 4% 요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관련법	해당조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환경관리법	제6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제1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연안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습지보전법	제17조(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18조(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
○하천법	제16조(유역조사의 실시)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② 추진경위

-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R&D비전 및 투자방향 구체화('11)
-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필요한 오염도 측정지표 개발('14)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15)
- 세계 최초 미세플라스틱 20㎛ 표·수층 내 자료 확보('16)
- 중금속/유해물질 고민감도 모니터링 기법 개발('16)
- 부유물 표류경로 예측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1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0년까지 기투자액 2,472억
- 사업기간 : '10 ~ '23('18년 일몰)
- 사업규모 : 4개 내역사업, 8개 과제(해양환경변화대응기술 4개 과제, 해양생태계관리기술 3개, 해양오염대응기술 1개, 사업관리 1개, '20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03) 과학기술 기반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 (4132-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304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	-	6,912	6,912	6,540		△372	△5.4

4. 사업목적·내용

- 해역이용·개발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의 해양환경 진단·평가기술 및 영향예측 기술 고도화를 통한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제도의 평가 신뢰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개발 등)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대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상풍력 발전과 같은 해양에서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사업자와 환경단체, 어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진단·평가·예측기술, 가이드라인 및 적정 기준 등이 부재한 실정
  *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1,363건('08)에서 2,518건('20)으로 약 85% 증가
- 해역이용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이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해양이용·개발사업의 유형별 진단·평가법 부재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평가신뢰도 취약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가 지닌 갈등 해소나 해양환경보전의 협의수단으로서의 한계 발생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79억원(국고 279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규모 : 해양환경 진단평가 기술개발, 해양환경 영향예측 기술개발, 해양환경 평가기준 개발, 통합DB시스템 자료분석·기술개발
- 사업시행방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관 지정공모형
- 사업시행주체 : 서울대학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 사업 수혜자 : 해역이용 사업자 및 대행자, 정책결정자, 환경영향평가 기관,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4)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41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305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R&D)	7,500	9,087	9,087	8,325		△762	△8.4

4. 사업목적·내용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장비 기술개발)**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해양쓰레기 및 해변 모래 분포 미세플라스틱 수거를 위한 장비기술 개발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처리기술 개발)** 해양쓰레기 전처리를 포함한 도서 및 어촌 맞춤형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 개발
- **(해양플라스틱 수거지원 기술개발)** 발생 원인별 이동·침강·부유를 고려할 수 있는 전 수층 해양쓰레기 이동예측 모델 기반의 수거지원 기술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및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② 추진경위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시행(해양수산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자체의 해양유입차단의무 부과, 원인자 책임 강화, 유형별 해양폐기물 관리·수거, 재정 및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21~'30, 해양수산부)
  *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강화, 국민인식 제고 등 5대 전략 추진
- 「해양쓰레기 자원순환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기획연구('18.12~'19.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해양쓰레기의 발생저감 기여, 수거장비 고도화, 친환경 처리시스템 최적화, 지능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주기 기술 개발 종합 계획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420억원(국고 363억원)
- 사업기간 : '20~'24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 4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수거장비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882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기술개발			3,933	100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수거지원 기술개발			1,510	100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05)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HNS)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R&D) (4132-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4132-306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R&D)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HNS)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B)	(B-A)	(B-A)/A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HNS) 영향평가 및 관리 기술 개발(R&D)	-	3,000	3,000	4,808		1,038	34.6

4. 사업목적·내용

- 전국 연안의 해양산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위험유해물질(HNS) 배출 국가관리체계 구축 및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해양산업시설 배출 HNS 영향평가 및 관리 핵심기술 개발) 규제 사각지대의 해양산업시설 위험유해물질(HNS) 해양배출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합리적인 HNS 해양배출 규제 및 관리제도 마련) HNS 해양배출에 따른 환경계·산업계 갈등 해소 및 해양환경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로 안심사회 실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3조 : 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폐기물질의 발생·유입의 방지, 오염·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 국가는 해양환경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국가는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
- 해양환경관리법 22조(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해양배출 금지)

② 추진경위

- 발전소 해양오염물질 배출관련 관계부처 논의('16.08)
- BH 경제수석실 주재의 후속조치방안 추가 협의('16.10)
- 해양배출 허용 필요성 및 타당성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시행('18~'19)
-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HNS)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기획연구 시행('19~'2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300억원(국고 300억원)
- 사업기간 : '21~'25
- 사업규모 :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HNS) 관리기술 등 개발과제 1식
- 사업시행방법 : 출연(총사업비의 100% 정부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산업시설 배출 위험유해물질(HNS)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038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06)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4132-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310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	-	-	-	7,308		7,308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해양 미세플라스틱 유입·발생 및 환경거동 연구**) 육상 기인 미세플라스틱 해양 유입 평가, 해양 기인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 평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환경거동 기작 규명 및 예측 모형 개발
- **(해양 생태계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표영 및 저서생태계 위해성평가 및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생물 독성동태 연구
-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 기술개발**) 부표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속 시험방법 표준 및 등급화 기술개발과 차세대 친환경 부표 개발 및 실증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및 해양오염물질 배출 규제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처분 최소화 등 관리 명시
-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해양쓰레기 및 해양 환경 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리
-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 해양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② 추진경위

- 20대 국정전략 중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및 100대 국정과제 중 「57.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부합
-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안) ('19.7, 관계부처 합동)
  ·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안)」을 수립·추진
- **('20.10.)** 신규사업 '22년 예산 요구 추진계획 수립
- **('20.11.)** VIP 지시사항
  · 범부처 차원의 강도 높은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친환경부표·어구 개발 추진
- **('21. 1.)** 신규사업 기획연구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26
- 사업규모 :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 기술개발” 3개 과제(’22~’26)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 미세플라스틱 유입·발생 및 환경거동 연구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654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해양 생태계 보호기준 마련을 위한 위해성 평가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308	100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46	100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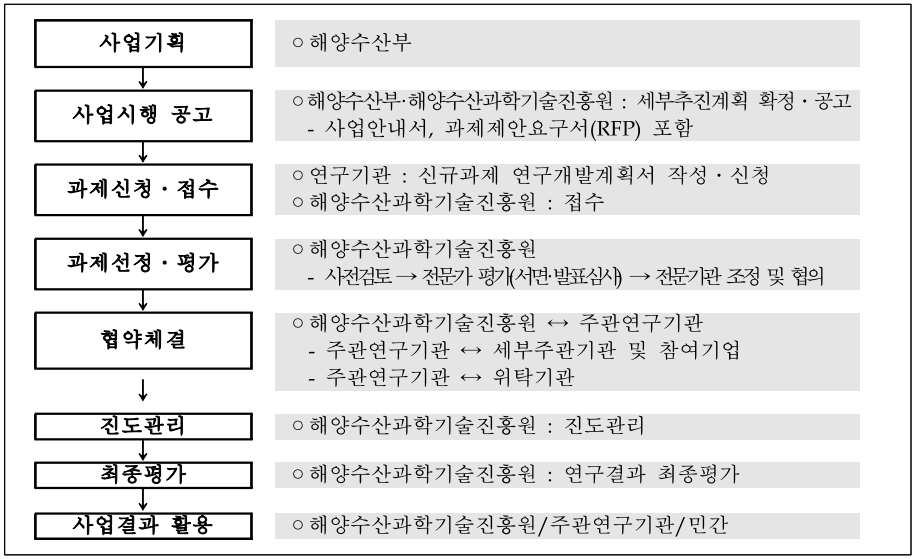

사 업 명
(107)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기법 개발 (4132-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311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기법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기법 개발	-	-	-	3,846		3,846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기법 개발)** 연안 해역 오염현안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기법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
- 효율적인 연안환경 관리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오염원 및 오염경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방법 도입
- 해역 및 개발유형별 표준적 사용이 가능한 진단·평가, 영향예측 및 환경기준 가이드라인 기술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잔류성 오염물질의 조사 등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통한 해양환경 보전
- **(해양환경보전법)**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 해역별 해양화경기준설정,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및 관리 등
- **(어장관리법)** 해수수질 및 해저퇴적물 등의 어장환경기준, 어장환경평가 등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실현을 위한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강화와 연계
-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21~30)**
  · 육상기인 오염원의 국가관리체계 확립, 해양기름오염 대응능력 확충 등 중점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계
- **제3차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19~23)**
  · 해저퇴적물 및 해역수질 관리기준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유입 차단, 수질·저질환경 개선, 관리역량강화 등 연계
-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18~22)**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확보 중 해양환경오염물질의 예측·제어·저감 기술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계
- **제3차 어장관리기본계획(17~21)**
  · 과학적인 어장관리 기반강화 전략 중 어장환경 진단·평가 고도화, 과학적 어장환경 기준 마련 등 연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26
- 사업규모 :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기법 개발" 1개 과제('22~'26)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기법 개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846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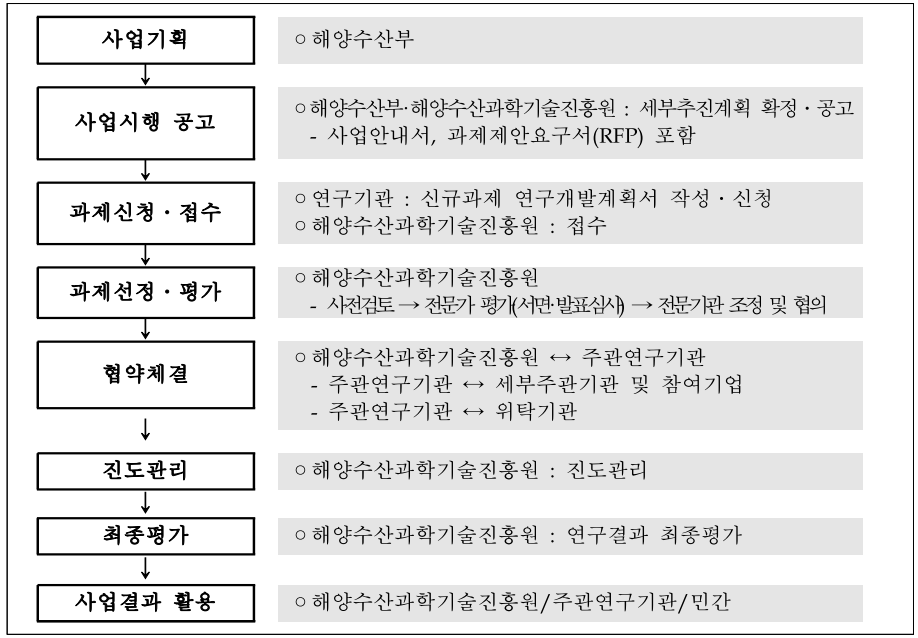

사 업 명
(108)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R&D) (4132-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312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R&D)	-	-	-	3,249		3,249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해양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 기반 기술 연구**) 해양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으로 해양공간 정책시뮬레이션·해양예측서비스 기반기술 제공 및 외부활용기반 마련
- (**해양공간 정책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해양활동 예측 및 시나리오 기반 공간변화·정책진단을 위한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및 정책지원기술 제도 개선안 마련

- (**맞춤형 해양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 다양한 수치모델 기반 해양예측자료 융합·제공 등 기반 기술을 확보 및 선제적인 현장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시범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개발 등의 추진)

② 추진경위

- ('20.12.)「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 수립('20.12.)
  :「제5절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 과제 중 "가. 해양공간계획 기술 고도화 - 디지털 기반 해양공간관리체계 강화" 로 포함
- ('20.12.)「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 수립
  :「3. 융합형 해양환경 보전산업 육성」 추진과제 중 "디지털트윈 기반 해양수산 디지털화 가속화"에 포함
- ('20.12.)「제3차 해양조사기본계획(2021~2025)」 수립
  :「과제 3-4. 한반도대수조(해양디지털트윈) 구축 기반 마련」으로 해양디지털트윈 및 실용해양예보에 관한 과제 포함
- ('21.4.)「해양 통합모델링 가상실험을 위한 해양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적용 및 활용 기술개발」 연구 타당성검토 및 연구 로드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21년까지 기 투자액 -억원)
- 사업기간 : '22 ~ '26
- 사업규모 : 내역사업 3개, 세부과제 3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지원 100%, 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해양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 기반 기술 연구	출연	'22년 공모예정	1,51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 해양공간 정책시뮬레이터 기술 개발	출연	'22년 공모예정	852	100	
· 맞춤형 해양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	출연	'22년 공모예정	887	100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서면·발표심사) → 전문가판 조정 및 협의
↓	
협약체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
↓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
↓	
최종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평가
↓	
사업결과 활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주관연구기관/민간

사 업 명
(109)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4132-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정책실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313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	-	-	-	1,837		1,837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쓰레기 선상 처리를 위한 핵심 모듈 개발 및 선박 실증) 심화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영토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에 필요한 핵심기술 및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One-stop 해상처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및 해양오염물질 배출 규제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연구개발, 현장적용 등)을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기간) 선상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개발·제작 및 선박 운항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실증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022~2026년으로 사업계획 수립
- (추진배경)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 탄소중립 해양쓰레기 처리 및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해양 저탄소화 기여, 해상 수거·육상 처리로 분리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과정의 일원화 시스템(선박) 필요, 해양쓰레기의 육상 수송 효율 및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연계 기술 요구,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
- (국가 및 부처 정책 부합성)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50 IMO 선박 온실가스 감축 대응 로드맵」,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2030 Greenship-K 추진전략」 등 국가 상위정책 부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26
- 사업규모 :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선박 개발 및 실증" 1개 과제('22~'26)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쓰레기 선상 처리를 위한 핵심모듈 개발 및 선박 실증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837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다부처특위) → 공동기획연구 추진(기획연구자, 참여부처) →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다부처특위)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KIMST, 산업통상자원부·KEIT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KIMST,KEIT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KIMST,KEIT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KIMST,KEIT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KIMST,KEIT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KIMST,KEIT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10)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 활용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R&D) (4132-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어업자원정책관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32	315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환경 기술개발(R&D)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 활용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 활용 해양인공 구조물 개발	-	-	-	1,050		1,050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 활용 해양인공 구조물개발 연구)** 해조류의 식생을 위하여 콘크리트 프리캐스트와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환경을 모사하는 세라믹계 소재와 어초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친환경 다공질 콘크리트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높은 경제성/안정성의 해중림 조성용 인공구조물 개발 및 실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② 추진경위

- '20.07월 탄소중립의 첫걸음,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발표
- '20.12월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 '21.12월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2 ~ '25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 사업,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기업, 대학, 기업,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블루카본 증대를 위한 세라믹계 융합소재 활용 해양인공 구조물개발 연구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50 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1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사업(R&D) (4140-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산업정책관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물류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0	302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 R&D역량강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운영지원	4,521	6,703	6,703	7,427		724	10.8

4.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비) 해양수산 R&D 정책개발 및 해양수산부 R&D사업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고유사업비) 해양수산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R&D기획과 혁신성장 가속화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신기술인증·기술평가 등 법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임
- (R&D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확대를 위한 R&D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에 따른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② 추진경위

-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 근거 미비를 지속적으로 지적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운영비 일부(연구기획평가비)를 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관리기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0 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 국회예결위, 2011)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13. 6. 19.)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17. 6. 28.)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4년~계속
- 사업규모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인건비 및 사업비 일부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연구소, 대학, 기업 등 R&D수행기관 및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관운영비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635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제5항
고유사업비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919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제5항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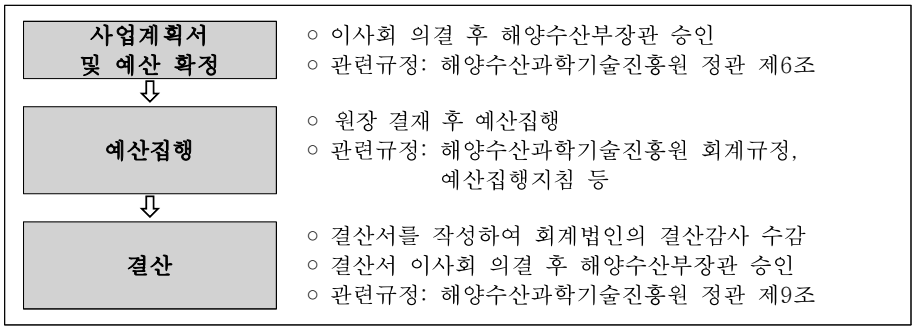

사 업 명
(11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사업(R&D) (4140-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양산업정책관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물류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0	303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수산 R&D역량강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사업 (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과학기술 기획평가관리사업	-	-	-	16,721		16,721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기획비) R&D 사업·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준분석, 기술영향평가, 수요조사 등 사업 및 과제 기획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중장기전략기획, 사업기획(예타·비예타), 과제기획, 사업개선 기획 등의 효과적 수행 지원하는 것임
- (평가비) 과제공모·선정평가, 단계 및 최종평가 등 사업화 과제의 효과적 평가업무 수행 지원하는 것임
- (관리비) 과제종료 이후의 성과확산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업무로 일반관리, 성과관리, 시스템관리, 시스템 이관·연계 등 지원하는 것임
- (인건비) R&D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접인력(내부)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임
- (간접비) 사업관리를 위해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운용지원, 시설·장비 구축 및 유지보수, 각종 용역사업 수행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업무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22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추진 계획(안) 기획·평가·관리비 지원체계 개편 : 복잡한 기평비 지원체계를 전문기관별 세부사업으로 통합

② 추진경위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2017.6.28. 시행

*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01.01. 시행

*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기획평가관리 평가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함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2년~계속
- 사업규모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 지원(5개 내역사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연구소, 대학, 기업 등 R&D수행기관 및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기획비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584백만원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3항
· 평가비			838백만원	100	
· 관리비			4,404백만원	100	
· 인건비			5,831백만원	100	
· 간접비			3,064백만원	100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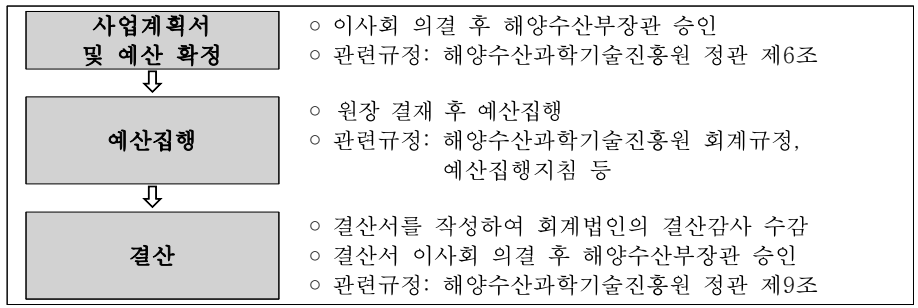

사 업 명
(113) 수산전문인력 양성(R&D)(4145-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5	303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수산연구개발(R&D)	수산전문인력 양성(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전문인력 양성	5,775	6,040	6,040	7,204		1,164	19.3

4. 사업목적·내용

: ICT기반 수산자원관리, 친환경 스마트 양식기술, 미래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기술 전문영역과 글로벌 기술자립화를 위해 수산분야 소양을 겸비한 현장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 (수산연구인력 연구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수산자원, 양식, 수산식품산업 분야 등 수산 관련 분야에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과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수산업의 인력육성)),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7.6. : 「**Post-수산실용화 :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획연구 수행
- '18.3. : "수산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수립
- '18.3.~ : 2018년도 신규과제(3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 협약 등
- '20.1.~ :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수산연구센터 계속과제(3과제) 이관 통합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8년 ~ '25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5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연구인력 연구지원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776 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지역기반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428 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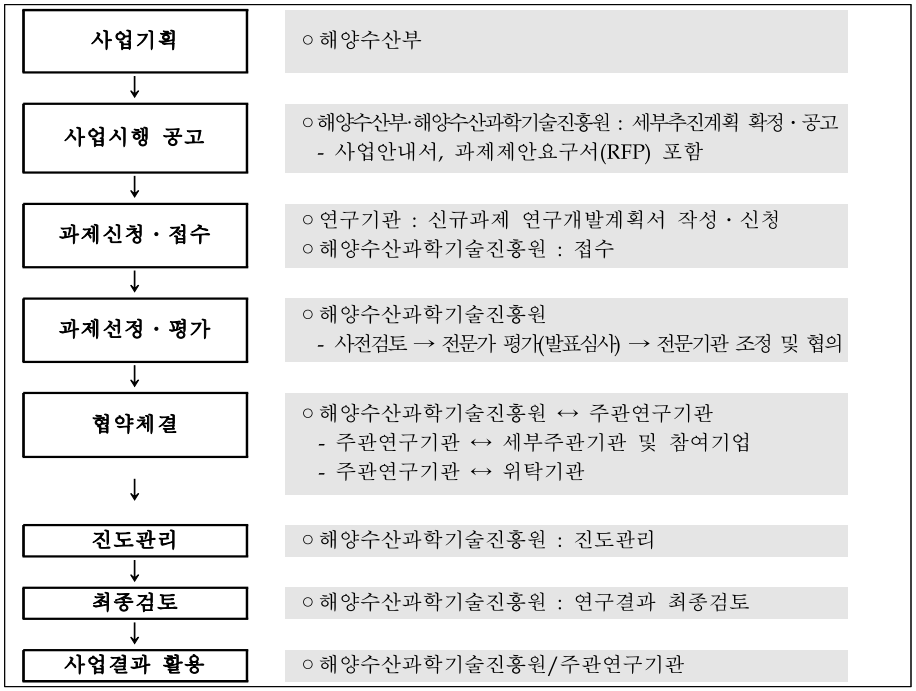

사 업 명
(114) 정책연구개발사업(R&D) (4148-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8	301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R&D)	정책연구개발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정책연구개발사업	1,058	886	886	930		44	5.0

4. 사업목적·내용

- 급변하는 정책환경 하에 전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나타나지 않는 과제와 수시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각종 과제에 대해 단기적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연구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9년부터 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유도할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삭감하고, 각 부처에 정책연구비를 총액으로 편성하여 종합적으로 부처별 연구과제 선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과제 수요조사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제선정 심의 → 과제확정(장관방침) → 연구자(기관) 공모(수의계약은 생략)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 → 계약·용역수행·납품·검수 → 자금집행

사 업 명
(115)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4149-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9	301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물류기술개발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안전한 항만 구축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7,523	11,286	11,286	7,136		△4,150	△36.8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재해에 대응하는 항만·연안 구축기술(항만 설계기준, 연안침식 저감공법 등), 항만 인프라의 생애주기(계획-설계-건설-유지관리) 통합관리기술(3D 빅데이터 기반)을 개발하여 안전한 연안·항만인프라 운영과 더불어 관련 SOC사업 예산절감 도모

○ **(지속가능한 안전항만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태풍풍 등 해양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조물 성능강화 기술 및 설계기법, 복합재료 개발

○ **(연안침식 관리 및 대응기술 실용화 연구)** 모래자원 관리 및 활용기술 개발, 친환경 연안침식 저감공법 실증, 연안침식 예측모델 고도화 및 운용기술 개발, 연안침식 조사에 항공라이다 기술 적용 개발, 해양위성영상 분석 활용 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 항만법 제29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연안관리법 제34조의3(연안관리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실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 일몰('17) 이후 사업 재기획 필요

* (기간/주요연구내용) '98-'17(일몰) / 해양재해에 대응하여 항만인프라의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해운물류 기능개선 및 고도화 기술개발 등

- 연안침식대응기술개발* 과제 종료('17) 이후 후속과제 기획 필요

* (기간/주요연구내용) '13-'17 / 연안 수리 퇴적환경 거동특성 규명, 친환경·고효율 연성공법 개발 및 공법 영향평가 기술개발, 연안침식 정밀관측시스템 개발 등

- 안전하고 경제적인 연안·항만 SOC 사업 추진 및 인프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연구개발사업('18~) 기획 추진

* (공동기획 배경) 연안·항만 모두 해양외력(고파랑 등)에 대응하여 SOC 안전관리가 이루어지 있으며, 동일한 기술지침(항만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05억원(국비 기준)
- 사업기간 : '18년 ~ '25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3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속가능한 안전항만 구축 및 관리방안 연구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415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연안침식 관리 및 대응기술 실용화 연구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721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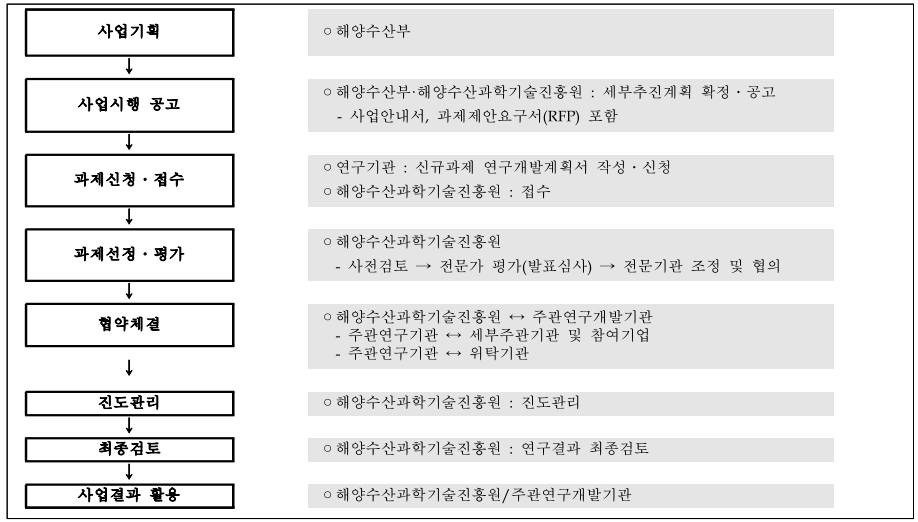

사 업 명
(116)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R&D) (4149-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9	304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물류기술개발(R&D)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5,850	13,850	13,850	12,671		△1,179	△8.51

4.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IMO Level 3.0 수준의 자율운항 지능화·자동화 시스템 개발, 검·인증, 실증을 통한 운용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

○ **(사업내용)**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동 내역사업은 자율운항을 위한 운항데이터 처리·예측 기술개발 및 자동 이접안 모델개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을 위한 육상원격제어, 보안시스템 설계 및 통신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 운용기술 및 표준화를 지원함

① 지능형 항로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충돌회피, 경제운항, 자동 이/접안 엔지니어링 기술)

② 자율운항선박 육상제어(Shore Remote Control) 기술 개발

③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안전 기술 개발

④ 자율운항선박(Ship2Ship2Shore) 데이터 교환 및 통신기술 개발

⑤ 자율운항시스템 신뢰성 평가 및 사고대응 기술 개발

⑥ 자율운항선박 원격관리 및 안전운영 기술 개발

⑦ 국제 표준화 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정과제)
  -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스마트 선박)
  -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 (대통령 말씀)
  - ('18.1., 대우조선해양) 자율운항 핵심기술과 선박개발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18.3.,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 자율운항박, 원격제어기술, 초고속 해상통신망 구축 등으로 스마트 고부가가치 물류 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이동체)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스마트 이동체 선도국가 도약”
-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술”, 유망 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지원 계획에 “자율운항선박” 및 “스마트 선박” 제시
- (조선산업 발전전략_‘18.4, 산경장 관계부처 합동)
  - 자율운항선박 육성전략 수립
-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 전략_‘18.12)
  - 해양수산부 주관 “자율운항선박”, “디지털항만”, “e- Navigation” 연계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 계획 수립
- (‘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해운-조선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친환경·스마트 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 지원
-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_‘19.11)
  - (핵심과제1) 선박·항만 지능화로 스마트 해상물류 실현
  - (세부과제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운항기반 구축
- (한국판 뉴딜 정부 종합계획 수립_‘20.7)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은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에 해당
- (추진경위)
  - (‘17. 3～’18. 1) 사업 기획
  - (‘18. 2～’18.10)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 (‘18.10～’19. 1) 사업 재기획
  - (‘19. 2～‘19.10)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 (‘19.10)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
  - (‘19.12) 대국민 사업설명회
  - (‘20. 2)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선정공고
  - (‘20. 4)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착수
  - (‘20. 6)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사업단장 및 부단장 임명
  - (‘20.10) 자율운항선박 실선 실증지원 선사 선정 및 협약체결(‘20.11)
  - (‘21.10)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착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1년까지 기 투자액 197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사업규모 : 내역사업 1개, 세부과제 1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지원 100%, 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및 해운선사,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2,671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17)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R&D) (415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사안전국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1	303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R&D)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R&D)	11,000	8,516	8,516	4,761		△3,755	△44.1

4.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지원 및 국민건강 증진
- **(선박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환경 연구)** 선박배출 미세먼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보급사업 지원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

- **(선박 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 선박 크기별(소·중·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 소형: p-SDPF, (중형) 전기집진, (대형) 스크러버
- **(선박 미세먼지 저감기술 실증 및 상용화)**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장치 실증·인증설비 및 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동 사업 추진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 41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제43조(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및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② 추진경위

- '15. 12. :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
  * 선박용 엔진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 운항 선박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실시 등 비도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주요 목표로 추진
- '17. 7.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
- '17. 9. :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 '18. 1. : 해양수산부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
- '18. 2.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추진
- '18. 3. :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18. 5. :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분야 신규사업 기획연구
- '18. 11. : 「친환경선박법」 국회 본회의 통과('20. 1. 1. 시행)
- '19. 3. : 「항만대기질법」 국회 본회의 통과('20. 1. 1. 시행)
- '19. 5. : '선박배출 미세먼지 통합저감 기술개발사업'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90억원('21년까지 기투자액: 220억원)
- 사업기간 : '19년 ~ '23년
- 사업규모 : 4개 내역사업(5개 세부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선박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환경 연구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76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선박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400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선박 미세먼지 저감기술 실증 및 상용화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885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18)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R&D) (4151-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사안전국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51	306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R&D)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R&D)	-	-	-	3,366		3,366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200ton 미만의 소형선박의 탄소저감 및 미세먼지 저감 상용화를 위한 장착형 수거장비 개발
  * (장착형 건식 온실가스(PM) 분리/포집 기술개발) 보급형 저가 건식 미세먼지 분리 기술 및 항만 수거/처리 용이성을 제공하는 포집 기술개발
  * (건식 선상 온실가스(CO2) 분리/포집 기술개발) 건식 온실가스 분리 기술 및 항만 수거/처리 및 재활용 수월성을 높이는 선상 포집 기술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연구개발, 현장적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친환경선박법」 시행('20. 1.)
-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한 「항만대기질 특별법」 시행('20. 1.)
- '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 50%이상 저감을 목표로 부처간(해수부-환경부) 협력체계 구축('19. 3.)
- (선행연구) 선박 배출 미세먼지 및 황산화물 저감기술은 상용화 단계이나,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은 미비한 상황
- (기획 경과) 신규 R&D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20.11)
  * 친환경 선박 활성화를 위한 기술세미나(해양정책관, 약 20개 기관 참여) / 중소형 선박 관련 기존선박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필요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기획연구 수행('21.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파나시아, ㈜씨투씨 소재, 충남대학교 등)
- 민간 기업 참여의향서 수렴('21.3, 4개 기관)
- 핵심 아이템 도출 및 예산 규모, 연구추진 방법 등의 기획연구 완료(~'21.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미정(연구관리전담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선박 수리업체,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366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19)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정보화) (4241-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41	500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항만건설사업정보화(정보화)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정보화)	825	498	498	387		△111	△22.3

4. 사업목적·내용

-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
  - 전국 무역항 및 신항만의 6종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의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 구축한 정보를 항만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 항만운영 및 유지보수, 재해재난 방지 등에 활용
  - 항만지하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재해·재난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에 위탁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항만법」 제27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5조, 제29조

② 추진경위

- 2002년 : 항만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기본계획수립
- 2003년 ~2006년 : 1단계사업
  · 인천항, 부산항 등 14개 항만의 지하시설물 715㎞ DB 구축
- 2007년 ~ 2012년 : 2단계사업
  · 마산항, 여수항 등 20개 항만의 지하시설물 366㎞ DB 구축
  · 항만지반정보 4,588공 DB 구축
- 2013년 ~ 2020년 : 3단계 사업
  · 부산신항, 울산신항 등 10개항 DB 구축 360.5㎞, 시스템 개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규모 :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지자체(위임항만 관할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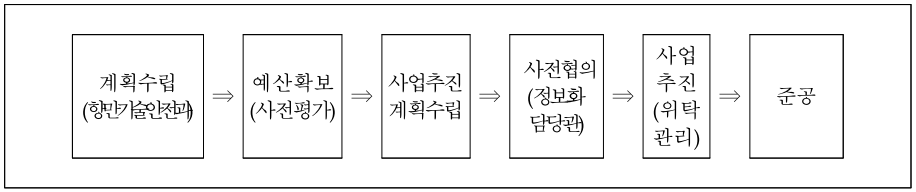

사 업 명
(120)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정보화) (4241-5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41	512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항만건설사업정보화(정보화)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정보화)	409	423	423	513		90	21.3

4. 사업목적·내용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 항만건설 사업의 계획, 예산, 설계, 시공·감리, 유지보수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항만건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항만건설 전자도면 작성 표준, 도면정보 교환 표준, 전자문서 표준, 항만건설정보 분류체계 적용기준 등 표준 업무 관리
- 전국 무역항(국가관리:14개소, 지방관리:17개소) 및 연안항(국가관리 : 11개소, 지방관리 : 18개소)에 대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DB구축 및 현행화
- 국가 주요시설물인 항만시설장비 기초자료 수집 및 입력, 활성화 등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관리·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27조, 제102조, 제10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04조
-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제26조

② 추진경위

- 2003년 : 항만건설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수립
- 2003년 ~ 2007년 : 1단계사업 완료
  · 항만분야의 사업관리, 시설물관리, 업무관리 및 비관리청 항만공사 지원 업무를 정보화 시스템으로 개발 및 운영
- 2017년 ~ 2021년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관리개선
  · 노후 전산장비 교체(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입주)
  · 항만건설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시스템 연계(디브레인, 나라장터, 온나라 문서 등)
  · 모바일 사용자 환경 구축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규모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 계약자(시공사, 감리사, 설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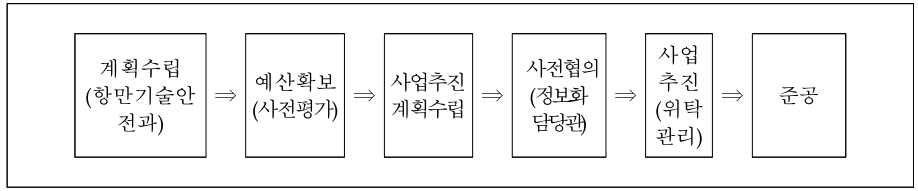

사 업 명
(121) 해양수산 행정정보 시스템구축(4249-52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기획조정실	0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49	521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해양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	해양수산 행정정보 시스템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	(B-A)/A
해양수산 행정정보 시스템구축	3,362	2,349	2,349	2,359		10	0.4

4.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 공통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양수산부 내부업무포털 등 공통행정정보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 운영

- 내부업무포털(바다넷) 등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 해양수산분야 정보화 중복성 방지 및 정보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
- 해양수산통계 및 행정자료의 DB화를 통해 정책업무 분석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해 정책 활용 제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제별 정책정보 등 해양수산포털 서비스 제공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관리 및 이용),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쳐 도입운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확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통계법」 제28조(통계의보급)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② 추진경위

- '13. 03~ :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내부업무포털(바다넷)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해양수산 통계시스템 구축,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 '14. 01~ : 내부업무포털(바다넷) 고도화,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구축, 해양수산통계시스템 고도화, 산하기관 홈페이지 구축 등
- '15. 01~ : 해양수산 행정정보시스템(EA, 통계, 내부포털,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콜센터운영, 기본 인프라 운영・지원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계속
- 사업규모 :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인프라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내부직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수립 (기본,시행) ⇒ 예산확보 (사전평가) ⇒ 사업추진 계획수립 ⇒ 총괄부서 사전협의 (감사관실,정보화 담당관실) ⇒ 사업 추진 및 감리 ⇒ 성과관리 (사업평가)

※ 국가계약법, 용역발주 관리 등 계약관련 규정에 준하여 처리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 등)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사 업 명
(122) 사이버안전센타구축 및 운영 (4249-52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기획조정실	0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49	525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해양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	사이버안전센타구축 및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사이버안전센타 구축 및 운영	5,046	3,535	3,535	3,804		269	7.6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사이버공격 사전 탐지·분석·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침해사고 방지 및 피해 확산 차단, 소속기관 망분리 등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의2조(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13. 6. ~ 2013. 12.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전까지 국토부 및 농식품부 사이버안전센터 공동 운영
- 2014. 1. ~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개소·운영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6개) 지정·관리
- 2015. 4. VIP 보고(국가 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
- 2017. 12. 26. 국무총리 지시사항(공직사회 사이버보안 강화)
- 2017. 9. ~ 2020. 12.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망분리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계속

- 사업규모 :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43개)에 대한 보안관제·정보보안업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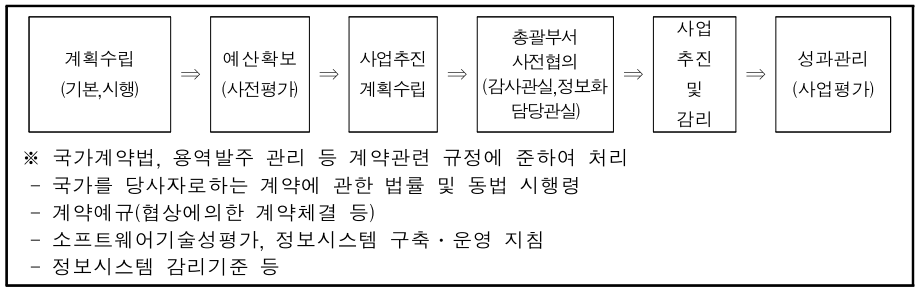

※ 국가계약법, 용역발주 관리 등 계약관련 규정에 준하여 처리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 등)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사 업 명
(123)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 운영(정보화) (4253-52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 물류추진단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53	527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항만물류정보화(정보화)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플랫폼 운영(정보화)	-	-	-	993		993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과기정통부 '민간 비즈니스 창출 공공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일환으로 구축된 수출입 디지털플랫폼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 (사업내용) 선사-항만 간 실시간 운영 최적화 서비스·해상물류 위험화물 통합관리 서비스·수출입물류 민간 서비스 인큐베이션을 위한 유지관리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② 추진경위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 ('20.2, 제10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공공 물류 데이터에 더해 다양한 민간 물류 데이터가 수집·활용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21.4, 제33차 한국판뉴딜경제관계장관회의)

- 수출입물류 공공민간 공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의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계속
- 사업규모 : 수출입 물류데이터 공유 플랫폼 유지 관리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공사, 터미널운영사, 선사 등 물류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24) 항만물류정보(4253-5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53	526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항만물류정보화	항만물류정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만물류정보	3,742	4,776	4,776	6,209		1,433	30.0

4. 사업목적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전국 무역항(31개)의 항만운영(민원 신고/처리, 업무지원) 및 해운민원(선원, 선박, 해운사업자, 선박용물건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 확대
- (항만물류정보 공동재해복구센터 운영)
  - 無방문 종이 없는 항만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365일 24시간 無중단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한 재해복구센터의 운영
- (해운항만물류정보망 운영지원)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및 3개 지방청(부산/인천/여수)의 항만운영정보망 운영지원 시설(통신, 단말기, 부대시설 등), 정보통신회선(전용, 인터넷) 등 유지관리
- (항만운영업무 인프라지원)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및 3개 지방청(부산/인천/여수)의 항만운영업무 인프라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26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항만법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해운법 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선원법 제159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② 추진경위

- 경제기획원 "신경제 5개년 계획" 단위 시책('93. 8)으로 해운항만정보시스템(Port-MIS 등) 운영
- '99. 7월부터 우리부 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운영을 민간에 위탁 및 인원 감축 결정(민간위탁에 따라 '98년 전산직원 9명 감축)
- 종합물류정보망 24시간 서비스 중단 시 화주, 선사, 터미널, 운송사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 (피해액 1,375억원 추정('15년 기준))
  * '07.11.10 전자문서 중계업체인 케이엘넷의 전원 과전류 장애로 항만반출입서비스 12시간 중단 (피해액 411억원 추정)
  * 항만물류정보화 무중단 서비스를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09)

- 국정과제 선정 및 VIP 지시사항 이행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ISP 추진('14)
-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1단계) 추진('15)
-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2단계) 추진('16)
-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3단계) 추진('17)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기능 개선('18)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신규 기능 개발('19)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기능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20)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신규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2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31개 무역항(국가: 14, 지방 : 17) 항만운영업무 지원 및 선박, 선원, 해운사업자 등 해운관련 민원업무 지원,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개선·서비스 확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정부기관, 항만물류관련 업·단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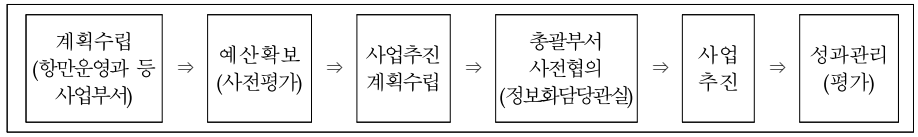

사 업 명
(125) 해양환경정보(정보화) (4273-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73	500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해양환경정보(정보화)	해양환경정보(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해양환경정보 (정보화)	861	896	896	916		20	2.23

4. 사업목적·내용

-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산・관리되는 해양환경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 및 정보제공・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환경정보의 통합 제공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및 해양환경정보 대국민 종합서비스 제공

-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등에 따른 업무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쓰레기 수거·조사 사업관리,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사업 관리, 폐기물해양배출 업무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정보망(제11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제76조의2)

-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

○ 해양이용협의 등의 정보화(제84조 ~ 제95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제21조)

-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해양환경 관련 기준설정, 계획 수립, 평가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정보체계 구축·운영(제7조)

-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생태계정보체계를 구축・운영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실태조사 등(제9조)

-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등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

- 조사결과를「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

② **추진경위**

- '02년~'19년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 '08년~'19년 해역이용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06년~'19년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2년~'19년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7년 해양환경정보 통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연구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해역이용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 해양생태통합정보시스템

- '18년~'19년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해양생태통합정보(세부사업) 내역으로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비('18년 1,140백만원, '19년 1,140백만원)가 반영되어 통합·재구축

- '20년~ 해양환경·생태분야 5개 정보시스템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로 전환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별로 분산된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수립 (해양공간정책과) ⇒ 예산확보 (사전평가) ⇒ 사업추진 계획수립 ⇒ 총괄부서 사전협의 (정보화담당관) ⇒ 사업 추진 ⇒ 성과관리 (평가)

사 업 명
(126) 항행안전정보(정보화) (4275-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75	500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항행안전정보(정보화)	항행안전정보(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항행안전정보 (정보화)	836	861	861	853		△8	△0.9

4. 사업목적·내용

- (항행안전정보) 선박 운항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해양안전 관련 기관들의 통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강화
-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행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박안전법」 제30조 : 선박자동식별 시스템(AIS), 선박위치발신장치, 선박장거리 위치추적시스템의 육상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설치 등)
- 「해사안전법」 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② 추진경위

- 해양안전분야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 '01.12월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 '02.4~11월
- GICOMS 1단계 구축사업 추진 : '03~08년
- GICOMS 확대사업 추진 : '09년~
-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2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년~계속
- 사업규모 : 시스템 유지보수, 확대구축 및 관리·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선박운항자, 선사, 항만이용자, 도선, 정부기관(해군·해경 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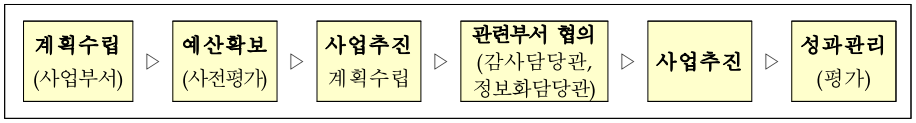

사 업 명
(127)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운영(정보화) (4275-5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75	503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항행안전정보(정보화)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운영(정보화)	2,458	1,724	1,724	1,724		-	-

4. 사업목적·내용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운영) 해양수산재난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화기반으로 구축한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유지관리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확충) 해양수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기능개선 및 재난예방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을 통한 선제적 해양수산 재난예방체계 실현
-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선박에 적용되는 국내·외 온실가스 규제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사업)

② 추진경위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1~3단계 구축(전자정부지원사업): '15~'17년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확충: '17년~

○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 '10년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도 시행: '11. 3.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15. 1.
- 선박온실가스관리시스템 구축: '16. 6.~'18. 10.
- 선박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고도화 ISP/BPR 수립: '18. 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①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및 ②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운영
- 사업시행방법 : ①직접수행, ②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①해양수산부, ②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재난관리업무 담당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운영 및 확충 사업

추진절차	관련기관	관련 규정
①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② 총괄부서 협의	해수부(정보화담당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③ 사업발주	해양수산부 조달청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		
④ 사업추진	해양수산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⑤ 성과관리(평가)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해양수산부) → 사업 대행(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 업 명
(128)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정보(정보화) (4275-5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일반계정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75	504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항행안전정보(정보화)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정보(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정보(정보화)	-	13,623	13,623	29,245		15,622	114.7

4. 사업목적·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e-Nav) 및 해상무선통신망(LTE-M) 운영을 통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24시간, 연중)으로 해상사고 예방 등 선박안전 확보, 해양분야 디지털화 및 신산업 발전 지원

*「(略)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5조에서 국가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최신 전자해도, 충돌경보, 최적항로 등) 대국민 제공' 규정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운영) 해상교통정보를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21.~)에 따라 국가 R&D 사업성과로 구축된 해상무선통신망(LTE-M) 운영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정과제 62-⑤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 신뢰도 제고' 세부과제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2조

>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제1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정보를 수집·저장·검색·분석·가공·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 개발사업(한국형 e-Nav 구축 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4.11)

○ 한국형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확정('15.7, 국무회의)

○ 세계 최고수준 기술 지원 대상으로 선정('15.12, 국과심 운영위)

○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사업(R&D) 추진('16.7~'20.12)

- 現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17.9)

  * 국정과제 62-⑤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 신뢰도 제고' 세부과제3

- e-Nav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체결('19.4.)
-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사업 계약 체결('19.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제정('20.1.29 제정/'21.1.30 시행)

-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대국민 정보 제공('21.1.30~)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회선 운영 사업' 계약 체결('21.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계속

○ 사업규모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및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운영
  · 9개 센터(중앙센터, 해상통신1·2센터, 권역센터 6개소(부산, 인천, 대산, 목포, 포항, 동해)) 및 LTE-M 기지국 263개소(장비 621식)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생산·이용을 위한 해경·기상청·수협 등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협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계획수립	해양수산부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
⇩		
② 예산확보	해양수산부	계획에 따른 예산신청 및 확보
⇩		
③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예산에 따른 정보화사업 계획 및 추진
⇩		
④ 총괄부서 협의	정보화담당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실시
⇩		
② 사업추진	해양수산부	정보화사업 추진
⇩		
③ 성과관리	해양수산부	정보화사업에 따른 성과관리 실시

사 업 명
(129) 해양심판정보(정보화) (4276-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76	500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해양심판정보(정보화)	해양심판정보(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심판정보 (정보화)	157	308	308	308		-	-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사고가 대형화되고 사고원인이 복잡·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특화된 해양사고심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해양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사고심판법」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해양사고심판법」 제41조의2 및 시행규칙 제2조의2(원격영상심판장치)

② 추진경위

1998~2006	○ '98. 5～'98.12 : 기본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 및 통신망 구축 ○ '99. 6～'00. 4 :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 '00. 8～'01. 4 : 행정능률개선 및 시스템 관리프로그램 개발 ○ '02. 6～'02.12 : 재결서검색시스템, 전자해도관리프로그램 개발 ○ '03. 6～'03.12 : 심판자료 디지털화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 조사·심판 전자결재화 시스템 설계 ○ '04. 7～'05. 5 : 심판자료 디지털화, 해양안전심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편 ○ '05. 8～'06. 4 : 전자영상 심판시스템(중해심) 구축, 3D 선박 충돌 시뮬레이터 개발 ○ '06. 9～'06. 12 : 전자영상 심판시스템 지방해심 확대 구축
2007	○ 전자영상심판시스템 확대구축
2008	○ 1차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2009	○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 구축 · 원격영상 심판시스템 구축, 웹기반 전자해도 구매 · 해양안전심판행정 통합정보시스템 개선 · 홈페이지 개선
2010~2014	○ 2차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 구축 · VDR 해독시스템 구축, 노후전산장비 교체 ○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개편 ○ 통계시스템 개편, 전자영상심판시스템 고도화, 사고위치정보 기능개선 ○ 업무관리시스템 선진화 구축
2015~2021	○ 대국민 정보제공시스템 구축('15) ○ 해양안전심판원 정보화시스템 기능개선('16) ○ 원격영상심판시스템 구축('17) ○ 해양사고 관리시스템 재구축('18) ○ 원격영상심판시스템 확대구축('19) ○ 해양안전심판원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사고 조사·심판 정보화시스템(5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사업 수혜자 : 관련분야 종사자, 해양사고 관련자, 대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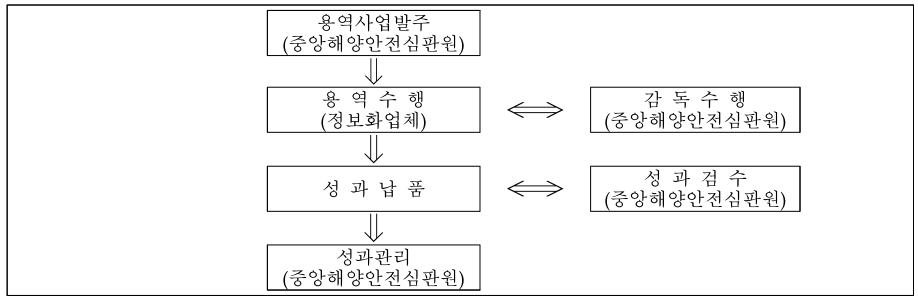

사 업 명
(130) 해양조사 정보 (4277-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77	500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해양조사정보(정보화)	해양조사정보(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조사정보	2,845	2,838	2,838	2,605		△233	△8.2

4. 사업목적·내용

-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해양 측량, 관측 및 조사 자료 등을 표준화된 해양공간정보 DB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정책 수립 및 해양생활안전에 필요한 고품질의 정보 제공
- (전지구해양관측센터 구축) 국가해양관측망을 통해 수집되는 전지구 관측정보를 공유, 통합하여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동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관리・기술지원
- (해양조사정보 기반시설 운영유지) 정보화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안 강화를 통해 대민 해양정보의 제공과 내부 행정업무 정보화의 효율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20조(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 해양과학조사법 제22조(관리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으로 지정('09.7)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종합해양정보시스템(TOIS) 구축
  - ・2009.1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법률」에 의한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0～'15)에 해양분야GIS 반영
  - ・2010.8 : 3단계 해양조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11～2015)
  - ・2013.5 : '12년 수행 중앙부처 우수 공간정보사업 평가(최우수상)
  - ・2014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
  - ・2020 : 해양조사 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
-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센터 구축
  - ・2008.11~2012. 2 : 전지구 실시간해양관측정보센터 구축
  - ・2009.2 : 국제해양학위원회(IOC)의 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NEAR-GOOS) 실시간해양정보(RTDB) 한국 대표기관으로 지정
  - ・2018.12 : 제19차 동북아시아 해양관측시스템 조정위원회 참석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1 ~ 계속

- 사업규모 : 국가해양관측망(134개소), 해안선(15,281km) 실측, 우리나라 전해역 측량 자료 등을 파일 및 DB로 관리, 해도(1,100종) 제작 및 수치해도 서비스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조사원
- 사업 수혜자 : 민·관·군 및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수립 ⇒ 예산확보 ⇒ 사업추진계획수립 ⇒ 관련부서협의 ⇒ 사업추진 ⇒ 성과관리(평가)

※ 국립해양조사원 용역발주 관리 및 계약관리 요령에 준하여 처리

사 업 명
(131) 연안관리정보구축(정보화) (4278-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78	500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연안관리정보구축(정보화)	연안관리정보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연안관리정보구축(정보화)	428	398	398	893		495	124.4

4. 사업목적·내용

-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안관리·정비, 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 공유수면 관리·매립, 해수욕장관리 등의 행정업무지원 서비스 및 연안의 지형, 이용현황 등 연안관리정보DB 등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연안관리법」

○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제34조의12)

-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 연안의 지형·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연안이용현황,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항만·어항·도로·산업·도시·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사회정보, 연안재해 위험평가 결과 등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제59조)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② 추진경위

- 1단계('99~'0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기반조성 및 응용기술개발
- 2단계('04~'08년) 구축된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재정비 및 활용 확산
- 3단계('09~'13년) 연안통합관리업무의 체계적 지원과 융·복합, 공유 및 연계
- 4단계('14~'19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공유 및 정립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안관리·정비, 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 공유수면 관리·매립, 해수욕장관리 등의 행정업무지원 서비스 및 연안의 지형, 이용현황 등 연안관리정보DB 등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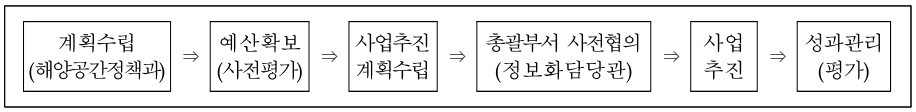

사 업 명
(132)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4280-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80	500
명칭	해양수산정보화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4,632	2,412	2,412	2,412		-	-

4. 사업목적·내용

○ 업무별·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연계하고 공공·연구·민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 데이터 관리체계(플랫폼) 구축

- 해양수산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공공행정·해양수산업·과학기술 등에서 필요한 정보의 생산·제공, 융합·분석·활용 지원

○ 해양공간의 바람직한 용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하는 해양공간통합관리에 필요한 업무*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도기반 해양공간정보 생산·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제5조 ~ 제11조)

- 해양공간기본계획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주요내용 : 정책방향, 해양공간 특성 및 현황, 보전·이용·개발 수요, 공간구조와 기능배분, 용도구역의 지정·관리 등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제12조 ~ 제14조)

- 해역의 현황, 이용 및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별 관리방향을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관리

* 어업, 골재·광물자원, 에너지, 해양관광, 환경·생태관리,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

○ **해양수산정보의 수집 및 조사**(제18조 ~ 19조)

-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산재된 정보의 수집, 조사기관에 정보의 요청, 계획에 필요한 조사를 별도 수행
-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운영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6조)

-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저장·분석·가공·연계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개발

○ **해양수산정보의 제공**(제8조)

-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에서 수집·관리하는 해양수산정보, 분석·가공한 결과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 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16.9)
-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16.12.)
-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17.9.)
-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17.12.)
- 「해양수산정보 민간개방 로드맵('18~'22)」 수립('17.12.)
- 해양수산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정보 분류체계」 마련('17.12.)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8.4)

-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제정('18.10.)
- 제1차('19~'21)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 수립('18.12.)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19.4)
-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19.11)
- 한국판 뉴딜('20.,관계부처 합동) 과제 반영 : 데이터 全주기 인프라 강화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1.2,관계부처 합동) :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해양수산부) -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o 기관·업무별로 생성·관리되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 (플랫폼) 산재된 데이터의 연계·통합 기반 및 공통분석도구 도입·구축
- (데이터) 해양·수산·해운물류 등 해양수산정보 770종 수집·연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수산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해양수산 빅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연차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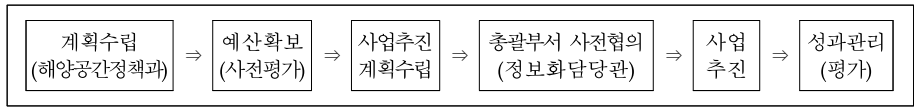

사 업 명
(133)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 수거·처리 (5067-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7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항만유류오염관리시설 지원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 수거·처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 수거・처리	14,567	13,658	13,658	14,902		1,244	9.1

4. 사업목적·내용

- (청항사업) 전국 주요항의 해양부유 폐기물 수거 및 기름 등 폐유 수거・처리를 통하여 쾌적한 항만조성 및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

- (폐유사업)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여 선저폐수 등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한 오염물질 불법 해양투기 행위 사전 예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3항 :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
-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제1항 :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제3항 :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운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공단에 위탁

② 추진경위

- 청항업무

・'97. 05 : 청항업무 위탁방침 결정(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 기본계획 수립)
・'97.12~'98.07 : 청항업무 시범운영 위・수탁계약 체결(인천, 부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항선 8척 시범 운영)
・'98. 08 : 주요항만의 청항선 19척 위・수탁 계약체결
・'10. ~ : 청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매년체결)
・'19.~ : 청항선(22척) 관리 및 운영

- 폐유업무

・'97. 06 : 마산권 3개소(마산, 통영, 삼천포) 시설운영 위탁 및 계약체결
・'97. 12 : 마산권 3개소를 포함한 13개소 시설관리・운영 업무 위탁
・'98. 03 : 오염물질저장시설(13개소) 시설관리・운영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10. ~ : 청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매년체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계속

- 사업규모 : 청항선 22척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1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참여기관) 해양환경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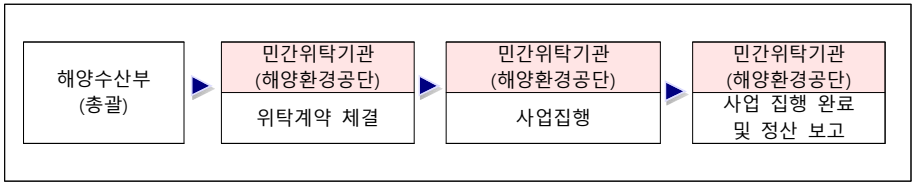

사 업 명
(134)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5067-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7	301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항만유류오염관리시설 지원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	900	900	18,000		17,100	1,900

4. 사업목적·내용

- (실시설계) 국제협약(MARPOL) 상 무역항 내 의무 설치・운영('96~) 중인 선박폐유수용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 (건축) 실시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박폐유수용시설 건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제1항
-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국제협약(MARPOL) 부속서 I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 「각 당사국 정부는 항만에 유성잔류물 및 유성혼합물을 수용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② 추진경위

○ '96~'97년 설치된 노후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시 시설 현대화 시급
- 오염물질(선저폐수, 슬러지, 폐윤활유 등)를 취급하고 있어, 근무자의 안전과 지역의 환경 개선(지속적인 악취 등의 민원)을 위해 근본적인 시설 현대화가 시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5
- 사업규모 : 13개 무역항 내 폐유수용시설 1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참여기관) 해양환경공단
- 사업 수혜자 :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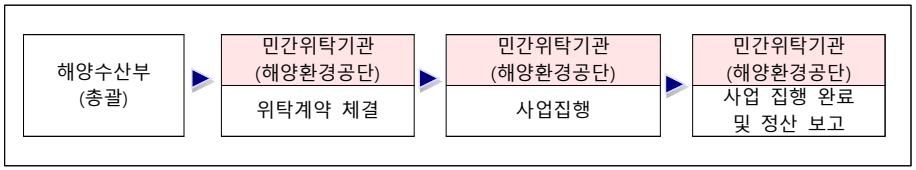

사 업 명
(135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5069-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9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해양산업클러스터 운영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원	1,344	400	400	300		△100	△25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화·융복합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운영하여 고부가가치 新해양산업 육성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16.5.29 제정)

② 추진경위

- (연구용역)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3. 5월~9월, 한국법제연구원)
- (입법공청회)「해양경제특별구역법」입법공청회 개최로 관계부처・전문가・산업계 의견 수렴('13.9.10)

  * 우리부 주관, 김무성・서병수・우윤근・하태경・서용교 의원 주최
- (우리부 법률안 마련)「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리부안 확정 및 추진 계획 장관 방침('13.12.14)
-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원입법)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대표 발의 등 83명 의원('14.03.07) 및 새정치 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 등 10명 의원('14.03.31)
-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임위 상정) 양당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에서 검토한 병합 법률(안)으로 상임위 상정('14.11.19)
-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상임위 공청회('15.4.2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공포('16.5.29)
- (기본계획 수립)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6.7월~'17.3월)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공포('16.11.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16.11.30)
- (기본계획 고시)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고시('17.4.19)
- (개발계획 수립)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17.6월~'18.2월)
- (개발지침 수립)「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제정('17.11.29, 해수부 고시)
- (개발계획 고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17.12.29)
- (추진계획 수립) 부산항.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계획 수립('18.7.16)
- (연구용역)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추진('18.6.2)
- (개발계획 변경 고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 고시('19.3.26)
- (개발계획 변경 고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고시('19.4.4)

- (국무회의) 부산 2030 EXPO관련 해양산업클러스터 추진 보류결정('19.11.28)
- (규정고시)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 고시('20.7.28)
- (2차 기본계획)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1.3~11, 산업연구원)
-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고시('21.11.25)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 ~ 계속
- 사업규모
  ▪ 제1기 해양산업클러스터(조성완료)
  · 부산항 우암부두(178,679㎡)
  · 광양항 중마일반부두(78,470㎡), '컨' 1단계 4번선석(209,414㎡)
  ▪ 제2차 개발계획 수립 : 300백만원('2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항만공사, 지자체 등
- 사업 수혜자 : 직접·육성이 필요한 新해양산업 전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지원 (조성)	보조	항만공사	-	국비25%, 지방비25%, 민자50%	「해양산업클러스터법」제21조
해양산업 클러스터지원 (계획 수립)	직접 수행	-	300	국비 100%	-

* '22년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직접 수행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절차 및 '22년도 사업추진계획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제6조)	해양 수산부	해수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 광역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
⇩		
② 지정·개발계획 수립 (제9조~제14조)	해양 수산부	① 해수부장관이 직접 수립(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확정 ②,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수립 후 해수부장관에 제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확정
⇩		
③ 시행 (제25조~제37조)	해양 수산부, 지자체, 항만공사	기본·실시설계 ⇨ 실시계획수립 ①항만시설 : 항만법 준용 ②항만시설 외 : 시도지사 또는 개발사업자 지정(해수부 협의)

사 업 명
(136)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61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1	301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선원근로 복지 향상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6,199	6,343	6,343	6,617		274	4.3

4. 사업목적·내용

- (경상운영비) 「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설립된 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인건비·기관운영비 지원
- (선원직업안정사업) 선원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선원 및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안정사업 수행
- (선원복지증진사업) 선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원 및 선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사업 실시

- (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 원양구역 운항 선박 승선 선원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원양선원을 대상으로 선박에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처치 지도, 건강상담 등 원격의료 서비스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원법」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제143조(사업)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② 추진경위 : 선원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선원법」 제142조(설립)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립(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01. 6. 29.)하여 관련 사업 추진('01~계속)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1년~계속
- 사업규모 :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연간 약 17만여명 수혜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선원법」 상 선원 및 선원가족 등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상운영비	보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997	100	「선원법」 제118조(정부의 보조)
선원직업안정사업	보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1,462	100	「선원법」 제118조(정부의 보조)
선원복지증진사업	보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292	100	「선원법」 제118조(정부의 보조)
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	보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866	100	「선원법」 제118조(정부의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 적용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집행절차 : 전 내역사업 동일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금 교부 신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계획서 제출)
⇩		
②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 확정·통지 및 교부
⇩		
③ 보조사업 수행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 수행상황 분기별 보고 및 보조사업 실적 보고
⇩		
④ 보조금 정산	해양수산부	보조금 정산 및 보조사업자 잔여 보조금 반납

사 업 명
(137)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613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1	305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선원근로 복지 향상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선원정책 및 선원 인력 역량강화	4,237	750	750	1,150		400	53.3

4. 사업목적·내용

- (선원수첩 제작) 선원법에 따라 선원의 신분증명을 위한 선원수첩을 제작하여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적기에 선원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선원법에 따른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실시 시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수당 지급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선원인력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해 미 취업 청년해기인력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특화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지원으로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지원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해외선사로부터 관리선박 유치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육성
- (선원인권보호교육사업) 선내 인권보호 및 갈등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운항 달성 및 안전사고 방지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원법

제45조(선원수첩) ①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음으로써 선원수첩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선원은 승선하고 있는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를 선장에게 제출하여 선장이 보관하게 하여야 하고, 승선을 위하여 여행하거나 선박을 떠날 때에는 선원 자신이 지녀야 한다.

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①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적성심사기준의 충족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67조(벌칙)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때
2.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3.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25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

○ 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및 절차 등) ⑤ 해양항만관청은 적성심사를 매년 6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으로 적

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성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0조(인증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인증센터의 운영) ① 인증센터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이하 "심사전문인력"이라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 바. (생 략)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되려는 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선원수첩 제작
- 세월호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을 위해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강화('15.7)

- 선박관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및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사업 추진('19~계속)
- 인권의식 제고 및 선원 근로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선원법 개정을 통하여 선원, 선박소유자 등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선원인권교육 사업을 추진('22~계속)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 추진('22~계속)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계속
- 사업규모 : 선원수첩 제작(11,000부),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1식(76회),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200명), 선박관리전문가 양성(150명)
  선원인권보호 교육,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1개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민간위탁사업(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선원 및 선사, 선박관리사업자, 미취업 청년해기인력, 선박관리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보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00	국고 100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보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200	국고 100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13조
선원인권보호 교육사업	보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300	국고 100	「인신매매증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 및 제167조(벌칙)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위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00	국고 100	「선박관리사업발전법」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7. 사업 집행절차

○ 선원수첩 제작 : 선원수첩 제작 계획 수립(해수부) → 제작 계약 체결(해수부-제작업체) → 제작(제작업체) → 지방청 배포 및 선원수첩 발급

○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 지방청 예산 교부 →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신청(민원인) → 적성심사 실시(지방청)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 포함) → 보조금 교부(해양수산부) → 집행 및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선박관리협회) → 보조금 정산(해수부)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 포함) → 보조금 교부(해수부) → 집행 및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선박관리산업협회) → 보조금 정산(해양수산부)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 운영계획 수립(해수부) → 위탁계약 체결(해수부-해양수산연수원) → 인증센터 운영, 집행 및 사업실적 보고(해양수산연수원) → 위탁운영 정산(해수부)

○ 선원인권보호 교육사업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 포함) → 보조금 교부(해수부) → 집행 및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선박관리산업협회) → 보조금 정산(해수부)

사 업 명
(138)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6131-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1	310
명칭	해운산업선진화	선원근로 복지 향상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564	406	406	464		58	14.3

4. 사업목적·내용

–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통해 글로벌 해기사로 육성 후 해외취업을 지원

– (해사영어 교재개발) 국내해기사의 글로벌 의사소통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에 따른 표준해사영어 교육시행 및 해기사 영어평가 개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원법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및 제118조(정부의 보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8 : 선상 의사소통 능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는 표준해사영어 교육과정의 설계, 교재 개발 로드맵 수립

- 2018 :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 2018.12 :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방안 수립
- 2019 :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 2019 :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표준 해사영어 교재개발 용역

  * 표준 해사영어 일반 10개 단원 교재 개발

- 2020 : 표준 해사영어 교재개발 사업 추진 및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추진

  * 표준 해사영어 일반 10개, 항해 10개, 기관 10개 단원 교재 개발

- 2021 : 해사영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강좌(40강) 개발 및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글로벌 승선취업) `20~계속, (해사영어 교재개발) `20~`24
- 사업규모 : 청년 해기사 40명 해외취업 지원 및 표준 해사영어 교육 시험 집행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해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해기사, 부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기사 글로벌 역량강화	보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64백만원	100	선원법 제118조(정부의 보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0조(보조금)

7. 사업 집행절차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젝트>

○ 글로벌 역량교육 → 능력인증시험 → 승선수습 → 취업연계

– (글로벌 역량교육) ① 해사영어+② 선상 리더십 교육+③선사 맞춤식 직무교육 (연수 3개월+승선수습 3개월)

– (능력인증시험) 마링스테스트(해사 영어능력 인정시험) 및 채용면접

– (승선수습) 핀란드 등 유럽 선사의 취업 연계 승선

– (취업알선) 선주 대상 홍보(Crew 컨퍼런스 관련 국제포럼 등)

<해사영어교재 개발>

○ 해사영어교재 개발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영어구술시험문제 개발 및 시행

– (해사영어교재) ① 일반해사 영어교재+② 전문해사 영어교재(항해, 기관)+③교사 매뉴얼 및 교육생 학습지침서

– (온라인시스템) 동영상 강좌 제작 및 배포

사 업 명
(139) 해사고등학교 지원(61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2	300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해운인력양성 지원	해사고등학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사고등학교 지원	5,397	9,006	9,006	12,830		3,824	42.5

4. 사업목적·내용

- (마이스터고 운영) 우수 해운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승선실습, 산학협력, 취업지원, 체험학습, 해기실무영어, 방과후 학교 등)
- (실습장비 및 실습실 확충) 우수 해운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장비 및 실습실 확충
- (교육환경 개선) 기존 노후 시설 개보수 및 노후 교육비품 교체로 교육환경 개선
- (교육시설 신축 및 증축)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미래형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기존시설을 대체하는 교육시설 신축(증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경비부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소요액),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소요액의 산정 등),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1항, <별표> 비고1 및 비고2의2 다

② 추진경위

- 해사고등학교가 개교(부산 '78년, 인천 '81년)한 이래 선박운항에 필요한 기술교육의 실시로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실습장비 확충 및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전문 해기사를 양성해 옴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사업규모 : 산업수요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실습장비 확충 및 시설 개보수
  - ·부산해사고 : 부지 62,782㎡, 건물(연면적) 9개소 23,743㎡
  - ·인천해사고 : 부지 66,083㎡, 건물(연면적) 10개소 20,91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 사업 수혜자 : 해사고등학교 재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도별 예산확정 → 분기별 예산배정 → 월별 자금교부 → 집행

사 업 명
(140) 해양수산연수원 지원(6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2	302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해운인력양성 지원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55,811	43,821	43,821	41,129		△2,692	△6.1

4. 사업목적·내용

- (민간경상보조)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해기사 등 국가자격검정 및 실습선 4척 운영
- (민간자본보조) 해기사양성과정 승선훈련을 위한 노후실습선 대체 및 국제협약과 국내법 준수를 위한 노후실습장비 교체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원법, 선박직원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② 추진경위 - 1978년부터 현재까지 국제협약(IMO STCW협약) 및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선원 재교육과 국가자격검정시험(해기사, 의료관리자) 등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78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해기사 등 국가자격검정, 교육실습장비 구축 및 노후실습선 대체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 연수원 지원	보조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41,129백만원	재량	선원법 제118조(정부의 보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0조(보조금)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국회 정부 예산(안) 심의	기재부, 해수부, 국회	국회법 등
⇩		
② 이사회 예산(안) 상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		
③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	해수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		
④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		
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해수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⑥ 국고보조금 정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		
⑦ 이사회 결산(안) 상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		
⑧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	해수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

사 업 명
(141)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61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2	303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해운인력 양성지원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	500	500	500		-	-

4. 사업목적·내용

-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 선원 비중 증가*, 국적선원 노령화 심화** 등으로 인한 세대 교체 시기의 국적해기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촉진

  * 외국인 해기사 비중 : ('12) 18% → ('14) 19% → ('16) 24.1% → **('18) 26.7%**

  * 국적해기사 연령비중 : (20대) 16%, (30대) 10%, (40대) 12%, **(50대) 26%, (60대) 36%**

- 선원의 세대교체 시기에 대비하여 미래 해운물류를 책임질 젊은 국적 해기사들의 해기전승(海技傳承)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원법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및 제118조(정부의 보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 사업규모 : '21년 5억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사업 수혜자 : 청년 국적해기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적해기사 일자리 지원	보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500	33.3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제122호.

7. 사업 집행절차

-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사업 운영 및 집행을 관리하고, 사업대상 선정, 지원 내용 등 사업추진에 있어 주요 결정은 노-사-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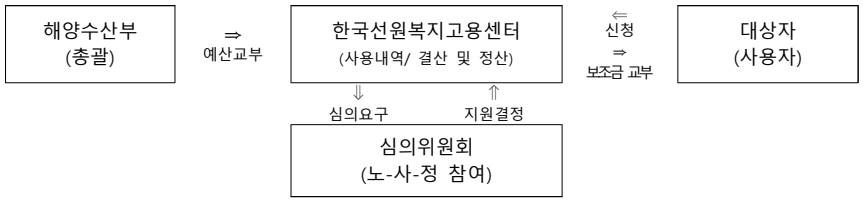

사 업 명
(142) 관공선 건조 및 운영(613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00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관공선 건조 및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관공선 건조 및 운영	13,557	19,689	19,689	30,439		10,750	54.6

4. 사업목적·내용

- (관공선 운영사업, 건조사업, 수리사업) 무역항 관할 11개 지방해양수산청(지방관리항 관할 5개 지자체 포함) 관공선의 건조비, 유류비 및 법정 선박 검사에 따른 수리비 등 지원
- (친환경관공선 도입) 공공선박의 친환경선박 구매 의무화('20.1)에 따른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상태평가 지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장착 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검사 및 확인) : 항만내 순찰선 등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검사·확인

제48조(검사·확인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선박의 소유자·선장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이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4항, 제7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7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항로표지법 제9조(항로표지 설치·관리) : 항로표지 설치・관리를 위하여 선박 등 필요장비 확보・유지

제9조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선박 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해양오염방지활동) : 해역관리청은 폐기물 수거,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운영

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② 해역관리청은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공간에 대하여 수질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측정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 등 오염방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선박안전법 제7조~제11조(선박검사) : 선박소유자는 매년 선박안전을 위한 선박검사를 수검하여야 함

제7조 (건조검사)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정기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9조 (중간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임시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 (임시항해검사) ①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하며,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61년부터 무역항 질서단속, 항로표지 정비·점검 및 해상쓰레기 수거 등 행정집행수단으로 지방해양수산청(지방관리항 관할 지자체)에서 관공선 건조・운영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1. ~ 계속
- 사업규모 :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관리무역항 관할 지자체 소속 관공선 52척 건조 지원(순찰선 29척, 청항선 22척, 측량선 1척) 및 관공선 49척 운항 지원(순찰선 29척, 표지선 19척, 측량선 1척)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강원도,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 사업 수혜자 : 31개 무역항 이용자

7. 사업 집행절차

○ 유류 및 선용품은 입찰경쟁 또는 물품구매 절차로 집행

○ 선박 대체건조 대상 선정

- 선박의 사용연한은 선박의 운항 특성 또는 유지보수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일정한 연한을 책정하기 곤란
- 노후관공선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대체 건조가 필요한 선박을 선정
- 선박의 노후로 인한 선체 안전성 저하 및 유지관리비용 급증으로 선령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2~3척 대체 건조를 추진해오고 있음

○ 관공선 건조 및 수리 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 및 준공

▸ 관공선 (대체)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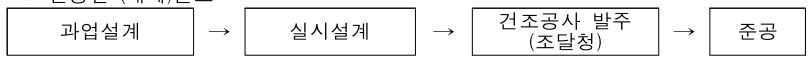

▸ 관공선 수리

사 업 명
(143) 전환교통 지원 (61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02
명칭	해운사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전환교통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전환교통 지원	3,000	3,000	3,000	2,700		△300	△10.0

4. 사업목적

- 교통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친환경 수송수단인 연안해운의 화물수송 확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제21조(전환교통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 이용자, 화주(貨主)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9. 6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보조금 지급근거) 제정

  * Modal shift촉진을 위한 협약제, 보조금지급, 시설지원 등 규정

- '10. 3 :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10~계속 : 사업자 선정을 통해 전환교통 지원사업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0년~계속
- 사업규모 :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운송하는 물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 위탁)
- 사업 수혜자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자(화주 및 물류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환교통 지원	보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자	2,700	10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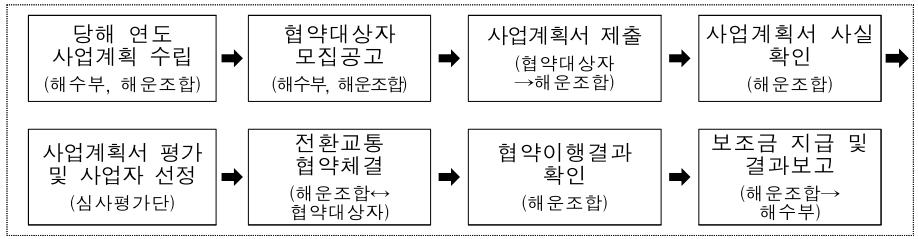

사 업 명
(144)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613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03
명칭	해운산업선진화	해운물류지원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5,669	5,769	5,769	5,669		△100	△1.7

4. 사업목적·내용

-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수물자 및 국가물자의 원활한 해상 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및 선원 확보

- 국가필수선박은 국적선원 2명을 추가고용*해야하며, 발생된 임금부담(국적선원과 외국적선원 임금차액) 지원

* 非 국가필수선박은 외국인 선원 8명 고용 가능, 국가필수선박은 외국인 선원 6명 까지 고용 가능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국가필수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자(「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하며, 소유자·외항운송사업자·선박대여업자를 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화물의 수송을 명할 수 있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 및 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명령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가필수선박의 선원수급 안정화 추진방안』 마련('05.1) 및 국가필수선대 시행 관련 관계부처 협의('05.2~4) → 국가필수선대 도입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정부지원(`06년 예산 반영)
  * 재정여건상 연도별로 단계적 지정운영 → '06년은 30척 지정키로 노사정 합의('05)
  **「국제선박등록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06)
  *** 국가필수선박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88척으로 확보하기로 노사정 합의('07)
-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고시」(`17)
-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정·시행 및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요령 제정(`2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	6,100	5,505	5,669	5,769	5,669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국가필수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선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필수 선대제도 운영	보조	선사	5,669 백만원	100%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13조 - 외국인 선원 승선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7. 사업 집행절차

① 필수선박 지정계획 확정 (전년도 12월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관련규정:「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② 지정신청(선사), **지정완료**(해수부) (전년도말)	해양수산부장관 ↔필수선박 지정선사
관련규정:「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2조	
⇩	
③ 필수선박 임무수행 (당해연도 1.1~12.31)	필수선박 지정선사
관련규정:「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5조~제9조	
⇩	
④ 손실보상 기준 산정 고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당해연도말)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 ↔필수선박 지정선사
관련규정:「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조	

사 업 명
(145)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613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07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65,374	55,380	55,380	21,860		△33,520	△60.5

4. 사업목적·내용

-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연안선박의 안전 확보 및 중소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모태펀드 방식으로 출자하여 노후 연안선박의 신조를 지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도입(신규건조 등)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대출분에 대한 이자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운법」 제38조·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9조

해운법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 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해운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라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 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해운법 시행령 제1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드는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서 선박건조 지원을 위한 신규제도 도입 : '14.9
- 연안여객선 현대화 T/F 운영*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도입 결정 : '15.9
  * 해수부, 산업부, KMI, 중소조선연구원, 조선해양플랜트연구소, 대한조선학회, 산업은행, KSF선박
- 현대화 펀드의 세부 운영방안 수립 및 관련 고시 제정(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15.12~2
-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사업 시행 : '16.3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추진방안 방침결정('12.11.23)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14.9, 국무회의 보고)

○ 현재 시행 중인 이차보전 사업(선박건조 대출이자의 3%지원) 확대* 및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선박 신조지원제도 도입 추진
  *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 대출규모, 지원대상, 상환기간 등 확대 검토

-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15.2, 국무회의 보고)

○ 연안 여객선의 획기적 신조 촉진 및 중소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이 해상교통 SOC라는 인식전환을 기반으로 국가가 선박 건조에 투자하는 「선박공동투자제도」 도입 등 검토(관계부처 협업)

- 이차보전사업 지원규모* 및 대출상환기간 확대**('15~)
  * '13년 300억원 → '14년 500억원 → '15년 이후 1,250억원
  ** 8년(3년거치 5년상환) → 10년(5년거치 5년상환)
- 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조정* 및 대출상환기간 확대**('16~)
  * '15년 이전 : 3% → '16년 이후 : 2.5%
  ** 10년(5년거치 5년상환)→ 15년(5년거치 10년상환, 3년거치 12년상환 중 선사 선택)
- 이차보전사업 지원규모* 축소 및 대출금리 조정**('21~)
  * 1,250억원 → '21년 이후 500억원
  ** 노후선 대체 및 친환경선 건조 : 2.5%, 단순 신조 : 2.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이차보전 대출액 한도 500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출자	내항여객운송사업자	7,500	30	「해운법 시행령」 제19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이차보전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등	14,360	100 (대출이자의 2.5% 이내)	「해운법 시행령」 제17조

7. 사업 집행절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펀드운영지침 수립(해수부) ⇒ 펀드관리기관 공고·선정(해수부) ⇒ 펀드지원 사업자 공고 및 선정(펀드관리기관)

⇒ 선박대여회사(SPC) 설립(펀드관리기관) ⇒ 선박 건조 및 용선(선박대여회사) ⇒ 용선료 납부(선사→선박대여회사)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대상 공고 (해수부) ⇒ 신청서 접수 (해운조합) ⇒ 신 청 서 평가·선정 (심사위원회) ⇒ 대출심사 (민간은행) ⇒ 이차보전액 지원 (해수부)

사 업 명
(146)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613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세부사업코드(3자리)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세부사업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운물류전문 인력양성지원	4,983	5,083	5,083	4,866		△217	△4.3

4. 사업목적·내용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

- 해운·항만물류분야 종사자,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 교육 및 인턴십 운영을 통해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지원

(해운금융전문인력양성지원)

- 해운 및 금융 현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집합교육(강의, 세미나, 현장 실무 워크숍 등) 지원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 지원사업)

- 비대중성·전문성을 가진 해상물류분야에서 실제 취업·창업을 위한 인재 양성에서 서비스 개발, 취업·창업지원, 투자유치 지원까지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실무형 인재양성,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아이템 발굴 및 R&D를 통한 고도화, 창업 멘토링, 기업의 시제품 테스트 및 판로지원 등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재취업 지원사업)

- 해운항만 업계 침체와 고용상태 불안에 대응하여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맞춤형 재취업 지원 추진
-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맞춤형 재교육과 재취업 지원, 재취업 지원 정보 플랫폼 구축 등으로 고용 안정화 도모

(한국해운물류산업 활성화 기반마련)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해운항만을 둘러싼 글로벌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해운항만인력의 저변확대 및 전문성 제고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해운물류 안전교육 인력양성 지원)

-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항만노동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국내외 확산시키기 위해 각국 항만운영사 핵심관리자를 ILO 교육기관에 초청하여 교육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4.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교육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클라우드컴퓨팅・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2.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활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제23조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제28조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국가물류개선대책**(국무회의)에서 **「물류인력 육성대책」** 추진결정('04.)

-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 방침 결정('06.4)

  * 해운항만전문인력 양성사업 기본계획 수립('04.10) → 해운항만전문인력 양성사업 1차 5개년('05~'09) → 2차 5개년('10~'14)사업→ 3차 5개년('15~'19)사업 추진 중

-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의결('19.1) : 과기장관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의 과제로 "표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전환" 추진 등 명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인력양성) 취업준비생(학생), 재직자, 고급전문인력을 대상으로 3개과정 및 해운금융과정 운영/ (실무형일자리지원) 취업준비생, 항만물류 분야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 인재양성, 창업 멘토링 등 4개 과정 운영 / (재취업) 해운항만산업 재취업 교육 50명, 취업지원 50명/(안전교육인력 양성) ILO 교육훈련센터 PDPII(항만노동자 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인력양성)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실무형일자리지원) 항만공사, 관련 대학/(재취업) 부산테크노파트/(안전교육인력 양성) 국내 해운물류관련 연구・교육기관
- 사업 수혜자 : 해운물류관련 대학(원)생, 해운물류(해운·항만, 해운금융 포함) 종사자 / 전국의 대학(원)생(학과 무관), 항만물류 분야 (예비)창업자 등 / 해운항만산업 실・퇴직자 및 실・퇴직 예정자/각국의 항만운영사 핵심관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보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16	국고보조금 20% 이상 매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해운금융 전문인력양성	보조	글로벌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100	7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실무형 해상물류 일자리지원	보조	울산항만공사	1,0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해운항만물류 산업 재취업 일자리지원	보조	부산테크노파크	2,05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한국해운물류 산업활성화 기반마련	보조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연합회	1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해운물류안전 교육인력양성 지원	보조	ILO(국제노동기구)	1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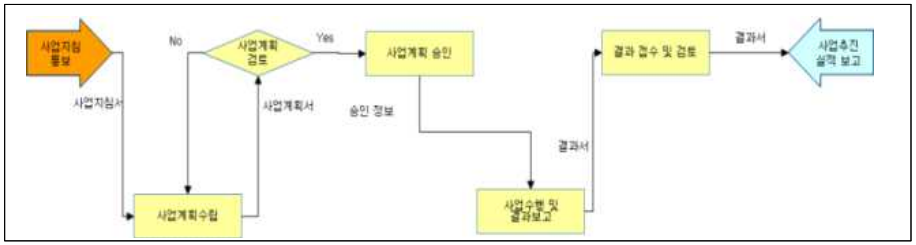

사 업 명
(147)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6133-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10
명칭	해운사업선진화	해운물류지원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크루즈산업활성화지원	818	1,030	1,030	840		△190	△18.4

4. 사업목적·내용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확대) 국내 주요 기항지에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선사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공동 해외 포트세일 추진

-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 크루즈 체험단(일반인 대상으로 체험비용 일부 지원)과 방송홍보 등을 통해 국내 크루즈 수요를 확대하여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 및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 기반 조성

- (국제 크루즈 행사지원) 국내·외 크루즈 전문가를 초청, 정보교류, 기항지 홍보, 선용품 수출 마케팅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계 크루즈산업 현황과 향후 전망,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방향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추진경위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2)
-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16~'20) 수립('16.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사업규모 : 외국적 크루즈선 기항확대, 국내 크루즈 수요확대(크루즈 체험단, 방송홍보 등), 국제 크루즈 행사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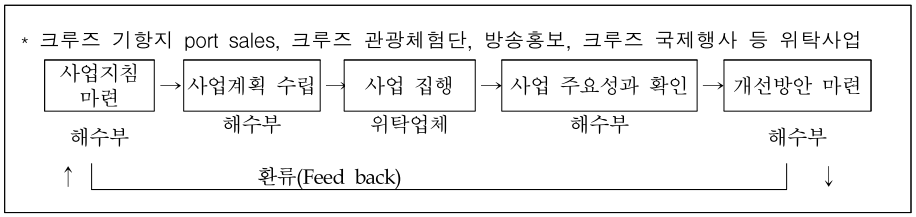

사 업 명
(148)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축 지원 (6133-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14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친환경 항만하역장비 구축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25~9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친환경 항만하역 장비구축 지원	1,905	1,140	1,140	2,167		1,027	90.1

4. 사업목적·내용

- (항만YT 친환경 LNG 전환) 항만의 주요 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YT)의 연료를 경유에서 친환경·저비용 연료인 LNG로 전환하여 배출가스 저감(미세먼지 zero) 등 친환경 항만 운영 도모

- (항만하역장비 배출저감장치(DPF) 부착) 항만 내 경유를 연료로 하는 하역장비(야드트랙터, 트랜스퍼크레인 등)를 대상으로 배출저감장치(DPF)를 부착하여 배출가스 저감(미세먼지 90%이상 저감) 도모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제17조(친환경 항만의 구축),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② 추진경위

- 국토교통부 주관 녹색물류전환 부문 민간제안사업(총3억원)으로 선정되어 '14년 야드트랙터 2대 LNG 전환 시범사업 실시

* 당초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에서 물류분야 녹색물류 관련 정책을 총괄, 부처 개편에 따라 항만분야를 포함한 소관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

- '15년부터 항만YT 친환경 LNG연료 전환사업(계속사업) 시행, '20년도 YT DPF 부착사업 시행(309대 부착 완료)

* (정부예산 반영 추이) '15) 360백만원, '16) 360백만원, '17) 360백만원, '18) 1,025백만원, '19) 1,200백만원, '20) 2,485백만원, '21) 1,140백만원

6. 주요내용

① 항만YT 친환경 LNG 전환사업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계속
- 사업내용 : 항만 YT(Yard Tractor)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터미널 운영사,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항만공사	25	-

② 항만하역장비 배출저감장치(DPF) 부착사업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2022년~
- 사업내용 : 경유 사용 하역장비(YT, TC)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공사 및 터미널 운영사,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항만공사	45~90	-

* (PA 관리항만) 민간 10%·국가 45%·PA 45%, (일반항만) 민간 10%·국가 90% 보조

③ 공 컨테이너 간이 검사 관리체계 구축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년(단년도 사업)
- 사업규모 : 부산, 인천, 광양, 울산에서 연간 약 10,000대 컨 시범 점검
- 사업시행방법 : 정보시스템 고도화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공사 및 터미널 운영사, 일반국민

7. 사업 집행절차

①대상 터미널운영사 선정(해당 지방청·항만공사) → ②교부신청(해당 지방청·항만공사) → ③교부결정(해수부) → ④집행(해당 지방청·항만공사 → 터미널운영사) → ⑤실적보고(해당 지방청·항만공사) → ⑥정산(해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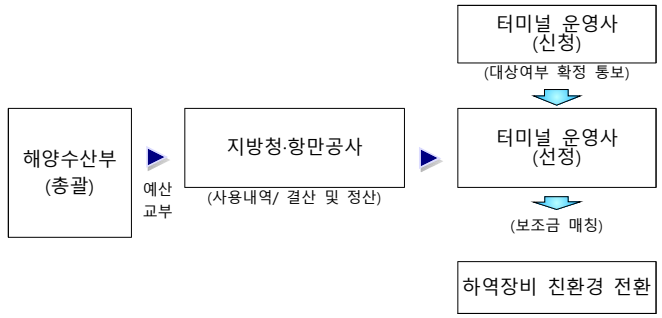

사 업 명
(149)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6133-32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27
명칭	해운사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출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	30,000	30,000	30,000		0	0

4. 사업목적·내용

- 해운장기불황과 한진해운 파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금융지원을 포함한 산업기반조성, 선사 경영개선 및 경쟁력확보, 산업간 협력 등을 총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해운전담지원 기관으로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제5조(자본금)

② 추진경위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안정적·체계적 금융지원을 위한 공사 설립'이 포함
- 국정과제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80번)'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반영
- 정부합동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17.8.24)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7.5)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지원받는 해운항만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

7. 사업 집행절차

○ 공사법 제정 후, 공사 설립위원회를 통한 실무 설립 작업 후 자본금 현금 출자 진행

정부 출자금	⇒	공사법 제정	⇒	설립 절차 (등기 등)	⇒	자본금 출자	⇒	정부 지분 주식으로 확보
해수부		국회		설립위원회		해수부		해수부

사 업 명
(150)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6133-32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28
명칭	해운사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6,109	9,467	9,467	8,730		△737	△7.8

4. 사업목적·내용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적기 대응을 통해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선업종의 물량 확보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운법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친환경선박법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② 추진경위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채택('04.2) 및 발효('17.9.8)
  * 최초 IOPP 정기검사(5년 주기) 도래일까지 BWMS 설치 의무화('19.9~'24.9)
- IMO MEPC 제70차 회의에서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0.5% 이하 규제 결정('16.10)
- 부처 중점추진과제(해운물류 재도약-국적 외항선 신조·개조 지원을 통한 해운·조선 상생)에 반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29
- 사업규모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 AMP 수전설비 설치를 위한 은행 대출분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대출이자의 2%	**해운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친환경 선박법 시행령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또는 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원대상자 공고 (해양수산부) ⇒ 신청서 접 수 (해양진흥공사) ⇒ 신 청 서 평가.선정 (심사위원회) ⇒ 대출심사 (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원 (해양수산부)

사 업 명
(151)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6133-33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33
명칭	해운사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1,858	2,000	2,000	1,500		△500	△25

4. 사업목적·내용

- 서귀포항 내 항만 근로자가 일일 최대 약 350여명이 투입되나 현재 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항만근로자의 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함
- 동해항은 항만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에 취약하며 복지환경이 열악하여 항만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이용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2조 및 제9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지원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 해양수산부장관
나.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2019년부터 항만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편의 제공을 위한 항만근로자 복지관을 건립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가관리무역항)
- 사업시행주체 : 각 지방청
- 사업 수혜자 : 항만근로자 및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보조	지자체 보조 (제주도)	500백만원	50%	(구)항만법 제66조

7. 사업 집행절차

○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실시설계 및 건축 등 계약 절차로 집행

○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집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 및 준공

▸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과업설계 → 실시설계 → 건축공사 발주 (조달청) → 준공

사 업 명
(15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6133-33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34
명칭	해운산업선진화	해운물류지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205	300	300	300		-	-

4. 사업목적·내용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인증 관련 업무 일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증제도 시행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운법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② 추진경위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에 안정적인 화물확보 지원을 위한 핵심과제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반영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해운법」개정('19.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선화주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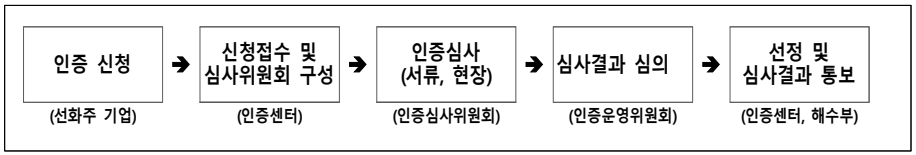

사 업 명
(153)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지원 (6133-33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35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	320	320	320		-	-

4. 사업목적·내용

- (교육훈련비 지원) 자동화 항만 도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기존항만 인력*을 신규 자동화항만** 장비운영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직자 직무전환교육비 지원하는 것임

  * 부산 북항 자성대부두(허치슨터미널) 폐쇄('21.12)로 항만일자리 축소

  ** 부산신항 자동화부두(2-4,5단계) 개장('22~'23년)으로 자동화장비 운영인력 필요

- (교육훈련장비 임대료 지원) 교육훈련장비 4종(항만공사가 구입하여 선정된 교육훈련기관에 임대, 총 구매비 24억원)에 대한 연간 임대료 중 일부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 항만물류 기능인력 양성·교육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4.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교육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정과제 80-5 ② 스마트항만 및 항만 자동화 기술개발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스마트항만 도입이 가속화('22년 예정)되고 있어 관련 기능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

< VIP 지시사항(부산항 비전선포식, '18.3) >

◇ 항만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나 일자리가 줄지 않냐는 걱정도 있으니, 두 가지 조화가 이뤄지도록 정책 추진 필요

- 스마트항만 관련 노사정 협의에 따라 재직자 직무전환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추진에 정부의 선도적 역할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25
- 사업규모 :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21년 200명, '22년 200명 양성, '23~'25년 240명 양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부산항 북항 기존 항만재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교육훈련비 지원	보조	부산항만연수원	275	50%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교육훈련장비 임대료 지원	보조	부산항만연수원	45	25%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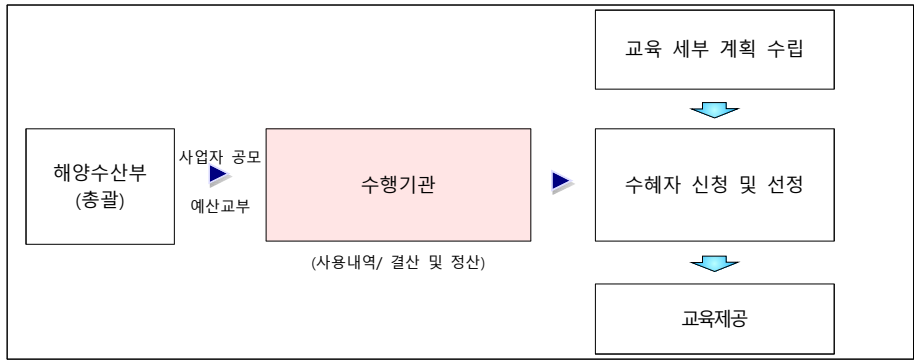

사 업 명
(154)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지원 (6133-34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 추진단	-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43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4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지원	-	1,350	1,350	1,230		△120	△8.9

4. 사업목적·내용

- (항만 내 실시간 작업정보 공유체계 구축지원) 항만공사의 항만 터미널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의 주요항만으로의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운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 (물류 IoT 장비 보급 및 활용 지원) 선사 등 물류업체의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IoT장비 구매·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물류 주체의 실시간 물류 데이터 수집·활용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 ’20.2, 현안조정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입 물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으로서, 물류 기업의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과제로 제시

-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에 따른 물류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지원 방안 도출
- 주요의견으로 서비스 개선,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위한 핵심 데이터/정보 수집 지원(센서, 연동 솔루션)필요성이 제기됨

○ (과기부 블록체인 시범 사업) 과기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제 공모를 통해 부산신항에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운영하여 사업 효과 확인(~’19.12)

- 신항에 한정된 플랫폼을 부산항 전체로 확산시키고, 배차예약시스템 등 추가 기능을 보완한 표준 항만 통합 플랫폼을 구축(~’20.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년~2022년

- 사업규모 :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3개구축,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IoT센서 구매·활용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주관) 해양수산부, (수행)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항만공사, 터미널운영사, 선사 등 물류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항만 내 실시간 작업정보 공유체계 구축 지원	보조	항만공사	480백만원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 IoT 장비 보급 및 활용 지원	보조	한국해양진흥공사	750백만원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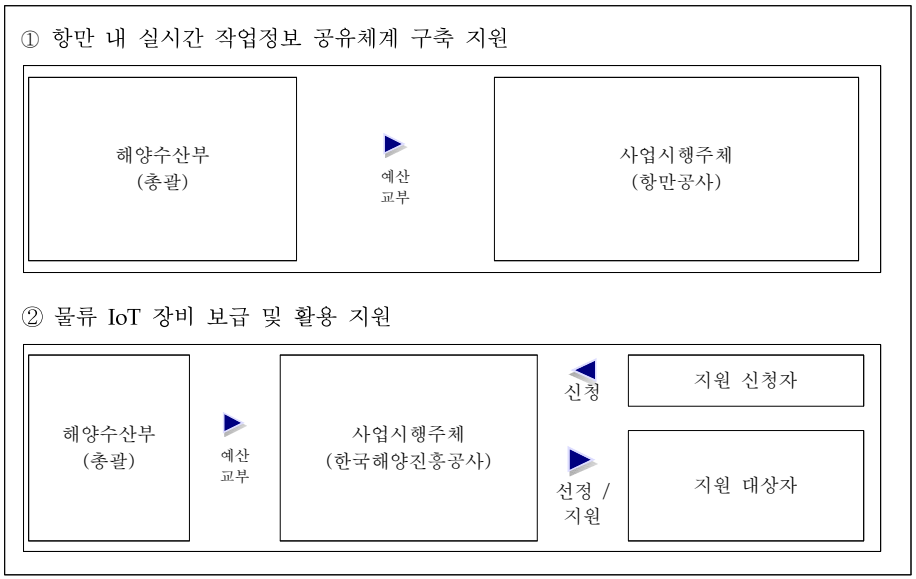

사 업 명
(155)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6133-3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53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25~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	-	-	3,140		3,140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 동 사업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항만하역장의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항만하역사업자의 재해방지 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21.8.3. 제정, '22.8.4. 시행)제3조에 국가의 지원 근거 규정

② (추진경위) 평택항, 부산항 등 연이은 항만 근로자 재해로 항만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중장비 작업 및 24시간 상시 작업 등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항만하역장의 근로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만하역사 재해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22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무역항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
- 사업 수혜자 : 항만하역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 지원	민간 보조	보조사업자 선정기관	3,140백만원	25~50%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은 국비25%, 공사25%, 하역사50%)	항만안전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신청	사업시행	이행점검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 사업추진내용 및 예산확정, · 보조사업자 공모 ·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 보조사업자 입찰 공고 및 선정 ·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검토 및 확정	(해수부)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사업 착수, 중간, 완료 등 보조사업자 점검	(해수부) · 보조사업 현장 점검 총괄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수시 사업점검 및 중간평가	(해수부) ·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 이행 완료 확인 등 · 이행실적 및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
(보조사업자) ·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사용계획 수립 · 보조금 요청	(보조사업자) · 사업세부 공정 등 관리 · 이행 점검 관련 자료 제출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실적 보고 · 보조사업 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제출

사 업 명
(156)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613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4	300
명칭	해운사업 선진화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15,887	16,129	5,000	20,631		4,502	27.9

4. 사업목적·내용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여객선을 운항토록 하여 도서주민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동내역사업은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항로 및 섬-육지간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운항결손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운법」제15조 및 제16조

-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56.12. 대통령령 제1202호에 의거 명령항로 운항개시
- 1967.12. 「해운진흥법」에 근거 마련(제12조 항로 취항명령)
- 1979.10. 낙도보조항로 명칭 개정(해운항만청 고시)
- 1983.12. 「해운법」 제17조에 관련내용 수용
- 1995.12. 「해운법」 개정 시 명령대상을 여객운송사업자로 확대
- 2006.10. 「해운법」 개정 시 보조항로 지정제도 도입
- 2008.10. 보조항로 운항사업자 경쟁입찰에 따라 선정

* (제1기 계약) '09~'11, (제2기 계약) '12~'14, (1년 연장) '15, (제3기 계약) '16~'18, (제4기 계약) '19~'21, (제5기 계약) '22~'2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56~계속
- 사업규모 : 27개 항로 27척 국가보조항로 운항선박 운영결손액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낙도오지 도서주민, 도서관광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보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13,231	100	해운법 제15조 제1항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보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7,400	50~70	해운법 제15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비용 산정 및 예산요구(해양수산부) → 예산 배정(해양수산부) → 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지방해수청) → 결손보상금 지급(지방해수청) → 선박운영(사업자)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사업공고 및 수요조사(지방해수청) → 사업자 선정(해양수산부, 지방해수청) → 사업시행 관리(지방해수청) → 운항결손액 신청(사업자) → 사업자 정산결과 검토 후 결손액 지급(지방해수청)

사 업 명
(157)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613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4	301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도서지역 해상교통지원(일반)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내항여객선운임보조(지자체)	14,595	14,595	14,595	14,640		45	0.3

4. 사업목적·내용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동 내역사업은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섬주민이 부담하는 내항여객선 운임(여객운임 및 차량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03.04 : 정세균 의원(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낙도주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보조 필요성 제기(대통령 업무보고 시)
- '04.11 : 도서민 운임지원 관련법률 개정안 발의(한광원 의원)
- '05.11 : 해수부, 광역지자체 및 여객선사 간 운임지원 협약체결
- '06.1~2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마련, 전산매표시스템 확대 운영 및 도서민 인증시스템 구축 완료
- '06.03.01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행(해운법상 근거마련 '06.10)
- '14.12.31 : 도서민 부담 상한액 인상(5,000원→5,000~7,000원)
- '14.07.01 :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신규 지원
- '19.01.01 :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20%→ 1,000cc미만 50%, 1,600cc미만 30%)
- '20.01.01 : 도서민 여객 및 차량 등 운임지원 확대(20%→ 생활구간(8,340원 미만) 및 생활차량(5톤미만 화물차) 50%)
- '22.01.01 : 미취학 섬주민에 대해 운임지원 확대(무상운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계속
- 사업규모 : 내항여객선 이용 도서민(연간 약 370만명)에 대한 운임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7개 광역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사업 수혜자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등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4,640	50	「해운법」 제44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 보조사업 시행 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해수부)
· 사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시 · 도)
· 국고보조금 교부

➡

지자체 보조금 지급
(시 · 도)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시·군별 교부

➡

섬주민 승선권 매표 및 승선
(섬주민 → 여객선사)
– 섬주민 승선권 신청*
⇒신분증인증 및 입력(해운조합 전산매표시스템 활용)⇒ 발권
* 발권 및 승선 전 신분확인

⬇

보조금 신청 · 집행
(해수부)
· 국고보조금 교부
(시 · 도)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시군 지자체에 교부
(시 · 군 · 구)
· 선사가 인원 및 금액 확인, 지자체에 지원금 신청
· 지자체는 운임지원 기준, 인원 등 적정성 심사, 보조금 교부

➡

이행점검 단계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시 · 도)
· 보조사업 관리
(시 · 군 · 구)
· 보조사업 관리

➡

사업비 정산 · 사후관리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 · 도)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 · 도 → 해수부)
(시 · 군 · 구)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 · 군 · 구 → 시 · 도)

○ 보조사업자(지자체) 지급 절차

– (여객선 사업자) 섬주민에게 여객선 운임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승선권을 발급하고, 매표 실적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금을 청구

– (지방자치단체) 선사가 제출한 운임지원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 ① 도서민 신분증 제시 ⇒ ② 도서민 인증시스템 입력 ⇒ ③ 승선권 매표 ⇒ ④ 보조금 신청(할인내역 첨부) ⇒ ⑤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지자체)

사 업 명
(158) 국고여객선 건조 (6134-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4	302
명칭	해운사업 선진화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국고여객선 건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국고여객선 건조	3,610	6,600	6,600	1,620		△4980	△75.5

4. 사업목적·내용

- 국가보조항로 운항 여객선 중 노후선 또는 항로여건에 부적합한 선박을 대체 건조 후 항로에 투입하여 도서지역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선박·이용객 안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운법」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선정기준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령(船齡)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체하는 경우
  2. 선령 15년 이하인 일반여객선을 차도선(車渡船) 또는 취항하고 있는 항로의 특성에 맞는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3.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보다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보조항로에 취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94년까지 일반회계로 낙도보조항로 노후여객선 국고건조 대체
- 1995. '농특법' 제정에 따라 동 자금으로 국고여객선 대체
- 2007년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이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폐지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으로 이관
- 2009년부터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이 부처통합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5~계속
- 사업규모 :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노후 국고여객선(27척) 대체 건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국가보조항로 도서주민, 도서관광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수요조사 → 대체선박 결정 → 지방청에 예산 배정 → 지방청은 선박설계 및 공사발주 → 조선소에서 여객선 건조 → 지방청에 인도 → 사업자에 관리·운영 위탁 → 여객선 취항

사 업 명
(159)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6134-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4	304
명칭	해운사업 선진화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일반)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1,900	1,900	1,900	1,800		△100	△5.3

4. 사업목적·내용
- 도서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필품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 등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운법」 제44조제2항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7. 5.31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관련법률 개정안 발의(박명재·위성곤·이개호 의원)
- '18.11.23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근거 법률 본회의 통과
- '18.12.31 : 「해운법」 개정(시행 '19.6.12)
- '19.6.3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고시 제정 및 국비 교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사업규모 : 8개 광역지자체 내 도서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가스, 유류 등)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8개 광역지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사업 수혜자 : 도서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800	50%	「해운법」 제44조제2항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60)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6134-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30	6134	307
명칭	해운산업 선진화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	-	50%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1,122	1,012	1,012	556		△456	△45.1

4.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연안 여객선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② 추진경위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16.11)
- 2018년도 국정과제 평가 보완('19.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23년
- 사업규모 : 연안여객선 162척('20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보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56	50	교통약자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교통약자법 제30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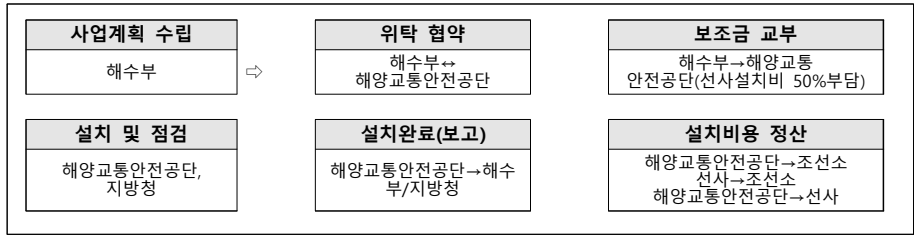

사 업 명
(16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63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2	300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안전관리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64.7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31,353	34,090	34,090	40,160		6,070	17.8

4. 사업목적·내용

-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해양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제1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② 추진경위

- '79. 1. "한국어선협회" 설립
- '97.12.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민간위탁 및 사업비 지원(선박안전법 개정)
- '99.10.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명칭 변경(선박안전법 개정)
- '07. 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 변경(선박안전법 개정)
- '15. 7.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운항관리조직 이관(해운법 개정)

※ '여객터미널 운영' 내역사업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지원' 내역사업으로 편성

- '19.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선박안전업무('79년 ~ 계속), 운항관리업무('94년 ~ 계속)
- 사업규모 : '21년까지 기 투자액 3,150억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사업 수혜자 : 해운·수산업계 종사자 및 여객선 이용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보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0,160	64.7 (수지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0조제1호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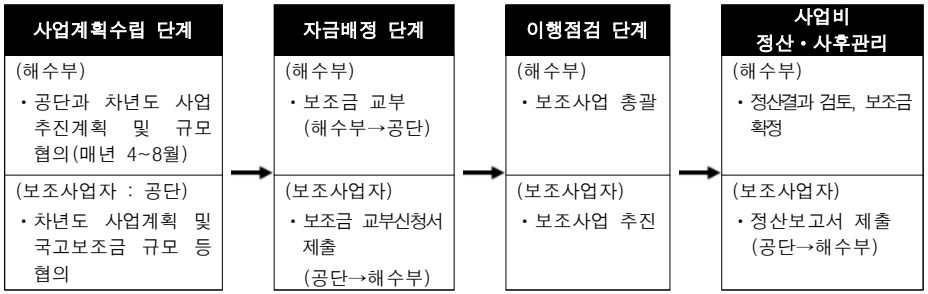

사 업 명
(162) 해상안전 국제협력 (63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2	301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일반)	해상안전 국제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상안전 국제협력	5,638	5,855	5,855	6,355		500	8.5

4. 사업목적·내용

- (**국제해사분야 협력강화**) 국제해사·산업분야 관련 국제협약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 주요 국제규범을 관장하는 IMO를 비롯한 주요 국제회의 참여 및 개최 등 지원
- (**IMO 대응체제 강화**) IMO 국제회의에서 新규제 기술 수준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국익창출을 위한 중·장기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국제협력**) 국외 해양사고 발생 증가에 따라 국제 조사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 및 해양사고 관련 IMO의제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함
- (**국제분담금**) IMO등 각종 국제기구 회원국 의무이행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국제분담금 납부를 지원하기 위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 UN의 IMO협약 발효(1948년), 우리나라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가입('62.4.1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② 추진경위

-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책임·역할 수행을 위해 '03년부터 기술협력사업 추진
- 아국 배출 IMO사무 총장의 선거공약 이행 및 성공적 업무수행 지원
- 아국 우위 해사 분야 기술을 국제협약에 반영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미래 新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중장기적 IMO 대응체계 확립
  *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자국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 관련 기술을 IMO 국제협약에 최대한 반영하여 자국 이익 극대화 도모
  * 우리나라도 IMO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대응기반이 약하여 수동적「국제협약 수용 태세」를 견지해 왔던 실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IMO전담 대응체제 운영	위탁	(재)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990	100	(해사안전법 제99조 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등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37호)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별표 1(전문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의 내용)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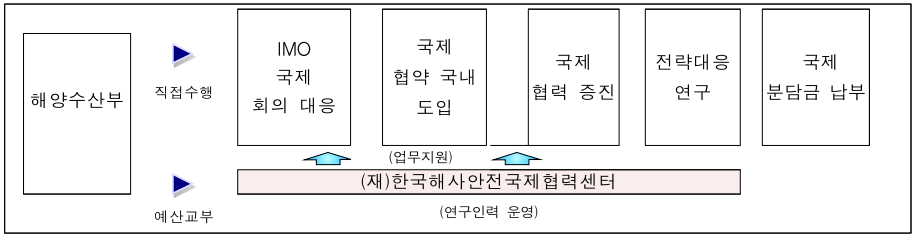

사 업 명
(163)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63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22	302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일반)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체험관안전관 운영 (국고 60%) · 엑스포(국고 18%)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14,280	15,787	17,267	8,432		△7,355	△46.6

4. 사업목적·내용

○ 선사의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여객선·위험물운반선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강화 및 위험물 취급항만·좁은 연안수로의 선박 통항안전성 평가·진단을 통한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확보

○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 원인의 대부분(약 85%)을 차지하는 인적과실 방지를 위하여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건립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소관재난(선박사고·해양오염·적조·조수)의 피해 최소화와 예방·대비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해 해사안전 교육·정보의 제공, 해사 안전문화의 홍보에 노력하여야 함

▪ 해사안전법 제6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해사안전법 제57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지원할 수 있음

▪ 해사안전법 제58조(지도·감독)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정기·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음

▪ 선박안전법 제68조(항만국통제) 외국선박의 구조·시설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제3호, 제4호에 따라 국가 등은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작성·운용 및 정기적 점검

② 추진경위

▪ 제1차('12~'16), 제2차('17~'21)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 수립·시행('12.3, '17.3), 연도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시행('12~) 및 제3차('22~'26) 기본계획 수립 추진(21~)

▪ 해양안전실천본부를 통해 안전캠페인 전개, 유인물·홍보물 및 안전교재 제작·배포, 해양안전공모전 개최 및 홍보('13~)

▪ 연안 해역, 울산·광양·인천·부산·평택·대산항 등 주요 위험항만 및 좁은 연안수로에 대한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실시('15~)

▪ 해양안전체험관과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확정('15.9)에 따라 건립추진('15~'21), 운영('21~) 및 대국민 해양안전엑스포 개최 지원(15~)

▪ 인적요인 해양사고 저감 연구개발 등을 위한 종사자·대국민 위탁교육 및 정책·교재개발, 선사 안전관리 컨설팅 등 실시('15~)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해사안전감독관·항만국통제관 제도 운영, 인적과실 예방 및 안전교육사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체험관·안전관 운영, 해양안전엑스포 개최)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경기도, 전남 진도, 부산광역시)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종사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안전 체험관 운영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경기도)	1,995 백만원	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22호
국민해양 안전관 운영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전남 진도군)	1,523 백만원	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22호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개최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부산시)	180 백만원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22호

7. 사업 집행절차

①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공표(해사안전법 제57조의2)

자료제출 → 평가 → 의견수렴 → 지정

②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및 진단

해양수산부

(사업발주)

⇓

용역기관

해상교통 환경 평가 안전진단 실시

외부 자문단 구성·운영

항만이용자(선사, 취급시설 운영자, 도선사 등), 관계기관(지방청, 해운조합, 수협 등) 및 산·학·연 전문가 등

(안전성평가 결과 제출)

⇓

해양수산부

안전진단 결과 후속조치 추진(본부, 지방청 주관)

③ 연구 및 위탁용역

- 과업지시서 등 연구용역 설계서 작성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착수 → 용역 완료 및 대가지급

④ 자치단체 보조사업 수행

①보조금 예산통지
사업국·본부(기획재정)→ 보조사업자(민간, 자치단체)

→

②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사업국

→

③보조금교부 결정 및 통지
사업국→보조사업자
※ 요청금액 검토·심사 후 결정, 통지

↓

④보조금 지급요청
사업국→운영지원과
※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사업자의 요청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문서시행 및 디브레인 지출요청

←

⑤보조금 지출
운영지원과→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출 완료 후, 각 세부사업담당자가 디브레인에서 지출여부 확인 가능

사 업 명
(164) 선박배출 오염예방 (63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2	303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선박배출 오염예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선박배출 오염예방	2,597	920	920	630		△290	△31.5

4. 사업목적·내용

-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이행 및 해양오염방지협약과 선박기인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사업을 해양교통안전공단 법정민간대행/위탁사업 및 해양수산부 자체사업으로 추진
- (선박평형수관리)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17.9.8)에 따른 국내제품의 세계시장 선점지원 및 선박평형수관리법령에 따른 선박평형수 배출기준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을 해양수산부 자체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

① 법령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6 제14규칙(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강화, 3.5→0.5%, '20.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 항만지역 등 대기질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포함)

* 국정과제 :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 국정과제 :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② 추진경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10.1월/4월)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행('11.3)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강화 결정 : '16.10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9.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연료유의 황 함유량) 개정 : '19.7

《 선박평형수관리》

① 법령상 근거

- 선박평형수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선박평형수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② 추진경위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평형수관리 협약 채택 : '04.2
- 선박평형수관리법 제정 : '08.2.29
-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령 제정 : '11.2.9
-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제정 : '12.11.23
-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기준 : '15.4.9
- 대통령업무 보고 및 대통령 지시사항('13.4.19)
- 국무회의 업무 보고 : '16.11

-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 : '17.9.8
- 선박평형수관리법 전면 시행 : '17.9.2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사업 수혜자 : 해운 및 수산업계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정민간대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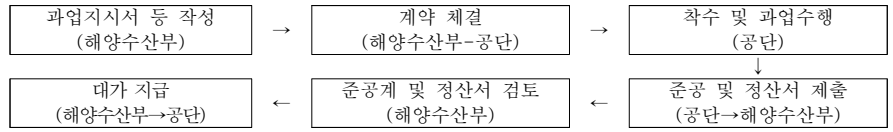

< 위탁계약 >

- 과업지시서 등 위탁 설계서 작성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착수 → 연구용역 완료 및 대가지급

사 업 명
(165) 선박운송 안전확보 (6332-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2	305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선박운송 안전확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선박운송 안전확보	1,938	1,918	1,918	2,022		104	5.4

4. 사업목적·내용

-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안전확보**)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약 3천여종의 고위험성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및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함
  - 연간 수입물동량 대비 일정비율의 점검목표 설정 및 지방청별 컨테이너 안전점검(본부 및 6개 지방청)
  - 수출입 위험물의 항만↔화주(보세창고) 운송정보를 사고대응 기관(소방청, 국토부 등)에 실시간 공유를 통해 신속방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출입 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16년~'18년 구축) 유지·보수
  - 법률 및 고시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물 선박운송에 대한 정책입안자 및 수요자 이해도 등 요구 증가로 안전 확보 및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체계 개선
- (**위험물운송 안전관리**) 해상 위험물운송관련 국제기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개정 논의를 위한 UN 위험물운송전문가 소위원회(UN TDG) 참가
- (**과학적 조사·심판시스템 운영**) 해양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심판을 통한 원인 규명과 해양사고 예방
  -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 등 운영
  - 공정하고 신속한 해양사고 심판을 위해 심판개정시 속기사를 사용하여 심문, 변론 내용 등 기록유지 및 제공
  - 해양사고 조사·심판 이해도 증진을 위한 대학생 모의심판 개최, 해양안전심판 재결 품질 향상을 위한 재결평석회의 운영
  - 해양사고 초동조사로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선박임차료와 현장조사 출장 여비
  -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양사고 재결서를 바탕으로 선종별 사고예방동영상 등 교육자료 제작
  - 복잡하고 다양한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적 분석 및 해양사고 예방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용역 소요
  - 해양사고 분석 시스템 분석실 운영
  - 소형선박 종사자 및 어선원의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직접교육체계 운영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운영**) 국제협약에 따라 '09.1.1 구축된 우리나라 선박장거리 위치추적 시스템(LRIT)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소요 경비 등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위탁운영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정보이용료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국제분담금

- (**해적피해예방 활동 추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원·선박의 피해예방을 위한 청해부대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설치·철거·운영, 해적행위 피해예방 협의회 운영 및 해상특수경비업체 적격성 심사경비
  ■ 청해부대 함정 내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설치·철거, 운영 및 유지보수
  ■ 해적행위 피해예방 교육 및 세미나,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 지침서 제작배포, 해적행위 피해예방 협의회 운영 등
  ■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용역 등
  ■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른 국내·외 해상특수경비업체 적격성 심사를 위한 경비
- (**포스트코로나 선박검사체계 구축**) 코로나19 등 입국·출입 통제로 선박검사가 어려울 때 선박소유자가 위기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한국형 포스트코로나 검사제도를 국제표준화하기 위함
  ■ 원격검사장비(드론, 무인로봇 등)를 활용한 무인선박검사 제도 마련 연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안전확보>

① 법령상 근거
○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및 저장하여야 함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하여 이 규칙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지 점검할 수 있음

② 추진경위
○ 국제해사기구(IMO) 제69차 해사안전委 결의서 채택('98.5), 국내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시행 근거 규정 마련('02.8), 지방청별 CIP 제도 단계적 시행
* 부산·여수청('02.10) / 인천·울산청('06.10) / 포항청('09.10) / 평택청('10.10)

<위험물운송안전관리>

① 법령상 근거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위험물운송 및 세계조화시스템 전문가 위원회 산하 「위험물운송 전문가 소위원회(TDG) 등 국제회의 참가·대응

② 추진경위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험물운송전문委 회원 가입('10), 국제회의 참가·대응('11~)

<과학적 조사·심판 시스템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해양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등),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제35조(증거보전) 등
-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함
-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 등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영상녹화) , 제18조3(특별조사부의 구성) 등
-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하여야 함
- 심판장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함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해양안전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제시하여 정책 연계기관 역할 수행
○ 해양안전심판재결의 효용가치가 증대되고 해양사고가 대형화, 다양화됨에 따라 원인이 복잡한 해양사고에 대한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 필요
○ 해양안전 심판재결의 홍보 극대화를 위한 영상물의 제작·배포 및 모의 해양안전 심판 경연대회 등을 통해 해양안전의식 고취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운영>

① 법령상 근거

○ 선박안전법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제19-1규칙

-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구축·운영('09.1)

○ 소말리아 해적공격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청해부대(함정)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구축 등 해적피해 예방대책 강화('10.9)

<해적피해 예방활동 추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등), 제11조(국가의 조치)

-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해역등에서 해적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정보수집, 상황전파,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16.12.27)·시행('17.12.28)에 따라 해적행위예방정책 이행 중

* '09.3월부터 파견, 현재 청해부대 제26진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임무 수행중

<포스트 코로나 선박검사체계 구축>

① 법령상 근거

○ 선박안전법 제79조(조사 및 연구)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확보와 선박안전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선박검사 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및 정책수요자, 입안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환경과 관련한 행정규칙 체계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운·항만 및 수산업계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안전확보 >

- 점검대상 컨테이너 선별 → 위험물에 대한 조사표 작성 → 외관점검 → 세관, 관할소방서, 운송인 등 통보 → 개방하여 내부점검 실시 → 점검시 비용지급 → 점검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 선박장거리위치추적 정보이용료 >

- 국적선·외국적선 등 과금체계조사 → 선박장거리위치추적 계획수립 → 국제정보센터 정보이용료, 국적선 통신료 과금고지서 수령 → 외국적선 정보이용료, 국적선 통신료 납부

< 청해부대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 연구용역 >

- 과업지시서 등 연구용역 설계서 작성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착수 → 연구용역 완료 및 대가지급

< 기타사업 >

- 위험물 안전관리 국제회의 참가, 재결평석회의 및 모의해양안전심판 경연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여비 및 일반수용비) 지급

사 업 명
(166)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6332-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 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2	307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일반)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1,200	1,300	1,300	1,535		235	18.1

4. 사업목적·내용

-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해양사고 기인 선박 및 표류물(컨테이너, 원목 등) 등 항행장애물의 신속한 제거 및 현장관리로 2차 사고예방 및 안전한 항행여건 조성

-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운영지원**)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소관재난(선박사고·해양오염·적조·조수)의 피해 최소화와 예방·대비를 위한 재난관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예방대책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분야별 각종 점검 지원 등 안전점검 체계구축, 재난취약계층 대상 체계적·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한 해양수산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사안전법 제28조(항행장애물 제거)

* (제2항)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항)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 국정과제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강화
- 행정안전부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18.12.)"

* 중대 비상상황에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재난대응체계 전반을 새로 진단하고 재설계하기 위하여 수립(비상대응체계 혁신, 안전제도 지속 발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제1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실무·행동)을 작성·운용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제1항) 중앙행정기관 등 훈련주관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항행장애물 제거체계 마련) '20년도 신규사업
  - ▪ 항행장애물 제거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
  - ▪ 사업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 : '20.5.
- (해양수산 재난관리체계 운영지원)
  - ▪ 다양한 유형의 해양수산 재난에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분야 재난관리 효율화 관련 기획연구' 추진 : '17.7.~11.
  - ▪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19.10)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6332-302)의 내역사업을 본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 : '20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항행장애물 제거, 2차사고 예방, 협업체계 구축, 재난대응역량 강화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주관), 소속기관·지자체(참여)
- 사업 수혜자 : 선원, 어민, 수산·해운 관계 업·단체 등 해양수산관련 종사 국민 모두 및 우리나라 해역을 통항하는 외국적선박 선원·해운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모든 내역사업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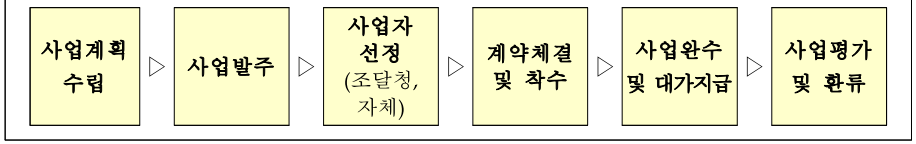

사 업 명
(167)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6332-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	120	124
명칭					분야명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2	308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일반)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스마트 해양안전 교통망 구축·운영	11,497	4,130	4,103	3,723		△407	△9.9%

4. 사업목적·내용

- (e-Nav 선박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연안 최대 100km해상까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송·수신을 위한 e-Nav 선박단말기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서 어선, 여객선 등 연안선박의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임

- (e-Nav 정책플랫폼 구축) 해양디지털 서비스의 국제화를 위해 e-Nav 국제 표준화 대응·협력, 국제 콘퍼런스 개최, 국제표준관리 협의체 사무국 운영 및 통합공공망 연구 용역 등 추진함으로써 해양 디지털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서비스 제공 및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 등을 위한 근거 법령* 제정('21.1.30 시행)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 개발사업(한국형 e-Navigation 구축 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4.11)
- 한국형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 확정('15.7, 국무회의)
- 세계 최고수준 기술 지원 대상으로 선정('15.12, 국과심 운영위)
-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사업(R&D) 추진('16.7~'20.12)
- 現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혁신성장 선도사업 선정·추진 중
  * 국정과제 62-⑤ '첨단기술을 접목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 신뢰도 제고' 세부과제3
- e-Nav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체결*('19.4)
  * 사업자/계약금액/기간 : ㈜GMT 컨소시엄/ 102.1억원/ '19.4.~'20.12
-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사업 계약 체결*('19.5)
  * 사업자/계약금액/기간 : KT 컨소시엄/ 334.8억원/ '19.5.~'20.12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정('20.1.29/'21.1.30 시행)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시행('21.1.3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계속)
- 사업규모 : 단말기 보급 15,500대, e-Nav 정책플랫폼 구축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급사업의 경우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 사업 수혜자 :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보조사업 (단말기 15,500대 보급사업)>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e-Nav 선박 단말기 보급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보조	e-Nav 선박 단말기 설치자	2,225	50%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보조	보조사업자	200	100%	-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교통안전법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사업)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자 지정 단계	→	사업신청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보조사업자 지정		(해수부) ・보조사업 신청 안내 및 사업 시행 지침 하달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등 제출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해수부) ・보조사업 추진, 결과 보고	(해수부)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보조사업자)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e-나라도움(국고보고금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국고보조금 운영실태 점검 병행

사 업 명
(168)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6332-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27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 추진단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2	314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사업마다 상이 (74.1~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8,895	12,602	12,602	17,179		4,577	36.3

4. 사업목적·내용

① (세월호 인양지원)

- (부두임차료 및 현장관리비)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 부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된 민자부두로서 민간사업자(목포신항만㈜)에게 임차료 지급 필요

  *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여 목포신항 부두에 육상거치('17.4.11.)

-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 및 선체보존처리**를 위한 사전 절차 등으로 선체 이동 전까지 선체의 부두 거치 및 관리 필요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활동기간 2022년 6월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거치장소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선행사항이 완료됨에 따라 선체처리계획 적기 이행을 위한 소요사업비 반영 필요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② (세월호 추모사업지원)

- (4·16재단 운영 지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선정된 재단을 대상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 지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립된 추모관의 운영 지원

- (안산 추모시설 건립) 추모비, 추모기념관, 추모공원 조성을 통한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상징적 공간 조성

-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안산 추모시설과 연계하여 노후된 화랑유원지 재정비를 통해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세월호 인양지원** - 부두임차료, 현장관리비 및 선체처리계획 이행)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 **제43조(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① 위원회는 정밀조사가 완료된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세월호 선체 처리 기간 및 장소
> 2.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예산 및 보관기간 동안의 예산 집행계획
> 3. 세월호 선체 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해당 조치의 시행계획
> 4. 그 밖에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체 처리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 -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안산 추모시설 건립 및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및 4·16재단 지원 등)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36조 및 제40조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 **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5년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4·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세월호 인양지원**) 선체 인양 및 후속대책

- 세월호 선체를 인양(17.3.23)하여 목포신항 부두에 육상거치('17.4.11.)
-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선체내부 및 인양해역 수중 수색 시행('17.4.~'18.10.)

- 선체처리 전 현장 관리를 위한 현장 관리용역 및 선체 안전성 검토용역 시행('19)
- 거치장소 확정 등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보완 및 의결('20.8.7)
-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예타 면제대상 선정('20.10.30)
-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사업계획적정성검토(기재부, KDI) 완료('20.12.~'21.11.)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기재부, '21.11.3.), 총사업비 211,690백만원

▪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

<4·16재단 운영 관리>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세월호참사 추모 및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4·16재단' 설립허가('18.7.9, 행안부)
- '비영리재단법인 4.16재단'을「4·16세월호피해지원법」제40조에 따라 국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19.2.27, 지원·추모위원회)
- '19년~'22년 재단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19년 1,905백만원, '20년 2,032백만원, '21년 2,110백만원, '22년 2,110백만원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 지원>

- 행안부·인천광역시·일반인희생자 대책위 간 추모시설 건립 합의('14.5.23.)
-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건립공사 착공('15.8.5.)
- 개관식 개최('16.4.16.)
- '16-'17년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237백만원)를 해양수산부 재해대책비로 지원(세월호 관계 차관회의, '16.5.27.)
- '18~'22년 운영예산 확보하여 지원

* '18년 250백만원, '19년 250백만원, '20년 350백만원, '21년 356백만원, '22년 356백만원

<안산 추모시설 건립>

-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의결('15.5, 9월)에 따라 추모공원(안산), 추모관(인천), 안전체험관(안산, 진도) 등 4개 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를 안산 추모시설 건립사업 주관부처로 결정('16.5,관계 차관회의)
- 세월호 안산추모공원 조성관련 전임 안산시장 기자회견('18.2.20, 안산시)
- 세월호 추모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19.1~19.9,안산시)
- '지원·추모위원회' '안산 추모시설 건립 기본방향' 의결('19.2.27, 국조실)
- '지원·추모위원회' '안산 추모시설 건립계획' 의결('19.9.30, 국조실)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 지역발전사업으로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건의('19.1, 안산시)
- '추모시설 건립계획' 연계 '명품공원 조성사업' 의결('19.9.30, 지원·추모委)
-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시행부처 결정 관계부처* 회의('19.11.8/12.6/12.24)
  * 국조실, 기재부,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시행부처(해수부) 결정 통보('20.1.28, 국조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 2,117억원[국고 2,117억원, * '21년까지 기투자액 : 18.34억원]
  - 안산 추모시설 건립 452.6억원[국고 373.3억원, '21년까지 기투자액 108억원(국고 64억원)]
  -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 289억원[국고 206억원, '21년까지 기투자액 67억원(국고 17억원)]
- 사업기간 : '15~계속
  - (세월호 인양지원) '15~ 계속, 선체 수색, 현장 및 선체관리, 선체처리 등
  -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21~'28
  - (4.16재단 운영 지원) '19~'23
  - (인천추모관 운영 지원) '18~계속
  - (안산 추모시설 건립) '20~'24
  -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21~'23
- 사업규모 :
  - 선체 인양 1식
  - 세월호 선체 부지임차 및 관리 : 부지임차 1식, 선체·현장관리 1식 등
  -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 부지면적 34,000㎡, 건축연면적 12,153㎡내·외, 선체 수리·이동 등
  - 안산 추모시설 조성 : 부지면적 23,000㎡, 건축연면적 9,962㎡내·외
  -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 부지면적 618,175.8㎡
  - 4.16재단 운영 지원 : 세월호 피해자 등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4.16재단 사업 대상
  -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 지원 : 해당없음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안산시, 4·16재단
- 사업 수혜자 : 세월호 관련기관, 피해자 및 시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백만원)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4.16재단 운영 지원	보조	4.16재단	2,110	100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40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천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56	100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3조, 제3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안산 추모시설 건립	보조	지자체 보조	-	-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9,442	74.1*	

*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결 결과(국비 206억원, 지방비 83억원)에 따른 총사업비(289억원) 중 지방비 잔액(33억원) 전액 투자 고려하여 비율 산정

7. 사업 집행절차

○ 세월호 인양 지원 관련(후속대책 추진)
세월호 선체 인양 → 인양선체 수습 → 세월호 현장 관리 및 선체 안전성 검토 등 → 세월호 선체 처리 등

○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사업계획적정성검토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 → 개관

○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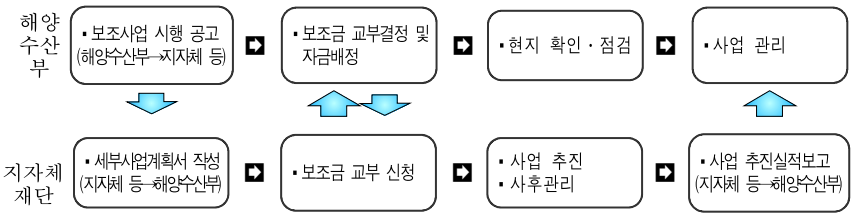

사 업 명
(169)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6332-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32	315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해양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최대 3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197	4,930	4,930	7,930		3,000	60.9

4. 사업목적·내용

- (친환경선박 법정계획 수립) 23년 시행계획 수립(매년), 법령에 따른 정책협의회 및 국가 인증제도 운영
-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구축) 친환경선박 기술 인벤토리 개발, 신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신기술·선박·기자재 국내기준 마련 및 해상실증 지원 등 친환경 선박·기술의 상용화 지원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국가인증 친환경 신기술(LNG, 전기추진 등)을 적용하여 선박을 건조(또는 교체)하는 경우 건조비용 일부 지원(국가인증제도 활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친환경선박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20.1.1 시행)

◆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사항 중 세부추진계획 포함(지시일자:'19.3.19, 관리번호 : 20-20-015)
- 친환경 선박법 제정·시행('20.1.1.)에 근거하여, 조선·해운산업을 활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추진(「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 추진전략」, '20.12월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조선업계, 해운선사, 선박 기자재 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보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000백만원	100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① 친환경선박 법정계획 수립, ②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 구축 : 연구용역

사업기획	◦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 공고	◦ 해양수산부 :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과업지지서, 연구용역 설계서 등
↓	
사업자 선정	◦ 입찰 참여자 기술평가 실시 후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착수	◦ 계약체결 및 착수 보고회 실시
↓	
중간보고회	◦용역 착수 후 중간 실적 포함한 보고회 실시
↓	
최종보고회	◦연구용역 결과 도출 및 최종 보고회 실시
↓	
연구용역 완료 및 대가지급	◦최종 연구용역 완료

③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 보조사업

사업기획	◦ 해양수산부
↓	
국고보조금 교부	◦ 해양수산부 → 법정 보조사업자
↓	
사업 공모	◦ 해양수산부 : 진행절차,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 공고 - 예비인증서 등
↓	
국가 예비인증 신청·발급	◦ 사업 신청자 : 건조계획 및 설계도 등 자료제출 ◦ 인증기관 : 적용기술, 국산화율 검증 후 예비인증서 발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1차 보조금 지급	◦ 해양수산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1차 보조금 확정 ◦ 법정 보조사업자 : 1차 보조금 지급
↓	
국가 정식인증 발급	◦ 인증기관 : 선박건조 확인 및 검증, 정식인증서 발급
↓	
2차 보조금 지급	◦ 해양수산부 : 건조일정에 따라 2차 보조금 확정 ◦ 법정 보조사업자 : 2차 보조금 지급

사 업 명
(170)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운영(653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인재개발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500	6531	300
명칭	해양수산연수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경비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운영	1,341	1,837	1,837	1,754		△83	△4.5

4.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명)
  - 교육훈련을 통한 혁신, 성과, 해양수산 전문 인재 육성 및 조직문화 개선
  - 정부 정책기조 및 방향에 부합하는 변화관리, 녹색성장 및 해양수산산업 교육 운영
  - '89년 건립되어 노후 된 청사・시설의 적시 보수로 내구연수 증진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강화로 성과 창출형 교육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 훈련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 국유재산법 제11조,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등기·등록 등)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지정

② 추진경위

- 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과 증대되는 교육수요에 대응한 예산의 증액편성 필요
- 노후 된 청사・시설보수로 교육환경 개선 및 내구연수 증진, 안전성을 확보
- 해양수산업과 어촌 인적자원 개발・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969	1,148	1,186	1,345	1,83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공직자 및 종사자(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강사위촉 및 교재집필 의뢰 ⇒ 교육생 실수요조사 및 선발 ⇒ 원고취합 및 교재편찬 ⇒ 교육대상자 확정 ⇒ 교육실시 ⇒ 교육결과 정리·분석

사 업 명
(171) 해양수산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65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인재개발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500	6531	303
명칭	해양수산연수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경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95	95	95	95		-	-

4. 사업목적

- 교육서비스 및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교육비를 직접 징수하여 교육훈련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원활한 교육 운영 도모
- 수요자 중심의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교육효과 질적 향상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지정

② 추진경위

- '99년부터 유상교육제도 도입으로 교육훈련 및 교육시설 제공에 따른 교육비 및 시설사용료를 세입조치하고 교육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대체지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95	95	95	95	95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공직자 및 종사자(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강사위촉 및 교재집필 의뢰 ⇒ 교육생 실수요조사 및 선발 ⇒ 원고취합 및 교재편찬 ⇒ 교육대상자 확정 ⇒ 교육실시 ⇒ 교육결과 정리·분석

사 업 명
(17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653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인재개발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500	6532	300
명칭	해양수산연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정보화	446	494	494	594		100	20.2

4. 사업목적

- 해양수산부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학사행정 업무의 정보화, 홈페이지 및 사이버 교육 운영으로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교육정보화 인프라 환경 조성
-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강화로 성과 창출형 교육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7271호) 제4조, 제8조, 제11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 제5조, 제22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제141호, 2005. 1. 31) 제4조, 동 규정 17조 사이버안전대책에 대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 공무원 상시학습체제를 위한 수산분야 특성있는 사이버 컨텐츠개발(해양수산관련법률 등) 및 기존 컨텐츠 재개발

② 추진경위

- 학사정보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07)
- 상시학습체제에 따른 사이버교육('13. 37회)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관련 코스웨어 지속적인 개발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205	201	250	450	494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 공직자 및 종사자(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이버코스웨어 사업계획수립 (주관부서) ⇒ 입찰 공고 (조달청) ⇒ 제안서 평가 ⇒ 사업자선정 (조달청) ⇒ 사업 추진 ⇒ 정상운영 (주관부서)

사 업 명
(173)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인건비(총액)(654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인재개발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500	6541	100
명칭	해양수산연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건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인건비 (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건비(총액)	1,730	1,849	1,849	1,859		10	0.5

4. 사업목적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직원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지정

② 추진경위

- 2006. 3. 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력개발원(독립 설치)
- 2008. 2. 29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인력개발원(정부조직개편)
-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식품연수원 수산인력개발센터(정부조직개편)
- 2013. 3. 2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정부조직개편)
- 2016. 3. 1 책임운영기관 지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27명(현원)의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사업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월급 : 매월 25일 급여 지급
- 성과상여금 : 매년 3월 성과상여금 지급
- 명절휴가비 : 명절(설날, 추석)이 속한 달에 명절휴가비 지급
- 연가보상비 : 6월, 12월에 연가보상비 지급

사 업 명
(174) 해양수산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6542-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인재개발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500	6542	200
명칭	해양수산연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경비	해양수산인재개발기본경비 (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경비(총액)	406	500	500	484		△16	△3.2

4. 사업목적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지정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해양수산 전문가 육성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신규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사업수혜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75) 해양수산인재개발원기본경비(비총액) (6542-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인재개발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500	6542	250
명칭	해양수산연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경비	해양수산인재개발기본경비 (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기본경비(비총액)	85	93	93	136		43	46.2

4. 사업목적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지정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해양수산 전문가 육성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사업수혜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76) 본부인건비 (7001-1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1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본부인건비	본부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본부인건비	42,512	45,200	45,200	46,391		1,191	2.6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부 직제에 따른 공무원 정원 및 별도정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709호, 2021.6.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933호, 2021.8.10)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2021.8.10.)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 직제에 따른 인건비 집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직제상 정원 61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해양수산부 본부)
- 사업 수혜자 : 본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매월 공무원 임금 산정
→ 지출요청 및 지출결의 → 지급

사 업 명
(177) 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총액) (7002-1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3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총액)	109,478	122,132	122,132	120,528		△1,604	△1.3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 해양수산 행정 지원을 위한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709호, 2021.6.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933호, 2021.8.10)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2021.8.10.)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 직제에 따른 인건비 집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직제상 정원 1,258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매월 공무원 임금 산정
→ 지출요청 및 지출결의 → 지급

사 업 명
(178) 국립해양조사원 등 인건비 (7002-1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6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국립해양조사원 등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국립해양조사원 등 인건비	20,323	23,310	23,310	22,776		△534	△2.3

4. 사업목적·내용

- 국립해양조사원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조사와 해양안전심판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 등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지급

② 추진경위 - 직제에 따른 정현원 인건비 소요 충당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179) 해사고등학교 인건비(총액) (7002-1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부산·인천 해사고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7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해사고등학교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해사고등학교 인건비(총액)	9,441	10,011	10,011	10,019		8	0.1

4. 사업목적·내용

- 우수 해운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해사고 및 인천해사고 운영에 필요한 교원, 일반직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제1항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항

② 추진경위

- 1978년 : 부산해사고 개교

- 1981년 : 인천해사고 개교
- 2010년 : 해양분야 마이스터고 지정(교육과학기술부 제3차)
- 2012년 : 해양분야 마이스터고 전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8년 ~ 계속(부산해사고 '78, 인천해사고 '81)
- 사업규모 : 교직원 153명(부산 83명, 인천 7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 사업 수혜자 :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재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및 확정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부산·인천해사고)

사 업 명
(180) 본부 기본경비(총액) (7011-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본부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본부기본경비(총액)	1,709	2,111	2,111	2,389		278	13.2

4.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부 본부(실·국 포함) 직책수행경비 등 업무지원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예산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② 추진경위 -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신설부터, 본부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181) 본부 기본경비(비총액) (7011-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본부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본부기본경비(비총액)	3,628	4,707	4,707	4,515		△192	△4.1

4. 사업목적·내용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유형자산 등 해양수산부 본부(실·국 포함)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예산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② 추진경위 -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신설부터, 본부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182)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총액) (7018-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14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총액)	676	670	670	672		2	0.3

4. 사업목적·내용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기관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해군 수로국 설치(1949), 부산 동삼혁신도시 이전(2012), 해양수산부 이관(201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기관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조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18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본경비(총액) (7018-2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15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본경비(총액)	315	294	294	301	301	7	2.4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을 통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과 해양사고 방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정원 및 조직 : 75명 / 중앙(25), 지방(50)

② 추진경위

- 1963.01.21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설치
- 1971.01.22 해난심판원으로 개칭
- 1994.12.23 건설교통부로 이관
- 1996.08.08 해양수산부로 이관
- 1999.02.05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
- 2008.02.29 국토해양부로 이관
- 2013.03.23 해양수산부로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1963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안전심판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4) 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총액) (7018-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16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총액) (7018-216)	15	14	14	14		-	-

4. 사업목적·내용

- 소속기관 공익요원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② 추진경위 : 소속기관 공익요원 운영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안전심판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5)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7018-2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부산해사고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17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265	283	283	289		6	2.1

4. 사업목적

- 우수 해운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해사고등학교 기관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

- 제7조(경비부담)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양질의 선원배출을 목표로 부산해사고('78)가 개교하여 2012년 해양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되었으며, 선박운항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해운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해기사를 양성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8 ~ 계속
- 사업규모 : 재학생 480명, 교직원 83명, 부지 62,782㎡, 건물 9개소(연면적 23,74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해사고등학교
- 사업 수혜자 : 부산해사고등학교 재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및 확정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186)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7018-2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18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329	324	324	357		33	10.2

4. 사업목적·내용

-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우수 해운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총액)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경비부담)

* 국립해사고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1981년 : 인천해사고등학교 개교
- 2012년 : 해양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1년 ~ 현재
- 사업규모 : 재학생 360명, 교직원 70명, 부지 66,083㎡, 건물 10개소 연면적 20.91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천해사고등학교
- 사업 수혜자 :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및 확정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187)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비총액) (7018-2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2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립해양조사원 기본경비(비총액)	1,847	2,070	2,070	2,096		26	1.3

4. 사업목적·내용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기관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해군 수로국 설치(1949), 부산 동삼혁신도시 이전(2012), 해양수산부 이관(201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기관 기본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조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18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본경비(비총액) (7018-2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3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본경비(비총액)	408	511	511	535		24	4.7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을 통해 해양사고의 원인규명과 해양사고 방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정원 및 조직 : 75명 / 중앙(25), 지방(50)

② 추진경위

- 1963.01.21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설치
- 1971.01.22 해난심판원으로 개칭
- 1994.12.23 건설교통부로 이관
- 1996.08.08 해양수산부로 이관
- 1999.02.05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
- 2008.02.29 국토해양부로 이관
- 2013.03.23 해양수산부로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1963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안전심판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89) 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비총액) (7018-2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4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익요원경비 (비총액)	0	1	1	1		-	-

4. 사업목적·내용

- 소속기관 공익요원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② 추진경위 : 소속기관 공익요원 운영 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안전심판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90)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7018-26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부산해사고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5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부산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1,514	1,522	1,522	1,507		△15	△1.0

4. 사업목적

- 우수 해운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해사고등학교 기관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7조

- 제7조(경비부담)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양질의 선원배출을 목표로 부산해사고('78)가 개교하여 2012년 해양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되었으며, 선박운항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해운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해기사를 양성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8 ~ 계속
- 사업규모 : 재학생 480명, 교직원 83명, 부지 62,782㎡, 건물 9개소(연면적 23,74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해사고등학교
- 사업 수혜자 : 부산해사고등학교 재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및 확정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191)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7018-2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인천해사고등학교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66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추경		(B-A)/A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1,310	1,302	1,302	1,283		△19	△1.5

4. 사업목적 · 내용

-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비총액)) 우수 해운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기본경비(비총액)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립해사고등학교설치령」 제7조(경비부담)
  * 국립해사고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1981년 : 인천해사고등학교 개교
- 2012년 : 해양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1년 ~ 계속
- 사업규모 : 재학생 360명, 교직원 70명, 부지 66,083㎡, 건물 9개소 연면적 20,91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천해사고등학교
- 사업 수혜자 : 인천해사고등학교 재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및 확정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19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7024-2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부산지방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09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 등 기본경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518	432	432	492		60	13.9

4.사업목적·내용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2021년 528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관 및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및 확정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19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	120	126
명칭					교통 및 분류	물류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10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374	344	344	346		2	0.6

4. 사업목적·내용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총액)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19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11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 등 기본경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44	239	239	300		61	25.5

4. 사업목적·내용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업무 지원을 위한 기관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45. 11. 교통부 마산부두국
- 1976. 3. 항만청 마산지방항만관리청
- 2008. 2.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2013. 3.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2015. 1.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집행(지출관)

사 업 명
(195)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여수지방	0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12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312	279	279	279		-	-

4. 사업목적·내용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관 기본경비(총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23. 6. 01. 여수항개항
- 1977. 12. 16. 해운항만청 여수지방해운항만청
- 1996. 8. 08.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운항만청
- 2008. 02. 29.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2013. 3. 23.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2015. 01. 08.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집행(지출관)

사 업 명
(19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13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340	227	227	227		0	0

4. 사업목적·내용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 및 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총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관 및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9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0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차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14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90	228	228	229		1	0.4

4. 사업목적·내용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연도 1년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총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9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15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414	382	382	405		23	6

4. 사업목적·내용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897.10.01. 목포항 개항(고종 34년)
- 1948.08.15. 교통국 목포부두국
- 1955.12.12. 해무청 목포지방해무청
- 1961.10.02. 교통부 목포지방해운국
- 1976.03.13. 항만청 목포지방항만관리청
- 1977.12.16. 해운항만청 목포지방해운항만청
- 1997.05.24.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2008.02.29.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2013.03.23.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2015.01.08.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정원 237명의 기본경비 총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편성 → 배정 → 집행(사업부서 지출요청 →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 이체)

사 업 명
(199)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16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 등 기본경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326	231	231	257		26	11.3

4. 사업목적·내용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45. 11 : 미군정청 교통부 포항부두국 ~ 계속 존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45년 11월 ~ 계속
- 사업규모 : 정원 106명 / 현원 103명(청경 98명 제외 인원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00)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17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 기본경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기본경비 (총액)	193	157	157	157		0	0

4. 사업목적·내용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 총액)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업무 지원(운영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1987.01.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평택출장소
- 2003.07.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승격
- 2008.03.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명칭 변경
- 2015.0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명칭 변경

*2015: 126-7000-7024-217
(물류등기타-해양수산지원-지방청등기본경비-평택지방해양항만청 기본경비(총액)
*2016: 126-7000-7024-217
(물류등기타-해양수산행정지원-지방청등기본경비-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정원 85명의 기본경비 총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출요청>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계좌이체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사 업 명
(201) 지방해양수산청 공익요원경비(총액) (7024-2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18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지방해양수산청 공익요원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지방해양수산청 공익요원경비(총액)	352	486	486	486		-	-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 지원 등의 수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120호, 2017.6.20)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36호, 2017.6.20.)

② 추진경위

-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수산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사회복무요원 45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지방해양수산청 사회복무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0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24-2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7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342	352	352	356		4	1.1

4. 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1.01.01.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 2014.05.21. 책임운영기관 제8기
- 2016.04.29. 대산청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결정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행자부)」→ 대산청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수부직제 개정
- 2017.01.01. (일반회계) 신규사업운영,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폐지

  * 2017: 126-7000-7024-219
    (물류등기타-해양수산행정지원-지방청등기본경비-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정원 111명(청원경찰 포함)의 기본경비 비총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20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 총액 (7024-22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울산지방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20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148	148	148	148		-	-

4. 사업목적·내용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항만 개발 및 운영, 해상교통안전 관리, 해양환경 보전업무 지원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97.05.24.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2008.02.29. 국토해양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2015.01.06.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2015.12.30. 책임운영기관 해지
- 2017년부터 울산지방해양수산 기본경비(총액)(7024-220) 편성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국가)
- 사업 수혜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청원경찰 포함)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0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7024-25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부산지방	-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57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 등 기본경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1,857	1,934	1,934	1,988		54	2.8

4.사업목적·내용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없음

②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 상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식비,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서업무추진비, 고용부담금, 자산취득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매년
- 사업규모 : 2021년 2,11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기관 및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0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5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	120	126
명칭					교통 및 분류	물류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58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인천지방해양 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1,059	1,089	1,089	1,080		△9	△0.8

4. 사업목적·내용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비총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0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5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마산지방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59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 등 기본경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483	500	500	485		△15	△3

4. 사업목적·내용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업무 지원을 위한 기관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45. 11. 교통부 마산부두국
- 1976. 3. 항만청 마산지방항만관리청
- 2008. 2. 국토해양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2013. 3.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2015. 1.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여수지방	0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0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859	853	853	855		2	0.2

4. 사업목적·내용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관 기본경비(비총액)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23. 6. 01. 여수항개항
- 1977. 12. 16. 해운항만청 여수지방해운항만청
- 1996. 8. 08.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운항만청
- 2008. 02. 29.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2013. 3. 23.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2015. 01. 08.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08)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1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708	722	722	775		53	7.3

4. 사업목적·내용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 및 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비총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관 및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0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0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차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2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기본경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685	654	654	647		△7	△1.1

4. 사업목적·내용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연도 1년
- 사업규모 :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비총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3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802	803	803	778		△25	△3.1

4. 사업목적·내용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1897.10.01. 목포항 개항(고종 34년)
- 1948.08.15. 교통국 목포부두국
- 1955.12.12. 해무청 목포지방해무청
- 1961.10.02. 교통부 목포지방해운국
- 1976.03.13. 항만청 목포지방항만관리청
- 1977.12.16. 해운항만청 목포지방해운항만청
- 1997.05.24.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2008.02.29.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2013.03.23.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2015.01.08.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정원 237명의 기본경비 비총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편성 → 배정 → 집행(사업부서 지출요청 → 지출원인행위 → 지출결의 → 이체)

사 업 명
(21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4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 등 기본경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총액)	664	700	700	691		△9	△1.3

4. 사업목적·내용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1945. 11 : 미군정청 교통부 포항부두국 ~ 계속 존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45년 11월 ~ 계속
- 사업규모 : 정원 106명 / 현원 103명(청경 98명 제외 인원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12)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5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 기본경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43	732	732	787		55	7.5

4. 사업목적·내용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업무 지원(일반수용비, 유류비, 국내여비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1987.01. 인천지방해운항만청 평택출장소
- 2003.07.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승격
- 2008.03.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명칭 변경
- 2015.0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명칭 변경

*2015: 126-7000-7024-265
(물류등기타-해양수산지원-지방청등기본경비-평택지방해양항만청 기본경비(비총액)
*2016: 126-7000-7024-265
(물류등기타-해양수산행정지원-지방청등기본경비-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정원 84명의 기본경비 총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출요청>지출원인행위>지출결의>계좌이체
- (관서) 교부>지급요청>지급결의>지급처리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사 업 명
(213) 지방해양수산청 공익요원경비(비총액) (7024-26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6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지방해양수산청 공익요원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지방해양수산청 공익요원경비(비총액)	28	14	14	14		-	-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부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 지원 등의 수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120호, 2017.6.20)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236호, 2017.6.20.)

② 추진경위

-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수산부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사회복무요원 45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지방해양수산청 사회복무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7024-26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7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 (비총액)	1,026	975	975	985		10	1.0

4. 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명)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1.01.01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 2014.05.21 책임운영기관 제8기
- 2016.04.29. 대산청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결정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행자부)」→ 대산청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해수부직제 개정

- 2017.01.01. (일반회계) 신규사업운영,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폐지

  * 2017: 126-7000-7024-267

    (물류등기타-해양수산행정지원-지방청등기본경비-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정원 111명(청원경찰 포함)의 기본경비 비총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215)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 비총액 (7024-26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울산지방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24	268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지방청등기본경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본경비(비총액)	650	692	692	672		△20	△2.9

4. 사업목적·내용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항만 개발 및 운영, 해상교통안전 관리, 해양환경 보전업무 지원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97.05.24.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2008.02.29. 국토해양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2015.01.06.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2015.12.30. 책임운영기관 해지
- 2017년부터 울산지방해양수산 기본경비(비총액)(7024-268) 편성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국가)
- 사업 수혜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청원경찰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16) 전산운영경비(703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기획조정실	0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301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전산운영경비	전산운영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전산운영경비	2,403	5,888	5,888	5,725		△163	△2.8

4.사업목적·내용

- (전산운영 기본경비) 해양수산 통신망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실 운영 등 해양수산부 정보화 업무의 안정적인 지원,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용역을 추진하는 사업
- (기관운영 장비 및 SW도입비) 해양수산부 PC/SW 등 사무자동화 보급 및 업그레이드

5.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 구축)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

② 추진경위

- '13. 3~ :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정보망 및 정보통신실 등 인프라 구축·운영
- '14. 1~ : PC 및 SW 등 행정사무자동화기기 구매지원, 직원온라인교육(지해로), 정보화지식인대회 지원, 정보통신실 위탁운영, 해양수산정보망 운영 등
- '15. 1~ : PC 및 SW 등 행정사무자동화기기 구매지원, 직원온라인교육(지해로), 정보화지식인대회 지원, 정보통신실 위탁운영, 해양수산정보망 운영 등
- '16. 1~ : PC 및 SW 등 행정사무자동화기기 구매지원, 직원온라인교육(지해로), 통계연보 발간 지원, 정보통신실 위탁운영, 해양수산정보망 운영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계속
- 사업규모 : 해양수산 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실 및 행정자료실 운영, 정보화역량교육, PC 등 사무자동화기기 지원 및 전산기본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내부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계획수립 (기본,시행) ⇒ 예산확보 (사전평가) ⇒ 사업추진 계획수립 ⇒ 총괄부서 사전협의 (감사관실,정보화 담당관실) ⇒ 사업 추진 및 감리 ⇒ 성과관리 (사업평가)

※ 국가계약법, 용역발주 관리 등 계약관련 규정에 준하여 처리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 등)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사 업 명
(217)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7036-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대변인	-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4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해양수산정책지원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정책홍보기획 연구운영	1,644	1,620	1,620	1,620		-	-

4. 사업목적·내용

-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를 통해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확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 신설 (정부조직법 '13.2.23. 전부개정)

② 추진경위 : 정부조직 개편 후 해양수산 기관 인지도 및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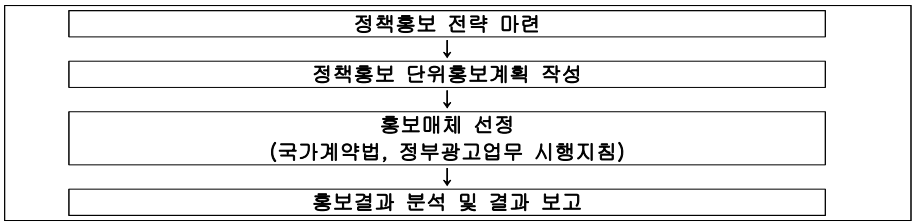

사 업 명
(218) 제도개선 및 갈등관리 (7036-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120	126
명칭			정책기획관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306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해양수산정책지원	제도개선및갈등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제도개선 및 갈등관리	204	190	190	190		-	-

4. 사업목적·내용

(제도개선및갈등관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필요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여 국민생활 편익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 분야 갈등 사전예방 및 체계적인 갈등관리 추진('06)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실시('08. 4월~)
-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계획 수립·시행('13.6월~)
- 해양수산부 국민제안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13.5월~)
- 해양수산부 규제혁신계획 수립·시행('13.5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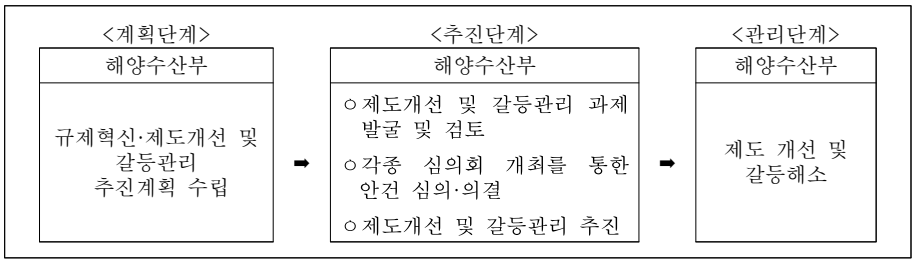

사 업 명
(219)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704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0	300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559	601	601	601		-	-

4. 사업목적·내용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정부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및 해양수산부 자체 「변화관리 추진계획」에 따른 부처 혁신 프로그램(학습, 교육, 홍보 등) 개발 운영
- 대국민 서비스 접점인 소속기관의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국민 참여·홍보를 확대하는 프로그램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매년 정부혁신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이행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에 따라 매년 지식행정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
- 동 계획의 내용에 따라 직원들의 지식행정 촉진을 위한 변화관리 추진

② 추진경위

- 대통령께서 정부운영에 국민 참여 및 사회적 가치*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강조(2018년 신년 기자회견, 1.10./국무회의, 1.16)
-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 발표(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전략회의". '18.3.19.)
- '정부혁신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부처의 확산 및 강력한 추진'(대통령 지시시항)
- 매년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 부처별 수립
- 매년 각 부처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행정안전부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및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정부혁신 추진계획 등 시달(행안부 등, 연초) → 정부혁신 실행계획 및 변화관리 추진계획 수립(1/4분기) → 세부프로그램 계획 수립(소속기관 등) → 프로그램 시행 → 환류(추진성과 및 만족도 조사) → 익년도 프로그램 반영

사 업 명
(220) 청사시설관리 (704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41	300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청사시설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청사시설관리	5,532	5,624	5,624	5,632		8	0.1

4. 사업목적·내용

- 전국 26개 중·소도시에서 항만운영, 동·서·남해안 불법어업 단속, 수산물 안전, 해양사고 조사 등 69개 기관 3천여명의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청사 및 숙소 등 유지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정부조직 개편(2013.3.23.)으로 기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양 및 수산 조직이 결합하여 해양수산부 신설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청·관사 시설 관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계속
- 사업규모 : 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1~2차 포함 69개 기관, ② 청사와 관사, 숙소 909개의 유지보수 및 임차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26개 도시의 청·관사에 노후된 수도, 전기, 냉·난방기, 화장실 등

7. 사업 집행절차 : 생략

사 업 명
(221) (총액)인건비 (71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0
명칭	수산행정	본부인건비	(총액)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인건비	12,930	13,773	13,773	12,584		△1,189	△8.6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부 직제에 따른 공무원 정원 및 별도정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709호, 2021.6.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933호, 2021.8.10)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2021.8.10.)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 직제에 따른 인건비 집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직제상 정원 61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해양수산부 본부)
- 사업 수혜자 : 본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매월 공무원 임금 산정
→ 지출요청 및 지출결의 → 지급

사 업 명
(222) (총액)동해어업관리단 인건비 (7102-13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32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인건비	(총액)동해어업관리단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동해어업관리단 인건비	22,544	24,170	24,170	23,987		△183	△0.8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직제에 따른 공무원 정원 및 별도정원 등의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6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6년~계속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작성 및 요구(e-사람) → 지출처리(디브레인)

사 업 명
(223) (총액)서해어업관리단 인건비 (7102-13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33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인건비	(총액)서해어업관리단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서해어업관리단인건비	20,566	22,105	22,105	22,214		109	0.5

4. 사업목적·내용

- 서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집행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조정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및) 각종 수당 지급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2004.0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신설

6. 주요내용

- 1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규모 : 서해어업관리단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24)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건비(7102-13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11)	해양수산부 (27)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34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인건비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인건비	13,313	14,161	14,161	17,072		2.911	20.6

4. 사업목적·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임금)집행으로 원활한 수산물 수출입 검사·검역 등의 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지급

② 추진경위

- 직제에 따른 정·현원 인건비 소요 충당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월보수액 산정 → 지출

사 업 명
(225) (총액)남해어업관리단 인건비 (7102-13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35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인건비	(총액)남해어업관리단 인건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남해어업관리단 인건비	18,584	19,552	19,552	19,760		208	1

4. 사업목적·내용

- 남해어업관리단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보수 등) 집행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조정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

② 추진경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8120호, 2017.06.20.)」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06.20. ~계속
- 사업규모 : (총액)남해어업관리단 인건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26)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7111-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0
명칭	수산행정	본부기본경비	(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기본경비 (운영지원과 등)	663	755	755	755		95	12.6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부 본부(실·국 포함) 직책수행경비 등 업무지원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예산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② 추진경위 -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신설부터, 본부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지원

5.-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27) (비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7111-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0
명칭	수산행정	본부 기본경비	(비총액)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비총액)기본경비 (운영지원과 등)	1,605	2,097	2,097	1,985		△112	△5.3

4. 사업목적·내용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유형자산 등 해양수산부 본부(실·국 포함)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예산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② 추진경위 - 2013년 3월 해양수산부 신설부터, 본부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가)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28) (총액)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7118-23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36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 기본경비	(총액)동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425	484	484	486		2	0.4

4. 사업목적·내용

- 동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6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6년~계속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작성 및 요구 → 지출처리(디브레인)

사 업 명
(229)(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3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 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39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총액)서해어업 관리단기본경비	343	369	369	371		2	0.5

4. 사업목적·내용

- 서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조정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04.0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경상적 기본경비 집행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2004.0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02.29.)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456호, 2013.03.23.)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제28120호, 2017.06.2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 ~계속
- 사업규모 : 서해어업관리단 (총액) 기본경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30)(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7118-2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41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서해어업 관리단공익요원경비	9	14	14	14		-	-

4. 사업목적·내용

- 서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인력 운영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조정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04.0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운영

② 추진경위

- 「병역법」 제26조 및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배정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계속
- 사업규모 : 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31) (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4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42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334	350	350	375		25	7.1

4. 사업목적·내용

- 남해어업관리단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기본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조정 업무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소속기관), 제5장(어업관리단)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어업관리단)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8120호, 2017.06.20.)」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06.20. ~계속
- 사업규모 : (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32) (비총액)동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7118-28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86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 기본경비	(비총액)동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비총액)동해어업 관리단 기본경비	1,369	1,381	1,381	1,391		10	0.7

4. 사업목적·내용

- 동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6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6년~계속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동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출예산 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작성 및 요구 → 지출처리(디브레인)

사 업 명
(233)(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8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89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1,101	1,104	1,104	1,215		111	10.1

4. 사업목적·내용

- 서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조정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04.0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경상적 기본경비 집행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2004.0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02.29.)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456호, 2013.03.23.)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제28120호, 2017.06.2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 ~계속
- 사업규모 : 서해어업관리단 (비총액)기본경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예산 확정 및 세출예산 분기별 재배정
- 집행계획 수립
- 예산집행

사 업 명
(234) (비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7118-29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90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비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비총액)남해어업관리단기본경비	1,094	1,132	1,132	1,651		519	45.8

4. 사업목적·내용

- 남해어업관리단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기본경비 집행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조정 업무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1항(소속기관), 제5장(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장(어업관리단)

② 추진경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8120호, 2017.06.20.)」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06.20. ~계속
- 사업규모 : (비총액)남해어업관리단 기본경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35)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7118-29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91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 공익요원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비총액)서해어업관리단공익요원경비	1	2	2	2		-	-

4. 사업목적·내용

- 서해어업관리단의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인력 운영으로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조정업무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8254호, 04.01.29.)에 따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운영

② 추진경위

- 「병역법」 제26조 및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배정 운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계속
- 사업규모 : 서해어업관리단 (비총액)공익요원경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사업 수혜자 : 국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

사 업 명
(236)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7118-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301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본경비	289	321	321	330		9	2.8

4. 사업목적·내용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부대경비 확보로 기관 고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우수기관 구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② 추진경위

- 1906년부터 기관고유업무로서 수출수산물 검사업무를 수행
- 1994년 수입수산물 검사의 국립수산물검사소 위임 위탁업무 수행
- 2001년 이식용수산물 검역업무를 수산과학원에서 품질검사원으로 이관
- 2013년 수입수산물 검사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 2017년 전주지원 신설
- 2021년3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를 수품원으로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본원 4과 14개 소속지원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지출액 산정 → 지출

사 업 명
(237)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7118-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7100	7118
명칭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25	39	39	39		-	-

4. 사업목적·내용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보수 등)

② 추진경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근무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공익 월 보수액 산정 → 지출

사 업 명
(238)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7118-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307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1,159	1,185	1,185	1,148		△37	△3.1

4. 사업목적·내용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기본경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부대경비 확보로 기관 고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우수기관 구현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② 추진경위

- 1906년부터 기관고유업무로서 수출수산물 검사업무를 수행
- 1994년 수입수산물 검사의 국립수산물검사소 위임 위탁업무 수행
- 2001년 이식용수산물 검역업무를 수산과학원에서 품질검사원으로 이관
- 2013년 수입수산물 검사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 2017년 전주지원 신설
- 2021년3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방역과 수품원으로 이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본원 4과 14개 소속지원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지출액 산정 → 지출

사 업 명
(239) (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7118-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7100	7118
명칭	명칭	수산행정	소속기관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비총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9	18	18	18		-	-

4. 사업목적·내용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익요원경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근무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보수 등)

② 추진경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근무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지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공익 경비 산출 → 지출

사 업 명
(240) 행정운영(713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4
명칭	수산행정	행정지원	행정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행정운영	585	760	760	760		-	-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수산관련 소송업무 수행, 국유재산 관리, 민원업무 등 공통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편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국가회계법」제13조 내지 제16조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한 규정」제정('13.4)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6명) 선임('15.5월)
○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 각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효과성 입증을 위해 외부인들의 지속적인 평가결과 확인 필요
○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과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국가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국회제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계속
- 사업규모 : 해양수산부 본부, 소속기관 22개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7. 사업 집행절차 : 생략

사 업 명
(241) 공공기관혁신제품시범구매 (713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운영지원과		100	103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5
명칭	수산행정	행정운영	공공기관혁신제품시범구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공공기관혁신제품 시범구매	-	1,479	1,479	1,479		-	-

4. 사업목적·내용

-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시범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수요를 구매 후 공급하는 시범사업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2020.3.31.) · 시행(2020.10.1.)

② 추진경위

- 2019년 정부 혁신종합추진계획 과제로 공공구매 조달혁신 선정('20.2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혁신제품생산 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242)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건비(총액)(7301-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국립해양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측위정보원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300	7301	100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건비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건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건비(총액)	3,212	3,696	3,696	3,476		△220	△6.0

4. 사업목적·내용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건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항(소속기관), 제10장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

② 추진경위

- 1999.10.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2001.1.1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2015.5.2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2016.3.1. 책임운영기관 지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4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총액)(7311-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국립해양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측위정보원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300	7311	200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총액)	723	687	687	674		△13	△1.9

4. 사업목적·내용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총액))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운영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항(소속기관), 제10장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

② 추진경위

- 1999.10.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2001.1.1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2015.5.2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2016.3.1. 책임운영기관 지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 운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44)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총액)(7311-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국립해양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측위정보원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300	7311	201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총액)	22	22	22	22		-	-

4. 사업목적·내용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총액))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사회복무요원 운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연도: 2006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운영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소속 사회복무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4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비총액) (7311-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국립해양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측위정보원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300	7311	250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비총액)	13	13	13	12		△1	△7.7

4. 사업목적·내용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비총액))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운영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항(소속기관), 제10장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의3(국립해양측위정보원)

② 추진경위

- 1999.10.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2001.1.1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 2015.5.2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2016.3.1. 책임운영기관 지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기관 운영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사 업 명
(246)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비총액) (7311-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7	국립해양		120	126
명칭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측위정보원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300	7311	251
명칭	책임운영기관운영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경비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 (비총액)	2	2	2	2		-	-

4. 사업목적·내용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공익요원경비(비총액))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사회복무요원 운영 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연도: 2006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소속 사회복무요우언의 운영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소속 사회복무요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편성 →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한 예산배정 → 집행(지출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Ⅲ. 농어촌구조계선특별회계

1. 총 괄

가. 2022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계	**49,555**	**27,912**	**27,912**	**28,749**		**837**	**3.0**
구조개선사업계정	**45,387**	**21,596**	**21,596**	**22,243**		**647**	**3.0**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12**	**2,250**	**2,250**	**2,318**		**68**	**3.0**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1	-	-	-		-	-
기타재산수입 (54-545)	911	2,250	2,250	-		△2,250	순감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	-	1,623		1,623	순증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	-	-	695		695	순증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50**	**68**	**68**	**70**		**2**	**2.9**
과태료 (56-563)	50	68	68	70		2	2.9
57 변상금 및 위약금	**13**	**315**	**315**	**324**		**9**	**2.9**
위약금 (57-572)	13	315	315	324		9	2.9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2,301**	**18,692**	**18,692**	**19,252**		**560**	**3.0**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42,301	18,692	18,692	19,252		560	3.0
65 면허료 및 수수료	**256**	**180**	**180**	**185**		**5**	**2.8**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256	180	180	185		5	2.8
68 실습수입	**3**	**18**	**18**	**19**		**1**	**5.6**
실습수입 (68-681)	3	18	18	19		1	5.6
69 잡수입	**1,852**	**67**	**67**	**69**		**2**	**3.0**
기타잡수입 (69-691)	1,852	67	67	69		2	3.0
71 고정자산매각대	**-**	**6**	**6**	**6**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	6	6	6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4,168**	**6,316**	**6,316**	**6,506**		**190**	**3.0**
51 관유물대여료	**-**	**7**	**7**	**7**		**-**	**-**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	7	7	7		-	-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804**	**400**	**400**	**412**		**12**	**3.0**
기타재산수입 (54-545)	804	400	400	-		△400	순감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	-	288		288	순증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54-547)	-	-	-	124		124	순증
56 벌금,몰수금 및과태료	**-**	**1**	**1**	**1**		**-**	**-**
과태료 (56-563)	-	1	1	1		-	-
57 변상금 및 위약금	**133**	**33**	**33**	**34**		**1**	**3.0**
위약금 (57-572)	133	33	33	34		1	3.0
59 기타경상 이전수입	**3,120**	**5,687**	**5,687**	**5,858**		**171**	**3.0**
기타경상 이전수입 (59-596)	3,120	5,687	5,687	5,858		171	3.0
69 잡수입	**103**	**33**	**33**	**34**		**1**	**3.0**
기타잡수입 (69-691)	103	33	33	34		1	3.0
71 고정자산 매각대	**8**	**138**	**138**	**142**		**4**	**2.9**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71-713)	8	138	138	142		4	2.9
72 토지및무형 자산매각대	**-**	**17**	**17**	**18**		**1**	**5.9**
토지매각대 (72-721)	-	17	17	18		1	5.9

나. 2022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계	**1,361,069**	**1,710,689**	**1,746,208**	**1,812,708**		**102,019**	**6.0**
구조개선 사업계정	**648,071**	**635,852**	**662,082**	**734,576**		**99,124**	**15.6**
2832 식품산업육성	**15,113**	**10,670**	**10,670**	**42,311**		**31,641**	**296.5**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832-301)	2,394	1,000	1,000	32,134		31,134	3,113.4
천일염산업 육성 (2832-310)	12,719	9,570	9,570	8,370		△1,200	△12.5
수산식품산업 육성 (2832-313)	-	100	100	1,807		1,707	1,707.0
2837 수산물수출 지원	**36,125**	**32,798**	**32,798**	**40,980**		**8,182**	**24.9**
수산물해외 시장개척 (2837-300)	36,125	32,798	32,798	40,980		8,182	24.9
3040 수산물유통 개선(농특)	**16,453**	**10,265**	**10,265**	**10,182**		**△83**	**△0.8**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3040-307)	1,073	1,073	1,073	1,073		-	-
소비지유통 시설 지원 (3040-309)	11,770	400	400	-		△400	순감
부산공동 어시장 현대화 (3040-310)	-	592	592	3,887		3,295	556.6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 (3040-317)	926	5,030	5,030	2,300		△2,730	△54.3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 지원 (3040-318)	333	350	350	350		-	-
직거래등 신유통망구축 (3040-319)	2,352	2,820	2,820	2,572		△248	△8.8
3041 안전한수산물 공급관리(농특)	**20,950**	**21,418**	**21,418**	**25,739**		**4,321**	**20.2**
수산물이력제 (3041-302)	2,516	2,220	2,220	2,387		167	7.5
수산물 위생관리 (3041-303)	18,434	19,198	19,198	23,352		4,154	21.6
3043 수산물가격 안정	**3,266**	**3,585**	**3,585**	**3,790**		**205**	**5.7**
수산관측 (3043-300)	3,266	3,585	3,585	3,531		△54	△1.5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3043-301)	-	-	-	259		259	순증
3044 수산어촌 알리기	**23,135**	**40,974**	**60,974**	**21,828**		**△19,146**	**△46.7**
수산업가치및 소비촉진제고 (3044-340)	23,135	40,974	60,974	21,828		△19,146	△46.7
3045 수출입수산물 안전성관리 (농특)	**16,368**	**18,235**	**18,235**	**27,208**		**8,973**	**49.2**
수산물검역 검사 (3045-300)	8,229	9,348	9,348	8,951		△397	△4.2
수산물품질 관리 (3045-301)	8,140	8,887	8,887	8,940		53	0.6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수산생물방역 관리 및 지원 (3045-303)	-	-	-	1,792		1,792	순증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술개발 (R&D) (3045-304)	-	-	-	7,525		7,525	순증
3131 수산자원회복 (농특)	**5,679**	**6,887**	**6,887**	**7,043**		**156**	**2.3**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3131-340)	3,827	4,922	4,922	4,981		59	1.2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운영 (3131-341)	1,852	1,965	1,965	2,062		97	4.9
3140 친환경양식 육성(농특)	**81,065**	**87,294**	**91,564**	**122,686**		**35,392**	**40.5**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3140-300)	11,365	3,200	3,200	6,580		3,380	105.6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3140-301)	38,678	45,251	48,451	53,336		8,085	17.9
친환경 어구보급 (3140-303)	16,669	26,200	27,270	47,970		21,770	83.1
수산종자산업 육성 (3140-305)	1,029	1,035	1,035	1,892		857	82.8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3140-335)	4,888	4,643	4,643	4,643		-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3140-350)	5,826	4,500	4,500	4,410		△90	△2.0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관상어산업 육성 (3140-351)	2,610	2,465	2,465	3,855		1,390	56.4
3141 내수면어업	**11,348**	**8,212**	**8,212**	**18,799**		**10,587**	**128.9**
내수면자원 조성 (3141-303)	11,348	8,212	8,212	18,799		10,587	128.9
3142 자율관리어업 육성	**9,948**	**6,972**	**6,972**	**6,972**		**-**	**-**
자율관리어업 육성 (3142-300)	9,948	6,972	6,972	6,972		-	-
3150 수산자원조성	**83,372**	**86,763**	**86,763**	**93,549**		**6,786**	**7.8**
수산자원조성 사업지원 (3150-304)	71,213	65,726	65,726	65,881		155	0.2
수산자원 조사선 건조 (3150-306)	8,352	15,751	15,751	23,550		7,799	49.5
낚시산업 선진화 (3150-307)	2,049	2,541	2,541	2,316		△225	△8.9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3150-343)	1,758	2,745	2,745	1,802		△943	△34.4
3340 어촌어항관광 기반조성(농특)	**8,174**	**8,781**	**8,781**	**10,721**		**1,940**	**22.1**
어촌활력기반 구축 (3340-301)	7,834	8,441	8,441	10,381		1,940	23.0
어촌발전기반 조성지원 (3340-305)	340	340	340	340		0	0.0
3347 귀어귀촌지원	**3,952**	**4,056**	**4,056**	**4,951**		**895**	**22.1**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귀어귀촌 활성화 (3347-303)	3,952	4,056	4,056	4,951		895	22.1
3440 수산경영안정	**10,540**	**12,067**	**14,027**	**11,486**		**△581**	**△4.8**
어업인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3440-300)	6,893	6,872	6,872	7,105		233	3.4
수산장비(임대) 활용(지자체) (3440-311)	1,395	1,395	1,395	1,680		285	20.4
어업인삶의질 향상 (3440-312)	2,252	3,800	3,800	2,701		△1,099	△28.9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3440-316)	-	-	1,960	-		-	-
3443 재해대책	**191,797**	**167,210**	**167,210**	**163,906**		**△3,304**	**△2.0**
양식어업재해 보험 (3443-300)	26,835	28,289	28,289	25,301		△2,988	△10.6
어선원및어선 재해보상보험 (3443-301)	145,038	118,919	118,919	116,295		△2,624	△2.2
양식등재해 대책비 (3443-302)	8,286	8,000	8,000	8,000		-	-
어업인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3443-303)	11,638	12,002	12,002	14,310		2,308	19.2
3450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85,793**	**85,118**	**85,118**	**96,331**		**11,213**	**13.2**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3450-301)	85,793	85,118	85,118	96,331		11,213	13.2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3462 수산행정 정보화(정보화)	**1,457**	**1,398**	**1,398**	**1,410**		**12**	**0.9**
수산정보화 (정보화) (3462-505)	1,457	1,398	1,398	1,410		12	0.9
3542 원양어업기반 구축(농특)	**23,534**	**23,149**	**23,149**	**24,684**		**1,535**	**6.6**
원양어업 활성화 (3542-300)	4,439	4,695	4,695	4,444		△251	△5.3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3542-301)	3,706	4,911	4,911	4,368		△543	△11.1
연안국과의 협력(ODA) (3542-302)	14,392	12,532	12,532	14,858		2,326	18.6
원양어선감독 관리체계구축 (3542-303)	996	1,011	1,011	1,014		3	0.3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820,336**	**1,074,837**	**1,084,126**	**1,078,132**		**3,295**	**0.3**
3145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75,200**	**126,693**	**126,693**	**123,072**		**△3,621**	**△2.9**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3145-300)	73,943	125,413	125,413	120,446		△4,967	△4.0
안전복지형연 근해어선기반 구축 (3145-301)	852	833	833	1,667		834	100.1
어선거래제도 운영 (3145-302)	405	447	447	509		62	13.9
어선청년임대 (3145-303)	-	-	-	450		450	순증
3160 수산기술개발	**4,460**	**4,460**	**4,460**	**-**		**△4,460**	**순감**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Golden Seed 프로젝트 (R&D)(해수부) (3160-401)	4,460	4,460	4,460	-		△4,460	순감
3345 어항기반시설 조성(농특)	**695,080**	**831,063**	**831,063**	**832,393**		**1,330**	**0.2**
어촌어항관리 시스템 구축(정보화) (3345-300)	1,352	1,312	1,312	551		△761	△58.0
국가어항관리 (3345-302)	26,155	26,307	26,307	27,191		884	3.4
국가어항 (3345-303)	222,790	260,939	260,939	262,586		1,647	0.6
가거도항복구 (3345-306)	10,563	20,556	20,556	18,494		△2,062	△10.0
어촌뉴딜 300 (3345-310)	434,220	521,949	521,949	523,571		1,622	0.3
3347 귀어귀촌지원	**1,474**	**1,560**	**1,560**	**1,712**		**152**	**9.7**
청년어촌정착 지원 (3347-363)	1,474	1,560	1,560	1,712		152	9.7
3433 수산연구개발	**25,972**	**53,379**	**53,379**	**59,097**		**5,718**	**10.7**
차세대 수산물 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R&D) (3433-305)	5,404	10,619	10,619	8,800		△1,819	△17.1
수산실용화 기술개발(R&D) (3433-310)	9,840	9,739	9,739	10,646		907	9.3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 사업(R&D) (3433-314)	7,101	12,604	12,604	10,049		△2,555	△20.3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무인항공기 기반 불법어업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R&D) (3433-316)	3,627	3,702	3,702	3,301		△401	△10.8
AI 기반 스마트 어업 관리 시스템 개발(R&D) (3433-318)	-	3,120	3,120	4,100		980	31.4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 개발(R&D) (3433-319)	-	7,550	7,550	8,268		718	9.5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연구(R&D) (3433-323)	-	6,045	6,045	-		△6,045	순감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 개발(R&D) (3433-324)	-	-	-	4,609		4,609	순증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R&D) (3433-325)	-	-	-	1,920		1,920	순증
유수식 디지털 양식 혁신기술 개발(R&D) (3433-326)	-	-	-	5,000		5,000	순증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 공존 기술개발 사업(해수부) (R&D) (3433-327)	-	-	-	2,404		2,404	순증
3440 수산경영안정	**3,266**	**4,425**	**4,425**	**4,240**		**△185**	**△4.2**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어업경영체 등록 (3440-362)	3,266	4,425	4,425	4,240		△185	△4.2
3443 재해대책	**2,072**	**1,778**	**1,778**	**1,749**		**△29**	**△1.6**
어업인안전 보험 (3443-368)	2,072	1,778	1,778	1,749		△29	△1.6
3460 어가소득보전	**12,812**	**51,479**	**60,768**	**55,869**		**4,390**	**8.5**
수산 공익직불제 (3460-310)	12,812	51,479	51,479	55,869		4,390	8.5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3460-314)	-	-	2,889	-		-	-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460-315)	-	-	6,400	-		-	-

2. 수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신규)

11 - 54 - 545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	-	-	1,695		1,695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2) 기타재산이자외수입(신규)

11 - 54 - 546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	-	695		695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3) 과태료

12 - 56 - 563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과태료	50	68	68	70		2	2.9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 수입 개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9	82	50	86

(4) 위약금

12 - 57 - 572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위약금	13	315	315	324		9	2.9

1. 법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징수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72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72조(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89	14	13	2

(5) 기타경상이전수입

12 - 59 - 596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42,301	18,692	18,692	19,252		560	3.0

1. 법적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9,317	15,086	42,301	25,361

(6) 면허료 및 수수료

13 - 65 - 651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면허료 및 수수료	256	180	180	185		5	2.8

1. 법적 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0조(수수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의뢰자 및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의뢰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관한 수수료
○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부과기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	213	256	314

(7) 실습수입

13 - 68 - 681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실습수입	3	18	18	19		1	5.6

1. 법적 근거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7조① 수산과학연구사업 중 정기적인 시험·조사(자원, 환경 및 위생 조사 등)로부터 얻어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raw data를 포함한다)는 엑셀파일 등의 방법으로 정보화하여 연구사업 관리시스템(전자연구노트)에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하다고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과학원훈령, 이하 "정보화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상의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료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을 완료한 후에는 활용가치에 따라 보존, 매각 또는 폐기처분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사업 결과에 따른 부산물 매각대금
(부과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납부기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1	-	3	4

(8) 기타잡수입

13 - 69 - 691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잡수입	1,852	67	67	69		2	3.0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정부간행물 판매대금, 불필요한 서류 폐기후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부과기준) 물품관리법 제4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1	110	1,852	31

(9)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5 - 71 - 713

<농특회계 - 구조개선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	6	6	6		0	0.0

1. 법적 근거

○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고정자산 불용품의 매각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43조, 물품관리법 제4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1	-	-	-

(10) 기타관유물대여료

11 - 51 - 513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기타관유물 대여료	-	7	7	7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국유지와 국유건물 외의 관유물대여료(국유선박, 부두시설 사용료) 등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납기일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	-	-	-

(11) 기타재산이자수입(신규)

11 - 54 - 546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	-	-	288		288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 소유로 인한 수입
○ 국고보조금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12) 기타재산이자외수입(신규)

11 - 54 - 547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	-	124		124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연체료 및 반환금 등(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13) 과태료

12 - 56 - 563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과태료	-	1	1	1		0	0.0

1. 법적 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 수입 개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14) 위약금

12 - 57 - 572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위약금	133	33	33	34		1	3.0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징수

(부과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납부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지체일수)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9	647	133	2

(15) 기타경상이전수입

12 - 59 - 596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3,120	5,687	5,687	5,858		171	3.0

1. 법적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975	4,265	3,120	2,044

(16) 기타잡수입

13 - 69 - 691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잡수입	103	33	33	34		1	3.0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정부간행물 판매대금, 불필요한 서류 폐기후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부과기준) 물품관리법 제4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6	3	103	79

(17)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5 - 71 - 713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고정자산매각대	8	138	138	142		4	2.9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 토지매각으로 인한 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48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50조(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17	8	-

(18) 토지매각대

15 - 72 - 721

<농특회계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토지매각대	-	17	17	18		1	5.9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 물품관리법 제36조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재고자산의 매각대금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44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43조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51	-	-	4

사 업 명
(1)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83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선특별회계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2	301
명칭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식품산업육성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	2,394	1,000	1,000	32,134		31,134	3113.4

4. 사업목적·내용

-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수산물 생산권역별로 가공, 수출, 연구개발, 물류기능 등이 집적·연계된 거점형 수출가공단지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권역별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 추진('17.2,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생산·수출확대를 위해 가공인프라와 R&D·수출기능을 결합한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추진계획 마련('17.12.18, 장관)
- 공약 및 국정과제
  · (대선공약 Ⅲ-14)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 조성으로 수산물 수출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정과제 84-2)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 산업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089억원(국비 711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생산자단체, 식품사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남권 수산식품수출단지	보조	지자체 보조	30,00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산권 수산식품클러스터	보조	지자체 보조	2,134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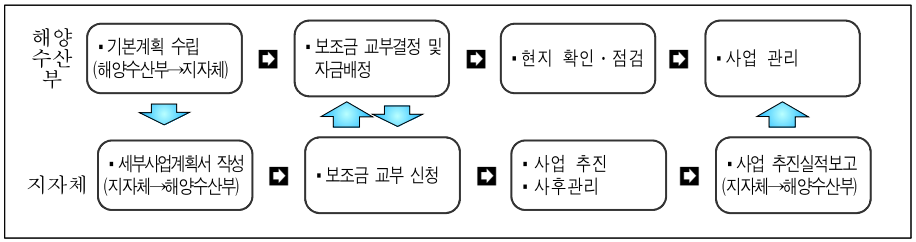

사 업 명
(2) 천일염산업육성(2832-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구조개선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2	310
명칭	식품산업육성	식품산업육성	천일염산업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 9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천일염산업육성	12,719	9,570	9,570	8,370		△1,200	△12.5

4. 사업목적·내용

□ 천일염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천일염을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천일염이력제관리)** 수입산 천일염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을 위하여 이력제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탁
- **(천일염소비촉진)**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 맞춤형 소비촉진 홍보 및 소금박람회 개최 지원(민간보조, 국비 90%)
- **(천일염포장재지원)** 위생적인 천일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규격화된 포장재(박스, 이중코팅 포대형)를 지원(지자체보조, 국비 30%)
- **(염전바닥재개선)** 염전 결정지에 타일, 옹기, 친환경 장판 등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바닥재로 교체를 위해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자체보조, 국비 30%)
- **(장기저장시설설치)** 여름철 집중 출하 방지를 통한 천일염의 가격 안정과 간수 제거·숙성 등을 통한 품질 향상을 위해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지자체보조, 국비 30%)
- **(염전취배수용배관설치)**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을 위해 육지에서 떨어진 곳의 해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취·배수용 배관 설치 지원(지자체보조, 국비 30%)
- **(생산시설자동화지원)**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산시설 자동화 추진을 위한 장비 지원(지자체보조, 국비 30%)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설비지원)**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산지종합처리장의 노후장비 교체, 현대화 등 설비지원(지자체보조, 국비 30%)
-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치·운영)**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금 안전성 조사, 인증 등 품질관리 및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 설치·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금산업 진흥법」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8조, 제39조 등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제7조(실태조사),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운영),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염관리법」 개정・시행('09.3.20)으로 염관리에 관한 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09), 해양수산부('13)로 이관되어 천일염산업육성사업 시작
- 국산 천일염의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천일염 이력추적제 도입」방안 보고('10)
- 국산 천일염의 산업화 기반마련을 위해 「염관리법」을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면개정('11.11.22), 제8조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결정지 바닥재, 기구 및 용기·포장, 해주 및 소금창고 등)을 마련
- 한·중 FTA대책 및 천일염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채염자동화기계, 반자동포장지계 등 설치 지원 사업 추진('16~)
- 천일염 고품질화를 통한 가격안정화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천일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18~'21)
- 천일염의 생산시기와 소비시기가 달라 가격의 차이가 크므로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조성 지원('20), 위생적인 천일염 처리를 위하여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20~'23)
-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라 품질검사 등 법적사무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치·운영 추진('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천일염생산자 및 소비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천일염소비촉진	보조	민간보조	182	90	해당없음
천일염포장재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353	3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1] 122
염전바닥재개선	보조	지자체보조	1,574	3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1] 122
장기저장시설설치	보조	지자체보조	386	3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1] 122
염전취배수용배관설치	보조	지자체보조	60	3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1] 122
생산시설자동화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1,030	3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1] 122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설비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700	30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1] 122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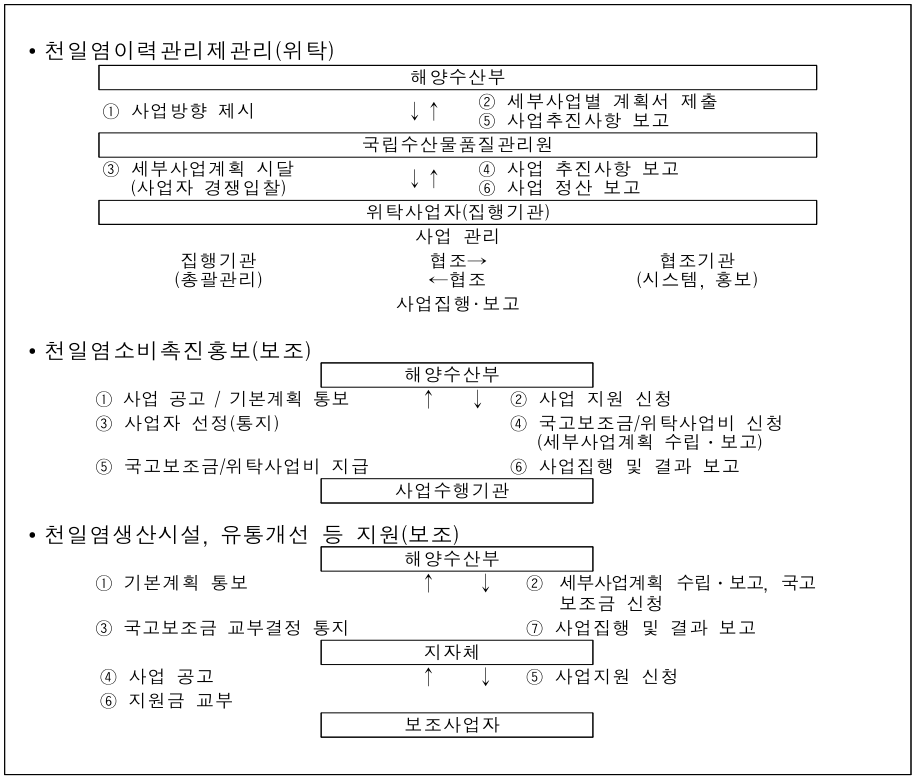

사 업 명
(3) 수산식품산업육성 (2832-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선특별회계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2	313
명칭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식품산업육성	수산식품산업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식품산업육성	-	100	100	1,807		1,707	1,707

4. 사업목적·내용

- (수산식품산업 통계조사) 수산식품산업법 제정('20.2월)으로 산업육성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최근 수산식품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통계 체계 구축 추진
- (수산식품 인력양성) 수산식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턴쉽, 청년홍보단 프로그램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수산식품 전문 산업교육 프로그램 추진
- (수산식품 판로지원) 영세 수산식품기업에 원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수산식품기업의 안정적 판로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구매이행보증보험 가입 지원
- (우수수산식품 홍보 및 인증활성화) 수산전통식품분야 품질향상 및 생산 등을 지원하고 수산식품분야 한국산업 표준 및 원산지 인증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 (스마트가공종합단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가공종합단지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우수수산식품등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을 계기로 체계적인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식품육성사업'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
- 유망수산식품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 목표 Ⅱ.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 목표 Ⅴ.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1.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사업규모 : 수산식품산업 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 사업 수혜자 : 수산식품산업 정책입안자, 수산가공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식품산업 통계조사	보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식품 인력양성	보조	한국어촌어항공단	100	100	
수산식품 판로지원	보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0	80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활성화	보조	한국수산회	30	100	
스마트가공종합단지	보조	지자체 보조	1,400	70	

7. 사업 집행절차

추진방향 등 검토 (해양수산부) ⇒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 (용역수행기관)

사 업 명
(4) 수산물해외시장개척(2837-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수산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7	300
명칭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수산물 수출지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물해외시장개척	36,125	32,798	32,798	40,980		8,182	24.9

4. 사업목적·내용

- (경쟁력 강화) 국내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수산식품 기업 및 조직 육성, 유망상품화 개발, 국가통합브랜드 운영 등 지원
- (해외시장 확대)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현지화 지원 및 수산물 통합마케팅, 수산식품 거래선 발굴 등 지원
- (물류인프라구축)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물류센터, 활어컨테이너 제작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② 추진경위 :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 수산물 수출 기반 확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97년부터 사업 시작, 제1차 수산식품산업육성기본계획('21~'25)을 수립하여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97 ~ 계속
- 사업규모 :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기업육성, 유망상품화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경상·위탁, 지자체경상·자본)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자체,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 사업 수혜자 : 수산물 생산 어업인 및 가공·수출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쟁력강화	보조	수협중앙회 등	13,721	8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122호
	보조	지자체	5,731	30~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122호
해외시장확대	보조	수협중앙회 등	19,866	8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122호
	보조	지자체	5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122호
물류인프라 구축	보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995	8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122호
		지자체	135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122호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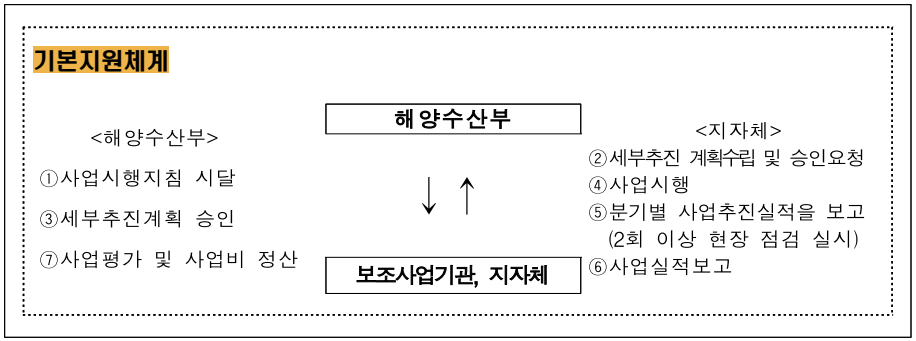

사 업 명
(5)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3040-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5	27	수산정책관	4	100	103
명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구조개선사업	농림수산	해양산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0	307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유통개선(농특)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수산물 물류환경개선	1,073	1,073	1,073	1,073		0	0

4. 사업목적·내용

- (물류환경개선)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표준화된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해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및 위생관리 강화 도모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수산물 유통법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과 어상자 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산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품목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1. 농어업인
2. 생산자단체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4.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
6.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기관
7. 제80조, 제89조 및 제99조에 따른 농수산물 검사 및 검정 기관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①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위생수준 제고 등을 위해 산지위판장 및 도매시장의 물류기기 지원 요구('11년 결산 예결위)
- 지게차·전동차·파렛트 등 물류기기 지원을 통한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등 물류 효율화 도모를 위해 '13년부터 사업 추진
- '14년부터 플라스틱 어상자 지원
- '19년부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지원(격년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3~ (계속)
- 사업규모 : (물류환경개선) 지게차 53대, 파렛트 2,910개, 어상자 810,000개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실시
- 사업시행방법 : 물류표준화(민간경상보조 50%), 산지경매사 자격시험(민간위탁사업 100%)
- 사업시행주체 : 물류표준화(수협중앙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해양수산연수원)
- 사업수혜자 : 어업인, 생산자단체,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물류환경개선	보조	**수협중앙회**	1,073	50	유사사업 보조율 적용

7. 사업 집행절차

① 수산물 물류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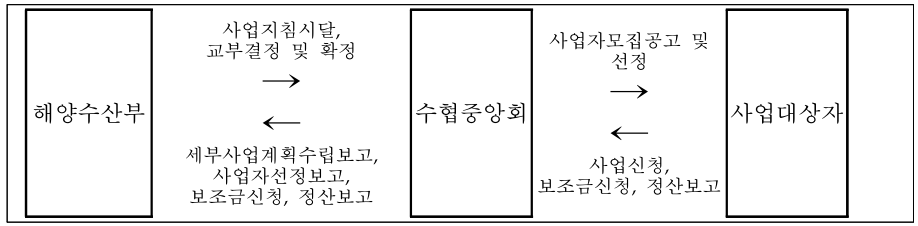

②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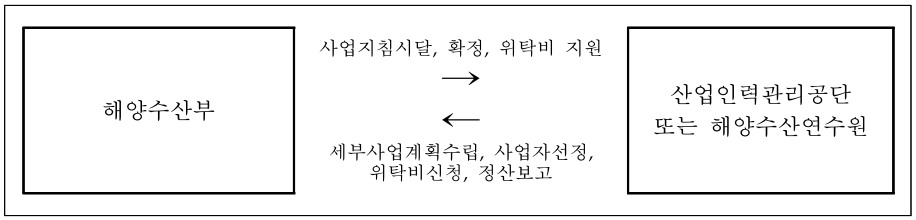

사 업 명
(6)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3040-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0	310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유통개선(농특)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	592	592	3,887		3,295	556.6

4. 사업목적·내용

- '73년에 건립되어 노후도가 심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② 추진경위

- '11. 06 ~ '12. 04 :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B/C=1.20
- '12. 09 :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13. 07 : '1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13. 11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 '14. 01~11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 '15. 05 : 공동어시장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자체용역 시행
- '15. 06 : 부산시와 5개 수협 및 어시장과의 업무협약 체결 완료
- '16. 01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 '16. 10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조정
- '17. 09 : 건축공사 설계공모 공고 및 선정
- '18. 05 : 기본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
- '18. 07 :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 완료(기간연장)
- '18. 11 : 설계용역 정지(초과설계)
- '19. 06 : 공영화 업무협약 체결
- '19. 12 : 자산평가 및 청산 협의
- '20. 04 : 조공법인 총회 의결(공영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 합의)
- '21. 04. :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자체 추진 결정 통보(어시장→시)
- '21. 08. :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사업추진방식 협의 완료(부산시↔어시장)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729억원
- 사업기간 : '15 ~ '22
- 사업규모 : 부지 64,247㎡, 건축면적 76,837㎡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수협,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보조	부산광역시	3,887	7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관련[별표 1] 개정(2008.9.8) 전의 기준보조율 적용(현재는 삭제)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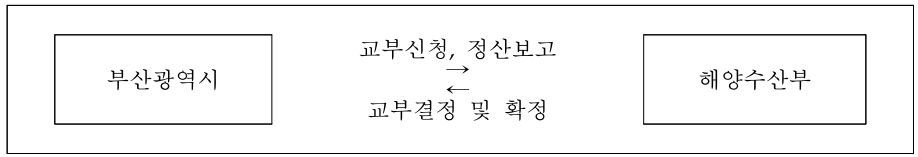

사 업 명
(7)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3040-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특별회계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0	317
명칭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유통개선(농특)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5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유통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	926	5,030	5,030	2,300		△2,730	△54.3

4. 사업목적·내용

- (저온경매장 지원, 수산물 위생안전 물류 지원)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단순 시설지원에서 벗어나 풀필먼트 등을 통한 수익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 (수산물 유통종사자 역량 강화) 수산물 유통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어·선어·냉동수산물 등의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의 확립
2.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3. 저온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4.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한 어상자 등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보급
2. 위판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위판장등"이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그 밖의 유통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등에서의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확보
3.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22)」(국무회의 보고, '18. 6. 5)
-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18.12.4, 대외발표)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
- 「수산혁신 2030」(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19. 2.13)
- 저온경매장 3개소(서천, 영광, 제주) 추진('20)
- 저온경매장 1개소(목포) 추진('21)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 ~ 계속
- 사업규모 : ('21) 저온위판장 4개소, 자동선별기 4대, 저온차량 6대, 위탁교육 1식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aT
- 사업 수혜자 : 수산물 위판장, 양식장, 중도매인, 어업인, 유통업자,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저온경매장 지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보조	목포, 공모	1,620	40~50	청정위판장,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등 유사사업 보조율 적용
수산물 위생안전 물류 지원	보조	공모	602	30	기기지원 관련 유사사업 보조율 적용

7. 사업 집행절차

<저온경매장 지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수산물 위생안전 물류 지원>

지원신청 (수협 등) ⇄ (사업신청 →, ← 통보) 시·군·구 ⇄ (사업신청 →, ← 통보) 시·도 ⇄ (사업신청, 교부신청, 정산보고 →, ← 내시, 교부결정 및 확정)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종사자 역량 강화>

- 사업계획 수립 → 위탁계약 체결 → 사업추진 → 사업정산

사 업 명
(8)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 지원 (3040-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5	27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계정	100	103
명칭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0	318
명칭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유통개선(농특)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지원	333	350	350	350		-	-

4. 사업목적·내용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현행법*상 금지된 액화산소통을 탑재하여 여객선 운행 중인 활어차량 약 750대에 단계적으로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

  * 국내기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국제기준(IMDG 코드) 액화산소는 위험물로 취급되어 여객선에 적재 금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제72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86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 1. ~ 3. (생략)
> 4.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② 추진경위

- 현행법상 금지된 '액화산소 활어차' 여객선 운송을 수산물 유통 혼란을 감안 적절한 안정조치 시 허용('12년)

  * 국내기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국제기준(IMDG 코드) 모두 액화산소는 위험물로 취급되어 여객선에 적재 금지

- 여객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제기(국회, 언론, '18년)
-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량 여객선 선적 제한 조치('19년)

  * '14년식 이하, 19년식 이상→'21년 적재 금지, '15년식→'22년 금지, '25년부터 전면금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4
- 사업규모 : 활어차 750대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5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수산물 위판장, 양식장, 중도매인, 어업인, 유통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50	국비 50%	유사사업 보조율 적용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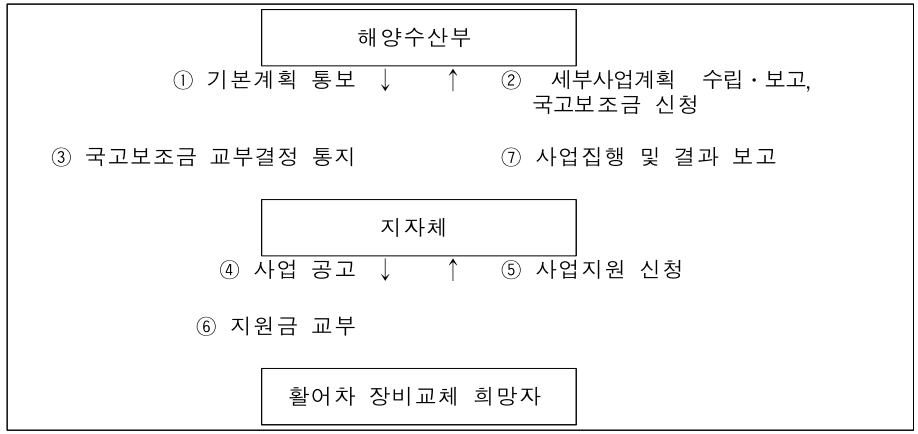

사 업 명
(9)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3040-3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0	319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 유통개선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60,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직거래등 신유통망 구축	2,354	2,820	2,820	2,520		△248	△8.8

4. 사업목적·내용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로컬직매장 입점을 지속 추진하고, 수산물 전용 로컬매장을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 온라인 직거래 시장(전자상거래, 홈쇼핑) 진입을 위한 컨설팅 및 입점 지원
- (공공형 수산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어업인 등 생산자 보호 및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판매 채널 확보를 위한 공공형 수산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22)」(국무회의 보고, '18. 6. 5)
-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18.12.4, 대외발표)
- 「수산혁신 2030」(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19. 2.13)
- 「직거래 등 신유통망 구축방안」('19.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국고 60%, 자부담 40% / 국고 100%
  민간자본보조 국고 50%, 자부담 50%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시행주체) 수협중앙회(직거래촉진센터), 공모
- 사업 수혜자 : 도시민, 어업인, 수산물 소비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물직거래 활성화	보조	수협중앙회 등	1,610	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온라인 구매시스템 구축	보조	수협중앙회 등	9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형 수산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보조	-	52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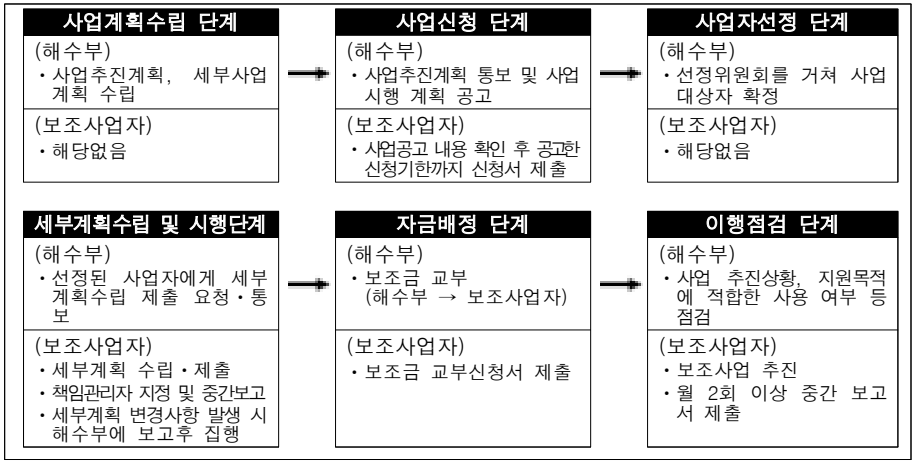

사 업 명
(10) 수산물이력제 (304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1	302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안전한 수산물 공급관리(농특)	수산물이력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수산물이력제	2,516	2,220	2,220	2,387		167	7.5

4. 사업목적·내용

- (수산물이력제 관리)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보 및 수산물 유통관리체계 확립
- (이력제전산시스템운영) 이력제품 생산업체 및 제품 등록·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우리나라 수산물의 최대수입국인 일본 및 EU가 SPS협정의 동등성 원칙에 의거 이력추적제를 수산물 수입제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에 대비하여 도입 추진
- '04. 4월 : 수산물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획 연구
- '05. 5～'08. 7월 : 시범사업 실시
- (구)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8. 8월부터 자율등록관리를 기반으로 수산물이력제 본 사업(수산물 전품목 대상) 실시
-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6.3)에 따라 동 법에 따라 수산물 이력관리 추진

- 국정과제(84-4. 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로 선정되어 단계적으로 수산물이력제 확대 추진 기반 마련
- 생굴, 굴비에 대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19~'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수산물 생산자, 유통업자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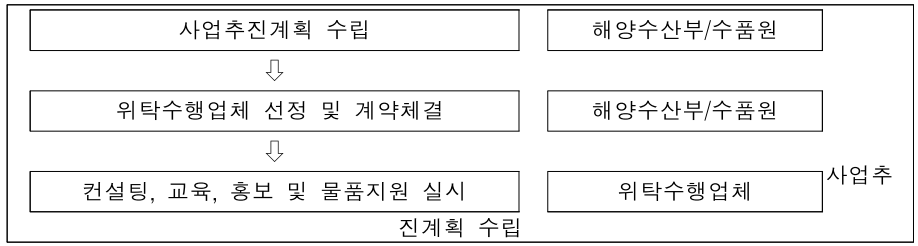

사 업 명
(11) 수산물 위생관리 (304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구조개선	100	103
명칭	선특별회계			사업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1	303
명칭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안전한 수산물공급관리(농특)	수산물 위생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물 위생관리	18,434	19,198	19,198	23,352		4,154	21.6

4. 사업목적·내용

○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양식시설 HACCP 등록 유도,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 주요 양식수산물 백신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항생제·사료·용수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HACCPP 컨설팅 및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HACCP 등록률을 제고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려는 것임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수산물 위해정보 및 안전관리제도 등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등의 예방과 국민 건강보호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수산물안전정보관리) 수산물 안전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하려는 것임
- (넙치 쿠도아충 저감화) 대일 넙치 수출 시 문제가 되는 쿠도아충 구제제 개발 및 검사역량 강화로 넙치 양식어가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시장에도 안전한 넙치 공급을 위함
- (수산물 위해요소평가) 수산물 위해요소 평가 및 시설 지원, PLS(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 시행 대비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기준 정비 및 PLS 제도를 홍보하기 위함

○ **(생산해역 관리 및 수출기반 조성)**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오염원(안전성) 조사・관리를 통해 국내외 해수기준을 충족하고 미국, EU 등으로 지속적인 수출 유지

- (패류 생산해역 모니터링) 수출을 위한 지정해역과 일반해역 위생조사를 통해 안전한 패류 생산을 위한 기초 데이터 작성・제공(지자체)으로 안전한 패류 생산 유도로 패류 생산어가의 소득증대 지원
- (국제표준화실험실 운영) 수산물 수출을 위한 외국(미국, EU 등)과 협력이행을 위해 국제표준화 실험실을 운영, 지정해역 주변 패류생산업체가 원활한 수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조사) 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조사를 통한 안전사용기준 마련 등 어업인들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사용하기 위함
- (수산물 위생협력) 수산물 수출입을 위한 외국과 협력이행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입 업체 지원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대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는 것임
- (수산물품질관리 국제규격 연구위원 운영) 수산물 품질관리 국제 동향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수산제품 국제기준규격 설정 시 한국 측 의견 제시로 국내 수산업(업체) 보호

○ **(유해생물 구제)** 유해생물(적조, 해파리, 쏙, 기생충) 구제를 위한장비(황토, 철망), 시설(선박, 차량 등) 대여 등의 지원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험연구

- (유해생물구제사업) 어업 및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적조, 기생충·해파리·쏙 구제에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에 지원
- (유해생물 저감연구) 해파리·적조 저감화 연구비를 수과원에 지원하고, 수산용동물용의약품의 검증·안전관리(출하전 검사), 수거검사(함량정도), 품질관리, 감시감독 및 재평가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수과원, 수품원에 지원

○ **(수산질병관리 및 생산어가 지원)** 수산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백신 개발, 질병 발생 시 피해어가지원, 수산질병관리사 양성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 영어활동 지원

- (방역사업비) 질병 역학조사 활동 경비, 방역·예찰, 방역교육 등 질병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지자체에 지원
-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자처방 시스템 운영을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지원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운영)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관리비를 해양수산연수원에 지원
- (수산생물진료업 종사자 교육)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수산생물진료업" 종사자 연수교육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지원
-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전염병에 감염된 어류의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및 자금지원
- (수산동물예방백신) 질병 사전 예방, 면역력 증강 및 항생제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백신공급비를 지원
- (양식수산물폐사체지원) 양식장에서 질병 등으로 죽은 폐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이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비 정부 방사능 검사 능력 확충, 위공판장(수협) 방사능 검사체계 구축 등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 구축 비용 지원
- (방사능 분석 장비 확충)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 방사능 분석 장비 지원
-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수협 위·공판장에 방사능 분석 장비 지원으로 출하단계에서 생산자 주도의 감시체계를 구축
- (국민청원 유해물질 분석지원) 소비자, 어업인 등 국민이 의뢰한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물위생협정이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위생관리기준),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74조(생산·가공시설의 등록 등) 및 제76조(조사·점검)

(외국과 체결한 수산물 위생 협력사항)
· 한·미 패류위생협정('72년) 및 양해각서('03년)
· EU의 한국산 수산물 특정수입조건('95년)
· 대일수출 생식용 생굴 위생관리에 관한 구상서('98년)
·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01년)/ 한·중 활어 위생약정('04년)/ 한·인니 수산물 위생약정('05년)/한·태 수산물 위생약정('06년)/한·러 수산물 위생약정('11년)

-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 수산물안전정보관리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3조(정보제공)
- 국가표준화실험실 운영
  · 국가표준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69조(위생관리기준), 제71조(지정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
-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 수산업법 제61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위생관리기준),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위생관리 기준의 설정)
-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42조(보상금 등),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수산물품질관리 국제규격연구위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 수산물 위해요소평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62조·66조·68조
-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보상금 등) 및 제43조(비용의 지원등)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및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0(진단서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2조의4(처방관리시스템 운영)
- 수산생물진료업 종사자 교육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8, 제52조
- 양식수산물폐사체지원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8조 및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수산업법 시행령제72조
-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② 추진경위

- 수산물위생협정이행
  · '00. 8월 중국산 수산물(꽃게)에서 납덩이가 검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수산물위생약정 체결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수출국으로의 수출 증대를 위한 수입국 위생조건 준수 및 대외 신뢰성 제고를 이한 위생관리 강화
-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 및 리스크커뮤니케이션

· ‘05년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등 잇단 안전사고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불신 팽배

* 가공공장은 HACCP 도입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양식어장은 약품사용 실태도 미 파악 상태로 대책 취약

* MG 검출로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HACCP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 제기(‘05년 국감)

· 미국, EU, 일본 등은 수산물 안전관리에 HACCP을 도입하고 수입상대국에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위생조건 구비를 요구

* 미국 ‘95년 입법화(‘97.12.18 발효), 캐나다 ‘92년, EU ’91년 입법화, 일본 ‘95년

· 생산단계의 선진위생관리체계구축과 병행,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등을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 증가하고 있는 안전욕구에 부응

- 수산물안전정보관리

·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의 하나로 확정(‘03.11)

· 업무프로세스개선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수립(’05. 6)

* 우리부와 식약청에서 공동 추진, 우리부 소관 영역 중 수산분야를 “수산식품안전정보시스템”으로 함

·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05. 8)

·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 실시

* 구축기간/총사업비 : ‘05.11.15～’06.7.14 / 4,170,100천원

* 수산물안전정보포탈(fsis) 및 정보공동활용시스템 등 6개 분야

- 국가표준화실험실

· 수출국(미국・EU)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7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산하의 9개 실험실 표준화 필요

· EU 집행위원회 점검에 따른 표준화 실험실 운영 권고(2012. 11)

* 모든 분석 및 시험의 National Reference Laboratory로 정하겠으며, 한국 NRL은 EU의 NRL에 준하여 운용 및 인력, 장비, 예산 확충 추진

· 미 FDA는 매 2~3년마다 방한 점검 시 실험실을 체크하고 표준화된 기기, 시험방법 등을 적용하고 있는지 체크

* 미 FDA 및 EU집행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물 수출 중단 가능

-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 불량 수산물 및 위해첨가물 사용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욕구 증대

· 비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위한 해역관리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

- 수산물품질관리 국제규격연구위원

· CODEX 등 국제 수산식품 기준규격 설정 시, 우리나라 여건을 반영한 기준규격 제시로 수산식품 기준 분쟁 시, 불이익 감소를 위해 연구위원 채용(‘18.10)

- 수산물 위해요소평가

· 살충제 계란사태(‘17.8월) 계기,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발표(국조실, ’17.12.27)하였으며, 축·수산물 PLS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 추진방향 논의 중(‘18～)

-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13.8월)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16-’20)에 따라 수산동물용 처방전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20년~)

- 수산생물진료업 종사자 교육

・수산생물진료업 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육을「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18(연수교육)에 따라 의무화 실시(‘17.11월)

・의무화 시행 이후 (사)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18년, ‘19년 종사자 위탁 운영

- 양식수산물 폐사체 지원

・양식수산물 폐사현황 조사(‘11~’15) 및 가두리 양식장 폐사체 처리 실태 조사(‘13~’15)를 통해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장치(‘15~’16)를 개발하여 경남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시범사업 실시(‘15~)

- 방사능 분석장비 확충,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국민청원 유해물질 분석지원

・후쿠시마 원전사고(‘11)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21.4.13)에 대응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필요

6. 주요내용

○ 수산물위생협력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01년~계속
- 사업규모 : 수산물수출입업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양식장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육상양식장(해수 및 내수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일반용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양식업체,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리스크커뮤니케이션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농수산물 생산자・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수탁기관
- 사업 수혜자 :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수산물안전정보관리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2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한국수산회
- 사업 수혜자 :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국제표준화실험실 운영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표준화실험실 운영 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수산물생산해역위생조사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규모 : 전국 수산물생산해역 64개 해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수산생물질병관리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10~계속
- 사업규모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방역비, 예방백신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 사업 수혜자 : 생산자(양식어가 등)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유해생물구제사업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10~계속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유해생물구제, 유해생물 저감연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생산자(양식어가 등)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수산물 위해요소 평가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21～'23년
- 사업규모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및 신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생산자(양식어가 등)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살처분 보상금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10~계속
- 사업규모 : 보상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생산자(양식어가 등)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운영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10~계속
- 사업규모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생산자(양식어가 등)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21~계속
- 사업규모 :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 시스템 1식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수의사회 등
- 사업 수혜자 :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수산생물진료업 종사자 교육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21~계속
- 사업규모 : 수산생물진료업 종사자 교육 1식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사)수산질병관리사회
- 사업 수혜자 : 수산질병관리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양식수산물 폐사체 지원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21~
- 사업규모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시스템 5식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등
- 사업 수혜자 : 양식어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22~
- 사업규모 : 방사능 분석장비 10대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수협
- 사업 수혜자 :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등

○ 국민청원 유해물질 분석지원
- 총사업비 : -
- 사업기간 : ‘22~

- 사업규모 : 소비자, 어업인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용역업체 선정)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위공판장 방사능 분석지원	보조	수협	2,100	70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유해생물구제	보조	지자체 보조	6,066	5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
방역사업비	보조	지자체 보조	495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
생계안정자금	보조	지자체 보조	5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
수산동물예방백신	보조	지자체 보조	1,398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
양식수산물폐사체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450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122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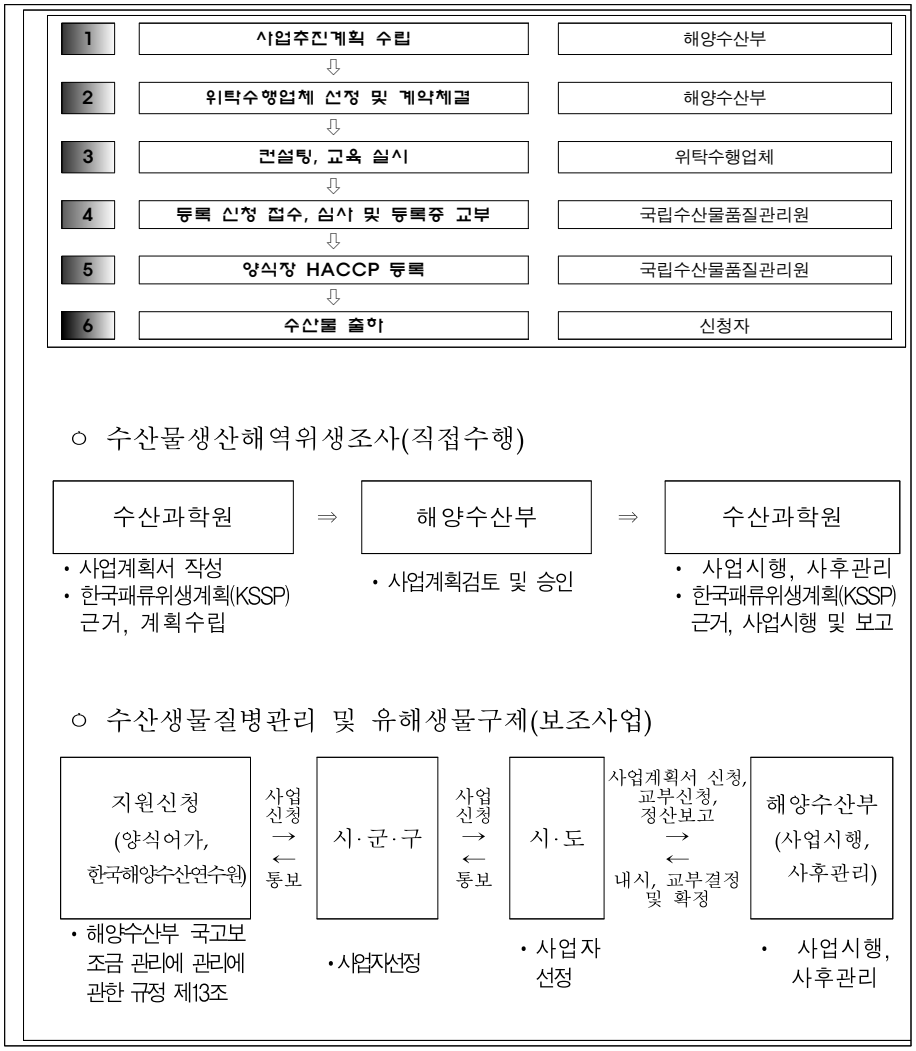

사 업 명
(12) 수산관측 (304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구조개선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3	300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가격안정	수산관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관측	3,266	3,585	3,585	3,531		△54	△1.5

4. 사업목적·내용

- 주요 수산물의 생산, 가격 및 수출·입 등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생산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수급전망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출하조절, 수급 안정화를 통한 수산물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수산관측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수산관측) ① 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수산물에 대해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권고('02.7.24 의결) 및 정부수매비축사업 개편 계획('03.5.14.)에 의거 추진

- 민간 출하조절 기능 강화 및 정부 수급정책 지원을 위해 사업추진('04~) : 생산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안정적, 자율적 생산조절 체계 구축 및 적정가격 유지 등으로 소비자 후생증대 기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규모 : 주요 수산물 수산관측(20품목, 양식 14 / 대중어 6), 양식장 항공영상판독, 수산관측 고도화 연구, 소비실태조사 등 사업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법정민간대행사업)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
- 사업 수혜자 : 생산자(어업인 등), 수산물 가공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관측	직접	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	3,531	100%	수산물의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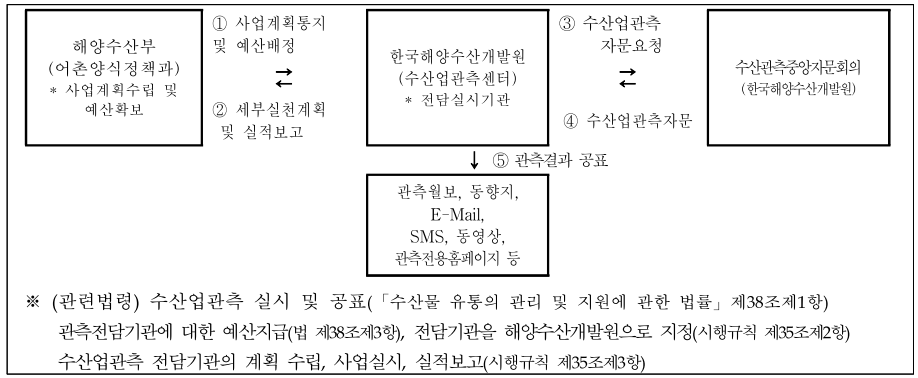

※ (관련법령) 수산업관측 실시 및 공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관측전담기관에 대한 예산지급(법 제38조제3항), 전담기관을 해양수산개발원으로 지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계획 수립, 사업실시, 실적보고(시행규칙 제35조제3항)

사 업 명
(13) 양식장관리실태조사 (30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3	301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가격안정	양식장관리실태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양식장관리실태조사	-	-	-	259		순증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양식장의 지속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양식장이용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양식산업 관련 시책 수립, 면허의 심사·평가제 운영, 불법양식장 정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 우리나라 양식업 생산·경영 실태파악을 통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양식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어촌소멸 방지 실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제8조

② 추진경위

- 양식산업발전법 '20년 8월 시행 이후 법정업무로 양식장관리 실태조사 추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2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 수혜자 : 양식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공단
① 사업기본계획 수립 ④ 예산교부 ⑥ 성과점검 등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 ③ 보조금 교부신청 ⑤ 사업수행(양식장 실태 및 운영 현황 조사) ⑦ 사업집행결과 보고

사 업 명
(14)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어촌알리기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9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23,135	40,974	60,974	21,828		△19,146	△46.7

4. 사업목적·내용

- (수산물 소비촉진)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 조성
- (수산인의 날) 수산인 정부포상 등을 통해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
- (수산정책홍보) 언론 광고, 기획기사, 홍보 영상 제작・송출 등 수산정책 대국민 홍보
-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온·오프라인(ㅈ마트, 전통) 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7조(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적 수요개발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98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국고보조 100%) 자치단체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시행주체) 공모로 선정된 수산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도시민, 어업인, 수산물 소비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물 소비촉진	보조	공모	1,417백만원	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인의 날 행사	보조	공모	180백만원	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보조	공모	20,00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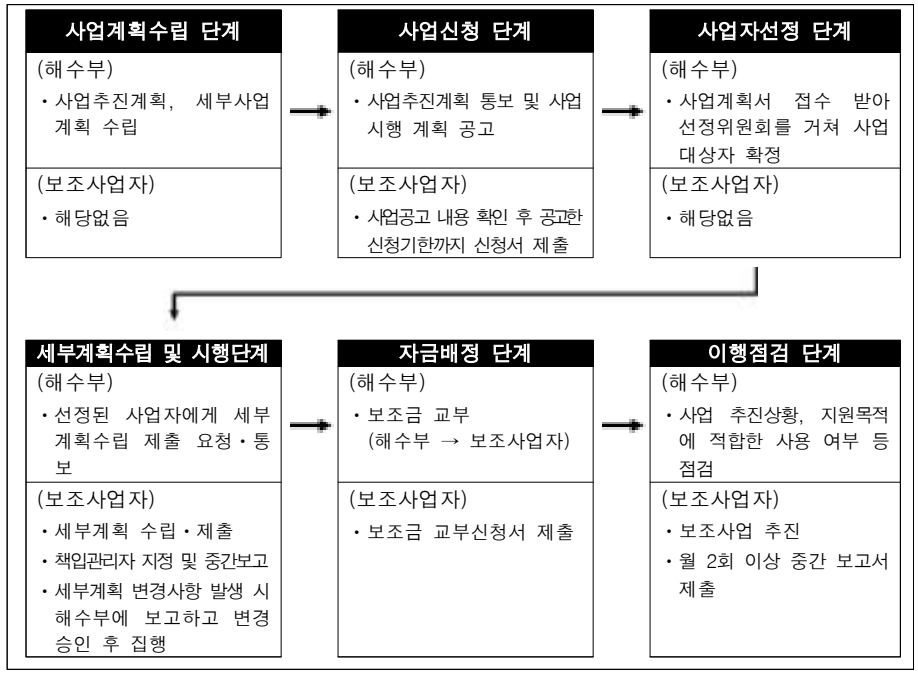

사 업 명
(15) 수산물검역검사 (304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품질관리원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5	300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농특)	수산물검역검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물검역검사	8,229	9,348	9,348	8,951		△397	△4.2

4. 사업목적·내용

- (수산물검역)
  - 수입 수산생물에 대한 정확한 검역을 통해 외래 수생질병을 사전 차단하여 국내 수생태계와 양식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
  -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 대상 및 질병의 기준을 설정

- (수산물수출지원)
  - 수출 약정상대국의 위생조건에 부합되는 수산물 생산・가공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외국 등록시설의 현지 조사・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수입 유도
  -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불법어획물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을 위해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 외국 정부와 체결한 IUU협정에서 정한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에 대한 검색 실시

- (수산물정밀검사)
  - 수산생물전염병 및 식품위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정밀분석을 위해 정밀검사 장비·시약 등을 적기에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물검역)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제22조, 제28조, 제31조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파견검역
  - ・제32조, 제37조 검역시행장, 수입위험분석
- (수산물수출지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외국과의 위생약정 및 협약 이행
  - ・제74조, 제76조 생산·가공시설의 등록 및 조사·점검
  - ・제88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 ・EU(1995, 2006 및 2008), 미국(1972 및 2003), 베트남(2000), 중국(2001 및 2004), 인도네시아(2005), 태국(2006), 에콰도르(2012)
- (항만국검색) 원양산업발전법
  - ・제14조 항만국 검색

② 추진경위

- (검역) 수산생물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수계 및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제정, 수출입수산물 검역 실시('08.12)

· 외국 유래의 수산생물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검역대상을 수산식물, 냉장냉동굴·전복·새우로 점진적 확대

- (수출) 수산물검사법 제정('50.3)으로 수출수산물 검사 실시

·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입수산물의 위생관리, 사전검사 등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하여 협약사항 이행

* EU(1995, 2006 및 2008), 미국(1972 및 2003), 베트남(2000), 중국(2001), 인도네시아(2005), 태국(2006), 에콰도르(2012)

- (항만국 검색)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제정('08.2)

· 불법어획물 적재 의심선박의 입항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검색 등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공항만 CIQ 사무실 운영 관리(26개소), 수출입 수산생물 검역, 수입위험분석 연구용역 수행, 수출검사 및 위생약정 이행, 실험실 운영(4개소, 검역검사 분석장비 125종 980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소비자, 어업인, 수산물 생산·수출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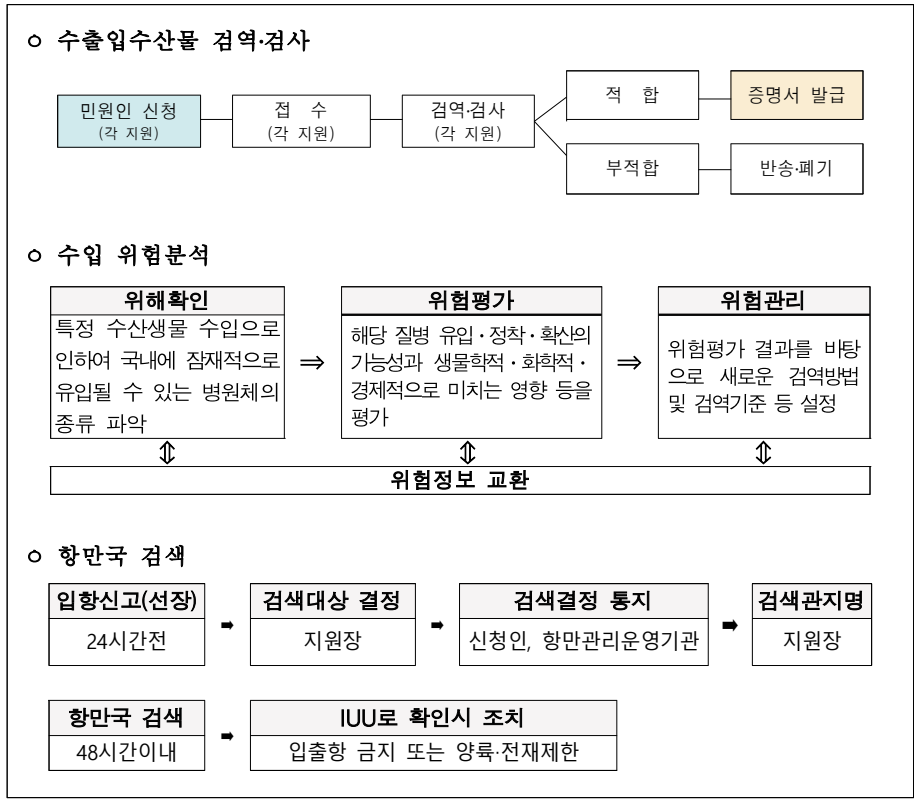

사 업 명
(16) 수산물품질관리 (304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	04	100	103
명칭	선특별회계		관리원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3000	3045
명칭	명칭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물품질관리	8,140	8,887	8,887	8,940		53	0.6

4. 사업목적·내용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국산과 수입산 수산물의 공정한 가격관리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산물 취급업소(가공업체,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등 단속·점검

- **(수산물 안전성조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시장으로 유통되기 전 양식장, 위판장 등의 수산물로부터 유해물질 잔류여부 등 안전성조사 실시

- **(수산물 인증제)** 소비자에게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하기 위해 국가인증 수산물에 대한 등록, 사후관리 등 품질관리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수입수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한 이력신고 시스템 고도화, 신고누락 여부 확인 등 현장조사 실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제18조(과태료)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 위반에 대한 교육)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품질인증), 제32조(지리적표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부터 제35조 유기식품 등의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운영 등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품질검사),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34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② 추진경위

< 수산물 원산지관리 >

- '94.1.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96.3.27 명예감시원제 도입(소비자단체 80명)
- ’98.9.0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위반사범 직접 수사
- ’01.1.29 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 · 시행
  · 시행령 제32조에 원산지 표시조사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위임
- ’10.2.4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정
- ’10.8.31「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과「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정
- ’11.7.25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확대, 음식점원산지 거짓표시자 처벌강화(’12.1.26.)
- ’12.4.1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시행
  ·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등 6개 수산물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
- ’13.6.28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등 3개 품목 추가(명태, 고등어, 갈치)로 9개 품목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
- ’16.2.0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개정(’17.1.1.)
  ·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3개 품목 추가(오징어, 꽃게, 참조기)로 12개 품목 의무화
- ’16.5.29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개정에 따른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17.5.30.)
- ’19.10.29.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개정(’20.4.30)
  ·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3개 품목 추가(다랑어, 아귀, 주꾸미)로 15개 품목 의무화

< 수산물 안전성조사 >

- ’97.9.8.「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행
- ’13.3.23.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개정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업무 위탁(식약처→해수부)

< 수산물 인증제 >

- ’93.4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시행
- ’08년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등록 및 사후관리 시행

- ’08.3.21.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행
- ’13.3.23.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천일염 및 수입소금 검사 시행
- ’13.6.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인증 시행
- ’16.3.2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시행
- ’21.2.1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운영·사후관리 시행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

- ’20.10.0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 이관(관세청→수품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원산지) 수산물 및 가공품 282개 품목, 유통판매업소 53만개소, 음식점 89만개소, (안전성조사) 10,065건, (인증제) 1,496건, (소금검사)1,803천톤, (유통이력제) 140천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수산물 관련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원산지표시위반행위 조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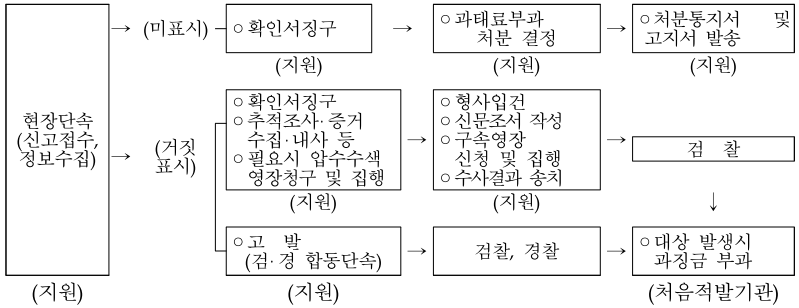

○ 과학적원산지(유전자)판별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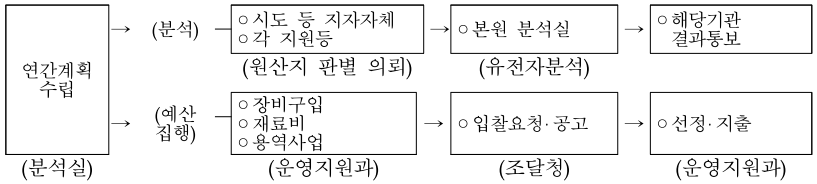

○ 수산물 안전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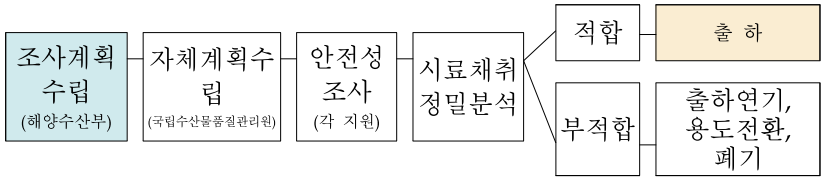

○ 수산물 인증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운영

사 업 명
(17) 수산생물방역 관리 및 지원 (3045-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5	27	국립수산물품질	구조개선	100	103
명칭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관리원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5	303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수산생물방역 관리 및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생물방역 관리 및 지원	-	-	-	1,792		1,792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수산생물질병, 신종 질병 및 해외악성 전염병 대응 사업으로 전염병 유입방지·관리 및 체계적인 검·방역 역할 강화로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및 水생태계 보호에 기여

- (방역대응 지원) 수산생물질병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진단 시약 및 방역물품 구입, 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 (인프라 보강 및 운영) 검·방역 통합에 따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실험실 등 보강(공사비), 진단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장비 도입(자산취득비) 및 예찰협의회·수산동물약사심의위원회 등 법정자문기구 운영(업무추진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법 제3조(수산생물전염병관리대책)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 법 제5조(기술개발계획 등)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법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실시)
- 법 제10조(병성감정 등) 및 시행령 제6조(수산생물방역기관)
- 법 제11조(역학조사) 및 시행규칙 제15조(역학조사)

② 추진경위

- (여건변화)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증가
  · (대내) 기후변화 및 양식환경 악화로 질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양식 피해액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건수 : ('15) 33 → ('16) 43 → ('17) 49 → ('18) 83 → ('19) 42건
  · (대외) 국제 무역 증가*로 수산물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질병 유입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어 질병관리 중요성 증대
  * 수산물 교역량(천톤) : ('15) 1,706 → ('16) 1,714 → ('17) 1,641 → ('18) 1,788 → ('19) 1,789
- (정책변화) 검·방역 기구 통합*('21.3.1)으로 "수산생물방역 체계 구축(R&D)" 예산이 당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R&D 예산을 R&D, 비R&D로 분리 필요 제기('21.4.1, 기재부)
  *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안 대응 기술개발 등 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 증대
- 사업추진 경과
  · (1단계/'09~15) R&D 과제 편성, 1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시행('11~15), 국가방역기관 시설·장비 인프라구축
  · (2단계/'16~'20) 제2차 질병관리대책 시행, 국가방역통합정보망 구축, 전염성연어빈혈증 청정국지위 획득 등 국가방역기관 기능 강화
  · (3단계/'21~'25) 제3차 질병관리대책('21~'25) 수립·시행을 통한 차세대 국가 수산생물 방역관리 로드맵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계속
- 사업규모 : 국가방역기관 운영, 방역연구장비 보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어업인),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및 주요과제별 추진 절차

방역대응 지원	시행주체	인프라 보강 및 운영	시행주체
⇩		⇩	
배부 기준안 마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요파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소요 파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업계획 장비 심의 및 확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
발주 요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예산심의 및 배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
물품 및 시약 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업집행 및 점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
지자체 검수	지자체	사업완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
검수 결과 확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NTIS 등록(장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 업 명
(18)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술개발(R&D)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5	27	국립수산물품질	구조개선	100	103
명칭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관리원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45	304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출입수산물안전성관리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 의약품사용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생물 질병대응 및 안전한 의약품사용 기술개발(R&D)	-	-	-	7,525		7,525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수산생물질병, 신종 질병 및 해외악성 전염병 대응 사업으로 전염병 유입방지·관리 및 체계적인 검·방역 역할 강화로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및 水생태계 보호에 기여

- (수산생물 검·방역 관리 기술개발) 검·방역 통합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 및 전염병 공동대응 연구, 법정 소관업무(예찰·병성감정·방역조치)수행 및 신종질병 대응 기술개발 등
- (수산용의약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신규 약품사용기준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법 제3조(수산생물전염병관리대책)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 법 제5조(기술개발계획 등)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법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실시)
- 법 제10조(병성감정 등) 및 시행령 제6조(수산생물방역기관)
- 법 제11조(역학조사) 및 시행규칙 제15조(역학조사)

② 추진경위

- (여건변화)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증가
  · (대내) 기후변화 및 양식환경 악화로 질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양식 피해액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건수 : ('15) 33 → ('16) 43 → ('17) 49 → ('18) 83 → ('19) 42건
  · (대외) 국제 무역 증가*로 수산물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질병 유입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어 질병관리 중요성 증대
  * 수산물 교역량(천톤) : ('15) 1,706 → ('16) 1,714 → ('17) 1,641 → ('18) 1,788 → ('19) 1,789
- (정책변화) 검·방역 기구 통합*('21.3.1)으로 "수산생물방역 체계 구축(R&D)" 예산이 당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R&D 예산을 R&D, 비R&D로 분리 필요 제기('21.4.1, 기재부)
  *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안 대응 기술개발 등 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 증대
- 사업추진 경과
  · (1단계/'09~15) R&D 과제 편성, 1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시행('11~15), 국가방역기관 시설·장비 인프라구축
  · (2단계/'16~'20) 제2차 질병관리대책 시행, 국가방역통합정보망 구축, 전염성연어

빈혈증 청정국지위 획득 등 국가방역기관 기능 강화

· (3단계/'21~'25) 제3차 질병관리대책('21~'25) 수립·시행을 통한 차세대 국가 수산생물 방역관리 로드맵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계속
- 사업규모 : 수산생물 검·방역 관리 기술개발, 수산용의약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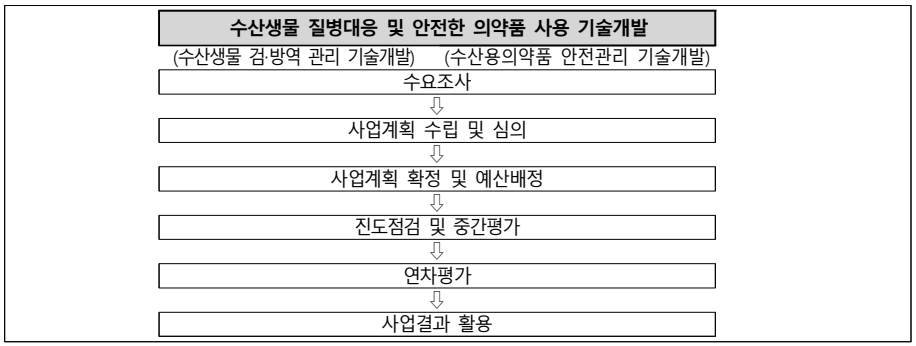

사 업 명
(19)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3131-3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자원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40
명칭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수산자원회복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2.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1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3,827	4,922	4,922	4,981		59	1.2

4. 사업목적·내용

-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 타국과 인접한 연근해 특정해역(서해5도, 이어도, 울릉도·동해 북방수역)의 수산자원에 대해 ICT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사·관리하는 사업으로 신뢰도 높은 자원 조사 자료의 확보를 통해 해양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 요건을 강화하고, 국제협상 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한중·한일 경계해역 정밀자원 조사**) 한·일 중간수역 및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국 간 어업협정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 제11조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2. 04. 06 : 국가정책조정회의「수산자원관리실태 분석·평가보고서」 상정, 수산자원조사선 등 인프라구축 추진 확정(총리실)
- '12. 04. 24 : 수산자원조사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추진(청와대지시)
- '12. 10. 11 : 자원조사 인프라구축 사업계획 수립(청와대보고)
- '13. 10. 28 :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 실무추진반 구성(국립수산과학원, 국립경상대학교, 통영시, 경상남도)
- '13. 11. 25 : 수산자원조사센터 설립 추진계획안 확정
- '13. 12. 11 :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MOU체결
- '17. 03. 31 : 수산자원조사 전담 기관 '수산자원연구센터' 개청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사업규모 : 특정해역 500개소와 특정해역 전수역(100%) 수산자원 시험어획 및 음향조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주관), 국립수산과학원(참여)
- 사업 수혜자 : 연근해 어업인, 관련 학계 및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자원조사선	→	국립수산과학원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세부사업계획 수립 ·조사계획 보고 (→해수부)		·연근해 특정해역 및 경계해역 조사 실시 (서해5도, 이어도, 울릉도·동해 북방수역 및 경계해역)		·조사 대상 분석 및 빅데이터 구축 ·통합어업자원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어업인에게 어업자원 정보 전달 등 ·사업결과 보고 (→해수부) 및 산란장 지도 등 마련

사 업 명
(20)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 운영 (3131-34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자원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41
명칭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수산자원회복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자원회복 프로그램운영	1,852	1,965	1,965	2,062		97	4.9

4. 사업목적·내용

- (목적) 감소 추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선정하여 과학적 조사, 평가를 실시하여 회복 권고안 마련하고 연근해 잠재생산량 조사 및 포획금지 연구 등 종합적 수산자원관리 정책 마련
-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회복권고안 마련) 어종별 맞춤형 회복계획 마련 및 자원 관리 정책근거 제시
- (연근해잠재생산력 조사) 수산 자원조사·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연근해 잠재생산량 산출

- (수산자원포획금지 효과 분석) 어린물고기·산란기어미 자원보호를 위한 포획·채취 금지(금어기 등) 기준 연구
-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 운영) 정책입법 등 자원회복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한 심의·결정 기구 운영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및 시스템 운영) 해면/내수면의 이용·개발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자원환경 영향 연구·관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제51조, 제61조, 제62조
  ·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등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
- 「수산업법」제68조, 제86조
  ·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 또는 양식물(養殖物)을 철거하여야 함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수산자원회복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W/G 구성・운영('04.10~12)
-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 : 자원회복어종을 설정하여 관리('06년 4종→'19년 19종)
- 「수산자원관리법」 공포('09.4.) 및 시행('10.4.)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1~2015년) 수립・시행('11.1.)
- 제2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시행('16.7)
-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 자원회복 절실 어종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프로젝트 추진, 불법어구 수거확대,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 수산혁신 2030 정책 시행('19.2)
-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시행('21.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권고안 마련('06~계속), 연근해 잠재생산량 조사('12~계속),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연구('15~계속),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 운영('19~계속)
- 사업규모 :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회복권고안 마련, 연근해 잠재생산량 조사,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연구 등 5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주관), 국립수산과학원(참여)
- 사업 수혜자 : 연근해 어업인, 관련 학계 및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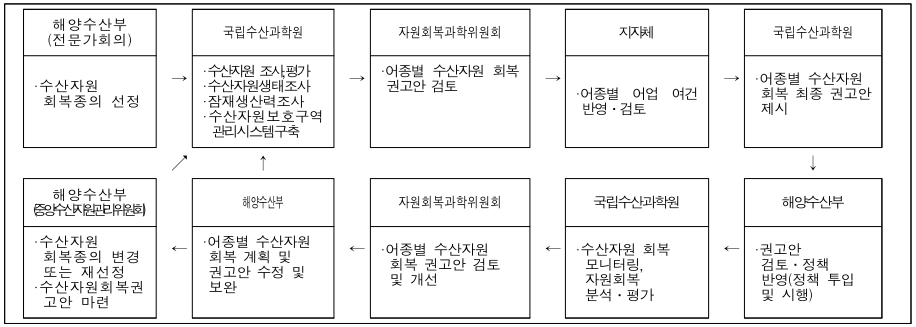

사 업 명
(21)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314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15)	소관(27)	실국(기관)	계정(4)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촌양식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0	300
명칭	수산자원관리및조성	친환경어업(농특)	환경친화형양식배합사료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	11,365	3,200	3,200	4,260		3,380	105.6

4. 사업목적·내용

- (안전성강화) 수산동물용 사료에 포함되는 성분 중 유해물질(납, 비소, 말라카이트 그린 등 87종) 등 안전성 검사 및 사료성분(어분 등 주요성분 함량) 및 품질(사료 성능) 분석
- (사용확대 기반구축) 저비용·고효율 사료개발(사료표준화, 사료원료개발, 저어분사료개발 등)하여 양식 어업인들에게 배합사료 사용 원활히 수용되기 위한 기반 구축
-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어류 등 수산부산물과 지역특산품을 활용하여 친환경 배합사료 개발을 통한 양식어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어가 소득기반 구축

-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 배합사료 사용 확대에 따른 수요량 증가 및 사료가격 상승 예방을 위해 연간 3만톤 수준의 공급 기반시설 신축 및 증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② 추진경위

- 기르는 어업발전계획('04.2.) 및 수산진흥종합대책('05.3.)
-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공급 지원을 통해 질병예방 및 어장환경개선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11.6.)
- 양식용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18.1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규모 : ('22년 기준) 배합사료안전성강화 1식, 배합사료 사용확대 기반구축 1식, 친환경배합사료공장건립(어린전복전용공장) 1식,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신축, 증축)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30~5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어류양식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보조	지자체보조	960	5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신축)	보조	지자체보조	600	3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양어사료 전문 생산시설 구축(증축)	보조	지자체보조	2,000	3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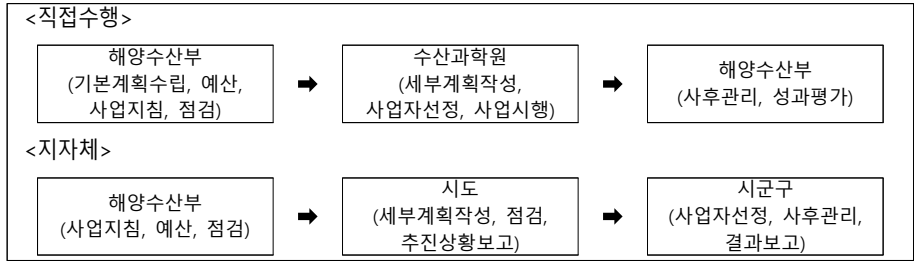

사 업 명
(22) 친환경양식어업육성 (3140-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촌양식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0	301
명칭	수산자원관리및조성	친환경양식육성(농특)	친환경양식어업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친환경양식어업육성	39,679	45,251	48,451	53,336		5,085	10.5

4. 사업목적·내용

-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 (친환경One-stop창업지원) 친환경 첨단 양식기술(바이오플락 등) 보급을 위한 양식어업인 현장교육 및 양식창업 구상에서 실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친환경사업관리및성과확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사업의 정기적인 성과분석·평가를 통한 사업효과 제고 지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자재 및 데이터호환성을 높이고 준공 후 성과확산이 가능하도록 표준 및 기준마련 지원

. (양식기술기반구축) 민간이 생산하기에 기술수준이 미흡하거나 경제성이 낮아 양식산업 육성에 애로가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지자체 연구시설 건립 지원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적·시범적인 민간 양식시스템(바이오플락, 순환여과, 수처리시스템 등) 기반 구축 지원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 스마트양식 요소기술들을 조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시범양식장 도입 및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연관산업 집적을 위한 배후부지 기반 조성 지원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스마트양식기반 조성

- (양식어장 환경조사 및 평가)

. 어장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어장환경의 조사 및 평가* 등 법정사항 이행과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양식기술 개발

* 환경평가, 생산력조사, 타당성검증, 회복력조사, 관측시스템, 후보지탐색, 친환경부표인증, 정밀진단

- (고수온대응 지원) 고수온 발생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장비 및 관련 연구 지원

* 산소공급장치, 저층해수고급장치 등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비 및 폐사어 처리비 지원

- (청정어장재생사업) 어장환경 실태를 정밀조사하여 과학적인 어장재생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구축

- (공동생산시설지원)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다수의 어업인이 사용하는 공동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 (멍게공동생산시설) 친환경적인 멍게(우렁쉥이)생산 증대를 위해 기존 노후작업대를 규격화·친환경화한 공동생산시설 확충 지원

. (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기존 굴 양식대비 폐기물 발생 및 부표사용 절감효과가 있는 친환경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공동생산시설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양식산업발전법」 제6장 양식산업의 육성

-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제61조), 양식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제64조),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65조)할 수있음. 양식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제66조)

○「어장관리법」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제25조(국고 보조)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를 하여야 함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보강·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8조(전문인력양성),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수산종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음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수산업법」 제74조에 따른 수산진흥종합대책 추진(어장환경관리강화)

○'어장환경 관리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新수산 30대 프로젝트 추진

- '09.6월 신수산 10대 프로젝트 출범, '09.9월 후속 10대과제 추가, '10.1월 30대 프로젝트로 확대

○제2차 어장관리기본계획*(2012～2016)에 어장환경 개선 분야 반영

-어장관리법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립

○어장관리법 제정('00) 및 시행('01), 어장관리법 개정*('13)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제19대 정부 국정과제(84-2) 양식업의 고도화

-ICT를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양식 시스템 보급도 추진, 바이오플락 확대, 친환경직불제 도입 등 친환경양식 활성화, 종자·품종 개발 확대, 배합사료·백신 개발 등 양식 연관산업 동반성장 촉진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18～'22)으로 스마트양식 및 고부가가치 수산양식의 대량산업화 지원

○제4차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19～'23)으로 미래 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양식산업 육성 추진

- 인공지능국가전략('19.12.17, 부처합동) :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구축(～'22, 6개)
- VIP 모두발언('19.12.12, 농정틀 전환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수산으로 확산.....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경쟁력과 편의를 높이겠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계속
- 사업규모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30～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보조	한국어촌어항공단	1,386	10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보조	지자체 보조	8,250	30~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22,050	50~7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고수온대응	보조	지자체 보조	3,900	8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공동생산시설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4,800	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청정어장재생	보조	지자체 보조	10,250	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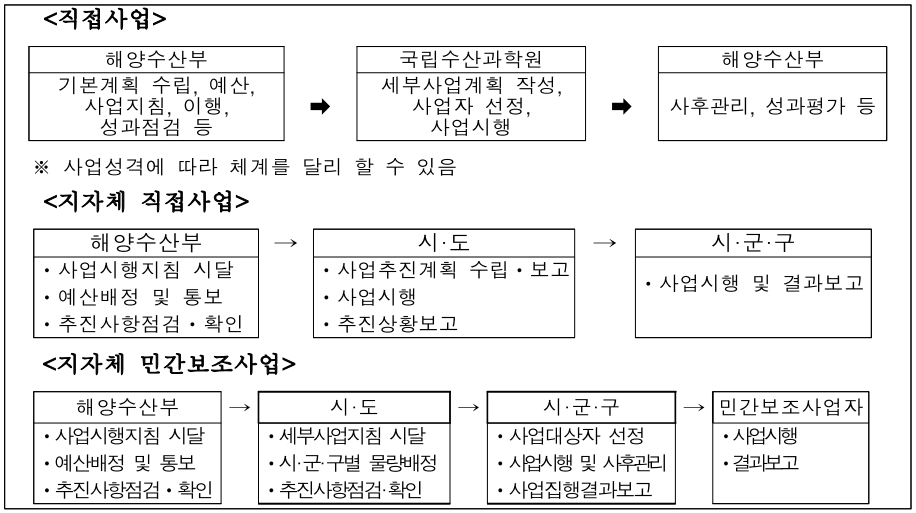

사 업 명
(23) 친환경 어구보급(3140-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자원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0	303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친환경양식육성(농특)	친환경어구보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친환경어구보급	16,669	26,200	27,270	47,270		20,000	73.3

4. 사업목적·내용

- (생분해성어구보급) 조업중 유실되어 수중에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 되는 생분해성어구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임
  * 생분해성어구가격-나일론어구가격+(나일론어구의 40%)를 국비70, 지방비 30% 지원

- (친환경부표 보급)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양식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 (패각친환경처리) 연안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패각 자원화(비료, 사료, 공업용원료 등) 및 해양배출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굴껍데기자원화 시설구축) 굴껍데기를 이용하여 탈황원료 등 자원화하는 시설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고,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어장관리법」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 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발포(發泡)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생분해성어구 보급) '07년부터 수산자원보호 및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방지를 위해 생분해성어구를 개발, 어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

- (친환경부표) '15년부터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에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추진

※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 추진 관련 **VIP 지속 관심** 표명
- 해양미세플라스틱 심각성 관련 **친환경부표 실효성** 있는 **추진** 당부(`20.11.09. BH 수보회의),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부 업무보고, `21.1.28.)

- (패각친환경처리) 연안오염 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09년부터 패각의 자원화 및 해양배출('19~)을 위해 사업 실시

- (굴껍데기자원화 시설구축) 국내 국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남(통영)지역에 굴껍데기자원화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9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며 '22년 하반기 시설공사 착공예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생분해성 어구보급	보조	지자체	5,200	7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보조금 기준보조율
친환경 부표 보급	보조	지자체	40,000	35%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보조금 기준보조율
패각친환경 처리	보조	지자체	2,070	2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보조금 기준보조율
굴껍데기자원화 시설구축	보조	지자체	700	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보조금 기준보조율

7. 사업 집행절차

①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 •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계획 통보	(해수부) •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국립수산과학원) • 생분해성 어구 원가계산 산정 · 통보	(국립수산과학원) • 해당없음	(국립수산과학원) • 해당없음
(지자체) • 해당없음	(지자체)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 사업자 공고	(지자체) • 사업자 공고 • 선정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 • 사후관리
(해수부) •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국립수산과학원) • 해당없음	(국립수산과학원) • 품질인증 적합여부 판단 및 결과 통보(해수부,수협)	(국립수산과학원) • 해당없음
(지자체) •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지자체) • 보조사업 관리	(지자체)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해수부)

②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도→시·군>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자금배정** <시·도→해수부>	**사업자 신청 공고** <시·군>
사업자 선정 신청 <어업인→시·군>	**사업자 확정 및 통보** <시·군→어업인, 수협>	**부표 구매 신청 및 자부담 납부** <어업인→수협>
부표 생산 및 납품 <부표업체→어업인>	**부표 검수 및 정산 신청** <수협→시·군>	**부표 품질 확인 및 관리** <수협, 지자체>
사업 감독 및 실적 보고 <시·군→도→해수부>	**보조금 정산 및 지급** <시·군→수협→부표업체>	**사업 정산보고** <시·군→도→해수부>

③ 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계획 수립	(해수부) •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계획 통보	(해수부) • 해당없음
(시 · 도) • 해당없음	(시 · 도)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 · 도) • 해당없음
(시 · 군 · 구) • 해당없음	(시 · 군 · 구)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 · 군 · 구) • 사업자 공고 • 선정
(보조사업자) •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 • 사후관리
(해수부) •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 · 도) •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 · 도) • 보조사업 관리	(시 · 도)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 · 군 · 구) •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 · 군 · 구) • 보조사업 관리	(시 · 군 · 구)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④ 굴껍데기자원화 시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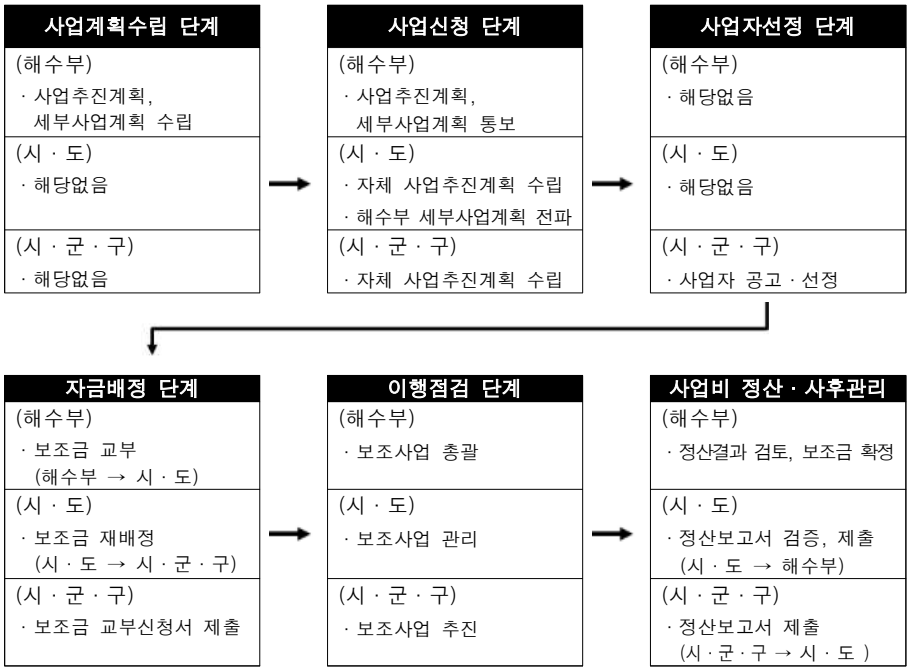

사 업 명
(24) 수산종자산업육성지원 (3140-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촌양식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0	305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친환경어업(농특)	수산종자산업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종자산업육성	1,029	1,035	1,035	1,892		857	82.8

4. 사업목적·내용

- (수산식물품종보호제도운영) 「식물신품종 보호법」('12.6. 제정)에 따른 해조류의 품종보호권 인정여부 법정 심사 시행, 신품종 심사기술 및 품종확인 기술 개발 등
- (수산종자관측)「수산종자산업육성법」('15.6. 제정) 제7조에 따라 수급안정이 필요한 수산종자에 대하여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표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법정업무(유통종자 품질표시, 종자 개량 지원 등) 수행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수산종자 육성기반 조성
- (수과원김종자배양시설증측) 주요 수출수산식품인 김 등 해조류 종자의 안정적 공급기반 지원을 위한 수과원내 종자 배양시설 증축 지원('22~'23)
- (재해대응 종자시설지원) 태풍·고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과 양식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종자생산 어가를 대상으로 재해대응시설 지원('22)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제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①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6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7조(종자관측 등)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전문인력기관을 지정하거나 양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과 인력의 교유 및 공동연구 사업 실시 등에 필요한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자 연구개발, 보존, 육종, 증식, 생산, 유통, 수출·입에 필요한 기자재,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 지도 실시 등)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경영의 진단,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한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센터를 지정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7조(개량목표의 설정)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과 인력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8조(친어 및 모패의 등록)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친어, 모패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9조(친어등의 검정)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15.6.23) 및 공포('15.7.24)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및 공포('16.6.21)
- 제19대 정부 국정과제(84-2) 양식업의 고도화
  * 수산종자·품종 개발 확대 등 양식 연관산업 동반성장 촉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계속
- 사업규모 : 수산종자산업육성지원 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100%), 보조(100%), 지자체보조(4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전라남도
- 사업 수혜자 :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양식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운영	보조	한국수산자원공단	450	100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4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재해대응 종자시설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525	40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25)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3140-33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자원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0	335
명칭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친환경어업(농특)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4,888	4,643	4,643	4,643		-	-

4. 사업목적·내용

- (노후기관·장비·설비 대체) 해상 안전 사고 예방과 어업경비 절감 등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등 대체 설치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수산업법」제86조

② 추진경위

- 2008. 5월 :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수산분야 대책」수립

  * 수산분야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연료 절감형 경제성 LED등 및 유류절감장치 설치 지원으로 악화된 어업경영 안정 도모

- 2009. 1월 :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계속
- 사업규모 : 연근해어선 약 1,550여척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 수혜자 : 연근해어선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노후기관 장비설비 대체	보조	지자체 보조	4,643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수산업법』제86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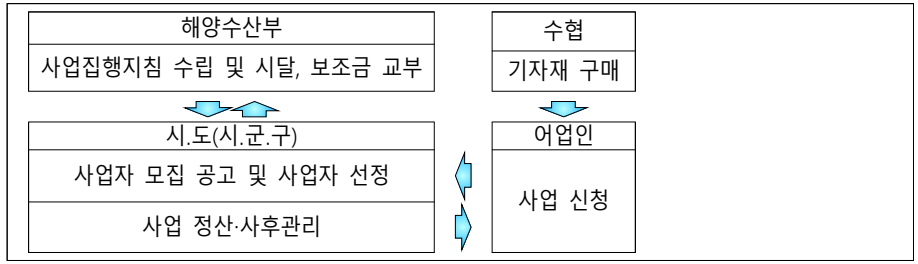

사 업 명
(26)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3140-3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촌양식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언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0	350
명칭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친환경어업(농특)	양식수산물전략품목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양식수산물 전략품목육성	5,899	4,500	4,500	4,410		△90	△2.0

4. 사업목적·내용

-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을 통하여 생산량 증대 및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 (인공생산기술개발) 종자보급 자동화 및 디지털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 (대량생산기술개발) 양식산업 표준화 검정체계 구축 연구용역 추진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중층침설식 가두리 설치 지원, 양식핵심기술 개발 및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센터 구축
- (수출지원 및 해외협력) 수산분야 기술 융복합 사례 전시 홍보를 통해 수산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0대 전략품목 집중육성 지시('12년 VIP 연두 업무보고, '11. 12. 16)
- 수산분야 10대 전략품목 육성 수립 및 보고('11. 12)
- 10대 전략품목 연구 클러스터 발대식('12. 1)
- 2013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12. 11)
  ・품목별 사업과제 작성 제출 지침 통보('12. 8)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양식어업인 등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사업>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수립, 예산, 사업지침, 이행, 성과점검 등	➡	세부사업계획 작성,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	사후관리, 성과평가 등

※ 사업성격에 따라 체계를 달리 할 수 있음

<지자체보조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세부사업지침 시달 .시·군·구별 물량배정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사업집행결과보고

사업 대상자
(공사 및 결과보고)

사 업 명
(27) 관상어산업육성지원(3140-3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촌양식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0	351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친환경어업(농특)	관상어산업 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8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관상어산업육성지원	2,610	2,465	2,465	2,845		1,390	56.4

4. 사업목적·내용

- (연구개발지원) 해수·담수 관상생물의 생태, 대량생산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초기술 및 보급기술 확보 등 위한 연구개발 지원(수과원)
- (시장개척)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상어 체험 확대 등 시장확대를 위한 관상어 산업 박람회 개최 지원(한국관상어산업협회)
-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건립) 낙동강 자원을 활용한 관상어비즈니스센터 건립으로 관상어산업을 새로운 신산업 동력 사업으로 발굴 활성화 지원(경상북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19조(기반조성 자원지원), 제21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② 추진경위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4.2)
- 관상어 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2016~2020년) ('15.12)
- 관상어 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2016년) ('15.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계속
- 사업규모 : 연구개발지원 1식, 시장개척지원 1식, 생산유통단지 조성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50%, 8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경북), 한국관상어산업협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건립	보조	지자체 보조	2,91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장개척지원	보조	한국관상어협회	200	80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7. 사업 집행절차

<국립수산과학원(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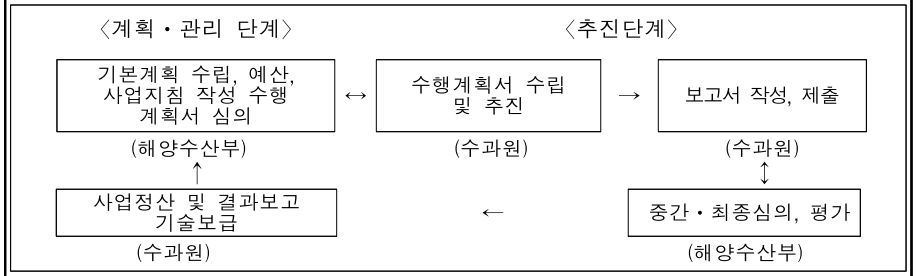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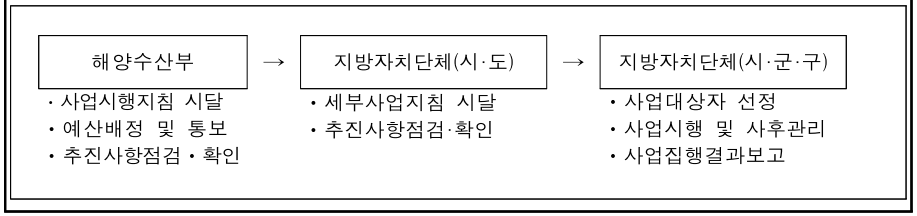

사 업 명
(28) 내수면자원조성 (314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구조개선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1	303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내수면어업	내수면자원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내수면자원조성	11,348	8,212	8,212	18,799		10,587	128.9

4. 사업목적·내용

- 내수면 자원 조성, 내수면 양식어업 지원 등을 통해 내수면 어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인공산란장조성) 갈수기 등으로 수위변동이 심한 댐·호, 저수지에 어류의 원활한 산란 유도 및 알 보호를 위한 인공 수초섬 등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16개소)
- (국가어도종합관리체계 구축) 어도의 체계적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어도설치·유지관리 실태조사, 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기 설치된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을 통해 뱀장어 소상특성 분석 및 적정 운영조건 도출을 통해 뱀장어 전용어도 효과 극대화(3개소), 어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축한 어도정보시스템 운영(1식)
- (어도개보수) 어도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어도 24개소에 대한 개보수, 어도 개보수 효과 모니터링 및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성 분석
- (내수면양식단지조성) 재래식 양식시설을 친환경 고밀도 순환여과식 방법으로 전환하여 내수면 양식수산물 생산 효과 극대화
-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기존 재래식 양식시설을 스마트화·규모화하여 내수면 양식어업인 경쟁력 제고 도모
- (유휴저수지자원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를 내수면 수산생물의 서식공간으로 조성하여 내수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 (내수면 수산물유통판매센터) 수도권 인근 지역(경기 용인)에 국내산 내수면 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 건립으로 수입 수산물과의 차별화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제19조의4(실태조사),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사업)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 사업)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0조(벤처 수산업 등의 육성),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0조(벤처 수산업 등의 육성),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② 추진경위

- '06.12월 : 내수면 위해물질(MG) 검출 파동으로 인해 국내소비 부진으로 경영악화에 빠진 내수면어업을 위해 내수면발전 종합대책 수립
- '07. 1월 : 내수면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시설 사업 지원
- '08. 1월 : 내수면 토종어류 등의 국산화 추진을 위한 토종종묘보급 사업 지원
- '11.12월 : 제3차 5개년 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
- '13.3월 : 제1차 어도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13~'17년)
- '13.3월 : 국정과제(내수면 생태목장 및 양식단지개발, '13~'17년)
- '13.10월 : 수산자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도개보수 사업 지원
- '14. 10월 :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 지원
- '15. 4월 :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방안 강구(장관 지시사항, 상임위)
- '15. 6월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수립
  ▪ 내수면수산물유통판매센터 건립 지원('16～'18, 1개소, 200억원)
- '15. 7월 :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 방안 마련(기재부 협의)
- '17. 4월 :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17~'21년)
- '17. 7월 : 국정과제 84-2(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출전략산업화) : ICT를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시범모델 개발,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스마트양식 시스템 보급도 추진
- '18. 3월 :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 수립('18~'22년)
- '20. 5월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제정
- '21. 5월 :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하위법령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3년~계속
- 사업규모 :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16개소, 국가어도 종합관리체계 구축 1식, 어도개보수 24개소, 내수면양식단지조성 1개소, 내수면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 1개소,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2개소, 내수면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 1개소,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보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민물고기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내수면 인공산란장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400백만원	8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
국가어도 종합관리 체계구축	보조	한국 농어촌공사	500백만원	1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
어도개보수	보조	지자체 보조	1,500백만원	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
내수면양식 단지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875백만원	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내수면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1,000백만원	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유휴저수지 자원화	보조	지자체 보조	942백만원	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내수면수산물 유통판매센터	보조	㈜민물고기	2,000백만원	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 수산업법 제86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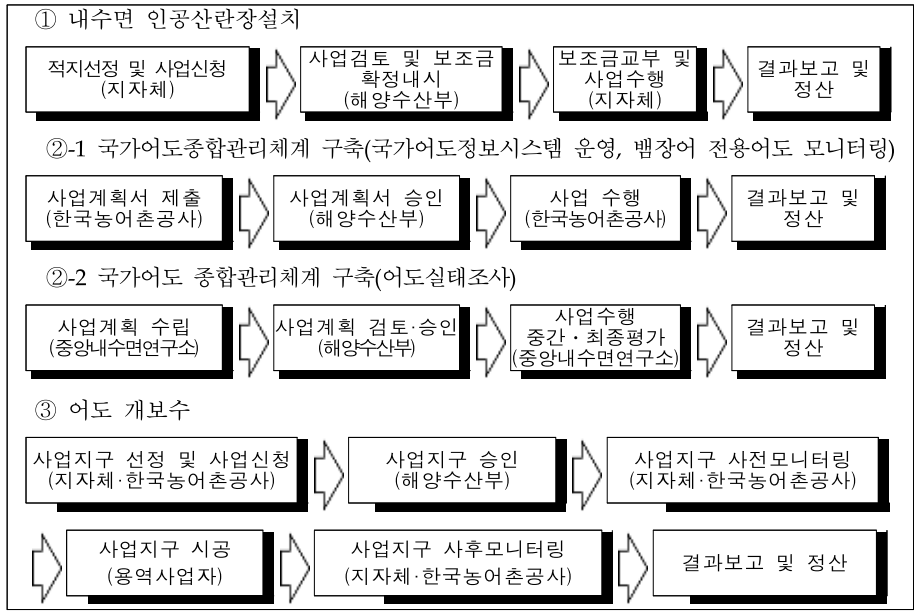

④ 내수면 양식단지조성, 내수면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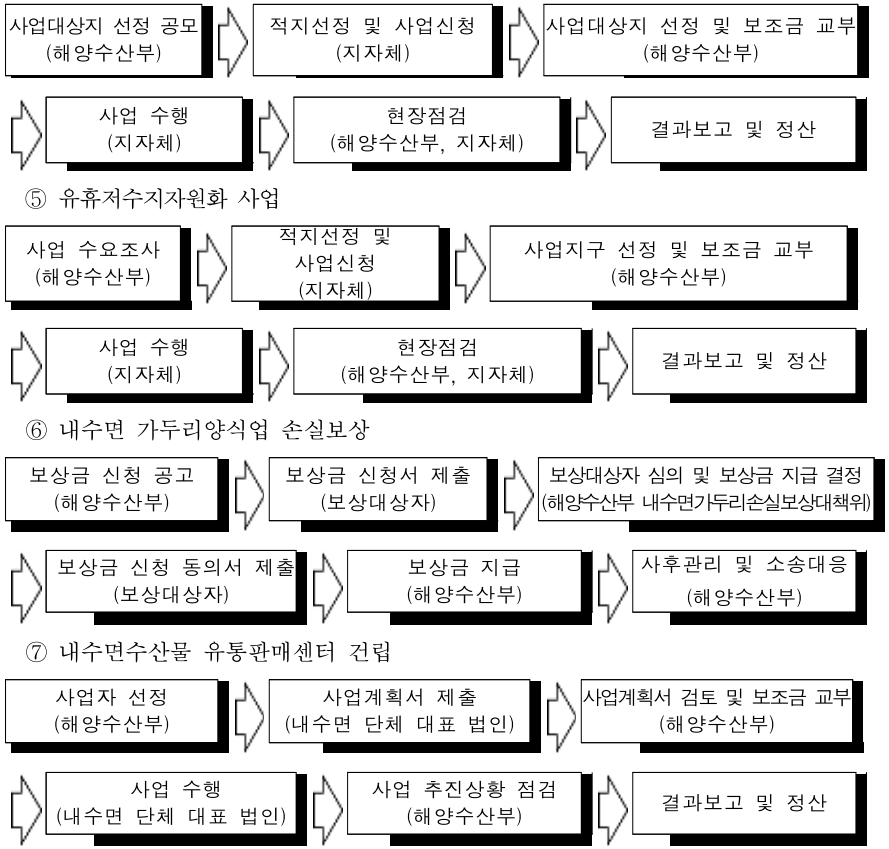

⑤ 유휴저수지자원화 사업

⑥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⑦ 내수면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

사 업 명
(29) 자율관리어업육성 (314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구조개선사업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2	300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자율관리어업육성	자율관리어업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자율관리어업육성	9,759	6,972	6,972	6,972		0	0

4. 사업목적·내용

- 자율관리어업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수산자원 조성, 불법어업 추방, 공동생산·판매, 어장환경개선 등을 실천하여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정지원 등)

② 추진경위

- 기존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회복에 한계(남획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는 악순환)
-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불법어업 추방, 자원조성·관리 등의 활동을 추진토록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 도입 후 2002년부터 육성사업 예산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규모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1,133('20.12월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한국수산회,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5,752	50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정지원 등)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보조	지자체 보조	140	100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정지원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지원	보조	한국수산회	819	100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정지원 등)

7. 사업 집행절차

○ 자율관리어업 운영비(여비 등)는 정부에서 직접수행

○ 지자체보조사업

- 선정단계: 자율관리 참여신청 (자율관리공동체) ⇒ 공동체선정 및 활동평가 (지자체) ⇒ 공동체등급 및 지원대상 결정 (해양수산부)
- 지원단계: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해양수산부) ⇒ 보조금교부신청(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지자체) ⇒ 보조금 교부(확정) 지도·감독 (해양수산부)

○ 민간보조사업

-지원단계: 사업집행 지침 수립시달 (해양수산부) ⇒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민간) ⇒ 위탁계약 체결 ⇒ 보조금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한국수산회,수협) ⇒ 보조금 교부(확정) 지도·감독 (해양수산부)

사 업 명
(30)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3150-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자원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50	304
명칭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71,213	65,726	65,726	65,881		155	0.2

4. 사업목적·내용

- **(바다숲 조성)** 바다사막화(갯녹음) 등으로 훼손된 연안해역에 환경개선과 해조류 이식을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0년까지 바다숲 54,000ha 조성 지원
- **(수산자원 증대)** CPTPP와 연계하여 공간적·어종별 자원관리 강화를 통한 수산자원 회복 기여
  - 바다목장 조성 :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산생물의 서식공간 조성으로 수산자원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기 위해 '22년까지 전국연안 50개소 바다목장 조성 지원
  - 산란·서식장 조성 :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별 생태특성을 고려한 지속생산 가능한 공급거점을 조성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하고자 '30년까지 전국 연안 80개소 조성 지원
- **(수산종자 자원관리)** 수산종자의 유전적 관리를 통해 생산한 수산종자의 유전적 다양성과 수산자원의 건강성을 확보하여 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총허용어획량(TAC) 운영)** 수산혁신 2030, CPTPP와 연계하여 자원회복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생물을 TAC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간 어획량 설정을 통한 체계적인 어업생산 관리로 지속이용 가능한 어업생산성 유지 기여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국제적 관리 대상어종인 연어의 자원관리를 위해 자연 산란장을 조성하여 회귀율 제고 및 연어 자원증대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제41조, 제42조의2, 제55조의2 및 제61조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인증제(이하 "방류종자인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공약사항

◇ **(VIP 공약사항) 우리 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구현하여 어장 관리체계 개선 등 어족자원을 지키겠습니다**
※ (국정과제 84-1)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 ○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연근해 전 어종으로 확대 이행 추진
- ○ 해조류 이식, 종묘 방류를 통해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 확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사업규모 : 수혜자는 전국 어업 종사자, 수산물을 이용하는 전국민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백만원)	76,570	75,869	78,088	71,213	65,726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주관), 한국수산자원공단·지자체(강원도)(수행)
- 사업 수혜자 : 연근해어업종사자,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전국민

- 보조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한국수산자원공단	14,421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및 제61조
	민간자본보조	한국수산자원공단	51,060	50~100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및 제61조
	지자체보조	강원도	400	50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및 제61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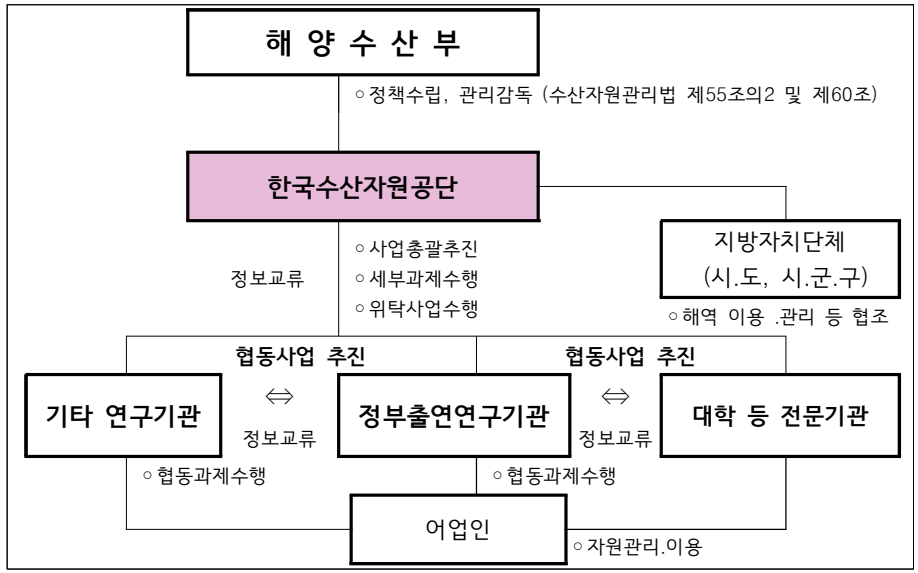

사 업 명
(31)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3150 - 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자원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50	304
명칭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8,352	15,751	15,751	23,550		7,799	49.5

4. 사업목적·내용

- (**탐구8호 대체선건조**) 선령 25년이 경과된 노후 조사선인 탐구 8호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하는 비용 중 당해 추진가능한 공정분의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탐구7호 대체선건조**) 선령 25년이 경과된 노후 조사선인 탐구 7호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하는 비용 중 당해 추진가능한 공정분의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탐구2호 대체선건조**) 선령 25년이 경과된 노후 조사선인 탐구 2호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건조하는 비용 중 당해 추진가능한 공정분의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 제11조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수산자원관리법」 제정·시행, 과학적 자원조사관리를 위해 세부 자원조사 의무사항 규정('10.4.23)
- 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12.4.6)시 「수산자원 관리실태 분석·평가 보고」에서 국가자원조사 기반(조사선)구축 개선 요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 ~ 계속
- 사업규모 : '26년까지 수산자원 전용조사선 신조 3척, 대체건조 5척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주관), 국립수산과학원(수행)
- 사업 수혜자 : 연근해 어업인, 대국민, 수산자원 관련 과학자 등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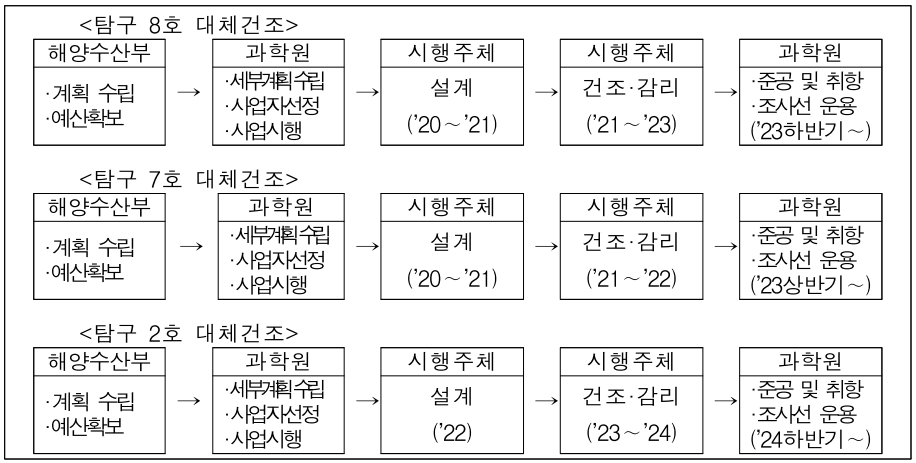

사 업 명
(32) 낚시산업 선진화 (3150-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50	307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조성	낚시산업 선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낚시산업 선진화	2,049	2,541	2,541	2,316		△225	△8.9

4. 사업목적·내용

○ 낚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안전·환경을 지향하는 새로운 낚시문화를 정착하여 낚시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의 소득증대 도모

○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낚시전문교육 및 안전홍보 추진,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지원 등

- (낚시업자 전문교육) 법에서 의무화시킨 낚시업자(선원 포함) 전문교육을 통해 자원, 환경, 안전을 지향하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기틀마련
- (낚시정보종합포털 운영) 낚시정책 및 낚시저변확대를 위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 (낚시안전 홍보) 구명조끼 착용 등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유도
- (낚시 산업분야 연구용역) 선진 낚시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검토
- (낚시 산업 수출활성화)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업 진흥을 통한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 (낚시어선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낚시어선 실시간 승선자 명부 및 출입항 정보의 온라인 관리를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안전사고 예방
- (낚시산업 실태조사) 낚시 관련 기초통계자료 제공 및 낚시산업 활성화 모델 제시를 통해 낚시산업(안전 포함)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교육·홍보)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8.11월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정부안 제정
- '09년 :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시행

  * 사업 예산 : ('09) 40억원 → ('10) 35억원 → ('11) 31억원 → ('12) 31억원

- '11.3월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공포

  * 동 법률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 산업 발전 의무를 국가에 부여

- '12년 : "내수면자원조성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낚시정보종합포털 구축 및 전문교육교재개발 사업 시행(사업예산 : 380백만원)
- '12.3월 : 「낚시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
- '12.9월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 '13.12월 : 제1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 '13년~ : 국정과제(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중 수산업의 외연확대), 정부 3.0과제(낚시정보종합포털 구축·운영), 낚시터환경개선사업낚시전문교육 실시
- '15.10월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수립(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추진
- '16년 : 낚시명예감시원 운영(100명 위촉, 홍보·합동감시 등 1,200회)
- '18년 :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추진(국내낚시용품제조사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 '20년 : 제2차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 ~ 계속
- 사업규모 : 낚시업자 전문교육(9천명), 낚시정보종합포털(1식), 낚시안전 홍보(1식), 낚시산업 수출산업화(10개사), 낚시어선관리시스템(2식), 연구용역(2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70% 지속지원), 민간위탁(의무)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참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낚시인, 어민, 낚시 관련산업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보조	한국수산무역협회	175	7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33)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구축(3150-34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50	343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조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2.○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구축	1,759	2,745	2,745	1,695		△943	△34.3

4. 사업목적

- 연근해어업의 대상자원, 어선, 어구 및 제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법 제90조제6항(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제2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및 제40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및「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수산자원 남획, 어업협정체결 등으로 경쟁조업 가열로 인한 어업갈등·분쟁심화 등으로 어업관리 방식 전환 필요('08년부터 연근해어업 체질개선 연구추진)
  · 붕장어 통발, 연안조망, 자망, 안강망, 형망 등 어업별 혼획저감 연구('08~'13)
  · 남해안 멸치자원 분포 및 혼획 실태조사 등 연근해 소형어 자원관리 연구(")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가될 경우 우리나라 배출여건상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사전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산정 추진
  · 수산업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 산정('10~'13)
  · 수산물 탄소표시제 구축(12종 / TAC 고등어 등 6종, 양식어종 뱀장어 등 6종)
  · 어선어업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저감시스템 산업과, 친환경 수산시설 개발, '11~'13)
-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인 편익증대를 위해 위·변조가 불가하고 보관 및 소지가 편리한 IC카드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을 도입하여 교체 추진
  · '12년 근해어업 허가어선 약 3,240 건 / '13년 연안·구획어업 허가어선 약 35,600건 교체 완료
- 연안어업은 농업, 양식업에 비하여 작은 생산규모, 산재된 생산지역, 계획생산의 어려움 등으로 자생적 조직화가 어려움에 따라 품목별 규모화·조직화 지원 추진
- 연근해어업 어업분쟁의 효율적 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수산업법, '15.6)
  · 첨예한 대립이 있는 어업분쟁에 대해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 추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시험연구(3개 과제), 정책연구(1개 과제), 전자어업허가증 시스템 유지·보수(1개 시스템), 연안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신규 2개소, 계속 3개소), 어업조정위원회(1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연근해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선어업생산자단체육성	보조	지자체 보조	800	5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7. 사업 집행절차

- 시험·정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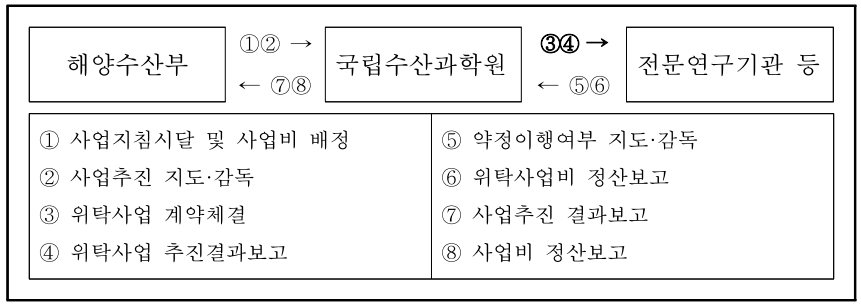

- 어업허가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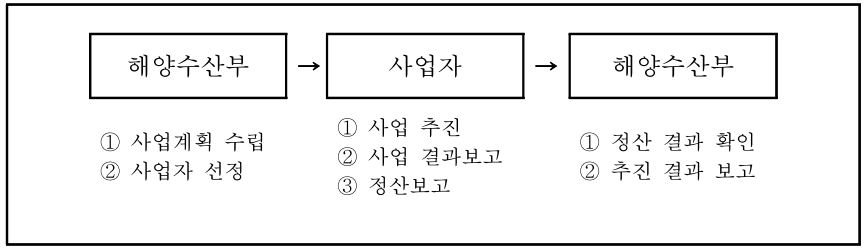

-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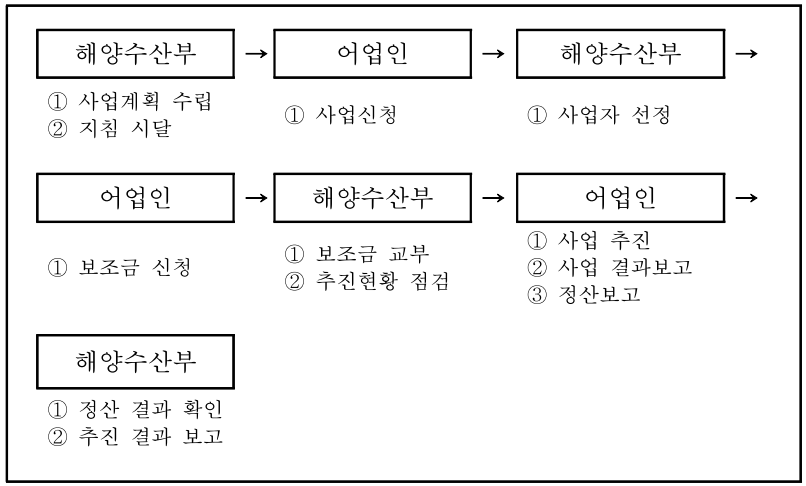

사 업 명
(34) 어촌활력기반구축 (3340-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사업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0	301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	어촌활력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어촌활력기반구축	7,834	8,441	8,441	10,381		1,940	23

4. 사업목적·내용

- (어촌산업융복합지원)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기존 어촌사업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어촌활력 증진 기반 구축
- (어촌관광활성화) 어촌관광 수요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 외 소득증대 및 국민에게 휴식처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② 추진경위

-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01～'계속 / '19년 현재 103개소 조성)
- '04. 2 : 2004년 대통령업무보고(어촌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 '04. 5 :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 수립추진
- '05. 1 :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 '07. 1 : 어촌관광활성화 사업과 다기능어항 건설사업을 어촌어항관광개발 사업으로 통합
- '10. 1 :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중 다기능어항 건설사업을 국가어항 건설사업으로 이관
- '11. 1 : 세부사업명 변경(어촌어항관광개발 → 어촌관광 활성화)
- '14. 1 : 신규 세부사업 어촌활력증진사업 추진
- '15. 1 : 어촌 6차산업화 지원으로 세부사업 통합(어촌관광활성화, 어촌관광활성화(지자체), 어촌활력증진사업)
- '20. 1 : 세부사업명 변경(어촌6차산업화지원 → 어촌활력기반구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어촌특화지원센터(10개소), 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어업유산(9개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지자체 보조(국고 50~7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어촌체험휴양마을, 어촌마을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촌체험휴양마을육성 국가어업유산 지정관리		지자체 보조		50%, 7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지원)
어촌산업융복합 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100%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도농교류법 제6조와 제12조,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5조

7. 사업 집행절차

[지자체자본보조: 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 어촌유휴시설활용 어촌특화산업육성지원]

해양수산부		지자체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③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량 배정 ⑤ 보조금 교부 결정 ⑦ 사업실적 검토 및 보조금 확정	↔	②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④ 사업계획 협의 및 보조금 교부 신청 ⑥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지자체경상보조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양수산부		지자체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③ 지원대상마을 선정 ⑥ 보조금 교부 결정 ⑧ 사업실적 검토 및 보조금 확정	↔	② 지원대상마을 신청 ④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⑤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신청 ⑦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지자체경상보조 –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지자체(보조기관)
① 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③ 세부사업계획서 승인 ⑤ 보조금 교부 결정·송금 ⑧ 사업실적 검토 및 보조금 확정	↔	②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④ 보조금 교부신청 ⑥ 사업시행 ⑦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⑨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사업완료

[민간경상보조 – 어촌특화사업 관리·평가, 어촌특화 역량강화]

해양수산부		민간보조사업자
①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계획 수립·공모 ③ 보조사업자 선정(선정위원회 개최) ④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⑥ 보조금 교부 결정·자금송금 ⑨ 사업실적 검토 및 보조금 확정	↔	② 보조사업자 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 포함) 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⑦ 사업 시행 ⑧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⑩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사업완료

[민간위탁 – 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어촌관광 홍보]

해양수산부		민간위탁사업자
① 사업계획 수립, 위탁계약 체결통보 ③ 세부사업계획서 승인 ⑤ 사업비 교부 결정·자금송금 ⑧ 사업실적 검토 및 사업비 확정	↔	②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④ 사업비 교부 신청서 제출 ⑥ 사업 시행 ⑦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⑨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사업완료

사 업 명
(35)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3340-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사업기획단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0	305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어촌어항관광기반조성(농특)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340	340	340	340		-	-

4. 사업목적·내용

-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선정·사업지구 이력관리·집행관리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촌·어항법」 제10조(준공확인),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49조(사업비 지원) 등
-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76조(평가), 제108조(자금지원), 제119조(보고와 검사) 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등

② 추진경위

-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신설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10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지역 분리 합의('16.8.19) 및 시행('17년~)

  * 사업예산은 '17년부터 농식품부 소관 분임재무관 형식으로 집행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사업 신규추진('18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계속
- 사업규모 : 34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수혜자 : 어촌마을주민,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어촌어항공단	100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육성지원기구의 지정)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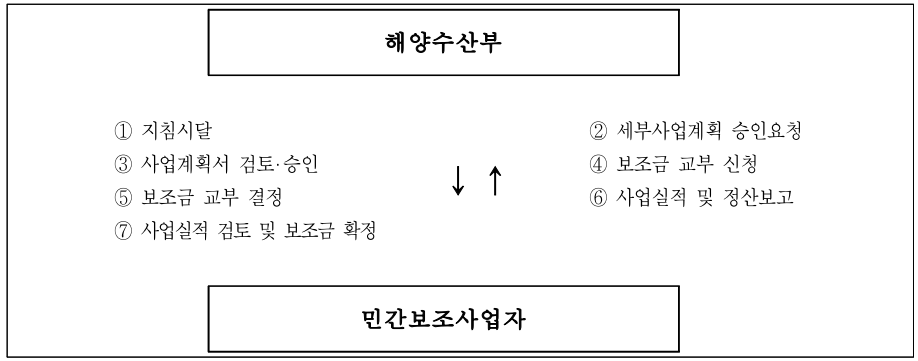

사 업 명
(36) 귀어귀촌활성화 (3347-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사업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7	303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귀어귀촌지원	귀어귀촌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7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귀어귀촌활성화	3,952	4,056	4,056	4,951		895	22.1

4. 사업목적·내용

- (종합) 귀어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다양한 정보제공,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귀어귀촌종합센터의 사업비 지원 및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필요한 맞춤형 정보 등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귀어귀촌 지원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귀어귀촌 실태조사 실시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귀어귀촌 정책 추진을 위한 귀어귀촌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으로 귀어귀촌 정책 참여 도모
- (귀어학교 개설)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며 해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어촌정착 도모
-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체류형 기술교육·체험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하여 어촌정착 초기 '주거' 문제 해소
- (귀어귀촌종합계획 수립)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로 효율적인 귀어귀촌 지원 시책 수립
- (도시민 기술교육)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② 추진경위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 지원이 필요' 국회상임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 귀어귀촌 추진을 위한 정책·예산·조직 필요('14. 3월 인사청문회/홍문표)
  -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 대책 마련('14. 4월 임시국회/경대수)
  - 귀어귀촌종합센터 신속 설치,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14. 5월 상임위/김승남)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1.20.) 및 시행('15.7.21.)
-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개소(국립수산과학원, '14.10월) 및 이전(어촌어항공단, '16.1월)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도시민의 귀어·귀촌 확산을 위한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등 귀어·귀촌 희망단계부터 정착까지 체계적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반영 필요

* 국정과제 :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③ 어업 경영여건 개선과 어촌 활력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사업규모 :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1개소,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8개소, 귀어학교 개설 1개소 및 교육비 6개소, 어촌에서 살아보기 10개소, 귀어귀촌종합계획 수립 1식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자치단체 보조(50~7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민간단체(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수혜자 : 귀어·귀촌인(예정자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위탁	한국어촌어항공단	1,761 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합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도시민어촌 유치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600 백만원	50	
귀어학교 개설	보조	지자체 보조	500 백만원	50	
어촌에서 살아보기	보조	지자체 보조	150 백만원	50	
도시민 기술교육	보조	지자체 보조	840 백만원	70	

7. 사업 집행절차

1) 지자체 보조

해양수산부		지자체		시도, 귀어귀촌센터 등
① 사업시행지침 마련 ⑤ 대상 지자체 공모(선정) ⑧ 성과점검 등	↔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 ④ 사업 공모신청 ⑥ 사업집행	↔	③ 사업신청 ⑦ 보조사업 추진 ⑨ 결과보고

2) 민간 보조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① 사업시행지침 마련 ④ 보조금 교부 ⑥ 성과점검 등	↔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 ③ 보조금 교부신청 ⑤ 사업집행 ⑦ 결과보고

사 업 명
(37)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344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사업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40	300
명칭	수산경영	수산경영안정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70, 90,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6,894	6,872	6,872	6,605		233	3.4

4. 사업목적·내용

- (수산계 학교 지원) 수산계 고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창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산분야 신규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수산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산인 교육 등을 지원
- (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 귀어자, 수산업 입문자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멘토지원 및 기술보급지·수산기술동영상을 제작·보급, 어업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 등을 지원
- (어업인 역량강화) 수산업경영인, 어촌후계자, 어업인 단체, 여성어업인 등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
-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수산계고교 실습생 안전확보, 교육여건 개선 및 수산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2,500톤급, 120명 승선) 1척 건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제20조(벤처수산업등의 육성),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② 추진경위

- 1981년부터 어업인후계자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실시

* '84년부터 어업인 현장애로사항 해소 및 신기술개발 보급, '07년부터 어촌인구유입촉진, 어촌계기술지원 등 사업을 신규 도입, '08년부터 어촌개발리더 및 여성어업인지원 사업 추진, '09년부터 수산벤처대학 지원 사업을 도입

- 2005년 어업인후계자활성화방안에 따라 교육확대 및 방향 재정립
- 전문계 고교 특성화 방침 확정(인적자원개발회의 '06.12.27) 및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계획 확정(교육과학기술부 '07.4.26)
- 2015년부터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지자체보조)사업"을 통합하여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으로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81 ~ 계속
- 사업규모 : 수산계학교(9개교, 승선실습, 현장실습 지원), 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창업어가, 일자리 지원 센터 8개소, 연구교습어장),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수산업경영인 2.5만명, 여성어업인 0.73만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50~100%)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인재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수산사무소 (참여기관) 수산계학교(고교·대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및 어업인 진입희망자, 수산후계인력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계고교 특성화	보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2,001	100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20조(벤처수산업등의 육성),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1항 관련 별표 1(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22호
		지자체보조	1,308	100	
수산후계인력 장학금	보조	농어촌희망재단	133	100	
수산경영 대학과정	보조	지자체보조	340	50	
창업어가 멘토링	보조	지자체보조	180	50	
어업인일자리 지원센터	보조	수협중앙회	407	70	
연구교습어장	보조	지자체보조	1,000	70	
지도분석장비	보조	지자체보조	300	100	
수산업경영인 교육	보조	지자체보조	226	50	
어촌지도자 교육	보조	지자체보조	340	50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보조	어업인단체	388	70	
여성어업인 포럼	보조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26	90	

7. 사업 집행절차

1) 수산계고교 지원(지자체, 민간 보조)

해양수산부	↔	지자체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각 수산계고교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 수립, 성과점검 등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승인신청,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교부 등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교육실적현황 보고 등

2) 수산경영 대학과정(지자체 보조)

해양수산부	↔	지자체	↔	수산관련 대학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 수립, 성과점검 등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승인신청,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교부 등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교육실적현황 보고 등

3)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지자체 보조)

해양수산부 ①→ ←⑥⑦⑧ 지방자치단체 ②⑤⑦→ ←③④ 창업어가, 후견인

①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②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③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후견인지정 신청서 제출	④ 약정 체결 ⑤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 ⑥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정현황 보고 ⑦ 약정이행여부 지도·감독 ⑧ 매분기 추진현황(결과) 보고

4) 일자리 지원센터(민간 보조)

해양수산부 • 지침시달

①지침시달
③세부사업계획 승인
⑤정산 승인
↓↑
②세부사업별 계획서 제출
④사업 정산 보고

수협중앙회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 정산

5) 수산어업인기술보급(지자체 보조, 직접수행)

- 연구교습어장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 수립, 성과점검 등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승인신청,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교부 등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교육실적현황 보고 등

- 지도분석장비 구입(지방)

해양수산부		지자체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 수립, 성과점검 등	↔	보조금교부 신청,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교육실적현황 보고 등

- 수산기술보급지 발간, , 창업기술교육과정(중앙), 해양수산인 정책·경영 교육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 수립, 성과점검 등	↔	보조금교부 신청,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교육실적현황 보고 등

6) 어업인역량강화(지자체 보조, 민간 보조, 직접수행)

- 수산업경영인교육, 어촌지도자교육

해양수산부		지자체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 수립, 성과점검 등	↔	보조금교부 신청,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교육실적현황 보고 등

- 어업인역량강화 교육

해양수산부		수산어업인 단체 등 민간사업자
사업시행지침 마련, 예산 수립, 성과점검 등	↔	보조금교부 신청,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시행, 교육실적현황 보고 등

사 업 명
(38)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3440-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구조개선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40	311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경영안정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장비(임대) 활용(지자체)	1,395	1,395	1,395	1,680		285	20.4

4. 사업목적·내용

- (이동수리소 운영) 고장발생률이 높은 어업용기자재의 무상점검·수리로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
- (수산장비임대) 어업활동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수산장비를 임대하여 어업인 부담경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대통령 말씀('08.3.18, 농식품부 업무보고 시 VIP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농기계·수산장비 임대활성화)에 반영('07.12월)되어 추진

> ▪ 사용빈도가 낮은 필수 고가 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가 장비 매입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 ▪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가격으로 농기계를 사서 관리하고 싼 가격에 임대하면 농가부채 감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이동수리소 운영('08~계속), 수산장비임대('09~계속)
- 사업규모 : 이동수리소 53개소, 수산장비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직접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 이동수리소 운영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지자체 수산사무소별 예산배정	해양수산부 → 지자체 수산사무소
↓	
지원대상 어촌계 및 점검·수리대상 기자재 선정	지자체 수산사무소
↓	
사업자 선정 및 약정서 체결	수산사무소, 수리업체, 어촌계
↓	
순회 점검·수리 및 결과보고	수리업체
↓	
사업비 집행·정산 및 추진결과 보고	지자체 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

□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신청	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승인	해양수산부
↓	
수산장비 구입	지자체(위탁기관)
↓	
사업추진실적,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지자체 →해양수산부
↓	
수산장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지자체(위탁기관) → 어업인, 어촌공동체

사 업 명
(39) 어업인 삶의 질 향상 (3440-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구조개선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40	312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경영안정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70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252	3,800	3,800	2,701		△1,099	△28.9

4. 사업목적·내용

- (어업인질환조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4조에 따른 어업인 질환조사(의무, 매년)
- (전문지원기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총리) 업무 수행 지원(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평가 등)
- (어업안전보건센터) 어업인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DB 구축)와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등을 이행
- (어업활동지원, 어촌생활돌봄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어가나 사회·복지 서비스 기반이 약한 어촌지역 고령·취약 가구에 인력을 지원
-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하거나 탈의, 기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
-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어업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
-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의 작업 기인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어작업자 건강위해 요소 측정 및 어업인 질환손상현황조사

·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부상·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어업인의 어업활동 유지를 위해 어업도우미 지원

· 제15조의 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경상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조선대병원)

· 제29조(농어촌기초생활여건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어업작업중 비·바람을 피하거나 탈의, 휴식 등의 다용도 목적의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지원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3.17 지정)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의 기초적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어촌생활도우미 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52)「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 과제에 따라 어업인·어촌지역 복지 확충 등 삶의 질 향상 개선 추진
- '15년 신규사업으로 '어업인 복지지원사업' 반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사업규모 :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1식, 어업안전보건센터 3개소, 어업활동도우미 4,000명, 어촌생활돌봄지원 6,667명, 전문지원기관 1개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10개소,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2개소, 여성어업인 특화검진 1,500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경상, 자치단체경상, 자치단체자본)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민간(대학병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문지원기관	보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0백만원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보조	경상대병원	120백만원		
		인제대부산백병원	120백만원		
		조선대병원	120백만원		
여성어업인특화검진	보조	미정	371백만원	90%	
어촌생활돌봄	보조	수협중앙회	70백만원	70%	
어업활동도우미	보조	지자체 보조	200백만원	50%	
낙도지역전쉼터	보조		1,000백만원		
외국인어업근로자 복지회관	보조		400백만원		

7. 사업 집행절차

○ **어업인 질환조사**: 용역

해양수산부 연구계획 수립(1월) ⇒ 해양수산부 연구기관 계약(2월) ⇒ 용역기관 연구실시 (3~11월) ⇒ 용역기관 결과보고 (11월) ⇒ 해양수산부 결과공포 (12월)

○ **전문지원기관 지정·운영**: 민간보조

해양수산부 지원계획 수립(1월) ⇒ 전문지원기관 사업계획수립 (1~2월) ⇒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 (2월) ⇒ 전문지원기관 사업수행 (2~12월) ⇒ 전문지원기관 결과보고 (12월)

○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민간보조

해양수산부 지원계획 수립 (1월) ⇒ 어업안전보건센터 연차계획 수립 (2월) ⇒ 해양수산부 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3월) ⇒ 어업안전보건센터 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12월)

○ **어촌생활돌봄지원**: 민간보조

해양수산부 지원계획 수립(1월) ⇒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2월) ⇒ 수협중앙회 사업실시 (2~12월)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사업홍보 (2~12월) ⇒ 수협중앙회 사업결과 보고(12월)

사업지원 신청 ⇕ 사업비교부 : 단위수협

사업지원 신청 ⇕ 사업비지원 : 어업인

○ **어업활동지원**: 지자체보조

해양수산부 지원계획 수립(1월) ⇒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선정(1~2월) ⇒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 (2월) ⇒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 (3~12월) ⇒ 지방자치단체 사업결과 보고(12월)

지원대상 추천 ⇕ 기초자치단체

보조금교부 ⇕ 사업결과보고 : 기초자치단체

○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외국인어업근로자복지회관**: 지자체보조

해양수산부 지원계획 수립(1월) ⇒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선정(1~2월) ⇒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2월) ⇒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 (3~12월) ⇒ 지방자치단체 사업결과 보고(12월)

지원대상 추천 ⇕ 기초자치단체

보조금교부 ⇕ 사업결과보고 : 기초자치단체

○ **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 민간보조

해양수산부 지원계획 수립(1월) ⇒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선정(2월) ⇒ 해양수산부 사업추진 준비(2~9월) ⇒ 지방자치단체 건강검진 시행 (10~12월) ⇒ 지방자치단체 사업결과 보고(2월)

보조금 교부 ⇕ 관리기관

건강검진대상 추천 ⇕ 병원으로 보조금 송금 : 관리기관

사 업 명
(40) 양식어업재해보험(344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 특별회계		수산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43	300
명칭	수산경영	재해대책	양식어업재해보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순보험료 50% 운영사업비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양식어업재해보험	26,835	28,289	28,289	25,301		△2,988	△10.6

4. 사업목적·내용

-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8년 7월
- 이상기후로 인한 적조, 고수온 등 연례적 재해 발생,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나, 현행 자연재해대책은 시설복구 및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어가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
  ⇒ 경영안정과 어업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제도 도입
- 국정과제
  ・82-3 :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농어업관련 재해대응 강화)
  ・84-3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어업 경영여건 개선과 어촌활력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규모 : 양식보험 대상품목(28품목) 양식어가 8,139어가 대상
- 사업시행방법 : 법정민간대행사업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사업 수혜자 : 보험대상 목적물(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양식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협중앙회	순보험료 50%, 운영사업비 100%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집행지침 수립 및 예산요구(해양수산부) → 사업관리계획 수립(농금원)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수협)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배정 승인(농금원,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 보조금 정산 및 확정·결산보고(시행주체)

사 업 명
(4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344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 특별회계		수산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43	301
명칭	수산경영	재해대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5 ~ 71%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145,038	118,919	118,919	116,295		△2,624	△2.2

4. 사업목적·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한 연근해 어선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고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선원 보호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제9조(업무의 위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1. 보험가입자, 수급권자 및 해당 어선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추진경위

- 연근해어업진흥계획(1977년)에 의거 선원공제료(1978년), 어선공제료(2001년) 보조 시작
- 수협공제를 정책보험으로 전환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04.1.1)
- 국정과제(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04~'15) 5톤 이상 → ('16) 4톤이상 → ('18) 3톤이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어선원 105천명, 어선 60천척
- 사업시행방법 : 법정민간대행사업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사업 수혜자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협중앙회	순보험료 :0~70% (톤급별 차등지원) 부가보험료 : 7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신청 및 승인(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② 보험가입(어업인 → 회원조합)
③ 보조금 지급신청(회원조합 →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④ 보조금 교부(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⑤ 보험사업 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제출)

* 적용 법령 및 지침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보험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42) 양식등 재해대책비 (344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43	302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재해대책	양식 등 재해대책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4.5~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양식 등 재해대책비	8,286	8,000	8,000	8,000		-	-

4. 사업목적·내용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연재해(태풍 등)에 따른 어항시설 등의 피해에 대해 어업기반 시설을 복구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영어의욕 고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② 추진경위

- '67년부터 농어업재해로 인해 주요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영농·어를 재개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7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자연재해,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방어항 등 피해복구비	보조	지자체	2,000	50%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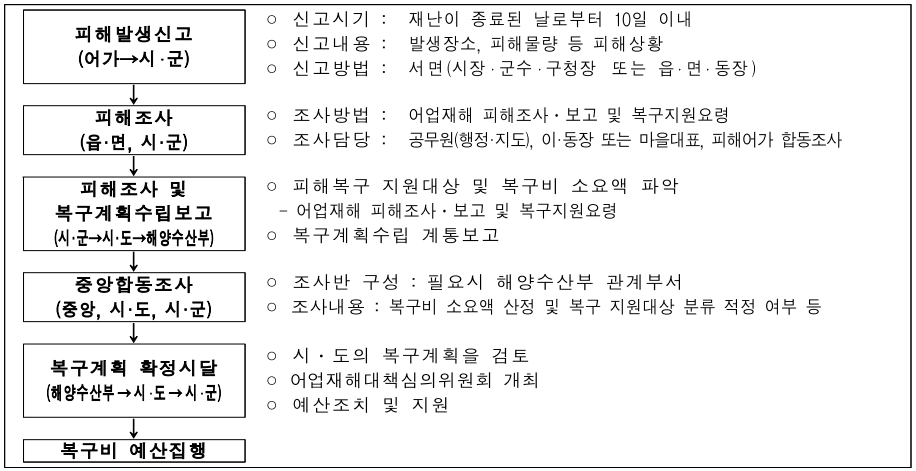

사 업 명
(43) 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344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구조개선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43	303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재해대책	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어업인건강연금 보험료지원	11,638	12,002	12,002	14,310		2,308	19.2

4. 사업목적·내용

- 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 대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건강보험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제1항(「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8, 시행 2015.7.29)

<연금보험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추진경위

<건강보험료 지원>

- '01년~'03년까지 농어촌 거주자에 한하여 보험료의 22% 경감
- '04년부터 농어촌거주 농어민에게 보험료 30% 경감(복지부22%+농림부8%)
- '04. 7월 경감대상지역 확대(시의 녹지·관리지역, 특·광역시의 준농어촌)
- 국고지원율 상향하여 최대 50% 지원('04, 8% → '05, 18% → '06, 28%)
- '06. 7월 경감대상지역 확대(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지정 후 해제 지역)
- '08. 4월 경감대상지역 확대(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 '15. 8월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 차등지원(0~28%)
- '20년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로 사업 이관

<연금보험료 지원>

- '95년 7월 농어촌지역가입자 연금적용 확대(최저등급보험료의 1/3 금액)
- '03년 1월 최저등급보험료의 1/2금액 지원
- '04년 7월 기준등급이하 소득자 본인보험료의 1/2금액 정률지원, 기준등급초과 소득자 기준등급 보험료의 1/2금액 정액 지원
- '07년 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 이관
- '20년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로 사업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건강) '04~계속, (연금) '95~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기타보전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사업 수혜자 : (건강)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연금)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의 0~28% (차등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최대 5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7. 사업 집행절차

어업인

○ (신규신청) 지원대상인 어업인은 각 공단에 지원신청

각 공단(지사)

○ 제출 받은 지원대상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이 원칙이나, 신청 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소급 가능

해수부 및 각 공단, 지자체

○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실시(연2회)

- 부적격자 지원 여부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사 업 명
(44)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3450-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50	301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85,793	85,118	85,118	96,331		11,213	13.2

4. 사업목적·내용

- 어업경영자금, 재해복구자금,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 보전

- (**양식어업경영자금**) 수산물 수입개방과 어업 경영비의 증가 등 어업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저리의 양식어업 경영자금 지원(1회임 경비 지원)

- (**어선어업등경영자금**) 수산물 수입개방과 어업 경영비의 증가 등 어업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해 저리의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지원(1항차 경비 지원)

- (**신고ㆍ마을ㆍ종묘생산어업**) 소규모 영세 어업활동을 하는 마을어업, 신고어업(나잠, 맨손 등) 종사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재해복구자금**)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복구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

- (**원양어업경영자금**) 해외수역에서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저리의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의무화 도입 이전 시범적용을 위해 저리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수산업경영인경영자금**)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어촌정착지원자금**)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

-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양식어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금지원

-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산물 대량 어획시기에 가공·유통업체 등에서 수사물 원료 수매에 필요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업경영자금**)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재해복구자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국고 보조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기준(대통령령) 제4조 및 제1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부채경감대책자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원양어업경영자금**)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융자)

- (**수산경영인육성자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② 추진경위

- (**어업경영자금**) '88년 영세어업인의 어업경영 지원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 (**부채경감대책자금**) 농어가 부채의 합리적 대책 강구 및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라 관련 어업인 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농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 (**원양어업경영자금**) 해외수산자원의 확보와 원양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지원을 위해 원양어업경영자금을 융자하고 이차보전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자금**) 유가급등 및 사료가격 인상에 따라 가중된 양식어가의 경영 위험 해소를 위해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

- (**수산경영인육성자금**) '81년부터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시작

- (**어촌정착지원자금**) '09년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 개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9 ~ 계속

- 사업규모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지원조건
▪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79~계속**	**33,210억원**	**조달금리 : 수발 3.20%, 신용 3.73%, 상호 4.27%**
- 양식어업경영자금 * 어업경영자금에서 분리	'88~계속	18,200억원	2.5~3.0% 또는 변동 1년(1년씩 2회연장)
- 어선어업등경영자금 * 어업경영자금에서 분리	'88~계속	7,700억원	
- 신고, 마을, 종묘생산어업	'16~계속	1,000억원	2.0% 또는 변동 (1년씩 2회연장)
- 재해복구자금	'79~계속	41억원	1.5% 15년(5년거치 10년분할)
- 부채경감대책자금 (수산업경영회생자금)	'99~계속	100억원	1.0% 12년(5년거치 7년분할)
- 원양어업경영자금	'92~계속	1,872억원	3.0% / 1년(1년씩 2회연장) *CTA 협정 대비 또는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수리·개조시 2.0%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	'08~계속	1,000억원	1.0% / 2~3년(어종별)
- 수산경영인육성자금	'09~계속	1,200억원	1.0~2.0% 10년(3년거치 7년분할), 15년(5년거치 10년분할)
- 어촌정착지원자금	'09~계속	1,000억원	2.0% 15년(5년거치 10년분할)
- 양식시설현대화자금	'12~계속	420억원	1.0% 10년(3년거치 7년분할)
- 수산물수매지원자금	'14~계속	677억원	3.0% / 1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사업 수혜자 : 어업경영체(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기관명	지원 금액 ('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양식어업경영자금	이차보전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45,280	이차보전 100% (기준금리-대출금리)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수산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 제2조
어선어업등경영자금			17,044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자금			2,538		
재해복구자금			1,359		
부채경감대책자금			265		
원양어업경영자금			630		
환경친화형배합사료자금			5,372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10,843		
어촌정착지원자금			5,615		
양식시설현대화자금			7,101		
수산물수매지원자금			284		

7. 사업 집행절차

어업인 ← 회원조합 → 수협은행 → 해양수산부 → 수협은행

(대출) (이차보전명세서 제출)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지급)

- 어업인이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에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수협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정책자금을 대출
- 회원조합 및 수협은행에서 대출한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해양수산부로 신청
- 해양수산부는 이차보전 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을 교부

사 업 명
(45) 수산정보화 (3462-5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구조개선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62	505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행정정보화(정보화)	수산정보화(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4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수산정보화	1,457	1,398	1,398	1,410		12	0.9

4. 사업목적·내용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실시간 정상운영을 통해 사용자(해수부 및 지자체,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사업자 위탁운영과 시스템 개발·운영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유지관리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 해수부 및 지자체, 해경,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하나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수부 및 유관기관에서 시스템과 정보를 공동·활용
- **(수산 ICT융합 지원)** 수산업(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주관 수산업 분야 실용화사업 지원(지자체보조, 공모사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법 제96조(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 수산자원관리법 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추진경위

- 『어업자원관리 정보화체제』 구축 1차~4차(2001년~2005년)
- 『수산정보시스템』 구축 1차~4차(2003년~2006년)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구축 1·2차(2008년~2009년)
-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시스템』 구축 1·2차(2012년~2013년)
-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추진(지자체)』(2013년~계속)
-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1·2차(2013년~2014년)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 구축 (2014년)
- 『어선거래시스템』 구축(2014년~2019년)
- 『수산정보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ISP 추진(2015년)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2016년~2019년)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2020년~계속)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전국 120여 개 연안(시도·시군구 등) 수산정보DB 수집 및 연계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전국 연안, 내수면 지자체, 전국 산지수협,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기타 등)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직접수행)
  ·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지자체 보조사업 / 국고 40%, 지방비 및 자부담 6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 100%), 지자체 보조(국고 4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자체
- 사업수혜자 :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수산업무 담당자, 어업경영체 등 수산인,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지자체 보조	지자체 (공모사업)	720백만원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122번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사업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 내용
① 사업계획수립 및 발주	해양수산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발주
⇩		
② 사업자선정 및 계약	조달청 or 해양수산부	사업자공고, 기술평가, 사업자선정, 계약체결
⇩		
③ 사업추진	사업자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개발, 구축, 감리 등
⇩		
④ 사업평가 및 검수	해양수산부	사업추진결과 검토, 평가, 검사·검수, 사후관리

< 지자체 보조사업(공모사업)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 내용
① 계획수립, 과제공모	해양수산부	ICT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과제공모 및 접수
⇩		
② 공모과제 신청	지자체 (시도, 시군구)	수산인이 포함된 공모과제 계획서 작성 제출
⇩		
③ 공모과제 평가 및 선정	해양수산부	지원과제 평가·선정, 선정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		
④ 사업시행	지자체 (시도, 시군구)	계획수립, 발주,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검수
⇩		
⑤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사업비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등

사 업 명
(46) 원양어업활성화 (354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수산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42	300
명칭	원양협력	원양어업기반구축	원양어업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원양어업활성화	4,439	4,695	4,695	4,444		△251	△5.3

4. 사업목적·내용

○ **(원양어업활성화)**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연안국의 자원자국화 및 공해상 조업규제 강화)로 인해 원양업계의 해외수역 조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수산식량자원 확보

- **(해외어장 자원조사)**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규제와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정책 강화 등의 조업여건 악화로 새로운 해외 어장 개발 필요, 정부 주도 해외어장 개발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요경비 중 일부 지원
-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관리)**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 옵서버 운영
- **(해외진출 지원 및 협상전문관 지원)**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및 원양어업관련사업 해외투자의 체계적 지원 및 국제수산기구와 수산통상협상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 전문가 지원 사업
- **(해외선원묘지관리)** 해외에 안장되어 있는 선원묘지 관리와 묘지에 안장된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 등 지원
- **(원양어업통계조사)**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러시아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경비 지원)**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감독관 승선 선박 운항 경비 일부 지원
- **(국제수산기구 의무 자료 수집 및 제출)**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의무사항 이행(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으로 해외수역에서의 안정적 조업쿼터 확보
-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러 수역 안정적인 조업쿼터 확보를 위한 한-러 어업협상 등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경비 지원
- **(원양어선 안전 · 복지 국제규제 영향분석)** 어선과 어선원 안전·복지 관련 국제협약 강화 대비 국제규제 동향 파악과 국내 영향 분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외어장자원조사 :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2. 새로운 해외어장개발

○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해외선원묘지관리, 국제수산협상전문가 지원, 원양산업통계조사,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운항경비 지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구축 운영 : 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② 추진경위

○ 해외어장자원조사 : 해외어장 개발을 통한 조업어장의 안정적 확보('01)

○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 옵서버 승선경비지원을 통해 원양산업 기반유지('06)

○ 해외진출 지원센터 운영 : 양식·가공·유통 등 사업영역 다각화('09)

○ 해외 선원묘지 관리 : 해외에 안장된 선원묘지 관리('02)

○ 정부간 협정 참석지원 : 정부간 협정의 원활한 이행 등('09)

○ 원양산업 통계조사 : '08 한러 정상 합의 등('10)

○ 러시아 감독관 승선선박 운항경비 : 한·러 어업위원회시 조업조건 변경('10)

○ 국제수산협상 전문가 및 옵서버 육성관리 : 국제옵서버 육성 및 관리('11)

○ 국제수산기구 의무자료 수집 : CCAMLR 수역 과학조사 실시('14)

○ 원양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 : 원산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0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 수혜자 : 원양어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어장 자원조사	보조	한국원양산업협회	750	100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관리	보조	한국수산자원공단	1,370	50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
해외진출지원 및 협상전문관 지원	보조	한국원양산업협회	659	100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해외선원 묘지관리	보조	한국원양산업협회	74	90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원양산업 통계조사	보조	한국원양산업협회	90	100	통계법 제18조
러감독관 승선선박 운항경비 지원	보조	수협중앙회	369	70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보조	한국원양산업협회	90	90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

7. 사업 집행절차

① 해외어장 자원조사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
ㅇ 사업신청 공고 ㅇ 사업자 심의·선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지급		ㅇ 희망사업자 신청 ㅇ 사업계획 수립 ㅇ 보조금 교부신청 ㅇ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 검토 ㅇ 보조금 정산·확정

②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관리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자원공단	⇔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 승인 ㅇ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개산급 지급		ㅇ 사업계획 수립 ㅇ 보조금 교부신청 ㅇ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 검토 ㅇ 보조금 정산·확정

③ 해외진출 지원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 승인 ㅇ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개산급 지급		ㅇ 사업계획 수립 ㅇ 보조금 교부신청 ㅇ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 검토 ㅇ 보조금 정산·확정

④ 해외선원 묘지관리

해양수산부	⇔	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 승인 ㅇ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개산급 지급		ㅇ 사업계획 수립 ㅇ 보조금 교부신청 ㅇ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 검토 ㅇ 보조금 정산·확정

⑤ 원양산업 통계조사

해양수산부	⇔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	해양수산부
ㅇ 통계조사 실시 계획 승인 ㅇ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개산급 지급		ㅇ 통계조사 실시계획 수립 ㅇ 보조금 교부신청 ㅇ 통계조사 및 보고		ㅇ 통계보고서 검토 ㅇ 보조금 정산·확정

⑥ 러수역 감독관 승선선박 운항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 승인 ㅇ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개산급 지급		ㅇ 사업계획 수립 ㅇ 보조금 교부신청 ㅇ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 검토 ㅇ 보조금 정산·확정

⑦ 국제수산기구 의무자료 수집 및 제출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 지침 시달 ㅇ 사업계획 승인 ㅇ 자금 배정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자금배정 신청 ㅇ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 검토 ㅇ 자금 정산·확정

⑧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	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
ㅇ 사업계획 승인 ㅇ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개산급 지급		ㅇ 사업계획 수립 ㅇ 보조금 교부신청 ㅇ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ㅇ 결과보고 검토 ㅇ 보조금 정산·확정

⑨ 원양어선 안전·복지 국제규제 영향분석

해양수산부	⇔	연구기관	⇔	해양수산부
ㅇ 연구제안 및 공고, 계약 ㅇ 사업자 선정 및 과업지시 ㅇ 교부 및 송금		ㅇ 연구계획서 제출 ㅇ 연구수행 및 보고회 ㅇ 결과보고		ㅇ 평가회의 및 검수 ㅇ 정산·확정

사 업 명
(47)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354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구조개선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해양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42	301
명칭	원양협력	원양어업기반구축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3,706	4,911	4,911	4,368		△543	△11

4. 사업목적·내용

- (해외수산자원협상) 국제수산관련 양자·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참석여비 및 영문에디터 인건비 등을 지원
- (국제수산기구 회의 개최) 국제수산기구 내에서의 위상 강화를 통한 원양업계 지원 및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
- (국제수산기구보존관리 이행·정책)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연구, 조사 등 정책 프로젝트 수행
- (한미과학기술협력) 미국(Noaa*)과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해양정책 및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지원

  * 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해양대기청)
- (FAO 세계수산대학유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과 평가, 보완 지원을 위해 FAO 전담인력 및 개도국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등을 지원
- (UN기구 연계 IUU 대응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UN 산하기구와 연계하여 불법어업(IUU) 근절을 위한 노력 등 공유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이슈 적극 참여·기여를 통한 위상 제고
- (국제협상전문성강화) WTO/DDA 및 FTA 협상 추진, 타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 법률자문(자료분석) 및 의견수렴 지원, 협상 지원용 로밍폰 지원, 자료구입 및 인쇄 등 통상협상 전문성 강화를 지원
- (수산통상협상) WTO, FTA 등 수산통상협상 적극 대응으로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 한-뉴 FTA('15.12.20 발효) 협상에 따른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농림수산협력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학생 및 전문가 등이 일차산업 선진국인 뉴질랜드에서 교육,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회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 연안국과 어업협정 및 수산협력약정 체결·운영(18개국), 국제수산 기구 가입(22개)

- 중서부태평양 고도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30조(개발도상국의 자원 평가 등을 위한 지원)
- FAO 세계수산대학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촉진)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 세계수산대학 설립 상호협력을 위한 한-FAO 간 MOU('14.1)
    * 대한민국(해수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간 수산 양식 연구 및 역량 구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한-FAO 간 합의의사록 체결('16.7)
  · 한-FAO 간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9.5)

<수산통상 협상대응>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3조(수산업·어촌의 통상정책 등), 제44조(수산업·어촌분야 국제협력)
- 한-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 제14장(농림수산협력),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이행약정, 농축수산업 훈련비자 관련 한-뉴 통상장관 서한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국제수산기구협상 및 대응>
- 해외수산자원협상
  · 94년 UN해양법발효 이후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강화 및 각국의 무질서한 해외 수산자원 개발로 수산자원이 남획됨에 따라 자원관리를 위한 다자간 협상 강화
  ·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미래 자원확보를 위해 국제지역수산관리기구 협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산자원 외교 지원 사업 추진

- 연안국 수산협력 회의
  · UN해양법협약 발효('94) 후 연안국의 200해리 선포 및 조업활동 제한으로 우리 원양어선은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공해어족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국제수산지역관리기구는 관할수역의 조업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 이에 따라 해외어장에서의 안정적 조업활동 확보를 통한 수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연안국과의 우호적 협력확대 필요

- 국제수산기구 회의 개최
  · 국제수산기구내에서 국가 위상강화를 통한 우리 원양업체 지원 및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수산회의 국내개최 추진
    * '14년 IWC 과학위, CCSBT 이행위 작업반, 한러어업위원회 등 국제회의 개최
    * '15년 IOTC 연례회의, NPFC 정기회의, CCSBT 총회, 한러어업위원회 등 개최
    * '16년 OECD 심포지엄, NPAFC 연례회의, 제7차 세계수산회의 개최 등
  · 참치합동기구회의 사전 워크숍 개최 등 국제수산기구회의 개최 추진

- 한미수산과학기술협력
  · 한미간 수산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선진기술 및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연구능력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수산과학기술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 지금까지 한미협력사업은 지재권·로얄티 부담없이 선진수산기술과 법제·행정 모델을 수입하는 주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수산자원관리, 적조, 양식개발 등 4개분야 24개 세부사업을 NOAA인력과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추진할 계획

- FAO 세계수산대학
  · 국제해사기구(IMO)의 세계해사대학(WMU)을 모델로,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내 대학원대학 설립 추진
    * FAO와 양자회담('13.6) 시 FAO 수산양식부 사무차장(Árni M. Mathiesen)에 공식 제의
  · FAO가 참여하는 세계수산대학 공동연구 용역 추진('14.12~'15.7)
    * 교과과정 및 운영, 조직형태, 예산, 수립절차 등에 대해 연구
  ·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공식 제안서 제출('15.10) 및 FAO 이사회 상정('15.12)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추진 후 정식설립을 위한 한-FAO 간 합의의사록 체결('16.7)
  · 한-FAO 간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9.5)

<수산통상협상대응>
- WTO/DDA 협상 : DDA 협상 개시('01), UN SDGs 14.6에 따라 '20년 타결 목표로 협상 재개('15), COVID-19로 인해 각료회의 연기('21), 협상 진행 중('22)

- FTA 추진현황

· 발효 및 타결(22건 59개국) : 아세안('07.6), EU('11.7), 미국('12.3), RCEP('22.2) 등

· 협상 중(11건 21개국) : 한·중·일, MERCOSUR, 우즈베키스탄 등

· 협상 준비(2건 9개국) : PA, EAEU

-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

· ('14.11)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뉴질랜드 FTA 실질 타결 선언

· ('17.2~) 2017~2021년도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추진

· ('20.12)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이행약정 개정(연장)

· ('21.7) 한뉴 농림수산협력위를 통해 코로나19 호전시 현지사업 추진 협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9～계속
- 사업규모 :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수산통상 협상 대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경상보조(50%), 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원양어업인 및 국내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	민간 경상 보조	농림수산 식품교육 문화정보원	307	1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7. 사업 집행절차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 위탁사업분 추진절차>

- 위탁추진 : 추진계획 수립(해양수산부) → 위탁계약체결 → 회의개최 → 정산 및 사업완료(해양수산부)

<수산통상협상대응>

- FTA협상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회의 참석 등의 경비는 직접 집행하며, 원활한 협상 대응을 위해서 해외시장조사 등 협상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보조사업 추진(사업계획서 접수 - 검토 - 사업추진 - 정산 등)

* (FTA 진행 경과도) 협상국면 도래 → 협상전략 마련 및 대응전략 등 회의자료 준비 → 협상대표단 구성 → 협상동향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 및 의견 수렴 → 양자 및 다자간 협상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

해양수산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개산급 지급		○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 결과보고 검토 ○ 보조금 정산·확정

사 업 명
(48) 연안국과의 협력(ODA) (354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국제협력정책관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42	302
명칭	원양협력	원양어업기반구축	연안국과의 협력(ODA)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연안국과의 협력 (ODA)	14,392	12,532	12,532	14,858		2,326	18.6%

4. 사업목적·내용(내역사업별)

- (베트남 연안 수산자원 조성·관리모델 구축) 베트남 중부 연안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 및 서식지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조성·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개발된 사업모델에 따라 수산자원조성 시범단지 조성, 사후관리 및 역량강화
- (베트남 운용해양학 연구능력 확충) 베트남 정부의 지속가능한 해양관측과 해양예보 서비스 능력 확충을 위해, 해양환경 변화 예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클러스터 컴퓨터 및 관측장비)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 (인도네시아 치르본의 해양 및 연안 기초조사와 역량강화) 인도네시아의 연안재해 피해저감과 지속가능한 연안·해양 이용을 위한 해양조사·관측장비, 해양환경·쓰레기 분석장비 지원, 전문가 현지조사 및 전문가 역량강화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개발 지원) 개발도상국의 양식산업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베트남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기반 구축 및 기술교육, 컨설팅 제공
- (군소도서국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모델 개발 및 도입) 군소도서국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효율적 관리,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연안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키리바시·카보베르데를 대상으로 한국의 수산자원조성기술과 FAO의 가공-유통-판매 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청색성장 모델 개발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연안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모잠비크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사례인 '자율관리어업' 전파, 생태문화 관광기반 조성
-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사업) 수산자원 남획, 맹그로브 등 환경 훼손으로 침체된 베트남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패류자원 관리방안 마련
- (조지아 해양조사 인프라 구축) 동해명칭 확산을 위한 우호국 확보, 흑해 연안 주요 국인 조지아의 해양조사능력 확충을 위하여 조지아 남부 주요항만 및 항로의 수심측량, 해도제작 및 기술연수 수행
-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해양수산 국제협력 동향을 공유하고 ODA 중심의 협력방안 논의(협력사업 수요 등)를 위한 주요 개도국과의 논의의 장 운영
-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초청연수) 개도국의 해양정책 및 현안해결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해양분야 공무원, 연구원 등 대상으로 초청연수 실시
-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 캄보디아 내륙수로(메콩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 항로표지 장비

·용품, 기자재 지원, 관계 공무원 초청연수, 정책자문 등 실시

- (신남방국가 실습생 대상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양질의 해기사 인력 양성-활용을 위해(한국: 선원수급 활용, 신남방국: 선원공급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경제발전 기반 마련 등), 자체 실습선박 미보유, 미비한 신남방국가 해기사 후보생 대상 면허취득에 필요한 승선실습 교육훈련 실시
-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역량강화) 서 아프리카 주요 조업국인 세네갈의 국가 차원의 수산업 발전과 수산정책 수립·집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산정책·가공·양식 분야 단기 초청연수 및 석사 학위과정 교육 실시
- (세계자연보전연맹 분담금) 국제 환경분야 이슈-목표 설정에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 등재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제화 대응, 국제 이슈 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사회 공동노력에의 적극적인 참여, 대응을 위해 동 기구 가입 및 분담금 납부
- (해양생태계 보전 국제협력강화) 아시아 개발도상국(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의 해양생태계 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한국의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 및 관리 시스템 공유 등 대상국 관계자 역량강화 실시
- (인도네시아 국가해양관리를 위한 한국 정지궤도 위성 활용시스템 구축) 인니 상공에서 활동 중인 해양위성 천리안 2B호의 인도네시아 공동활용 기반 구축(위성 자료 검보정 장비도입, 사용기술 지원, 공동 해양관측 수행 등)
- (페루 기후변화 대응 수산양식교육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생산량 변화가 심한 페루 지역에서 수산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산양식교육훈련센터 건립, 수산양식기술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캄보디아 연안 수산자원조성관리모델 구축) 캄보디아의 과잉어획·양식업 과다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관리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현지 실태분석, 현지 관리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워크숍)
- (기후변화대응 해양산성화 관측고도화 및 지속성 확보 지원) 태평양 소도서국 산호초 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양산성화 추적시스템 운영 고도화 기술 전수, 현지 정부간 지역 국제기구인 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회원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 (연안도서국 수산기술 및 정책연수) 주요 연안개도국의 수산업 발전과 수산 분야 공무원의 정책수립·집행능력 제고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 및 정책 연수
- (키르기즈스탄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키르기즈스탄의 자연조건

(호수 및 만년설 등)을 활용한 내수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시범 운영 실시

- (열대관상생물자원 증대기술 전수 및 가치사슬 구축 지원) 마이크로네시아의 열대관상생물자원을 활용한 관련 산업 개발을 위해, 자원증대 인프라 구축, 상품화 및 유통체계 운영기술 전수, 인프라 운영기술 전수, 유통체계 운영 지원
- (마이크로네시아 축 주 어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마이크로네시아의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 수산인프라인 소규모 어시장 건립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원양산업발전법 >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내국인·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2006년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시작
  · UN 해양법 발효('94)이후 세계 주요 연안국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고 외국어선

조업활동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해어족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설립된 지역별 국제수산기구는 관할 수역에서의 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

· 해외어장에서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통한 수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연안국과의 우호적 협력 확대 필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연안 개발도상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	보조	항로표지 기술원	1,142	10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제3항
신남방국가 실습생 승선실습 프로그램	보조	한국 해양수산 연수원	1,130	10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제3항
연안도서국 수산기술 및 정책연수	보조	부경대 해외어업 협력센터	200	10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제3항
세네갈 수산해양 경제부 역량강화 사업	보조	부경대 해외어업 협력센터	350	10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제3항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키르기즈스탄 국립양식 개발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보조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	1,500	10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년도 사업시행지침 마련 → 의견조회 및 시행지침 확정 → 해당 사업계획 수립 → 위탁 등 사업비 교부를 통한 연안 개도국 지원사업 시행

사 업 명
(49) 원양어선감독관리체계구축(354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42	303
명칭	원양협력	원양어업기반구축(농특)	원양어선감독관리체계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원양어선감독관리체계구축	996	1,011	1,011	1,014		3	0.3

4. 사업목적·내용

- (조업감시체계구축·운영) 동 내역사업은 원양어선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예방을 위해 실시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조업감시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성, 유지관리 및 위성수신료와 국제사회 대응을 위한 영문 에디터 등 조업감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임
- (IUU어업 대응 및 고위험군 승선 검색) 동 내역사업을 국제사회의 IUU어업 방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IMCS(국제 감시·감독·통제) 네트워크, RFMO(지역수산관리기구) 등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수역에서만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 현지 승선검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항만국검색),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 원양어선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예방을 위해 허가받은 모든 원양어선은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외수역의 적재한 선박(컨테이너, 어획물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IUU어업 의심 선박에 대하여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고, 조업상황 등에 관한 보고(전자적인 방법 포함)를 조업시마다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

- 또한,「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조업감시센터)에 따라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위치 및 조업현황 등 수집정보의 관리 및 관련기관 등에의 제공

② 추진경위

- 미국, EU의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기준 및 감시·감독·통제 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

· 이에, 원양어선 조업감시센터 설립('14.3.), 조업감시시스템('14.5.) 및 전자조업보고시스템('15.10.) 구축 및 운영

* 미국, EU측은 '14.3월까지 모든 원양어선에 대한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조업감시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조업통제 시스템 마련을 요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전자조업감시시스템 유지관리, 기능개선 및 조업감시센터(FMC)운영, IUU고위험군 수역 국가검색 시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조업감시체계 구축·운영

- 원양어선 위치 및 조업활동 위성정보 수신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VMS, AIS 위성업체 수신계약	조업감시센터 계약부서	○ 원양어선 어선위치추적장치 및 선박식별장치 정보 수신 계약(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
⇩		
② 정보수신	조업감시센터	○ 전자조업감시시스템 연계 수신
⇩		
③ 예산집행	조업감시센터	○ 예산집행, 사업 결과 보고
⇩		
④ 정산·확정	해양수산부	○ 예산 결산 및 평가

- 원양어선 전자조업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작성	조업감시센터	○ 원양어선 전자조업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사업 계획 수립 및 내부검토(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2)
⇩		
② 용역계약	계약부서	○ 유지관리 및 용역 조달 계약
⇩		
③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	조업감시센터	○ 예산집행, 사업 결과 보고
⇩		
④ 정산·확정	해양수산부	○ 예산 결산 및 평가

- 원양어선 전자조업감시(보고)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작성	조업감시센터	○ 원양어선 전자조업감시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사업 계획 수립 및 내부검토(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2)
⇩		
② 용역계약	계약부서	○ 유지관리 및 용역 조달 계약
⇩		
③ 사업진행 및 예산집행	조업감시센터	○ 예산집행, 사업 결과 보고
⇩		
④ 정산·확정	해양수산부	○ 예산 결산 및 평가

② IUU어업 대응 및 고위험군 승선 검색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IUU어업 근절 계획 수립	원양산업과	○ 원양어선 IUU 어업 예방 대책 및 고위험군 선박관리 계획 작성(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2)
⇩		
② 현장검색 계획 작성	조업감시센터	○ 국내·외 원양어선 현장 승선검색 계획 수립
⇩		
③ 현장조사 실시	조업감시센터	○ 국내·외 여비 집행
⇩		
④ 정산·확정	해양수산부	○ 예산 결산 및 평가

사 업 명
(50)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314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자원정책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5	300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근해어선 100% 연안어선 80% 실태조사 5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연근해어선감척 (지자체)	73,943	125,413	125,413	120,446		△4,967	△4.0

4. 사업목적·내용

- (연근해어선 감척) 연근해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연근해어업실태조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및 제14조
-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추진

② 추진경위
- 1994 : 사업 착수
- 1999～2002 : 한·일 어업협정 발효로 국제감척사업 추진
- 2003 : 연근해어선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
- 2008 : 근해어선 감척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0 : 연안어선 감척사업 투자효과분석
- 201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감척사업 기준단가 재산정
- 201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시행
- 2014. 3 :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감척사업 기준단가 재산정
- 2014. 7 : 제1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4～'18) 수립
- 2017. 7 :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과제로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
- 2019. 4 :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19～'23) 수립

※ 국정과제 84-1(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실천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을 위해 감척 활성화 등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4～계속
- 사업규모 : 연근해어선 감척 및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자체, 민간
- 사업 수혜자 : 연근해 어선어업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근해어선 감척	보조	지자체보조	119,546	8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직접	-	400	100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직접	한국수산자원공단	200	10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보조	지자체보조	300	50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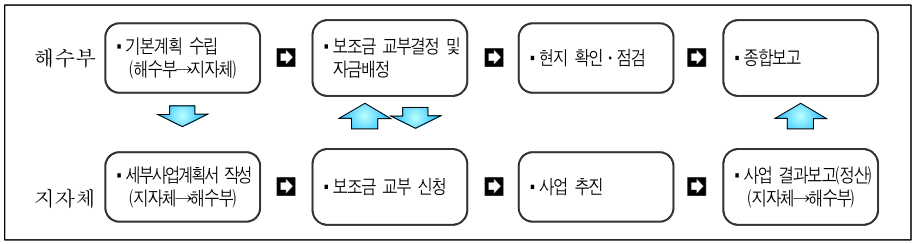

사 업 명
(51)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314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3100	3145
명칭	명칭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연근해어업구조조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833	833	833	1,667		834	100

4. 사업목적·내용

- (노후어선 대체건조) 탄소배출 저감,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경비 절감 등을 위해 연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현대화 어선 대체건조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② 추진경위

- 2011. 10~12월 :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 심화에 따라 차세대 어업의 추진동력 창출 및 어선원 복지 지원을 위해 "어선중심 어업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 TF(단장 어업자원정책관) :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3개반으로 편성하여 격주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
- 2014. 1~11월 :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추진계획 수립 및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계속
- 사업규모 : 연근해어선 약 70여척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국고 100%(이차보전)
- 사업 수혜자 : 연근해어선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노후기관 장비설비 대체	보조	지자체 보조	4,643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 ○「수산업법」제86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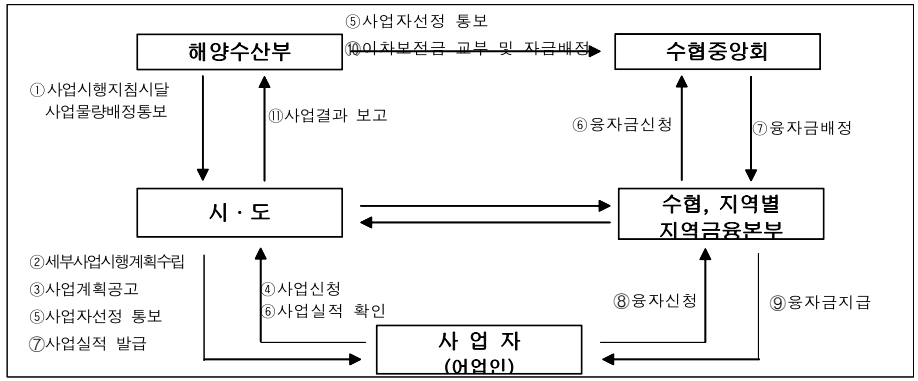

사 업 명
(52) 어선거래제도 운영 (314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자원정책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5	302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어선거래제도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어선거래제도 운영	405	447	447	509		62	13.9

4. 사업목적·내용

-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동 내역사업은 어선거래 투명성 확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어업인 및 어선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어선중개업교육 운영) 동 내역사업은 어선거래 투명성 확보와 어선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선중개업 진입 희망자 및 기존 어선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등록 법정 요건인 어선중개업 신규·보수 교육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어선법」 제31조~제31조의9

② 추진경위

○ 어선거래(연간 약 1,000건)의 경우,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 구조(거래정보가 시장에 비노출)로 불법·불공정거래* 빈발

* 사기(매매대금 편취, 어업허가증 위조), 불성실 중개(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 및 피해 발생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중개업자와 국민(어업인 등)이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는 어선거래시스템 운영

* 정보제공 : 어선매물 현황, 중개업자 정보, 어선사고·검사 이력, 보험 정보 등

○ 어선거래시스템 및 어선중개업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

-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근거, 어선중개업자 등록의무(교육, 보험 등) 등

* 어선법 개정완료('16.6.27, 시행 '17.6.28)

○ 어선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육상지도단속반 구성

* '19년 소요인력 확보(본부 6급 1명, 어업관리단 11명 : 6급3, 7급4, 8급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위탁수행,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어업인)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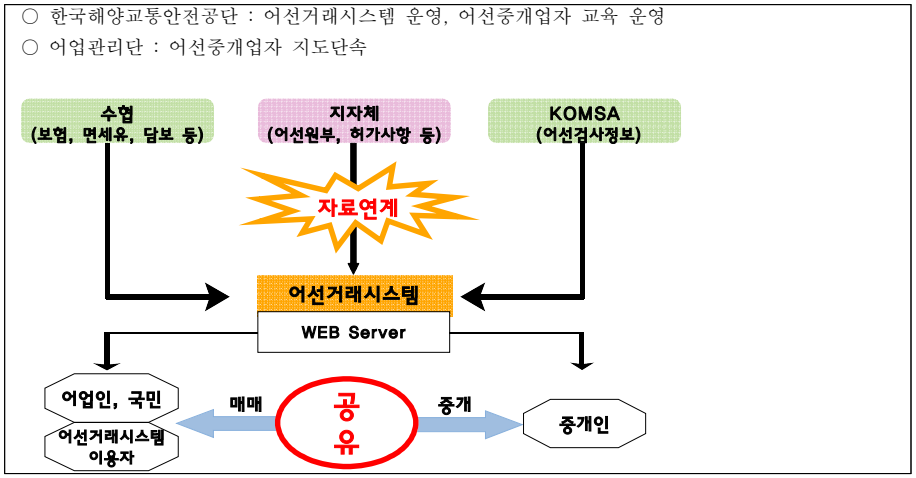

사 업 명
(53) 어선청년임대 (3145-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자원정책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5	303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어선청년임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어선청년임대	-	-	-	450		450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어선임대비지원) 동 내역사업은 어선어업 희망 청년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어선 임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사업관리비) 동 내역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후순위 후보자로 선정된 청년의 어선어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및 실습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조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어촌소멸) 대부분 어촌은 지역소멸 고위험성*의 위기에 있으나, 귀어인은 연간 1천명 내외에 불과하여 특단의 대책 필요

* 2045년 어촌지역의 81%(342개 지역) 소멸위험 (출처 : 인구소멸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 KMI, 2018)

○ (어업진입 한계) 어선은 수산자원, 노동력과 함께 어업의 3요소이나 비용 측면에서 어업 진입의 큰 장애 요소임

- 귀어 희망인은 어선 어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나(62.7%), 귀어 결정의 장애요인 1위는 비용문제(40.0%)임

* 출처 : 귀어·귀촌 활성활르 위한 漁울림 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2018.

○ (잉여어선) 노령화·건강악화 등 한계 어업인의 유휴자산 정리를 통한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하고, 잉여어선에 대한 새로운 경제 활력 제고 필요

- 연안어업 종사자의 노령화로 어업 정리(감척·어선거래 등) 희망이 증가함*에 따라, 유휴(遊休) 자산(어선·어구) 처리 문제 발생

* 연안어업인 ① 자원량 감소 ② 고연령 등 건강상의 문제로 조사 대상자(3,832명) 중 10.4% 감척 희망 (2018년 연안어업 실태조사, FIRA, 2019)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 수혜자 : 어선어업 희망 청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선임대비 지원	보조	한국수산자원공단	3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사업관리비	보조	한국수산자원공단	150	100%	

7. 사업 집행절차

○ 한국수산자원공단 : 청년 어업 희망자 및 어선 임대 희망자 모집, 어선임대차 계약 중개, 사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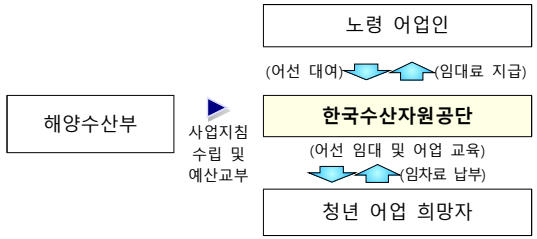

사 업 명
(54)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334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개선 특별회계		어촌양식정책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5	300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1,352	1,312	1,312	551		△761	△58.00

4. 사업목적

- 전국 어항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어항 운영관리와 안전재해예방, 환경관리, 건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의 개발·공유·활용으로 개발·관리·이용 주체의 행정 효율과 편익을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어항통합정보시스템"),「어촌·어항법」 제47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② 추진경위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08.12)에 따라 구.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기본계획('12.1)에 「어촌어항종합관리체계구축」 과제 반영
- 2013년도「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 전략기본계획(ISP)」 수립 추진('14.7말 완료)
- 2014년도「국가정보화시행계획(해양수산부)」에 따른 정보화 사업으로 반영
-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3~'17)

< 재난재해 예방 관련 주요 데이터 통합·연계 계획 >

구 분	주요 내용
어항 안전	• 국가·지방, 마을공동어항 등 전국 어항정보의 통합·연계로 종합적인 어항안전·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로 어항내 위험요소 관리체계 확립('14~'1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120여 개 연안 광역시·도, 시·군·구에 위치한 법정어항의 어항시설·부지 이용관리 및 민원업무 등 운영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건설관리 업무 지원 및 관련정보 개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수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어항지정권자 및 어항관리청), 일반국민(어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어촌어항관리 시스템구축 (정보화)	보조	한국어촌어항 공단	551백만원	100	어촌어항법 제58조제2항

7. 사업 집행절차

계획수립 (사업부서) ⇒ 예산확보 (사전평가) ⇒ 사업추진 계획수립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 사업 추진 ⇒ 성과관리 (평가)

사 업 명
(55) 국가어항관리 (334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촌양식정책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5	302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국가어항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국가어항관리	25,862	26,307	26,307	27,191		884	3.4

4. 사업목적·내용

- 국가어항의 안전점검·기초조사·유지보수 및 항내 환경개선을 통해 어항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
- 도서지역 국가어항(3개항) 시설에 ICT, IoT 등 4차산업 기반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어촌·어항법」제3조(기초조사 등), 제11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어촌·어항법」시행령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한다.

4.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5.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6.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7.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5년도 어항청소선 위탁관리 등 법정기능 수행
  * 어항관리선 10척 위탁관리('95년 15톤급 3척, '96년 15톤급 4척, '03년 99톤급 1척, '11년 134톤급 1척, '13년 133톤급 1척)에 따른 경비 지원
- '06년 국가어항 기본시설 안전점검 업무 위탁
- '11년 국가어항시설물 유지·보수 시행
  * 109개 국가어항(800여개 기본시설물, 2,300여개 안전시설)
- '13년 동해안 원거리 전용 다목적 어항청소선 1척(133톤급) 건조
- '15년 50톤급 남해전용 어항관리선 1척 건조(15톤급 대체)
- '16년 국가어항 기초조사 업무 위탁
- '16년 50톤급 제주전용 어항관리선 1척 건조(신규)
- '16년(추경) 노후 어항관리선 대체 등 7척 건조 설계
- '17년 50톤급 어항관리선 7척 건조(신규 1척 - 충남전용, 대체 6척)
- '18년 어항관리선 50톤급이상 12척 운영(9척/50톤급, 3척/100톤 이상급)
- '19년 110개 국가어항의 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 어항관리선 12척 운영
- '20년 76개 지방어항의 안전점검 실시
- '21년 스마트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규모 : 113개 국가어항(951개 기본시설물, 2,957개 안전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 어항관리선 12척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위탁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수산물 위판상인, 소비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 안전점검・유지보수・기초조사, 어항관리선 운영(민간위탁)

① 한국어촌어항공단 —(예산계획 제출)→ ② 해양수산부 —(예산계획검토, 예산 요구)→

③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및 국회제출, 예산 배정)→ ④ 해양수산부 —(사업추진계획 검토, 보조금 교부)→

⑤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 추진, 사업실적 보고)→ ⑥ 해양수산부 —(사업실적 확인・점검, 보조금 확정・정산)

* (근거)「어촌어항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4조,「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사 업 명
(56) 국가어항(3345-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5	303
명칭	어촌·어항 개발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국가어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국가어항	222,790	260,939	260,939	262,586		1,647	0.6

4. 사업목적·내용

-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
-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 낙후된 어촌지역 개발 및 소득증대와 연계한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촌어항법 제16조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 시·도지사
3.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4.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최초사업 시작년도 : 1967년

* '95년 이전까지는 일반회계로, 95년부터 22개항 농특회계로 사업 추진

** 2001년말까지 국가어항예산은 총액계상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매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수의 어항을 개발, 2002년부터 항별 예산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편성

- 2010년부터 특화어항개발사업으로 다기능어항개발 추진
- 2012년부터 거점어항을 재정비(재개발)하여 수산물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어항공간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이용고도화사업 추진
- 2014년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 2019년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1967~계속
- 사업규모 : 국가어항 108개항(전체 113개항 중 균특제주계정 5개항 제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소속기관(부산청 등 11개 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촌지역 주민, 불특정 다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1. 어항의 지정
○ 어촌어항법제17조, 시행규칙제10조
- 지정수요발생
- 대상항선정(어선수, 톤수 등 검토)
- 타당성조사(용역의뢰)
-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
- 고시

요청(500억원이상) ⇗⇙ ※ 불승인 할 경우 규모 축소 등 사업 재검토 승인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0 국가재정법 제38조, 시행령 13조
0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

2.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어항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사전협의 →

환경부
0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3. 기본설계
○ 입지여건, 경제성 등을 감안한 평면배치계획
○ 자연조건에 부합되는 단면계획 등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사항 결정

주민의견수렴
0 어촌어항법제21조

⇩

4. 어항개발 기본계획안 수립

↔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0 어촌어항법제21조

⇩

5.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시행령제3조
- 외곽시설 : 300m이상, 3만㎡이상매립
- 계류시설 : 3만㎡이상 매립

협의 ↔ ※ 필요시 수정.보완

환경부 협의
0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6. 개발계획 확정.고시
○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

7. 실시설계
○ 기본계획·설계에 의한 최적의 평면 배치계획 및 시설단면을 선정
○ 시공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서 작성

⇨

8. 개발착수
○ 사업시행자 (지방해양수산청)

사 업 명
(57) 가거도항 복구(3345-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5	306
명칭	어촌·어항 개발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가거도항 복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가거도항 복구	10,563	20,556	20,556	18,494		△2,062	△10.0

4. 사업목적·내용

- 2011. 8월 제9호 태풍 “무이파”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어선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 재산과 생명보호 및 어항기능 유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촌어항법 제16조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 시・도지사
3.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4.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11.8.7～8.8 : 제9호 태풍 “무이파” 내습으로 가거도항 방파제 피해 발생
- ‘11.8.16～8.2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
- ‘11.9.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 통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994(2011.9.2))
- ‘11.12.5～’12.7.10 : 태풍피해 응급복구 공사
- ‘11.12.9～’12.8.12 :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 ‘12. 9.14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 ‘13. 3. 6 : 공사착수
- ‘19. 9. :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발생
- ‘19. 10 ~ ’20. 2. : 태풍 피해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21. 5 : 태풍 피해복구 실시설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46,5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2021년
- 사업규모 : 가거도항 방파제 복구 480m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속기관(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촌지역 주민, 불특정 다수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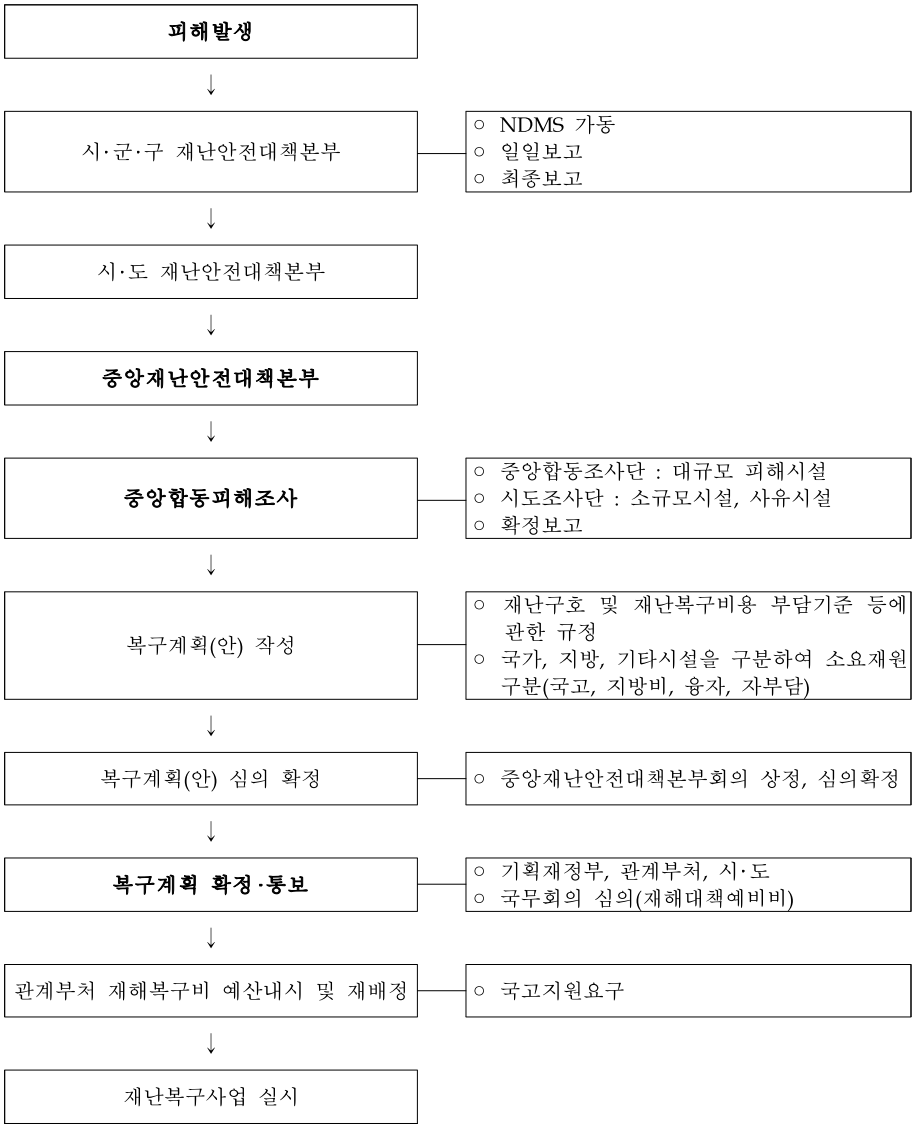

사 업 명
(58) 어촌뉴딜300 (3345-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 사업기획단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5	310
명칭	어촌어항 활성화	어항기반시설조성(농특)	어촌뉴딜300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어촌뉴딜300	434,200	521,949	521,949	523,571		1,622	0.3

4. 사업목적·내용

- (어촌뉴딜을 통한 혁신어촌 조성) 지자체 대상으로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를 개선 및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 및 관광활성화 등 도모
-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사업종료 이후에도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전문가자문단 등 지원체계 구성·운영 등
- (어촌활력증진지원) 어촌지역 소멸 가속화와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연안·어촌공간 재생사업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부처 중점사업) 「'18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의 주요과제로 '어촌뉴딜300사업 '발표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계획'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확정('18.6.28.)

-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확정('18.12.19.)
-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10대과제 포함(기재부)('18.8.27.)
-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국무조정실, 어촌뉴딜포함)('19.4.15.)
- '19년도 사업대상지 선정('18.12.18.)및 본격 사업 착수('19.1~)
  * '19년 70개소, '20년 120개소, '21년 60개소 선정
-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어촌어항법 개정 시행('20.2.28)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사업규모 : 어촌·어항 약 300여개소, 연안어촌재생 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국비70%)
- 사업시행주체 : ㄴ지방자체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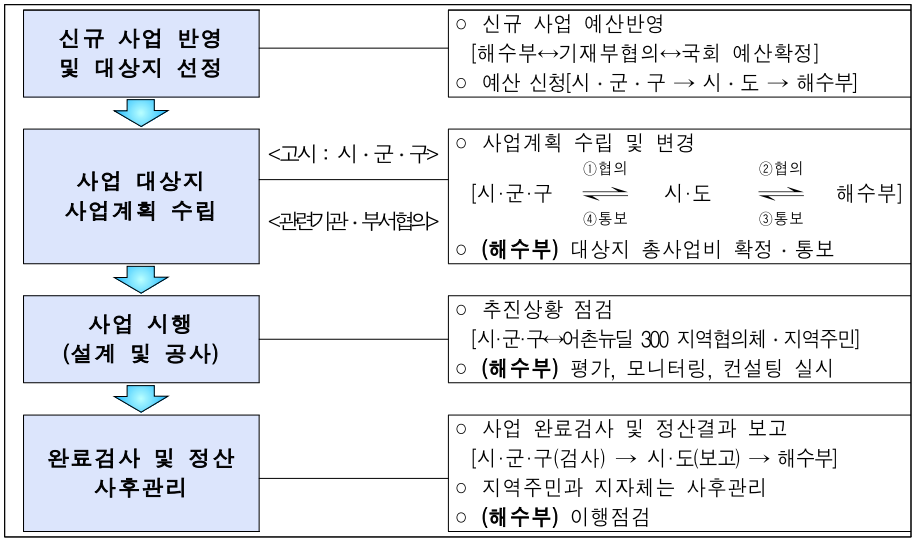

사 업 명
(59) 청년어촌정착지원 (3347-36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47	363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귀어귀촌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9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청년어촌정착지원	1,474	1,560	1,560	1,712		152	9.7

4. 사업목적·내용

- 어업에 관심 있는 우수 청년인력에게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노동력 고령화 문제 해소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 (공약내용) Ⅱ-1-6-2-3.농어업재해대책법 강화와 공익형직불제 확대(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40세 미만 청년층에게 어촌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어업 및 양식업 등 창업인' 육성 필요한 소요예산 반영 필요

* 국정과제 :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③ 어업 경영여건 개선과 어촌 활력 제고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사업규모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220명, 사업운영 및 평가 1식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90%), 자치단체 보조(7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민간단체(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수혜자 : 청년 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676 백만원	70	· 「보조금 관리에 관합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1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	보조	한국어촌어항공단	36 백만원	90	

7. 사업 집행절차

1) 지자체 보조

해양수산부		지자체		청년 어업인
① 사업시행지침 마련 ⑤ 대상 지자체 공모(선정) ⑨ 성과점검 등	↔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 ④ 사업 공모신청 ⑥ 사업집행 ⑧ 점검	↔	③ 사업신청 ⑦ 민간보조사업 추진 ⑩ 결과보고

2) 민간 보조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① 사업시행지침 마련 ④ 보조금 교부 ⑥ 성과점검 등	↔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 ③ 보조금 교부신청 ⑤ 사업집행 ⑦ 결과보고

사 업 명
(60) 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R&D) (343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농어촌 특별세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05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연구개발	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R&D)	5,404	10,619	10,619	8,800		△1,819	△17.1

4. 사업목적·내용

- (수산물 검역기술 고도화) 수산물 법정전염병(상위 10종)을 현장인 검역시행장에서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현장진단 키트 개발 등 정밀진단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 도모
- (원산지 추적 및 판별기술 고도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율이 높고 현장 민원이 많은 품종(20종)에 대한 현장판별 키트를 개발하고, 주변 국가에서 수입되어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동일품종(10종)의 원산지 판별 분석기술 개발('20년, 21년 각 15종 착수)
- (스마트 수산물 품질관리) 관상어 품종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전자도감 기반 스마트 검역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검역시행장 모델 개발
- (수산물 질병관리 고도화) 수산물 주요 전염병의 기존 억제·치료제를 대체하는 차세대 발생 억제·치료제 개발·상용화 및 수산질병 발생에 따른 넙치 양식산업 안정화를 위한 넙치 SPF무병 종자 생산 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과제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84-4. 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체계 개선,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원산지 표시 강화 등

- 해양수산연구기획사업「차세대 수산물품질관리 및 검역시스템 구축('18.5)」및「수산 중장기 R&D 로드맵('18~'26)」('17.12)을 통한 사전기획 및 정책적 추진근거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28억원(국비 371억원)
- 사업기간 : 2019~2024
- 사업규모 : 4개 내역사업, 6개 세부과제 ('22년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 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내 양식어민 및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물 검역기술 고도화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원산지 추적 및 판별기술 고도화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0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스마트 수산물 품질관리 기반구축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2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수산물 질병관리 고도화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6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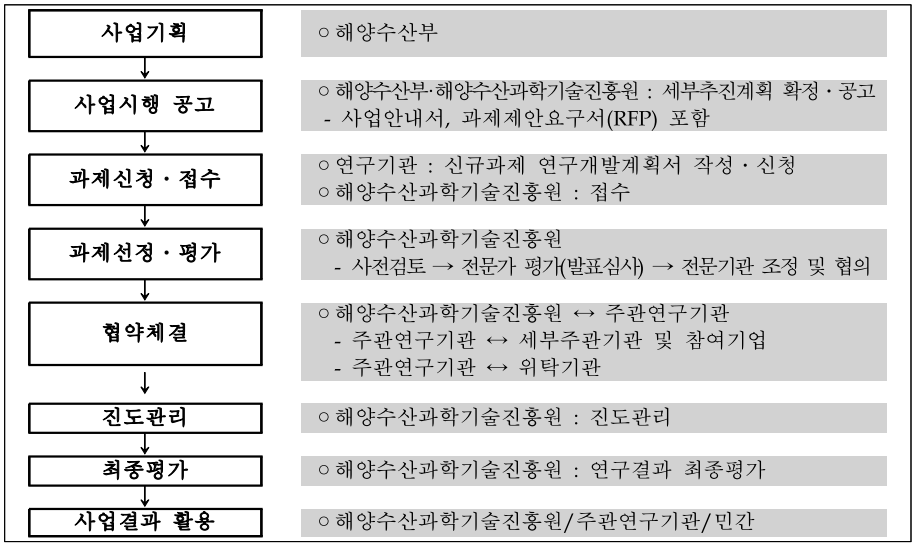

사 업 명
(61)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3343-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농어촌특별세사업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10
명칭	수산경영	수산연구개발	수산실용화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실용화기술개발(R&D)	9,840	9,739	9,739	10,646		907	9.3

4. 사업목적·내용

: 수산업의 혁신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집단 육성 등을 지원

- (신수산비즈니스동력 창출) : 수산업의 규모화와 산업화 실현을 위해 융·복합기술 과 첨단 기술을 접목 등 수산업의 동력 창출 기술 개발을 지원
- (수산기자재 고도화) : 해양환경 오염원 중 하나인 폐어구, 유실어구 등의 저감을 위해 어구 자동식별과 유실어구 위치추적 등에 관한 기술 개발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기관별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시행)
-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② 추진경위

- '94.12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법 제4818호,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의 실시)
- '00. 1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 '00. 3 : 위탁관리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정
- '06. 5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설립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특정연구개발" 관리업무 이관
- '10. 3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설립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 이관
- '13. 12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이관
- '15. 1 : "수산연구센터지원(R&D)"과 "수산실용화기술개발(R&D)" 사업통합
- '20. 1 : '수산연구센터지원' 내역사업 "수산전문인력양성사업(R&D)"으로 이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4~'18년 일몰(일부 내역 '19년 일몰)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 1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수산 비즈니스 동력창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970 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수산기자재 고도화			4,676 백만원	100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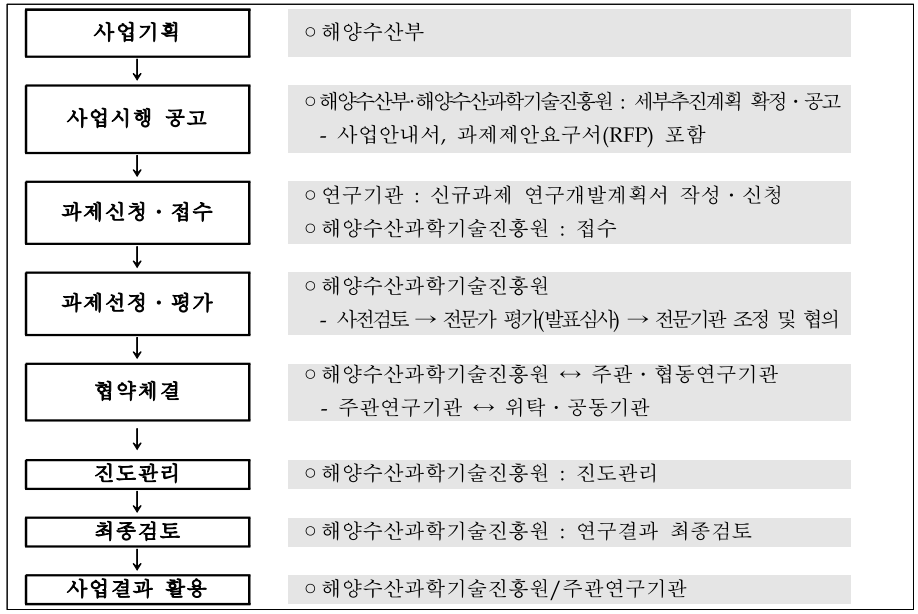

사 업 명
(62)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3433-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특별세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14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연구개발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어업현장의 현안해결 지원사업	7,101	12,604	12,604	10,049		△2,555	△20.3

4. 사업목적·내용

: 연근해어업, 양식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내수면 혼획방지 및 자동화 기술개발 등 어업현장의 현안문제 해결 기술 개발 지원

-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연근해 어업현장의 어업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고령화, 안전, 생산성 향상 등)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양식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양식 어업현장의 어업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고령화, 안전, 생산성 향상 등)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및 자동화 기술개발) 내수면 어업현장의 어업인이 요구하는 현안사항(고령화, 안전, 생산성 향상 등)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기관별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시행)
-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어업인·어촌 지역 복지 등 확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일몰 확정('16.12)
- 'Post-수산실용화기술개발연구 기획연구'를 통한 재기획('16.11~'17.11)
- 고령 어업인 소외・우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소를 파악・모니터링하여 예방모델 개발을 통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18년도 다부처공동사업(해수부, 농식품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농진청)으로 선정('18.1.19)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 '24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 22개 세부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근해어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362 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양식업 안전 및 자동화 기술개발			5,046 백만원	100	
내수면어업 혼획방지 및 자동화 기술 개발			641 백만원	100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3)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및 불법어업·수산생태계 관리기술개발(3433-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어업자원정책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16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연구개발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및 수산생태계관리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및 불법어업·수산생태계관리 기술개발	3,627	3,702	3,702	3,301		△401	△10.8

4. 사업목적·내용

-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및 불법어업·수산생태계 관리기술개발) 다양한 해상상황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 재해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상특화 기체 및 운용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수산재난 신속대응, 불법어업 및 해양수산 생태계 관리, 해상 재난감지 및 예측 등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② 추진경위

-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5.5.) : 무인기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논의
- 「어군 탐지용 드론개발」 기획연구 수행('16.12~'17.6) : 광역해역의 효율적인 어장탐색과 감소하는 어업종사자들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IoT(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무인자율이동체(무인기), AI(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무인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무인기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 신규 다부처사업 기획('18.) :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고기능 무인기 분야에 해양경찰청과 다부처 협업사업 기획
-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및 불법어업·수산생태계관리 기술개발」 사업 착수('19.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22
- 사업규모 :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 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수산정책 담당자 및 수산과학 관련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4)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R&D) (3433-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18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연구개발	AI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R&D)	-	3,120	3,120	4,100		980	31.4

4. 사업목적·내용

- (① AI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TAC 기반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인공지능이 영상 등을 통해 어획량, 불법어업 등을 분석하는 AI 옵서버 등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 (② AI기반 어선안전 통합플랫폼 개발) 어선의 선체, 엔진 및 어업설비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주요모듈을 개발하고, AI기술로 모듈을 조합하여 어업인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안전한 고효율 어선을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구축하여 어업인 및 설계사 등에게 서비스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수산업법」 제96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

○「수산자원관리법」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수산자원관리법」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태・서식지・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

② 추진경위

<① AI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심화로 연근해어업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 확대

- 그간 어업분야는 복잡·다양한 어획노력량 규제*로 어업을 통제해왔으나 과잉어획 및 불법어업 등으로 국내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지속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도 100만톤 이하로 감소**

* 어구 사용량, 어선 톤수, 엔진 마력 등 조업에 투입되는 노력량을 제한하는 방식

** 연근해어업 생산량 : ('10) 113만톤 → ('12) 109 → ('15) 106 → ('18) 101 → ('19) 91 → ('20) 93

○ 기존의 어획노력량 규제(Input-Control)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TAC* 중심(Output-Control)으로 어업정책 전환 추진(수산혁신 2030 계획, '19.2)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자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선별·어종별 연간 어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어획 쿼터 배분)

- TAC 제도의 핵심인 신속·정확한 어획통계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전자적 방식의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EMS) 구축에 대한 연구 추진 중

* EU,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유사 연구개발 중이나 시제품 제작 수준에 불과

○ 국내에서도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조업 감시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한 AI 옵서버 및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 구축을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19.11) 과제로 선정하고 R&D 기획연구 추진

○「수산혁신 2030 계획」('19.2, 경제활력대책회의)에 따라 TAC 중심 어업체계 개편,

전자적 방식의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필요

○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19.11, 해양수산부 자체발표) 스마트 어업관리모델 도입, TAC 모니터링 인공지능 옵서버 개발·적용 등

<② AI기반 어선안전 통합플랫폼 개발>

○ 소규모의 영세한 어선건조 여건에 따라 고비용 저효율 어선이 건조됨에 따라 AI 설계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고효율 어선이 건조 될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

○ 그 간의 지엽적 연구나 확정된 형태의 개발은 해역별, 톤급별, 업종별 어업인의 다양한 니즈(Needs)의 수용이 곤란함에 따라

- 모든 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업인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설계가 가능한 확장성이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 어선건조업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동남아국가의 풍부한 해외시장*이 있는 만큼 국내산업 육성 후 해외기술 수출** 시 기술이전 등을 거쳐 최종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20~'21년 기획연구 후 '22년 R&D 사업 추진)

* ①인도네시아 : 수산업 주요산업(군도 17천개↑, 어선 76만척) '12~'25년 조선산업 개발 로드맵 발표/
②필리핀 : 벌목규제로 목선에서 FRP 어선으로 선질 개량 추진 중

** (1차) 목선 → FRP 등 어선선질 개량에 따른 설계도면 및 기술 지도
(2차) 표준어선 국내 건조 후 직접판매 또는 현지 조선소 건립으로 간접 판매
(3차) 설계 모듈 및 플랫폼 등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연구용역 추진내용) 판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3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 2026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7개 과제
  1내역 (어선용 300척·육상 120개소 AI 옵서버, 옵서버 시스템구축)
  2내역 (안전모듈개발, AI어선설계시스템 개발, 웹기반 플랫폼 구축, 시제선 건조 및 검증)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1내역)
- 사업 수혜자 : 연·근해어업(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①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1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등
② AI 기반 어선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AI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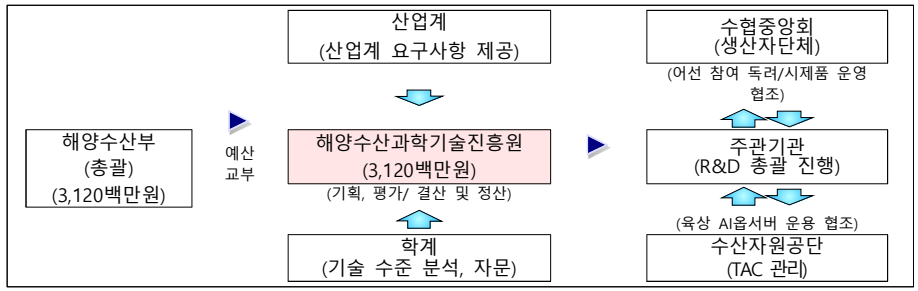

<② AI 기반 어선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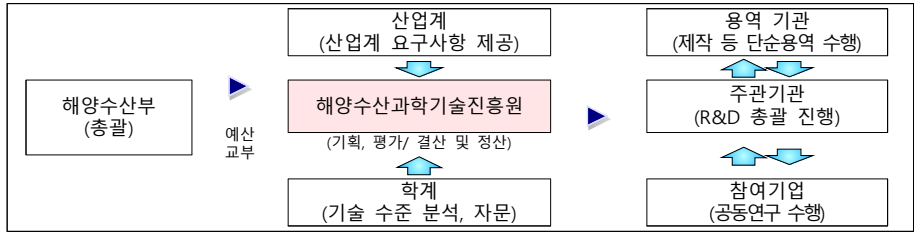

사 업 명
(65)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R&D) (3433-3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19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연구개발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물 신선유통 스마트 기술개발(R&D)	-	7,550	7,550	8,268		718	9.5

4. 사업목적·내용

- (신선유통표준화기술개발) 수산물 유통품질 표준지표 개발, 수산물 위판장 3.0표준모델 개발
- (수산물 유통현안해결 기술개발) 수산물 신선유통 포장기술 개발, 활수산물 안전수송 활어차 기술개발, 다획성 어종 및 양식어류 대량가공 시스템 개발
- (수산식품 스마트가공 기술개발) 수산식품 생산 핵심 공정 자동화 시스템, 수산가공식품의 지능정보 품질 데이터 기반 스마트 검사시스템 기술, 자율 인지형 스마트 공장제어 시스템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 6 :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 수립
- '18.12 :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수립
- '19. 2 : 수산혁신 2030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62.54억원
- 사업기간 : 2021년~2025년
- 사업규모 : 신선유통 표준화 기술 개발 등 4개 사업, 8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100% 국고지원, 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선유통 표준화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1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수산물 유통 현안해결 기술개발			2,500	100%	
수산식품 스마트가공 기술개발			2,600	100%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66)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개발 (3433-32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5	27	수산정책관	5	100	103
명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24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연구개발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수산식품산업 맞춤형 기술개발	-	-	-	4,609		4,609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수산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시장 맞춤형 기술 개발과 산업 현장의 애로해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산업 역량강화 도모

- (수산식품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 수산식품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수산물 기능성 규명 및 기능성 식품 개발을 통한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수산식품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수산식품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가공·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 해결을 위한 분야별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② 추진경위

- '19. 2 : 「수산혁신 2030 계획」 (관계부처 합동)
- '19.12 :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관계부처 합동)
- '20. 3 : 「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 지원」 (해수부)
- '20. 6 :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 '20. 9 :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관계부처 합동)
- '21. 3 :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신규사업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 사업규모 : 수산식품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 등 2개 내역사업
- 사업시행방법 : 출연(100% 국고지원, 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식품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909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수산식품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
수산식품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7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67)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R&D) (3433-32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25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연구개발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	-	-	1,920		1,920	순증

4. 사업목적·내용

데이터 기반 차세대 수산종자 육종기술 확립 및 검인증 기반 마련을 통한 현장맞춤형 종자산업 생태계 확립

- (수산종자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양식어류의 참조집단 디지털화 및 디지털 육종을 위한 대상형질 검증기술 개발
- (수산종자 검인증 기술 개발) 수산 동식물 종자 검인증 표준화 및 분석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시행령 제45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등)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 :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 고나련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추진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18～'22)**

- 해양수산업의 현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수립

○ **「수산혁신 2030 계획」** ('19.2, 경제관계장관회의)

- 양식어업의 경우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양식어업의 규모화·기업화 지원,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 친환경·재해 대응 예방양식 강화를 추진

○ **「스마트농수산업 확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전략」**('20.12, 과기정통부)

- 육종 정보가 생산과 소비로, 유통・소비 정보가 생산량 조절 및 맞춤형 품종 개발로 이어지는 '전주기 데이터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농수산업 가치사슬 내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 촉진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8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민간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종자 디지털육종 플랫폼 구축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수산종자검인증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2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68)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R&D) (3433-3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26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연구개발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	-	-	-	5,000		5,000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유수식 스마트양식시스템 개발) ICT 장비 등을 통해 양식장 생물·환경·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기반 구축 및 현장보급형 디지털양식 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양식생산성 향상기술) 양식전주기 데이터기반 양식장 디지털 매뉴얼 및 운영관리 통합플랫폼 개발 및 현장실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시행령 제45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등)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 :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 고나련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등을 추진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18～'22)**

- 해양수산업의 현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 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수립

○ **「수산혁신 2030 계획」** ('19.2, 경제관계장관회의)

- 양식어업의 경우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양식어업의 규모화·기업화 지원,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 친환경·재해 대응 예방양식 강화를 추진

○ **「아쿠아팜 4.0 추진전략」** ('19.9,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수산양식 산업에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융합 추진을 위한 '아쿠아팜 4.0'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의결 ('20.12, 과기정통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6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양식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수식스마트양식 시스템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0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빅데이터 기반 양식생산성 향상 기술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69)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 기술개발사업(3433-32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5	27	수산정책관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27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연구개발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 기술개발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존 기술개발사업	-	-	-	2,404		2,404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해상풍력단지 내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양식장 설계, 품종선정 및 양식모델을 개발하여 이종 산업간 공존모델 개발

- (해상풍력 친화 수산업 융합기술 개발) 권역별 수산자원환경 지도, 해상풍력 친화 수산업 시스템 개발 및 풍력단지 내 공존 설비 현장 적용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② 추진경위

- '20.07월 「해상풍력 발전방안」 수립
- '20.12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
- '21.02월 '22년도 상향식 다부처공동사업 선정(다부처특위)
- (해상풍력단지 조성 확대)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행계획(3020)에 따라 현재 65개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 수용성,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 지연
- (정부 정책) 2020년 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 정부발표로 시급한 현안
- (갈등 해소)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이해관계 충돌, 이종 산업과의 공존으로 시너지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
- (정부 주도의 양식기술 개발 필요) 해상풍력 단지 내의 한정된 공간에서의 생태통합양식 기술개발은 공공 목적 기반이므로 정부 주도 타당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2 ~ '25
- 사업규모 : 1개 내역 사업,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상풍력 친화 수산업 융합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404 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70) 어업경영체 등록(3440-36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40	362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수산경영안정	어업경영체 등록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어업경영체 등록	3,266	4,425	4,425	4,240		△185	△4.1

4. 사업목적·내용

- 어업경영체(어가 및 어업법인)의 어업경영정보(수면이용, 양식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등록정보를 각종 어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해양수산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 제13조

·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

② 추진경위

- '04. 2월 :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에서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근거 제시
- '06~'07년 연두보고에 농업경영체등록제 추진계획 포함
- '07. 7월 : 「등록제 도입방안 및 시범사업 시행지침」 마련
- '07. 8~12월 농업경영체등록제 시범사업 실시(전국 9개 읍・면)
- '08. 5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 추진방안 확정・시행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 '09. 4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09.4.2. 공포, '09.10.2. 시행),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관련 사항 규정
- '13. 3월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제 담당기관 변경(농관원→~~수품원~~)
- '15. 1월 : 해수부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업무 이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어업경영체 약 7만여개 상시관리
- 사업시행주체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해양수산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어업경영체 등록 >

등록신청서 제출 (어업경영체)	○신청대상은 수산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경영체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접수 및 경영체등록관리 시스템에 전산등록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지방해양수산청)	○어업인 증명 서류 검토 및 전산연계 자료 검증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
⇓	
등록통지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경영체별 고유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	
상시조사(현행화) (지방해양수산청)	○전산검증을 통해 주민정보, 허가정보, 정책자금지원정보 등 매칭 ○현지조사를 통해 어업여부, 면적, 생산량, 생산금액 등 사실확인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어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는 경우 ○경영정보 사실이 변경된 경우 ○상시조사(현행화) 결과 변경내용이 확인되어 이를 통보받은 경우
⇓	
변경등록 (지방해양수산청)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여부 확인
⇓	
변경등록통지서 발급 (지방해양수산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사 업 명
(71) 어업인안전보험(3443-36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농어촌 특별세 사업계정	100	103
명칭	개선 특별회계		수산정책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43	368
명칭	수산경영	재해대책	어업인안전보험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총보험료의 50%, 7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어업인안전보험	2,072	1,778	1,778	1,749		△29	△1.6

4. 사업목적·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 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국립수산과학원 위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15조(통계의 수집, 관리 및 실태조사 등)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통계의 수집, 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8년 농림수산식품단체 정책제안에서 한국수산회의 「수산인 안전공제 개발」 제안 채택
  - ・2009년 어업인재해공제(일반형,절약형) 출시
  - ・2012년 고액형 신설 및 가입연령 상향조정으로 보장수준 확대
  - ・2014년 프리미어형 신설로 산재대용 상품으로 실질적 기능
  - ・2015년 수산작업으로 인한 공제금에 대해 보장수준 확대
  - ・2016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16.1.7) 및 보장수준 및 급부가 확대된 어업인안전보험으로 상품변경
  -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조비율(50%→70%) 확대, 산재형 상품 2종 출시 결정('19.1 시행)
- 어작업 안전재해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안) 마련(KMI, '17.4)
- 국정과제
  - ・82-3 : 농어업관련 재해대응강화(영세농어업인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수준의 보험상품 개발 보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9~계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은 '16부터)
- 사업규모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약 40천명
- 사업시행방법 : 법정민간대행사업, 직접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저소득층(○), 차상위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협중앙회	50%, 7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시행계획수립 ⇒ 약관 및 상품 확정 ⇒ 가입안내·홍보 ⇒ 가입 및 보험료 납입 ⇒ 자금교부 요청 및 교부 ⇒ 사업종료 후 정산

* 적용 법령 및 지침 : 농어업인안전보험법령 및 어업인안전보험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72) 수산공익직불제 (3460-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특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농어촌 특별세사업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60	310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어가소득보전	수산 공익직불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80,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수산공익직불제	12,812	51,479	51,479	55,869		4,390	8.5

4. 사업목적·내용

- (조건불리지역 직불)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
- (경영이양 직불)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유지
- (수산자원보호 직불)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지원
- (친환경수산물 직불)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구조 확립

- (직불제 운영지원) 직불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이행점검, 교육·홍보, 명예감시원 운영 등 시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8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개헌 논의에 따라 공익직불제 도입 논의 본격화

*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대통령 신년사 등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

*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5.26 공포, '21.3.1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사업규모 : 조건불리지역직불(19,000어가), 경영이양직불(300명), 수산자원보호직불(어선 1,467척), 친환경수산물직불(625어가 양식장, 친환경배합사료 45,464톤), 직불제운영지원(이행점검요원 7명, 명예감시원 47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 어촌계원, 연근해어선, 친환경양식어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조건불리지역 직불	보조	지자체 보조	12,367	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경영이양 직불	보조	지자체 보조	3,966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수산자원 보호 직불	보조	지자체 보조	11,934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친환경수산물 생산 직불	보조	지자체 보조	25,597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직불제 운영지원	보조	한국어촌어항공단	2,005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조건불리지역 직불]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대상지역 선정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수립 및 시·도 통보(12월) 조건불리 사업대상지역 고시(2월)
⇩		
② 직불금 신청·접수	어업인→운영위원회 ↔시군구	대상마을 확정 및 신청서 접수(3~5월)
⇩		
③ 지급대상 적격 여부확인 등	읍면동, 시군구, 운영위원회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 마을 관리협약 체결(6~10월)
⇩		
④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시군구→어업인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10~11월)
⇩		
⑤ 사업정산	시도→해수부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익년1월)

[경영이양 직불]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수립 및 시·도 통보(1월)
⇩		
② 직불금 신청	어업인→읍면동장	직불금 대상 선정 신청(3월~)
⇩		
③ 지급대상 적격 여부확인	읍·면·동장/특별자치도지사 등	신청 서류 등을 취합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제출(3월~)
⇩		
④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특별자치도지사 등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4월~)
⇩		
⑤ 선정결과 통보	특별자치도지사 등 →읍면동장→신청자	직불금 지원대상 선정 통보(4월~)
⇩(자격이양)		
⑥ 약정체결	특별자치도지사 등 ↔지급대상자	직불금 지급 약성서 체결(5월~)
⇩		
⑦ 직불금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등 → 지급대상자	매월 분할 지급

[수산자원보호 직불]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수립 및 시·도 시달(12월)
⇩		
② 직불금 신청	어업인	시·군·구로 직불금 대상 선정 신청(4월말)
⇩		
③ 사업소요 제출	시·도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해수부로 제출(4월)
⇩		
④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해양수산부	자원회복 효과 평가 등을 통해 직불금 지급대상 선정(8월)
⇩		
⑤ 사업량 배정 및 통보	해양수산부	지자체별 직불금 지원대상 선정 통보(9월)
⇩		
⑥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지자체 수시점검, 해양수산부 연1회이상 점검
⇩		
⑦ 직불금 지급	시·군·구	지급관련 서류 검토 후 직불금 지급

[친환경수산물 직불]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지침 시달	해양수산부	사업지침 수립 및 시·도 통보(12월)
⇩		
② 사업신청 홍보	시·도·시·군·구	사업자 모집 홍보(1월)
⇩		
③ 사업신청	어업인	시·군·구로 사업신청(1~2월)
⇩		
④ 사업소요 제출	시·도·시·군·구	사업자 자격확인 및 사업소요를 파악하여 해수부로 제출(2월)
⇩		
⑤ 사업량 배정 및 통보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지자체별 사업량 배정 및 사업자 선정 통보(3월)
⇩		
⑥ 이행점검	해양수산부/ 시·도·시·군·구	지자체 수시점검, 해양수산부 연1회이상 점검
⇩		
⑦ 직불금 지급	시·군·구	지급관련 서류 검토 후 직불금 지급

교통시설특별회계

Ⅳ. 교통시설특별회계

1. 총 괄

가. 2022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계	1,646,314	1,704,432	1,704,432	1,644,995		△59,102	△3.5
51 관유물대여료	**297**	**2,515**	**2,515**	**1,339**		**△1,176**	**△46.8**
토지대여료 (51-511)	179	1,209	1,209	489		△720	△59.6
건물대여료 (51-512)	118	726	726	722		△4	△0.6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	580	580	128		△452	△77.9
52 정부출자수입	**2,454**	**2,419**	**2,419**	**1,931**		**△488**	**△20.2**
정부출자수입 (52-521)	2,454	2,419	2,419	1,931		△488	△20.2
54 기타이자수입 및재산수입	**1,426**	**4,251**	**4,251**	**1,103**		**△3,148**	**△74.1**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	4	4	-		△4	순감
기타재산수입 (54-545)	1,426	4,247	4,247	-		△4,247	순감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	-	1,103		1,103	순증
56 벌금,몰수금 및과태료	**262**	**262**	**262**	**209**		**△53**	**△20.2**
벌금및과료 (56-561)	-	26	26	1		△25	△96.2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과태료 (56-563)	252	188	188	193		5	2.7
과징금 (56-565)	10	48	48	15		△33	△68.8
57 변상금 및 위약금	**837**	**4,516**	**4,516**	**839**		**△3,677**	**△81.4**
변상금 (57-571)	679	727	727	425		△302	△41.5
위약금 (57-572)	158	3,789	3,789	414		△3,375	△89.1
58 가산금	**70**	**187**	**187**	**84**		**△103**	**△55.1**
가산금 (58-581)	70	187	187	84		△103	△55.1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065**	**29,345**	**29,345**	**13,976**		**△15,369**	**△52.4**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5,065	29,345	29,345	13,976		△15,369	△52.4
65 면허료 및 수수료	**12,245**	**15,597**	**15,597**	**14,391**		**△1,206**	**△7.7**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12,245	15,597	15,597	14,391		△1,206	△7.7
67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92,464**	**137,972**	**137,972**	**79,457**		**△58,515**	**△42.4**
항공항만수입 (67-671)	92,464	137,972	137,972	79,457		△58,515	△42.4
69 잡수입	**2,605**	**6,281**	**6,281**	**1,422**		**△4,859**	**△77.4**
기타잡수입 (69-691)	2,605	6,281	6,281	1,422		△4,859	△77.4
71 고정자산 매각대	**8**	**629**	**629**	**125**		**△504**	**△80.1**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71-713)	8	629	629	125		△504	△80.1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124**	**4,936**	**4,936**	**2,857**		**△2,079**	**△42.1**
토지매각대 (72-721)	1,124	4,936	4,936	2,857		△2,079	△42.1
73 재고자산 매각대 및 유동자산	**31**	**30**	**30**	**31**		**1**	**3.3**
재고자산 매각대 (73-731)	31	30	30	31		1	3.3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681**	**-**	**-**	**△50,000**		**△50,000**	**순감**
전년도세계잉여금 (89-893)	681	-	-	-		-	-
91 전입금	**1,526,745**	**1,495,492**	**1,495,492**	**1,577,231**		**82,074**	**5.5**
일반회계 전입금 (91-911)	1,326,745	1,495,492	1,495,492	1,577,231		82,074	5.5
계정간전입금 (91-915)	200,000	-	-	-		-	-

나. 2022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계	1,408,672	1,704,097	1,704,097	1,644,995		△59,102	△3.5
4143 항만및물류기술개발(R&D)	**46,575**	**33,823**	**33,823**	**30,635**		**△3,188**	**△9.4**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R&D) (4143-302)	22,000	3,744	3,744	426		△3,318	△88.6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R&D) (4143-303)	19,075	10,815	10,815	-		△10,815	순감
항만 컨테이너 자동 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R&D) (4143-305)	5,500	7,240	7,240	5,814		△1,426	△19.7
ICT 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R&D) (4143-306)	-	4,000	4,000	5,300		1,300	32.5
스마트 항만-자율운항 선박연계 기술개발(R&D) (4143-308)	-	4,160	4,160	5,600		1,440	34.6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R&D) (4143-309)	-	1,501	1,501	1,948		447	29.8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기술개발(R&D) (4143-310)	-	2,363	2,363	4,026		1,663	70.4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해운-항만-운송 기업 간 물류연계 최적화서비스 개발(R&D) (4143-311)	-	-	-	1,200		1,200	순증
항만 내 환적 화물 자동운송 시스템 (무인트램) 개발(R&D) (4143-314)	-	-	-	2,475		2,475	순증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발(R&D) (4143-315)	-	-	-	3,846		3,846	순증
이동식 수소 육상전원공급 설비 개발 및 실증(R&D) (4143-318)	-	-	-	-		-	-
4163 해양안전기술 개발(R&D)	**9,932**	**28,632**	**28,632**	**47,511**		**18,879**	**65.9**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R&D) (4163-304)	3,737	7,865	7,865	5,110		△2,755	△35.0
해양 PNT 고도화 기술 개발(R&D) (4163-305)	6,195	8,762	8,762	5,798		△2,964	△33.8
선체부착생물 처리기술 개발(R&D) (4163-306)	-	3,000	3,000	4,973		1,973	65.8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해상디지털 통합활용연계 기술개발(R&D) (4163-307)	-	3,536	3,536	6,100		2,564	72.5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R&D) (4163-308)	-	5,469	5,469	7,250		1,781	32.6
한국형 위성 항법시스템 (KPS) 개발 사업(R&D) (4163-309)	-	-	-	16,343		16,343	순증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R&D) (4163-312)	-	-	-	1,937		1,937	순증
5050 부산항신항만 개발	**120,894**	**91,581**	**91,581**	**120,701**		**36,465**	**43.3**
부산항 신항만(1단계) (5050-303)	31,215	34,581	34,581	69,447		34,866	100.8
부산항 제2신항 (5050-305)	2,629	1,800	1,800	15,000		13,200	733.3
부산항 신항만 남컨배후단지 (5050-308)	20,977	16,407	16,407	28,254		11,847	72.2
부산항 신항만 서컨부두개발 (5050-309)	1,084	200	200	-		△200	순감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5050-312)	44,021	4,101	4,101	-		△4,101	순감
부산항 신항 신규 투기장 (5050-313)	5,970	3,044	3,044	-		△3,044	순감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5050-314)	14,998	31,448	31,448	8,000		△23,448	△74.6
5051 광양항개발	**26,568**	**57,012**	**57,012**	**120,280**		**63,268**	**111.0**
광양항(3단계) (5051-302)	26,568	57,012	57,012	120,280		63,268	111.0
5052 평택당진항 개발	**46,197**	**53,069**	**53,069**	**87,365**		**34,296**	**64.6**
평택,당진항 (5052-300)	23,701	18,178	18,178	16,369		△1,809	△10.0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5052-301)	22,497	34,891	34,891	70,996		36,105	103.5
5053 인천북항개발	**57,419**	**41,503**	**41,503**	**36,612**		**△4,891**	**△11.8**
인천북항 (5053-300)	57,419	41,503	41,503	36,612		△4,891	△11.8
5054 인천신항개발	**97,963**	**110,922**	**110,922**	**49,700**		**△61,222**	**△55.2**
인천신항 (5054-300)	97,963	110,922	110,922	49,700		△61,222	△55.2
5055 목포신항개발	**26,364**	**44,742**	**44,742**	**36,924**		**△7,818**	**△17.5**
목포신항 (5055-300)	26,364	44,742	44,742	36,924		△7,818	△17.5
5056 포항영일만 신항개발	**23,692**	**20,499**	**20,499**	**26,570**		**6,071**	**29.6**
포항영일만 신항 (5056-301)	23,692	20,499	20,499	26,470		5,971	29.1
포항영일만 신항(1단계) (5056-302)	-	-	-	100		100	순증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5057 새만금신항 개발	**41,312**	**74,397**	**74,397**	**126,236**		**51,839**	**69.7**
새만금신항 (5057-300)	41,312	74,397	74,397	126,236		51,839	69.7
5058 주요항건설	**70,262**	**54,776**	**54,776**	**96,753**		**41,977**	**76.6**
부산항 (5058-307)	29,932	425	425	6,100		5,675	1,335.3
인천항 (5058-309)	4,200	5,065	5,065	9,327		4,262	84.1
인천남항 (5058-310)	4,173	8,044	8,044	2,313		△5,731	△71.2
목포항 (5058-311)	392	2,564	2,564	4,285		1,721	67.1
목포북항 (5058-312)	1,227	7,865	7,865	19,650		11,785	149.8
군장항(2단계) (5058-314)	24,959	25,812	25,812	48,538		22,726	88.0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5058-316)	5,380	5,001	5,001	6,540		1,539	30.8
5059 일반항건설	**256,917**	**139,267**	**139,267**	**123,272**		**△15,995**	**△11.5**
일반항 (5059-302)	196,636	99,944	99,944	87,981		△11,963	△12.0
광양(여천)항 (5059-303)	2,957	7,165	7,165	11,798		4,633	64.7
울릉(사동)항 (5059-305)	6,744	850	850	4,951		4,101	482.5
홍도항 (5059-306)	6,760	-	-	-		-	-
마산항 (5059-307)	1,029	100	100	100		-	-
경인항 (5059-310)	5,473	5,473	5,473	6,163		690	12.6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여수신항 (5059-312)	6,978	6,632	6,632	-		△6,632	순감
여수신북항 (5059-313)	30,340	19,103	19,103	12,279		△6,824	△35.7
5060 항만시설유지보수(교특)	**171,159**	**122,069**	**122,069**	**143,045**		**20,976**	**17.2**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5060-300)	144,519	103,034	103,034	124,010		20,976	20.4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5060-460)	26,640	19,035	19,035	19,035		-	-
5061 항만재개발	**39,059**	**85,828**	**85,828**	**94,654**		**8,826**	**10.3**
부산북항 재개발 (5061-300)	28,500	69,985	69,985	81,887		11,902	17.0
기타항만 재개발 (5061-301)	10,559	15,843	15,843	12,767		△3,076	△19.4
5062 마리나항만 개발	**7,488**	**6,494**	**6,494**	**15,333**		**8,839**	**136.1**
마리나 항만 (5062-301)	7,488	6,494	6,494	15,333		8,839	136.1
5063 그린포트구축	**121,020**	**156,944**	**156,944**	**185,013**		**28,069**	**17.9**
재해안전항만 구축 (5063-302)	52,140	78,864	78,864	144,699		65,835	83.5
태풍 피해복구(항만) (5063-303)	57,898	77,980	77,980	28,502		△49,478	△63.4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5063-304)	875	100	100	11,812		11,712	11,712.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항만 육상전력공급 설비 구축 (5063-305)	10,106	-	-	-		-	-
5064 항만운영 및 관리	**18,853**	**18,032**	**18,032**	**16,249**		**△1,783**	**△9.9**
해상교통안전 시스템 운영 (5064-300)	2,458	1,918	1,918	1,726		△192	△10.0
여객터미널 운영 (5064-301)	7,427	7,851	7,851	7,094		△757	△9.6
항만보안시설 확충 (5064-303)	8,969	8,263	8,263	7,429		△834	△10.1
5066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	**8,622**	**11,492**	**11,492**	**12,434**		**942**	**8.2**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5066-300)	6,024	5,360	5,360	7,360		2,000	37.3
물류기업유치 지원 (5066-301)	339	3,939	3,939	2,957		△982	△24.9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5066-302)	2,259	2,193	2,193	2,117		△76	△3.5
5074 울산신항개발	**159,180**	**186,605**	**186,605**	**189,783**		**3,178**	**1.7**
울산신항 (5074-300)	159,180	186,605	186,605	189,783		3,178	1.7
5076 동해신항개발	**-**	**145,590**	**145,590**	**31,367**		**△114,223**	**△78.5**
동해신항 (5076-302)	-	145,590	145,590	31,367		△114,223	△78.5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6350 항로표지시설 확충및안전 관리	**59,195**	**60,993**	**60,993**	**54,558**		**△6,435**	**△10.6**
표지시설 (6350-300)	55,422	57,179	57,179	48,144		△9,035	△15.8
표지시설 (측위원) (6350-304)	3,773	3,814	3,814	6,414		2,600	68.2
8010 회계간전출 (균특회계)	**-**	**159,827**	**159,827**	**-**		**△159,827**	**순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전출 (8010-800)	-	159,827	159,827	-		△159,827	순감

2. 수 입

(1) 토지대여료
11- 51 - 51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토지대여료	179	1,209	1,209	489	489	△720	△59.6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 대여에 따른 대여료 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납기일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155	133	179	46

(2) 건물대여료
11 - 51 - 512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건물대여료	118	726	726	722	722	△4	△0.6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 대여에 따른 대여료 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납기일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814	1,235	118	71

(3) 기타관유물대여료

11 - 51 - 513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기타관유물 대여료	-	580	580	128	128	△452	△77.9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국유재산법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은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국유지와 국유건물 이외의 관유물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입(국유선박, 부두시설 등)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납기일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383	1	0.5	0.7

(4) 정부출자수입

11 - 52 - 52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정부출자수입	2,454	2,419	2,419	1,931	1,931	△488	△20.2

1. 법적 근거

○ 항만공사법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2. 수입 개요

○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출자자 배당 수입
(부과기준) 당기순이익×배당율(기획재정부 결정)×22.9%(해양수산부 지분률)
(납기일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3,121	3,128	2,454	7,258

(5) 기타재산이자수입(신규)

11 - 54 - 546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	-	-	1,103	1,103	1,103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6조 (한국은행등의 국고금출납)

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6) 벌금및과료

12 - 56 - 56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벌금 및 과료	-	26	26	1	1	△25	△96.2

1. 법적 근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해운법, 선원법, 선원선박법,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2. 수입 개요

○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료

(부과기준)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	2	0.3	1

(7) 과태료

12 - 56 - 563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과태료	252	188	188	193	193	5	2.7

1. 법적 근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해운법, 선원법, 선원선박법,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2. 수입 개요

○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부과기준)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51	72	252	236

(8) 과징금

12 - 56 - 56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과징금	10	48	48	15	15	△33	△68.8

1. 법적 근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해운법, 선원법, 선원선박법,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2. 수입 개요

○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수입

(부과기준)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 해양수산관련 각종 법령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2	14	10	99

(9) 변상금

12 - 57 - 57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변상금	679	727	727	425	425	△302	△41.5

1. 법적 근거

○ 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수입 개요

○ 항만시설(부지), 공유수면 등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72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72조(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66	331	679	400

(10) 위약금

12 - 57 - 572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위약금	158	3,789	3,789	414	414	△3,375	△89.1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수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게 납부해야 할 지체상금 등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72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72조(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568	516	158	282

(11) 가산금

12 - 58 - 58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가산금	70	187	187	84	84	△103	△55.1

1. 법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사용료, 선박입출항료, 항만시설사용료 등 각종 세입금 납부기간 경과(지연)에 따른 연체료

(부과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3조

(납부기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3조(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85	98	70	48

(12) 기타경상이전수입

12 - 59 - 596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기타경상이전수입	5,065	29,345	29,345	13,976	13,976	△15,369	△52.4

1. 법적 근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연체료 및 반환금 등(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9,270	17,594	5,065	15,667

(13) 면허료 및 수수료

13 - 65 - 65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면허료 및 수수료	12,245	15,597	15,597	14,391	14,391	△1,206	△7.7

1. 법적 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점·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 선박법 제30조 (수수료)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교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공유수면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 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입학 또는 고시 수수료, 청원경찰 수수료 등
(부과기준)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선박법 제30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7,896	13,033	12,245	17,326

(14) 항공항만수입

13 - 67 - 67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항공항만수입	92,464	137,972	137,972	79,457	79,457	△58,515	△42.4

1. 법적 근거

○ 항만법 제32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 : 접안료, 정박료,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화물장치료, 수역점용료, 국제여객터미널 사용료 등
(부과기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표 1
(납부기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34,134	117,062	98,464	88,457

(15) 기타잡수입

13 - 69 - 69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기타잡수입	2,065	6,281	6,281	1,422	1,422	△4,859	△77.4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 각종 시설공사 시 발생하는 철거발생품, 선박·하역장비 노후부품 교체 시 발생하는 불용품 등 매각대금

(부과기준) 물품관리법 제4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7,950	8,424	2,605	476

(16)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4 - 71 - 713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8	629	629	125	125	△504	△80.1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41조(처분),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등

2. 수입 개요

○ 고정자산 불용품의 매각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43조, 물품관리법 제40조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95	173	8	272

(17) 토지매각대

14 - 72 - 72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토지매각대	1,124	4,936	4,936	2,857	2,857	△2,079	△42.1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수입 개요

○ 국유재산 토지매각으로 인한 수입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48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50조(60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3,269	4,179	1,124	601

(18) 재고자산매각대

14 - 73 - 731

<교특회계 - 항만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재고자산 매각대	31	30	30	39	31	1	3.3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에게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불용품이 매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드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뺀 금액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수입 개요

○ 재고자산의 매각대금

(부과기준) 국유재산법 제44조

(납부기한) 국유재산법 제43조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7	69	31	8

(19) 일반회계전입금

40 - 91 - 9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A
일반회계 전입금	1,326,745	1,495,157	1,495,157	1,692,181	1,577,231	82,074	5.5

1. 법적 근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②제1항제2호에 의한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제1항제3호에 의한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1995.12.6, 2007.12.31>

③도로계정·철도계정·교통체계관리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2. 수입 개요

○ 일반회계로부터의 무상 전입금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785,524	1,213,584	1,326,745	1,495,157

사 업 명

(1) 스마트 자동화항만 상용화 기술개발(R&D) (414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3	302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	스마트 자동화항만 상용화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R&D)	22,000	3,744	-	426		△3,318	△88.6

4. 사업목적·내용

-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기술개발) 국가 주요 인프라인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류 자동화, 정보체인화, 지능화 등 스마트 물류 기술들을 연구개발 및 상용화하여 기존 항만물류 시스템을 혁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법정계획)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16-'25), 국가물류 기본계획 수정계획('16-'25)에 반영
  * '25년까지 고생산성 무인자동화 스마트포트 구축 등이 반영
- (국정과제) 현 정부 국정과제(80. 조선해운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반영('17)
  * 동 테스트베드 연구개발 사업을 '23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이 직접 명시
- (부처중점과제) 국가 혁신성장선도사업(스마트해상물류-스마트항만)에 반영('17)
- (대통령말씀)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18.3.16)에서 항만의 첨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동 시스템의 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96억원(국비 297억원)
- 사업기간 : '19 - '23
- 사업규모 : 1개 내역,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중공업 · 전기제어 · SW개발 기업 등), 항만운영사, 해운선사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26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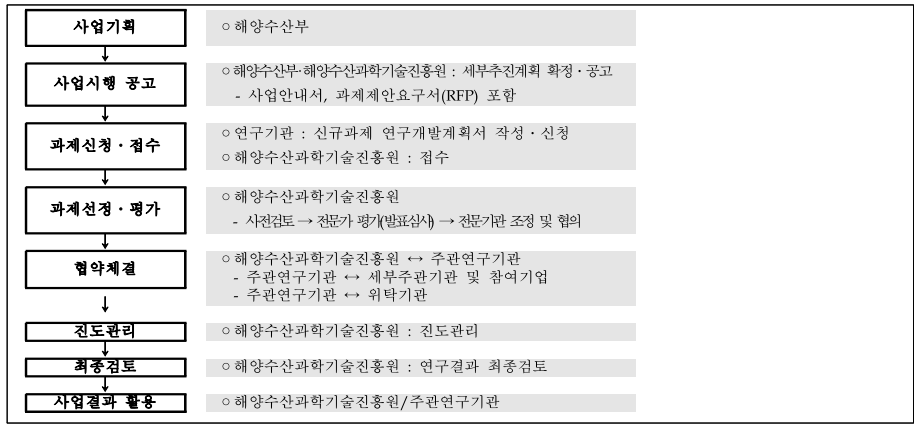

사 업 명
(2) 항만 컨테이너 자동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414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특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3	305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 및 물류기술(R&D)	항만 컨테이너 자동 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만 컨테이너 자동통합 검색 플랫폼 기술개발(R&D)	5,500	7,240	7,240	5,814		△1,426	△19.7

4. 사업목적·내용

- **(컨테이너 위험화물 자동검색 및 복합탐지 시스템 개발)** 스마트항만 구현을 위한 **컨테이너 위험화물**(밀수품, 유해방사능, 핵물질, 폭발물, 마약류) **자동검색 및 복합탐지**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 **(Private 클라우드 기반 컨테이너 검색정보 공유·제공 플랫폼 개발)** Private 클라우드 기반의 **항만보안검색정보 데이터** 처리기술 확보 및 타 시스템 연계를 위한 **정보공유 제공플랫폼** 기술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 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제58조(물류 관련 연구 촉진) 등

② 추진경위

- 미국은 '20년부터 자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전량(100%)을 사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색하도록 의무화한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제정
- 9.11 테러대책 이행법률 중 컨테이너 검색조항(제1701조)

△ (대상/장소) 미국 입항 컨테이너 적재 선박 / 컨테이너 적재 이전 외국 항만
△ (검색방법) 컨테이너 내장화물 이미지 검색 및 방사능(핵물질) 탐지
△ (적용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년 연장이 가능
△ (제재조항) 미검색 컨테이너 반입금지, 미국 내 별도검사(비용청구검사대기) 후 통관가능

- 국제 보안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술 국산화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08.10~'19.3)하였고 그 성과물은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가 추진 중
  * 기술이전 : 45.3억원, ㈜씨크, 2019년 10월
- 또한, 스마트항만 실현 및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컨테이너 검색 기술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항만 컨테이너 자동통합검색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연구' 실시('19.3)
- 사업수행주체 선정(공고/평가, '20.4)을 통해 '20.4.14부터 사업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82.6억원(국비 282.6억원)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2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 참여 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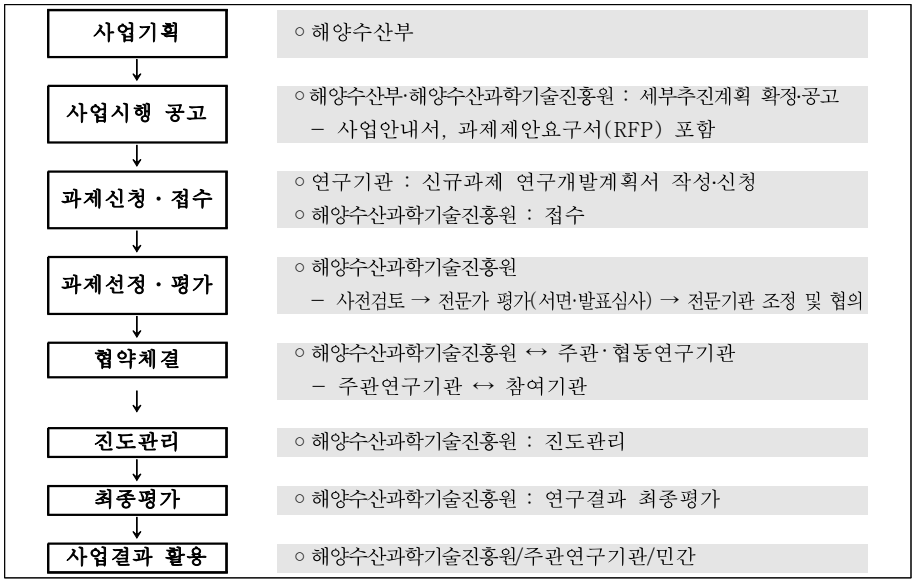

사 업 명
(3) ICT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R&D)(414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특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3	306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	ICT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ICT기반 항만인프라 스마트 재해대응 기술개발(R&D)	-	4,000	4,000	5,300		1,300	32.5

4. 사업목적·내용

○ 항만의 노후도를 모니터링하며,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ICT기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항만시설 운영자 등이 항만노후도를 사전에 식별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재난·재해 시 긴급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항만인프라 재해 및 노후화 관리기술 개발)** 재해 발생시 항만인프라의 모니터링, 노후화, 상태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관제 시스템 개발

*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기반 항만인프라 관제 시스템 개발 및 항만시설물 노후도 및 재해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

- **(항만인프라 재해 및 노후화 대응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 ICT 기술 (IoT, AI, 빅데이터 등) 기반 항만 외곽시설, 계류시설 및 배후부지에 대한 상태평가, 진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개발

* 항만시설물 노후도 분석 및 정량화 기술 도출, 잔여수명 예측, 재해위험도 평가지표 개발 등

- **(항만인프라 무인 원격 시공지원시스템 기술개발)** 항만인프라의 조기 기능복구 및 스마트 항만물류 시대 대응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작업을 위한 무인 원격 시공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

* 스마트 센서를 활용한 항만구조물 및 시공장비 연계정밀 시공 기술개발, 항만공사 구역 수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세부모듈 제작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자연재해대책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등

○ 항만법 제36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기술의 연구·개발을 육성하여야 함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② 추진경위

○ (여건변화) 기후변화 및 항만노후화에 따른 항만인프라의 유지 실패 사례 속출

-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의 변형·파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항만시설물에 대한 정량적 모니터링 기술 수요 증가
- 항만노후화로 인한 내구성이 저하되어 피해 발생 시 큰 국가재정 부담비용(직접 피해금액 + 간접 피해금액)이 발생

○ (정책변화) 건설기술의 스마트화 관련 국가과학기술정책과 부합하는 스마트한 항만 인프라 유지·관리 보수 기술 요구

*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로드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18.10.)

○ (시책)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5)」 * 근거 : 항만법

* AR, IoT 등 융복합 기술을 통한 항만 무인 자동화 및 스마트화 추진, 기후변화 대비, 항만 및 배후도시 보호를 위해 방파제 보강(71개소) 및 방재시설(22개항)을 구축하고 여객터미널 등의 내진보강(125개소) 추진 등

○ (시책)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 *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 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74억원(국비 기준)
- 사업기간 : '21년 ~ '25년
- 사업규모 : 3개 내역, 3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운영사(PA 등), 건설 및 안전관리 업계, 정보통신 관련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항만인프라 재해 및 노후화 관리기술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항만인프라 재해 및 노후화 대응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7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항만인프라 무인 원격 시공지원시스템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7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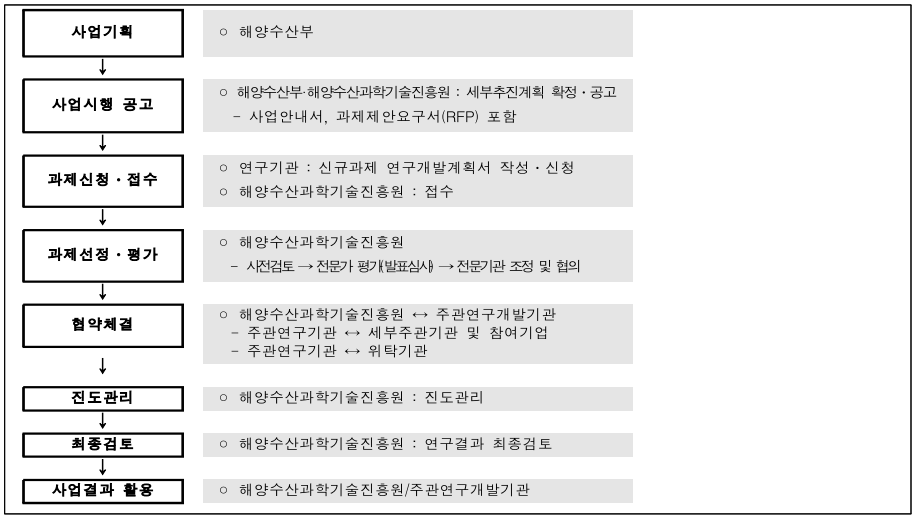

사 업 명
(4)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 개발(R&D) (414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 추진단	항만계정 (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3	308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 및 물류 기술개발(R&D)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 개발	-	4,160	4,160	5,600		1,440	34.62

4. 사업목적·내용

-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 개발) 자율운항선박이 항만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도록 육상과 연계된 자동화·지능화 시스템(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 항계 내 자율운항선박 안전 운항 및 통합제어 IMO Level 2.0 지능화 시스템 개발
  · 스마트 해상물류 기반 마련 가속화를 통해, 해상사고 50% 감축, 효율성 10% 이상 달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산업융합 촉진법」 제18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정부시책>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방안 제시」 자율운항선박 연계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 (대통령 말씀) "자율운항 기술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율운항 핵심 기술과 선박개발을 지원",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자율운항선박 등 연구개발을 아낌없이 지원"

-「100대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스마트 선박)",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4차 산업혁명위원회」 : 1.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이동체)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스마트 이동체 선도국가 도약"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 계획」 : 자율운항선박, 지능형 내비게이션, 스마트 항만을 연계한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 종합 대책」 :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에 대응하여 관련 규제 · 제도를 개선

<여건변화>

-「자율운항선박 예비타당성조사('19.10)」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술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혁신성장동력 후보기획('19.1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성장동력" 사업에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제도개선에 대한 10년 계획 수립

<사업추진경과>

- ('19 ~ '20)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 개발사업 기획연구

- ('21. 1. 26.)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 개발사업 선정공고
- ('21. 4. 1.)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 개발사업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328.3억원(국고 289.6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운물류업계, 조선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마트항만-자율운항선박 연계기술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6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진도관리(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5)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사업(R&D)(4143-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3	309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 및 물류기술(R&D)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R&D)	-	1,501	1,501	1,948		447	29.8

4. 사업목적·내용

-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컨테이너의 위치, 충격여부, 문개폐여부, 온도, 습도** 등을 **파악하는 센서**를 **내장**한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및 상용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 관련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② **추진경위**

< 여건변화 >

○ **조선 해운 경기 침체**('16~)

- **저가/대형화** 공세로 **해운업**에 대한 **도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원정책** 필요

* 단순한 화물 운송을 넘어 추가적인 서비스(실시간 현황확인 등) 탑재 필요

○ **해운서비스 디지털화 경쟁 심화**('20~)

- 대형선사를 중심으로 IoT 장비 등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컨테이너의 위치· 상품의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경쟁 심화

* 실시간 컨테이너의 위치, 상태 정보 획득 → 1. (서비스 경쟁력 제고) 화주에게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가능 + 2. (리스크 감소) 화물파손의 책임소재 명확화 가능 + 3. (선사 운영 비용 감소) 선사의 공 컨테이너 회수 용이 가능

* 세계 순위권 선사들은 비용·불편함에도 불구 컨테이너에 센서 부착 → 센서 수요 지속 증가 → 센서를 통합 내장한 스마트 컨테이너의 개발 수요 증가

< 정책변화 >

○ (**VIP말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을 만들어 냅시다.'('18.3.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

○ VIP 말씀에 따라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의결('19.1)

* '스마트 컨테이너'를 주요 추진과제로 명시(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의 **수행을 위해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안조정회의에 상정·의결('20.2)

* '스마트 컨테이너'를 주요 추진과제로 명시(수출입물류 인프라 연계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4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 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전문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등

-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마트 컨테이너 실용화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948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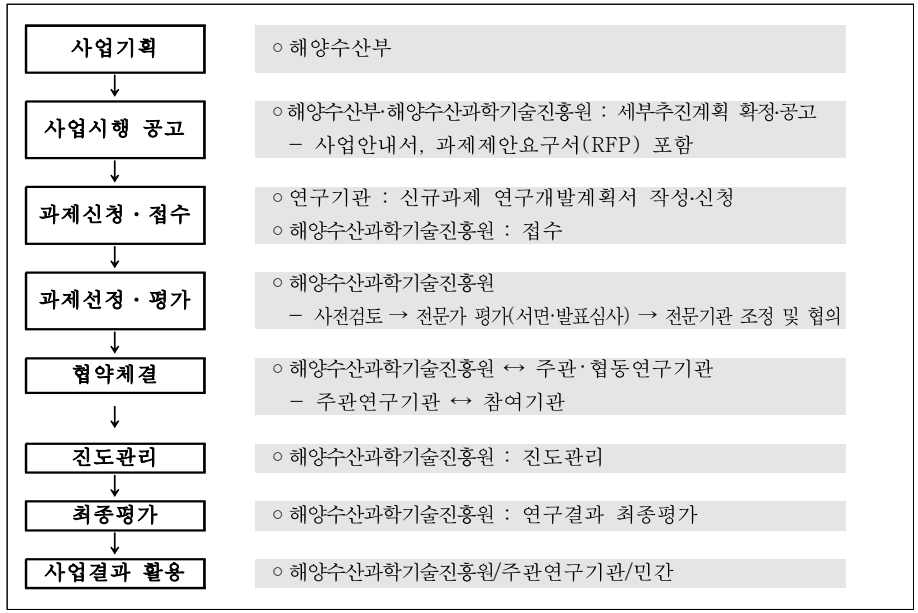

사 업 명
(6)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기술개발(R&D) (4143-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 추진단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3	310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 및 물류 기술개발(R&D)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기술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기술개발	-	2,363	2,363	4,026		1,663	70.4

4. 사업목적·내용

-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기술 개발) 수출입 자동차 하역 효율성 증대 및 자율주행차량의 항만이용과 선적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 자동하역 지원 기술 개발
  · 실용화 전략 수립 및 테스트베드 구축
  · 터미널 및 선박 계획 시스템 기술 개발
  · 고정밀 복합전자지도 구축 및 변환기술 개발

5. 사업 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 「산업융합 촉진법」 제18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국정과제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19.1, 과기관계장관회의)
  ·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개발 및 국제표준화
-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20.2, 제10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수출입 자율주행차량의 자동 승하선지원 시스템 개발 및 국제 인증센터 구축
- ('19. 7. ~'19. 12.)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21. 1. 26.)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선정공고
- ('21. 4. 1.) 수출입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88.2억원(국고 151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자율주행차량 제조기업, 자율주행차량 수입기업, 수출입자동차 부두 운영사, 자율주행차량 소비자, 항만공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출입자율주행 차량 자동하역 지원시스템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4,026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7) 해운-항만-운송기업 간 물류연계 최적화 서비스 개발(R&D)(4143-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 추진단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3	311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	해운-항만-운송기업 간 물류연계 최적화 서비스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운-항만-운송기업 간 물류연계 최적화 서비스(R&D)	-	-	-	1,200		1,200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해상-항만-육상의 물류를 인공지능 기술로 연계하여 수출입 물류를 최적화하고 항만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연계 서비스 플랫폼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항만법' 제26조,

② 추진경위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20.2, 현안점검회의),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21.4, 한국판뉴딜 경제장관회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44.5억원
- 사업기간 : 2022년~2025년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 3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운회사, 물류기업, 항만공사,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항만물류체인 디지털 인프라기반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00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데이터/인공지능기반 물류연계 최적화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00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해상-항만-육상 물류최적화 서비스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00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연구수행점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8) 항만 내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무인트램) 개발(R&D) (4143-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3	314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R&D)	항만 내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만 내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 개발(R&D)	-	-	-	2,475	2,475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환적화물의 타부두 이동을 기존의 도로운송에서 입체형 기반시설(친환경 무인 순환레일)로 변경시켜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 · 환경적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항만 내 환적화물 자동운송시스템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클라우드컴퓨팅·무선주파수 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이하 "물류신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이하 "첨단물류시설등"이라 한다)의 보급·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2.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물류신기술 및 첨단물류시설등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 중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한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등으로 지정하여 이의 보급·활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여건변화 >

○ **글로벌 해운동맹 체제 변화**

- 글로벌 선사는 동맹을 강화하여 3대 Alliance 체제로 운영중이며, 경쟁항만인 중국, 싱가포르 등은 단일운영사가 터미널을 운영하는 체제로, 3대 Alliance에 대한 터미널 대항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

○ **부산항의 국제 환적항만 경쟁력 약화**

- 부산항 신항은 세계 2위의 환적거점항이나, 소규모 다수터미널(5개 운영사*) 체제로 단일 터미널에서 단일 Alliance의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 내재

○ **환적화물 증가로 인한 사회 · 환경적 비효율 발생**

- 환적화물은 글로벌 선사의 부산항 기항을 유인함으로써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에 큰 도움이 되고, 항만물류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나,
- 기존의 도로운송은 임항도로의 교통 혼잡, 도로파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 · 환경적 비효율 유발
- 도로운송에 집중된 타 부두 환적 화물 이동을 입체형 기반시설(친환경 무인형 순환레일)로 이송시켜 교통 혼잡, 물류비용 절감, 온실가스 절감 필요

⇒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스마트 항만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항만 내 터미널 간 연계 효율화(순환레일)' 기술개발이 필수적**

< 정책 변화 >

○ **(VIP말씀)**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냅시다. 자율운항선박, 초고속 해상통신망, 스마트 항만을 연계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항만모델을 우리가 선도합시다.' ('18.3.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

- 스마트 항만을 연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항만모델 선포에 동반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항만구축 필요

○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안조정회의에 상정·의결('20.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2~'24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매칭)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연구관리전문기관) / 주관기관 미정
- 사업 수혜자 : 해운물류 분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항만 내 환적화물 자동운송 시스템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475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9)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RD&D) (4143-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43	315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항만 및 물류기술개발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R&D)1	-	-	-	3,846		3,846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발)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작업 및 주행 자동화 기술개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기술개발, 크레인 주변 위험 감지 및 안전 사고 예방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3,846백만원 요구
- (신규) 3과제×1,709.3백만원×9/12개월 = 3,846백만원

①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작업 및 주행 자동화 기술개발: 컨테이너 정밀 스프레딩 시

스템 개발, 자동화 크레인 실현을 위한 주행 안정화 기술 개발, 수학적 모델 기반 흔들림 제어 시스템 개발, 자동화 장비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②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기술개발: 최적 야드 관리 시스템 개발, 크레인 원격 관제/제어 기술개발

③ 크레인 주변 위험 감지 및 안전 사고 예방 기술개발: 장애물 식별 시스템 개발, 사고예방시스템 개발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및 안전모듈 개발사업 개념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항만 작업자 대상 중대 산업 재해예방에 필요한 체계 구축 및 대책 수립 마련 촉진

② 추진경위

○ (정책변화)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전략('19.1)』,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전략('20.2)』,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21.4)』 등을 통해 해상물류 스마트화 기반조성을 위한 '스마트항만' 투자 확대 중으로 무인화 및 자동화 항만으로 정책 추진이 강조됨

- 특히 최근 항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18),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19) 대책 등에 따라, 항만 하역작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

○ '20. 6 : 신규사업 기획연구 착수

○ '20. 10 : 항만산업 종사자 대상 기술수요조사 실시

○ '20. 11~'21. 2 : 항만 크레인 기술 관련 포럼 개최, 기획 회의 등

○ '21. 2 : 중기재정계획 제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2025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3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타이어형 항만크레인 적용 자동화 안전모듈 개발	출연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846	국고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10)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R&D) (416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3	304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R&D)	수소선박 안전기준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수소선박 안전기준개발(R&D)	3,737	7,865	7,865	5,110		△2,755	△35.0

4. 사업목적·내용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한 미래형 수소 추진·운송 선박의 안전기준 개발 추진
- (수소연료 벙커링 및 수소 적하역 안전기술 개발) 수소연료 벙커링(공급) 및 적하역 설비의 설계 및 운용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선박 수소 저장·공급 안전기술 개발) 수소 저장방식(액체, 기체, 고체)에 따른 저장·공급 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수소선박 안전제어기술개발) 통합제어시스템(벙커링, 적하역, 저장·공급)의 설계 및 운용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수소 누출 예방 및 피해 경감기술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 환경 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② 추진경위

- '18. 9 : 민·관합동 수소경제 추진위원회 구성('18.9)
- '19. 1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수소선박을 미래 유망 품목으로 육성,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

- '19. 5 :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실시
- '19. 10 :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 수소 전 주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저장·운송, 안전·환경·인프라 부문)

- '20. 3 : '수소선박 안전기술개발사업'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 ~ '24
- 사업규모 : 4개 내역사업(4개 세부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소연료 벙커링 및 수소 적하역 안전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50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선박 수소 저장·공급 안전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910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수소선박 안전제어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150백만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1)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R&D) (416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3	305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R&D)	6,195	8,762	8,762	5,798		△2,964	△33.8

4.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선박의 안전항해와 해양분야 주요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정밀성・신뢰성을 갖춘 차세대 해양 PNT(위치·항법·시각) 시스템 개발
- (**지상기반 센티미터급 해양 정밀 PNT 기술개발**) IMO의 주항법(위성파) 고정밀 측위성능(<10cm)을 만족하는 기술개발 및 전국망 서비스 구축·검증
- (**지상파 통합 항법시스템(R-Mode) 기술개발**) IMO의 보조항법(지상파) 측위성능(<10m)을 만족하는 R-Mode 기술개발·검증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로표지법 제3조(국가의 책무),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제10조(항법정보의 제공), 제11조(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 제37조(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 등)
- 해사안전법 제6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6대 추진전략과 세부이행 계획 중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안전관리 체계 구축” 추진전략 중, “ICT 기반 항행안전 정보제공체계구축”
-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1호) 제108조의2(위성항법장치 등) 지상파 무선 항해시스템의 선박 탑재 설치 규정

② 추진경위

- 해양수산 연구기획사업, 해양 정밀항법·측위 인프라 구축기술 기획연구(‘15.8.) 추진
-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반영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17)과 다부처 전문가 협의체 운영(‘18) 추진
  * 해수부는 KPS를 통한 센티미터급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담당
- eLoran 기술개발 사업(‘16~‘19) 및 신규송신국 구축(‘20~‘21) 추진
- 해양수산부 ‘지상파 통합 항법시스템(R-Mode) 개발에 관한 기본조사’ 사업(‘18) 추진 및 동 사업의 기획연구 추진
- ’해양 PNT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착수(‘20. 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65억원(‘21년까지 기투자액: 150억원)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2개 세부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상기반 센티미터급 해양 정밀 PNT 기술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298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지상파 통합 항법시스템(R-Mode) 기술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5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2) 선체부착생물(Biofouling) 처리기술 개발(R&D) (4163-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3	306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R&D)	선체부착생물(Biofouling) 처리기술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선체부착생물(Biofouling) 처리기술 개발(R&D)		3,000	3,000	4,973		1,973	65.8

4. 사업목적·내용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체부착생물(biofouling) 관리를 위한 친환경적 처리기술 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
- (선체부착생물 처리기술 개발) 선체부착생물 제거 장비개발, 부산물 이송 및 처리 시스템 개발 등
- (선체부착생물 관리 및 평가기술 개발) 유입생물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관기준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 필요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추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 :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시행

② 추진경위

<국제정세>

- 국제해사기구(IMO)는 'biofouling 통제 및 관리' 지침 채택('11~)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에 주요 역할을 한 'GloBallast' 사업 후속으로 'GloFouling' 파트너쉽 사업 추진 중('19~)

  * 우리나라는 GloBallast 사업에 대한 적극 참여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 바 있음

- 제7차 IMO 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PPR)에서 'biofouling 통제 및 관리' 지침 개정을 위한 통신작업반 설치('20.2) 후 지속 논의 중

<사업추진경과>

- '선체부착생물(Biofouling) 처리기술 개발사업 기획연구'를 통해('19~'20) 해양생물 부착방지 기술의 국내외산업계 현황 파악 및 중점 연구 분야 발굴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25
- 사업규모 : 2개 내역, 2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운업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선체부착생물 처리기술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935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선체부착생물 관리 및 평가기술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38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사업기획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중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3) 해상디지털 통합활용연계 기술개발(R&D) (416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3	307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해상디지털 통합활용연계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상디지털 통합활용연계 기술개발(R&D)	-	3,536	3,536	6,100		2,564	72.5

4. 사업목적·내용

- (**해상디지털 통신연계 기술개발**) 해상 모든 선박·사물의 데이터가 교환·소통(초연결)되는 해상 네트워크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무선설비 다각화, 선박 사물통신기술 개발, 해상무선통신망(LTE-M) 연계기술 개발 등 해상무선통신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것임
- (**해상디지털 정보활용 기술개발**) AI·데이터과학 등 4차산업 기술이 접목된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체계(e-Nav)를 통해 수집한 선박운항정보(그외 해역·기상조건, 복원력 등)를 빅데이터 및 AI 기술로 분석하여 운항자에게 안전항로, 충돌경보, 전복위험경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과학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 (**해상디지털 민간 자유공모 지원**) 지능형 해상교통 분야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상교통 데이터 및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혁신모델 발굴 및 관련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제8조 및 제14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국제해사기구 IMO의 해양디지털化(e-Nav, 자율운항선박 등) 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해운·조선 신규시장(연간 30조원) 대응정책 필요
- 그간 선박장비시장은 일본・유럽 등에 종속된 구도였으나, 디지털 체계의 신규시장에서는 아국도 진입·선점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추진경과) 그간 국제해사기구 IMO의 e-Nav 도입에 선제적 대응, 한국형 e-Nav 구축사업*(국정과제) 추진 및 세계 최초로 e-Nav 서비스 시행('21.1월~) 등 세계최고 수준의 해상디지털정보 생성·공급 및 해양 분야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 (기간) '16~'20 / (예산) 1,308억원 / (주요내용) ①핵심기술 개발(6개 서비스, SW), ②인프라 구축(통신망 : LTE-M, 운영센터 등), ③국제표준 개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86억원(국고: 255억원, 총사업비의 3/4 이내 정부매칭)
- 사업기간 : 2021 ~ 2025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 3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국민 등
- 출연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상디지털 통신연계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0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해상디지털 정보활용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1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해상디지털 민간 자유공모 지원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4)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R&D) (4163-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3	308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R&D)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개발 (R&D)	-	5,469	5,469	7,250		1,781	32.6

4.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미래 해상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스마트 해상물류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항로표지 디지털시설 개발 및 관리 고도화, 新해상교통 인프라 지능화 및 정보서비스 개발
- (**스마트 항로표지 현장 시설 고도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ICT 기술을 융합하여 항로표지 현장 시설 관리 및 점검정비가 용이하도록 항로표지 기자재/시설/장비의 고도화와 항로표지용 멀티모드 통신 기술 개발 지원
- (**해양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협력시스템 개발**) 스마트 항로표지 정보의 수집·통합·분석

및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정보 시스템개발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新개념의 해상 교통환경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 해사안전법 : 제44조(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 항로표지법 :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

② 추진경위

- '19.09 :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 사업기획 착수
- '21.01 : 한국형 e-Navigation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시행
- '21.04 : 스마트 항로표지 및 연계기술 개발사업 실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29억원
- 사업기간 : '21 ~ '25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2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마트 항로표지 현장 시설 고도화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4,50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해양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협력시스템 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 진흥원	2,75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사업기획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5)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4163-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7	27	해사안전국	9	120	126
명칭	교통시설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계정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3	309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사업(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	-	-	-	16,343		16,343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체계종합)** 동 내역사업은 시스템 공학, 시스템 운영·유지·설계·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위성시스템)** 동 내역사업은 위성본체, 항법탑재체, 시각동기 탑재체, SBAS 탑재체, 탐색구조 탑재체, 발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지상시스템)** 동 내역사업은 통합운영센터, 위성관제센터, 안테나국, 감시국, 임무제어국, 통신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사용자시스템)** 동 내역사업은 수신기(연구개발, 감시국, 시험평가, 일반사용자 등)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법령	조항	근거내용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의2 제1항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우주개발사업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이며, KPS 개발 계획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2.)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출연연 등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 실시 가능
	제6조의2 제2항	· 정부는 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 ⇒ 우주개발사업의 정부출연에 대한 법적근거, 이에 따라 동 사업 추진 시 출연 가능
항공우주 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제1항	· 정부는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함 ⇒ KPS의 각 시스템들은 우주비행체 및 항공우주분야 기기류에 해당되므로, 동 사업 관련 시책 추진 가능
	제4조 제3항	· 정부는 동조 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 ⇒ 우주비행체 관련 개발사업의 정부출연에 대한 법적근거, 이에 근거해서도 동 사업에 출연 가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과기정통부장관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 ⇒ 위치정보 관련 기술 및 기기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등의 사업 추진 가능
	제33조 제2항	· 과기정통부장관은 동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지원 ⇒ 위치정보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출연 근거, 이에 근거해서도 동 사업 관련 출연 가능
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제9조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통, 물류, 실내공간 측위체계,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음 ⇒ 국토부에서도 동 조항에 근거하여 공간정보 관련 기술개발 관련 사업 가능
	제13조	· 정부는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동조 제9조 관련 사업의 비용 지원 근거
공항시설법	제43조	·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여야 함 ⇒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로 정의된 위성항법시설(GNSS, SBAS, GBAS)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함에 따라, 동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 가능
항로표지법	제10조	·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신호를 근거로 여러 가지 오차요인을 보정하여 생성하는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해야함 ⇒ KPS용 보정정보를 생성하는 센티미터급 서비스 임무제어국의 설치·운영 및 관련 기술개발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재난 안전 관련 인프라 확충 및 보강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명시, KPS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위성항법신호·탐색구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므로 지원 근거로 활용 가능
수상구조법	제32조	· 해양경찰청장(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선박으로부터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용 조난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에 의거하여 사업 가능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연	월	활동 내역 및 계획
'05	12	**국가 위성항법시스템 종합발전 기본계획(안) 수립** - 국가과학기술위에서 기본계획 수립('05) - 우주개발진흥실무위 산하에 국가위성항법 정책심의 전문위원회 설치·운영('06)
'18	2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
	8	**'18년 사전기획 연구**('18.8.~'19.8.)
'19	11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컨설팅**('19.11~'19.12, STEPI)
'20	3	**KPS 다부처 기획협의회 1차 회의**('20.3.20.)
	4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전공론화 실시**('20.4.24.) - '20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4.24.)에 상정·확정한 「2020년 연구개발 예타 요구예정 대형장기사업 추진계획(안)」에 KPS 계획 반영
	8	**'20년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20.8.14.)
	10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본 예타**('20.10.~)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7,682.5억원
- 사업기간 : '22~'35
- 사업규모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4개 과제('22~'35)
- 사업시행방법 : 출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6,343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 착수단계

단계	수행주체	비고
사업기획보고서	연구책임자(기획위원)	사업의 특성 고려
↓		
국가우주위원회 안건 검토	주관부처(과기정통부)	관계부처 합동 검토
↓		
KPS 개발 사업기획보고서 심의·확정	국가우주위원회	주관기관 적절성 등
↓		
KPS 개발사업단 설치 및 사업착수 준비	주관연구기관	-

○ 사업 협약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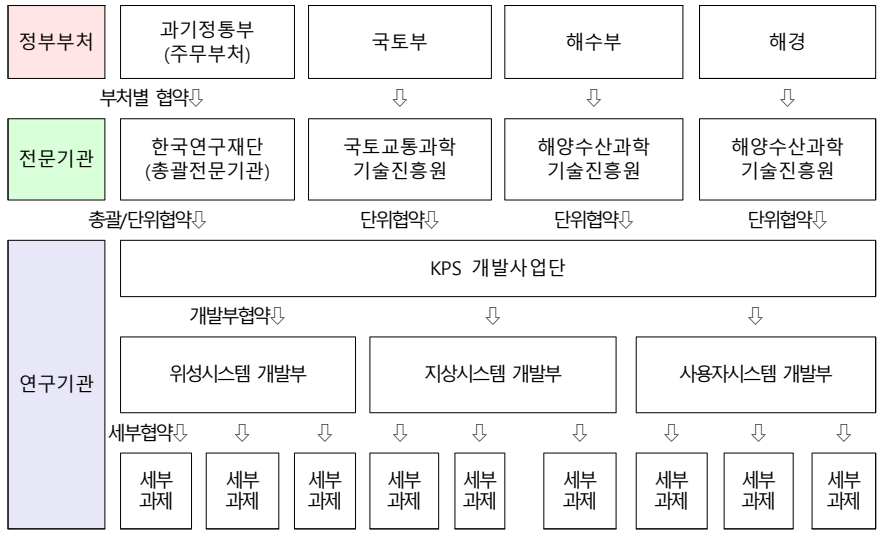

부처 공통 역할 과제의 협약추진(안)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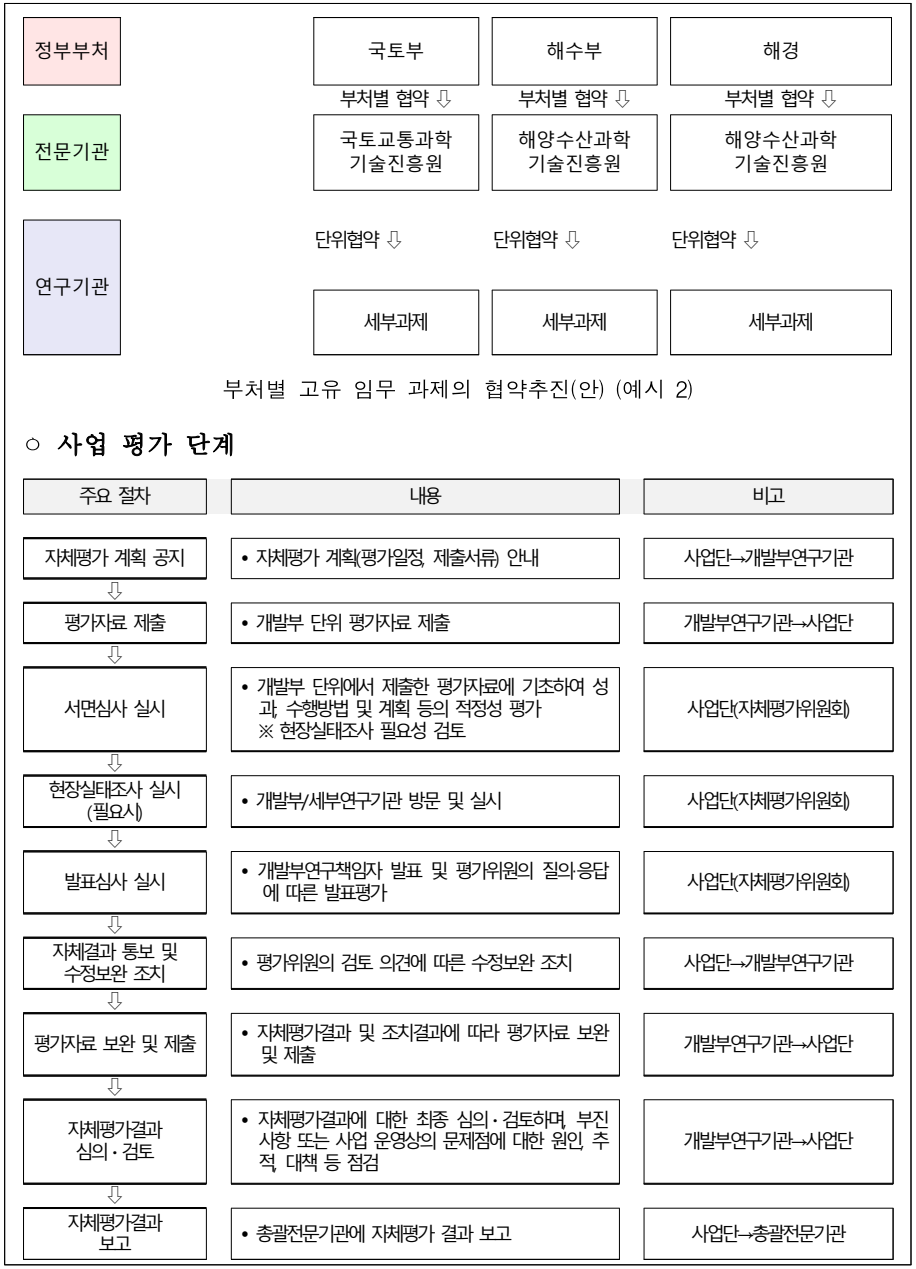

부처별 고유 임무 과제의 협약추진(안) (예시 2)

○ **사업 평가 단계**

주요 절차	내용	비고
자체평가 계획 공지	• 자체평가 계획(평가일정, 제출서류) 안내	사업단→개발부연구기관
⇩		
평가자료 제출	• 개발부 단위 평가자료 제출	개발부연구기관→사업단
⇩		
서면심사 실시	• 개발부 단위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에 기초하여 성과, 수행방법 및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현장실태조사 필요성 검토	사업단(자체평가위원회)
⇩		
현장실태조사 실시 (필요시)	• 개발부/세부연구기관 방문 및 실시	사업단(자체평가위원회)
⇩		
발표심사 실시	• 개발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에 따른 발표평가	사업단(자체평가위원회)
⇩		
자체결과 통보 및 수정보완 조치	• 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에 따른 수정보완 조치	사업단→개발부연구기관
⇩		
평가자료 보완 및 제출	• 자체평가결과 및 조치결과에 따라 평가자료 보완 및 제출	개발부연구기관→사업단
⇩		
자체평가결과 심의·검토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검토하며,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추적, 대책 등 점검	개발부연구기관→사업단
⇩		
자체평가결과 보고	• 총괄전문기관에 자체평가 결과 보고	사업단→총괄전문기관

사 업 명
(16)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R&D) (4163-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 추진단	항만계정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100	4163	312
명칭	해양수산연구개발	해양안전기술개발(R&D)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	-	-	1,937		1,937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통합성능검증을 위한 디지털포트 시뮬레이션·항만-해상 융합 통신 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의 해상 디지털 신기술의 검인증 서비스 제공 및 상용화 지원
- (시뮬레이션 평가기술개발)
  · 성능검증 디지털포트 시뮬레이션 개발
  · 시뮬레이션 플랫폼-해상 디지털기술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 표중 성능평가 및 인증체계 가이드라인 개발
- (실해역 성능검증 기반기술개발)

· 최적 통합 통신기술 개발

· 지능형 통신 네트워크 관리 플랫폼 개발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수산인 등에게 신속하게 이전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② 추진경위

- 관계부처 합동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 ('20. 2. 20., 총리주재 현안점검회의)

· 국제적인 첨단 물류 인프라 테스트베드 구축: 자율운항선박·항만·해사서비스 체계의 연계 테스트 및 국제 인증센터 구축

-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21. 4. 7., 한국판 뉴딜 경제관계장관회의)

· 스타트업의 신규 디지털 서비스 성능검증 지원 추진: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개발하는 디지털 장비·플랫폼의 성능검증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신규 디지털 서비스의 실해역 테스트 지원을 위한 다기종 통신망 최적 통합운영기술 및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 기술 개발

- ('19. 12. ~ '20. 9.) '국제해상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사업 기획연구' 추진

· 개별 추진된 해상디지털 기술 연계·통합 필요성 파악

·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신기술 대응 방안 도출 중심으로 사업 기획

- ('20. 10 ~ '21. 2.) '해상디지털 성능검증 기술개발 사업기획 연구' 추진

·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사업에 민간이 개발한 신기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 성능검증을 위한 기반 기술 마련을 사업 기획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356억원(국고 266억원)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2개 과제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조선소, 기자재 기업 등 조선산업관련 기관, 항만·물류관련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뮬레이션 평가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50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실해역 성능검증기반 기술개발	출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87	10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② 사업시행 공고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해양수산부)
⇩		
③ 협약체결	연구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④ 진도관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진도관리(현장점검 등)
⇩		
③ 최종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④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사 업 명
(17) 부산항 신항만(1단계)(5050-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0	303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부산항 신항만 개발	부산항 신항만(1단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부산항 신항만(1단계)	31,215	34,581	34,581	69,447		34,866	100.8

4. 사업목적·내용

- (개발2단계 준설)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 개장시기('22년)에 맞추어 전면항로구역 수심 적기 확보를 위한 사업임
- (건설사후평가)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예측치와 공사완료 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실제치와의 비교를 통하여 유사한 건설공사 수행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해양수리현상연구)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한 주변 지형의 변화, 항내파랑 등의 조사를 통해 대규모 항만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향후 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 (사후환경영향조사) 동 내역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하는 사업임
- (재해방지시설)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에 매년 발생하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용원수로정비)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인근 지역의 수로정비를 통한 도시환경정비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제작장조성) 동 내역사업은 대규모 항만공사에 필요한 제작장을 조성함으로서, 원활한 진해신항 개발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스마트항만도입연구)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광양항 등 신규개발에 대하여 국내 기술을 통한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기술개발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항로확장 준설사업 보상) 동 내역사업은 토도제거* 등 4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북컨배후단지 정산) 동 내역사업은 북컨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정산대금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부산항 신항 개발 추가보상금) 동 내역상업은 기 추진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 어업보상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정박지 이전 타당성검토) 동 내역사업은 부산 강서구 해태 어업 면허지를 남쪽으로 이설가능 하도록 부산항 신항 정박지 이전 요구에 따른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지반성능 개선연구) 동 내역사업은 항만건설시 연약지반에 따른 침하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약지반 설계·시공·유지관리 방안을 연구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서컨진입도로 지적측량)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서컨 진입도로 건설공사 준공 후 재산취득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임항도로 등 정비) 동 내역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준공 상태로 운영 중인 부산항 신항 내 임항도로 등에 대해 사업 준공 후 관리권 이관을 위한 현황파악 및 인·허가 서류 작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토도 및 신규투기장 사업보상) 동 내역사업은 토도제거* 등 4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동 내역사업은 신항만의 운영 및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방향 수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자의 시행자)
- 대통령 공약사업(33-02-06-5B)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4. 4. : 세계화 중심과제 사업으로 선정(세계화 추진위원회)
- '95. 4. ~ '96.12. : 가덕신항만 기본계획용역 시행
- '96. 7. : 항만기본계획 고시
- '97. 6. : 민자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부산신항만(주))
- '99.11. : 배후철도 기본계획 용역 시행
- '01.11. : 북컨부두(1-1단계)공사 착공(부산신항만(주))
- '02.12. : 부산신항 방파제 축조공사 축조
- '02.12. : 부산신항 진입도로,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공사 착공
- '03. 8. : 북컨부두 배후부지 조성공사(북동호안) 준공
- '03.11. : 북컨부두(2-1단계)공사 착공(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03.12. : 배후도로(1) 턴키공사 착공
- '04. 7. : 견마교 및 다목적 부두 배후부지 착공
- '04.11. : 웅동투기장 호안 준공
- '04.12. : 부산신항 진입철도 및 남컨(2-2단계) 착공
- '05. 1. : 부산신항 북컨(1-2단계)공사 착공
- '05. 1. : 부산신항 남컨(2-3단계) 민자사업 고시
- '05. 3. : 배후도로Ⅱ 민자사업 추진 결정
- '05. 4. : 부산신항 항로준설(1-2단계)공사 착공
- '05. 4. : 배후철도 사업실시계획 인가
- '05.12. : 부산신항 항로준설(1-1단계)공사 및 진입도로Ⅰ 준공
- '06.10. : 북컨 임항도로(2단계) 착공
- '06.12. : 북컨 임항도로(1단계) 및 북컨(1-1단계)공사 준공
- '07. 3. : 연결잔교 및 다목적 부두 준공
- '07. 8. : 부산신항 항로준설(1-3단계)공사 착공
- '08. 2. : 부산신항 북'컨'임항철도 착공
- '08. 5. : 부산신항 주간선도로(견마교) 준공
- '09. 5. : 북'컨'임항도로 및 다목적 부두 배후부지 준공
- '09.10. : 방파제 보강공사 및 남'컨'임항철도 착공
- '10. 9. : 증심준설공사 착공
- '11. 5. : 부산신항 항로준설(1-3단계) 준공

- '12.10. : 부산항 신항 남컨 임항철도 건설공사 준공
- '12.12. :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준설공사 준공
- '13. 7. : 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 '14.12. :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 준설공사 착공
- '15. 4. : 부산신항 북컨임항도로(5단계) 건설공사(잔여분) 착공
- '16. 2. :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투기장 복토공사 착공
- '16. 6. : 부산항 신항 항로확장 준설공사 착공
- '17.10. : 부산항 신항 증심(2단계)준설 공사 준공
- '17.12. : 부산항 신항 항로확장 준설공사 준공
- '18.12. :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투기장 복토공사 준공
- '19. 6. : 부산항 신항 개발(2단계) 준설공사 착공
- '20. 8. :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착공
- '21. 6. :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 '21. 6. : 부산항 신항 개발(2단계) 준설공사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229,713백만원
- 사업기간 : 1995년 ~ 2021년
- 사업규모 : 방파제 1.49km, 호안 20.7km, 연결잔교 300m, 다목적부두 400m, 복토 112만㎡, 해양수리현상 연구개발 1식, 배후수송시설 1식, 준설 1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종사자 및 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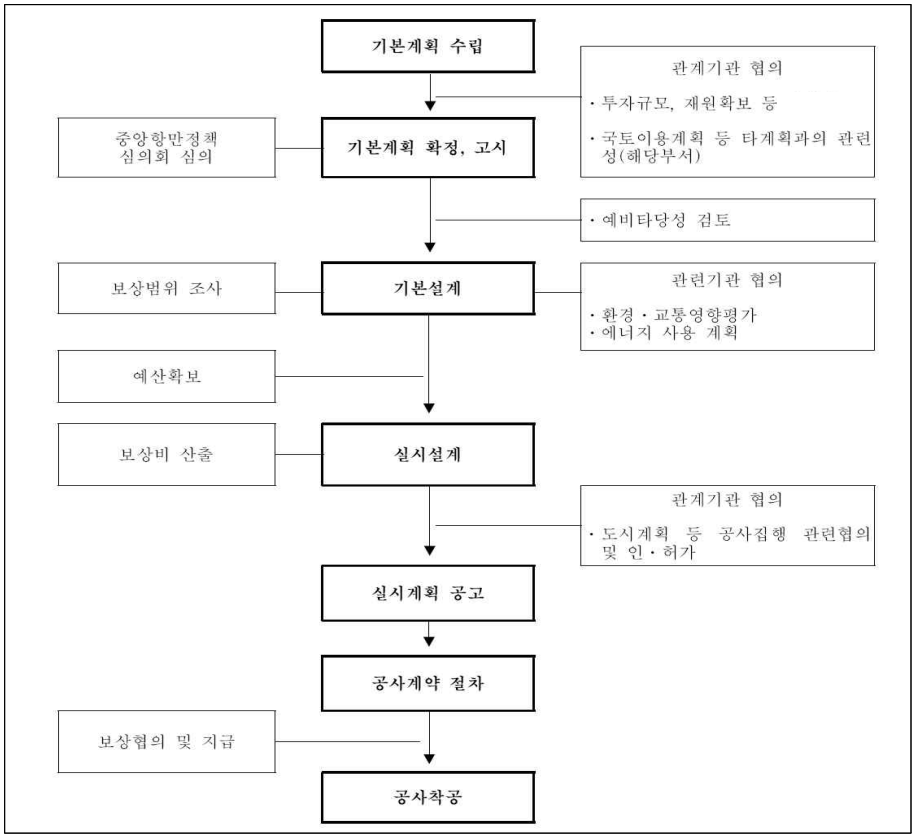

사 업 명
(18) 부산항 제2신항(5050-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0	305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부산항 신항만 개발	부산항 제2신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부산항 제2신항	2,629	1,800	1,800	15,000		13,200	733.3

4. 사업목적·내용

-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구역 전면에 방파제 축조를 통한 정온수역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3구역))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준설토 투기장의 단계별 확보를 통해 부산항 신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소요부지를 적기 공급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구역 전면에 방파호안 축조를 통한 정온수역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송도 준설토투기장 복토) 동 내역사업은 준설토 투기 높이가 해수면 위로 드러남

에 따라 산소공급 등으로 해충이 급격히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천적인 해충방지를 위한 사업임

- (진해신항 어업보상)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의 적기 이행을 위한 어업보상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 (제2신항 ITT구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터미널간 물류흐름 개선, 운송시간 단축을 위한 ITT(터미널간 화물운송)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산항의 대외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 (건설사업 기록물 관리방안연구) 동 내역사업은 진해신항 착공 등 신항 개발사업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신항 기록물 발간, 진해신항 착공식(각종 기념행사) 등 추진방안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제2신항 개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연구) 동 내역사업은 진해신항 개발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여 항만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서컨부두 교통개선대책연구)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 확장(2-5단계, 2-6단계, 배후단지 등)에 따라 배후시설 및 교통시설 등의 유기적인 도입이 필요하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송도(섬)로 인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 (진해신항 세부 추진전략 타당성 검토연구) 동 내역사업은 진해신항 세부 추진전략 수립을 마련하여 사업주체·사업목적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진해신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자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6. 9. : 항만기본계획 고시
- '19. 8. :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 고시
- '19. 8. :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 '20. 3. : 부산항 신항 송도투기장 복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4. : 예비타당성 조사 재시행

- '21. 6. : 부산항 신항 송도투기장 복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2,054,303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40년
- 사업규모 : '컨'부두 21선석, 방파제 3.2㎞, 호안 15.3㎞, 진입도로 4.4km, 준설 1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종사자 및 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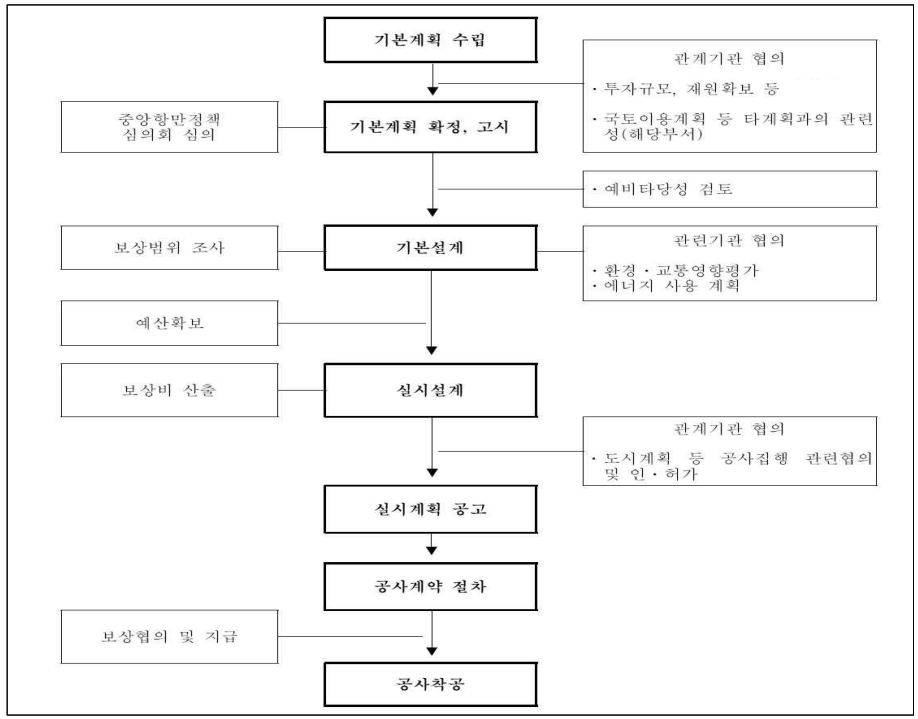

사 업 명
(19) 부산항 신항만 남컨배후단지(5050-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0	308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부산항 신항만 개발	부산항 신항만 남컨배후단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부산항 신항만 남컨배후단지	20,977	16,407	16,407	28,254		11,847	72.2

4. 사업목적·내용

- (남컨 배후단지(1공구))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남'컨'부두를 경유하는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어 부족한 물류·제조시설 및 지원시설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남컨진입도로)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 개장에 따른 부산항 신항 남컨 항만배후단지와 국지도 58호선을 연결하여 이동거리 축소, 물류비용 절감, 교통량 분산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자의 시행자)
- 대통령 공약사업(33-02-06-5B)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1. 7. : 항만기본계획 고시
- '12. :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예산처)
- '13. 5. : 남컨항만배후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4.12. : 남컨항만배후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6. 1. : 남컨배후단지(1공구) 조성공사 착공
- '19. 7. : 남컨 진입도로 건설공사 착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368,033백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21년
- 사업규모 : 배후부지 조성 144만㎡(정부 42만㎡, BPA 102만㎡), 진입도로 0.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종사자 및 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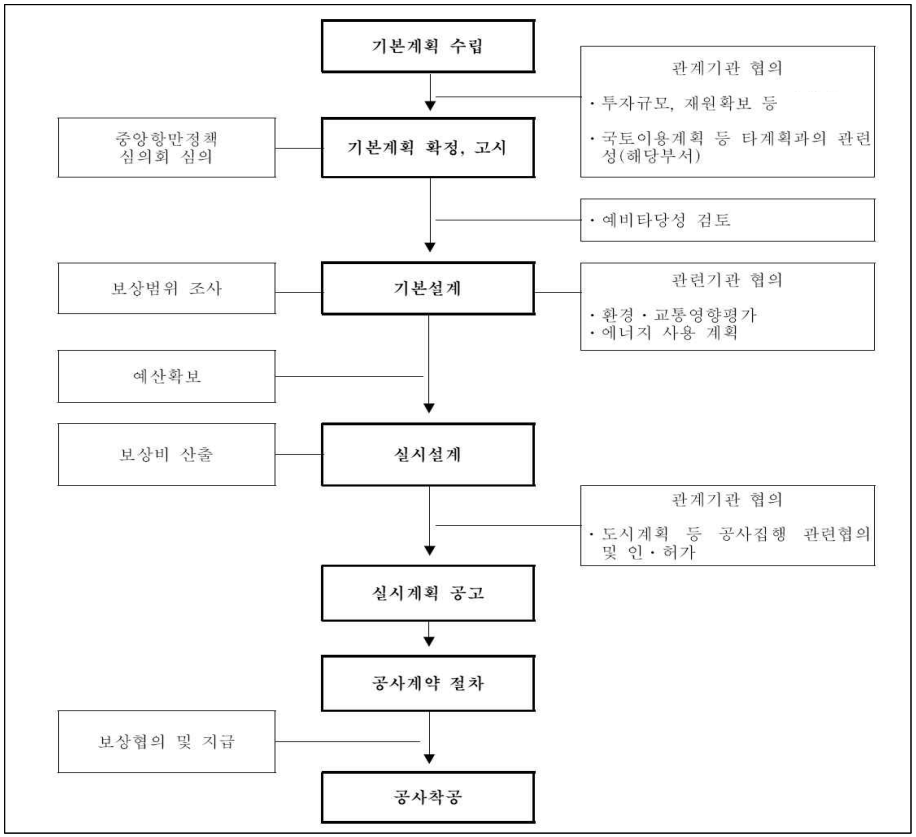

사 업 명
(20)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5050-31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0	314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부산항 신항만 개발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14,998	31,448	31,448	8,000		△23,448	△74.5

4. 사업목적·내용

- (소형선부두)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내 기존 소형선부두의 접안능력(29척) 대비 장래 필요 소형선부두 수요증가('30년, 104척)에 대비하여 추가 개발하기 위한 사업임
- (제덕외 3개 물양장) 동 내역사업은 부산항 신항 개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어항시설 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 주민시설 확충하기 위한 사업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자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6. 9. : 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 '18.10. : 소형선부두 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18.11. : 제덕 외 3개 물양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9. 2. : 소형선부두 축조 공사 착공
- '20. 3. : 제덕 외 3개 물양장 정비공사 발주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65,2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3년
- 사업규모 : 부두 축조 0.83km, 물양장 정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종사자 및 지역 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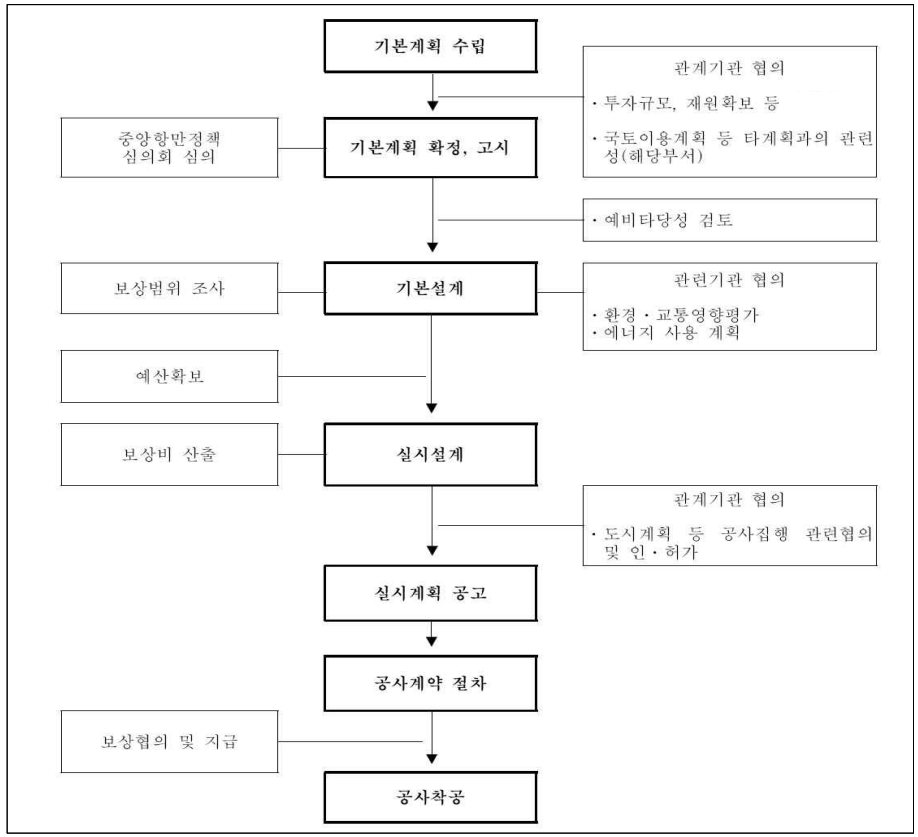

사 업 명
(21) 광양항(3단계) (505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1	302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광양항 개발	광양항(3단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5%~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광양항(3단계)	26,568	57,012	57,012	120,280		63,268	111.0

4. 사업목적·내용

- (특정해역 암초제거)
  · 광양항 특정해역 내 충돌사고 위험 요소인 암초를 제거하여 입항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만 인프라 대외 경쟁력을 제고
- (광역준설토투기장 조성)
  · 광양항 수역시설 정비 시 발생되는 준설토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신규 투기장 건설
- (친수시설 부지조성)
  ·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
- (율촌1산단 준설)
  ·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
- (동서측 배수로 정비)

  · 광양항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
- (성황고가교 건설)
  ·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촉진과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동측배후부지와 성황지구 연결도로 개설
- (배후도로 확포장)
  · 광양항 물동량 증가 등에 따른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 (율촌산단간 연결도로)
  · 율촌지구 항만재개발 및 율촌 2·3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물동량 및 교통량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
- (배후단지 확대)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가 '20년 입주 완료 예정임에 따라 배후단지 추가확보
- (북측배후단지 조성)
  · 광양항에 기 조성된 북측 배후단지가 2020년 입주 완료 예정에 따라 추가 배후단지 조성
- (마린베이 조성사업)
  · 광양항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서 소외된 유휴부지를 정비하여 주변 지역과 연계한 항만 친수공간 조성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4선석)에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자동화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한국판 뉴딜)

6.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의 시행자)
『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85. 11 : 항만시설 지정공고
- 1993. 09 : 항계밖정박지(D-1) 최초지정
- 2001. 12 : 항만기본계획고시
- 2002. 11 : 3단계 준설토투기장 가호안(1공구/22.1km) 축조공사 착공
- 2003. 10 : 중마일반부두(420m) 축조공사 착공(2008.11. 준공)
- 2007. 04 : 율촌산단 일반부두 착공(2010.11. 준공)
- 2010. 12 : 3단계 준설토투기장 가호안(1공구/22.1km) 축조공사 준공
- 2011. 7 : 제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 2011. 11 : 서측배후단지 1공구(107만㎡) 준공
- 2012. 1 : 배수로정비공사 착공(2014.11. 준공)
- 2012. 6 : 서측배후단지 2공구(87만㎡) 준공
- 2013. 12 : 광양항 공컨테이너 장치장 준공

- 2015. 1 :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16. 9 :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공사 착공(2019.6 준공)
- 2018. 3 : 광양항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 착공
- 2019. 1 : 광양항 성황고가교 건설공사 착공
- 2020. 11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착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93,074백만원(특정해역 암초제거),
  386,441백만원(광역준설토투기장)
- 사업기간 : '01 ~ 계속
- 사업규모 : 호안 57.1km, 일반부두 630m, 여객/위그선부두 240m, 배수로정비 1식,
  준설 1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사업시행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배후도로 확포장	보조	지자체 보조	1,926	38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4조 제2항
북측배후단지 조성	보조	여수광양항만공사	2,500	25	「항만법」 제80조 제1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보조	여수광양항만공사	4,599	5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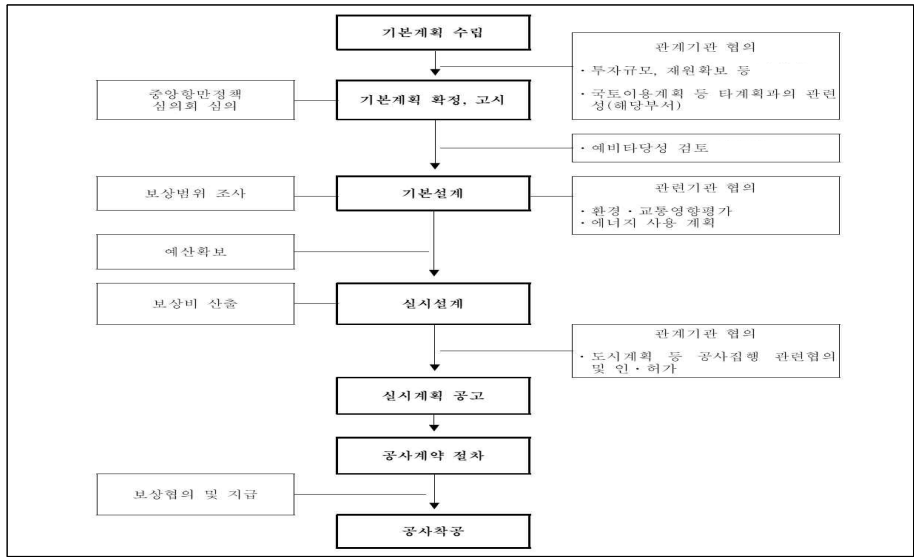

사 업 명
(22) 평택・당진항 (505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2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평택・당진항 개발	평택・당진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평택・당진항	23,701	18,178	18,178	16,369		△1,809	△10.0

4. 사업목적·내용

-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당진(신평) - 평택(내항)간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항만경쟁력 제고
- (내항동부두 보장사용료 수입)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2조에 따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 항만배후단지 인근 침수예방 등 배수로 기능 강화
- (국도38호선 연결도로) 신국제여객부두~국도38호선간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통행 안전성 확보
- (항만배후단지 제2연결교량) 38번 국도에서 항만배후단지 2-1단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 (사후환경영향조사) 평택·당진항 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 (파제제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파제제 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 (수리현상조사) 평택·당진항의 단계별 개발 사업에 따른 수리적 변화를 파악
- (평택·당진항 외곽시설 안전성 검토) 평택·당진항 외곽호안 및 준설토 투기장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내부가호안 설치 등 시설물 보완방안 모색
- (평택·당진항 개발 사후평가)「건설기술진흥법」제52조에 따라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사후평가서의 작성
-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환황해권 거점항만 도약하기 위한 평택·당진항 마스터플랜 수립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79. 12. 14 : 산업입지 개발구역 지정
- '86. 12 : 아산항 지정·고시(항만청)
- '87. 11. : 대통령 공약사업
- '89. 05 ~ '98. 12 : 아산항 Ⅰ단계 개발사업 추진
- '95. 08. 29 :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 실시
- '95. 12. 9 ~ '97. 10. 26 : 아산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 '96. 09. 14 : 아산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양부 고시 제1996-2호)
- '97. 04. 17 ~ '98. 5. 26 : 아산항 2단계 개발사업 추가과업 실시설계용역
- '97. 05. 20 : 아산항(Ⅱ단계 개발사업) 서부두 잡화부두 2선석(#6,7) 착공
- '98. 07. 01 : 아산항(Ⅱ단계 개발사업) 외곽호안(1공구) 착공
- '01. 08. 08 : 아산항(Ⅱ단계 개발사업) 서부두 잡화부두 2선석(#6,7) 준공
- '01. 08. 20 : 동부두 '컨'부두 3선석(#6,7,8) 착공
- '01. 09. 10 : 평택(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정비용역
- '01. 12. 15 : 제2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고시(해양부 고시 제2001-135호)
- '02. 12. 24 : 외곽호안(1공구) 준공
- '03. 02. 13 : 국제여객부두 2선석 착공
- '03. 11. 10 : 배수로 정비 착공
- '03. 12. 12 : 외곽호안(2공구) 착공
- '05. 02. 02 : 내항투기장 가호안(1단계) 착공
- '05. 02. 12 : 국제여객부두 2선석 준공

- ‘05. 05. 09 : 남측호안 철거 착공
- ‘05. 12. 28 : 배수로 정비 준공
- ‘06. 02. 13 : 서부두 시멘트부두 1선석(#1) 착공
- ‘06. 12. 27 : 제2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무역항) 고시(해양부 고시 제2006-91호) 및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해양부 고시 제2006-96호)
- ‘07. 02. 02 : 내항투기장 가호안(1단계) 준공
- ’07. 04. 23 : 고대부두 공용부두(1공구) 1선석(#7) 착공
- ’07. 05. 03 : 동부두 자동차부두 1선석(#2) 착공
- ’07. 05. 31 : 송악부두 현대제철 철재부두 1선석(#4) 준공
- ’07. 06. 22 : 서부두 잡화부두 2선석(#4,5) 준공
- ’07. 07. 03 : 서부두 양곡부두 2선석(#8,9) 착공
- ’07. 07. 31 : 동부두 자동차부두 2선석(#4,5) 준공
- ’07. 09. 01 : 고대부두 동국제강 철재부두 1선석(#8) 착공
- ’07. 11. 02 : 서부두 시멘트부두 1선석(#2) 착공
- ’08. 07. 01 : 남측호안 철거 준공
- ’08. 09. 05 : 관리부두(당진측) 착공
- ’09. 04. 26 : 고대지구 현대제철(10만, 20만톤급) 2선석(#4,5) 준공
- ’09. 08. 17 : 고대지구 동부제철(5만톤급) 3선석(#2,3,4) 준공
- ’09. 08. 31 : 고대지구 동국제강(5만톤급) 1선석(#9) 준공
- ’09. 10. 31 : 고대지구 현대제철(5천톤급) 1선석(#1) 준공
- ‘10. 02. 17 : 고대지구 공용부두(2공구) 1선석(#8) 착공
- ‘10. 04. 19 : 서부두 시멘트부두 1선석(#3) 착공
- ‘10. 05. 28 : 동부두 3선석(#14,15,16) 준공
- ‘10. 07. 05 : 서부두 시멘트부두 1선석(#1) 준공
- ‘10. 09. 08 : 서부두 시멘트부두 1선석(#2) 준공
- ‘10. 09. 28 : 항만배후단지(1단계) 준공
- ’10. 12. 10 : 동부두 자동차부두 1선석(#2) 준공
- ‘11. 04. 01 : 내항투기장(2단계) 가호안 착공
- ‘11. 05. 19 : 고대지구 공용부두(1공구) 1선석(#7) 준공
- ’11. 06. 08 : 관리부두(평택측) 착공
- ’11. 06. 13 : 관리부두(당진측) 준공
- ‘11. 07. 01 : 서부두 양곡부두 2선석(#8,9) 준공
- ’12. 03. 30 : 서부두 시멘트부두 1선석(#3) 준공
- ’12. 07. 26 : 모래부두 7선석 준공
- ‘12. 12. 31 : 현대제철부두 철재 3선석(#8,12,13) 준공
- ‘13. 02. 28 : 항로확장 준설공사 준공

- ‘13. 03. 29 : 화객처리시설 축조공사 준공
- ‘13. 12. 24 : 고대지구 공용부두(2공구) 1선석(#8) 준공
- ‘14. 10. 20 : 관리부두(평택측) 축조공사 준공
- ‘14. 12. 11 : 현대제철 A지구 추가부두(#14) 축조공사 착공
- ‘15. 01. 28 : 자동차전용부두(동부두#1) 건설공사 착공
- ‘15. 10. 31 : 액체화물부두(고대지구 #10) 건설공사 준공
- ‘16. 10. 30 : 현대제철 A지구 추가부두(#14) 축조공사 준공
- ‘17. 05. 26 : 해경부두 축조공사 축조공사 준공
- ‘17. 12. 29 :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해양부 고시 제2017-180호)
- ‘18. 01. 27 : 자동차 부두(동부두 #1) 건설공사 준공
- ‘18. 10. 22 : 항만배후단지 연결교량 건설공사 준공
- ‘19. 02. 18 : 배수로 정비공사 착공
- ‘19. 06. 24 : 내항 외곽시설 보강공사 준공
- ‘19. 07. 26 : 도선정계지 남방파제 축조공사 착공
- ‘20. 06. 01 : 파제제 건설공사 준공
- ‘20. 12. 16 : 도선정계지 남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 ‘21. 6. 28 :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착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9 ~ ’30
- 사업규모 : 안벽 73선석 및 임항교통시설 17.6km, 항만배후단지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 운영업체·운송종사자 등 전 항만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내항동부두 보장사용료 수입	보조	평택·동방아이포트(주)	3,000백만원	실시협약 제52조에 의거 추정사용료수입의 운영개시일부터 운영5년차 : 85% 운영6차년도부터 10차년도 : 75% 운영11차년도부터 15차년도 : 65%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민자사업 실시협약

7. 사업 집행절차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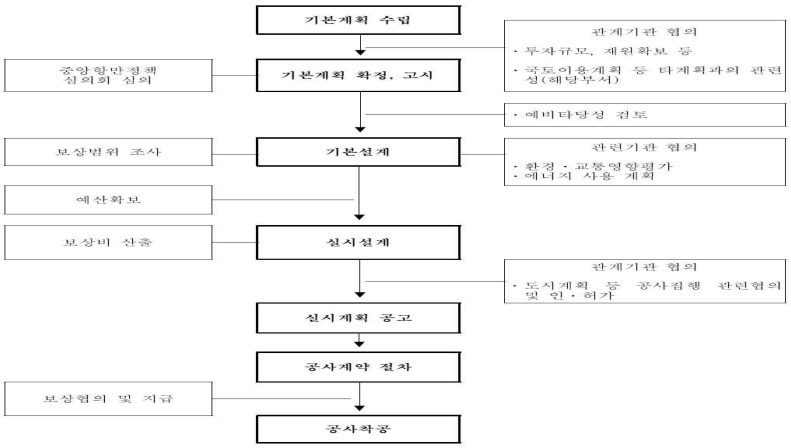

사 업 명
(23)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505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2	301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평택·당진항 개발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평택·당진항	22,497	34,891	34,891	70,996		36,105	103.2

4. 사업목적·내용

- (국제여객부두 건설) 대중국 화물 및 여객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시설부족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공
-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노후화된 터미널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06. 1 :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사업 계획수립
- '08. 6 : 예비타당성조사용역(KDI)
  · B/C 0.96, AHP 0.518
- '09. 6 ~ '10. 2 :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 '10. 12 : 민자사업 → 재정사업 전환
  * 평택시 반대(신규 건설 반대, 기존 시설 증축), 금융위기로 민자사업 여건 악화
- '12.02 : 재정사업→민자사업 재전환
- '13.08 : 민간투자사업 시설기본계획 고시
  * 1단계 서류마감(8.13~9.12) 결과, 사업신청법인이 없어 2단계 진행 불가
- '13.10 : 관련기관, 업·단체 간담회 개최
- '13.12 : 민간투자사업 시설기본계획 재고시
  * 1단계 서류마감('13.12.30~'14.1.29) 결과, 사업신청법인이 없어 2단계 진행 불가
  *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후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민자사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민자사업 지정취소 등 후속조치 추진
- '14. 2. 28 : 기재부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요청
- '14. 6. 20 : 민투심 사업소위원회 개최
  * 2차례 고시에도 사업신청 법인이 없어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
  *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안에 위원 전원이 동의하고 의결
- '14.07.29 : 민간투자사업 지정 취소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82호)
- '15. 5 ~ '17. 2 :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17. 1 ~ '17. 8 : 수요예측재조사
- '17. 7 ~ '17. 12 :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 '18. 5 :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착공
- '18. 7 :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12. 23. : 국제여객터미널 설계용역 완료
- '21. 4 ~ '21. 11. : 터미널 실시설계결과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020억원
- 사업기간 : '15 ~ '23
- 사업규모 : 30,000GT급 4선석, 터미널 1동, 부지조성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운송종사자 및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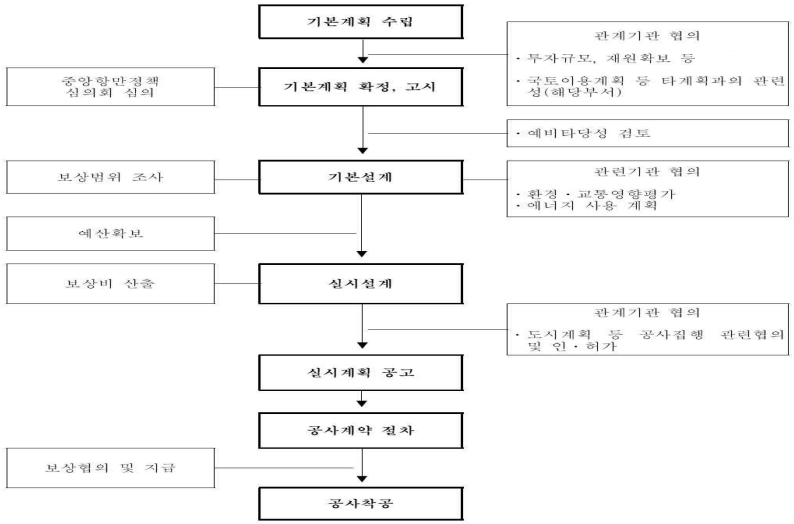

사 업 명
(24) 인천북항 (505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3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인천북항 개발	인천북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인천북항	57,419	41,503	41,503	36,612		△4,891	△11.8

4. 사업목적·내용

- (민자부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사회기반시설(항만)의 개발을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 운영수입 부족액 정부 지원
-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상부시설 조성공사) 여건변화로 항만기능을 상실한 북성포구를 매립, 종합적으로 재정비, 항만과 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 (북항(북측) 배후단지 조성공사) 물동량 증가 대비 항만배후단지 공급 부족에 따른 인천항의 물류부지 부족해소를 위해 인천북항 배후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 인천북항 저수심 구간 적정수심(DL(-)12m) 확보를 위한 준설로 이용선박의 통항시간 확대 및 안전성 확보
- (영종도 2단계 투기장 사후환경) 투기장 조성 공사 준공 후 운영시에 발생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을 파악하여 환경피해 예방
- (해양수리현상조사 및 이용고도화) 1단계('11~'16년) 수리현상 조사용역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해양관측・수심측량을 통한 인천항의 장기적인 수리현상 축적・보존 및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영종도 2단계 투기장 사후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의 작성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95. 4.17 : 항만기본계획 고시
- '97.12 ~ '00.12 : 북항 준설토투기장(1,2공구) 축조공사 시행
- '99. 3.31 :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정 고시
- '01. 7. 9 ~ '04. 8. 8 :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시행
- '02. 4.29 ~ '04. 5. 5 : 관공선부두 축조공사 시행
- '03. 3.10 ~ '06.12.15 : 철재부두 민자사업 3선석 시행(동국 1, 현대제철 2)
- '03. 6.10 ~ '07.12.14 : 목재부두(2선석) 축조공사 시행
- '03. 8.20 ~ '08. 2.12 : 일반부두 민자사업 3선석 시행(동부)
- '04. 5.24 ~ '10.12.23 : 목재 및 잡화부두 2선석 시행(인천북항부두운영사업단)
- '05. 2.25 ~ '09. 2.28 : 일반잡화부두 1선석 시행(선광)
- '05.11.15 ~ '09. 5.14 : 일반잡화부두 민자사업 3선석 시행(인천북항부두운영)
- '06. 9.29 ~ '09.12.21 : 일반잡화부두 2선석 시행(인천북항벌크터미널)
- '06.12 :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반영
- '07. 5. 1 ~ '09.12.23 : 일반잡화부두 1선석 시행(한진인천북항운영)
- '07. 7.10 : 신항만 예정지역 변경 고시
- '10. 4. 5 ~ '10.12.30 : 영종도투기장 호안 증고 시행
- '11. 7. : 제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 '11. 3. 7 ~ '12.10.10 : 인천북항 배후단지 조성공사 시행
- '13. 8.21 ~ '17. 3.20 :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시행
- '14. 6.20 : 인천북항 항로준설공사 준공

- ‘15.10.22 ~ ’19. 1.31 : 남청라 및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공사 시행
- ‘18. 8. 1 :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착공
- ‘18. 9.17 ~ ’20. 9.13 : 인천북항(북측) 배후단지 조성공사 시행
- ’20.12.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 ‘21. 5.10 : 인천항 제1항로 북측구간 준설공사 착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조 1,465억원(재정 1조 2,922억원, 민자 8,543억원)
- 사업기간 : ‘96 ~ 계속
- 사업규모 : 호안 12.8km, 배후시설 6.78km, 관리부두 1식 및 목재부두 2선석(450m), 안벽 15선석(3.84km), 항만배후단지 1식, 부지조성 및 준설 1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민자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운송종사자 및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천북항 민자부두 운영수입보장	보조	동원로엑스인천(주)	27,311	100	-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 민자사업 실시협약
	보조	인천북항부두운영(주)	2,689	100	-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 민자사업 실시협약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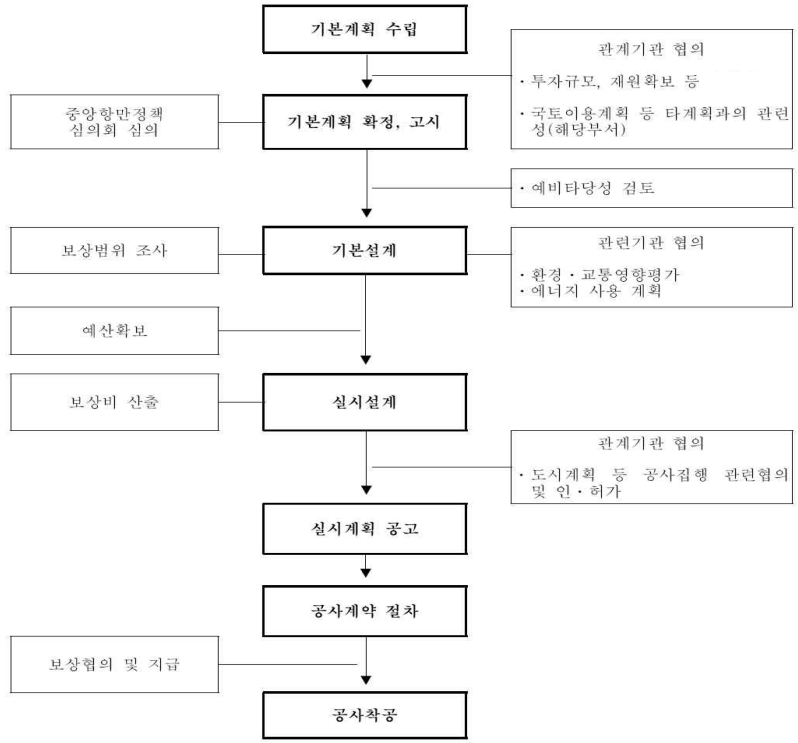

<민간자본보조>

사 업 명
(25) 인천신항 (505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4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인천신항 개발	인천신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인천신항	97,963	110,922	110,922	49,700		△61,222	△55.2

4. 사업목적·내용

- 인천신항을 종합물류 기능을 갖춘 비즈니스 거점항만으로 개발
-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 강화
- (인천신항 신규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인천신항 개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준설토 수용을 위한 신규 준설토투기장 확보
- (인천신항 항로 연장 및 증심준설) 인천신항 I-2단계 '컨'부두 개발 대비 선박통항을 위한 계획수심(-16m) 및 안전성 확보
- (항로증심 준설 사후환경(운영시)) 증심준설 공사 준공 후 운영시에 발생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을 파악하여 환경피해 예방
- (인천신항 신규투기장 사후환경(운영시)) 신규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준공 후 운영시에 발생

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을 파악하여 환경피해 예방
- (인천신항 신규투기장 사후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신항 신규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의 작성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99.11. : 수도권항만 기능 정립・재정비 계획수립
- '01.12. : 전국무역항 항만기본 계획고시('06.12. 계획변경)
- '04. 5. : 인천신항 예비타당성조사('07.7. 타당성재조사)
- '05. 4.~'06.12. : 인천신항 기본설계용역 시행
- '07. 7. : 신항만기본계획 및 신항만예정지역 고시
- '07.10.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계류시설 및 부두가호안 등)
- '09. 2.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진입도로)
- '09. 4. : 컨테이너부두 1-1단계 하부공 축조공사 착공
- '09.12. :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공사(1공구) 준공(착공 '07.12)
- '11. 7. :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고시
- '13. 3. :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 '13. 4. :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공사(2공구) 준공(착공 '09.11)
- '13. 5. : 관리부두 준공(착공 '09. 6)
- '13. 7. : 컨테이너부두 1-1단계 상부공 축조공사 착공
- '14. 4. : 진입항로 준설공사 준공(착공 '11. 4)
- '15. 4. : 신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준공
- '15. 6. : 컨테이너부두 1-1단계 B터미널 부분(410m) 개장
- '15.10. : 인천신항 관리부두 전기공사 준공
- '18.12. : 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 준공(착공 '16. 1)
- '19. 3. : 신항 신규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착공
- '20.12.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조 4,320억원(재정 2조 5,204억원, 민자 1조 9,116억원)
- 사업기간 : '05 ~ 계속
- 사업규모 : 호안 10.2km, 관리부두 1식, 진입도로 6.8km(교량 431m), 안벽 6선석, 부지 조성, 준설 및 매립 1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민자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운송종사자 및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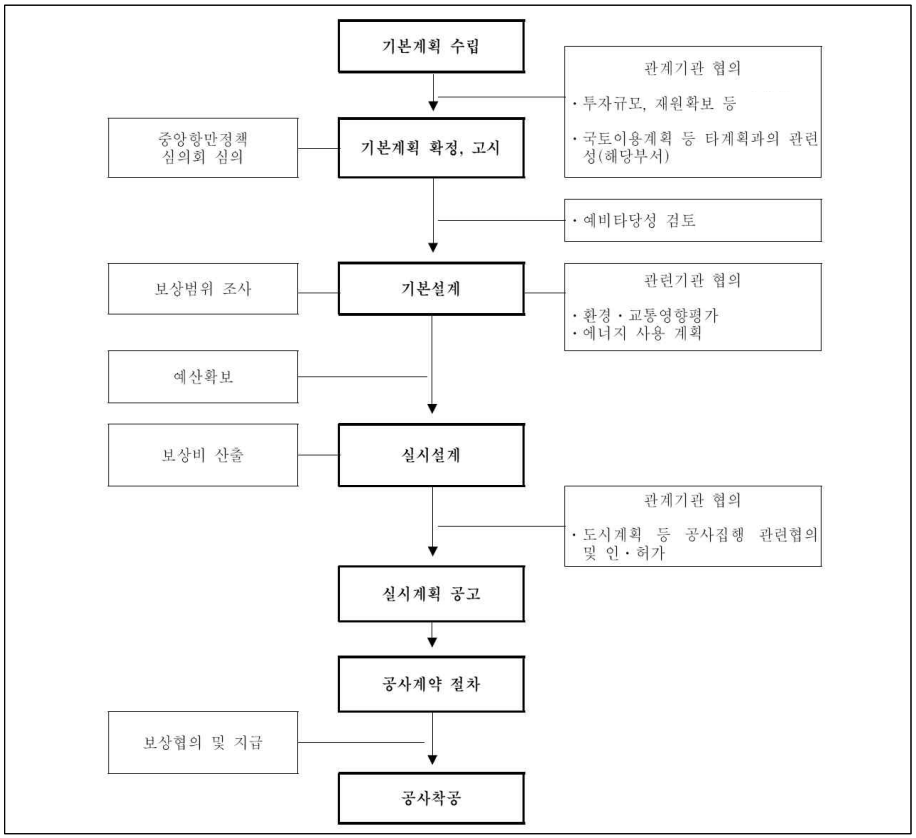

사 업 명
(26) 목포신항 (505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5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목포신항 개발	목포신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목포신항	26,364	44,742	44,742	36,924		△7,818	△17.5

4. 사업목적·내용

- (예부선부두 건설) 목포북항은 내항시설의 기능이전 및 기타선의 접안·장기체류 등으로 인해 어선 접안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북항의 혼잡도 해소 및 목포항 기능 재정립을 위한 예·부선 전용 계류장 조성

- (자동차부두 건설) 수출자동차의 원활한 처리와 증가되는 자동차 환적물량 처리를 위한 자동차 전용부두 확충

- (대체진입도로 건설) 목포신항의 물류비용감소와 진입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체진입도로 건설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1993. 11 ~ '94. 12 : 목포항 광역개발계획 수립
- 1998. 10 : 1단계 정부사업(양곡부두) 실시계획 고시
- 2000. 12 : 진입도로 및 교량 완공
- 2001. 1 : 목포신항 다목적부두(민자사업 1-1단계) 착공
- 2001. 8 : 목포신항 양곡부두(재정사업) 착공
- 2002. 2 : 목포신항 다목적부두(민자사업 1-2단계) 착공
- 2003. 12 : 목포신항 양곡부두(재정사업) 준공
- 2004. 5 : 목포신항 다목적부두(민자사업) 3선석 준공
- 2004. 12 : 목포신항 안벽(3선석) 가호안 축조공사 착공
- 2008. 12 : 목포신항 안벽(3선석) 가호안 축조공사 준공
- 2009. 5 : 목포신항 연결도로 및 호안축조공사 착공
- 2011. 9 :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축조공사 착공
- 2011. 12 : 목포신항 연결도로 및 호안축조공사 준공
- 2012. 3 : 목포신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착공
- 2012. 6 : 목포신항 석탄부두축조공사 및 소형어선 접안시설축조공사 착공
- 2015. 4 : 목포신항 자동차부두 축조공사 준공
- 2015. 12. : 목포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및 석탄부두 축조공사 준공
- 2016. 7. : 목포신항 소형어선 접안시설 축조공사 준공
- 2017. 6. :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18. 12. :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건설공사 착공
- 2019. 8.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 고시
- 2020. 12.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 2021. 7. :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1993 ~ 계속
- 사업규모 : 안벽 9선석, 배후도로 5.7km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 이용자 등(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민자사업 운영수입 보장금	보조	목포신항만(주), 제2목포신항만(주)	8,457	100%	·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 민자사업 실시협약 제50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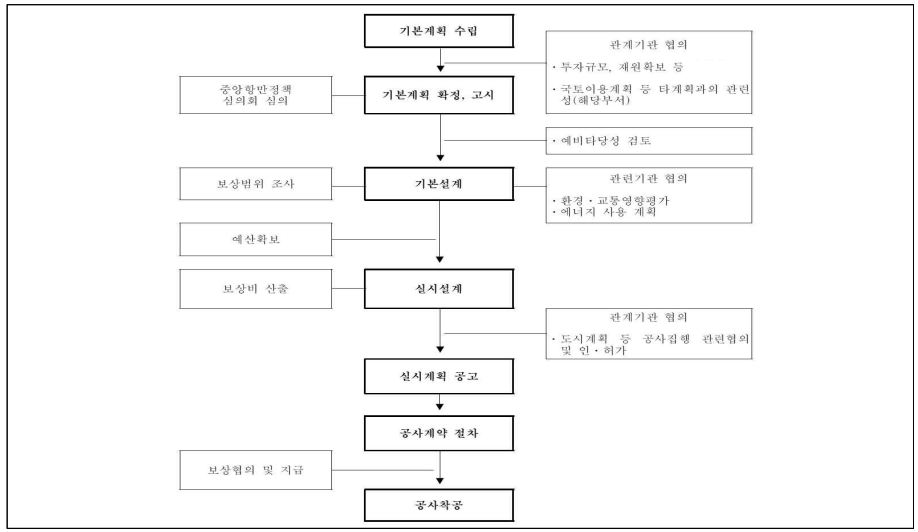

사 업 명
(27) 포항영일만신항 (5056-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6	301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포항영일만항 개발	포항영일만신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포항영일만신항	23,692	20,499	20,499	26,470		5,971	29.1

4. 사업목적·내용

-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18. 6.14.)에 따라 지급하는 포항영일만항 민자'컨'부두 정부지급금
- (포항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 : 급변하는 치안환경 대응을 위한 동해안 전략거점 부두 확보로 항만 경계 강화 및 이용성 효율 증대
-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축조) :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한 환동해 해양관광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1992. 4 ~ 1993. 5 : 포항항 광역개발 타당성 조사 시행
- 1995. 4 : 항만기본계획고시
- 1996. 2 :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재경원)
- 2001. 4 :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변경고시
- 2001.10 : 민자유치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림산업(주) 등 7개사)
- 2004. 6 :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 2005. 8 : 민자사업(컨부두 4선석) 착공
- 2005.12 : 북방파제 1단계(3.1㎞) 준공
- 2009. 8 : 민자사업(컨부두 4선석) 준공
- 2010. 5 :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12 :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공사 착공
- 2011. 6 : 남방파제(1.3km) 착공
- 2012.12 : 북방파제 2단계(1.0km) 준공
- 2013. 5 :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0.23km) 착공
- 2015.12 : 남방파제(1.3km) 준공
- 2015.12 :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0.23km) 준공
- 2016.05 :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단계1공구) 상부기반시설공사 준공
- 2016.08 :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공구) 상부기반시설공사 착공
- 2017.09 :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 착공
- 2018.12 : 포항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공구) 상부기반시설공사 준공
- 2020.11 :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786억원
- 사업기간 : 1992~2030
- 사업규모 : 민자분담금 1식, 항만배후단지 1,264천㎡, 국제여객부두 310m, 해경부두 640m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관계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포항 영일만신항	보조	포항영일신항만㈜	6,498	-	·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 민자사업 실시협약 제50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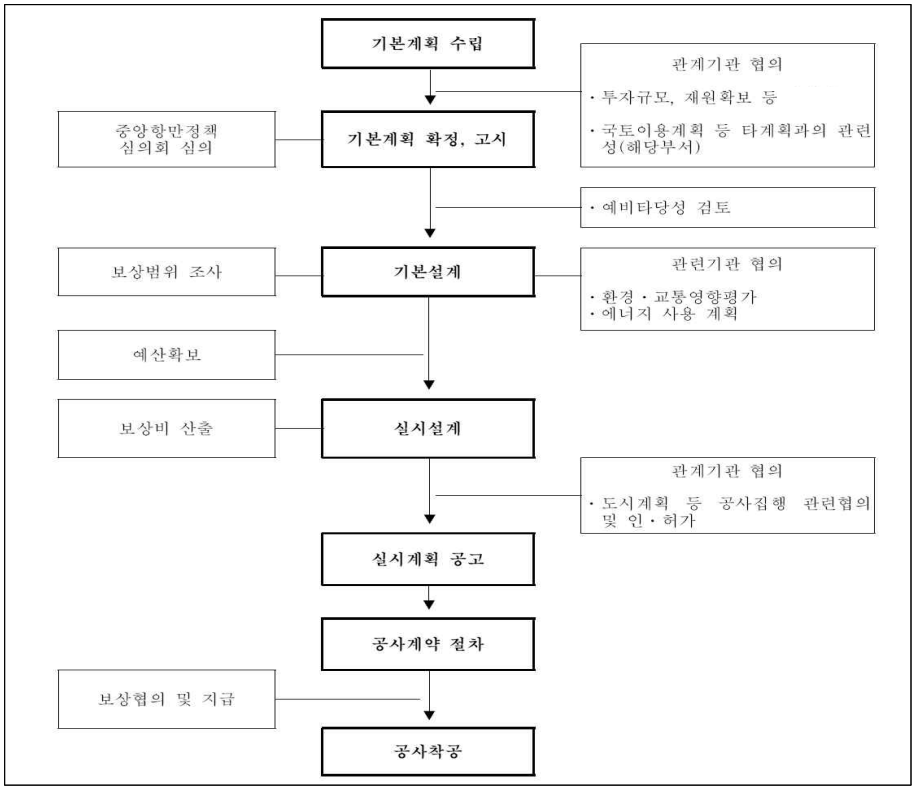

사 업 명
(28)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5060-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6	302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포항영일만항 개발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	-	-	100		100	순증

4. 사업목적·내용

- (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축조) : 포항영일만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해 남방파제(2단계) 축조 필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1992. 4 ~ 1993. 5 : 포항항 광역개발 타당성 조사 시행
- 1995. 4 : 항만기본계획고시
- 1996. 1 : 환경영향평가 완료

- 1996.12 : 어항 및 기타(방파제) 시설공사 착공
- 1997. 8 : 북방파제 건설공사 착공
- 1997. 9 :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1.12 : 어항 및 기타(방파제) 시설공사 준공
- 2003. 5 : 일반부두(1-1단계) 기본설계용역 완료
- 2005. 3 : 영일만항 어항부두 축조공사 착공
- 2004. 8 : 일반부두(1-1단계)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5. 3 : 영일만항 어항부두 축조공사 준공
- 2005.12 : 북방파제(3.1km) 준공
- 2006. 4 : 영일만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착공
- 2006. 8 : 영일만항 어항부두 축조공사 준공
- 2008. 6 : 영일만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준공
- 2009. 5 : 일반부두(1-1단계) 축조공사 착공
- 2010. 3 : 영일만항 북방파제(2단계, 1.0km) 축조공사 착공
- 2011. 6 :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3km) 축조공사 착공
- 2012. 2 : 일반부두(1-1단계) 축조공사 준공
- 2012.12 : 영일만항 북방파제(2단계,1.0km) 축조공사 준공
- 2015.12 : 남방파제(1단계) 1.3km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1,336억원
- 사업기간 : 1992~2026
- 사업규모 : 방파제 6.7km, 일반부두 420m, 역무선부두 250m, 준설토투기장 1,140m, 진입도로 6.12km, 어항시설 1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관계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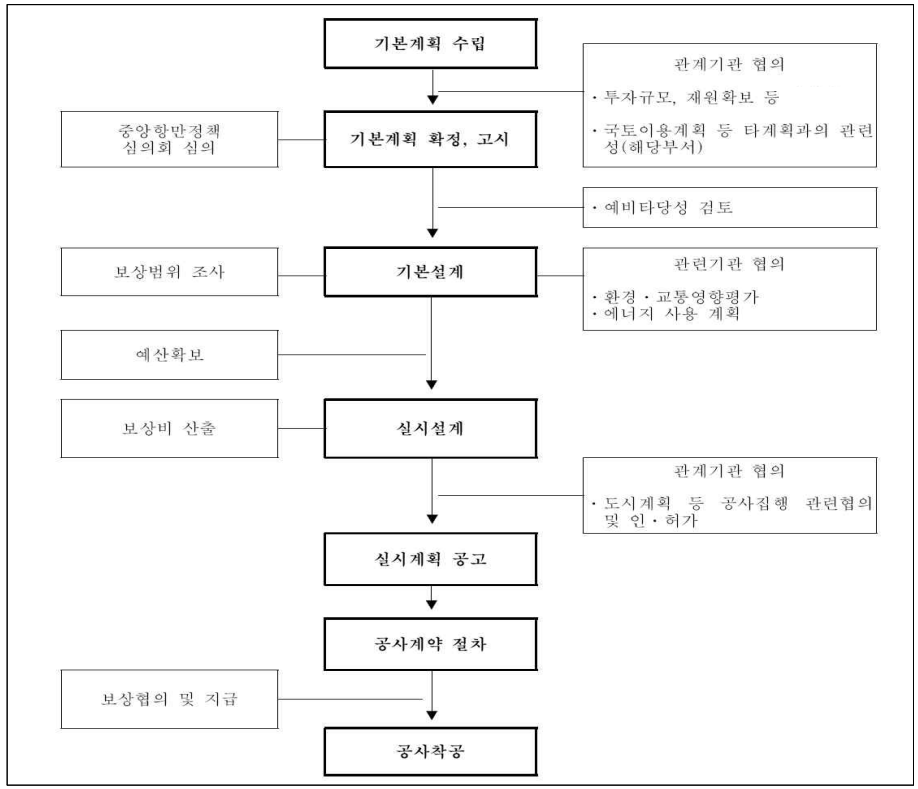

사 업 명
(29) 새만금신항 (5057-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7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새만금 신항 개발	새만금 신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새만금신항	41,312	74,397	74,397	126,236		51,839	69.68

4. 사업목적·내용

-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새만금 방조제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및 외곽 호안 축조
-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새만금신항 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북측방파호안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한 관리부두 축조
- (항로 및 박지준설) 새만금신항 내 선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수심구간 준설
- (접안시설(1단계)) 새만금 내부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 물동량 처리를 위한 부두 2선석 개발
- (방파제(연장)) 새만금신항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축조

- (북측진입도로 등 개설) 새만금신항 접근성 확보를 위한 북측진입도로 등 개설
-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된 환경상 악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 (해양수리현상조사) 새만금신항만 건설예정지 및 인근해역에 대한 단계별 해양수리·퇴적 등 환경변화 모니터링 및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6.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 및 제8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1조

* 국정과제코드 : [핵심](지표-전략-국정) 2-8-40(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② 추진경위

- '97. 5. : 신항만예정지역 지정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 '99. 3. :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심의·의결
- '07. 4. : 정부합동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구상 발표
- '08. 2. : 새만금 사업 추진계획 수립(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08. 9. : 새만금신항 광역경제권발전 선도프로젝트사업 선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
- '09. 10. : 새만금신항 예비타당성조사(간이) 시행
- '09.12. ~ '10. 10. : 새만금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수행
- '10. 12. :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고시
- '11. 3.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심의·확정(새만금위원회)
- '11. 5. : 새만금 신항 방파제(1단계) 기본조사용역 수행
- '11. 12. : 새만금 신항 방파제(1단계) 착공
- '14. 4. ~ '15. 5. :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5. 6. ~ '16. 11. :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기본조사용역
- '15. 7. ~ '16. 6. : 새만금 신항(1단계) 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KDI)
- '16. 11. : 새만금 신항 방파제(1단계) 준공
- '17. 12. :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착공
- '17. 12. :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착공(우선시공분)
- '18. 3. ~ '18. 12. :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기본조사용역
- '18. 7. :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착공
- '19. 8.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
- '20. 3. ~ '21. 2. : 항로 및 박지준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 12. :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착공(우선시공분)
- '21. 2. : 새만금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준공

- ‘20. 12. :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호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착공
- ‘21. 2. : 새만금 기본계획(제25차 새만금위원회)
- ‘21. 6. : 방파제(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북측진입도로 등 개설공사 기초조사 용역 착수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조 231,173백만원
- 사업기간 : ’09 ~ ‘27
- 사업규모 : 방파제 3.1km, 방파제 연장 400m, 잡화부두 2선석, 관리부두 1식, 준설 및 매립 1식, 호안 7.56km, 진입도로 3.4km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운송종사자 및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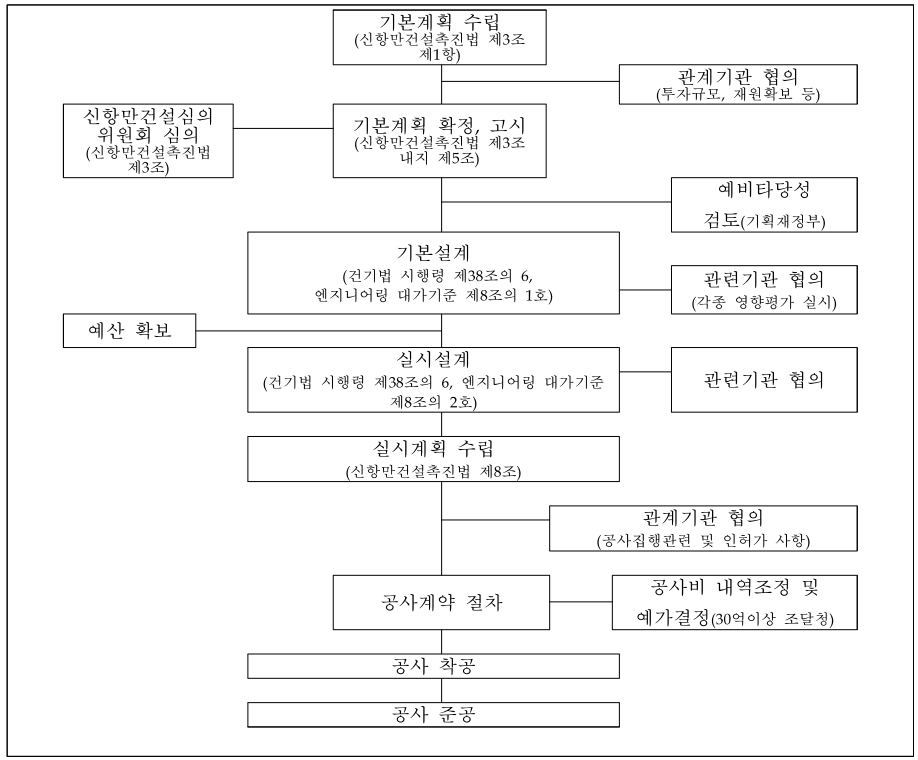

사 업 명
(30) 부산항 (5058-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8	307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주요항 건설	부산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부산항	29,931	425	-	6,100		5,675	1.335.3

4. 사업목적·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 (영도 연구조사선부두) 영도에 입주한 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전용 조사선 부두 확보를 위한 설계 시행
- (부산항 북항 파제제) 영도 동삼동 전면해상의 정온도 확보를 위한 파제제 설치 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연장) 용호부두 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기존 방파제 연장 전 기본설계 시행
- (부산항 외곽시설 안전성 검토) 부산항 내 외곽시설의 반복된 태풍피해 복구·보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부산항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타당성 검토) 청학동 재해방지 시설 사업 시행 전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 지적측량) 준공된 시설물의 지적측량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00. 03. ~ '01. 11. : 다목적부두 기본설계용역
- '01. 12. ~ '02. 12. : 다목적부두 실시설계용역
- '02. 08. ~ '02. 12. : 일반부두 상재하중 안전성 검토용역
- '04. 08. ~ '05. 06. : 감천항 항내 정온도 향상 방안 검토용역
- '05. 07. ~ '06. 12. :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실시설계용역
- '05. 08. ~ '06. 06. : 남항 수제선정비 기본설계 및 물양장축조 실시설계용역
- '06. 05. ~ '08. 12. :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 '06. 12. 27 : 제2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07. 05. ~ '08. 05. : 감천항 진입도로확장 실시설계용역
- '07. 11. : 감천항 정온도향상 외곽시설 설치사업 예타 면제
- '09. 03. ~ '09. 12. : 해경부두 정온시설 타당성조사용역
- '09. 03. ~ '10. 03. : 감천항 정온도향상 외곽시설 기초자료조사용역
- '10. 03. ~ '10. 12. : 부산항 해경부두 정온시설 설치 실시설계
- '11. 07. :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계획 고시
- '11. 03. ~ '13. 12. : 감천항 정온도 향상 외곽시설 설치
- '11. 06. ~ '12. 06. : 다대포 외곽방파제 축조공사 실시설계
- '11. 08. ~ '14. 01. : 부산항 해경부두 정온시설 설치
- '11. 11. :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 보강 예타 면제
- '12. 03. ~ '12. 12. :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12. 12. ~ '15. 11. : 다대포 외곽방파제 축조공사
- '13. 06. ~ '16. 06. :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건설공사
- '15. 03. ~ '20. 02. : 조도방파제 보강공사
- '15. 03. ~ '16. 03. : 동삼국제크루즈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
- '16. 03. ~ '20. 12. : 오륙도방파제 보강공사
- '16. 04. ~ '17. 10. :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상옥시설 설치
- '16. 06. ~ '18. 08. : 동삼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6,348억원
- 사업기간 : '92 ~ '21
- 사업규모 : 오륙도 및 조도방파제 보강 1,707m, 신선대 제2투기장호안축조 823m, 동삼동 예부선 접안용방파제 축조 1,000m, 크루즈 연구조사선 부두 축조 470m, 용호부두 방파제 축조 200m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종사자 및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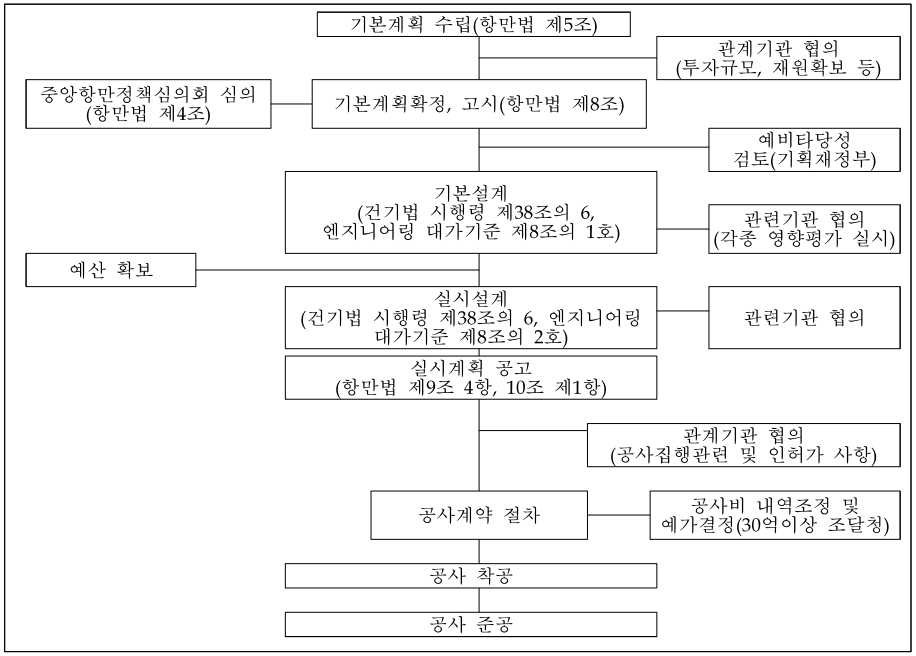

사 업 명
(31) 인천항 (5058-30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8	309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주요항 건설	인천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인천항	4,200	5,065	5,065	9,327		4,262	84.1

4. 사업목적·내용

- (갑문위탁운영) 1974년에 완공한 인천항의 주요 핵심시설인 국가소요 갑문시설의 유지관리·운영을 인천항만공사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갑문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확보
-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 항만시설의 노후로 부두운영의 효율저하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연안부두 수제선 정비를 통해 해난사고 방지 및 효율성 제고
- (연안여객선항로 연장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인천항 팔미도 북서항로 변경고시(고시 제2009-98호)에 따른 연안여객선항로 추가 연장으로 발생한 어업손실보상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공사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체결 : 인천지방해양항만청('05.07.11.)
- 항만공사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인천항 연안여객선항로 연장에 다른 어업손실보상 업무협약서(인천지방해양수산청, '19.8)

② 추진경위
- '03.05.29. : 항만공사법 제정
- '04.10.21. : 인천항 갑문위탁관리·운영 위탁 의결(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
  * 국가소유시설인 갑문시설을 인천항만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정부에서 재정지원하기로 결정
- '05.07.11. : 인천항만공사 설립
- '20.12.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12,935백만원
- 사업기간 : 2005~계속
- 사업규모 : 갑문시설 위탁사업비 및 기본사업비(대상 34명), 수제선정비(400m)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사업 수혜자 : 갑문시설 이용자, 항만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천항만공사	100	항만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위탁사업>

위탁관리계획 수립 ⇨ 분기별 사용내역 보고 ⇨ 연말 사용내역 정산확인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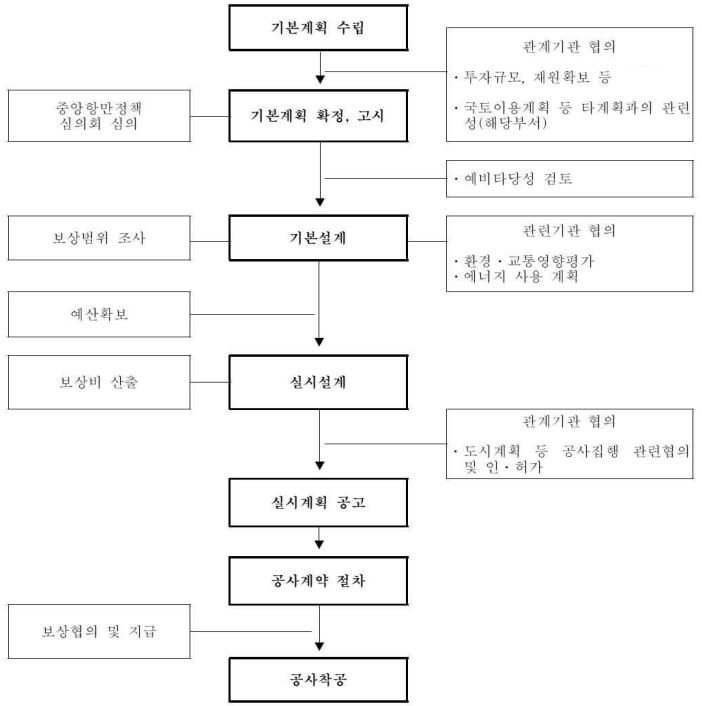

사 업 명
(32) 인천남항 (5058-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8	31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주요항 건설	인천남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인천남항	4,173	8,044	8,044	2,313		△5,731	△71.2

4. 사업목적·내용

- 컨테이너 물류기지 등으로 조성하고 있는 남항의 제1,2투기장과 제3투기장을 연결하여 물류단지간의 연계운영으로 항만운영 기능제고
- (남항 동측교량 접속도로 건설) 기존 도로(아암대로)와 접속을 통해 아암물류2단지,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발생교통량 처리
- (남항 아암지하차도 건설) 아암물류2단지,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발생교통량의 진출입로인 동측교량 접속부(아암대로) 평면교차에 따른 교통정체를 입체교차 개설로 교통흐름 개선
- (남항 군부대 통합막사 설치) 아암물류2단지 조성으로 인한 군 시설물의 이전/신규설치 등 군 협의사항 이행

- (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 인천남항 예부선계류지 시설확충으로 예부선 계류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 (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건설사업 협약체결('11.9)
-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협약서(인천지방해양수산청, '19.4)

② 추진경위

- '95. 4 : 항만기본계획수립
- '97.12 :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및 항만시설 민자유치공고
- '98. 2 : 인천남항 정비 및 기타공사 실시설계 완료
- '99.11 : 수도권 신항만 기능정립 및 재정비계획
- '01. 8 : 인천남항 컨테이너부두 착공
- '01.12 : 항만기본계획고시 및 연안항 카페리부두축조 완료
- '02. 6 : 접근항로 암초제거 완료
- '02.10 : 인천항 연안부두(어항구) 수제선정비
- '02.12 : 인천 제1항로 중심준설 실시설계완료
- '03. 4 : 인천항 제1항로 정비공사 착공
- '03.12 : 갑문지구 주변정비, 2・3부두 물양장개축 기본・실시설계완료
- '04. 6 : 인천남항 항로준설 완료
- '05. 9 : 인천항 제3준설토투기장 완료(착공 '02.12)
- '05.10 : 인천항 갑문문짝증설 완료
- '06.12 :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계획(해양수산부)
- '07.12 : 인천남항 제3준설토투기장 연결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11. 7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고시(국토부, 크루즈 15만톤 반영)
- '11.12 :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IPA)
- '11.12 :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 '11.12 : 인천남항 제3준설토투기장 동측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12.12 : 인천남항 제3준설토투기장 북측교량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
- '12. 8 : 인천남항 제3준설토투기장 연결교량공사 완료(착공 '08.11)
- '16. 9 : 인천남항 제3준설토투기장 동측교량공사 준공(착공 '12. 9)

- ‘17. 3 : 인천남항 제3준설토투기장 북측교량공사 준공(착공 ’13. 9)
- ‘17.12 :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진입도로개설공사 준공(착공 ’13. 8)
- ‘19.12 : 인천남항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용역 착수(준공 ‘21.11)
- ‘20. 7 : 인천남항 동측교량 접속도로 건설공사 준공(착공 ’18. 12)
- ’20.12 : 제4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7,781억원(국비)
- 사업기간 : ’96 ~ 계속
- 사업규모 : 제3준설토투기장 축조 6,750m, 제1항로증심준설 1,253만㎥, 교량 3개소 (1,039m), 진입도로 3.45km, 배후단지조성2,470천㎡, 남항우회도로 1.262km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민자(IPA) + 지자체(인천시)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운송종사자 및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천남항 아암지하차도 건설	보조	지자체 보조 (인천시)	500	86.9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사업시행 및 비용분담 협약서(‘19.4)

7) 사업 집행절차

<직접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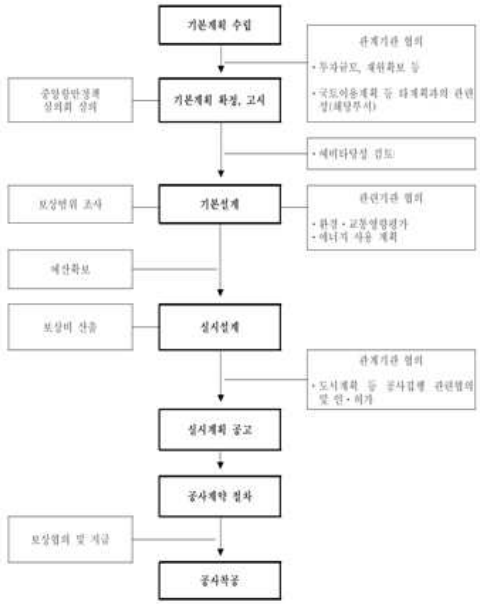

<지자체 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인천광역시 → 해양수산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인천광역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 인천광역시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인천광역시 → 사업자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및 인천광역시

사 업 명
(33) 목포항 (5058-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8	311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주요항 건설	목포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목포항	392	2,564	2,564	4,285		1,721	67.1

4. 사업목적·내용

-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 현재 운영중인 여객부두는 여객선 대비 접안능력이 부족하여 여객선의 계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계류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신규 여객부두 건설

- (남항투기장 환경개선) 목포남항 투기장 내 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투기장 환경개선(복토 등 물리적 방제)

- (대반동 수제선 정비) 노후화된 호안 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재해를 방지하고 해양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여객부두 개선사업) 구조적 안정성이 미확보된 목포항 여객부두 노후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사업 시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71. : 목포항 종합계획 수립
- '74. : 목포항 정비 기본계획 수립
- '82. 3 : 목포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 '94. 12 : 목포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용역
- '97. 12 : 대불부두 1단계(3선석) 준공
- '98. 4 : 남항호안 실시설계용역
- '03. 12 : 목포남항 호안축조공사 준공
- '05. 9 : 용당연안화물부두 준공
- '07. 12 : 대불부두(2-1단계) 준공
- '09. 5 :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착수
- '15. 9 : 목포남항 관공선 등 계류시설 축조공사 준공
- '18. 10 :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건설공사 준공
- '20. 6 : 목포항 동명동 물양장 정비공사(1단계) 착공
- '21. 2 :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3 :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7 : 목포항 동명동 물양장 정비공사(1단계)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3 ~ 계속
- 사업규모 : 안벽 1,803m, 호안 1,979m, 물양장 103m, 재해방지시설 1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등(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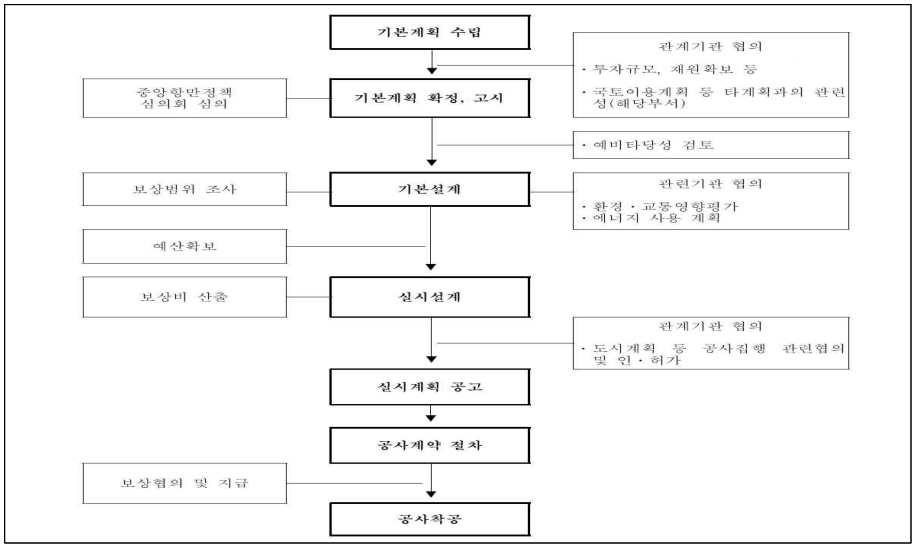

사 업 명
(34) 목포북항 (5058-3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8	312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주요항 건설	목포북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목포북항	1,227	7,865	7,865	19,650		11,785	149.8

4. 사업목적·내용

- (어선물양장 확충) 목포내항 어항기능의 북항 이전에 따라 수산물 선별작업 등 어획물 양육을 위한 작업공간 및 부족한 어선 접안시설 확보를 위한 물양장 시설 확충

- (배후부지 진입도로) 공공기관 및 수협위판장의 북항 이전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도로시설 확충

- (어업지도선부두 확장) 어업지도선은 대형화 추세이나 운영중인 전용부두가 협소하여 지도선 접안 시 전·후 고박 기능약화로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안전한 접·이안을 위한 부두시설 확장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71 : 목포항 종합계획 수립
- '74 : 목포항 정비 기본계획 수립
- '82. 03. : 목포항 광역개발기본계획
- '84~'92 : 목포북항 호안축조공사 시행
- '89. 10. : 목포북항 호안(대반동)축조 실시설계
- '90. 11. : 목포북항물양장축조 실시설계
- '94. 12. : 목포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용역
- '04. 12. : 북항대반동가호안축조공사 준공
- '06. 12. : 해경및어업지도선부두 착공
- '07. 12. : 목포북항 임항도로 건설공사 착공
- '08. 12. : 북항 물양장 축조공사 준공
- '09. 06 : 북항 임항도로 건설공사 준공
- '09. 12. : 북항 소형어선 물양장 축조공사 준공
- '11. 06. : 목포북항 배후부지 조성공사 착공
- '11. 11. : 해경및어업지도선부두 준공
- '12. 04. : 북항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 착공
- '14. 05. : 북항 배후부지 조성공사 준공
- '14. 04. : 북항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
- '15. 09. : 북항 활어선 및 파제제 건설공사 착공
- '16. 08. : 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건설공사 착공
- '17. 05. : 북항 활어선 및 파제제 건설공사 준공
- '18. 10. : 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건설공사 준공
- '20. 10. : 북항 어선물양장 건설공사 착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4 ~ 계속
- 사업규모 : 물양장 2.27km, 대반동가호안 1,793m, 임항도로 1.68km, 해경 및 어업 지도선부두 554m, 친수문화공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등(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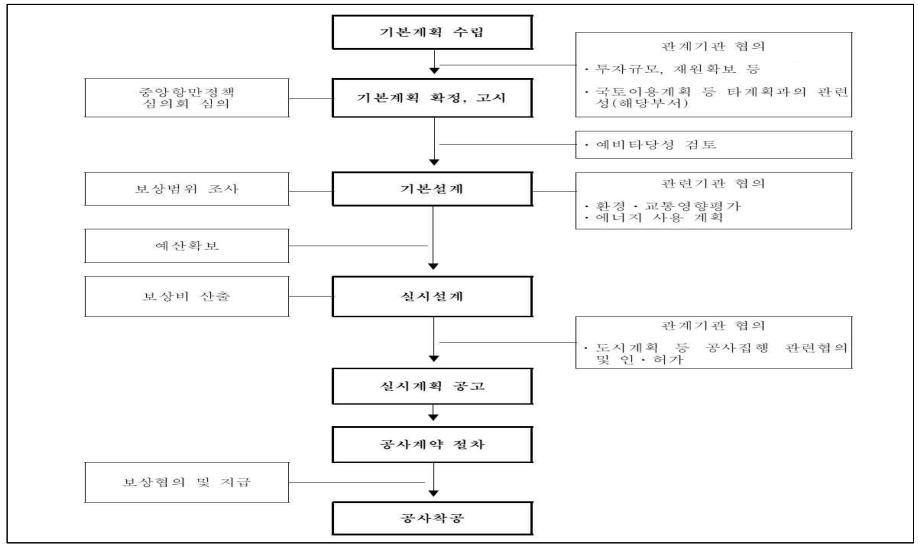

사 업 명
(35) 군장항(2단계)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8	314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주요항 건설	군장항(2단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군장항(2단계)	24,959	25,812	25,812	48,538		22,726	88.04

4. 사업목적·내용

- (군산항 다목적관리부두 사후(운영시))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된 환경상 악영향 저감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 (군산항 항입구 준설) 선박의 안전한 입·출입을 위해 군산항 진입부 추가 항로 지정 추진에 따른 통항 수심 미확보 구간 준설
- (군산항 7부두 임항창고) 군산항 7부두 배후부지 내 수출·입 화물 등에 대한 적재 및 보관 공간 확보
-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신조여객선 투입 및 여행객 대폭 증가에 따른 혼잡 해소를 위한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증축

-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 군산항 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조립 및 야적을 위한 부지 공급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비응항 부잔교 설치) 비응항 내 어선 및 낚시어선 증가 수요에 맞춰 접안시설 확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 해결
- (군장항 적정수심 및 타당성 검토) 군산항 및 장항항의 원활한 항만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준설토 투기장 현황, 유지준설 비용을 고려한 적정수심 타당성 검토
- (금강하구 수리현상) 금강하구 일원의 수리현상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해양환경변화에 대처 및 군장항 개발·운영에 활용
- (군장항 사후환경영향조사) 군장항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항만법」 제9조

② 추진경위

- '89.12. : 군산지역 신항만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해운항만청)
- '01.12. :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용역 시행(해양수산부)
- '05.12. : 남측안벽(3공구) 축조공사 착공(3선석 800m)
- '06.03. : 남방파제 축조공사 착공(850m)
- '07.08. : 잡화부두(2선석) 민자사업 착공
- '08.07.~'09.03 : 모래부두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09.11. : 남방파제 축조공사 준공(850m)
- '10.02. : 모래부두 축조공사 착공(1선석 110m)
- '11.07. : 남측안벽(3공구) 축조공사 준공(3건석 800m)
- '11.08. : 잡화부두(2선석) 민자사업 준공(2선석 500m)
- '11.12. : 군산항 제7부두 임항창고 신축(3동, 21천㎡)
- '12.06. : 모래부두 축조공사 준공(1선석 110m)
- '14.12. : 군산항 제7부두 임항창고 증축(1동, 8.6천㎡)
- '14.12. ~ '18.12. : 군장항 항로준설(2단계)공사 착공
- '16.03. ~ '17.04. :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16.04. ~ '16.12. :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17.03. ~ '18.12. : 군산내항 수제선 호안정비공사 시행
- '17.12. ~ '20.11. :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시행

- ‘19.02. ~ ‘21. : 군산항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공사 시행
- ’20.12. : 제4차 항만기본계획(해수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19년에 총사업비 대상사업 준공 완료함)
- 사업기간 : ‘09년 ~ ’27년
- 사업규모 : 안벽 9선석, 방파제 0.85km, 수제선정비 및 친수시설 1식, 다목적관리부두 1식, 항로준설 1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운송종사자 및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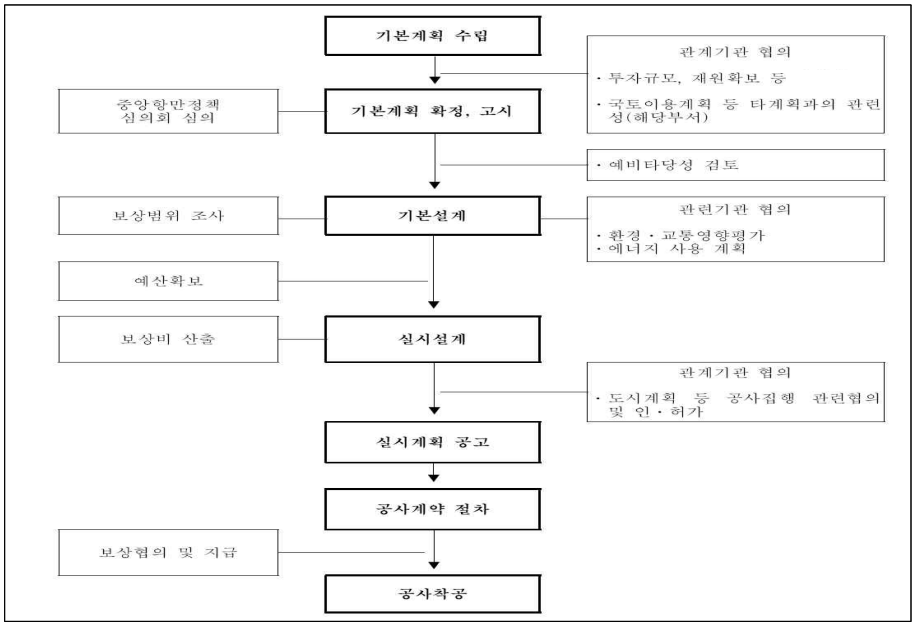

사 업 명
(36)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5058-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8	316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주요항 건설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5,380	5,001	5,001	6,540		1,539	30.8

4. 사업목적·내용

- 합리적인 항만개발 정책방향의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의 시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07까지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 유치 세부사업에 포함 편성
- ‘08년부터 개별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체계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
- 사업기간 : '04 ~
- 사업규모 : 항만건설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등

7. 사업 집행절차

용역시행방침 마련 → 용역발주 → 착수 → 시행 → 용역완료 → 정책반영

사 업 명
(37) 일반항 (5059-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9	302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	일반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일반항	196,602	99,944	99,944	87,831		△11,963	△12.0

4. 사업목적·내용

- (마산항 개발(1-1단계) 운영수입보장)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민간사업자에게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운영수입보장액을 지급
- (마산항 노산로 수제선 정비) 도심지내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린포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제선 정비
- (마산항 가포B지구 해안데크 설치) 도심지내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린포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안데크시설 1.7km 설치
- (마산항 제2항로 확장 및 기타준설 사후환경영향조사) 마산항 제2항로 확장 및 기타준설사업의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

- (포항구항 동빈물양장 내진보강) “동해권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내진 안전성이 미확보된 포항구항 동빈물양장 1.87km의 내진보강공사 시행
- (동해항 남부두(1단계) 13번 선석 개선) 동해항 남부두에 구조적 안전성이 미확보되는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접안시설 195m 개축
- (대산항 항로준설) 대산항 입·출항 전박의 안전운항 도모를 위한 적정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 33만㎥ 시행
- (대산항 수리현상조사) 대산항 인근 해역에서의 문제점 예상 및 대처방안 수립을 위한 수리현상조사 시행
-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공사의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
-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의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
- (대산항 수역시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산항 정박지 신규지정·재배치 및 항로 정비를 통해 항만효율 증대 및 선박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
- (흑산도항 개발) 국가안보 및 영해관리를 위한 해경 및 어업지도선부두 360m 등 건설
- (후포항 1단계 정비) 강원도 및 경북 해역활동 선박의 중간 피항지 확보 및 울릉도 내륙지원 거점항 개발을 위한 방파제 150m, 해경부두 110m 등 건설
- (후포항 환경개선) 후포항 이용 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 시행
- (거문도항 정비(1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 거문도항 정비(1단계) 사업의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추진
- (거문도항 손실보상금) “거문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13.~‘17.)”의 상치 콘크리트 깨기 작업 중 발생한 소음·진동 발생으로 인한 인근 양식장의 어류 피해 등을 원인으로 청구한 소송에 대한 배상금 지급
- (거문도항 삼호교 확장) 거문도의 기존 도로인 삼호교(L=250m, B=5m)는 노후되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교량 건설을 위한 설계비 반영
- (용기포항 접안시설 축조) 용기포항에 해경부두 220m 등 건설
- (용기포항 동방파제 연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기포항 동방파제 연장 사업의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
- (용기포항 카페리부두 접안시설 축조) 용기포항 내 접안시설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접안시설(카페리 전용부두) 조성
-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 악천후 시 대형함정(해군·해경함정)이 인근 평택항과 인천항으로 피항(평균 4시간)해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므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방파제 및 부잔교 등 축조
-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 항내 정온 확보를 통한 부잔교 피해 저감을 위해 방파제 및 선착장 건설
-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 남해동부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경선 접안이 가능한 방파제 113m 건설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및 연안항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
- 사업기간 : ‘83 ~
- 사업규모 : 국가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 개발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마산항 개발(1-1단계) 운영수입보장만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 마산아이포트(주)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마산항 개발(1-1단계) 운영수입보장	보조	마산아이 포트(주)	9,500	100	「보조금법」 제27조, 민자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31조, 제32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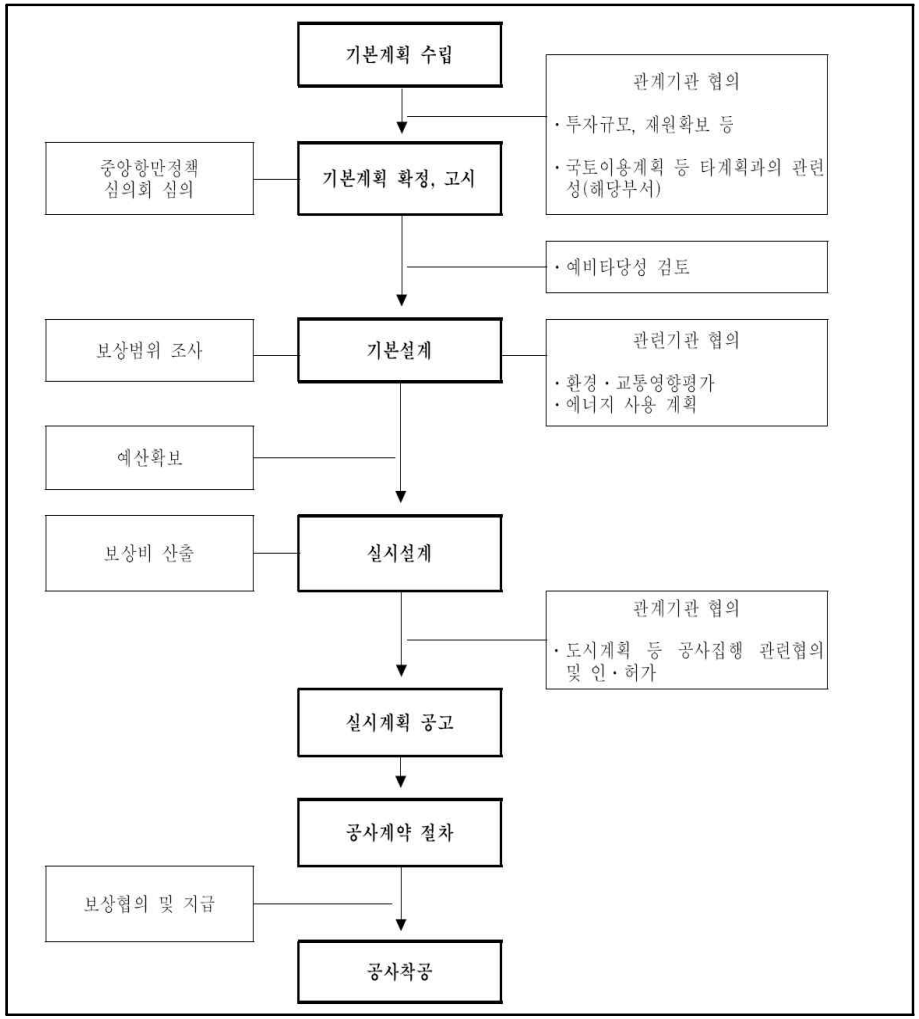

사 업 명
(38) 광양(여천)항 (5059 - 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9	303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	광양(여천)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광양(여천)항	2,957	7,165	7,165	11,798		4,633	64.7

4. 사업목적·내용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Renewal)
  ·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성능, 수명연장)을 통해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항만 이용자 편익증진 및 부두 활용성 증대
- (광양(여천)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 중흥·석유화학부두의 체선율이 30%에 달해 물류비 증가 및 항만경쟁력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돌핀식부두(1만톤급 2선석)를 건설하여 물동량 증가에 대비
- (광양항 항로안전성 검토)
  · 항로선형 및 항로폭 등이 불규칙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광양항의

항행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수역시설 정비 등)을 강구

- (광양항 해양오염 방제부두 검토 및 전략환평)

· 유류 및 위험물 취급 부두가 집중배치 되어 있는 광양(여천)항 일원에 방제 전용 부두를 건설하여, 해양오염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

5.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의 시행자)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1969. 04. : 삼일항 개항
- 1986. 12. : 1종항 지정(광양항으로 흡수통합)
- 1992. 10. : 광양(여천)항 건설공사 착공
- 1997. 02. : 여천확장단지 접안시설 실시설계(수자원공사)
- 2000. 09. : 여천확장단지 개발계획 변경(수자원공사→건교부)
- 2001. 12. : 항만기본계획 수립
- 2002. 07. : 광양(여천)항 석유화학부두 축조공사 착공
- 2004. 12.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가호안 축조공사 준공
- 2004. 12.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축조공사 착공
- 2005. 04. : 광양(여천)항 석유화학부두 축조공사 준공
- 2005. 04.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진입도로 실시설계 착수
- 2005. 06.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1차) 착공 및 준공(12월)
- 2006. 06.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2차) 착공 및 준공(12월)
- 2006. 12. :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 2007. 04. : 광양(여천)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착공
- 2007. 05.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3차) 착공 및 준공(12월)
- 2011. 02.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4차) 착공 및 준공(6월)
- 2011. 06.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5-1차) 착공 및 준공(12월)
- 2012. 01. : 광양(여천)항 진입항로준설공사(5-2차) 착공 및 준공(6월)
- 2012. 05.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축조공사 준공
- 2012. 11. : 광양(여천)항 일반부두 진입도로 건설공사 준공
- 2014. 07. : 광양(여천)항 여천일반부두 민간투자시설사업 준공(착공 '08)

- 2018. 04. :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호안보강공사 착수('19.08 준공)
- 2018. 12. : 광양(여천)항 석유화학 돌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0.03 완공)
- 2020. 03. : 낙포부두 renewal사업 기초조사용역 착수
- 2020. 04. : 광양항 항로안전성 타당성 검토 및 방제부두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59,266백만원(낙포부두 renewal)
- 사업기간 : '92~계속
- 사업규모 : 안벽 420m, 행정선부두 340m, 호안 1,552m, 진입도로 2.3km, 항로준설 12,742천㎥, 접안시설 330m, 접안시설 리뉴얼 74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민간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운송종사자 및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조(목적), 제24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보조	여수광양항만공사	3,027	30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조(목적), 제24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및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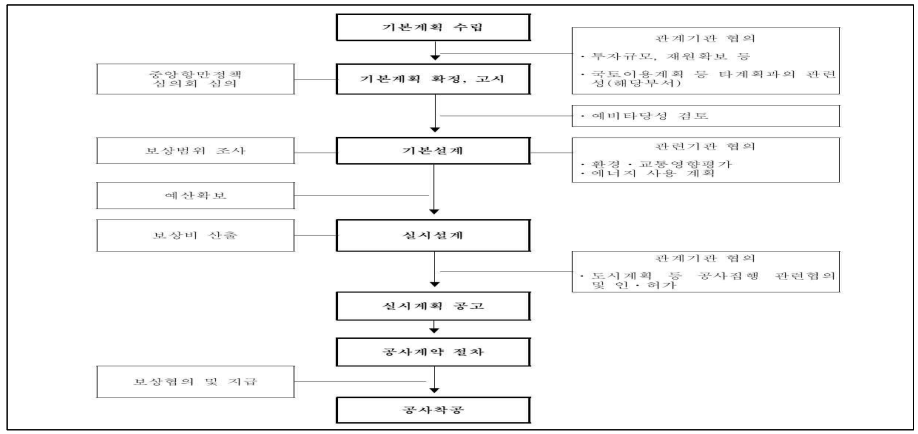

사 업 명
(39) 울릉(사동)항 (5059-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9	305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	울릉(사동)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울릉(사동)항	6,744	850	850	4,951		4,101	482.5

4. 사업목적·내용

-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조) 동 내역사업은 독도 영토관리 강화를 위한 독도의 모도(母島)로서 울릉항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전천후 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항만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교통권 확보와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발임
- (울릉(도동)항 여객부두 연장) 동 내역사업은 2,000GT급과 500GT급 동시접안을 고려하여 선박의 계류안전성 확보를 위해 접안시설 30m를 연장하기 위한 개발임
- (울릉(도동)항 방파제 연장) 동 내역사업은 울릉(도동)항 입구가 열려있어 항내 정온 미확보 되어 운영중이며, 장래 항만 가동률 향상으로 항만 이용성 증대를 위해 북방파제 50m, 남방파제 30m를 연장하기 위한 개발임

5.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1991. 12 : 울릉도 신항만 타당성 조사
- 1993. 11 : 기본계획 및 방파제 실시설계
- 1999. 4 : 울릉(사동)항 접안시설 실시설계
- 2001. 11 : 울릉(사동)항 방파제(650m) 축조
- 2005. 12 : 방파호안(413m) 및 방파제 연장(100m) 축조
- 2008. 11 : 접안시설(620m) 축조
- 2011. 12 : 여객선터미널 신축
- 2011. 12 : 2단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014. 2 : 2단계 동방파제 착공
- 2016. 10 : 2단계 접안시설 착공
- 2018. 6 : 2단계 동방파제 준공
- 2020. 10 : 2단계 접안시설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690억원(사동항 4,219억원, 도동항 471억원)
- 사업기간 : '93 ~ '25
- 사업규모

<울릉(사동)항>

· 1단계 : 방파제 750m, 방파호안 413m, 어선 및 여객부두 620m, 여객선터미널

· 2단계 : 여객부두 305m, 보안부두(해군, 해경) 575m, 관공선부두 145m, 방파제 900m, 방파호안 220m

<울릉(도동)항>

· 접안시설 연장 : 30m, 북방파제 연장 50m, 남방파제 연장 30m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여객선사,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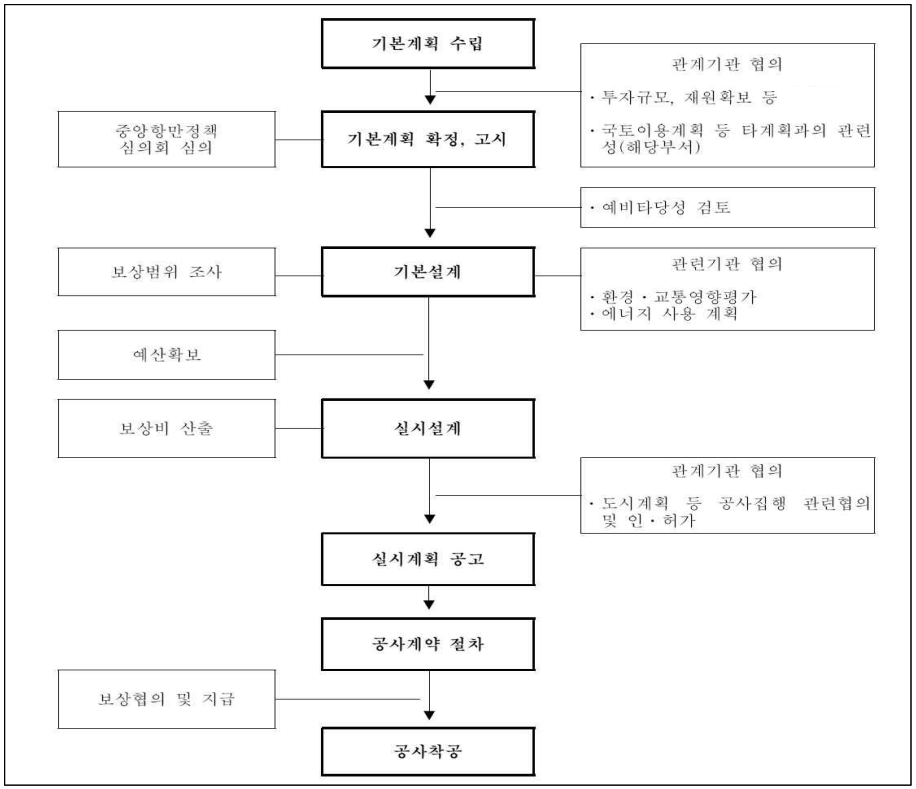

사 업 명
(40) 마산항 (5059-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9	307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	마산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마산항	1,029	100	100	100		0	0

4. 사업목적·내용

-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마산항 광역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마산항 내 물동량의 신속한 수송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 7.91km 건설을 대상으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04. 12. 27. : 토지보상 위 · 수탁협약 체결(마산청↔마산시)

- '06. 6. 7. : 1단계 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마산청↔창원시)
- '07. 7. 5. : 1단계 공사 착공
- '11. 12. 28. : 2단계 공사 위·수탁협약 체결(마산청↔창원시)
- '12. 1. 19. : 민원에 의한 1단계 공사 중지(공사재개 필요시까지)
- '12. 11. 19. : 2단계 보완설계용역 착수(창원시)
- '13. 10. 13. : 1단계 부분준공(L=2.77km)(창원시 공고 제2013-1938호)
- '14. 7. ~ '15. 12. : 2-1단계(L=0.96km) 보완설계 총사업비 협의
- '16. 8. 19 : 공사 착공
- '19. 1. 31 : 1단계(잔여분-6차) 공사 완료
- '20. 3. : 2-1단계 공사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203,363백만원
- 사업기간 : 2003~2026
- 사업규모 : 진입도로 L=7.91km, 토지보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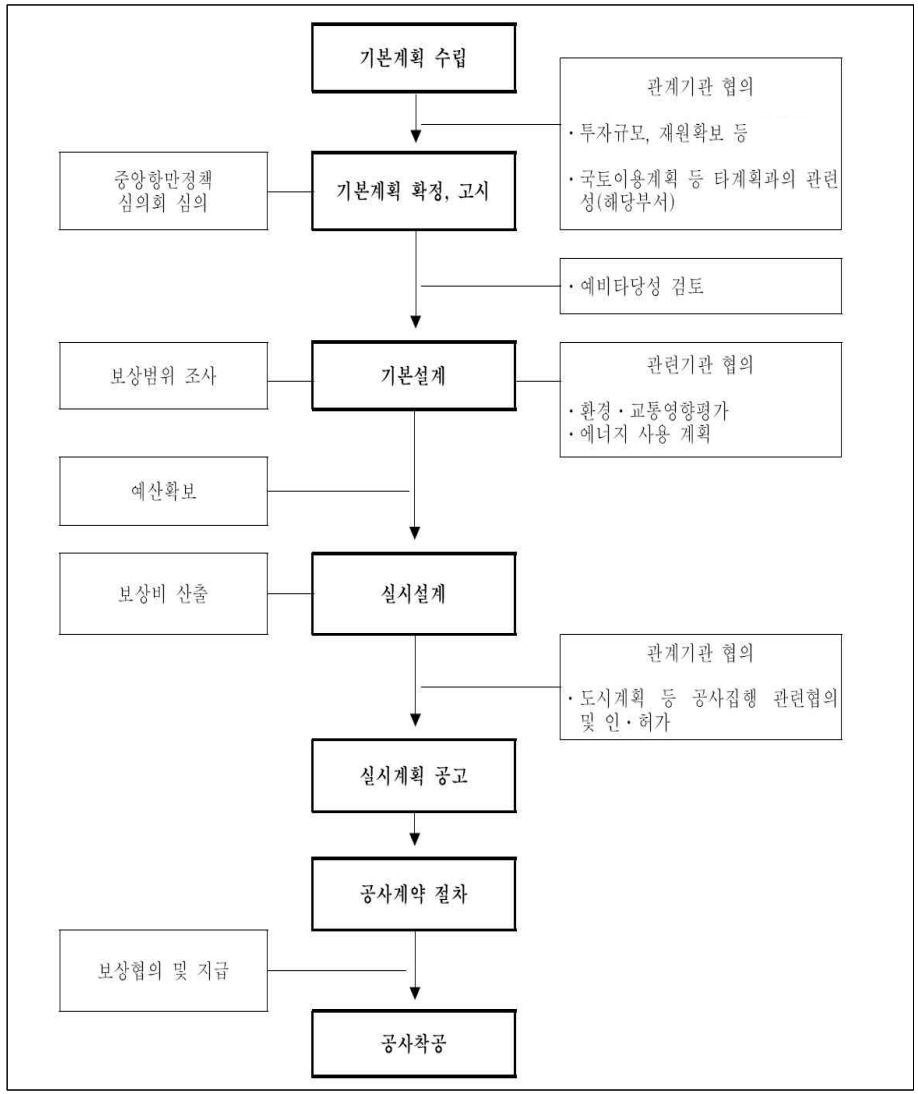

사 업 명
(41) 경인항(5059-3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9	31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	경인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경인항	5,473	5,473	5,473	6,163		690	12.6

4. 사업목적·내용

- '12년도에 완공한 경인항의 주요 핵심시설인 국가소유 갑문시설의 유지관리·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함에 따른 갑문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 및 제30조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다호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
- 국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체결(인천지방해양수산청 '12.08.24)

② 추진경위

- '10.11.05. : 경인항 갑문시설 관리·운영 위탁방침 결과(해수부)
- '11.10.29. : 경인항 갑문시설 관리·운영 개시(한국수자원공사)
- '12.08.24. : 경인항 갑문시설 관리·운영 위탁비용 지급 방침(8.21.) 및 가계약 체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62,719백만원
- 사업기간 : 2012~계속
- 사업규모 : 갑문시설 위탁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대상 57명(특경 17명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 사업 수혜자 : 갑문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수자원공사	10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7) 사업 집행절차

위탁관리계획 수립 ⇨ 분기별 사용내역 보고 ⇨ 연말 사용내역 정산확인

사 업 명
(42) 여수신북항 (5059-31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59	313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	여수신북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여수신북항 건설	30,340	19,103	19,103	12,279		△6,824	△35.7

4. 사업목적·내용

- (여수신북항 보상비)
  · 여수신북항 건설공사로 인한 해수유동변화, 퇴적환경변화, 소음·진동 등 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어업에 대한 영향 파악 및 어업피해 조사
- (여수신북항 계류시설)
  · '12년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연계한 국제적 해상관광 거점육성 및 여수신항 대체항만 건설
- (여수신북항 전기)
  · 관공선부두와 해경부두 건설을 위한 수·변전 설비, 육상전기(AMP)공급장치 및 조명탑 설치로 이용자 편의성 제공
- (여수신북항 건축)

  · 관공선 및 역무선 통합사무실 건설로 원활한 항만지원 서비스 확대
- (여수신북항 사후환경영향조사)
  · 「여수신북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질 변화와의 상관성 여부를 조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2008. 07 :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 확정
  * 여수신항의 항만기능 폐쇄 포함
- 2008.11 : 여수신항 관공선 및 역무선 이전대책 수립
  * 관공선(43척) 및 역무선(121척)을 기존부두 및 신규대체 부두 등 광양, 여수지역 11개 장소에 분산 수용
- 2010. 07 : 대체항만 개발 지속 요구
  * 여수, 광양권 해양협회('10.7), 여수상공회의소('10.6), 여수산업 단지공장협의회('10.5) 등에서 항만기본계획 반영 건의서 제출
- 2010. 08 : 여수신북항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장관님 보고)
- 2011. 07 : 제3차 항만기본계획 고시
- 2013. 01 :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기초조사 및 접안시설 기본설계 착수
- 2013. 12 :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기초조사 및 접안시설 기본설계 준공
- 2015. 05 :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착공
- 2015. 06 : 여수신북항 계류시설(접안시설) 실시설계 완료
- 2016. 03 : 여수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 착공
- 2018. 08 : 여수신북항 전기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착수(2019. 2 완료)
- 2018. 08 : 여수신북항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착수(2019.12 완료)
- 2019. 08 : 여수신북항 와곽시설설 축조공사 준공
- 2020. 06 : 여수신북항 전기공사 착수
- 2020. 09 : 여수신북항 건축공사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2,806억원('20년까지 2,311억원)
- 사업기간 : '12~'23
- 사업규모 : 외곽시설 1,360m(방파제 660m, 방파호안 660m), 계류시설 1,202m, 배후부지 145천㎡ 조성, 건축공사(운영사무실, 창고 등)1식, 전기공사 1식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운송종사자 및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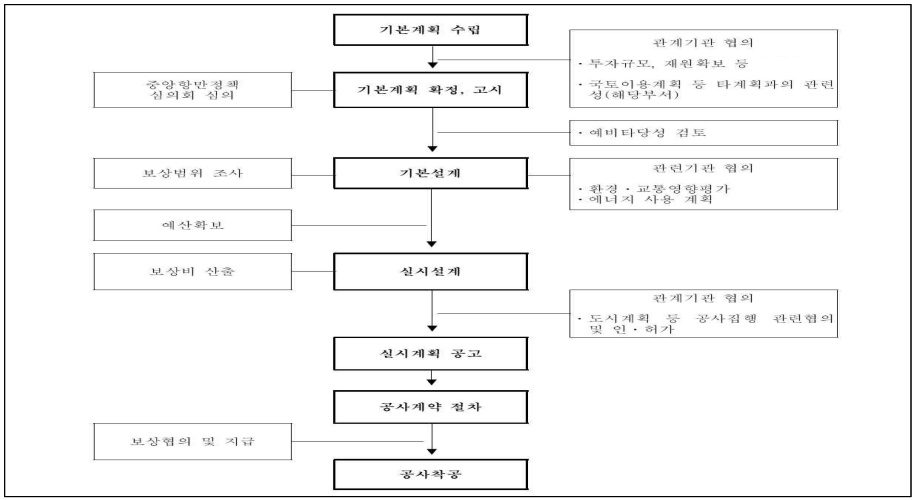

사 업 명
(43)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506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특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0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항만시설유지보수(교특)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144,519	103,034	103,034	123,010		20,976	20.4

4. 사업목적·내용

- 노후 손상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항만시설의 적기 유지보수로 항만기능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 (상용임금) 항만내 상주기관 및 업단체 등 항만이용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건립된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일반수용비)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에 따른 화물입항료 등 지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 국유부두, 임항도로, 조명탑 등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전기요금 지원
- (시설장비유지비) 항만내 부잔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 (복리후생비) 항만내 상주기관 및 업단체 등 항만이용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건립된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관리용역비) 항만내 갑문시설(인천항, 경인항)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원
- (일반연구비) 항만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연구비 지원
- (고용부담금) 항만내 상주기관 및 업단체 등 항만이용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건립된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건설비) 항만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공사, 감리, 부대비 등 건설비용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2조(정의) 제6호, 제7호 및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행정관청을 말한다.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1999년부터 총액계상사업으로 시행
- 2006년부터 비총액계상사업 시행(운영비, 연구용역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23개 항만(교특회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 이용자(항만운영업자, 국내 물류전문기업 및 화주기업 등), 해당 지역주민, 친수공간 이용주민 및 관광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소요 제출	각지방해수청	관할 구역 내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 소요예산 신청
⇩		
② 예산소요 검토 및 조정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③ 예산(안) 제출	기획재정부	예산(안) 마련 국회 제출
⇩		
④ 예산 확정	국회	예산(안) 심의 예산 확정
⇩		
⑤ 예산 배정	해양수산부	각 지방해수청 예산 배정
⇩		
⑥ 사업 추진	각지방해수청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추진
⇩		
⑦ 결산	해양수산부	각 지방해수청 사업추진 결과를 취합하여 결산

사 업 명
(44)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 (5060-46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특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0	46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항만시설유지보수(교특)	항만시설유지보수(총액계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26,640	19,035	19,035	19,035		-	-

4. 사업목적·내용

- 노후 손상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항만시설의 적기 유지보수로 항만 기능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 (건설비) 태풍피해 복구 등 예측불가능한 항만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공사, 감리, 부대비 등 건설비용 지원

* 태풍 피해복구 등 세부내역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2조(정의) 제6호, 제7호 및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補修)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행정관청을 말한다.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1999년부터 총액계상사업으로 시행 (2006년부터 일부 사업은 비총액으로 분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23개 항만(교특회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 이용자(항만운영업자, 국내 물류전문기업 및 화주기업 등), 해당 지역주민, 친수공간 이용주민 및 관광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소요 제출	해양수산부	세부내역 미확정 항만시설 유지보수 총액 소요예산 신청
⇩		
② 예산소요 검토 및 조정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총액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③ 예산(안) 제출	기획재정부	예산(안) 마련 국회제출
⇩		
④ 예산 확정	국회	예산(안) 심의 예산 확정
⇩		
⑤ 세부내역 예산 소요 제출	각 지방해수청	총액 한도에 맞추어 세부사업 예산 신청
⇩		
⑥ 세부사업 시행계획(안) 마련	해양수산부	각 지방해수청이 신청한 세부사업을 기초로 시행계획(안) 마련 기획재정부 협의 신청
⇩		
⑦ 세부사업 시행계획(안) 협의검토 및 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해수부에서 요청한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검토 후 해수부에 협의결과 통보
⇩		
⑧ 예산 재배정	해양수산부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각 지방해수청에 예산 재배정
⇩		
⑨ 사업 추진	각 지방해수청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추진
⇩		
⑩ 결산	해양수산부	각 지방해수청 사업추진 결과를 취합하여 결산

○ 각 지방해수청에서 소요예산 요구(해양수산부) ⇒ 소요예산 검토 및 조정(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 예산(안) 제출(기획재정부) ⇒ 총액*예산 확정(국회) ⇒ 총액 세부내역 예산 소요 제출(각 지방해수청) ⇒ 총액 세부사업 시행계획(안) 마련(해양수산부) ⇒ 총액 세부사업 시행계획(안) 협의·검토 및 결과 통보 ⇒ 재무관별 예산 배정(해양수산부→ 지방해수청) ⇒ 사업 추진(각 지방해수청)

* 태풍피해 등 세부내역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

사 업 명
(45) 부산북항 재개발 (50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1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항만재개발	부산북항 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부산북항 재개발	28,500	69,985	69,985	81,887		11,902	17.0

4. 사업목적·내용

-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항만기능이 저하된 북항 재래부두를 친수공간 및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재개발
-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북항재개발 사업지로의 교통량과 충장로의 통과교통량을 분리하여 재개발 사업지로의 접근성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부담)

② 추진경위

- '04. 12. ~ '05. 12. : 부산북항 재개발방안 연구용역
- '05. 06. :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 심의
  ※ 북항 재개발 사업범위, 대체부두 및 부두별 재개개발 시기 등 결정
- '05. 12. ~ '06. 11. : 부산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 '06. 09. ~ '07. 09. : 항만 워터프론트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 '06. 12. :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보고회(VIP 참석)
- '07. 03. ~ '07. 08. :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07. 06.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07. 10. : 제1차('07~'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 '08. 05. :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
- '08. 10. : 부산북항 재개발(1-1단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
- '09. 03. ~ '15. 12 : 1-1단계 외곽시설 축조공사 시행
- '11. 08. ~ '12. 09. : 1-2단계 접안시설 및 연결잔교 시행
- '12. 05. ~ '14. 11. : 1-2단계 국제여객부두 등 축조공사 시행
- '15. 12. 23 :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 실시설계용역 완료(정부)
- '15. 12. 30 : 실시계획 변경 고시
- '15. 12. 30 :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218)
- '16. 03. ~ '16. 12. : 보행데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정부)
- '17. 11. : KDI타당성 재조사 완료
- '18. 07. : 배후도로(지하차도) 총사업비 협의완료
- '19. 02. 28. : 부산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
- '19. 10. 17. : 배후도로(지하차도) 착공
- '19. 12. :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 '20. 07.. : 2단계 재개발 협상대상자 선정(부산시 컨소시엄)
- '20. 12. :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및 2단계 재개발 협상 완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032억원
- 사업기간 : '12 ~ '26
- 사업규모 : 경관수로호안 2,834m 외곽호안 332m, 방파제 150m, 가호안 507m, 국제여객부두(폰툰식 포함) 1,955m, 크루즈부두 360m, 부잔교 2기, 지하차도 1.98km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종사자 및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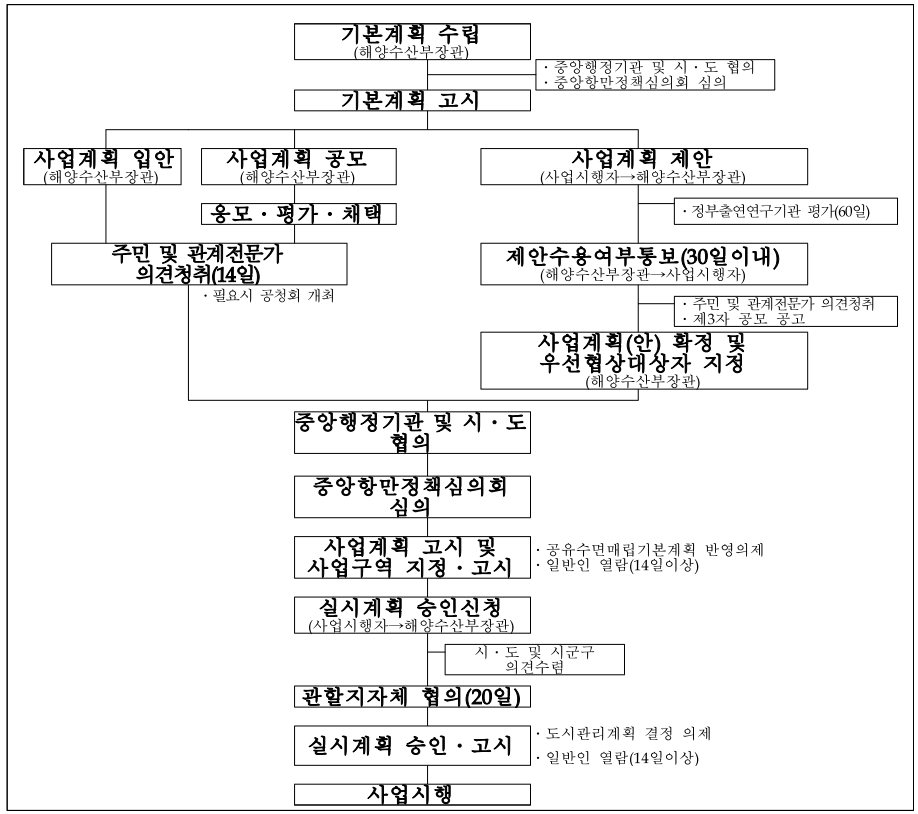

사 업 명
(46) 기타항만 재개발 (50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1	301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항만재개발	기타항만 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기타항만 재개발	10,559	15,843	-	12,767		△3,076	△19.4

4. 사업목적·내용

- (항만재개발) 노후·유휴화된 항만과 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여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 지역의 도시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 (묘도 재개발) 묘도 준설토 투기장을 복합에너지발전 및 미래신소재산업 시설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송·배수시설 설치(직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민간보조, 50%)
- (광양항 3단계 재개발) 3단계 준설토 투기장을 복합물류제조시설 등 융·복합 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연결도로 및 송배수시설 설치(직접),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민간보조, 50%)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32조(비용의 부담)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 9. : 부산북항 일반부두 재개발 지시(대통령)
- '06. 9 ~ '07. 9 : 항만 워터프론트 기본계획수립 용역
- '07. 6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 '07.10 : 제1차('07~'16)항만재개발기본계획 고시
  * 인천·대천·군산·목포·제주·광양·여수·부산·포항·묵호항(10개항만 12,703천㎡)
- '09. 4 :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추가) 확정·고시
- '08~'11 : 군산항, 인천(영종도), 제주항, 목포항, 광양항, 대천항, 동해·묵호항 재개발 사업타당성 용역 시행
- '12. 4 :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고시
  * 부산북항을 포함한 12개 항만 16개 대상지 14,130천㎡(추가 : 인천내항, 부산 자성대, 신선대, 서귀포항)
- '12.12 : 광양항 묘도 재개발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4.03 :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협약 체결
- '14.04 : 광양항 묘도 재개발 진입도로 건설공사 착수
- '14.07 : 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 실시협약 체결
- '14.08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
- '14.12 : 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
- '15.02 : 광양항 묘도 재개발 실시협약 체결
- '15.06 : 동해 묵호항 재개발 1단계 실시협약 체결
- '15.06 :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 '05.09 :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착수
- '15.10 : 동해묵호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
- '16. 2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
- '16. 4 : 인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고시
- '16.10 :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고시
- '16.12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 '17.12 : 인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 '18. 4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공사 착공
- '19. 3 : 인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착공
- '19. 7 : 광양항 3단계 실시협약체결
- '19.12 : 고현항 3단계 착공

- ‘20. 6 : 고현항 2단계 준공
- ‘20.12 :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고시
- ‘20.12 :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87,487백만원(광양항 3단계 재개발에 한함)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사업규모 : 인천항 등 14개 항만 17개(부산항 북항 제외) 대상지 항만재개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재정지원시설)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사업시행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묘도 재개발 폐수종말 처리시설	보조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	2,226	5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광양항 3단계 폐수종말 처리시설	보조	여수광양항만공사	100	5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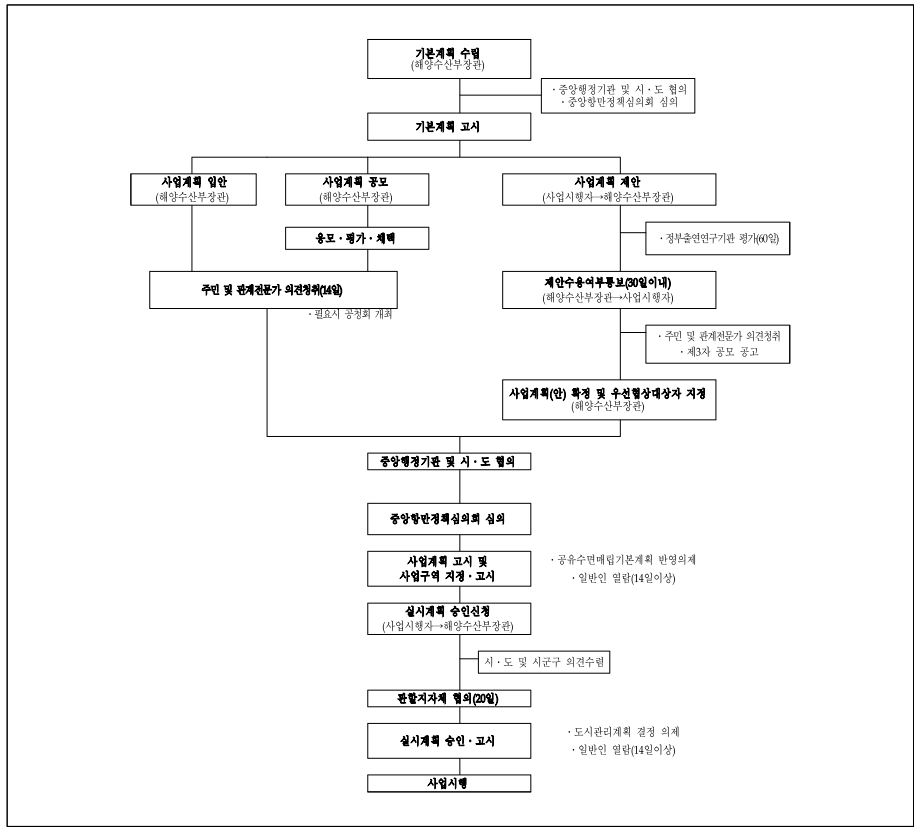

사 업 명
(47) 마리나 항만 (506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코드	5000	5062
명칭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마리나 항만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마리나 항만	7,488	6,494	0	15,333		8,839	136.1

4. 사업목적·내용

- 해양관광의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처리 기능,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용의 지원) : 마리나조성사업에 필요한 방파제, 호안, 도로, 광역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② 추진경위

- '07.5 ~ '08.11 : 마리나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 '07. 7 :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경제정책조정회의)
- '08. 11 :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안) 지자체 협의
- '09. 4 :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의결
- '09. 4 : 마리나 항만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09.11준공)
- '10. 1.27 : 제1차('10~'19)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고시
- '10. 5 : 마리나항만건설사업 타당성조사용역
- '11. 1 : 김포터미널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 '11. 11 : 덕적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추가 반영
- '11. 12 :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 '12. 11 : 제부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2. 12 : 제부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 '12. 12 : 제주 신양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추가 반영
- '13. : 140개 국정과제 선정(1-11-6 창조경제_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_해양산업 육성)
- '12. 12 : 제주 신양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추가 반영
- '13. 2 :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 수립
- '13. 3 : 거점형 마리나항만 대상지 선정 통보(덕적도, 고군산, 여수엑스포, 명동, 진하, 후포)
- '13. 8 :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 용역 착수
- '14. 9 :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
- '14. 11 : 거점형 마리나항만(후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4. 11 : 거점형 마리나항만 기본설계용역 준공
- '14. 12 :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계획 재공모
- '14. 12 :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착수(덕적도, 고군산, 여수엑스포, 진하, 후포)
- '15. 4 : 거점형 마리나항만(후포) 실시협약 체결
- '15. 7 : 거점형 마리나항만 신규대상지(안산 방아머리, 당진 왜목, 여수 웅천, 부산 운촌) 선정
- '16. 2 : 거점형 마리나항만(웅천·방아머리) 실시협약 체결
- '16. 3 :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실시협약 체결
- '16. 6 : 거점형 마리나항만(후포) 1단계(기반시설) 착공
- '16. 11 : 거점형 마리나항만(명동·해운대) 실시협약 체결
- '17. 7 : 거점형 마리나항만(왜목) 실시협약 체결
- '18. 8 : 거점형 마리나항만(진해명동) 사업계획 승인
- '18. 10 : 거점형 마리나항만(진해명동) 마리나항만구역지정

- ‘19. 10 : 거점형 마리나항만(방아머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 ‘19. 11 : 거점형 마리나항만(후포) 1단계(기반시설) 준공
- ‘19. 12 :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수립 용역 준공(’18.8 착수)
- ‘19. 12 : 거점형 마리나항만(웅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 ‘19. 12 : 거점형 마리나항만(진해명동) 실시계획 승인
- ‘20. 3 : 거점형 마리나항만(진해명동) 착공
- ‘20. 4 : 거점형 마리나항만(방아머리)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 5 :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고시
- ‘20. 6 : 거점형 마리나항만(웅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 11 : 거점형 마리나항만(웅천) 마리나항만구역지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 ~ 계속
- 사업규모 :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동・서・남해안별 2개소씩) 개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기반시설)
- 사업시행주체 : 정부(기반시설), 지자체, 민간사업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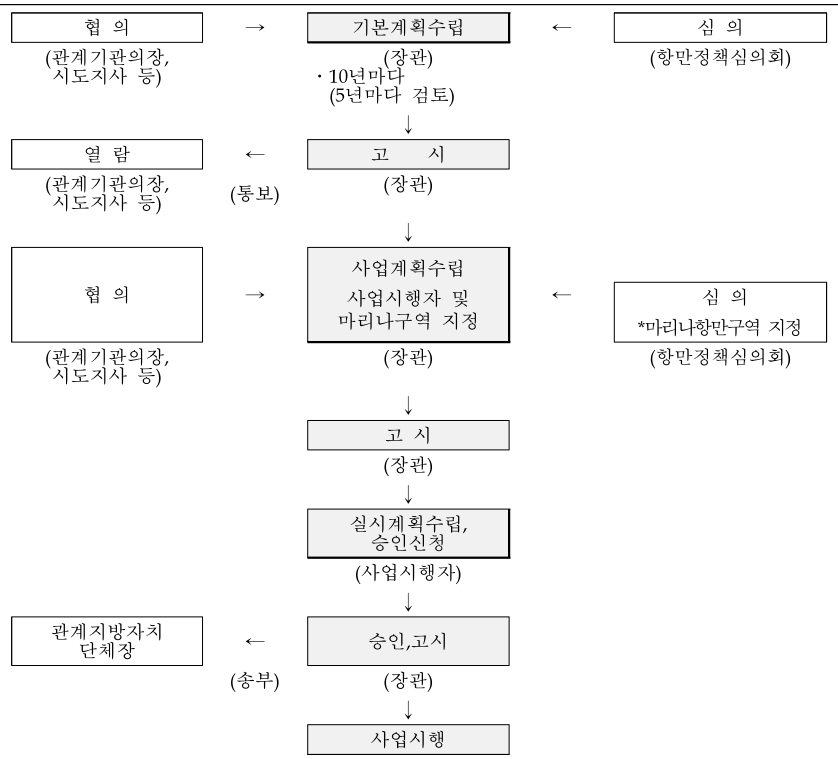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협의 → 중앙항만정책심의 →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수립(법 제8조)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협의 → 사전환경성 협의 → 마리나항만 사업계획 수립 및 고시

○ 마리나항만사업의 제안(법 제8조)

○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법 제10조)

○ 사업시행자지정(법 제9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법 제1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협의 → 제영향평가협의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공사착공 → 준공

사 업 명
(48) 재해안전항만구축(506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3	302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그린포트 구축	재해안전항만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재해안전항만구축	47,797	78,864	78,864	144,699		65,835	83.48

4. 사업목적·내용

(1) (영일만항 북방파제 보강) 포항영일만항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

(2) (울산신항 남방파제 (1-1공구)보강)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파랑으로부터 울산신항의 항만시설을 보호 및 항만기능의 유지・향상 도모하기 위한 외곽시설 보강

(3) (울산신항 남방파제 (1-2공구)보강)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파랑으로부터 울산신항의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항만기능의 유지・향상 도모하기 위한 외곽시설 보강

(4) (울산신항 동방파제 보강)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파랑으로부터 울산항의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항만기능의 유지・향상 도모하기 위한 외곽시설 보강

(5) (포항신항스웰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피해 방지 및 환경영향평가서 적정성 여부 파악

(6)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태풍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7)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 마산 구항의 재해를 예방하고 평상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한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 사업 완료 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8) (중대시민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항만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04. 12. ~ '05. 12. :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 타당성조사용역(구 마산시)
- '07. 02. 12 : 구항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고시
- '11. 01. ~ '11. 08. : 마산구항 방재언덕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시행(KDI)
- '10. 04. ~ '11. 05. :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구역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수립용역
- '11. 07. 29 :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 '11. 09. 22 :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2. 06 :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 '12. 07 ~ '13. 09 :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2. 10. 26 :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2. 12. 13 :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 '12. 12. 21 : 총사업비 협의 요청(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 '13. 05. 07 : 장항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3. 07. 08 : 군산항 재해취약지역(외곽시설) 정비공사 착수
- '13. 05. 27 : 총사업비 협의 완료(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 '13. 11. 01 : 착공(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 '15. 05. ~ '17. 07. : 공사 시행(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 '15. 11. :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공사 발주
- '16. 10. 17. :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공사 착공
- '16. 12. 06 :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7. 05. 04 : 군산항 재해취약지역(외곽시설) 정비공사 준공
- '17. 06. 12 : 삼천포항 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 ‘17. 06. 28 : 통영항 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 ‘17. 11. 30 :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 ‘18. 02. 01 :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 ‘18. 03. 30 : 울산항 남방파제(1-1공구) 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8. 12. 28 : 마산항 방재언덕 사업 준공
- ‘19. 08. 16 : 울산항 남방파제(1-1공구) 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9. 12. 20 : 울산항 동방파제 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19. 12. 23 : 장항항 폭풍해일 침수방지 사업 준공
- ‘20. 01. 14 :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 사업 준공
- ‘20. 12. 16 : 울산항 남방파제(1-2공구) 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1. 06. 24 :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7,979억원
- 사업기간 : 2011 ~ 2030
- 사업규모 : 재해취약지구정비(22개항만 : 방호벽, 수직게이트, 방재언덕 등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종사자,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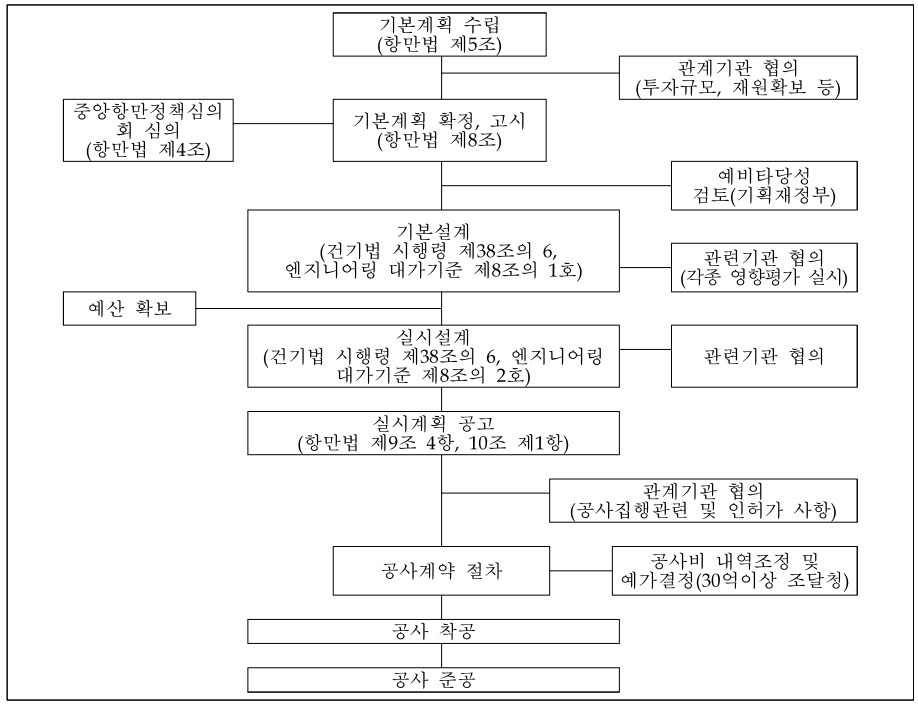

사 업 명
(49) 태풍피해 복구 (506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3	307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그린포트 구축	태풍피해복구(항만)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태풍피해 복구	57,898	77,980	77,980	28,502		△49,478	△63.4

4. 사업목적·내용

- (부산항 감천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 감천항 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지속 추진
- (부산항 신선대 준설토 투기장 호안 태풍피해 복구) 신선대 투기장 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지속 추진
- (부산항 오륙도 및 조도 태풍피해 복구) 오륙도 및 조도 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지속 추진
- (부산항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감천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완료 후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② 추진경위

- 2016. 10 :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한 피해 발생
- 2016. 11 : 태풍 차바 복구계획 심의·확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16. 12 : 자체 예산전용·조정을 통해 지방청, 지자체 예산배정
- 2017. 1 ~ 12 : 발주청별 태풍피해복구공사 발주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97,826억원(감천, 다대포, 신선대, 조도 및 오륙도)
- 사업기간 : 2016 ~ 2022
- 사업규모 : 태풍피해 복구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종사자 및 지역주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2016. 10 :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한 피해 발생
- 2016. 11 : 태풍 차바 복구계획 심의·확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16. 12 : 자체 예산전용·조정을 통해 지방청, 지자체 예산배정
- 2017. 1~12 : 발주청별 태풍피해 응급복구 시행
- 2018. 1~12 : 다대포항, 감천항 태풍피해복구 시행

사 업 명
(50)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 (5063-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3	304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그린포트 구축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	875	100	100	11,812		11,712	11,712

4. 사업목적·내용

-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연안침식 원인규명, 항만구조물 안전성 검증 등 방재연구, 해안·항만 건설기술의 검증 및 상용화 연구를 수행하는 대형 수리모형실험시설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관리), 연안관리법 제34조의3(연구개발)

② 추진경위

- '12, 14 : 기획연구 실시
- '16, 17 : 정부안 반영시도('16~'17)하였으나,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 필요 의견(기재부)

- '18. 5. :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 '20. 3.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구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1. 8. :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구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1. 10. :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452억원
- 사업기간 : 2020~2024
- 사업규모 : 수리실험인프라, 연구동 건립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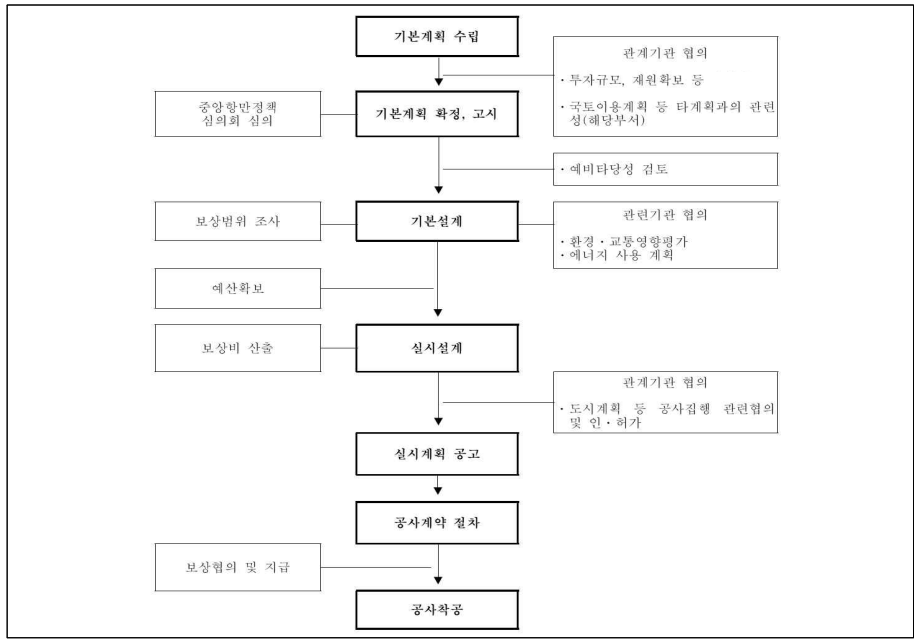

사 업 명
(51) 해상교통안전시스템 운영 (506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만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4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항만운영 및 관리	해상교통안전시스템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상교통안전시스템 운영	2,458	1,918	1,918	1,726		△192	△10.0

4. 사업목적·내용

- 정부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파악 및 수색구조 지원 등을 위해 전국 주요항만과 연안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노후장비 개량, 이중화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제19규칙
- 「선박안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② 추진경위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실시 : '01.3월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구축 : '01~'08년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개선(노후장비 교체 등) : '09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년~계속
- 사업규모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기지국 41개소 및 운영국 14개소 관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선박운항자, 선사, 항만이용자, 도선, 정부기관(해군·해경 등)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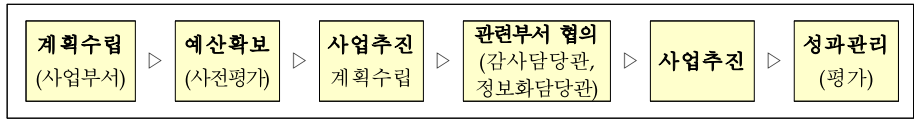

사 업 명
(52) 여객터미널 운영 (506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4	301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항만운영 및 관리	여객터미널 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여객터미널 운영	7,427	7,851	7,851	7,094		△757	△9.6

4. 사업목적·내용

- 국가관리 주요 여객터미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도서민, 관광객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항만법」제66조

- 제79조(비용부담 원칙)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0년 이후 부산·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지원

- 부산항만공사('04.1), 인천항만공사('05.7) 및 제주특별자치도('06.7) 발족으로 터미널 관리권이 항만공사 및 지자체로 이양
- 군산/청도('05.1), 목포/상해('06.6) 국제여객선 항로 개설에 따른 터미널 운영비 지원
- '08년부터 연안여객터미널의 수입·지출을 세입·세출예산으로 반영하여 여객터미널 이용료는 국고 세입 조치, 터미널 운영비는 국고 지원
- '09.12.31「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관리권이 지자체로 위임
- 연안항 소재 여객터미널은 이용료를 지자체 수입으로 하고 운영비도 자체조달('10~'12년 3년간은 지자체 관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운영비 부족분 지원)
- 항만법 시행령 개정('14.9)에 따라 국가관리 연안항 4개소 추가소요 반영
- 항만법 개정('21.1)에 따라 터미널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지방관리항에 소재한 3개 터미널(속초, 완도, 통영) 제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 ~ 계속
- 사업규모 : 연안여객터미널(8개소) 및 국제여객터미널(3개소) 관리·운영비용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도서지역 거주민, 관광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여객터미널 운영비 예산 검토·배정(해수부) →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위탁사업자 선정(지방청 및 지자체) →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사업자)

사 업 명
(53) 항만보안시설 확충 (506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4	303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항만운영 및 관리	항만보안시설 확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항만보안시설 확충	8,969	8,263	8,263	7,429		△834	△10.1

4. 사업목적·내용

- (항만보안시설·장비 신설)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의 이행과 우리나라 무역항에 대한 테러예방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보안에 필요한 보안인력·시설·장비 확보
- (항만보안시설·장비 유지보수)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의 이행과 우리나라 무역항에 대한 테러예방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보안에 필요한 보안인력·시설·장비 유지보수
- (항만보안역량 강화) 항만시설(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보안에 필요한 보안인력 등의 활용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 : 항만시설소유자는 관리 운영하는 항만시설의 경비·보안을 위하여 시설·장비·인력을 배치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세부기준)
-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 시설주는 관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보안책임을 부담하고 자체방호계획을 수립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

② 추진경위

- '10년까지 항만보안에 필요한 예산을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에서 임시집행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보안 시설의 신축·개축 등 보안투자가 곤란하였으나,
- '11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차원으로 신규 반영
- '13년부터 보안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 등 모든 항만보안관련 예산을 본 세부사업으로 일원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계속
- 사업규모 : 전국 31개 무역항의 항만시설 보안확충·유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국가, 항만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설구축 등 : 실시설계 → 발주 → 입찰 → 계약 → 준공 → 대금지급
○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사 업 명
(54)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 (5066-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6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	5,509	5,360	5,360	7,360		2,000	37

4. 사업목적·내용

- (해외항만개발 협력지원(ODA) 사업) 국내 항만 개발·운영의 노하우, 신기술 등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 사업의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 항만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기본계획의수립), 제8조의 2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항만법 제103조(항만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등

② 추진경위

< 항만시설 민자유치 추진경위 >

- (추진배경) 정부가 건설 및 운영하던 항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 부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경영기법 활용
- (추진경위) '96년 부산신항만 1단계 민간투자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17개사업* 추진중

  * 준공·운영중 16개사업, 공사 중 1개사업

  · '94. 8 :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 '98.12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01.12 : 기획예산처 항만시설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 '05. 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06. ~ 현재 : MRG제도 폐지 및 사업추진방식 추가

<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경위 >

- (추진배경) 국내 항만 건설 시장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해외 항만시장 진출 필요
- 개도국은 항만시설 부족, 노후화로 급증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면서 개도국의 항만인프라 확충 필요성 증가
- (추진경위) '08년부터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추진 중

  * '21.8월 현재 44개 협력사업 완료, 3개 사업 진행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5년~ 계속
- 사업규모 : 항만민자유치(18개사업), 해외항만개발협력(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항만·물류관련 건설업체, 설계용역업체, 물류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항만 개 발 시 장 개척지원	보조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기업	700	70%	항만법 제103조 제6호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한 업무
항만을 활용한 사회적 공헌 사업 추진	보조	사회적 기업 등	200	70%	

7. 사업 집행절차

○ (**항만시설 민자유치 집행절차**) ※ 정부 고시사업의 경우

- (1단계 : **대상사업지정**) 항만기본계획 반영사업중 민자사업 추진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2천억이상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2단계 :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PIMAC 사전자문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3단계 : **민간사업자 모집 및 사업계획 접수**) 민자사업 사업계획 접수
- (4단계 :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민자사업계획 평가후 협상대상자 지정 (평가단 구성 운영)
- (5단계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정부-민자사업간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PIMAC 사전자문,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6단계 : **실시계획 승인**) 민자사업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검토 승인
- (7단계 : **공사시행**) 공사착수 및 준공
- (8단계 : **운영**) 운영개시

○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집행절차**)

- (1단계 : **사업발굴 및 협의**) 중앙부처·협회·KOTRA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대통령 해외순방, 고위급 외교 및 국제회의를 활용하여 개별사업 발굴 병행
- (2단계 : **실사 및 자문**) 상대국 정부의 **협력의향**을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 현지조사를 통해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고 사업내용·협력방법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추진방향 결정

- (3단계 : **개발협력 MOU체결**) 개략적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추진일정, 협력대상·수단 등을 포함하여 양국간 **MOU 체결**
- (4단계 : **사업화 지원**) 기초자료 조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F/S)을 실시하고 우리 **기업 참여 유도, 외교적 노력** 경주
  * 사업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업화방안에 대해 상대국과 지속 협의하여 유리한 여건 조성
  * 투자설명회 및 각종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EDCF·수출금융·민간자본 등 재원조달 지원(기재부 등과 협의)
  * 필요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대국 및 우리 정부·기업간 MOU/MOA 등 체결 → 사업이행 보증
- (5단계 : **사업시행 및 평가**) 협력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적절한 성과 목표·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분석
  * 시설물의 계획 준공 여부, 협력사업의 경제효과 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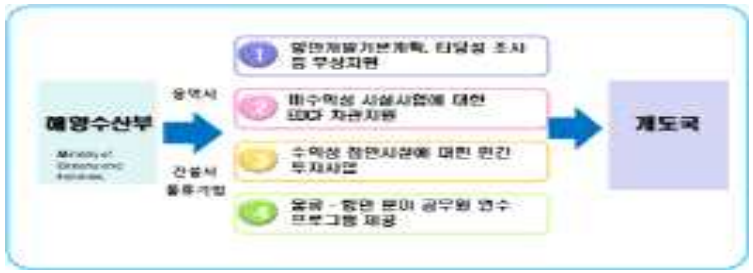

사 업 명
(55) 물류기업유치지원 (5066-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특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6	301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	물류기업유치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0(정액)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물류기업유치지원	339	3,939	3,939	2,957		△982	△24.9

4. 사업목적·내용

-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항만배후단지에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신규화물 및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항만을 기업의 물류·비즈니스 활동거점으로 육성
- (우수물류창고인증)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심사·인증 관리
  *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으며, 우수업체 인증 시 물류터미널, 물류시설 등에 우선입주 가능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전자상거래 등 국내외 물류수요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등을 위해 인천항·부산항 배후단지 내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79조 및 제80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 및 제61조,제62조

② 추진경위

- 자유무역지역 지정*('02.1~)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개발('06~)
  * 부산항('02.1.), 광양항('02.1.), 포항영일만항('08.12.), 평택·당진항('09.3.) 등
- VIP 참석 항만배후단지 투자설명회 개최('03.12.)
-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방안」 VIP보고('07 물류회의/ '07.05)
- 「물류정책기본법」 제정('07.08)
- 항만배후단지 198개 기업유치('06년~현재)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사업규모 :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마케팅 1식, 우수물류기업 인증 관리 위탁 1식, 인천항·부산항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각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국고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 사업 수혜자 : 항만배후단지 입주 물류·제조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마트공동 물류센터 건립 지원	보조	인천항만 공사	1,500	30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
	보조	부산항만 공사	1,142	30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

7. 사업 집행절차

- 글로벌 기업 유치 마케팅 : 사업계획 수립 → 현지 마케팅 → 정산
  「항만법」 제79조 및 제80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우수물류기업 인증 및 관리 : 심사대행기관 심사 → 인증 → 정산
  「물류정책기본법」 제 40조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 보조금 신청 → 심사 → 교부 → 정산
  「물류정책기본법」 제 61조

사 업 명
(56)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5066-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7 (교통시설특별회계)	27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양수산부)	9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6	302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민자유치 및 글로벌기업유치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	2,259	2,193	2,193	2,117		△76	△3.5

4. 사업목적·내용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운영**) 해외시장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해외 물류시장 개척 지원**) 유망시장 조사,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 컨설팅 지원 등
- (**해운물류협력 연구**) 국내외 해운환경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제 도출
- (**국제해운물류 협력**) 해운협정(23개국) 및 해운물류 MOU(9개국) 체결국과의 양다자 협의
- (**북방물류 교육협력 및 인력양성**) 신시장 진출을 위한 북극 원주민의 국내 교육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해운법 제37조(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요·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3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산업의 육성과 항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換積)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7. 그 밖에 물류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영국, 미국, 중국 등 주요해운국과의 해운협정, 해운협력 MOU, FTA 체결 등 국제해운협력 유지 및 국제논의 흐름의 체계적 참여 필요성 증대
-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물류네크워크 구축계획 수립('07)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설치('08)
-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09)
-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방안 수립('11)
- 해수부-국토부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수립('13)
- 해수부-국토부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치('13)
- 관계부처 합동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16)
- 관계부처 합동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18)
- 국가물류시행계획 수립(매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3,714	3,517	2,056	2,042	2,193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해운물류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보조	해운물류 기업	542	70%	물류정책기본법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북방물류 교육협력 및 인력양성	보조	북방물류 교육기관	300	100%	물류정책기본법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등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용역계약 체결) → 용역수행 → 사업 준공

방침수립 및 사업 공고 ..... (해수부)

⇩

사업기관 선정(기술성평가 등) ..... (해수부, 평가위원 등)

⇩

사업 용역계약 체결 ..... (해수부 - 위탁기관)

⇩

용역 추진(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위탁기관)

○ (보조사업) 사업계획 수립, 공모 등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수행 → 사업추진결과 확인 후 보조금 교부 확정

사 업 명
(57) 울산신항 (507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74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울산신항(교특)	울산신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울산신항	159,180	186,605	186,605	189,783		3,178	1.7

4. 사업목적·내용

○ 울산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인 울산산업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환동해권의 물류 거점항으로 육성

-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 울산신항 남항지구(2단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외곽호안 1.42km 축조
-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
  · 울산신항 남항지구(2단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외곽 방파제 1.3km 축조

- (울산신항 남방파제(2-3공구) 축조공사)
  · 울산신항 남항지구(2단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외곽 방파제 0.9km 축조
- (울산신항개발(1-1단계) 운영수입보장금)
  · 「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실제 사용료 수입액이 실시 협약 상 보장기준 사용료 수입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 (울산신항 통합 사후환경영향조사)
  · 울산신항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 (울산신항 남화부두 파제제 축조공사)
  · 울산본항 남화부두(3,000×2선석) 및 가스부두(1,000×1선석, 5,000×1선석, 8,500×1선석)는 조성되어 현재 이용 중이며, 기상악화 시 정온도 미확보에 따라 시설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파제제 0.17km 축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건설의 시행자)

② 추진경위

□ 정부사업

- '95. 05. ~ '97. 12. : 울산신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방파제 기본설계용역
- '97. 11. ~ '98. 12. : 울산신항 작업부두 완공(100m : 82억원)
- '99. 03. 31. : 울산신항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예정지역 고시
- '99. 07. 01. : 울산신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1단계사업) 고시
- '02. 5. ~ '03. 3. : 울산신항 개발계획 정비용역 시행
- '03. 5. ~ '04. 6. : 울산신항 남방파제 실시설계용역시행
- '04. 12. 23. : 울산신항개발(1-1단계) 호안공사 입찰공고(위탁사업)
- '04. 12. 28. : 울산신항 남방파제(1,2공구) 착공
- '05. 2. 18. : 울산신항개발(1-1단계) 호안공사 착공
- '05. 6. 13. : 정부사업 1단계(1공구) 준공('99. 12 착공)
- '06. 12. 27. : 수정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지정 고시
- '07. 12. 31. : 북측 진입도로 착공
- '08. 4. 30. : 울산신항개발(1-1단계) 호안공사 준공
- '08. 12. 16. : 울산신항 북방파제(제1공구) 축조공사 착공

- '09. 05. 28. : 울산신항 남방파제(1,2공구) 준공
- '09. 08. 07. : 울산신항 남측진입도로 착공
- '09. 10. 13. : 울산신항 북방파제(제2공구) 축조공사 착공
- '10. 01. 28.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고시
- '10. 04. 30. : 울산신항 건설계획 변경고시
- '11. 07. 29.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변경고시
- '11. 09. 16. : 울산신항 북방파제(제1공구)축조공사 준공
- '11. 10. 31. : 울산신항 북방파제(제3공구)축조공사 착공
- '11. 12. 27. : 울산신항 남측진입도로 준공
- '12. 07. 12. : 울산신항 북방파제(제2공구)축조공사 준공
- '13. 12. 19. :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축조공사 착공
- '14. 8. 14. : 울산신항 북방파제(제3공구)축조공사 준공
- '16. 4. 14. :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착공
- '16. 11. 26. :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착공
- '17. 7. 24. :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구) 축조공사 착공
- '17. 9. 27. :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축조공사 준공
- '19. 4. 13. :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준공
- '21. 10. 11. : 울산신항 남방파제(2-3공구) 축조공사 착공

□ 민자사업

- '97. 4. 7. :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1단계, 접안시설 4.5km, 9,580억원)
- '99. 12. 31. :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기획예산처)
  - 안벽1,260m, 6선석(컨 2, 다목적 2, 광석 2선석)
- '01. 11. 28. :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 컨소시엄(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한화, 고려개발)
- '04. 3. 22.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해양수산부)
- '04. 6. 29. : 민자사업(1-1단계) 실시계획 승인(해양수산부)
- '04. 7. 1. : 민자사업(1-1단계) 착공
- '06. 2. 26. : 남항부두(1-2단계) 시행허가
  - 안벽 2,260m, 9선석(액체 7, 광석 1, 목재 1선석)
- '08. 10 ~ 12 : 남항부두(1-2단계) 일부 착공(4,5,6,7번선석)
- '09. 5 ~ 7 : 남항부두(1-2단계) 일부 착공(1,8,9번선석)
- '09. 05. 25. : 민자사업(1-1단계) 준공
- '10. 12. 31. : 민자사업(1-2단계) 남항부두(6번선석) 준공
- '11. 12. 31. : 민자사업(1-2단계) 남항부두(7,8,9번선석) 준공

- '12. 12. 31. : 민자사업(1-2단계) 남항부두(3,4,5번선석) 준공
- '13. 8. 31. : 민자사업(1-2단계) 남항부두(1,2번선석) 준공
- '17. 2. 17. : 울산신항 북측안벽 및 항만배후단지(3공구)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9조 6,408억원(재정 3조 2,808억원)
- 사업기간 : 1995년 ~ 2023년
- 사업규모 : 안벽 39선석('컨' 4선석 포함), 방파제 8.91㎞, 항만시설부지 763천㎡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정부(해양수산부), 민간사업자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운송종사자 및 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울산신항개발 운영수입 보장금	보조	UNCT(주) (구:울산 동방아이 포트(주))	6,000백만원	-	·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 민자사업 실시협약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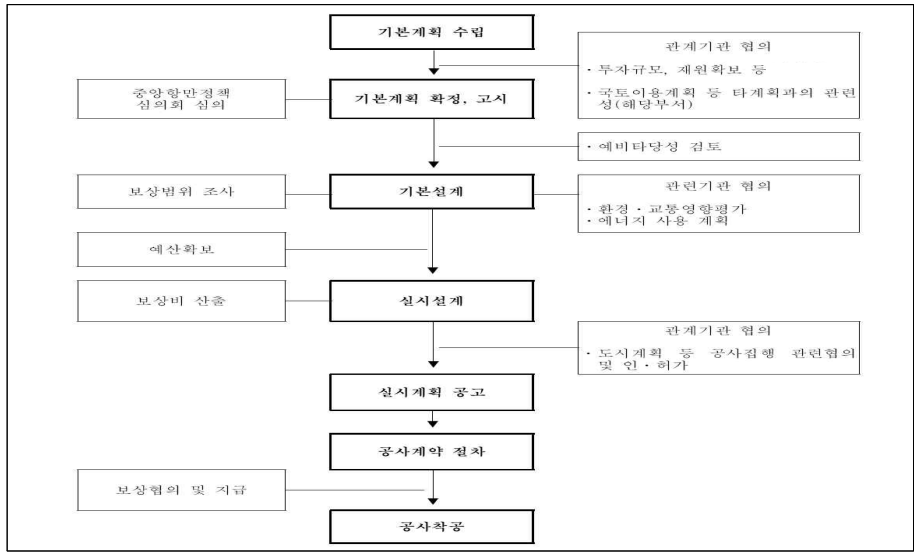

사 업 명
(58) 동해신항 (5076-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 · 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76	302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동해신항	동해신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동해신항	180,299	145,590	145,590	31,367		△114,223	△78.5

4. 사업목적·내용

- 환동해권 물류중심 및 동북아 교역증가에 대비하는 전진기지 거점항만 육성
-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북방파제 축조공사는 3단계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항만 정온도 향상 등 항만 운영을 위한 사업임
-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축조공사) 방파호안 축조공사는 항내 정온수역을 확보하여 부두시설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임
- (동해신항 관리부두 등) 동해신항 운영을 위한 관리부두 건설을 위한 사업
- (동해신항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건설공사) 기타광석 및 잡화부두 건설공사는 동해항

체선율 해소 및 국가기간산업 원자재 지원 허브항 육성을 위한 사업임
-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동해신항에서 발생되는 물동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진입도로(산업도로～동해신항) 개설
- (동해신항 연결도로 건설공사) 동해신항에서 발생되는 물동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연결도로(국도38호선(삼척IC) ～ 국도7호선) 개설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 추진경위
- '11.07 : 제3차(2011~202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 '11.09~'12.03 : 동해항 3단계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실시(기획예산처, KDI)
- '13.04~'14.09 :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축조 기본·실시설계용역 시행
- '14.05 :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입찰방법 변경(기타→대안)
- '16.05 :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착공
- '16.06 : 동해항 3단계 추진방안 검토 및 방파호안·동방파제 기초조사용역 준공
- '17.06 :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1공구) 축조공사 착공
- '17.12 :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2공구) 축조공사 착공
- '20.08 :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조 6,468억(재정 8,810, 민자 7,658)
- 사업기간 : '12~'25
- 사업규모 : 북방파제 1,700m, 동방파제 150m, 도류제 150m, 방파호안 2,288m, 관리부두 200m, 친수시설 8만5천㎡, 기존방파제 제거 389m, 안벽 7선석(최대 10만톤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항만물류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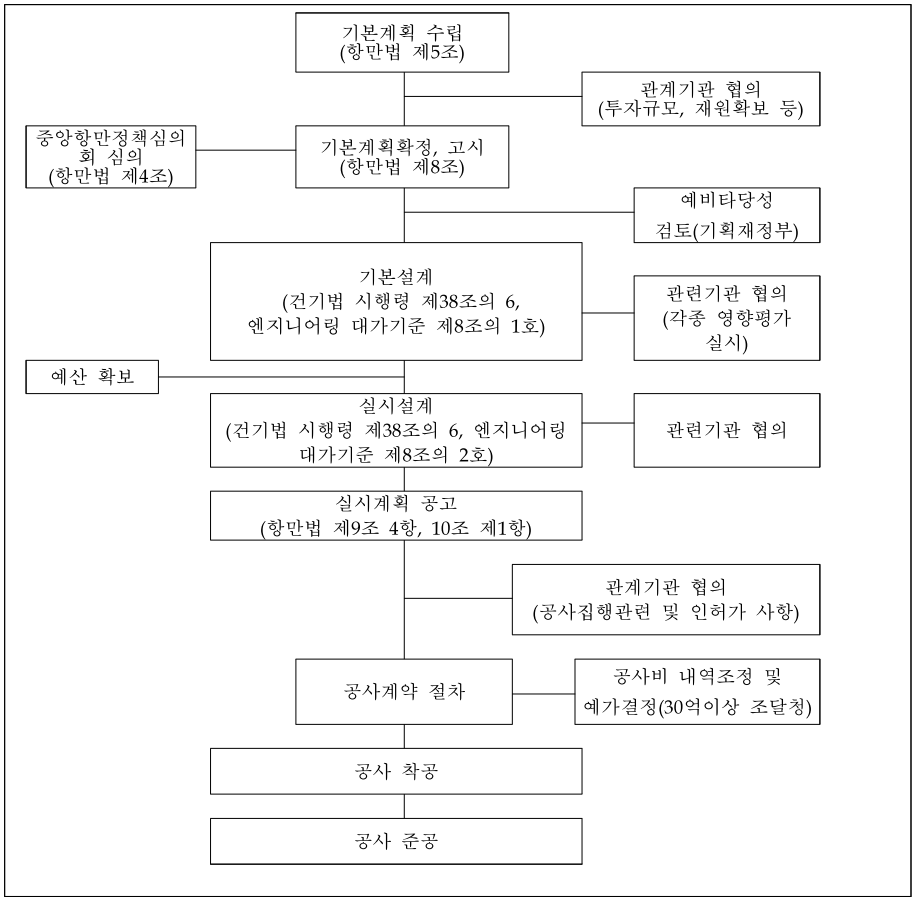

사 업 명
(59) 표지시설 (6350-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50	300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표지시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표지시설	55,422	57,179	57,179	48,144		△9,035	△15.8

4. 사업목적·내용

- (항로표지 증설) 해역내 암초, 저수심 등 위험구역을 표시하여 항해선박 좌초 방지 및 안전한 항로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항로표지 신설 추진
- (항로표지 개량(유지보수)) 노후 항로표지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정보통신기반 항로표지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마라도항로표지관리소 종합정비 추진
- (항로표지선 건조 및 수리) 친환경 선박 건조, 노후 선박의 안전운항 및 검사 등을 위한 정기수리 실시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지원) 정부 법정민간대행사업(등부표 수리), 위탁업무(국립등대박물관 운영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수행과 항로표지 장비용품 연구개발, 교육센터 운영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로표지법 제9조(항로표지의 설치·관리) 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선박 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해상인명안전협약」 제5장 14규칙 [항로표지의 설치와 운영]에 따라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른 통일성을 확보한 항로표지 제공의 의무 부여('74. 개정, '80. 5. 국내 발효)
- 항로표지 하자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발생 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92년)」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93.1.시행)」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 항로표지 장기개발 계획에 관한 계획 수립 : '98. 04.
-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04. 08.
- 제2차 항로표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 '15. 12.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항로표지 증설, 항로표지 개량, 항로표지선 수리), 보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총괄), 한국항로표지기술원(보조)
- 사업 수혜자 : 주요 항만 입·출항선박, 소규모 항·포구 이용 소형 및 레저선박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지원	보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	670	100	○ 항로표지법 제41조(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등)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7. 사업 집행절차

전년도 12월	사업예산 확보	국회
⬇		
당해연도 1월	예산 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해수부→지방청
⬇		
1~3월	설계 및 발주	지방청
⬇		
3~12월	공사 착공~기성~준공	시공사
⬇		
12월	표지시설 운영	지방청

사 업 명
(60) 표지시설(측위원) (6350-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통시설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만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300	6350	304
명칭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표지시설(측위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표지시설(측위원)	3,773	3,814	3,814	6,414		2,600	68.2

4. 사업목적·내용

- (증설)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연구개발 성과물('16~'20, 120억)을 활용하여 실해역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 송신국 구축
- (개량(유지보수)) 위성항법시스템 다원화,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장비개량, GPS 전파 교란 및 사이버 침해사고 등의 신속한 탐지와 대응 등을 위한 개량·유지보수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로표지법 제10조(항법정보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항법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98.04 : 항로표지 장기개발 계획에 관한 계획 수립
- '00.09 : 항로표지 정비계획 수립
- 항로표지법, 국제기구(IALA, IMO)의 협약 및 권고서에 의하여 해상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항로표지의 지속적 증설 및 관리
- 항로표지의 부정확으로 인한 각종 해난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책임(해상인명안전협약 및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 사례 : '98.2. 부산항에서 독일 선적 조양알파호(53,000톤) 사건
- '04.08 :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10.12 : 항로표지 중기 개발계획 수립
- '15.12 : 제2차 항로표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사업 수혜자 : 항해선박, 측량, 연구분야, 고정밀 위치정보 이용자 및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 및 레저용 선박 이용자 등

7. 사업 집행절차

~ 전년도 12월	사업예산 확보	국회
⬇		
당해연도 1월	예산 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해수부→측위원
⬇		
1~3월	설계 및 발주	측위원
⬇		
3~12월	공사 착공~기성~준공	시공사
⬇		
12월	전파표지 운영	측위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총 괄

가. 2022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계	**1,038**	**3,841**	**3,841**	**3,842**		**1**	**0.0**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	**24**	**24**	**25**		**1**	**4.2**
기타재산수입 (54-545)	17	24	24	-		△24	순감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	-	19		19	순증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	-	-	6		6	순증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021**	**3,817**	**3,817**	**3,817**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021	3,817	3,817	3,817		-	-

나. 2022년도 어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계	57,484	119,940	119,940	107,485		△12,455	△10.4
3140 친환경양식육성(에특)	**26,963**	**24,338**	**24,338**	**24,758**		**420**	**1.7**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3140-410)	26,963	24,338	24,338	24,758		420	1.7
6133 해운물류지원(에특)	**13,308**	**19,129**	**19,129**	**20,530**		**1,401**	**7.3**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6133-326)	13,308	19,129	19,129	20,530		1,401	7.3
6159 연안선사유류비지원	**17,213**	**76,473**	**76,473**	**62,197**		**△14,276**	**△18.7**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에특) (6159-300)	17,213	76,473	76,473	62,197		△14,276	△18.7

2. 수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신규)
11 - 54 - 5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	-	-	19		19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 소유로 인한 수입

○ 국고보조금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2) 기타재산이자외수입(신규)
11 - 54 - 54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	-	-	6		6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 소유로 인한 수입

○ 국고보조금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3) 기타경상이전수입

12 - 59 - 59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투자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1,021	3,817	3,817	3,817		-	-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316	1,150	1,021	1,014

사 업 명
(1)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3140-41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투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0	410
명칭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친환경양식육성(에특)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26,963	24,338	24,338	24,758		420	1.7

4. 사업목적·내용

-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 해수열, 복합열, 인버터 등) 수산양식 분야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양식장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지원
- (양식장태양광발전) 양식장의 수면,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통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양식어업인에게 보급함으로서 생산된 전력 판매로 어가소득 증대
- (양식장용수관리) 해안·도서지역 육상양식(종묘)장 밀집지역의 지하해수 개발가능적지 조사 및 개발·이용방안 제시를 통해 육상양식산업 경쟁력 제고
- (전기추진기보급사업) 내수면 어선에 탑재되어 있는 노후기관을 전기추진기로 대체

하여 수질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절감 도모
-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화석연료 등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는 수산가공분야에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에너지정책 부흥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친환경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농어업자원 보전 및 환경개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자원을 보전하고 농어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지개량, 농어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장려, 보호 육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시행
- 내수면 어업법 제17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을 추진할 수 있음

② 추진경위

- '08년 유가 및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고유가 대책방안 추진
- BH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보고(범부처, '09.5.4)
-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에너지 수요관리대책 보고(범부처, '09.6.4)
- BH 경제수석에게 농어업용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책보고(구농식품부, '09.6.14)
-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중점 추진과제(히트펌프보급결정, '10.3)
- 2010년부터 양식장 지하해수 조사사업 시행(2018년까지 103지구 조사완료)
- 2011년부터 수산분야(양식장)에너지절감시설 신규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 사업규모

·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 '25년까지 72만kW 보급계획('18년까지 51.3%인 37만kW 보급)

· 양식장태양광발전 : '30년까지 50만kw 태양광발전설비 보급('18년까지 200㎾ 확보)

· 양식장용수관리 : '25년까지 총 200지구조사('18년까지 51.5%인 103지구 조사)

· 전기추진기 보급 : '19~'30년까지 총 1,000척 보급(내수면어선 500척, 어장관리선 500척)

·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20년에 시범사업으로 수출주력품목인 마른 김 가공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시설 총 10식 보급

- 사업시행방법 : 보조(지자체, 민간)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
- 사업 수혜자 : 양식어업인, 내수면어업인, 연안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보조	지자체 보조	18,333	6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보조	지자체 보조	2,255	6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양식장태양광발전시설	보조	지자체 보조	320	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수산가공분야에너지절감시설	보조	지자체 보조	2,250	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양식장용수관리	보조	한국농어촌공사	1,500	10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전기추진기보급	보조	지자체 보조	100	6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기준보조율

7. 사업 집행절차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인버터・소수력발전시설・태양광발전),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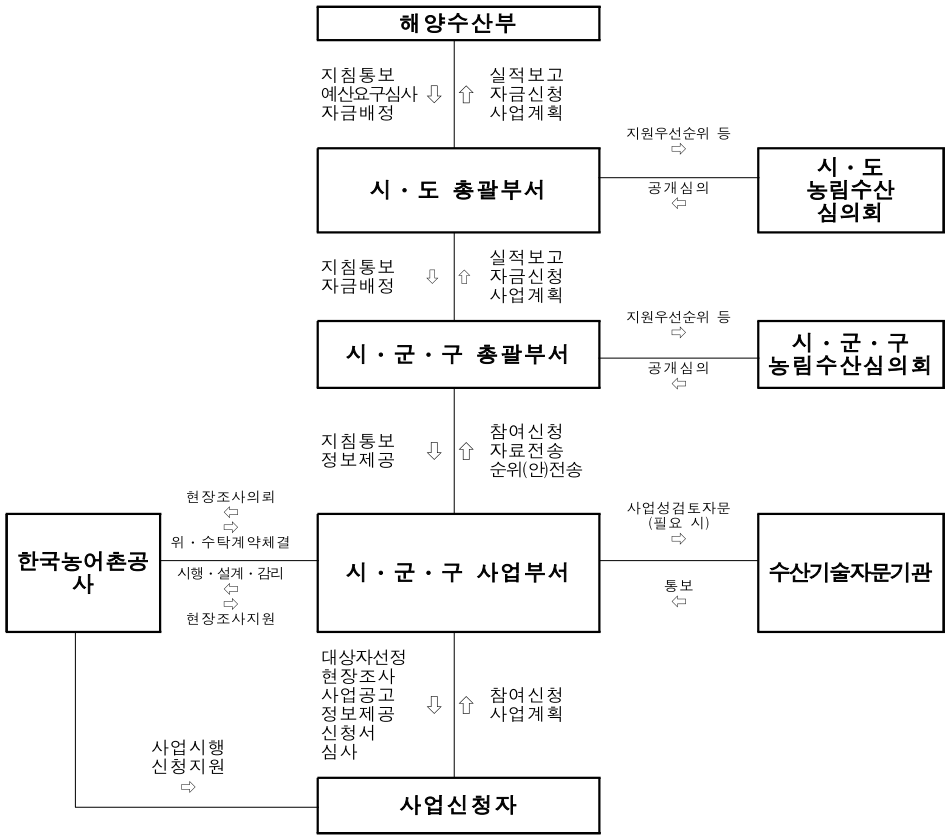

[양식장용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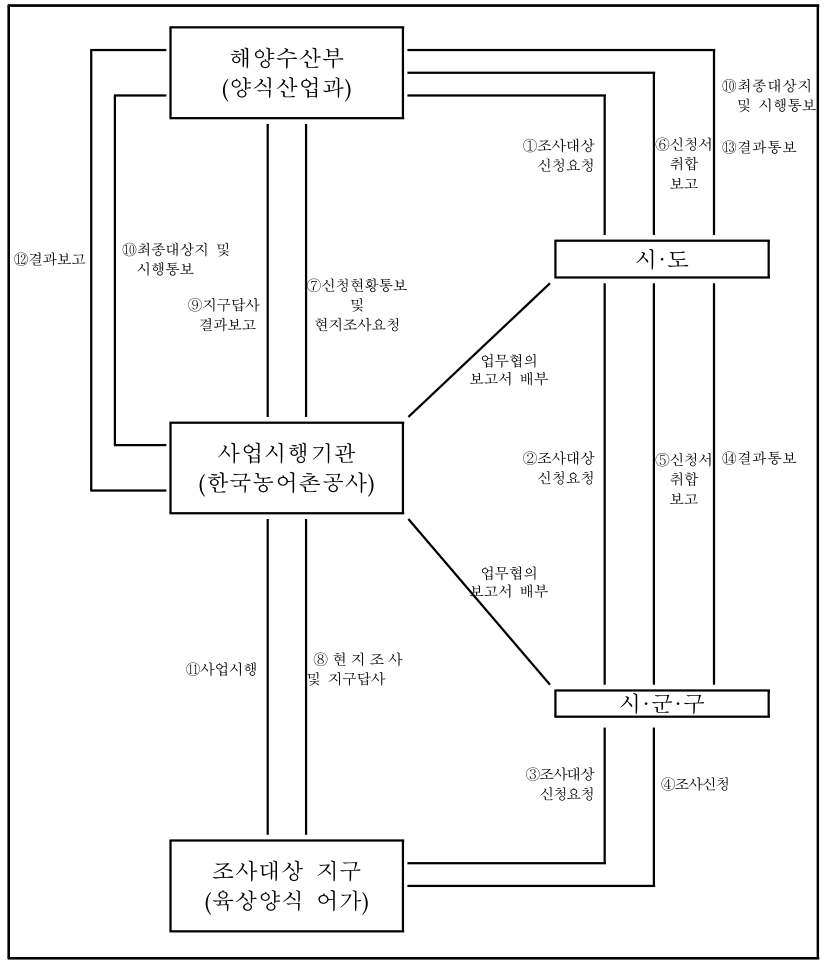

[전기추진기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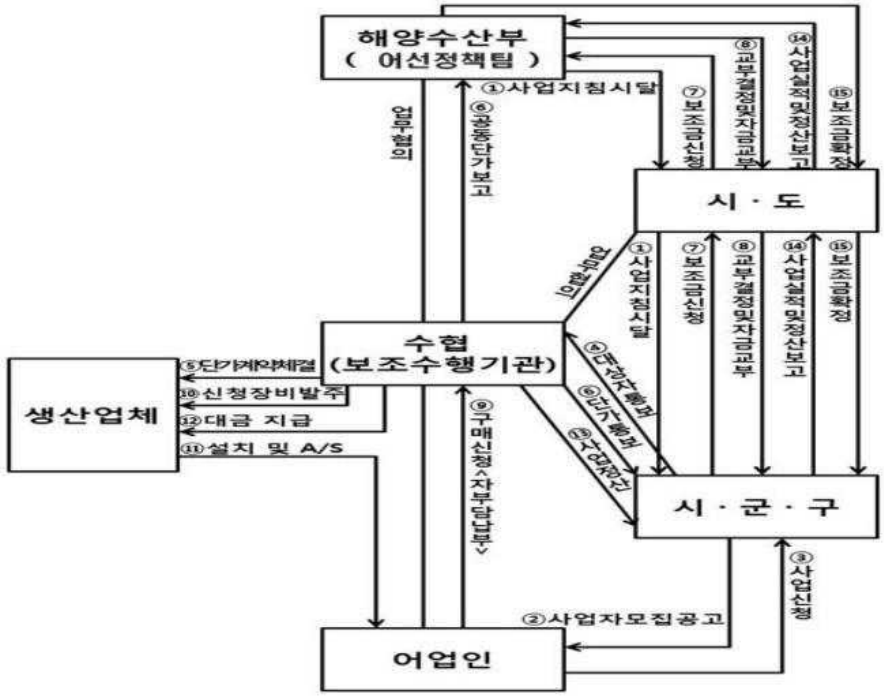

사 업 명
(2)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6133-32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투자계정	120	124
명칭	사업특별회계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33	326
명칭	해운사업 선진화	해운물류지원(에특)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13,308	19,129	19,129	20,530		1,401	7.3

4. 사업목적·내용

-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에너지효율이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 선박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 폐선 후 신조·대체를 유도함으로써 해운기업의 선대 효율화 및 조선소 수주량 확보를 도모하는 등 해운조선 상생협력 기반 구축

-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항만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 디젤 연료추진 예선을 LNG 연료추진 예선으로 전환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운법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친환경적 물류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② 추진경위

-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16.10.31)」에 따른 '해운-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의 하나로 친환경선박 건조 확대 제시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에 등록된 노후 선박의 폐선·해체 촉진을 위한 보조금 도입 추진'이 포함
- 대통령,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방문 시 「LNG 연료추진선 중심 일감 확보 및 항만 인근도시 미세먼지 감축 방안 마련 지시」
- 특히 예선은 선박 규모 대비 출력이 높은 대용량 엔진을 사용하여 LNG 연료추진 선박으로 전환 시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높음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8~'20(1차), '21~'22(2차)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항만예선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신조선가의 10% 이내	**해운법 시행령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항만예선사업자	신조선가의 30% 이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전환 지원)** 1. 화물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거나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투자를 하는 경우

7. 사업 집행절차

<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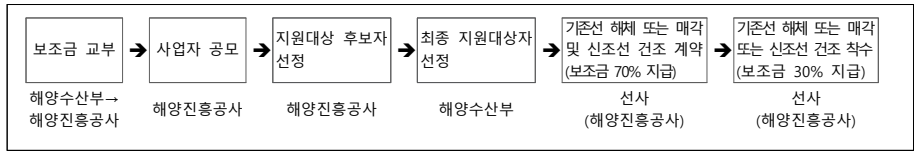

사 업 명
(3)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6159-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투자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6100	6159	300
명칭	해운사업 선진화	연안선사 유류비 지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17,213	76,473	76,473	62,197		△14,276	△18.7

4. 사업목적·내용

-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하여 내항화물운송업계의 재정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운법」 제41조제2항

제41조(재정지원)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0. 9. 7 : 에너지세제 개편안 당정협의 시 보조금 지급 결정

▪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및 수급균형을 위하여 **'01.7월 석유류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수송용 유류의 가격을 적정비율로 조정을 위해 유류세 인상

○ 이에 따라 **운수업계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01년 이후 인상된 유류세**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원**

* 현 연안화물선 유가보조 **ℓ당 345.54원 지원**(현 유류세 528.75원 - '01년 183.21원)

- '05.12.28 : 당정협의시 '01·'02년 인상분에 대한 지원단가 상향 조정

* '01~'02년 인상분 합계의 75%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 '07. 6. 2 :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 '06년말 당정간 합의한 대로 '01년 이후 인상분 합계의 100% 지급

- '08. 6. 8 :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고위당정협의)

* 당초 '08.6월까지의 지급기한을 '09.6월까지 연장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1년~계속
- 사업규모 : 내항화물운송사업자(792개사, 1,970척 / '20년말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 사업 수혜자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보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62,197	100%	「해운법」 제41조제2항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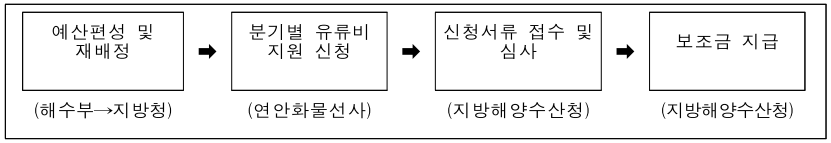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총 괄

가.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계	**8,845**	**10,069**	**10,069**	**14,505**		**4,436**	**44.1**
지역자율계정	**7,988**	**4,514**	**4,514**	**7,041**		**2,527**	**56.0**
54 기타재산수입	**604**	**206**	**206**	366		**160**	**77.7**
기타재산수입 (54-545)	604	206	206	-		△206	순감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	-	366		366	순증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384**	**4,308**	**4,308**	**6,675**		**2,367**	**54.9**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7,384	4,308	4,308	6,675		2,367	54.9
지역지원계정	**792**	**3,822**	**3,822**	**2,983**		**△839**	**△22.0**
54 기타재산수입	**47**	**55**	**55**	**73**		**18**	**32.7**
기타재산수입 (54-545)	47	55	55	-		△55	순감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	-	73		73	순증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45**	**3,767**	**3,767**	**2,910**		**△857**	**-22.8**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745	3,767	3,767	2,910		△857	-22.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65**	**1,733**	**1,733**	**4,481**		**2,748**	**158.6**
54 기타재산수입	**3**	**-**	**-**	**-**		**-**	**-**
기타재산수입 (54-545)	3	-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62**	**1,733**	**1,733**	**4,481**		**2,748**	**158.6**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62	1,733	1,733	4,481		2,748	158.6

나. 2022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총계	**142,052**	**304,816**	**304,816**	**135,771**		**△169,045**	**△55.5**
지역자율계정	**48,735**	**209,972**	**209,972**	**53,706**		**△156,266**	**△74.4**
1062 해양및수자원관리	**48,735**	**50,145**	**50,145**	**53,706**		**3,561**	**7.1**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062-301)	48,735	50,145	50,145	53,706		3,561	7.1
5070 지방이양항만	**-**	**159,827**	**159,827**	**-**		**△159,827**	**순감**
지방이양항만 지원 (5070-300)	-	159,827	159,827	-		△159,827	순감
지역지원계정	**45,054**	**39,309**	**39,309**	**28,001**		**△11,308**	**△28.8**
2835 식품산업육성	**13,267**	**11,400**	**11,400**	**2,850**		**△8,550**	**△75.0**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2835-302)	13,267	11,400	11,400	2,850		△8,550	△75.0
3031 수산물유통개선(균특)	**4,625**	**1,306**	**1,306**	**2,280**		**974**	**74.6**
산지유통시설 지원 (3031-301)	4,625	1,306	1,306	2,280		974	74.6
3150 수산자원조성	**23,430**	**22,871**	**22,871**	**22,871**		**-**	**-**
수산어업행정 지원 (3150-400)	23,430	22,871	22,871	22,871		-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7070 특행기관지방이전	**3,732**	**3,732**	**3,732**	**-**		**△3,732**	**순감**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 (7070-100)	3,732	3,732	3,732	-		△3,732	순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8,263**	**55,535**	**55,535**	**54,064**		**△1,471**	**△2.6**
1063 해양및수자원관리(제주)	**2,981**	**1,500**	**1,500**	**1,880**		**380**	**25.3**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1063-301)	2,981	1,500	1,500	1,880		380	25.3
3303 어항기반시설조성(제주)	**4,370**	**11,870**	**11,870**	**6,940**		**△4,930**	**△41.5**
국가어항(제주) (3303-301)	4,370	11,870	11,870	6,940		△4,930	△41.5
5069 주요항건설(제주)	**7,525**	**10,552**	**10,552**	**5,353**		**△5,199**	**△49.3**
제주항 (5069-301)	7,482	915	915	5,353		4,438	485.0
제주외항 (2단계) (5069-303)	43	9,637	9,637	-		△9,637	순감
5070 일반항건설(제주도)	**21,857**	**18,293**	**18,293**	**29,740**		**11,447**	**62.6**
화순항 (5070-301)	4,790	4,320	4,320	9,935		5,615	130.0

구분	2020결산	2021예산		2022예산		증 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
추자항 (5070-303)	2,865	2,109	2,109	6,891		4,782	226.7
제주일반항 건설 (5070-304)	14,202	11,864	11,864	12,914		1,050	8.9
5071 항만시설유지 보수(제주도)	**8,956**	**10,746**	**10,746**	**7,500**		**△3,246**	**△30.2**
항만시설유지 보수(제주) (5071-300)	8,956	10,746	10,746	7,500		△3,246	△30.2
7061 제주이관업무 지원	**2,574**	**2,574**	**2,574**	**2,651**		**77**	**3.0**
제주해양항만 운영지원 (7061-302)	2,574	2,574	2,574	2,651		77	3.0

2. 수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신규)
11 - 54 - 54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	-	-	366		366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 소유로 인한 수입

○ 국고보조금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2) 기타경상이전수입
12 - 59 - 59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7,384	4,308	4,308	6,675		2,367	54.9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 소유로 인한 수입

○ 국고보조금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251	7,646	8,129	3,568

(3) 기타재산이자수입(신규)

11 - 54 - 54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기타재산이자수입	-	-	-	73		73	순증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영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기준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2. 수입 개요

○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 소유로 인한 수입

○ 국고보조금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4) 기타경상이전수입

12 - 59 - 59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기타경상이전수입	745	3,767	3,767	2,910		△857	△22.8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603	6,382	745	980

(5) 기타경상이전수입

12 - 59 - 59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62	1,733	1,733	4,481		2,748	158.6

1.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등
(부과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납부기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472	6,910	62	45

사 업 명
(1)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06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지역자율계정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2	301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 및 수자원 관리	해양 및 수자원 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7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해양 및 수자원 관리	48,735	50,145	50,145	53,706		3,561	7.1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쓰레기 정화) 해안가 등에 대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
- (연안정비)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해양쓰레기 정화

① 법령상 근거조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② 추진경위

- '97년 : 해저에 다량으로 침적된 폐어구·어망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 감소 등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어장정화사업의 세사업으로 '침체어망인양사업' 신설
- '02년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명칭 변경

(2) 연안정비

① 법령상 근거 : 「연안관리법」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99. 8. : 연안관리법 제정
- '00. 6. :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00~'09) 수립
- '09. 5. :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10~'19) 수립
- '14. 10. :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10~'19) 수립
- '20. 6.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 수립·고시

6. 주요내용

(1) 해양쓰레기 정화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사업규모 : 전 연안 1식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연안 이용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해양폐기물관리법 제29조

(2) 연안정비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기준 28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연안 이용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친수연안) 70%(연안보전)	「연안관리법」 제28조 제2항

7. 사업 집행절차

(해양쓰레기 정화)

지자체	→	해수부	→	해수부	→	지자체	→	지자체
예산편성 및 국고지원 요구		예산편성(안) 의견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수행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연안정비)

사업예산요구 및 확정(지자체→해수부→기재부→국회)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지자체→해수부→지자체) → 연안정비사업 설계(지자체) → 실시계획(안) 협의(지자체→관계기관) → 실시계획 수립(지자체) → 연안정비사업 시행(지자체) → 연안정비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지자체)

사 업 명
(2)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283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실	지역지원 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5	302
명칭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식품산업육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수산식품산업거점 단지 조성	10,839	11,400	11,400	2,850		△8,550	△75.0

4. 사업목적·내용

- (수산식품 거점단지) 지역별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도모
- (거점단지 역량강화) 거점단지를 활용한 신제품·기술 개발 지원 및 시설지원 등 개선을 통한 거점단지 역량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제2항) : 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수산업법(제86조) : 보조 등

② 추진경위

- 지역별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과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08년부터 연구·가공·유통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2023
- 사업규모 : 시설지원(1개소), 제품개발 등(2개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수산물가공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거점단지 역량강화	보조	지자체 보조	2,85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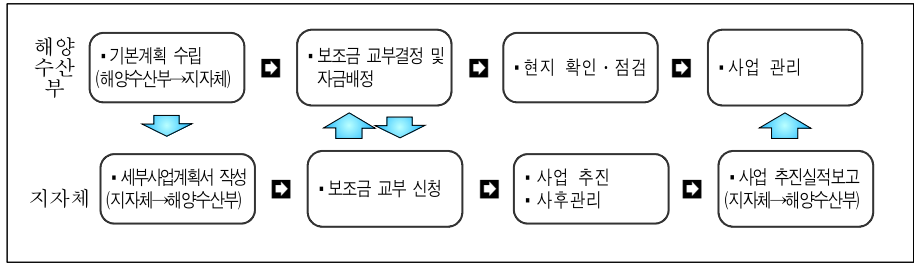

사 업 명
(3) 산지유통시설 지원 (30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구조개선 사업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31	301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과리	수산물유통개선	산지유통시설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7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산지유통시설 지원	4,625	1,306	1,306	2,280		974	74.6

4. 사업목적·내용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서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 주체로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육성
- (청정위판장)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양륙-선별-위판-배송 全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춘 청정 위판장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위판장의 개수·보수 등 지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등),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추진경위

- '13. 07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
- '18. 03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3개소 보조사업자 선정
- '18. 06 : '18~'22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반영
- '19. 05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개소 보조사업자 선정
- '19. 07 : 청정위판장 1개소 보조사업자 선정
- '20. 12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3개소 사업 완료
- '21. 03 : 청정위판장 1개소 보조사업자 선정
- '21. 05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개소 보조사업자 선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2 ~ 계속
- 사업규모 : (FPC) '22년까지 FPC 10개소 건립 추진(현재 10개소 운영·건립중)
  (청정위판장) '21년 청정위판장 1개소 건립 추진(신규)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수산물유통 종사자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지거점 유통센터	보조	전라북도	1,140	40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22호
청정위판장	보조	전라남도	1,140	40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22호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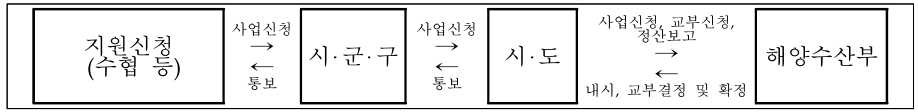

사 업 명
(4) 수산어업행정지원 (3150-4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지역지원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50	400
명칭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관리	수산어업행정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수산어업행정지원	23,430	22,871	22,871	22,871		-	-

4. 사업목적·내용

- 정부조직개편('08.2.28.)으로 지방자체단체로 이양된 30개 수산사무소의 수산어업지원 기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양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제4항 :

▪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3항 :

▪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08.2.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수산어업지원기능 지방이양('09.3.~5.)
- 행안부, 기재부 등과의 지방이양 회의를 통해 예산지원방침('08.12.18) 및 지원근거법령(균특법 제35조제4항 신설, '09.4.2.) 마련
- 『책임운영기관 법률시행령』에 의거, '09. 3.~5월부로 지자체로 이관
- '09년도 인건비 및 사업비의 경우, 지자체 경상보조(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우리부에서 직접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30개 수산사무소 행정지원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인건비 등 100% 지도선 수리 및 청사건축 5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제4항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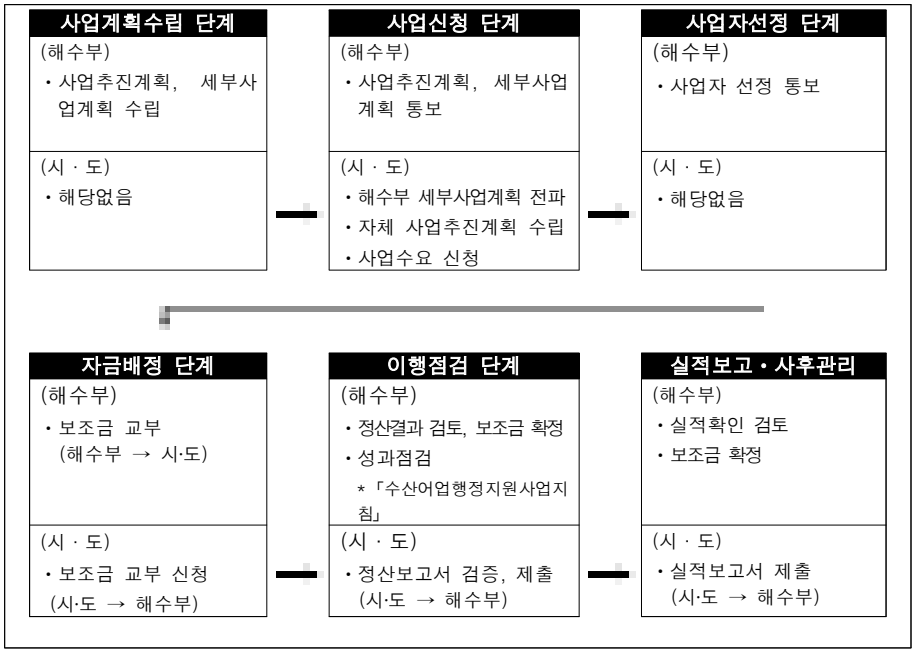

사 업 명
(5)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106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9	27	해양정책실	03	070	075
명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제주계정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3	301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해양 및 수자원 관리(제주)	2,981	1,500	1,500	1,880		380	25.3

4. 사업목적·내용

- (해양쓰레기 정화) 해안가 등에 대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
- (연안정비)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연안정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연안관리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연안정비계획을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9. 8. : 연안관리법 제정
- '00. 6. :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00~'09) 수립
- '09. 5. :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10~'19) 수립
- '14. 10. :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10~'19) 수립
- '20. 3.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 수립·고시(예정)

(2) 해양쓰레기 정화

① 법령상 근거조항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② 추진경위

- '97년 : 해저에 다량으로 침적된 폐어구·어망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 감소 등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어장정화사업의 세사업으로 '침체어망인양사업' 신설
- '02년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명칭 변경

6. 주요내용

(1) 연안정비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기준 1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연안 이용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안정비	보조	제주도	800	50% (친수연안) 70% (연안보전)	연안관리 제28조

(2) 해양쓰레기 정화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년 ~ 계속
- 사업규모 : 제주 연안 1식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연안 이용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쓰레기 정화	보조	제주도	1,080	50	해양폐기물관리법 제29조

7. 사업 집행절차

(해양쓰레기 정화)

지자체	→	해수부	→	해수부	→	지자체	→	지자체
예산편성 및 국고지원 요구		예산편성(안) 의견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수행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연안정비)

사업예산요구 및 확정(지자체→해수부→기재부→국회)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지자체→해수부→지자체) → 연안정비사업 설계(지자체) → 실시계획(안) 협의(지자체→관계기관) → 실시계획 수립(지자체) → 연안정비사업 시행(지자체) → 연안정비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지자체)

사 업 명
(6) 국가어항(제주) (3303-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03	301
명칭	어촌어항활성화	어항기반시설조성 (제주)	국가어항(제주)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	(B-A)/A
국가어항(제주)	4,370	11,870	11,870	6,940		△4,930	△41.5

4. 업목적·내용

- 국가어항(제주)
-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
-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 낙후된 어촌지역 개발 및 소득증대와 연계한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어촌어항법 제16조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1.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 시·도지사
3. 어촌정주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4. 마을공동어항 :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23조 : ①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② 추진경위

- 최초사업 시작년도 : 1967년
-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업외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자연경관 등 관광여건이 구비된 어촌의 환경 재정비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어촌관광 대중화를 위하여 다기능어항개발 추진
- 2006.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국가어항 개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업무 이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07년~계속
- 사업규모 : 국가어항 5개항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촌지역 주민, 불특정 다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어항(제주)	보조	제주특별 자치도	6,940	1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어촌어항법 제49조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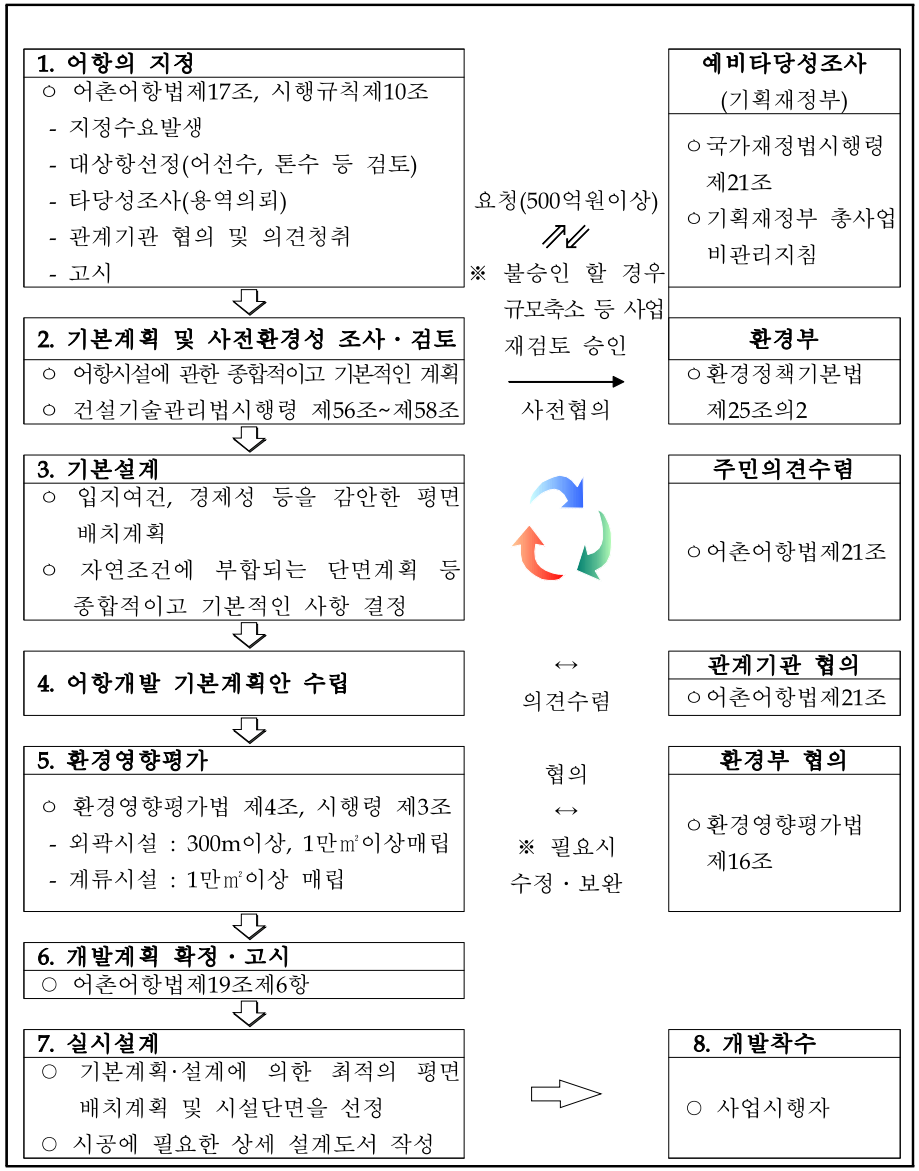

사 업 명
(7) 제주항 (5069-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69	301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주요항 건설(제주)	제주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제주항	7,482	915	915	5,353		4,438	485.0

4. 사업목적·내용

- (탑동방파제 축조 사후환경조사) 탑동방파제 축조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
- (보행교량) 수협위판장 주변지역 교통체증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어민불편해소
- (육상전원공급장치) 제주항의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대기질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② 추진경위

- '79.12 : 제주항 개발 착수
- '81.06 : 제주항 확장사업 시행허가
- '81.11 : 기본계획 설계
- '93.04.~'93.09 : 제주지역 항만 광역개발 기본계획수립
- '95.04.17 : 전국항만 기본계획 고시
- '01.12.15 :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 '11.07.29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 '14.02. :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
- '14.04. : 제주항 해경부두 축조(73m) 준공
- '14.12.~'15.10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
- '15.08.~'17.09.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실시설계용역
- '15.10.~'16.12.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 '16.09.29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17.12.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착공
- '20.03.~'20.11. : 제주항 어선물양장 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05.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 '20.08.~'2102. : 제주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 '21.02. : 제주항 어선물양장 축조공사 착공
- '21.03. : 제주항 어항구내 보행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05. : 제주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2030
- 사업규모 : 탑동방파제 1,100m, 어선물양장 50m, 돌제 40m, 동방파제 보강 232m, 보행교량 65m,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육상전원공급 13선석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주항	보조	지자체 보조	5,353	1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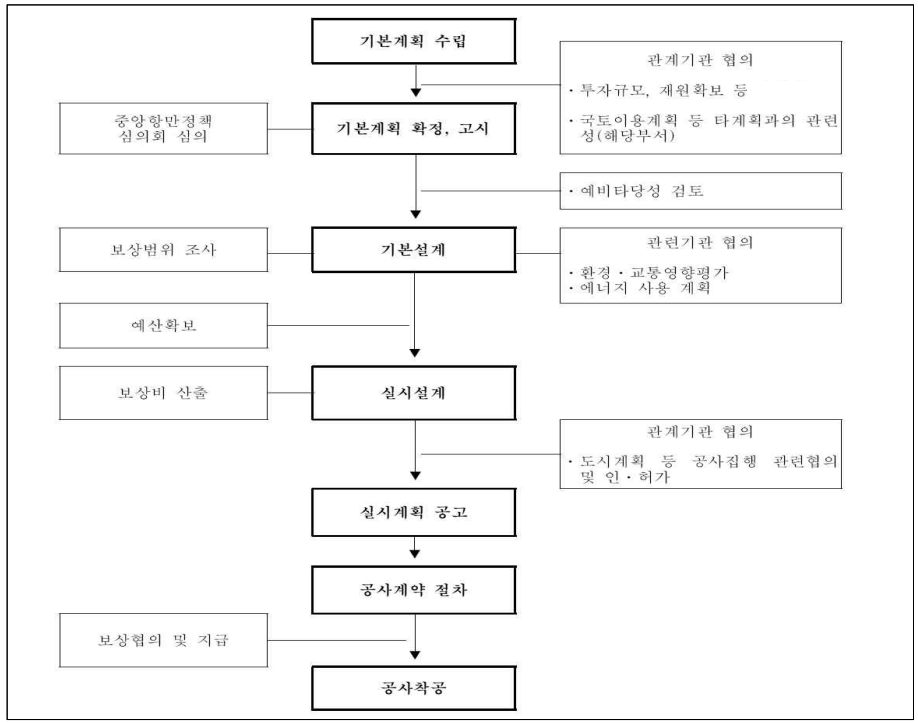

사 업 명
(8) 화순항 (5070-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70	301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제주)	화순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화순항	4,790	4,320	4,320	9,935		5,615	130

4. 사업목적·내용

- (2단계 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 피해 방지
- (어업피해보상)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구역 인근 마을어장 내 모래 퇴적현상 발생에 따른 원인분석 및 피해보상 추진
- (항만진입도로 개설) 항만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진입도로 건설
- (관공선부두 축조) 화순항 관공선부두 신설을 통해 남방해역 안보와 치안유지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② 추진경위

- '93.09. : 제주지역 항만 광역개발 기본계획수립
- '95.04.17 : 전국항만 기본계획 고시
- '07.12. :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13.10.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
- '14.01. : 화순항 침식방지시설 축조공사 착공
- '16.09.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17.07. : 화순항 관공선부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7.07. : 화순항 동방파제 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8.12.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 준공
- '18.12. : 화순항 해안침식방지시설 설치공사 준공
- '19.12. : 화순항 배후부지 포장공사 완공
- '20.07.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수립 고시(화순항 진입도로)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2025
- 사업규모 : 관공선부두 80m, 호안 239m, 진입도로 565m 등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화순항	보조	지자체 보조	9,935	1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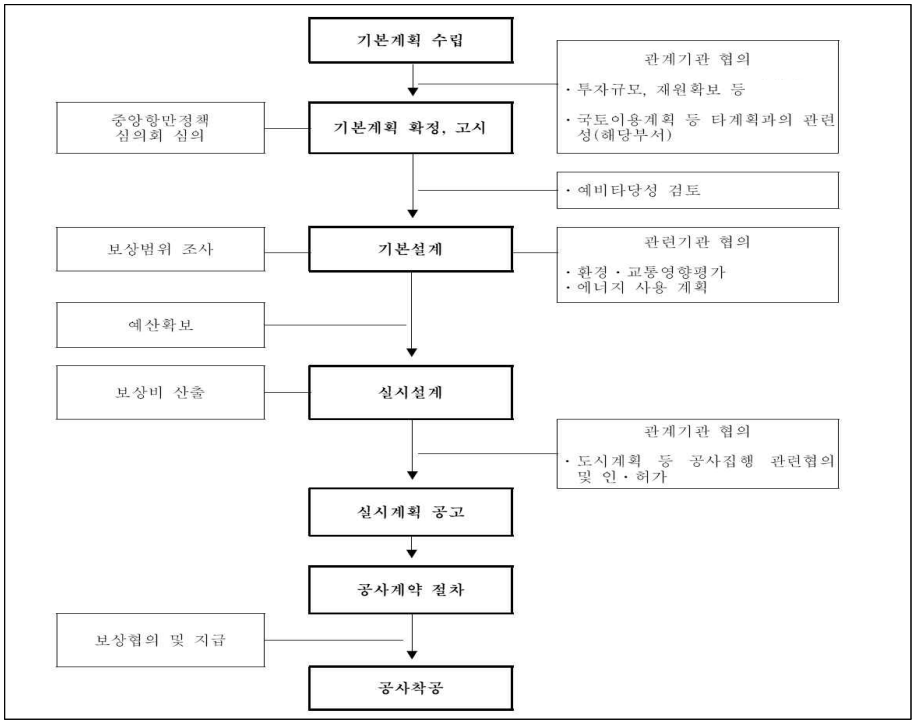

사 업 명
(9) 추자항 (5069-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70	303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제주)	추자항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추자항	2,865	2,109	2,109	6,891		4,782	226.7

4. 사업목적·내용

- (물양장 정비) 노후된 물양장 개축 등 정비를 통해 구조물 내구성 확보 및 재해안전 확보
- (수제선 정비) 추자항 내 수제선 정비를 통해 물양장 및 배후도로 협소 불편 문제 해소 및 해저암반 돌출에 따른 선박 안전 위험요인 제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② 추진경위

- '13.12. : 국가관리 연안항 항만기본계획 고시
- '15.12. : 추자항 물양장 정비공사 준공
- '16.09.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 고시
- '18.04. : 추자항 여객터미널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9.04. : 추자항 여객터미널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19.06. : 추자항 여객선 대합실 증축 착공
- '19.08. :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05. : 추자항 여객선 대합실 증축 완공
- '20.05. : 추자항 여객선 대합실 증축 완공
- '20.11. :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0.11. : 방파제 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1.05. :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착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2025
- 사업규모 : 방파제 보강 305m, 외곽시설 230m, 접안시설 200m, 파제제 230m, 물양장 정비 282m, 수제선 정비 162m, 진입도로 245m 등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추자항	보조	지자체 보조	6,891	1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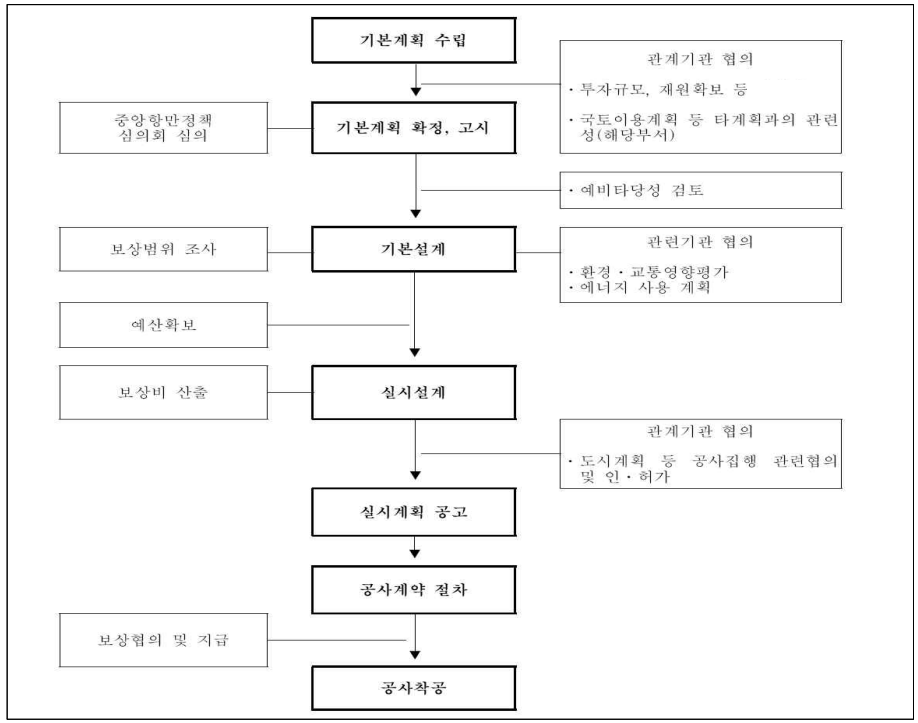

사 업 명
(10) 제주일반항건설 (5070-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70	304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일반항 건설(제주)	제주일반항건설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제주일반항건설	14,202	11,864	11,864	12,914		1,050	8.9

4. 사업목적·내용

- (서귀포항 재정비) 서귀포항 재정비로 선박대형화에 따른 접안능력 향상과 안전한 입출항 여건 마련 및 취약 시설물 보강에 따른 항만이용자 안전 확보
- (성산포항 화물부두 및 진입도로 확충) 물동량 증가 및 선박대형화 문제와 항만 진입로 교통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화물부두 확충 및 진입도로 확장
-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 선박대형화에 따른 접안시설 확보 및 모래·잡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두 확충
- (애월항 2단계 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애월항 2단계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 피해 방지

-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 항만 및 어항공사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비 절감 도모를 위해 제주도 내 부족한 준설토투기장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② 추진경위

- '12.03.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착공
- '13.08.~'15.02. : 성산포항 모래부두 축조공사 추진
- '13.09.~'14.07.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수보강공사 설계용역 시행
- '15.03.~'18.06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수보강공사 시행
- '15.12. : 민군복합형 크루즈 운영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6.10.~'17.12 : 서귀포크루즈항 운영지원시설공사 완료
- '16.09.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17.01. : 성산포항 외곽시설 및 물양장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7.03.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7.03. : 애월항 돌제 및 비산먼지 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7.07.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준공
- '17.12. : 애월항 돌제 및 비산먼지 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18.05. : 애월항 신규돌제시설 축조공사 착공
- '18.06. : 성산포항 외곽시설 및 물양장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18.06.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18.10. : 성산포항 물양장 축조공사 착공
- '18.10.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 '19.08. : 애월항 돌제시설 축조공사 준공
- '20.04. : 서귀포항 동방파호안 보강 및 돌제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1.10.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 '21.02. : 서귀포항 동방파호안 보강 및 돌제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1.06. : 서귀포항 동방파호안 보강 및 돌제축조공사 착공
- '21.06. :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1.06. :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1.06. :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2026
- 사업규모 : 서귀포항 돌제물양장 50m, 동방파호안 보강 1식, 서귀포항 재정비 1식, 성상포항 화물부두 390m, 진입도로 400m, 애월항 동부두 350m, 친수시설 1식,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 1식, 준설토투기장 1식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제주일반항 건설	보조	지자체 보조	12,914	1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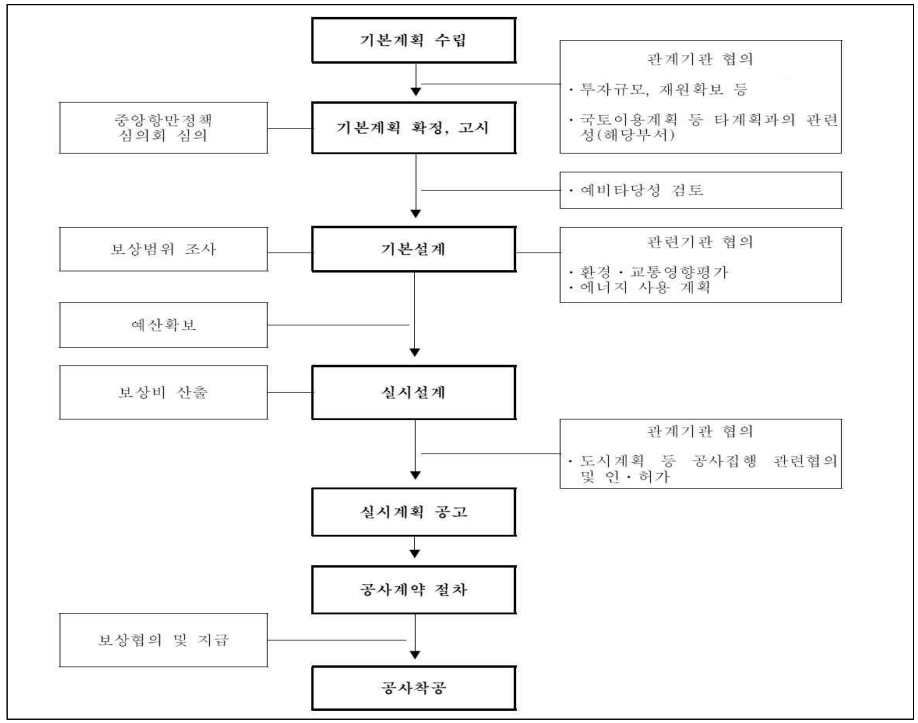

사 업 명
(11)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507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항만국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20	124
명칭					교통및물류	해운·항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71	300
명칭	항만개발 및 관리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8,956	10,746	10,746	7,500		△3,246	△30.2

4. 사업목적·내용

- 제주지역 무역항 및 연안항 항만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 수행으로 항만이용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② 추진경위

- '20.01.~'20.12. : '20년 항만시설 유지보수 완료
- '21.01.~'21.12. : '21년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행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제주지역 항만시설 유지보수 1식(7개항)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항만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항만시설유지보수(제주)	보조	지자체 보조	7,500	10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및 제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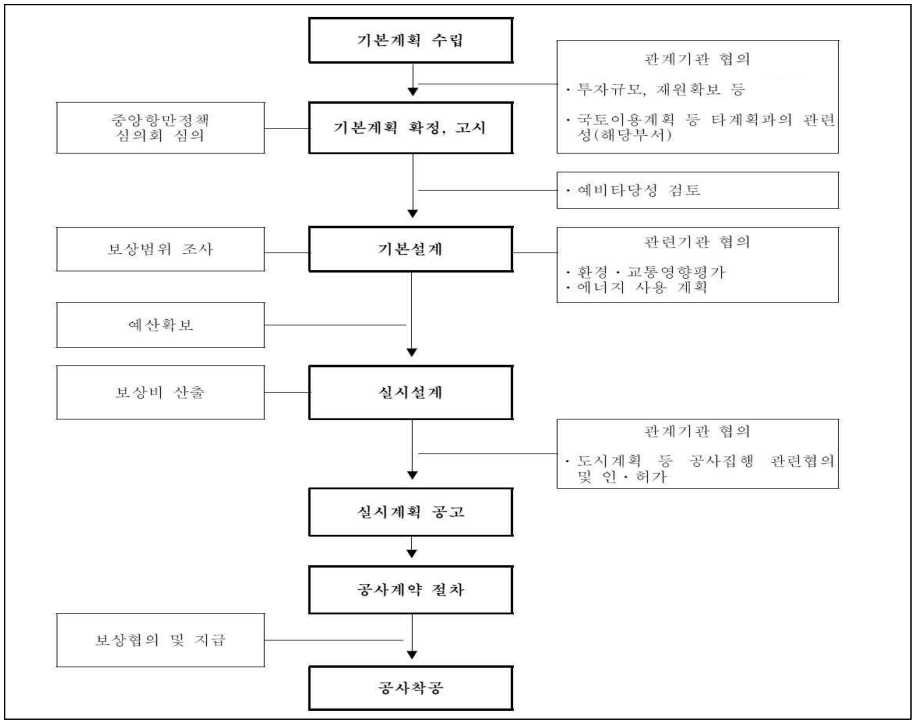

사 업 명
(12) 제주해양항만 운영지원 (7061-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120	126
명칭					교통및물류	물류등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61	302
명칭	해양수산행정지원	제주 이관업무 지원	제주해양항만 운영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		(B-A)/A
제주해양항만 운영지원	2,574	2,574	2,574	2,651		77	3.0

4. 사업목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06.2.21)에 의거 제주도로 이관된 해양항만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건비, 기본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권한의 위임)

② 추진경위

- ‘06년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체인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지방관리무역항 운영 등에 관한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 보조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수혜자 : 제주특별자치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건비 등 지원	보조	제주도	2,651	1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7. 사업 집행절차

○ 보조금 교부 신청(제주특별자치도 →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결정(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 → 집행(제주특별자치도)

수 산 발 전 기 금

Ⅳ. 수산발전기금

1. 총 괄

가.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결산	2021계획액		2022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
총 계	**760,570**	**1,024,915**	**1,024,915**	**926,722**		**△98,193**	**△9.6**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7,575**	**32,106**	**32,106**	21,640		**△10,466**	**△32.6**
기타민간이자수입 (54-544)	10,532	24,900	24,900	18,012		△6,888	△27.7
기타재산수입 (54-545)	7,043	7,206	7,206	-		-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	-	3,628		순증	순증
변상금 및 위약금	**298**	**588**	**588**	**606**		**18**	**3.1**
위약금 (57-572)	298	588	588	606		18	3.1
가산금	**2**	**27**	**27**	**28**		**1**	**3.7**
가산금 (58-581)	2	27	27	28		1	3.7
기타경상이전수입	**62,955**	**51,799**	**51,799**	53,353		**1,554**	**3.0**
법정부담금 (59-593)	61,524	50,163	50,163	51,668		1,505	3.0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431	1,636	1,636	1,685		49	3.0
면허료 및 수수료	**1,196**	**8,898**	**8,898**	**9,229**		**331**	**3.7**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1,196	8,898	8,898	9,229		331	3.7

구 분	2020결산	2021계획액		2022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
잡수익	**32**	-	-	-			
기타잡수익 (69-691)	32	-	-	-			
재고자산및유동자산매각대	**56,620**	**98,244**	**98,244**	**73,215**		**△25,029**	**△25.5**
재고자산매각대 (73-731)	56,620	98,244	98,244	73,215		△25,029	△25.5
융자금회수	**464,900**	**500,588**	**500,588**	**415,605**		**△84,983**	**△17.0**
기타민간융자금회수 (75-754)	464,900	500,588	500,588	415,605		△84,983	△17.0
정부예금회수	**156,723**	**227,193**	**227,193**	300,096		**72,903**	**32.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85-851)	32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156,691	227,193	227,193	300,096		72,903	32.1
예탁이자수입	**269**	**2,469**	**2,469**	**2,950**		**481**	**19.5**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269	2,469	2,469	2,950		481	19.5
예탁금원금회수	-	**103,003**	**103,003**	50,000		**△53,003**	**△51.5**
기금예탁금원금회수 (92-923)	-	103,003	103,003	50,000		△53,003	△51.5

나.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결산	2021계획액		2022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
총 계	**760,570**	**1,024,915**	**1,024,915**	**926,722**		**△98,193**	**△9.6**
7140 기금운영비(기금)	1,335	**1,391**	**1,391**	**1,956**		**565**	**40.6**
인건비(수발기금) (7140-100)	501	506	506	513		7	1.4
기타경비(수발기금) (7140-201)	120	131	131	127		△4	△3.1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7140-250)	297	343	343	342		△1	△0.3
기금연구용역비 (7140-253)	18	20	20	53		33	165.0
수산물공매납입금 부과징수비용 (7140-254)	399	391	391	921		530	135.5
1065 해양환경개선 (기금)	**33,970**	**55,908**	**55,908**	**47,431**		**△8,477**	**△15.2**
폐기물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구축 (1065-300)	1,738	1,821	1,821	1,821		-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065-301)	26,199	44,385	44,385	35,654		△8,731	△19.7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1065-304)	4,490	7,452	7,452	7,706		254	3.4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융자) (1065-306)	1,543	2,250	2,250	2,250		-	-
골재채취해역복원 (1065-312)		-	-	-		-	-
2838 품목별 경쟁력강화	**135,401**	**132,401**	**132,401**	**132,401**		**-**	**-**
우수수산물지원(융자) (2838-302)	135,401	132,401	132,401	132,401		-	-
3065 수산물가격 안정(기금)	**3,516**	**3,516**	**3,516**	**3,516**		**-**	**-**
수산물자조금지원 (3065-301)	3,516	3,516	3,516	3,516		-	-

구 분	2020결산	2021계획액		2022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
3066 수산물가격 안정(기금·융자)	**152,676**	**141,204**	**192,204**	**141,280**		**76**	**0.1**
수산물수매지원(융자) (3066-300)	78,210	70,389	91,389	65,370		△5,019	△7.1
비축사업 (3066-302)	74,466	70,815	100,815	75,910		5,095	7.2
3067 유통·가공시설 (기금)	**143**	**140**	**140**	**140**		**-**	**-**
수산물유통정보조사 (3067-305)	143	140	140	140		-	-
3068 수산물 유통 자금지원(기금)	**125,900**	**127,836**	**127,836**	**118,686**		**△9,150**	**△7.2**
산지및소비지 유통자금(융자) (3068-300)	125,900	127,836	127,836	118,686		△9,150	△7.2
3167 수산자원회복 (기금)	**11,763**	**14,389**	**14,389**	**17,732**		**3,343**	**23.2**
연근해어장생산성 개선지원 (3167-316)	9,454	12,102	12,102	15,479		3,377	27.9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3167-317)	2,309	2,287	2,287	2,253		△34	△1.5
3465 어업경영자금 (기금)	**40,364**	**41,540**	**41,540**	**42,590**		**1,050**	**2.5**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융자) (3465-300)	8,274	9,450	9,450	10,500		1,050	11.1
양식어업지원(융자) (3465-301)	2,240	2,240	2,240	2,240		-	-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3465-302)	2,850	2,850	2,850	2,850		-	-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3465-303)	20,000	20,000	20,000	20,000		-	-
수산모태 펀드출자 (3465-370)	7,000	7,000	7,000	7,000		-	-

구 분	2020결산	2021계획액		2022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
3467 직접피해지원	**2,922**	**3,491**	**6,439**	**2,835**		**△656**	**△18.8**
피해보전직불금 (3467-300)	1,896	2,309	2,083	1,959		△350	△15.2
폐업지원금 (3467-301)	-	230	3,404	-		△230	△100.0
자유무역협정이행 (3467-302)	1,026	952	952	876		△76	△8.0
3541 원양어업 기반구축(기금)	**19,000**	**18,000**	**18,000**	**15,000**		**△3,000**	**△16.7**
원양어선 안전관리 (3541-301)	19,000	18,000	18,000	15,000		△3,000	△16.7
9110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상환 (수발기금)	-	**-**	**-**	**-**		**-**	**-**
공자기금예수금 상환(수발기금) (9110-840)	-	-	-	-		-	-
9201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수발기금)	**-**	**-**	**-**	**-**		**-**	**-**
공자기금예수금이자 상환(수발기금) (9201-840)	-	-	-	-		-	-
9301 공공자금 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103,003**	**100,000**	**100,000**	**10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예탁 (9301-840)	103,003	100,000	100,000	100,000		-	-
9708 여유자금운용 (수산발전기금)	**130,577**	**385,099**	**331,151**	**303,155**		**△81,944**	**△21.3**
통화금융기관 예치(수산발전기금) (9708-971)	59	-	-	-		-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수산발전기금) (9708-972)	130,518	385,099	331,151	303,155		△81,944	△21.3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 평가연도 : 2021년(2020년 회계연도)

지적 및 권고사항(2020회계년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자산운용위원회와 중복된 리스크관리위원에 대해 리스크관리 전문가의 교체 필요	▪자산운용지침 개정('19.12.13, 제4차 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의원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자산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별도 운영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자격요건 신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자산운용 등 담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 경제,경영,금융관련 학문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등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와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필요	▪ 주간운용사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원격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 화상회의실 별도 공간 마련	▪주간운용사와 실시간 화상미팅 등을 통하여 업무효율성 증가
▪기금업무 담당자의 자격증 취득 등 전문성 개선 필요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자를 업무담당책임자로 배치	▪전문자격 취득자 업무배치에 따른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 대응 역량강화
▪중장기자산의 수익성 제고 및 위험관리 방안 검토 필요	▪수익성 제고 및 투자의 다변화를 위하여 2019년 부터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을 전략적자산배분에 포함하여 운용 중 - 2021년 해외채권 0.8%, 해외주식 1.7% 차지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편입 등 투자 다변화에 따른 수익률 제고
▪유동성위험(현금성자금 규모) 관리방식 변경 검토 필요	▪자산운용지침 개정('19.12.13, 제4차 위원회) 현금성자금 관리기준 변경 【변경 전】 **적정유동성 규모의 25%이상** 관리 【변경 후】 **적정유동성 규모 이상** 관리 ※ 적정유동성 : '21년 현재 251억원	▪유동성위험 설정기준 변경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2019년도)

종합평가결과	기타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존치	개별사업 9개 성과지표 개선 권고	2020년 수산경제연구원 수산발전기금 성과지표 개선 연구과제 수행	
	중기가용자산 과다로 공자기금 예탁권고	2020년 공자기금 예탁(1,030억)집행	

※ 종합평가결과 : 존치, 조건부존치, 통합, 폐지

마. 수산발전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구 분	구 분	계 획	실 적	수익률
2019	직접투자	현금 등	-	-	-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현금 등	43,200	52,165	1.77
		확정금리형	75,600	71,197	2.05
		실적배당형	75,600	75,401	4.77
	계		194,400	198,764	2.87
2020	직접투자	현금 등	-	-	-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현금 등	42,500	35,983	1.06
		확정금리형	86,800	61,084	1.66
		실적배당형	97,900	71,844	7.14
	계		227,200	168,912	3.89
2021	직접투자	현금 등	-	-	-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현금 등	37,000	54,922	0.83
		확정금리형	92,500	30,965	1.09
		실적배당형	92,500	28,035	3.59
	계		222,000	113,922	1.61

바. 수산발전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실적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692,890	458,113	458,113	612,884	154,771
○ 단기대여금	545,129	374,134	374,134	486,448	112,314
(대손충당금)	△900	△236	△236	△452	△216
○ 예치금	47,769	74,202	74,202	89,841	15,639
○ 미수수익	21,352	4,821	4,821	7,986	3,165
(대손충당금)	△1,753	△1,046	△1,046	△2,062	△1,016
○ 재고자산	81,293	6,238	6,238	31,123	24,885
2. 비유동자산	343,902	513,737	513,737	388,674	△125,063
(1) 투자자산	343,873	513,715	513,715	388,649	△125,066
○ 장기대여금	164,819	137,022	137,022	76,018	△61,004
(대손충당금)	△1,808	△1,273	△1,273	△1,531	△258
○ 장기투자증권	180,862	377,966	377,966	314,162	△63,804
- (대손충당금)	-	-	-	-	-
(2) 유형자산	9	2	2	5	3
○ 비 품	20	17	17	20	3
(감가상각누계액)	△11	△15	△15	△15	-
(3) 기타비유동자산	20	20	20	20	-
○ 장기미수채권	20	20	20	20	-
자산총계(가)	1,036,792	971,850	971,850	1,001,558	29,708
1. 유동부채	-	-	-	-	-
2. 비유동부채	-	-	-	-	-
부채합계(나)	-	-	-	-	-
1. 자본금. 적립금	691,998	691,998	691,998	691,998	-
2. 자본잉여금	-	-	-	-	-
3. 이익잉여금	334,770	268,054	268,054	298,072	30,018
4. 자본조정	10,024	11,798	11,798	11,488	△310
자본합계(다)	1,036,792	971,850	971,850	1,001,558	29,708
자본 및 부채 총계	1,036,792	971,850	971,850	1,001,558	29,708

사. 수산발전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실적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87,320	124,395	124,395	92,554	△31,841
2. 사업비용	124,336	210,256	210,256	167,921	△42,335
3. 사업총이익(1-2)	△37,016	△85,861	△85,861	△75,367	10,494
4. 사업관리비	1,332	1,393	1,393	1,958	565
5. 사업이익(3-4)	△38,348	△87,254	△87,254	△77,325	9,929
6. 사업외 수익	86,702	70,608	70,608	71,322	714
7. 사업외 비용	756	38	38	673	635
8. 경상이익	47,598	△16,684	△16,684	△6,676	10,008
9. 당기순이익	47,598	△16,684	△16,684	△6,676	10,008

아. 수산발전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잔액 (A)	2021년 계획			2022년 계획(안)			증감 (C-B)	비고
		신규	처분	잔액 (B)	신규	처분	잔액 (C)		
가. 금융자산	**832,868**	**723,196**	**641,249**	**914,815**	**682,001**	**782,332**	**814,484**	**△100,331**	
○ 한국은행예치	59	-	59	-	-	△59	59	59	
○ 통화금융기관예치	-	-	-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228,572	342,413	118,817	452,168	315,499	363,723	403,944	△48,224	
○ 기타민간예치	604,237	380,783	522,373	462,647	366,502	418,668	410,481	△52,166	
나. 정부내부거래	**103,003**	**100,000**	**156,006**	**46,997**	**100,000**	**△3,003**	**150,000**	**103,003**	-
다. 부동산	**-**	-	-	-	-	-	-	-	-
라. 기타자산	**100,920**	**79,915**	**170,797**	**10,038**	**83,656**	**56,620**	**37,074**	**27,036**	
○ 미수수익	19,598	5,371	21,194	3,775	7,986	5,836	5,925	2,150	
○ 유형자산	9	-	9	-	-	△6	6	6	
○ 기 타	81,313	74,544	149,594	6,263	75,670	50,790	31,143	24,880	
합 계	**1,036,791**	**803,111**	**868,052**	**971,850**	**865,657**	**835,949**	**1,001,558**	**29,708**	

2. 수 입

(1) 기타민간이자수입
54 - 544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기타민간 이자수입	10,532	24,900	24,900	18,012		△6,888	△27.7

가. 법적 근거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다만, 시·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2. 제2항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나. 수입 개요

○ 대출취급기관에 융자한 대여금의 만기 및 정기 상환, 중도 및 미대출 상환에 대한 이자수입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4,508	12,598	10,532	7,666

(2)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	-	-	3,628		순증	순증

가. 법적 근거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 4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다만, 시·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2. 제2항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나. 수입 개요

○ 사업대기성 자금으로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한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3) 위약금
57 - 572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위약금	298	588	588	606		18	3.1

가. 법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낙찰자의 수입의무 등)

①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추천대행기관에게 수입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권을 낙찰받은 자가 수입의무 이행을 위하여 타인이 수입한 낙찰품명과 동일한 세 번부호(HSCODE)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낙찰물량으로 대체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모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천대행기관이 정한 운송중 감모량의 범위 내에서 타인이 수입한 낙찰품명과 동일한 세 번부호(HSCODE)의 수산물을 양도받아 대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수입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된 입찰 보증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된다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7조(위약금의 징수 등)

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의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출일로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 해당금액에 대출금 회수일의 수협중앙회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미만인 경우 : 대출금 전액
2.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이상인 경우 : 사업의무 미달 해당액

②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위약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약금 제재조치 면제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집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위약금을 제29조의 반납기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입 개요

○ 수산물 공매납입금 부과징수사업에서 수입이행기간 내에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이행보증금 및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의무 부담 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등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586	667	298	102

(4) 가산금

58 - 581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가산금	2	27	27	28		-	-

가. 법적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는 경우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해양환경관리법 제2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나. 수입 개요

○ 법정부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가산금 부과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2	5	2	21

(5) 해양환경개선부담금

59-593

< 수산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해양환경개선부담금	224	385	385	234		△151	△39.2

가. 법적 근거

○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나. 수입 개요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및 오염물질 등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해 부과·징수

- 부과기준

(폐기물) 해양배출량(㎥)×단위당 부과금액×부과계수

* 부과금액 : 1,100원/㎥, 부과계수 : 폐기물종류에 따라 1.0~2.34 차등 적용

(오염물질) 해양배출량(리터)×단위당 부과금액×부과계수

* 부과금액 : 350원/리터, 부과계수 :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0.3~1.96 차등 적용

- 납 기 일 : 매분기별 또는 배출행위 발생시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25	496	224	363

(6)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59-593

< 수산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3,985	5,738	5,738	6,285		547	9.5

가. 법적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부과대상)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
-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광업 중 10만㎡이상의 탐사·채굴사업, 50만㎥이상의 바다골재 채취 및 바다골재 채취단지 등

○(부과기준) 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300원/㎡)×지역계수*
* 지역별·행위별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를 고려하여 2~40

○(납기일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2,755	1,691	3,985	9,247

(7) 수산물 공매납입금

59-593

< 수산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수산물 공매납입금	57,293	43,769	43,769	45,026		1,257	2.9

가. 법적 근거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수입 개요

○ 수입업자가 일정 물량을 TRQ 품목 협정세율(0%)로 수입하는 권리를 얻는 조건으로 권리에 대한 공매 납입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부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54,339	49,293	57,293	53,816

(8)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59-593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22	271	271	123		△148	54.6

가. 법적 근거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나. 수입 개요

<법정부담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해양심층수 산업의 육성과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관리 등을 위해 심층수자원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자에게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징수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22	-

※ '24년까지 납부유예

(9)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1,431	1,636	1,636	1,685		49	3.0

가. 법적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 ③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나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나. 수입 개요

○ 폐업어선의 매각, 해체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등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43	605	1,464	2,724

(10) 면허료 및 수수료(공유수면 점사용료)

65 - 651

< 수산발전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1,196	8,898	8,898	9,229		331	3.7

가. 법적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6조(기금의 설치)** :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수입 개요

○ 수입 내용 :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행위 등에 부과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50%

- 산출방법 : [채취량×골재 도매가격 평균치× 30/100〕× 50/100

  *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및 별표2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6,042	858	1,196	7,159

(11) 재고자산매각대

73-731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재고자산 매각대	56,620	98,244	98,244	73,215		△25,029	△25.5

가. 법적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4.생략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나. 수입 개요

○ 정부비축 수산물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입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2,372	54,707	56,620	60,810

(12)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75-754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64,900	500,588	500,588	415,605		△84,983	△17.0

가. 법적 근거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12. (생략)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14. ~ 16. (생략)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나. 수입 개요

○ 대출취급기관에 융자한 대여금의 만기 및 정기 상환, 중도 및 미대출 상환 자금 회수금액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423,608	420,533	464,900	442,817

(1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56,691	227,193	227,193	300,096		72,903	32.1

가. 법적 근거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12. (생략)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14. ~ 16. (생략)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나. 수입 개요

○ 사업대기성 자금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 중인 예치금 회수액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128,876	131,351	156,691	130,518

(14)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기금예탁 이자수입	269	2,469	2,469	2,950		481	19.5

가.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른 상환 요청에 따라 기금 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겨웅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 중인 예치금의 이자수입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269	1,027

(15)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 수산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기금예탁 원금회수	-	103,003	103,003	50,000		△53,003	△51.5

가.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나. 수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 중인 예치금 원금회수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103,003

사 업 명
(1)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06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수산발전기금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5	300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개선(기금)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1,738	1,821	1,821	1,821		-	-

4. 사업목적·내용

-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폐기물 해양배출해역의 친환경적 관리 및 국제협약(런던의정서) 대응
- (해양배출시료분석 및 관리지원) 해양배출 폐기물의 배출기준 적합여부 점검 및 전문검사 기관 검사능력 평가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런던의정서 제9조 : 배출해역 모니터링 의무
- 런던 의정서 부속서 2 제16조 : 허가조건의 충족여부 확인 의무
- 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부담금의 용도)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배출 전에 미리 검사해야 함

*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처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② 추진경위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04)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06.3월 국무회의)
- 국제협약(런던의정서) 가입('09.1월)
-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12.7월 국무회의)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기준('14, '15)
-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방안('14.11)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현장집행업무 이관('14.11월/해경청 →해수부)
-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16.1.1 부터)
-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관리 및 안전한 육상처리 정착 방안('16.5월 국무회의)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규모 : 3개 배출해역(7,937㎢)조사, 120여개 해양배출업체 발생 폐기물 검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런던의정서 의무 이행 지원과 배출물질 분석 업무를 전문기관과 계약하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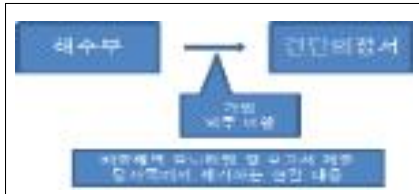

런던의정서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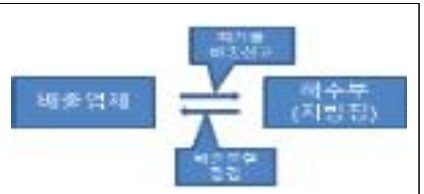

해양배출 폐기물 점검 이행

사 업 명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0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5	301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개선(기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7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6,199	44,385	44,385	35,654		△8,731	△19.7

4. 사업목적·내용

-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침적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개선 도모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해양쓰레기가 많은 해안에 전담 인력을 연중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저감 및 사전예방을 강화
- (해양쓰레기 줄이기 인신증진) 해양쓰레기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 환경해양사진 공모전, 해양쓰레기 관리 우수참여 단체·개인 평가 등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 유도 및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문화 정착
-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지원) '30년까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전국 300개소 설치 및 처리비 지원
-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조사) 해양쓰레기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해안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해양쓰레기의 수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 (드론활용 해양쓰레기 관리) 효율적인 청항선 운용을 위한 드론 활용
- (민간참여 활성화) 해양쓰레기 저감활동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민간단체·지자체 등 간 정보공유와 커뮤니티 조성에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제29조(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② 추진경위

- 수중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착수('99)
-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양폐기물 다량 침적 우심지역 수요조사('03)
-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09～'13) 수립('08)
-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설립('11~)
-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14~'18) 수립('13)
- 환경관리해역 등 지정관리해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13~)
- 해양 침적쓰레기 관리계획 수립('16)
-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19)
-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19~'23) 수립('19)

-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수립('19)
-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1~'30) 수립('21)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지자체 보조 등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위탁),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전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보조	지자체	8,655	50	해양폐기물관리법 제29조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보조	지자체	2,550	50(운영), 70(설치)	해양폐기물관리법 제29조

7. 사업 집행절차

○ 민간위탁사업

해양수산부	→	민간대행기관	→	해양수산부	→	민간대행기관	→	민간대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		사무위탁계약 체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사업비 배정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시		사업 집행 완료 및 정산보고

사 업 명
(3)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1065 -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0	27	0	수산발전기금	070	075
명칭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5	304
명칭	환경보전	해양환경개선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70	

3.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4,490	7,452	7,452	6,056		254	3.4

4. 사업목적·내용

- 해양보호생물 및 서식지 보전·관리, 유해교란해양생물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해양생물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제고
- (**해양보호생물 개체수 회복 및 서식지 생태환경 개선**)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 조사, 인공증식, 서식지 생태환경 개선, 교육·홍보 등을 위해 법정민간위탁사업 등으로 지원
- (**유해교란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 유해해양생물 해파리 폴립 및 갯끈풀 제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법정민간위탁사업으로 지원
- (**서식지외 보전 및 구조·치료활동 지원**) 서식지외 보전 기관 및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의 활동 지원을 위해 법정민간위탁사업 등으로 지원
- (**해양보호생물 보전연구**) 법정 보호생물(해양포유류, 회유성해양동물, 해양보호생물) 후보종 조사·선정·평가, 보호종 관리방안 연구를 위해 지원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특성을 반영한 해양생물 종증식·복원·구조·치료·연구와 인식증진(교육·생태체험·관광 등)을 위한 거점 조성을 위해 지자체 에 지원
-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조성**)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서식지 특성 분석, 대체 서식지 조성, 인공증식기술 및 현지 방사 기법 개발 및 증식·복원, 조사·연구 등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7조(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43조(해양생태계 보전시설),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9조의2(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시설), 제54조(국고보조) 등

② 추진경위 - 2012년~ 계속, 법정 추진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2 ~ 계속
- 사업규모
  - 해양보호생물 보전·관리(서식실태 조사, 개체수 회복을 위한 종 증식·복원,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 및 해양동물 구조·치료, 서식지 기능 개선)
  - 유해교란해양생물의 관리(해파리폴립, 갯끈풀 제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법정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국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500	70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고보조)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1,016	50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고보조)

7. 사업 집행절차

○ 해파리 폴립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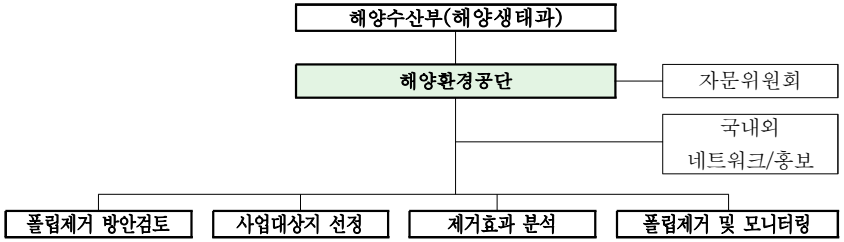

○ 유해해양생물 제거(갯끈풀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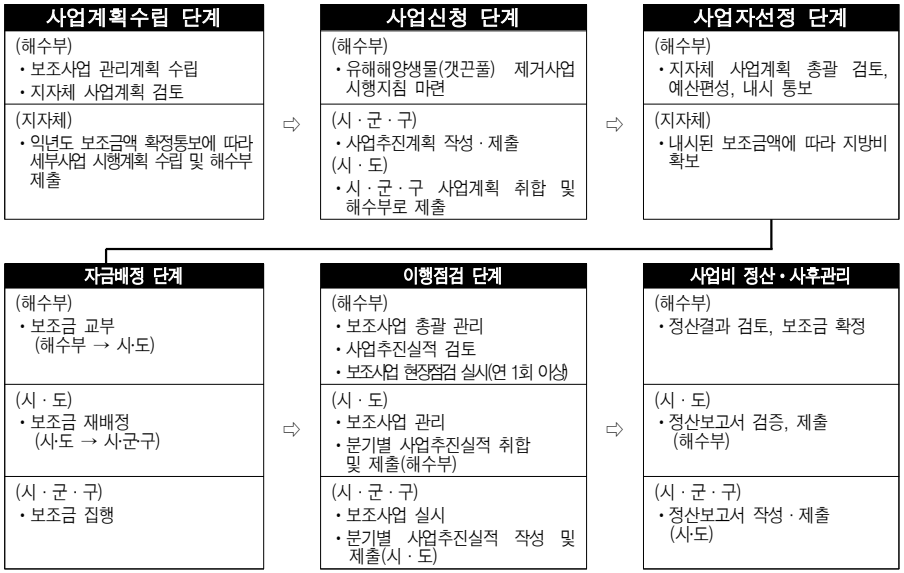

○ 해양보호생물 및 서식지회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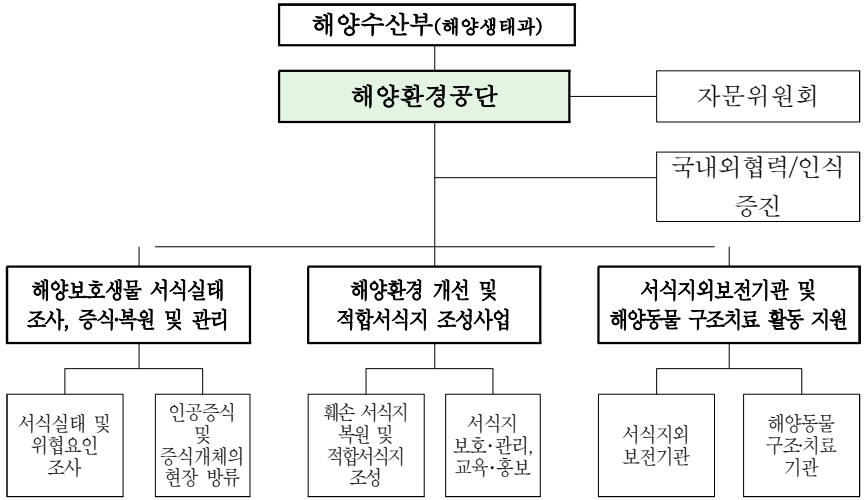

사 업 명
(4)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융자) (1065-30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65	306
명칭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개선(기금)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7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당초(B)	수정		(B-A)/A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융자)	1,543	2,250	2,250	2,250		-	-

4. 사업목적·내용

-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해양환경관리법 개정('05.4.5)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은 '20년부터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함에 따라, 영세한 소형유조선 선사에 대하여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건조 시 정부에서 건조비용 일부(70%) 융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제8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친환경 선박의 매입·개조,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교체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사용 가능

*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제2항)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능

② 추진경위

-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에 대하여 '20년부터 이중선저구조를 갖추도록 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05.4.5)
- 소형선 이중선저구조 적용시기를 선령 50년 이상은 '20년, 선령 40년 이상은 '21년, 선령 40년 미만은 '22년으로 조정하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19.2)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24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융자 (융자율 70%, 금리 고정 3.0%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노후 소형유조선 소유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융자	노후 소형유조선 보유선사	2,250	융자 70%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제2항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집행지침 공고(해수부) → 사업신청(선사) →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해운조합) →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수협) → 대출신청(사업자) → 대출(수협)

사 업 명
(5) 우수수산물지원(융자)(2838-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0	27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800	2838	302
명칭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품목별경쟁력강화	우수수산물지원(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B)	수정	(B-A)	(B-A)/A
우수수산물 지원	135,401	132,401	132,401	132,401		-	-

4. 사업목적·내용

- 수산물 수출업체에 우수수산물(원료)의 구매, 저장, 가공, 수출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의 가격안정, 수출업계의 경영안정 및 수출 활성화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② 추진경위

- 농안기금의 수산물 관련자금이 수발기금으로 사업 이관('05.1)

- '원료구매자금'과 '우수업체운영자금'을 '우수수산물 지원'으로 통합('0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평균 약 100여개 업체 규모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융자지원(고정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협은행)
- 사업 수혜자 : 수산물 생산어업인 및 가공·수출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우수수산물 지원	융자	수협은행	46,752	100	해당사항 없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5,649	100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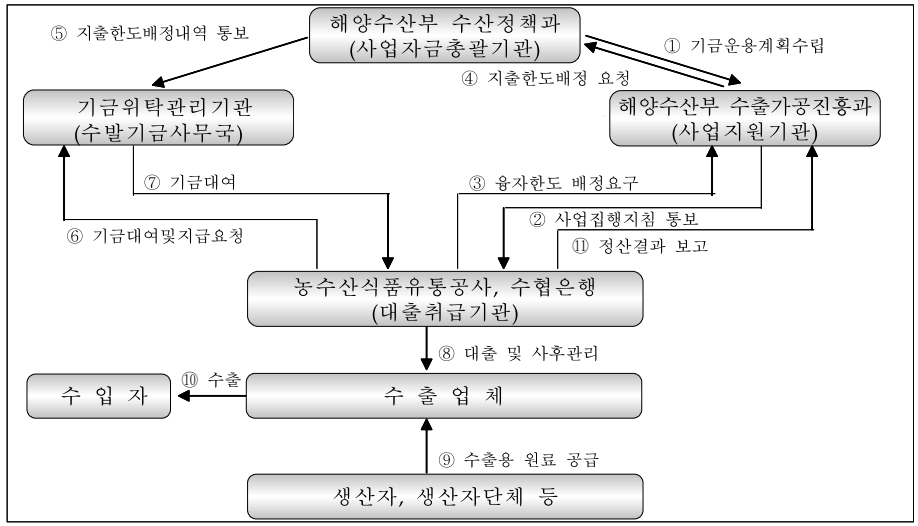

사 업 명
(6) 수산물자조금지원 (30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5	301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물자조금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3,516	3,516	3,516	3,516		-	-

4. 사업목적

○ WTO DDA, 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정부 주도의 양식수산물 경쟁력 제고 정책에서 민간주도로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되 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 생산자단체 스스로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장가격 안정, 어업인 소득 보장 및 자생력 확보에 기여

5.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4년
- 추진배경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권고('02.7.24 의결) 및 정부수매비축사업개편계획('03.5.14)에 의거 추진
  - 수산물 정부수매사업의 품목과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조금 조성 등을 통한 민간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도별 자조금단체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수산물자조금 품목단체

○ 사업 수혜자 : 품목관련 어업인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민간보조	5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7) 수산물수매지원(융자) (3066-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6	300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	수산물수매지원(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수산물수매지원(융자)	78,210	70,389	91,389	65,370		△5,019	△7.1

4. 사업목적

- **(수매지원)** 수산물 저장 또는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에게 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지원하여 주 생산시기에 수매토록 한 후 필요한 시기에 방출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 **(가공시설 및 운영)** 수산물가공업체에 저리 운영자금 지원으로 EU 수준의 위생시설 및 어획물 처리·가공조건 이행으로 수출 촉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5.「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②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02년
- '05년부터 농안기금에서 이관된 수매지원사업과 기존 수산발전기금 사업인 유통보관 사업과 통합 추진
- '16년부터 가공시설 및 운영(융자) 사업(1995년부터 계속사업)과 통합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수산물수매지원) 국고80%, 자담20%, (가공시설및운영) 국고100%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시행주체)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등 생산자, 유통·가공업체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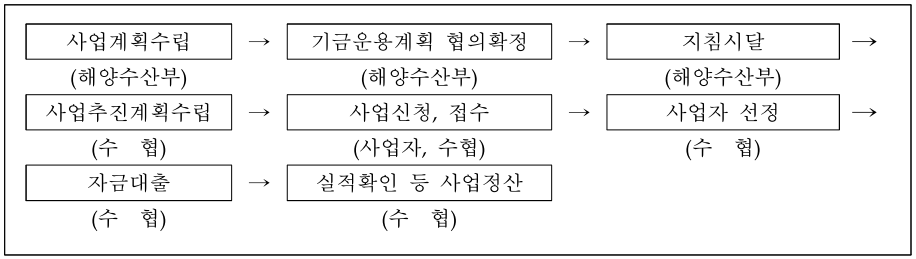

사 업 명
(8) 비축사업 (3066-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6	302
명칭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	비축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비축사업	74,666	70,815	100,815	75,910		5,095	7.2

4. 사업목적

- (비축사업) 수산물 주 생산시기에 대중성 어종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정부비축 수매물량을 소비자 수요 및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임
- (유통종합정보시스템) 수산물 실시간 수급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물가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임
- (수산물물가실태조사) 주요 대중성 어종 등에 대한 시장가격 동향 등을 파악하여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5.「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79년부터 정부가격안정시책에 따라 저장성이 용이한 건제품(김, 마른오징어)과 냉동 수산물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79년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등)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등 생산자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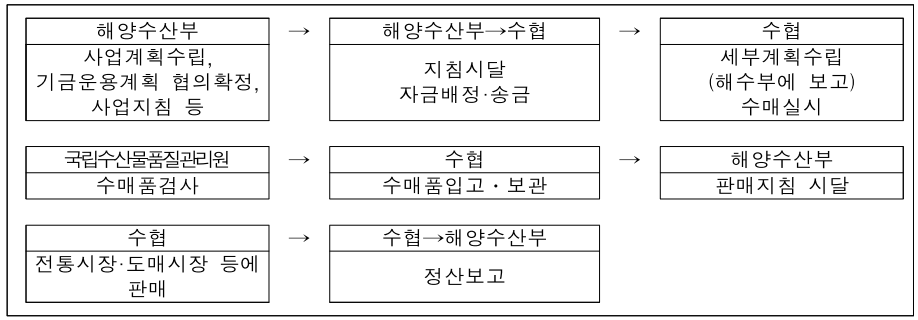

사 업 명
(9) 수산물 유통정보조사 (3067-305)

1. 사업 코드 정보1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0	27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7	305
명칭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유통·가공시설(기금)	수산물 유통정보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수산물 유통정보조사	143	140	140	140		-	-

4. 사업목적

-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및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등 유통관련 정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5. 사업근거

① 법령상 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

② 추진경위

-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발표('13.7)

-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추진('14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3)에 따라 2017년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실시('17.2)
- 2017년도 예산편성시 국회 상임위 지적*에 따라 2018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및 '도매시장 평가' 사업이 수산발전기금 '비축사업'의 내역사업('17년)으로 편성되어 있어 세부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할 것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 ~ 계속
- 사업규모
  · (실태조사) 수산물 유통 전반에 관한 실태 및 현황조사
  · (도매시장 평가) 도매시장 개설자 등 5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도매시장평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실태조사)
- 사업 수혜자 : 유통주체, 어업인,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유통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 실태조사 위탁 수의계약 → / ← 실태조사 및 실적보고 — 해양수산개발원

○ 도매시장 평가

해양수산부 — 평가용역 공모 사업비 교부 → / ← 용역수행 및 실적보고 — 용역기관

사 업 명
(10)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3068-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0	27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68	300
명칭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유통자금지원(기금)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80~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125,900	127,836	127,836	118,686		△9,150	△7.2

4. 사업목적

-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 산지위판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을 융자지원
- (산지유통활성화) : 생산자(단체)의 판매능력 제고를 위한 원물확보자금 및 직거래자금 융자지원
- (도매시장출하지원) :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자금융자

5. 사업근거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4호(산지위탁판매사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3.(생략)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6. 수산물의 보관ㆍ관리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8.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새로운 어장의 개발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3.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14.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② 추진경위

- FTA 등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등 시장활성화 도모
- '82년도 시작하여 '04년까지 농안기금에서 지원, '05년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
- '79년부터 공판장출하촉진자금, '82년부터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84년부터 수산물 규격출하(~2013), '98년부터 직거래매취, '01년부터 산지중도매인자금
- '13년부터 산지위판장출하지원, 산지유통활성화, 도매시장출하지원 3개 사업으로 개편
- '15년 정가수의매매자금 지원
- '15.8.1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 위판장(4→3%), 변동금리적용(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79~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업법인, 수협,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산지위판장출하지원	융자	위판장 중도매인	96,686백만원	100	계속사업으로 당초 지원율 적용
산지유통활성화	융자	조합 어업법인 직거래단체	7,900백만원	80	계속사업으로 당초 지원율 적용
도매시장 출하지원	융자	도매시장	14,100백만원	100	계속사업으로 당초 지원율 적용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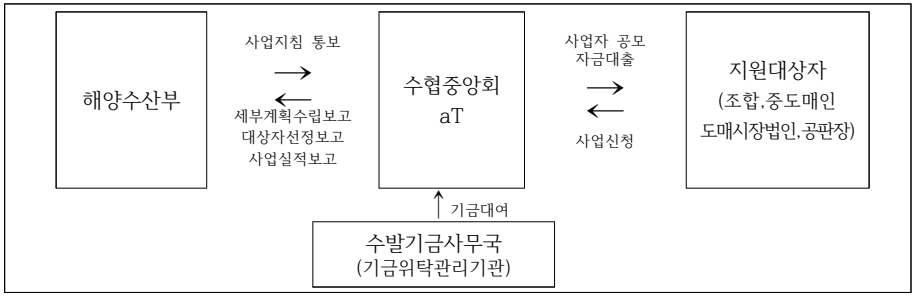

사 업 명
(11)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3167-316)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67	316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회복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舊.연안어장 환경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연근해어장 생산성개선지원	9,454	12,102	12,102	15,479		3,377	27.9

4. 사업목적·내용

-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처리**) 연근해 주요어장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지내 유령어업 유발 등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주는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여 산란서식 환경 개선을 통한 수산자원량과 어가소득 증대
- (**유령어업 예방지원**) 어업인과 대국민의 수산자원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 폐어구 해상투기 예방을 통한 유령어업 감소 및 어린물고기와 알배기 어미 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 제61조 및「수산업법」제86조

·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② 추진경위 - '08년 국회 예결위(이한구 의원) 수산분야 유실·침적폐어구 수거 필요 제기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54개소, 22만ha, 유실침적어구 약 3,600톤 수거・처리('22년)
- 사업시행방법 : 법정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수혜자 : 사업구역내 조업 어업인 및 수산물 소비 국민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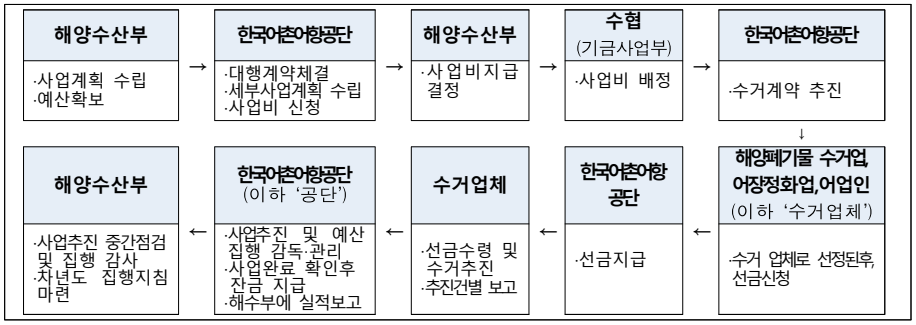

사 업 명
(12)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3167-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67	317
명칭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수산자원회복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B-A)/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2,309	2,287	2,287	2,253		△34	△1.5

4. 사업목적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 된 어업인에게 대체어장 출어에 필요한 경비(유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어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 **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제1항제9호

> **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9. 새로운 어장의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어업협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

② 추진경위

- '16.7월 이후 일본과의 어업협상 미타결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입어가 제한됨에 따라 어장을 상실한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19년부터 지원 시작
- **한일어업협상 미타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 VIP보고**('19.5.30.)

- 특히, 한·일 어업관계에 있어 우리어선의 일본수역 의존도*가 높고 주력업종**이 4배 많아 매년 협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

* '15년 어기의 경우 (韓) 37,735톤, (日) 3,927톤으로 **우리측이 약 10배** 많음
** 주력업종 (韓) 4개 업종(선망·연승·오징어채낚기·중형기저), (日)1개 업종(선망)

- 일본은 협상 미타결 자국 어업인들을 지원, 우리정부도 대응책이 필요

* 협상 미타결에 따라 외국어선 감시활동, 어장청소 및 종묘방류 사업 등 명목으로 출어비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20년 50 → '21년 50억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계속
- 사업규모 : 일본 EEZ 입어선(406척)의 대체어장 출어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본 EEZ 입어 어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보조	지자체 보조	2,253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신청 (어업인→지자체) ⇒ 신청내용 조사·확인 (지자체) ⇒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지자체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보고 (지자체→해수부) ⇒ 지급액 산출·결정 및 자금배정 (해수부→지자체) ⇒ 지원금 지급 (지자체→어업인)

사 업 명
(13)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융자) (3465 - 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65	300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어업경영자금(기금)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융자)	8,274	9,450	9,450	10,500		1,050	11.1

4. 사업목적·내용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동 내역사업은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5. 사업근거

① 법령상 근거

가.「UN해양법협약」제61조 및 제62조

· 연안국은 자국 EEZ의 생물자원 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 수산자원의 유지 및 회복계획을 추진

나.「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 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② 추진경위

- ('99) TAC 제도 시행(4개 어종, 4개 업종)
- ('99~'21) TAC 적용 대상 어종 및 업종 확대

  * ('99) 4개 어종/4개 업종 → ('09) 11/13 → ('19) 12/14 → ('21)12/15
- ('01) TAC 참여어업인 경영안정을 통한 제도 수용도 제고를 위해 융자사업 도입
- ('01~'21) 매년 TAC 참여어선의 2%에게 건당 평균 177백만원 융자 제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1 ~ 계속
- 사업규모 : 매년 TAC 참여어선의 2%에게 건당 평균 177백만원 융자 제공

  * TAC 참여어선수 : ('20) 1,391척, ('21) 3,175척, ('22) 3,736척
- 사업시행방법 : 융자(연고정 2.5~3.0%, 변동 매월고시, 2년거치 3년상환)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주관), 수협중앙회 수발기금사무국·수협은행(수행)
- 사업 수혜자 : TAC 참여로 어획량을 제한받아 어가경영이 어려운 어업인

- 융자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융자	-	10,500	연고정 2.5~3.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7. 사업 집행절차

해양수산부	→	수협은행	→	지구별·업종별 수협	→	수협은행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자선정 기준 마련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TAC 참여어업인 ·자금지원 신청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및 관리 ·자금지원 선정 결과 및 사업 추진 결과 보고 (해수부)

사 업 명
(14) 양식어업지원 (34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65	301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어업경영자금(기금)	양식어업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7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양식어업 지원	2,240	2,240	2,240	2,240		-	-

4. 사업목적

-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운영비) 수협 등 배합사료공장에 양어용 사료 원료구입비 등 운영비를 융자 지원하여 고품질의 배합사료 가격 안정을 통한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04. 2) 및 수산진흥종합대책('05. 3)
- 국정과제(농업인 소득·경영 안전시스템 구축) 반영('08. 3)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1~계속
- 사업규모 : 어류용 배합사료공장 운영비지원 1식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
- 사업 수혜자 : 양어용 배합사료공장, 양식어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배합사료 공장운영비	보조	수협중앙회	2,240	70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지침 공고(해양수산부)→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접수 및 신용조사·여신심사 의뢰(해양수산부) →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수협중앙회) → 사업자 선정(해양수산부) → 융자금 교부신청(사업자) → 융자금 교부결정(해양수산부) → 융자금 신청(사업자) →융자금 확정(해양수산부) → 융자금 대출(수협중앙회)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사업자)

사 업 명
(15)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3465-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65	302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어업경영자금(기금)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8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	2,850	2,850	2,850	2,850	-	-	-

4. 사업목적·내용

- 어업인 등에게 수산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어업인 경비절감 등 부담경감 및 수산업 생산성 제고와 기자재 산업 발전 유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장관님 서울 코엑스 수산식품전시회('14.4.3) 방문 오찬간담회 시 수산기자재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 및 산업 육성 건의
- VIP 부산 방문('14.8.22, 부산 자갈치시장)시 수산기자재 부분 정책 지원에 대한 현장 요청에 대해 적극 지원 입장 표명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해수부(수협)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장비 구입비원 (융자)	융자	어업인 등	2,850	80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2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통보 (사업시행지침)	(전년12월)	○ 시행지침 통보 (해양수산부 → 수협은행, 지자체)
⇓		
사업공고	(1월~)	○ 사업자 모집공고(지자체)
⇓		
사업자 선정 및 융자실행	(1월~)	① 지원 대상 선정(지자체, 해양수산부) ② 융자금 지급(수협은행)
⇓		
정산단계	('다음년도 2월)	○ 융자금 정산보고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사 업 명
(16)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465-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발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 · 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65	303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어업경영자금(기금)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0	20,000	20,000	20,000		-	-

4. 사업목적·내용

- 재해, 적조, 흉어, 수산물 가격의 급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5. 사업근거

① 법령상 근거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추진경위
- 한·중 FTA 국내대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결정('15.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사업규모 : '22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공급
- 사업시행방법 : 융자 100%
- 사업시행주체 : 수협은행, 단위수협
- 사업 수혜자 : 어업경영체(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수협은행 / 단위수협	20,000	융자 100%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재해, 적조 등 지원사유 발생 ⇨ 지원신청 (수협중앙회·지자체 →해양수산부) ⇨ 지원계획 확정 (해양수산부) ⇨ 융자 집행 (수협)

사 업 명
(17) 수산모태펀드출자(3465-3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0	27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65	370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어업경영자금(기금)	수산모태펀드출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수산모태 펀드출자	7,000	7,000	7,000	7,000		-	-

4. 사업목적

- (수산펀드)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수산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자펀드(수산투자조합)를 결성,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경영체에 투자하여 자금조달을 지원

5. 사업근거

① 법령상 근거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7조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② 추진경위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분과 보고에 농어업금융 개편방안으로 '민간참여형 직접투자 방식' 포함('09.4.16)
- 농어업 투자촉진을 위한 농어업펀드 조성·운용 계획 수립('09.8.3)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0.5.26)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10.6.24)
- 농식품모태펀드(농식품투자모태조합) 결성총회 개최('10.9.30)
- 농식품모태펀드 정기조합원총회 개최('13.4.26)

*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출자 지분 양도를 위한 농식품모태펀드 규약 변경 및 지분 양도 승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40 (모태펀드 존속기간 30년, "법" 시행령 제8조)
- 사업규모 : '22년도 자조합 1개 이상 신규 결성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업법인, 수산경영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산펀드	출자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7,000	100 (모태펀드 정부출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7. 사업 집행절차

① 정부재정으로 수산모태펀드 출자 → ② 수산모태펀드·민간이 수산투자조합 결성 → ③ 수산투자조합이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어업경영체에 투자 → ④ 사후관리 → ⑤ 투자금 회수 → ⑥ 재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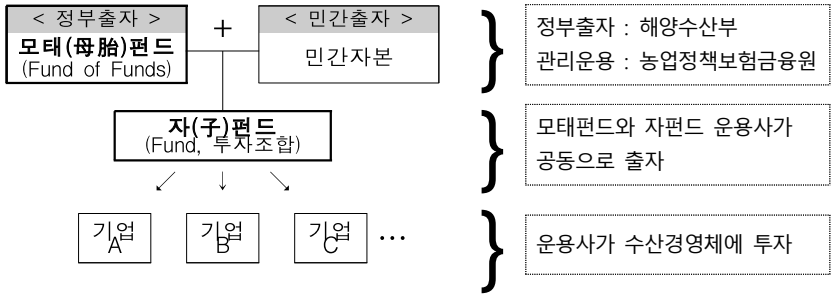

사 업 명
(18) 피해보전직불금 (3467-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0	27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467	300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직접피해지원	피해보전직불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피해보전 직불금	1,896	2,309	2,309	1,959		△350	△15.2

4. 사업목적·내용

- (피해보전직불금)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5. 사업근거

① 법령상 근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07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
  * 수산업분야 7,262억원 투·융자계획 규모 : 직접피해지원 765억원, 경쟁력 강화 6,497억원
- 직접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폐업지원금 지원사업 추진('08)
- 한미 FTA 직접피해 지원 기본계획 수립('09.12)
- 소득보전직불 사업지침 수립('09.12)
- '11년 한·미 FTA 추가협상, 한·EU FTA 비준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기존의 대책을 보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및 '12년 추가 보완대책 마련
  * 수산업분야 1조 302억원 투·융자계획 수립(직접피해지원 846억원, 경쟁력 강화 9,456억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피해보전비율 상향 및 시행기간 연장
  * 발동요건 완화 (기준가격 80%미만 → 85 → 90), 보전비율 상향조정 (차액의 85% → 90 → 95), 시행기간 연장 (2010년까지 → 2021→ 202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26(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 간)
- 사업규모 : 「FTA 농어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지원대상품목 선정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어업법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피해보전 직불금	보조	지자체 보조	1,959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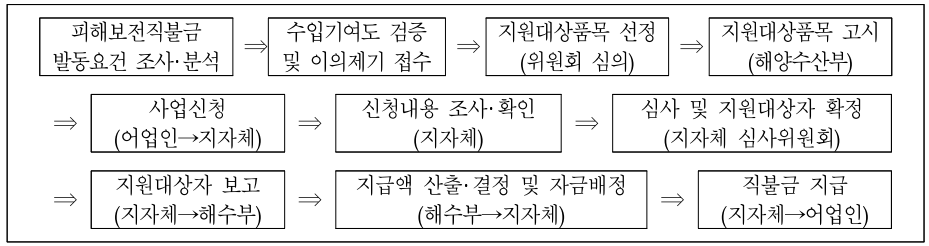

사 업 명
(1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3467 - 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0	27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67	302
명칭	어업인소득안정지원	직접피해지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1,026	952	952	876		△76	△8.0

4. 사업목적·내용

- (어업인등지원센터 운영)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분석, 국내대책 수립, 어업인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운영 중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영
- (FTA 대책수립) FTA 관련 정책연구 등 국내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 (수산업 현장애로 동향분석) FTA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동향 분석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2조의2 및 제20조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제출) ①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에는 성과목표, 기대효과,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어업인등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7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
  * 수산업분야 7,262억원 투·융자계획 규모 : 직접피해지원 765억원, 경쟁력 강화 6,497억원
- '11년 한·미 FTA 추가협상, 한·EU FTA 비준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기존의 대책을 보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및 '12년 추가 보완대책 마련
  * 수산업분야 1조 302억원 투·융자계획 수립(직접피해지원 846억원, 경쟁력 강화 9,456억원)
- 한-중/한-베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 발표('15.6)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사업규모 : 어업인등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대책수립/수산업 현장애로 동향분석)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어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76	100	「FTA 농어업법」 제20조

7. 사업 집행절차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제출(승인요청)
(어업인등 지원센터 →해수부) ⇒ 사업승인 및 출연금 교부
(해수부→어업인등 지원센터) ⇒ 사업 추진

<FTA 대책수립 / 수산업 현장애로 동향분석 추진>

추진방향 등 검토 ⇒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 사업 추진

사 업 명
(20) 원양어선 안전관리 (354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41	301
명칭	원양협력	원양어업기반구축(기금)	원양어선안전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원양어선 안전관리	19,000	18,000	18,000	15,000		△3,000	△16.7

4. 사업목적·내용

- (원양어선안전펀드) 노후 원양어선 대체건조를 지원하여 원양어업 생산성 개선 및 원양어선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3년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신조 14척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융자)

-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3년부터 "원양어선현대화사업(융자)"을 지원하였으나, 중소 원양선사의 담보 부족으로 융자사업 활용이 곤란하여 연례적 집행부진
  · 연승 7척·트롤 4척 수리비용 지원, 선망 9척 건조지원, 연승 5척 중고선 도입 지원
  · 노후 원양어선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원양어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속적인 국회 지적
- '15년부터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조건 등을 완화하였으나, 융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담보 부담 등)로 선사에서 사업 예산 미활용
  · ('15년도) 금리인하(4%→3%), 신용보증기금 한도 확대(15억→50억)
  · ('16년도) 신조대체사업 지원 대상 확대(원양 수산물 운반선 추가), 상환조건 완화(3년 거치 7년 상환→5년 거치 10년 상환)
  · ('17년도) 사업지원대상 확대 (신조 대체→신조 대체, 중고선 대체)
- 선사의 담보 부족 등의 집행상 문제점 해소를 위해 '19년부터 원양어선 안전펀드 조성 추진
  · ('18년도) '19년 예산사업 체계 변경 (융자→펀드 조성)
  · ('20년도) '19년에 건조를 시작한 원양 오징어 채낚기 2척 준공
  · ('21년도) '20년에 건조를 시작한 원양 오징어 채낚기 3척 준공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
- 사업규모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2,700	2,430	5,000	19,000	18,000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원양어선 안전펀드	출자	원양업체 (선사)	150억원	100%*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 (**정부출자 50%**, 금융권 30~40, 자부담 10~20%), 3년 거치 12년 상환)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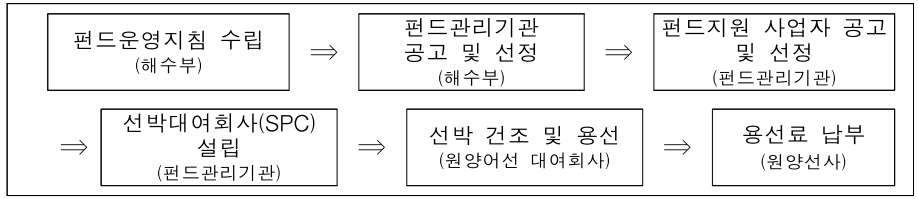

사 업 명
(21) 인건비(수발기금) (7140-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0	100
명칭	수산행정	기금운영비(기금)	인건비(수발기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인건비 (수발기금)	501	506	506	513		7	1.4

4. 사업목적·내용

- 기금관리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기금위탁 인건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조항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8조 2항

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조

제4조(사무위탁)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
3.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의 관리
4. 사업수행관리
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결산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수산발전기금사무국(이하 “기금사무국”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기금사무국의 인건비 및 사무처리 소요경비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추진경위

- 2001년부터 수산발전기금 설립으로 기금 운용함에 따라 위탁업무수행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지원내용 :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업무 등 위탁수행에 따른 사무국직원 인건비 지원
- 사업규모 : 위탁관리인원 7인

- 위탁업무내용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등 작성
  ▪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관리
  ▪ 사업수행관리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결산 등
- 지원기준 : 민간보조 100% (위탁관리 실소요액)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위탁관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건비(수발기금)	보조	수협중앙회	513백만원	100.0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 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해양수산부) → 자금집행(기금사무국)

사 업 명
(22) 기타경비(수발기금) (7140-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0	201
명칭	수산행정	기금운영비(기금)	기타경비(수발기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기타경비(수발기금)	120	131	131	127		△4	△3.1

4. 사업목적

- 기금관리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른 기금위탁관리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조항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8조 2항

  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조
제4조(사무위탁)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
3.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의 관리
4. 사업수행관리
5.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결산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수산발전기금사무국(이하 "기금사무국"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기금사무국의 인건비 및 사무처리 소요경비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추진경위 : 2001년부터 수산발전기금 설립으로 기금운용함에 따라 위탁업무수행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1～계속
- 지원내용 : 기금의 수입·지출 업무,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업무 등 위탁수행에 따른 경상경비 지원
- 사업규모(목표) : 위탁관리 인원 7인

- 위탁업무내용
  -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등 작성
  - ▪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관리
  - ▪ 사업수행관리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결산 등

- 지원기준 : 민간보조 100% (위탁관리 실소요액)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위탁관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타경비 (수발기금)	보조	수협중앙회	127백만원	100.0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 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해양수산부) → 자금집행(기금사무국)

사 업 명
(2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7140-2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수산발전기금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0	250
명칭	수산행정	기금운영비(기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해양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297	343	343	342		△1	△0.3

4. 사업목적·내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소요경비 지원 및 해양폐기물 처리·관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하는 행위
-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6. 해양환경의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3년도
  *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해양환경개선부담금) 신설('01.9월 의원입법, '02.3월 시행)
  ※ (추진배경)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해양환경개선자금으로 활용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2003년부터 도입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 것임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현장집행업무 이관('14.11월/해경청 →해수부)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계속
- 사업규모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소요경비 지원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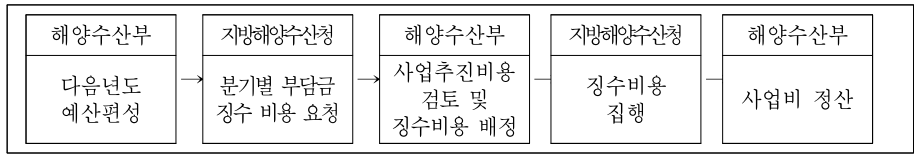

사 업 명
(24) 기금연구용역비 (7140-25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40	253
명칭	수산행정	기금운영비(기금)	기금연구용역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기금연구용역비	18	20	20	53		33	165.0

4.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방안 및 기금관리 효율화 및 결산업무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조항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8조 2항

제7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7조

제47조(고객만족도 조사실시)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계획을 조사실시 1개월 전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추진경위

- 국가재정법 제82조에 의해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존치평가)를 실시하고, 1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평가(사업평가) 실시하여 기금 사업 운용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합리적인 중장기 운용방향 모색 필요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계속
- 지원내용 : 수산발전기금 사업 추진 시 문제점 파악을 통해 기금 사업의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 모색
- 사업규모(목표) : 연구용역 1식
- 지원기준 : 민간보조 100%
- 사업시행주체 : 수협중앙회(위탁관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금연구용역비	보조	수협중앙회	53백만원	100.0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조 제3항

7. 사업 집행절차

- 계획수립 및 자금배정(해양수산부) → 자금집행(기금사무국)

사 업 명
(25) 수산물공매납입금부과징수비용 (7140-25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20	27	국제협력정책관	수산발전	100	103
명칭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기금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140	254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수산물공매납입금부과징수비용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 (B-A)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A
수산물공매납입금 부과징수비용	399	391	391	921		530	135.5

4.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FTA 협정문에 규정된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수산물 수입권 공매 운영에 따른 공매납입금 부과·징수, 수산물 수입관련 공매 시스템 운영 및 국내 유통실태, 가격조사 등을 위한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16548호, 제22조 제1항
- 한-아세안(ASEAN) 상품무역협정('06.4타결, '06.8 서명, '07.6 발효)

- 한-중국 FTA 상품협정('14.11 타결, '15.6 서명, '15.12 발효)
- 한-베트남 FTA 상품협정('14.12 타결, '15.5 서명, '15.12 발효)
- 한-뉴질랜드 FTA 상품협정('14.11 타결, '14.12 서명, '15.12 발효)
- 한-중미 FTA('16.11 타결, '18.2 서명, '19.10 발효)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70호)
-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50호)

② 추진경위

- FTA 체결에 따라 2007년도부터 베트남, 태국,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관세율 할당 품목에 대한 수입권공매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국고(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FTA 등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 경감을 위해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5개 FTA(한-아세안, 한-중국,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미) 74,307톤('22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한국수산무역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내 수산물 생산 어업인 및 수입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수산무역협회	100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70호)

7. 사업 집행절차

○ 수산물 TRQ품목은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입찰공고, 입찰시행, 수입자 결정·통보, 협정관세 추천 등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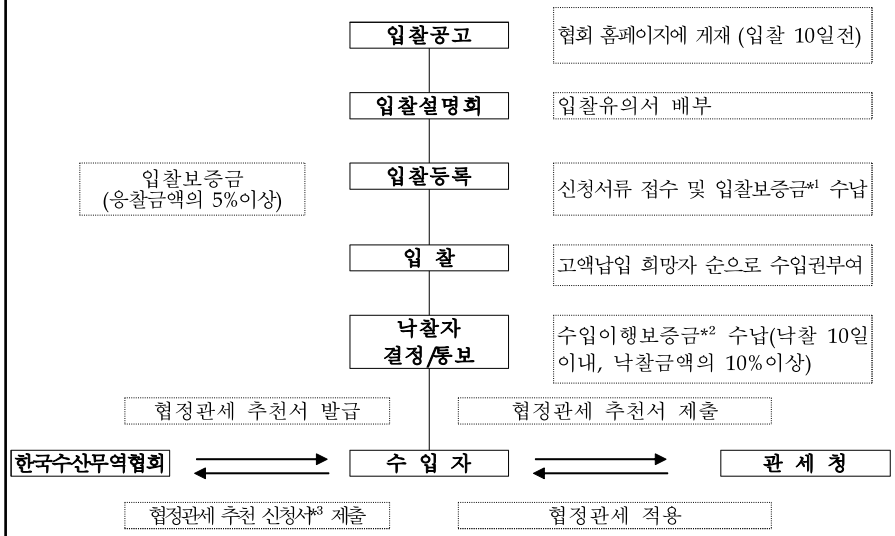

※ *1 입찰보증금 : 입찰시 응찰금액(응찰단가×응찰수량)의 5%이상 납부(5백만원을 입금 시 응찰금액을 1억까지 할 수 있음) [환불 시점 : 수입자 결정 뒤 모든 입찰자에게 환불]

※ *2 수입이행보증금 : 낙찰금액의 10%이상 납부 [수입이행완료 후 보증금 반환]

※ *3 협정관세 추천희망물량에 대한 공매납입금 납입 완료자에 한함

○ 수입수산물 가격정보 관련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모니터에게 조사를 요청하고 관계 부처 간 자료를 공유

사 업 명
(26)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9301-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300	9301	840
명칭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103,003	100,000	100,000	100,000		-	-

4. 사업목적

- 기금 사업에 필요한 사업성 대기자금을 제외한 일정수준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조항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6조

제16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에의 예치
5.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2. 추진경위

- 기금 사업에 필요한 사업성 대기자금을 제외한 일정수준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6. 주요내용

- 사업대기성 자금을 제외한 일정수준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
- 지원조건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7)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8-97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	100	103
명칭					농림수산	수산·어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8	972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운용(수산발전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수산발전기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계획		2022년		증감	
		당초(A)	수정	당초(B)	수정	(B-A)	(B-A)/A
비통화 금융기관예치	130,518	385,099	331,151	303,155		△81,944	△21.3

4. 사업목적

- 연간 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수행을 위해 연도 중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사업 대기성 자금) 또는 기금 내 수입·지출의 특수상황에 대비코자 일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1. 법령상 근거 조항

- 국고금관리법 제34조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 계획외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8조

제4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6조

제16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 ①기금위탁관리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에의 예치
5.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2. 추진경위

-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등을 위해 사업대기성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여유자금 운용)

6. 주요내용

- 사업대기성 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
- 지원조건 : 직접수행, 사업대기성 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사항 없음